

연구보고24-일반이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유민상 · 이경상 · 서고운 · 유설희 · 유성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저 자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설희, 유성렬

연구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유설희(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_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외부집필진_장민영(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_이수정(공인노무사)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있음. 이 연구는 체계적인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하여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 하였음.

■ 연구내용

- (문헌연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동향, 언론보도 동향을 정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호 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핀란드·영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정리함.
- (지표연구)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를 결합하여 이행 현황을 분석함.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식과 경험 지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 402001호)」를 직접 생산하여 보고함.
- (심층연구) 양적·질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지표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4가지 주제(자살, 취약성, 노동인권, 사회적 고립)의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해 분석함.
- (제언 도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과 ②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환경 중심 제언을 도출함.

■ 연구방법

- 문헌분석(선행연구 분석, 일반논평 검토, 유엔 최종견해 분석), 빅데이터 분석(언론보도 동향 분석), 설문조사(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면접조사(중첩된 취약성 관련 당사자 면접) 등의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언론보도 동향 분석]

-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언론보도 동향
 - 1990년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기사의 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과거에는 외국의 사례나 권리에 관해 일부 다루는 단편적인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이슈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인물과 기관도 다양화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현황과 국내 정책 동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사법 접근법과 효과적인 구제책에 관한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임.
 - 국내정책 동향은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도’,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등이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의미와 시사점
 - 2023년 8월에 채택된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와 환경’에는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비준국에 환경 관련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아동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인식 제고,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고려,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보 접근성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핀란드, 영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검토
 - 핀란드와 영국은 기본적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불리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위원회는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및 환경권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함.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기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0.0%, 학생인권조례 12.4%, 국가인권위원회 22.7%로 낮게 나타났음.
-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는 가정(96.7%), 학교(95.0%), 우리나라 전체(84.1%), 온라인 공간(83.2%)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인권의식 및 태도 중에서 참여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주체적 결정 능력 65.6%,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 82.1%, 자치조직의 의의 85.9%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차별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의견표명권 96.2%,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 97.3%, 양성평등 96.6%,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94.3%,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92.8%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인권교육 경험은 49.0%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음. 교육장소는 학교 교과수업시간 76.8%,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4.1%,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2.0% 순이었음.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91.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91.0%,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86.5%로 높게 나타났음.
- 차별 피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7%, 성별 14.2%, 학업성적 13.6%, 나이 13.2% 순으로 높았고,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9.6%, 학업성적 7.5%, 성별 6.8%, 나이 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주요 연구결과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는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5.7%,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28.2%,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0.5%,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6.6%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는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9.8%,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5.8%, 참여할 수 없음 5.1%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는 그렇다는 응답이 81.0%였음.
- 참여권 보장 수준은 72.1%가 긍정적이었음. 참여 방해요인으로는 시간 부족 37.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5.9%, 참여활동정보 부족 21.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1.8% 순으로 높았음.
-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9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에 83.1%가,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에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참여 비율은 13.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비율은 5.3%였음.
-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는 14.6%, 복장 검사는 50.5%, 소지품 검사는 9.2%로 나타났다.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는 8.4%,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는 13.9%,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는 11.9%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이용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응답 비율이 3~9세 78.2%, 10대 96.5%, 20대 99.3%였음.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9세 11.2시간, 10대 21.1시간, 20대 29.5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었음.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3~9세 7.2시간, 10대 12.6시간, 20대 16.1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었음.

주요 연구결과

● 폭력 및 학대

- 2024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34.4%, 신체적인 벌(체벌) 경험률은 25.6%였음.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10.9%, 신체적인 벌(체벌) 경험률은 5.1%였음. 친구, 선후배로부터 경험한 폭력은 욕설 및 모욕 21.0%, 폭행 및 구타 9.8%, 따돌림 8.5%, 성적인 희롱 및 추행 3.8%, 돈, 물건 빼앗김 3.1%, 강제적인 심부름 2.2% 순이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21.0%, 사생활 침해 5.1%, 성희롱(놀림) 3.3%, 협박 3.2%, 따돌림 2.8% 순이었음.
- 2024년 성적인 피해 경험률은 3.6%였음.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지 않음 36.4%, 친구 26.3%, 부모님(보호자) 16.1%, 선생님 12.0%, 형제·자매 4.3%, 선후배 1.6%, 경찰 1.4%, 전문 상담가 0.7% 순이었음.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8,522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94.3%인 45,771건,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56.2%인 25,739건이었음.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 85.9%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많았음.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최근 10년 간 보호대상아동은 2014년 4,994명에서 2023년 현재 2,054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 2023년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은 빈곤 및 실직, 학대로 발생한 경우가 1,692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부모 및 혼외자로 인한 발생이 259명(12.6%), 유기가 88명(4.3%) 등이었으며,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보호가 1,067명(51.9%), 가정위탁 783명(38.1%), 입양 162명(7.9%), 가정형 보호 42명(2.0%)으로 보고됨.
-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3.0%가 가출 경험이 있었고, 주된 가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70.2%)나 학업 문제(10.8%)를 꼽았음.

주요 연구결과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연도별 영아사망률은 2018년 1,000명 당 2.8명에서 2022년 1,000명 당 2.3명까지 하락하였으나 2023년 1,000명 당 2.5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관심 필요
-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8%(‘가끔 생각한다’ 26.3%, ‘자주 생각한다’ 4.5%)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처음으로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를 조사하였고 자해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6.0%(생각해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음 15.6%, 한 번 시도해본 적이 있음 5.2%, 가끔 시도 4.2%, 자주 시도 1.1%)이었음.
-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정신 건강 문제의 저연령화가 나타나고 있음.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고,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공교육비,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사교육비의 증가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특별보호조치

- 다문화가족 자녀 수 및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탈북학생의 증도탈락률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범죄에서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회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 중.
- 202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경험 비율이 5.8%이고, 특성화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운영 중이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심리·정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논평

-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 관련 문항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음.
- 아동·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보장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이름, 주민 번호, 주소, 사진, 동영상 등)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이는 여자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지금 당장의 거시사회적 변화가 아동·청소년들 모두를 위협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차등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 추이와 인권보장수준
 - 2013~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1~고3)에 따르면, 여학생의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았으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실제 자살률(15~19세)을 살펴보면, 남자의 실제 자살률이 여자의 실제 자살률보다 높았음.
 -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보다, 더 취약한 인권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더 안 좋게 평가하였고,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폭력, 방임되는 정도가 더 심하였고, 선생님,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다양한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았음.
-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
 - 아동·청소년 당사자 7명과 현장 전문가 7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함.
 - 분석 결과 20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과 이에 대한 무게가 쌓여가고, 성장과정에서 취약성과 악순환적인 고리가 나타남. 이때 누적되고 중첩된 취약성들은 개인에게 상처를 남기고 이것은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지속되는 영향을 남길 수 있음. 하지만 사람 속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러 경로가 있으며, 특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핵심적인 회복 기제가 될 수 있음. 또한, 취약성이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개선도 필요할 수 있음.
 - 초기의 취약성은 누적되고 중첩되어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함.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보호권 침해가 교육권, 주거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음. 중첩된 취약성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 전략이 필요함.

주요 연구결과

●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

- 청소년 노동이 보편화되고, 비임금 노동이 증가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노동 실태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한·금지'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쳐왔음. 이에 청소년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로 인식해 관련 법·제도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포괄하는 청소년 노동권 보장의 내용과 기준 마련, 청소년이 사회와 맺는 '관계'와 '기회', '성장' 등을 고려한 괜찮은 공공 일자리 창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주목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항들을 추가하였고, 심층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음.
-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권리 혹은 사회적으로 연결될 권리가 타당한지, 사회적 연결에 대한 권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연결을 권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함.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세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비전, 원칙, 세부 과제의 형식으로 정책제언을 정리하였음.
 - 비전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모든 아동·청소년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설정함. 이는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임.
 -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생존·발달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비차별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으로 정하고 정책에 반영함.
- 세부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 7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제언 6개로 총 13개의 제언을 도출하고 세부 방향을 제시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7가지는 다음과 같음. ①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③ 폭력 및 학대 영역은 자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④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은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⑤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은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⑥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은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⑦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가 도출되었음.
 -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6가지는 다음과 같음. ⑧ 개인의 웰빙 영역은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⑨ 가정 영역은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⑩ 학교 영역은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 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⑪ 지역사회 환경 영역은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⑫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⑬ 생태적 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음.
 - 다음의 도식에서는 비전, 원칙, 세부 정책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음.

핵심 정책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영역 I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 I -1.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영역 I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 I -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신제 모니터링 강화

영역 I -3. 폭력 및 학대

과제 I -3. 자연형충(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영역 I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과제 I -4.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영역 I -5.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과제 I -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영역 I -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I -6.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영역 I -7. 특별보호조치

과제 I -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 할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영역 II -1. 개인의 웰빙

과제 II -1.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영역 II -2. 가정

과제 II -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영역 II -3. 학교

과제 II -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영역 II -4. 지역사회 환경

과제 II -4. 놀이 및 여가환경 격차 개선

영역 II -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II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영역 II -6. 생태적 환경

과제 II -6.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림 i-1. 본 과제의 비전, 원칙, 세부과제

🏠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20.0%

이름만 들어봤다
48.8%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교육 단계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	이름만 들어봤다 (%)
초등학교	14.9%	35.3%
중학교	24.8%	54.2%
고등학교	20.4%	57.3%

국가인권위원회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22.7%

이름만 들어봤다
55.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교육 단계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	이름만 들어봤다 (%)
초등학교	17.2%	53.6%
중학교	22.5%	55.4%
고등학교	28.9%	56.4%

차별 경험

차별 받은 경험

성차별



2024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24

연령차별



2024

외모,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2024

차별 한 경험



성차별

2024

6.8%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24

7.6%



연령차별

2024

5.9%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024

9.7%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어요! | 72.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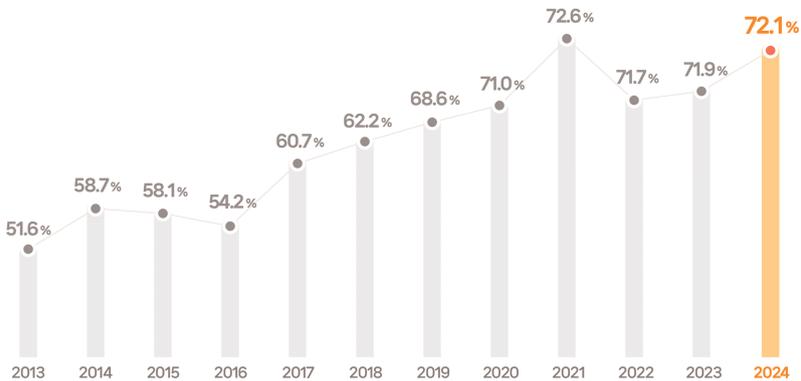
중학교



고등학교



연도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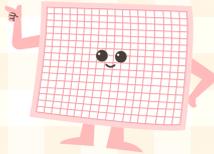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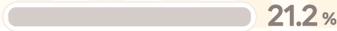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8.7%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7.8%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5.3%
2순위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3.6%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7.5%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6.8%

체벌 경험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25.6%**



1주일에
1-2회 이상

1.2%

1년에 1회 이상
25.6%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38.6%	2.5%
중학교	25.6%	0.8%
고등학교	11.9%	0.3%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5.1%**



1주일에 1-2회 이상

0.4%

1년에 1회 이상
5.1%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4.5%	0.0%
중학교	6.4%	0.6%
고등학교	4.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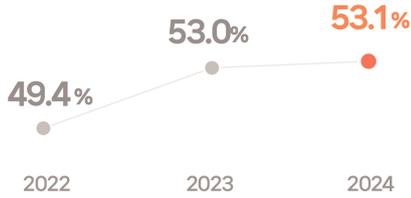
방임경험 연도별 추이

경험 있어요 (1년에 1회 이상)

밤 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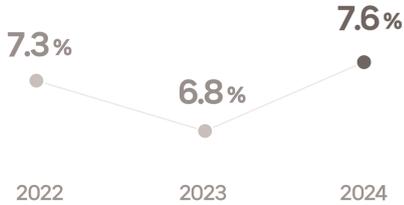
초등학생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또는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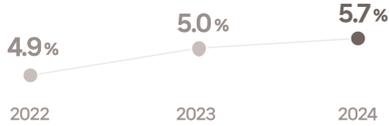
초·중·고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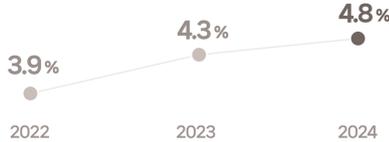
초·중·고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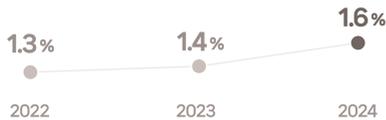
초·중·고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음



초·중·고



성적인 피해 경험

☹️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어요

2024년

3.6%

남학생
3.5%

여학생
3.7%

초등학교

4.6%

중학교

4.2%

고등학교

1.9%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2024년 **36.4%**

남학생

34.4%



여학생

38.4%



초등학교

26.5%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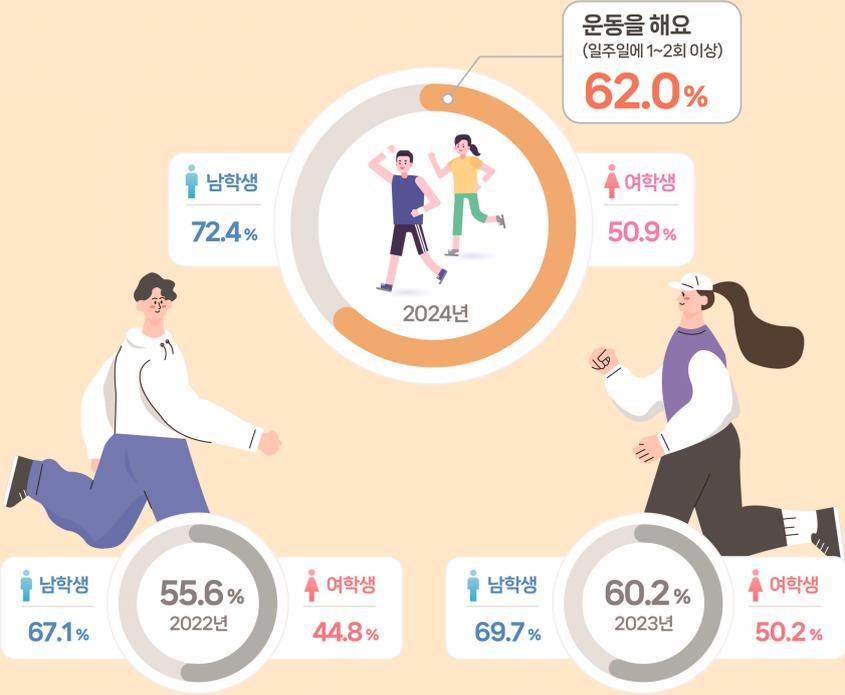
42.2%



고등학교

48.0%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



19.9% — 운동을 하지 않아요

성별		학교급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9%	26.2%	8.0%	20.9%	31.2%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30.8%



남학생
22.9%

여학생
39.1%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어요

14.2%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현재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현재
행복하지 않아요

16.0%

행복하지 않은 이유

47.0%

· 학업 문제 때문에

19.9%

·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11.3%

·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7.0%

·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6.9%

· 기타

6.7%

·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

·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해본적 있어요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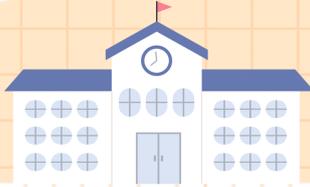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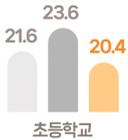
29.5%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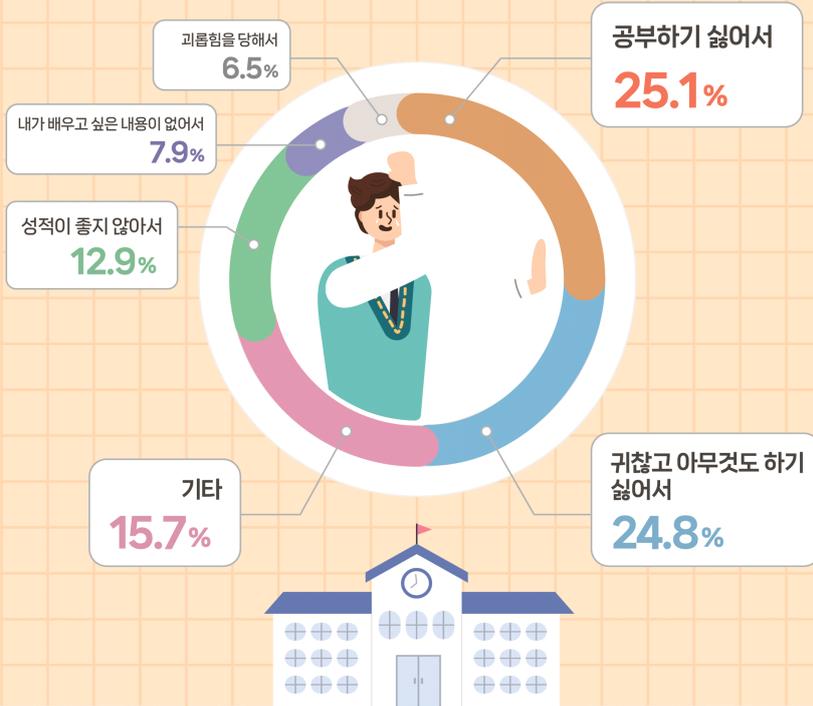
28.8%



● 2022 ● 2023 ● 2024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공부하기 싫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초등학교	26.3%	20.8%
중학교	28.8%	26.7%
고등학교	21.4%	25.4%
일반계고	22.6%	25.1%
특성화계고	15.1%	26.7%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수준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에 대한 걱정

온라인상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57.3% 초등학생

63.4% 중학생

67.9% 고등학생

온라인상에서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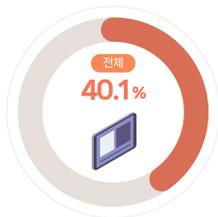


55.7% 초등학생

61.9% 중학생

64.5% 고등학생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33.9% 초등학생

46.5% 중학생

33.9% 고등학생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72.2%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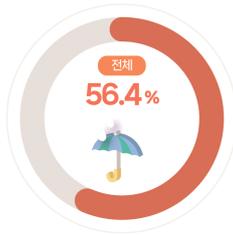
70.5% 중학생

67.2% 고등학생

😊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수준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평균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57.8% 초등학교

49.8% 중학생

61.6% 고등학생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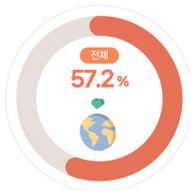


75.4% 초등학교

80.7% 중학생

87.2% 고등학생

기후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



48.7% 초등학교

57.7% 중학생

65.6% 고등학생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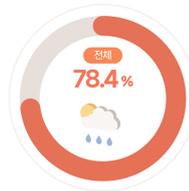


77.8% 초등학교

58.9% 중학생

46.0% 고등학생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80.6% 초등학교

78.0% 중학생

76.4% 고등학생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보고24-일반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11
4. 보고서의 구성	20

II.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언론보도

동향 분석

1. 개요	23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 동향	24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현황과 국내 정책 동향	37
4. 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와 환경에 관한 일반논평 제26호	53

-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동향:
영국,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 74
- 6.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과제
..... 89

III.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조사 방법

- 1. 개요 93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94
- 3.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개요 100

IV.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1. 개요 115
-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6
-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4
- 4. 폭력 및 학대 175
-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08
-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242
-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05
- 8. 특별보호조치 357
- 9. 일반논평(제25호, 제26호 관련 지표) 407

V.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 1. 심층분석 개요 427
- 2.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 추이와 인권보장 수준
..... 428
- 3.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 458
- 4.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 486
- 5.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 531

VI.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도출과정 543
-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544
-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
..... 554

참고문헌 607

부 록

- 1.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연도별
현황(2018~2024년) 650
-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번호 변경이력
(2013~2024년) 696
- 3.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
..... 704
- 4.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 723

국문초록 747

Abstract 748

표 목차

표 I-3-1.	전문가 자문 내용	12
표 I-3-2.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15
표 I-3-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개최 결과	17
표 I-3-4.	포럼 개최 결과	17
표 II-2-1.	빅인즈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 검색을 위한 검색식	25
표 II-4-1.	일반논평 제26호 구성 체계	60
표 II-5-1.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현황	75
표 II-5-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영국, CRC/C/GBR/CO/6-7)	85
표 II-5-3.	아동의 의견 표명권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핀란드, CRC/C/FIN/CO/5-6)	85
표 II-5-4.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핀란드, CRC/C/FIN/CO/5-6)	87
표 III-2-1.	202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95
표 III-3-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학생수)	101
표 III-3-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4
표 III-3-3.	신규 설문 문항: 정신적 건강	105
표 III-3-4.	신규 설문 문항: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105
표 III-3-5.	신규 설문 문항: 여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06
표 III-3-6.	신규 설문 문항: 자해 생각 및 시도	108
표 III-3-7.	신규 설문 문항: 환경권	109
표 III-3-8.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이탈릭+밀줄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109
표 IV-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116
표 IV-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2017~2023년)	119
표 IV-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4년)	121

표 IV-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24년)	124
표 IV-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24년)	125
표 IV-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24년)	126
표 IV-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2024년)	128
표 IV-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2024년)	129
표 IV-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24년)	131
표 IV-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2024년)	134
표 IV-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2024년)	134
표 IV-2-12.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2024년)	135
표 IV-2-13.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2024년)	136
표 IV-2-14.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2024년)	138
표 IV-2-15.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현황(2021~2023년)	142
표 IV-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24년) ..	145
표 IV-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2024년)	146
표 IV-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24년)	148
표 IV-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2024년)	149
표 IV-3-5.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50
표 IV-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2014~2023년)	151
표 IV-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3년)	151
표 IV-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2024년)	152
표 IV-3-9.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24년)	153
표 IV-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2024년)	154
표 IV-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2024년)	155
표 IV-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24년)	157
표 IV-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24년)	158
표 IV-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24년) ..	159
표 IV-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24년)	161
표 IV-3-1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7~2023년)	162
표 IV-3-17.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3년)	164
표 IV-3-18.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7~2023년)	165

표 IV-3-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복수응답, 2019~2023년)	166
표 IV-3-20.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2년)	166
표 IV-3-21. 학생 독서량(2011~2023년)	167
표 IV-3-22.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2016~2022년)	167
표 IV-3-23.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2018~2022년)	168
표 IV-3-24.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2018~2022년)	169
표 IV-3-25.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2018~2022년)	170
표 IV-3-26. 디지털 사용 역량(2020~2023년)	172
표 IV-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4년)	175
표 IV-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체벌, 2024년)	177
표 IV-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4년)	178
표 IV-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2024년)	180
표 IV-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2024년)	182
표 IV-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2024년)	185
표 IV-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2년)	188
표 IV-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24년)	189
표 IV-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2024년)	190
표 IV-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3년)	191
표 IV-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3년)	192
표 IV-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3년)	192
표 IV-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2019~2023년)	193
표 IV-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23년)	193
표 IV-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23년)	194
표 IV-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19~2023년)	194
표 IV-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2024년)	195
표 IV-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2024년)	197
표 IV-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2024년)	198
표 IV-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4년)	199

표 IV-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4년)	201
표 IV-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8~2023년)	202
표 IV-4-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2017~2023년)	203
표 IV-4-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2023년)	204
표 IV-4-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7~2023년)	204
표 IV-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17~2023년)	209
표 IV-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7~2023년) ..	210
표 IV-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1)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9~2023년)	212
표 IV-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18~2022년)	213
표 IV-5-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4년 9월 기준) ..	215
표 IV-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4~2023년) ..	217
표 IV-5-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1~2023년) ·	217
표 IV-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2014~2023년)	218
표 III-5-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예시)	220
표 IV-5-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7~2023년)	221
표 IV-5-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7~2023년)	222
표 IV-5-12.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8~2022년) ..	224
표 IV-5-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8~2022년) ..	225
표 IV-5-14.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18~2022년)	225
표 IV-5-15. 가출 여부(2024년)	226
표 IV-5-16. 가출한 주된 이유(2024년)	228
표 IV-5-17.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230
표 IV-5-1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4~2023년) ..	231
표 IV-5-19. 가출 후 이용한 기관(2024년)	231
표 IV-5-2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2024년)	233
표 IV-5-21. 2022년도 대비 2025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234
표 IV-5-22.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배점	236
표 IV-5-23.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237

표 IV-6-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4년) ……	242
표 IV-6-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7~2024년) ……	243
표 IV-6-3.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황(2014~2023년) ……	243
표 IV-6-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20~2024년) ……	244
표 IV-6-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020~2024년) ……	244
표 IV-6-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2022년) ……	245
표 IV-6-7.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2022년) ……	246
표 IV-6-8.	장애아동 학대유형(2022년) ……	246
표 IV-6-9.	연도별 영아사망률(2018~2023년) ……	247
표 IV-6-10.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8~2023년) ……	248
표 IV-6-11.	연령별(0~24세) 사고 사망률(2018~2023년) ……	248
표 IV-6-12.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9~2023년) ……	249
표 IV-6-13.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2019~2023년) ……	251
표 IV-6-1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24년) ……	253
표 IV-6-1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2024년) ……	254
표 IV-6-16.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2024년) ……	255
표 IV-6-17.	보건교사 배치현황(2019~2023년) ……	256
표 IV-6-18.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6~2023년) ……	257
표 IV-6-19.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	258
표 IV-6-20.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2023년) ……	259
표 IV-6-21.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 (2019~2023년) ……	259
표 IV-6-22.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22년) ……………	260
표 IV-6-23.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년) ……	261
표 IV-6-24.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8~2022년) ……	261
표 IV-6-25.	흡연율 추이(2019~2023년) ……	262
표 IV-6-26.	음주율 추이(2019~2023년) ……	263
표 IV-6-27.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2022~2023년) ……………	264
표 IV-6-2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4년) ……	264
표 IV-6-29.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4년) ……	266
표 IV-6-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24년) ……	267

표 IV-6-31. 수면 시간(2024년)	269
표 IV-6-32. 수면 부족 여부(2024년)	270
표 IV-6-33.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4년)	272
표 IV-6-34.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2024년)	273
표 IV-6-35.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2019~2023년)	275
표 IV-6-36. 자살 생각 여부(2024년)	277
표 IV-6-37. 자살 생각 이유(2024년)	278
표 IV-6-38.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2024년)	279
표 IV-6-39.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24년)	281
표 IV-6-40.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24년)	282
표 IV-6-41.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24년)	283
표 IV-6-42. 행복한 정도(2024년)	285
표 IV-6-43.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4년)	286
표 IV-6-44. 삶의 만족도(2024년)	287
표 IV-6-45. 주관적 안녕감(CW-SWBS, 2024년)	288
표 IV-6-46.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24년) ·	290
표 IV-6-47.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24년)	291
표 IV-6-48.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2024년)	293
표 IV-6-49. 고민거리 대화상대(2024년)	294
표 IV-6-50.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2024년)	295
표 IV-6-51.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사회적 지지체계, 2024년)	296
표 IV-6-52. 외로움 정도(2024년)	298
표 IV-6-53. 아동빈곤율(2017~2021년)	300
표 IV-6-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8~2023년)	300
표 IV-6-55. 한부모가구 비율(2017~2021년)	301
표 IV-6-56.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2018~2022년)	302
표 IV-6-57.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20~2024년)	302
표 IV-6-58.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 (2017~2021년)	303
표 IV-6-59.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18~2022년)	304
표 IV-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306

표 N-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3년)	307
표 N-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3년)	308
표 N-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2000~2021년)	309
표 N-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9~2023년)	311
표 N-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0~2023)	312
표 N-7-7.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12~2023년)	313
표 N-7-8.	학업중단 생각 경험(2024년)	314
표 N-7-9.	학업중단 생각 이유(2024년)	316
표 N-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24년) ...	317
표 N-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24년)	319
표 N-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4년)	320
표 N-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24년)	323
표 N-7-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325
표 N-7-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4년) ...	325
표 N-7-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3년) ...	326
표 N-7-17.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3년)	328
표 N-7-1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9~2023년)	329
표 N-7-19.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30
표 N-7-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3년)	331
표 N-7-21.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3년)	332
표 N-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24년) ...	333
표 N-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2024년)	335
표 N-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2024년)	337
표 N-7-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2024년)	339
표 N-7-26.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24년)	341
표 N-7-2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2018~2023년)	343
표 N-7-2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2018~2023년)	344
표 N-7-29.	평일 여가시간(2024년)	345
표 N-7-30.	여가활동 만족도(2024년)	347

표 N-7-31.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순위, 2024년)	349
표 N-7-32.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2순위, 2024년)	350
표 N-7-33. 평일 학습 시간(2024년)	351
표 N-8-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2003~2023년)	357
표 N-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2024년)	359
표 N-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2년)	360
표 N-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2022년)	361
표 N-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1~2023년)	362
표 N-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3년)	363
표 N-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3년)	364
표 N-8-8.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3년)	365
표 N-8-9.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3년)	366
표 N-8-10. 이주아동 구급현황(2015~2023년)	367
표 N-8-11.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3년)	367
표 N-8-1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2012~2022년) ..	369
표 N-8-13.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2년)	370
표 N-8-14.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3년)	371
표 N-8-15.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2년) ..	372
표 N-8-16.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3년) ..	373
표 N-8-17.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2년) ..	373
표 N-8-18.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2년)	375
표 N-8-19.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3년)	376
표 N-8-20.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2019~2023년)	377
표 N-8-21.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2019~2022년)	378
표 N-8-22.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현황(2014~2022년) ..	379
표 N-8-2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2013~2022년) ..	380
표 N-8-24.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 (2016~2022년)	381
표 N-8-2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2년)	382
표 N-8-2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2년)	382
표 N-8-27.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2년)	384
표 N-8-28.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20~2023년)	386
표 N-8-29.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3년)	387
표 N-8-3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4년)	388
표 N-8-31.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24년)	390
표 N-8-32.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22년)	393

표 IV-8-33.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2015~2023년)	394
표 IV-8-34.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2023년)	396
표 IV-8-35.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3년)	397
표 IV-8-36.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2023년)	398
표 IV-8-3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7~2022년)	399
표 IV-8-3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7~2022년)	400
표 IV-8-39.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3년)	401
표 IV-8-4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22년)	402
표 IV-9-1.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1)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2024년)	408
표 IV-9-2.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2)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409
표 IV-9-3.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4년)	410
표 IV-9-4.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4년)	411
표 IV-9-5.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4년)	413
표 IV-9-6.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4년)	414
표 IV-9-7.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2024년)	415
표 IV-9-8.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 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2024년)	416
표 IV-9-9.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2024년)	418

표 IV-9-10.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24년)	419
표 IV-9-11.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24년)	420
표 IV-9-12.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4년)	421
표 IV-9-13.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2024년)	422
표 V-2-1.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권보장수준 상황 분석 시 활용한 변인	431
표 V-2-2.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	437
표 V-2-3.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운동 실천율	438
표 V-2-4.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수면시간	438
표 V-2-5.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수면부족 여부	439
표 V-2-6.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우울감	440
표 V-2-7.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외로움	441
표 V-2-8.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442
표 V-2-9.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고립감	443
표 V-2-10.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고립기간	443
표 V-2-11.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 유무	444
표 V-2-12.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	444
표 V-2-13.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행복도	445
표 V-2-14.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446
표 V-2-15.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신체적인 별(체벌)	446
표 V-2-16.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447
표 V-2-17.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가정 내 방임 정도	447
표 V-2-18.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 여부	448
표 V-2-19.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신체적인 별(체벌)	449
표 V-2-20.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선생님께서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449
표 V-2-21.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450

표 V-2-22.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학업중단 생각 여부	451
표 V-2-23.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452
표 V-2-24.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453
표 V-2-25.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성적 피해 경험	454
표 V-3-1.	청소년 당사자 심층면담 개요	459
표 V-3-2.	현장 전문가 FGI 개요	460
표 V-3-3.	청소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질문 프레임	460
표 V-3-4.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담 질문 프레임	461
표 V-3-5.	청소년 당사자(CY)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특성	461
표 V-3-6.	현장 전문가(YW)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특성	462
표 V-3-7.	자료에서 도출된 범주 및 하위범주	464
표 V-4-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해 내용 정리(노동권)	487
표 V-4-2.	청소년 노동 상위 10개 업종 시계열 비교 (2014년 및 2024년)	490
표 V-4-3.	일경험 제도 참여 청소년의 법적 지위 비교	493
표 V-4-4.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 법령	494
표 V-4-5.	1~4차 청소년 종합보호대책 주요 대책과 변화	497
표 V-4-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주요 실적	500
표 V-4-7.	현장실습생 보호 내용과 취업 지원 관련 내용	501
표 V-4-8.	학습근로자 지원과 보호 내용	502
표 V-4-9.	학교 밖 청소년 일경험 지원 제도 내용	503
표 V-4-10.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취약계층 정의	505
표 V-4-11.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 및 자립 지원 정책 내용	506
표 V-4-12.	헌법에 정한 노동기본권 주요 내용	507
표 V-4-13.	근로기준법 5장 여성과 소년	510
표 V-4-14.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515
표 V-4-15.	청소년 자립 역량 중 '경제적 자율성'	518
표 V-4-16.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519
표 V-4-17.	광산구 광산 시민수당 지급 조례 주요 내용	522
표 V-4-18.	광주광역시 '광산 시민수당' 지원사업 계획(2021년)	523
표 V-4-19.	청소년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내용	527
표 V-4-20.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정의 및 선정 관련 주요 조례	528
표 V-5-1.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외로움 문항	532
표 V-5-2.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사회적 지지 체계 관련 문항	534

표 V-5-3.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사회적 연결망 관련 문항	536
표 VI-2-1.	문헌연구의 주요내용·시사점 및 정책제언	545
표 VI-2-2.	인권지표연구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549
표 VI-2-3.	심층분석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552
표 VI-2-4.	그 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	553
표 VI-3-1.	세부 정책 과제-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557
표 VI-3-2.	세부 정책 과제-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 제언	558
표 VI-3-3.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560
표 VI-3-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561
표 VI-3-5.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564
표 VI-3-6.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출생통보 관련 최종견해	565
표 VI-3-7.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567
표 VI-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폭력 및 학대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568
표 VI-3-9.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571
표 VI-3-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안양육 관련 최종견해	572
표 VI-3-11.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574
표 VI-3-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자살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	575
표 VI-3-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자살 관련 연구 및 조사 필요성에 대한 권고	577
표 VI-3-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경쟁적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한 최종견해	579
표 VI-3-1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과제의 추진사항	579
표 VI-3-16.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과제의 추진사항	581
표 VI-3-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노동권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582

표 VI-3-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584
표 VI-3-19.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585
표 VI-3-20.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590
표 VI-3-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체벌 및 비폭력 양육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591
표 VI-3-2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과제의 추진사항	594
표 VI-3-2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596
표 VI-3-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놀이 및 여가 환경 개선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598
표 VI-3-25.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과제의 추진사항	600
표 VI-3-2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602
표 VI-3-27.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과제의 추진사항	603
표 VI-3-28.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제의 추진사항	605

그림 목차

그림 I-1-1.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우리나라 전체 (연도별 추이) ……	3
그림 I-3-1.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 및 내용 ……	11
그림 I-3-2.	커뮤니티 매핑 포럼 포스터 ……	18
그림 I-3-3.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포스터 ……	18
그림 I-3-4.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	19
그림 II-2-1.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전국일간지 기사 발간 추이 (전체, 1990~2024.10) ……	27
그림 II-2-2.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전국일간지 기사 발간 추이 (키워드별, 1990~2024.10) ……	28
그림 II-2-3.	1990년대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1990~1999) ……	29
그림 II-2-4.	2000년대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2000~2009) ……	30
그림 II-2-5.	2010년대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2010~2019) ……	32
그림 II-2-6.	2020년대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2020~2024.10.) ……	33
그림 II-2-7.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아동·청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1990~2024.10) ……	35
그림 II-2-8.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관계도(2023년, 3,117건) ……	36
그림 II-3-1.	전통적인 보고 절차 ……	38
그림 II-3-2.	간소화된 보고 절차 ……	38
그림 IV-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0~2024년) ……	122
그림 IV-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2013~2024년) ……………	123
그림 IV-2-3.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20~2024년) ……	124
그림 IV-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20~2024년) ……	125
그림 IV-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20~2024년) ……………	126

그림 IV-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2023년)	127
그림 IV-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2020~2024년)	128
그림 IV-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2013~2024년)	130
그림 IV-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13~2024년) ..	133
그림 IV-2-10.	인권교육 경험(2019~2024년)	135
그림 IV-2-11.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2019~2024년)	137
그림 IV-2-12.	차별 경험(2011~2024년)	141
그림 IV-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12~2024년)	146
그림 IV-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2012~2024년) ..	147
그림 IV-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13~2024년) ..	148
그림 IV-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2012~2024년)	149
그림 IV-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2012~2024년)	152
그림 IV-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13~2024년) ..	153
그림 IV-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2013~2024년)	155
그림 IV-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2019~2024년)	156
그림 IV-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13~2024년)	157
그림 IV-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12~2024년)	158
그림 IV-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2014~2024년)	159
그림 IV-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2011~2024년)	160
그림 IV-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12~2024년)	162
그림 IV-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2020~2024년)	176
그림 IV-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2020~2024년)	178
그림 IV-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2020~2024년)	179
그림 IV-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2020~2024년) ..	181
그림 IV-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2020~2024년) ..	184
그림 IV-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2020~2024년)	188

그림 IV-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20~2024년)	190
그림 IV-4-8.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2020~2024년)	196
그림 IV-4-9.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아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2020~2024년)	197
그림 IV-4-10.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2020~2024년)	199
그림 IV-4-11.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0~2024년)	200
그림 IV-4-12.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0~2024년)	202
그림 IV-4-13.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2017~2023년)	205
그림 IV-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2014~2022년)	208
그림 IV-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8~2022년)	212
그림 IV-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2017~2022년)	214
그림 IV-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2022~2023년)	216
그림 IV-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2014~2023년)	219
그림 IV-5-6.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추이(2014~2023년)	221
그림 IV-5-7.	가출 여부: 학교급별(2020~2024년)	227
그림 IV-5-8.	가출을 한 주된 이유(2020~2024년)	229
그림 IV-5-9.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2020~2024년)	232
그림 IV-5-1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2020~2024년)	233
그림 IV-5-11.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239
그림 IV-5-12.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239
그림 IV-5-13.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239
그림 IV-6-1.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범죄 유형별 건수, 성별 비율, 2023년)	250
그림 IV-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13~2024년)	253
그림 IV-6-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13~2024년)	254
그림 IV-6-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11~2024년)	265
그림 IV-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2024년)	267

그림 IV-6-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11~2024년)	268
그림 IV-6-7. 수면 시간(2011~2024년)	270
그림 IV-6-8. 수면 부족 여부(2013~2024년)	271
그림 IV-6-9. 성별, 학교급별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4년) ..	272
그림 IV-6-10. 비만도 현황(2019~2023년)	274
그림 IV-6-11.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2018~2023년) ..	276
그림 IV-6-12. 자살 생각 여부(2011~2024년)	278
그림 IV-6-13. 우울 정도 척도의 항목별 응답 결과(2024년)	280
그림 IV-6-14.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13~2024년) ..	281
그림 IV-6-15.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13~2024년) ..	282
그림 IV-6-16.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2013~2024년)	283
그림 IV-6-17. 행복한 정도(2013~2024년)	285
그림 IV-6-18. 학교급별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4년)	286
그림 IV-6-19.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2024년)	289
그림 IV-6-2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013~2024년)	290
그림 IV-6-2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13~2024년)	292
그림 IV-6-2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2013~2024년)	293
그림 IV-6-23. 사회적 고립감 4개 문항 결과(UCLA 외로움 척도, 2024년)	297
그림 IV-6-2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고립된 기간 응답(2024년) ..	299
그림 IV-7-1. 학업중단 생각 경험(2012~2024년)	315
그림 IV-7-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24년) ..	318
그림 IV-7-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13~2024년)	320
그림 IV-7-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0~2024년)	322
그림 IV-7-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13~2024년)	324
그림 IV-7-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13~2024년)	334
그림 IV-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2013~2024년)	336
그림 IV-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2013~2024년)	338

그림 IV-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2013~2024년)	340
그림 IV-7-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13~2024년)	342
그림 IV-7-11.	평일 여가시간(2012~2024년)	346
그림 IV-7-12.	평일 학습 시간(2013~2024년)	352
그림 IV-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998~2023년)	358
그림 IV-8-2.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3년)	368
그림 IV-8-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2015~2022년)	385
그림 IV-8-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13~2024년)	390
그림 IV-8-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11~2024년)	392
그림 IV-9-1.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기업, 학교의 노력 인식(2024년)	407
그림 IV-9-2.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침해 걱정 및 구제 방법 인지 여부(2024년)	412
그림 IV-9-3.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2024년)	417
그림 IV-9-4.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정도(2024년)	423
그림 V-2-1.	9~24세 청소년의 2018~2022년 자살 현황 추이	428
그림 V-2-2.	성별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432
그림 V-2-3.	학교급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433
그림 V-2-4.	지역 규모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433
그림 V-2-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434
그림 V-2-6.	학업성적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434
그림 V-2-7.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연도별 추이(전체)	435
그림 V-2-8.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연도별 추이(남자)	436
그림 V-2-9.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연도별 추이(여자)	436
그림 V-4-1.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2014년)	499
그림 V-4-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512
그림 V-5-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531
그림 V-5-2.	UCLA 외로움 척도 4개 문항의 연차별 비교(2023~2024년)	533
그림 V-5-3.	UCLA 외로움 척도 4개 문항의 인구 대상별 비교(2024년)	533
그림 V-5-4.	사회적 지지체계 6개 문항의 연차별 비교(2023~2024년)	535

그림 V-5-5.	사회적 지지체계 6개 문항의 인구 대상별 비교(2024년)	535
그림 V-5-6.	사회적 연결망 유무에 대한 인구 대상별 비교(2024년)	536
그림 V-5-7.	고립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삶의 가치,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비교(2024년)	537
그림 VI-1-1.	제언 도출과정	543
그림 VI-3-1.	본 과제의 비전과 원칙	555
그림 VI-3-2.	본 과제의 비전, 원칙, 세부과제	559
그림 VI-3-3.	2013~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살 생각 이유	578
그림 VI-3-4.	미국 다층지원체계(MTSS) 기본적 구조 (오레건 주의 예)	580
그림 VI-3-5.	긍정양육 129 원칙 홍보 자료 및 포스터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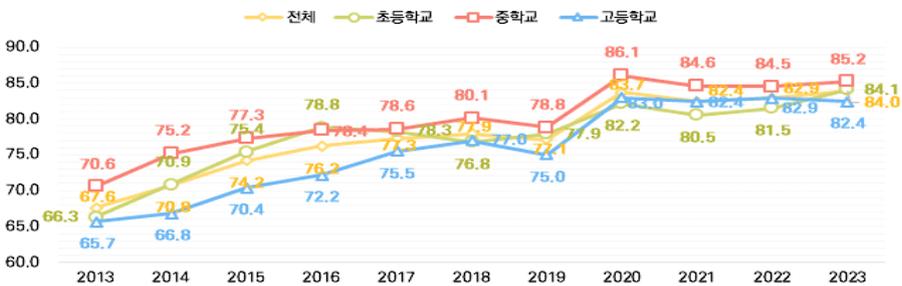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하여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① 기존 과제에서 구축한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② 추가적으로 생산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인식과 경험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통해 매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며, ③ 양적·질적 방법으로 지표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해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 출처: 유민상, 이경상(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p.289.

그림 | -1-1.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우리나라 전체 (연도별 추이)

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서고운 연구위원, 유설희 전문연구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존중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다. 2013년 전체 아동·청소년의 67.6%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수준이 존중받고 있다(‘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산 비율)고 응답했으나, 2023년에는 84.0%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해 16.4%p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경제적 수준 집단별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2013년 경제적 수준 ‘상’ 그룹은 71.6%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수준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경제적 수준 ‘하’ 그룹은 56%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15.6%p 차이가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3). 2023년에는 경제적 수준 ‘상’ 그룹은 85.9%, 경제적 수준 ‘하’ 그룹은 72.4%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13.5%p의 차이가 나타났다(유민상 외, 2023). 지난 10년 간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향상되었으나 하위집단별 인권 수준 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기후위기 속에서의 아동권리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들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의 영향과 이를 포괄하고 있는 거시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상황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측정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역시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하다. 이번 2024년 연구는 연속과제로서의 차별성을 위하여 이러한 이슈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연속과제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유민상 외, 202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국내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6호를 정리하여 학계와 정책가들이 기후위기 속에서의 아동인권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언론변화를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권리가 대중매체에서 어떠

한 흐름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한계와 대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넷째,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점검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설문과 기존 행정 자료를 통해 이행 모니터링 지표를 취합하여 제시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올해는 자살 지표의 추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자살 생각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중첩된 취약성과 다중적 인권침해 현상은 어떠한지, 아동·청소년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 방안은 무엇인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지표의 결과와 특성, 그리고 정책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여섯째로, 종합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사점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1) 주요 연구 내용 개요

이 연구는 방대한 양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생산한 지표와 행정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상황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해 상황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업인 인권실태분석은 인권지표체계를 통해 지표를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식이나 경험에 관한 부분은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행정데이터와 직접 조사한 설문데이터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인권상황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과업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상황 파악은 문헌을 통한 정책분석과 아동·청소년 면담조사로 수행되었다. 정책분석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면담 조사는 심층 연구로 지표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인권 상황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드러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세 번째 과업인 정책제언은 각 보고서의 결과로써 도출된 내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목화하여 정부와 우리사회의 변화를 인권 영역별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별로 제시하였다.

2)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기본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²⁾ 이와 함께 인권지표체계를 개선하고자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등 국제기구의 인권지표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고 있다(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권 지표체계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수정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인권 영역의 반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와 26호(기후변화)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2023년 기준 인권지표체계에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파트의 수정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해당 영역이 기존 인권지표체계의 구분과는 상이한 전 영역에 걸친 주제(cross-cutting issue)이고, 신규 지표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인권지표체계에는 반영하지 않았었다. 올해 연구에서는 해당 지표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연속 지표로서 해당 설문문항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대표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내용을 특정 영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전 영역에 걸쳐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³⁾

둘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프레임과 성과지표의 추가이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프레임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연구 프레임워크(유민상 외, 2022)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인권 상황과 아동·청소년의 발달 성과와의 관련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연속과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지표체계를 변경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아동·청소년 발달 성과와의 관련성을 도식화하는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발달 성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감정, 삶의 의미), 외로움, 고립감 등의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s)였으며, 이와 함께 인권 상황 및 사회적 인식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2)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CRC/C/58/Rev.3

3)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행 지표의 선정 이유와 근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히 사유를 제시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적인 생산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조사도구 보완 및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전년도인 202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52개 소분류(지표) 범주 하에 총 117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기생산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표 항목은 74개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지표 항목은 43개였다(유민상 외, 2023).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생산은 앞에서 논의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작업을 바탕으로, 2023년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중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하며, 추가하기로 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주관적인 물질적 상태, 정신적 건강,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 여가활동 만족도 등이다.

삭제, 수정, 추가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2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 항목들 중,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표 항목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하였다.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지표 항목들은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초4~고3 학생 9,000명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1호)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하였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개선 방안 분석

① 선행연구 분석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의 주요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최종권해) 주요 내용 및 동향, 우리나라 학계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②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국내 정책동향 분석은 국내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자 최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그에 대한 성과 및 아쉬운 점 등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고자 2022년 12월, ‘학생맞

‘충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개인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른 필요와 요구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그동안 개별 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되어 왔던 방식을 통합 진단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여 학교 내의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위기 및 취약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각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최신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와 성과를 점검하였다.

③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기사 분석

2023년 본 연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논문을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것에 이어,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플랫폼을 활용하여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보고, 관계도 생성과 연관어 추출 등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례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아동’, ‘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해왔다. 2010년대 초까지는 서서히 증가해오다 2010년대 무상급식 논의, 학생기본조례 논의, 학교 내 체벌금지 논의를 통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학대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 ‘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2013년(1월~12월)과 2023년(1월~12월)에 발간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게임, 학교 급식, 입양특례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등의 매우 다양한 주제의 기사에서 아동·청소년 권리가 다루어졌으나, 2023년에는 아동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노동법, 학생인권, 기후변화 등의 기사에서 아동·청소년 권리가 다루어진 차이가 있었다. 이후 심화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아동·청소년 권리의 맥락과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④ 심화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는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사회적 고립 대응으로, 현 상황에서 심층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연구진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추이와 인권보장수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아동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한국 아동의 정신건강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 구체적으로, 우울증, 가정 문제,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고, 아동 및 가족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심리적이며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조치, 보다 포괄적인 대책 마련 등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국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뿐 아니라, 이를 통한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취약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심층분석에서는, 첫째, 자살 생각 지표의 시간적 변화 추이와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수준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자살 생각을,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을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살 생각 유무에 따라 인권보장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수준이 자살 생각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수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 자살 생각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다방면으로 살펴보았다.

나. 아동·청소년이 가진 증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

이 절은 2023년에 이어 ‘증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에 관한 연구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2023년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빈곤, 학교폭력, 소득격차 등 증첩된 취약성이 어떻게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 등과 함께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4년에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면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첩적으로 나타나는 취약성과 인권 미보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올해는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였고, 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분석하였다.

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방안: 적극적 노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도입되는 등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중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위험 노동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나, 소극적인 규제나 금지 방법으로는 노동소득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일 경험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노동 특성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아동·청소년의 관계망 변화로 인해 고립과 외로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처음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정책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과 관계는 그동안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부분으로 사회적 참여와 연결에 대한 논의를 인권과 함께 결부 지어 진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및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다. 둘째는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안 보고서(alternative report) 작성 시 참고할 이행방안 및 개선방안이다.⁴⁾

4)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연령에 맞추어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을 만18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있어 실제 만18세가 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구성된다. 양적연구는 인권실태조사 설문과 2차 데이터 분석이 포함되고, 질적연구는 문헌 연구, 면접조사가 포함된다. 2차 데이터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이다. 이를 도식화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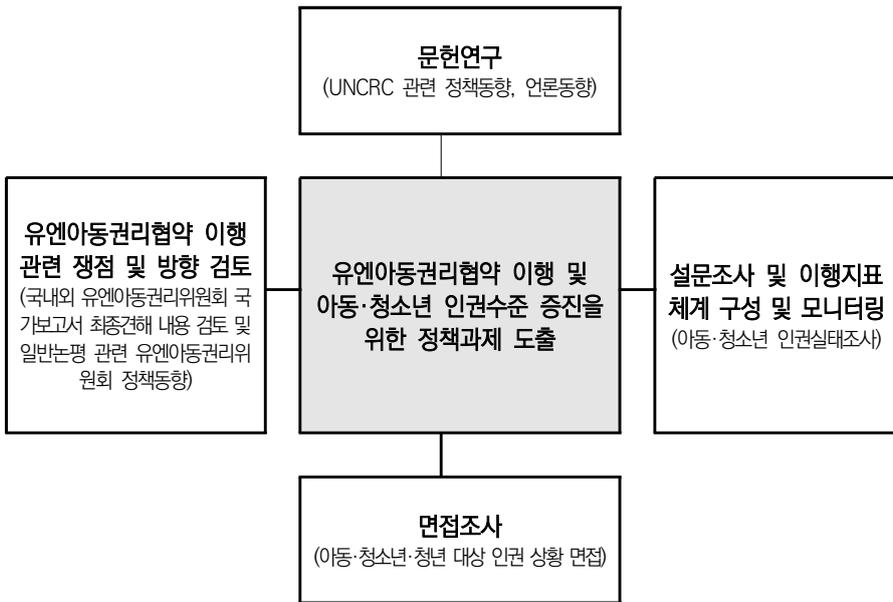


그림 1-3-1.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 및 내용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정책 동향 검토이다.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자 각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최신 정책 및 업무계획과 보도자료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와 성과를 점검하였다.

둘째, 언론보도 동향 검토이다. 이 연구는 2023년 연구에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연구(KCI 등재지 기준)를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2)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연구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국내법, 정책, 통계 전문가 등 다학제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각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질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제도적 밀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1-3-1. 전문가 자문 내용

No.	자문영역	자문진
1	(지표 및 설문 관련 자문) 인권지표체계 보완, 조사도구 수정보완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관련 자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국내외 인권상황 관련 이슈	
3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자문	학계 전문가 11명 현장 전문가 2명 정책 관계자 6명
4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 학교밖 청소년지원 기관의 청소년 인턴 운영 상황 파악 및 사업체 방문	
5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 지역 청년들의 아동·청소년기 성장 경험 관련 자문	

3) 설문조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 항목 중 직접 생산하여 살펴보는 지표 항목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초 4~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 청소년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실시하였다.⁵⁾⁶⁾

우선 전년도인 2023년 설문지를 바탕으로 추가, 수정 보완, 삭제할 사항을 검토하여 새롭게 2024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023년 설문지의 내용은 8개 대분류 범주(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일반논평) 별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설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프리테스트 등을 통해 추가할 문항, 수정 보완할 문항, 삭제할 문항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주관적인 물질적 상태, 정신적 건강,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 여가 활동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문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프리테스트 과정에서 불명확하고 비밀관련 응답이 발견되어 학교 사생활 보호 문항 중 핸드폰 관련 문항을 삭제, 수정하였고,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문항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예시를 수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권리목록 문항에 환경권 문항을 추가, 수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설문지 길이가 길다는 지적이 있어 문항 수 조정을 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을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종류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설문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의 2종류로 구성하였다. 추가, 수정 보완, 삭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설문지 안은 4월 중순 통계청의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검토, 통계 변경승인 과정을 거쳤고, 4월 말 ~ 5월 초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연구윤리 검토 및 승인(202404-HR-고유-007)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실제 조사는 청소년 대상의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조사 기관을 선정,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표집은, 2024년 조사 시점 기준 전국(세종시, 제주도 포함) 초 4~6학년, 중 1~3학

5) 국가승인통계 결과보고를 위한 연구방법, 설문문항별 세부 기초통계 등은 별권으로 발행되는 ‘기초통계보고서’에 수록되어 발간되었다.

6) 이 연구는 2023년에 비해 조사비가 1억 증액되었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교사에 대한 답례품비를 증액한 바 있다.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사 진행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년, 고 1~3학년 청소년들을 조사 모집단으로, 2023년 한국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목표 표본 수를 9,000명으로 설정한 후, 지역, 학교급 및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층화하고 각 층에서 크기비례(PPS) 방식으로 학교를 추출한 다음,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추출된 학급의 청소년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하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협조 거절 등으로 추출된 학교를 조사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 층에서 무작위 추출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학교로 대체하여 추출하였다(강현철, 2024).

자료수집은 실사 기간인 2024년 5월 13일~6월 28일의 기간에 리서치 회사의 전문 면접원들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및 학급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self-reported)식 집단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학교방문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전체 조사의 30% 이내에서 우편조사의 방법도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 더블 편칭, 검수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통계전문가에 의한 가중치 부여 과정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완성하였다. 최종 표본 수는 8,759명이었다(리서치앤리서치, 2024a, 2024b).

주요 조사 진행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설문지 확정(4월 중순),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검토 및 통계 변경승인(4월 중순), 기관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연구윤리 검토 및 승인(4월말~5월 초) 과정을 거쳤고, 이후 실사(5월~6월), 데이터 에디팅, 편칭, 검수 및 분석(7월~9월) 과정을 거쳐 조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올해 연말에는 매년 수행하는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익년 1월에 본원 홈페이지와 통계청 KO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데이터는 익년 12월에 본원 아카이브 홈페이지와 통계청 MD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⁷⁾

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구체적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기관별 통계 →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검색
- 통계청 MDIS(<https://mdis.kostat.go.kr/>)에서 자료이용(주제별) → 사회일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혹은 자료이용(기관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검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 → 자료 → 통계/정책 DB → 통계 DB → 데이터 다운로드

표 1-3-2.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모집단	• 전국(세종, 제주 포함)의 초(4~6학년), 중(1~3학년) · 고(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표집틀	• 2023년 교육통계연보	
표본 수	• (목표) 9,000명, (실제) 8,759명 최종 조사완료(목표치의 97.3%)	
표집방법	•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권역별, 학교, 학년, 성 등)	학교 조사
조사시기	• 2024년 5~6월	
조사방법	• 학교방문 집단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자기기입식 응답)	종이 설문
조사주기	• 1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 2024년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진행(1년 주기) • 기관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202404-HR-교유-007) 	

4) 면접조사

올해 연구는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면접조사의 주제는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이며,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취약성이 어떻게 다른 취약성과 결합되면서 여러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는 2023년 동일한 주제에 대한 청년 회고 조사에 이어 청소년 당사자 조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청소년 7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위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2회 이상 대면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 관련 학교와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FGI)을 비대면으로 2회 실시하였다. 연구윤리를 위하여 면접조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수행 과정 중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다.

5) 연구진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

이 연구는 전문가 간담회, 연구진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는 국가승인통계 변경 및 협약 영역별 이행 모니터링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다.

(2) 연구진 워크숍

본 연구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가 분절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회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연구 결과의 정책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 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와는 본 연구의 네 번째 심층연구 주제인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 의회의 요청으로 조례제정 관련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10월 현재 성북구 의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법률 지원 및 세미나 참석 등 연구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3-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개최 결과

차수	주요내용	부처(기관)	개최 시기
1차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현황 및 향후 법정정책 대응 방안 관련 정책방향 논의	여성가족부	'24.6
2차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고용노동부의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논의	고용노동부	'24.7
3차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방안 협의	교육부	'24.9
4차	성북구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 협의	성북구의회	'24.9
5차	성북구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조례안 도출 및 제정 방안 협의	성북구의회, 성북구	'24.9
6차	탈가정(가출) 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내 문항 추가 관련 협의	여성가족부	'24.12

(4) 전문가 자문 및 포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적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콜로키움과 포럼을 개최하였다. 소규모 논의가 필요한 경우 콜로키움으로 개최하고, 정부부처나 대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포럼으로 개최하였다.

표 1-3-4. 포럼 개최 결과

차수	주요내용	발표자	시기
1차	다양성, 포용성, 초연결을 위한 교육혁신 : 커뮤니티 매핑	임완수 교수 (美메헤리의대)	'24.6
2차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보장으로	유민상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수정 노무사	'24.8

제57회 청소년정책포럼

다양성, 포용성, 조연결을 위한 교육혁신: 커뮤니티 매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방법으로서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중심적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사 임완수 교수(미국 예허리 의과대학, 커뮤니티매핑센터 대표)
*새바위 사랑과 세상을 바꾼 공동체 지도 강연자,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 저자

일정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10시 30분 ~ 12시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아동) 1층 중강당1

참여 커뮤니티 매핑에 관심이 누구나 (간, 사전신청 필수)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QR *이전 포럼은 저장을 해주세요 합니다.	10:30~10:40	- 개회사	백일된 완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40~11:30	- 발표 다양성, 포용성, 조연결을 위한 교육혁신: 커뮤니티 매핑	임완수 교수 (미국 예허리 의과대학 교수, 커뮤니티매핑센터 대표)
	11:30~11:55	- 자유토론	참여자 전체
	11:55~12:00	- 폐회	
	문의 044-415-2194, msyoo@myplire.kr		

그림 1-3-2. 커뮤니티 매핑 포럼 포스터

제60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보장으로

일시 2024년 8월 22일 13시 30분 ~ 16시 10분

장소 정책일기빌딩관 2층 올림타
(서울 중구 동대문로 103길 10-10 대우빌딩 2층 정책일기빌딩)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일시	시간	내용	사회 및 지원
등록	13:00~13:30 (05)	접수 및 등록	
	13:30~13:40 (10)	개회 및 인사말	
주제발표	13:40~14:50 (70)	박희순 노동부장관 새로운 일자리 활용방안 (국무조정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 최영준 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완수 노동인권 보장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보장으로 (미국 예허리 의과대학 교수, 커뮤니티매핑센터 대표)	
토론	14:50~15:00 (10)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국립중앙청소년안심센터 연구원)	
		임완수 서울을 돌보는 청소년 협의회 대표로 토론 (서울특별시청소년문화의집 연구원)	
토론토론	15:00~16:00 (60)	(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립중앙청소년안심센터 연구원)	사회 최영준 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립중앙청소년안심센터 연구원)	
폐회	16:00~16: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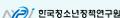
문의 | 후원인quiry@044-415-2108, jsp@02148myplire.kr


그림 1-3-3.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포스터

(5) 학회 참여 및 해외 출장

이 연구는 학회 참여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참여는 본 연구에서 2023년 생산한 사회적 고립 지표 관련 분석 결과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국제아동지표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hild Indicators)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영국 등 아동·청소년의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향후 해외 연구진들과의 교류를 통해 디지털 환경과 기후환경 관련 지표를 본 인권 지표체계로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번째 참여는 본 연구에서 지난 10여년간 생산한 사회정서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학교 내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방안을 찾는 발표로 2024년 10월 24일~25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의 '학교사회복지학회' 전문학회 세션에서 학생 생활 변화 관련 주제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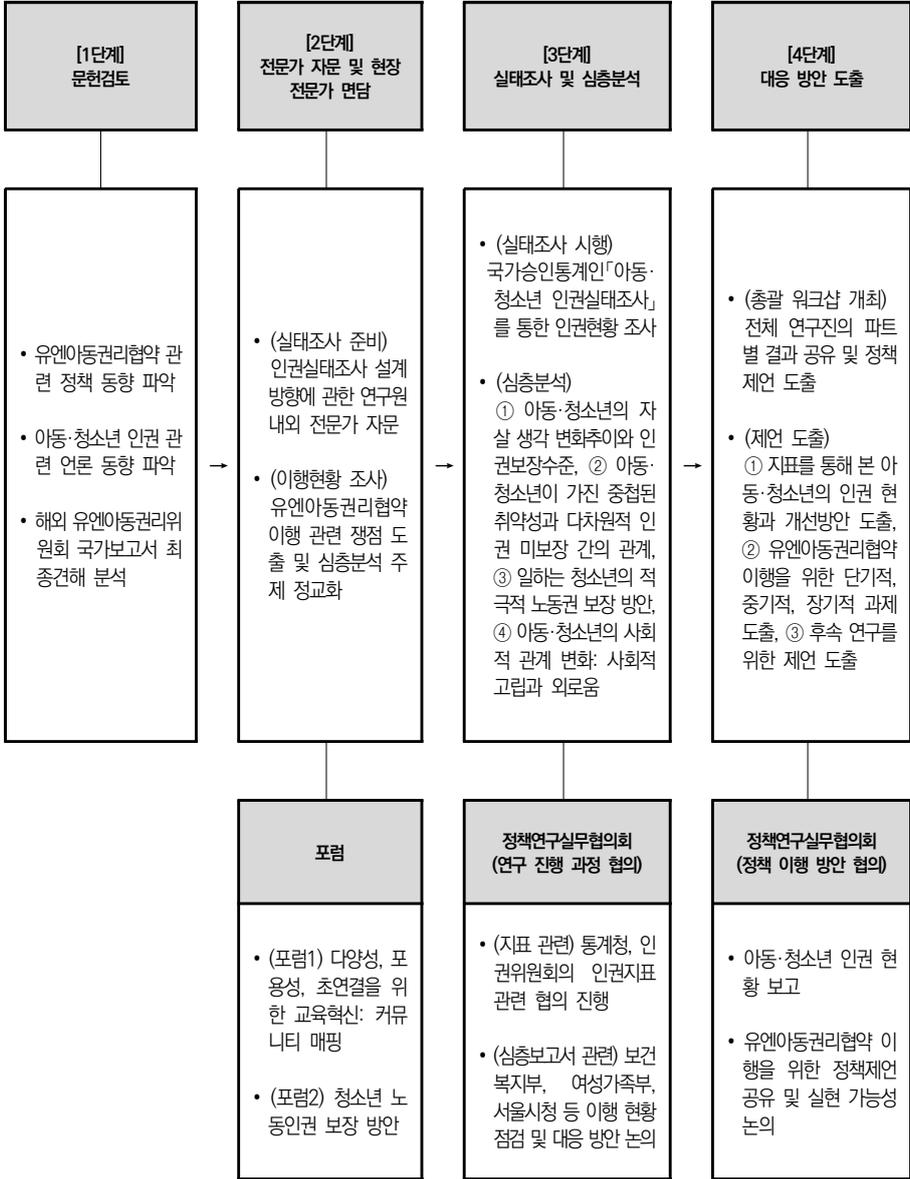


그림 1-3-4.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4.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두 권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지표 결과와 정책제언 등을 함께 묶은 총괄보고서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1호)」의 결과와 추이를 담은 기초분석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총괄보고서이며, 총괄보고서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장은 연구의 전반에 관해 설명하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2장은 문헌 검토를 하는 장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및 언론보도 동향 분석으로 국내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 동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해외 국가들과 한국의 인권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3장은 지표 수집 및 제시 방식을 설명하는 장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와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연구가 인권 지표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고, 이 중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설명하였다. 넷째, 4장은 지표 결과를 제시하는 장으로 이 연구에서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와 행정 데이터를 통해 취합한 결과를 종합하여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장이다.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일반논평(디지털, 기후 및 환경권 관련)의 구조로 지표 결과가 제시되었다. 다섯째, 5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파트로 숫자로 단순하게 보여주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진행한 장이다.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추이와 인권보장수준,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방안,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등의 주제가 각각 정리되었다. 마지막 6장은 이 연구의 종합적 제언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 7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제언 6개로 총 13개의 제언이 제시되었다.

○ —————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언론보도 동향 분석

- 1. 개요
-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현황과 국내 정책 동향
- 4. 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와 환경에 관한 일반논평 제26호
-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동향:
영국,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
- 6.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1. 개요⁸⁾

이 장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및 언론보도 동향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장은 이를 위하여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내용을 요약하며, 핀란드와 영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 국가보고서 검토 결과에 대해 비교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드 플랫폼의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 절의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언론보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이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도 살펴보았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CRC/C/GC/26)는 2023년 8월 22일 발표된 문서로 공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이다. 이 일반논평은 아동·청소년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가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⁹⁾ 이 장에서는 별도의 절을 통해 일반논평 제26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8)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9)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CRC/C/GC/26).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 상황에 초점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및 쟁점에 대해 분석해 왔으나,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이 증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발전된 국가들이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주요 인권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국가들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국제적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 동향¹⁰⁾

1) 분석의 목적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보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제정되었고(United Nations, 1989), 1991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2024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35년째 되는 해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지 33년째 되는 해이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언론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진은 언론 동향을 분석을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연구 분석으로 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언론보도를 취합하여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분석 활용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 수집 방법

이 절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활용하여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보았다. 빅카인즈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ments-and-recommendations/crccgc26-general-comment-no-26-2023-childrens-rights 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10)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의 언론보도를 모아 놓은 기사 데이터베이스(database)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검색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본 분석이 진행된 2024년에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104개 매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199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였고, 신규 매체로 인한 기사 증가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종합일간지 중 1990년부터 2024년까지 기사를 제공한 전국일간지를 선정하였다.¹¹⁾ 그 전국일간지는 경향신문(1946년 창간), 국민일보(1988년 창간), 동아일보(1920년 창간), 서울신문(1904년 창간), 세계일보(1989년 창간), 조선일보(1920년 창간), 한겨레(1988년 창간), 한국일보(1954년 창간) 8개였다.

(2) 자료검색을 위한 검색어

본 분석은 분석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자료를 취합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을 위한 검색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이다. 검색식에서 쉼표(.)는 “입력한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뉴스를 검색”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인권,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기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설정하였다.

표 II-2-1. 빅카인즈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 검색을 위한 검색식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기사 검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의 뉴스검색 메뉴에서 첫 번째 절차로 검색식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으로 입력하고, 기간을 전체로 설정하여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맞춘 후, 언론사를 전국일간지 중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8개 언론사로

11) 2024년 기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본 분석의 자료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9일까지로 현황화 하였다.

한정하여 검색하였다. 두 번째 절차로,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세 번째 절차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분석, 연관어 분석 등을 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기하여 보고하였다.

기사 검색 후 본 연구는 시기별 특성을 보고하기 위하여 1990년대(1990.1.1. ~ 1999.12.31.), 2000년대(2000.1.1. ~ 2000.12.31.), 2010년대(2010.1.1. ~ 2019.12.31.), 2020년대(2020.1.1. ~ 2024.10.19.)로 분석 결과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 결과

(1) 분석자료의 특성

자료수집 결과 199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9일까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뉴스 검색 결과는 38,058건이었다. 1990년 102건에서부터 2023년 3,117건까지 다양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9일까지는 1,934건이었다.¹²⁾

본 연구 기사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사는 중앙일보의 1990년 1월 1일 이연홍 기자의 기사로 “세계 속의 우리 21세기를 연다/신년특집Ⅱ”라는 표제로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권리가 낮다고 인식한다는 기사였다.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의 2024년 10월 19일 기사로 “춘천서 퀴어축제... ‘축제 중단’ 맞불 집회 동시 열려”라는 표제로 성소수자 축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소개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행사는 성소수자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건강권 실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라는 부분에서 본 분석과 관련이 있었다. 1990년대의 기사들이 직접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를 언급하기보다는 기사 내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하여 검색된 사례가 많았다면, 현재로 가까워질수록 아동·청소년 권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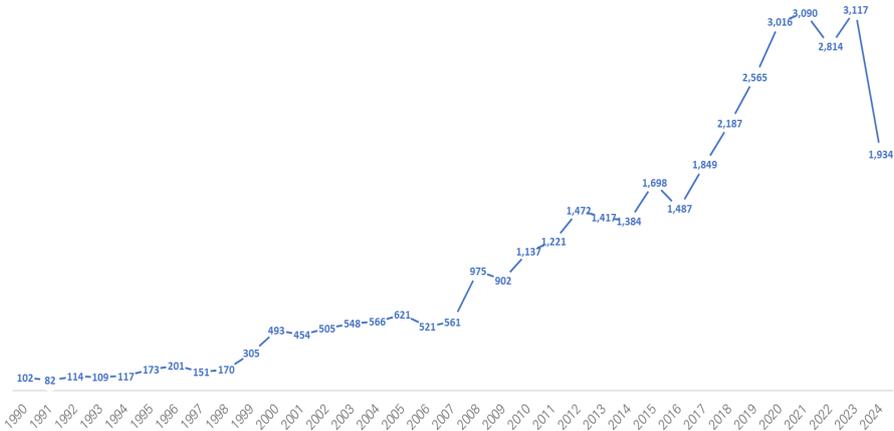
검색된 기사들을 언론사별로 보면, 경향신문(6,055건), 국민일보(4,346건), 동아일보(2,895건), 서울신문(4,345건), 세계일보(4,884건), 조선일보(1,210건), 중앙일보(4,134건), 한겨레(6,569건), 한국일보(3,620건) 등으로 언론사마다 차이가 발생하였다. 언론사의 주제분류로 보면, 정치(5,775건), 경제(1,210건), 사회(21,548건), 문화(7,826건), 국

12) 동일한 기간, 모든 언론사(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방송사, 전문지, 스포츠신문, 인터넷신문)로 검색 범위를 넓힐 경우 165,041건이었다. 1990년 239건에서 2024년 11,045건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그 기간 동안 신규 언론사의 생성과 소멸이 반영된 것일 수 있어 본 분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제(6,793건), 지역(4,889건), 스포츠(298건), IT_과학(1,946건) 등으로 사회면에서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보도 추이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보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보도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0년대는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보도가 1990년 102건, 1998년 170건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30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까지 902건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 1,137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187건으로 2,000건을 넘겼다. 2020년에는 3,016건으로 3,000건을 처음 넘겼고 2022년 2,814건으로 약간 주춤했으나 2023년 다시 3,1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2024년 10월 19일 현재까지 1,934건이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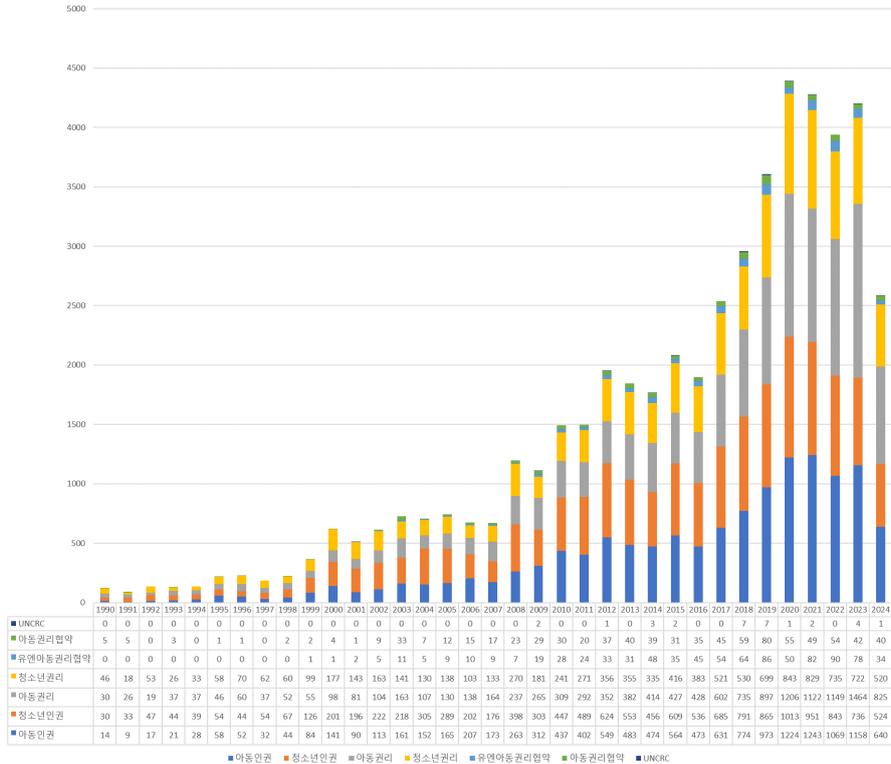


* 비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통해 8개 전국일간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검색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이었음.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그림 II-2-1.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전국일간지 기사 발간 추이(전체, 1990~2024.10)

전체적인 추이에서 개별적인 검색어들의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전체적인 추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관련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아동 인권·권리, 청소년 인권·권리를 주제로 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비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통해 8개 전국일간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검색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이었음.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그림 II-2-2.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전국일간지 기사 발간 추이(키워드별, 1990~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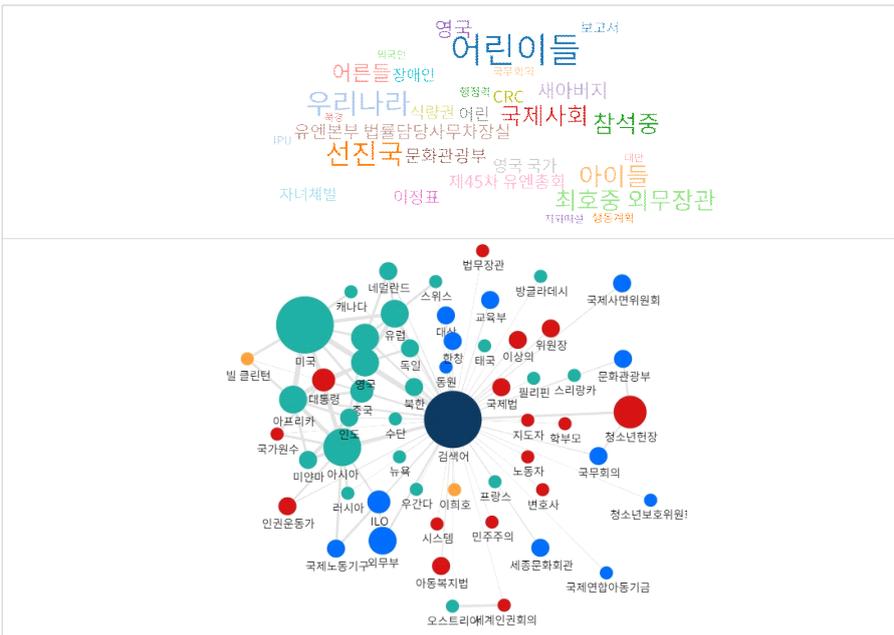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을 보면,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공론의 장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부터는 시기별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관계도 분석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들 안에 단어들의 관계도를 살펴보았다. 빅카인즈 매뉴얼에 따르면, 이는 검색한 기사 중 상위 100건의 기사에서 추출된 개제명(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 간의 관계를 관계도(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① 1990년대(1990년~1999년)

한국은 1991년에야 국제연합(UN)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1990년대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소식이 다루어졌다. 국내적으로는 1990년에 발표된 청소년현장과 관련한 기사들이 나타났으나 국내 인권변화 움직임 관련 기사는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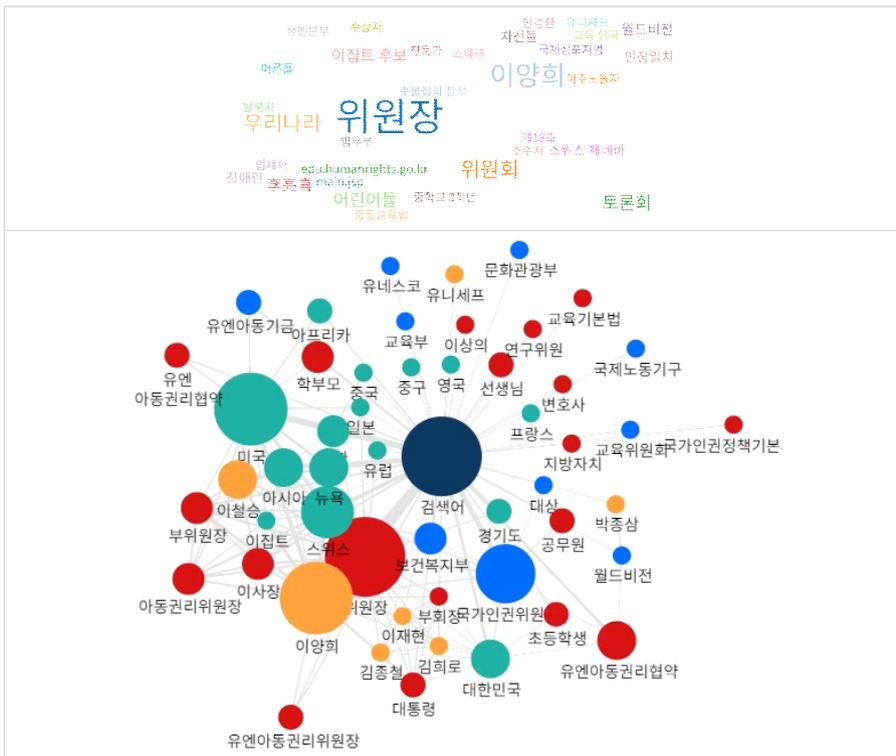
* 비고: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통해 8개 전국일간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검색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F,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이었음.
 2) 이 분석에서 개제어를 나타내는 동그라미는 각 색깔에 의미가 있음. 노란색은 관련 '인물', 초록색은 관련 '장소', 파란색은 관련 '기관', 빨간색은 관련 '키워드'를 의미함.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일출.

그림 II-2-3. 1990년대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1990~1999)

② 2000년대(2000년~2009년)

2000년대는 국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약이행과 관련한 움직임이 나타나던 시기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및 비준 10년이 넘어가면서 협약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되어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가 20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적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소수자, 장애인, 탈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함께 나타났다.



* 비고: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통해 8개 전국일간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검색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이었음.
 2) 이 분석에서 개체어를 나타내는 동그라미는 각 색깔에 의미가 있음. 노란색은 관련 '인물', 초록색은 관련 '장소', 파란색은 관련 '기관', 빨간색은 관련 '키워드'를 의미함.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그림 II-2-4. 2000년대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2000~2009)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월드비전 등 민간기구들도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변호사, 공무원, 연구자 등도 키워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둘러싼 기관과 인물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③ 2010년대(2010년~2019년)

2010년대는 국내에서 조례제정 등 지역별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졌던 기간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제6조에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크게 이루어졌다¹³⁾.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_학생인권_조례/\(4085,20101005\)에서](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_학생인권_조례/(4085,20101005)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정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성북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3년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법률적으로는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소년법」 등에 대한 개정사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인권법」, 혹은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 기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민간기구도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주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_학생인권_조례/\(4085,20101005\)에서](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_학생인권_조례/(4085,20101005)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이 연일 기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고, 법무부의 직접적인 움직임도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교사 인권과 교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확대된 아동·청소년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7월 폐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의 아동청과 아동기본법 논의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졌으나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복지부 산하기구로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입양, 아동학대, 자립지원, 실종아동지원 등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책무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로운 기관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법정정책적인 연관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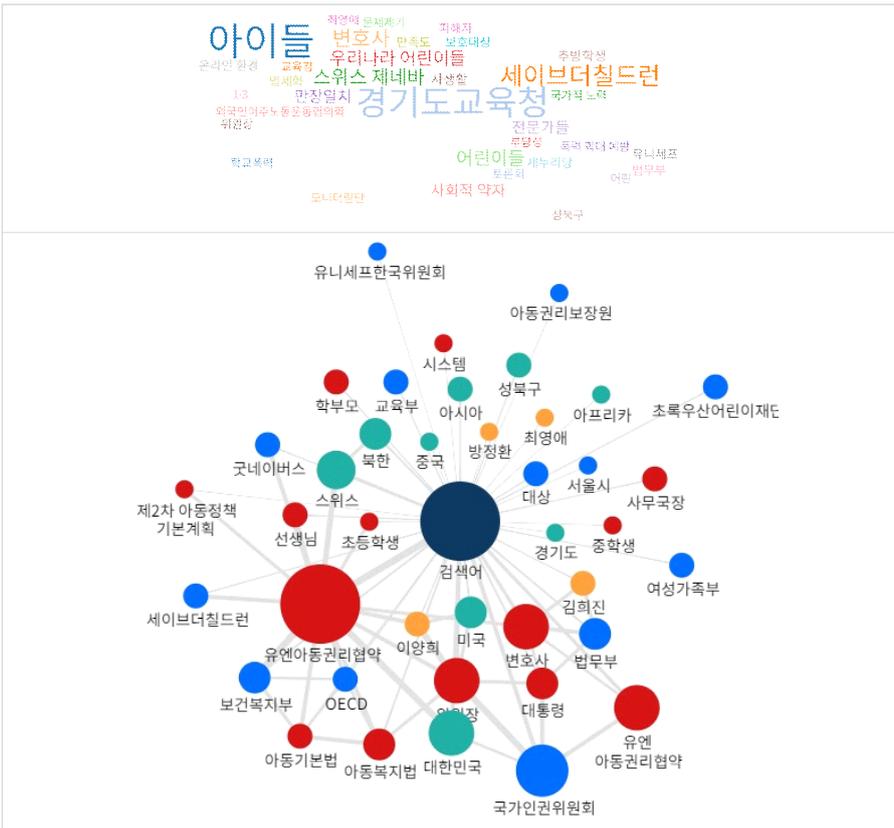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정부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서울시,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있었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와 같은 민간기관들도 확장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활동이 확대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희진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 허정도 배우 등도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었다. 특히 십대여성인권센터는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았고, 허정도 배우는 아역배우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고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과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들도 함께 이슈화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전체 분석 기간(1990년~2024년)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부터 2024년 10월 19일까지의 기사들을 종합해서 관계도와 연관어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관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가 등장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교육청, 아동인권옹호 민간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도 등장하였다. 주제는 학교 폭력, 아동 학대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보호대상아동 권리보장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관계도를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전체적으로는 중심적인 위치에서 여러 주체들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활동도 연관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 영향력은 달랐던 한계가 있었다. 아동권리옹호 주체로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도 함께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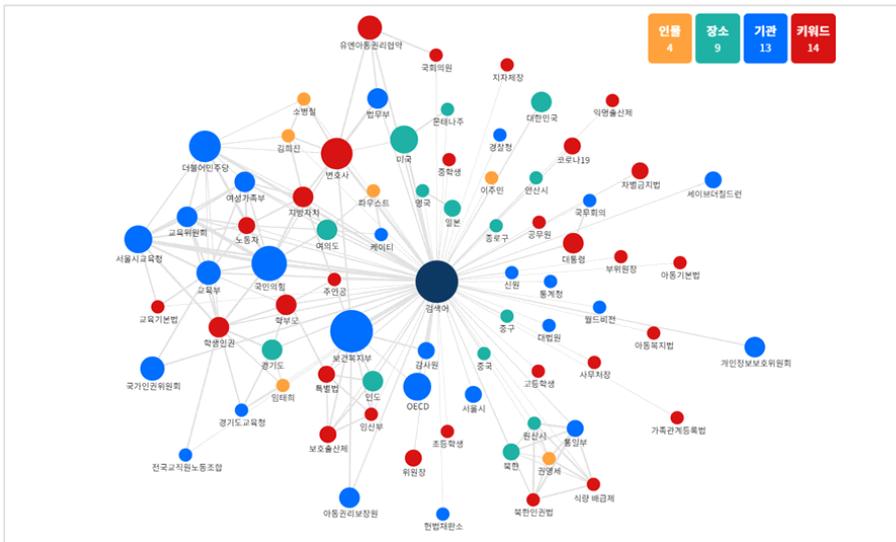
* 비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통해 8개 전국일간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검색어는 유엔아동 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이었음.
2) 이 분석에서 개체어를 나타내는 동그라미는 각 색깔에 의미가 있음. 노란색은 관련 '인물', 초록색은 관련 '장소', 파란색은 관련 '기관', 빨간색은 관련 '키워드'를 의미함.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그림 11-2-7.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아동·청 권리와 관련된 관계도, 연관어 분석(1990~2024.10)

4) 언론 동향 소결

종합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언론 동향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와 주제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과거보다 더 중심적인 의미로 아동·청소년 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의 법률과 중앙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의 움직임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정부부처가 소관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비정부기구(민간NGO)가 점차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 정부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하였고, 점차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 비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인즈(www.bigkinds.or.kr) 플랫폼을 통해 8개 전국일간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검색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이었음.
2) 이 분석에서 개체어를 나타내는 동그라미는 각 색깔에 의미가 있음. 노란색은 관련 '인물', 초록색은 관련 '장소', 파란색은 관련 '기관', 빨간색은 관련 '키워드'를 의미함.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그림 II-2-8.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관계도(2023년, 3,117건)

아동·청소년 권리가 발전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뒤따르고 있다. 2023년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 관계도를 보면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청, 교사, 정당, 학부모 등과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논쟁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권리가 강조되면서 학생 인권은 보장되지만 교사는 폭력에 노출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논의가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현황과 국내 정책 동향¹⁴⁾

1)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관련 현황

(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보고 절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을 발표하기 위한 조차와 자국 내 아동의 권리가 진전되는 것과 관련된 정기적인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최초의 국가보고서를 보고해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당사국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의견서의 형태로 당사국에 우려되는 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위원회에 심사 대기 중인 보고서가 60건 이상 쌓여 있어 보고 전 문제 목록 발행은 2025년까지 중단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모든 정기 보고서와 선택 의정서에 따른 최초 보고서에 대해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최대 30개의 질문이 포함된 보고 전 문제 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이라는 특정 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다. 전통적인 보고 절차와 달리 LOIPR에 따라 당사국은 더이상 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와 문제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을 모두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고 단계가 하나로 축소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보고 절차에서는 1단계 (당사국) 국가보고서 준비 및 제출 → 2단계 (위원회) 당사국에 대한 질의 목록 제출 → 3단계 (당사국) 질의 목록에 대한 답변서 제출

14) 이 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원(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4단계 심의 동안 당사국과 위원회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보고서 및 답변 심의 → 5단계 (위원회)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발표 → 6단계 (당사국)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실시로 이루어지는 반면,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서는 1단계 (위원회) 당사국에 대한 LOIPR 송부 → 2단계 (당사국) LOIPR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국가보고서 작성 → 3단계 심의 동안 당사국과 위원회 간 대면 회의를 통해 보고서 및 답변 심의 → 4단계 (위원회)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발표 → 5단계 (당사국)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실시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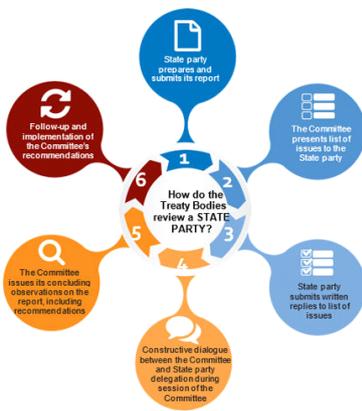


그림 II-3-1. 전통적인 보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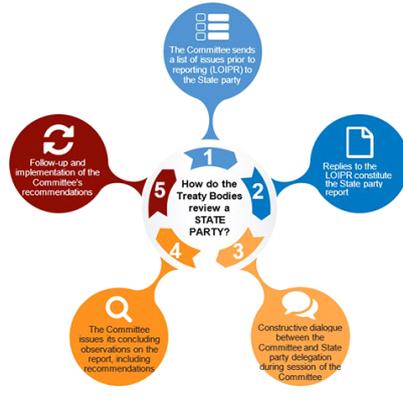


그림 II-3-2. 간소화된 보고 절차

* 출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reporting-guidelines>에서 2024년 8월 31일 인출.

(2) 2024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국가별 주요 논의사항

우리나라도 2024년 12월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보고 절차가 간소화 절차로 변경되면서 국가보고서 제출 과정 및 일정이 변경되었다. 향후 국가보고서 제출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때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15) 이 부분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에 게시된 Reporting guidelines를 발췌 및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추후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보고서 심의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① 제95차 회기 국가별 주요 논의사항¹⁶⁾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제95차 회기를 개최하여 콩고, 불가리아, 세네갈, 러시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검토하였다. 이들 중 세네갈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OPSC)와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OPAC)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검토하였다. 제95차 회기에서 국가별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면, 콩고에 대해 위원회는 아동 의회 설립,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을 비준한 것에 환영하였으나, 많은 아동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으며,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점, 특히, 금광, 채석장, 쓰레기 및 매립지 분류장과 같은 위험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불가리아에 대해 위원회는 유아 사망률 감소, 탈시설화 정책 및 아동 빈곤 해결 조치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높은 학교 중퇴율과 결석률, 낮은 교육의 질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 수준, 성과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불가리아가 모든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성과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학업 중단에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세네갈에 대해 위원회는 포괄적 교육 및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계획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여전히 여성 할례의 대상이 되는 소녀의 수가 많다는 점과 법적인 혼인 연령의 18세 상향 및 아동 결혼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 10대 임신의 높은 수와 임신 중절의 금지 및 범죄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세네갈이 여성 성기 절제를 폐지하고,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농촌 지역 아동을

16) 제95차 회기에 대한 내용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에 2024년 2월 8일에 게시된 보도자료(UN Child Rights Committee publishes findings on Bulgaria, Congo, Lithuania, Russian Federation, Senegal and South Africa)를 발췌 및 정리하여 작성함(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2. 8.). UN Child Rights Committee publishes findings on Bulgaria, Congo, Lithuania, Russian Federation, Senegal and South Africa.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02/un-child-rights-committee-publishes-findings-bulgaria-congo-lithuania>.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피임약을 포함한 성과 관련된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상황에서 임신 중절의 범죄화를 해제하고, 특히 근친상간이나 강간 피해자에게는 안전한 임신 중지와 후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박해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견해를 드러냄에 따라 아동이 체포되거나 형사 또는 행정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여당의 교육과정 간섭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새로운 교사 교육 매뉴얼 등에 대해 경고하면서 학교의 정치화와 군사화를 종식시킬 것을 권고함과 더불어, 당사국에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의제를 반영하고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아동 권리 보호 기본법」 개정안에서 차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에 환영하였으나 여전히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폭력에 대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에 폭력이 아동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리투아니아가 모든 상황에서 임신 중절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청소년이 안전한 임신 중지와 이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실무에 보장하고, 이때 청소년의 의견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항상 반영되고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위원회는 형사 책임에 대한 나이를 12세로 상향하고, 아동보호 등록부를 운영하며, 법원과 경찰서에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설치한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 폭력, 백색종 아동에 대한 공격, 온라인상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적 착취와 학대를 탐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신생아, 영유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과 기아 아동, 높은 영양실조 비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신생아와 어린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조기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에 사회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 기아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실조, 발육 부진 및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② 제96차 회기 국가별 주요 논의사항¹⁷⁾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5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96차 회기를 개최하여 나미비아와 과테말라, 조지아, 말리, 파나마(OPSC만 검토), 이집트, 부탄, 에스토니아, 파라과이의 아동 권리 협약 준수 노력에 대한 보고서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OPSC)를 이행하기 위한 파나마의 이행 사항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제96차 회기에서 위원회가 총 9개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나미비아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보호법」과 「교육법」을 채택한 것을 칭찬하면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그에 대한 사건 조사와 가해자 기소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개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빈곤한 환경에 있는 많은 수의 아동과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적 격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차원적 아동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위생 시설 및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실현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과테말라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9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지원 모델’, ‘2020년 청소년 형사 사법을 위한 포괄적 지원 모델’ 및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포함한 과테말라의 계획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갱단의 폭력 문제와 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위원회는 과테말라가 마약 밀매업자를 포함한 비국가 무장 단체가 아동을 모집하지 않도록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동이 갱단을 떠나 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국제 입양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과테말라에 불법

17) 제96차 회기에 대한 내용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에 2024년 5월 30일에 게시된 보도자료(UN Child Rights Committee publishes findings on Bhutan, Egypt, Estonia, Georgia, Guatemala, Mali, Namibia, Paraguay and Panama)를 발췌 및 정리하여 작성함(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5. 30.). UN Child Rights Committee publishes findings on Bhutan, Egypt, Estonia, Georgia, Guatemala, Mali, Namibia, Paraguay and Panama.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05/un-child-rights-committee-publishes-findings-bhutan-egypt-estonia-georgia>.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과 보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국제 입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당사국이 입양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하고 불법 입양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죄자를 적절히 조사, 기소 및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지아에 대해 위원회는 「아동 권리에 관한 법」과 아동 권리 부문을 포함하는 '2022~2030년 국가 인권 전략'의 채택을 환영한 반면, 조지아 의회에서 아동 인권 단체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에 관한 법」의 채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당사국에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4년 3월 「가족 가치와 아동보호에 관한 헌법」 법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이거나 LGB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가족에 속한 아동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따른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중요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말리에 대하여 위원회는 '아동 결혼 종식을 위한 다부문 국가 전략(2022~2026)'을 채택한 것을 주목하면서도 당사국에서 만연한 이 해로운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남녀의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로 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당사국에 여성 성기 절제 및 백색증 아동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다른 해로운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분쟁 지역에서 무장 단체가 아동을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국에게 「아동 보호법」을 개정하여 무장 세력이나 비국가 무장 단체가 적대 행위에 아동을 모집하고 관여하는 것에 대해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 분쟁에서 아동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파나마의 경우, 위원회는 파나마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많은 법률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였으나 현재 형법이 선택의정서(OPSC)에서 다루는 모든 범죄, 특히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 유인(그루밍)과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제작, 소지 및 배포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파나마가 아동 그루밍, 아동 성적 학대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및 아동 성적 학대 자료 배포와 관련된 범죄를 불법화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여행 및 관광에서 성적 착취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있는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불충분한 조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파나마에 관광 산업에서

착취에 특히 취약한 빈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제한 아동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전략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집트에 대해 위원회는 아동 방치 및 위협에 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법」 개정안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여성 성기 절제 및 아동 결혼의 해로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여성 성기 절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아동 혼인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재판 전 심문 중에 고문과 학대를 당하는 아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사국에 아동에 대한 고문 또는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아동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책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탄에 대해 위원회는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대부분의 아동에게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의 만연함과 그러한 사례의 보고를 억제하는 은폐와 낙인의 문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폭력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모든 아동에 대해 민감하고 포괄적인 개입과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중퇴율과 반복률, 수도원 또는 기숙 학교에 사는 많은 아동, 학교에서 폭력과 괴롭힘이 만연한 것에 대해 당사국에 초등 교육이 의무화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채택하고, 학교 중퇴와 반복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수도원 또는 기숙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건강과 심리사회적 및 기타 필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고, 학교에서 괴롭힘과 기타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에스토니아에 대해 위원회는 '2021년 정신건강 전략' 채택을 환영했지만, 아동의 자살률 증가와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전문가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사국에게 교육자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학교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모든 아동에게 심리·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정신건강 센터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는 아동이 보호시설로 보내질 수 있으며, 감옥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에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적시 평가 및 의뢰를 보장하고 이러한 아동이 폐쇄된 아동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방형

기관 및 재활 네트워크를 더욱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에 대해 위원회는 아동 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청소년의 높은 사망률, 실종된 아동, 특히 인신매매되거나 Criadazgo¹⁸⁾와 같이 다른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여아가 많은 것, 2013~2020년 동안 자유가 박탈된 시설에서 사망한 아동이 많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개발할 것과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며, 경찰과 검찰이 실종된 아동 사례를 추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당사국에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책임자가 적절하게 조사 및 기소되도록 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원주민과 농촌 아동들의 강제 퇴거와 이주 증가, 지속되는 식량 불안, 빈곤, 폭력과 착취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에 원주민의 퇴거와 이주를 방지하고, 원주민 아동과 청소년이 조상의 땅, 오염되지 않은 땅과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주민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증진하고 식량 불안, 빈곤, 폭력과 착취에 대한 취약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을 권고하였다.

최근에 아동권리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97차 회기¹⁹⁾를 개최하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투르크메니스탄이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와 바레인이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OPSC)와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OPAC)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18) Criadazgo는 파라과이에 있는 관행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가정(친척 또는 낯선 가정)에서 식사와 교육을 약속하는 대신 아동이 노동을 제공하는 것임.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무료 노동을 하게 됨(PLAN International 웹사이트 <https://plan-international.org/paraguay-en/case-studies/normalisation-criadazgo-paraguay/>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19) 제97차 회기와 관련된 내용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에 2024년 8월 26일에 게시된 기사(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ens Ninety-Seventh Session and Sign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African Committee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를 발췌 및 정리하여 작성함(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8. 2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ens Ninety-Seventh Session and Sign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African Committee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news/2024/08/committee-rights-child-opens-ninety-seventh-session-and-signs-memorandum-understanding>.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3) 일반논평 제27호 작성을 위한 절차²⁰⁾

2024년 1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95차 회의에서 아동의 사법 접근권과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일반논평 제27호 초안(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이 사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원활하게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여 아동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에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아동의 사법 접근법과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며, 아동이 사법과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절차적 권리에 대해 아동 친화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 친화적인 사법 체계를 조정하고, 아동의 사법 및 구제책에 접근할 때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을 당사국에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의를 추구하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대한 개별적인 의견은 2024년 8월 23일까지 수렴하였으며,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국가, 국제적 협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2)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동향

아동·청소년의 국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아동·청소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탐색하였다. 여기서

20) 일반논평 제27호 초안과 관련된 내용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에 2024년 2월 1일에 게시된 문서(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를 발췌 및 정리하여 작성함(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2. 1.). 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7-childrens-rights-access>.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 및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둘째,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셋째, 즉시 출생 등록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 임신부가 안전하게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 제도’, 넷째,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늘봄학교

교육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였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서 향후에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로만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02. 05.).

2024년 2월,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라는 비전하에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과제로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에는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에는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 늘봄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다양화, ▲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02. 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24년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 안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에 있어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4년 초1학년 → ’25년 초1~2학년 → ’26년 초1~6학년)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의 성장 및 발달 단계와 더불어, 학부모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25년에는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2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수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인데, 2024년 1학기에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므로 기간제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추가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2학기에는 늘봄 실무직원(공무원, 공무원,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을 학교에 배치하여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02. 05.).

교육부 보도자료(2024. 04. 03.)에 의하면,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도입한 후,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초등학교(약 2,963개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도 2024년 4월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가정 내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더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채용으로 인한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인력이나 공간, 프로그램의 질 등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내 대학이나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유도함으로써 돌봄에 대해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04. 03.).

그러나 늘봄학교가 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 공간 및 외부 강사 등의 인력 부족과 더불어, 보육의 범위가 학교를 기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교사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정규수업의 질 저하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2024. 03. 06.). 또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데,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

서 보내게 되는 초등학생들은 그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늘봄학교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늘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 내 공간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고자 2022년 12월 28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나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는 체계로는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기발굴 및 예방을 중심으로 한 학생 맞춤형 지원의 플랫폼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01. 12.).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고 전문인력 간에 협력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러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학생 지원 사업 등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05. 02.).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영역으로는 복지 지원 및 경제적 지원, 학업·진로 지원, 심리·정서 지원, 다문화·특수교육, 안전 지원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지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 가정방문과 지역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학업 및 진로 지원은 기초학력을 지원하며,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리·정서 지원은 위(Wee) 프로그

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과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하는데, 특히, 다문화·특수교육의 경우, 다문화가족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지원은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이행하고자 교육부에서는 2023년 1월에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정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05. 02.). 이러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다양하고 중첩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빠르게 발굴함과 더불어, 교사와 학교, 지역사회 등의 자원들을 연계·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는 제5·6차 최종견해에서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된 영유아를 조사하던 중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에 대한 법제화에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더욱 커졌다. 기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적시에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나 사회가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정보를 시·읍·면의 장에게 전달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동이 출생 즉시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국가가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7월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되었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에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8. 20.).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해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출산 후 자동으로 출생사실 및 출생정보가 통보되는 것을 피하고자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아동을 출산한 후 유기하는 것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2023년 10월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위기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동시에 시행

되었는데, 두 제도가 시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 임신부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8. 20.), 368개 의료기관에서 1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여,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8. 20.)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라정서 지지나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에는 위기임산부의 요구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의 연계도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는데, 그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교육, 보건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정성희, 2023). 그러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더라도 병원 밖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2024. 1. 3.). 또한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 제도에서도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임신·출산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김자연, 2023), 각 제도에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과 전담 인력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또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뿐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증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가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코로나19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고립·은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현재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학령기를 보내게 되면서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24. 3. 6).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03. 06.).

여성가족부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살펴보면(여성가족부, 2024. 3. 6),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라는 비전에 따라 “발굴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정책기반 구축의 4가지 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해당 사업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고립·은둔 청소년과 보호자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우선 파악하고 찾아가는 발굴·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및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다. 특히, 재은둔과 재고립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자립·취업 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유관자원을 연계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03. 06.).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단위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해당 실태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 중 고립 또는 은둔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및 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사전조사를 통해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판별과 질병 및 건강상태, 장래희망과 욕구 등을 파악하였으며, 본조사를 통해서는 청소년의 고립·은둔 시기 및 계기, 고립·은둔 양상과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06. 11.).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과 현황이 파악된다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와 환경에 관한 일반논평 제26호 21) 22)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23년 8월 22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또는 “CRC”) 관련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이하 “일반논평” 또는 “GC”) 제26호를 채택하였다. 해당 일반논평 제26호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가 환경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 환경 이슈에 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적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일반논평은 그간 인권의 영역으로 포섭되지 아니하였던 환경권을 아동권리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일반논평 제26호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일반논평 제26호가 아동권리협약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아동권리 법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일반논평 제26호 채택 배경

(1) 인권조약에서의 환경권 논의

「대한민국 헌법」이 1980년 제8차 개정을 통해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문화한 것과 달리,²³⁾ UN 인권규범체제에서는 환경을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1945년 UN이 설립 및 운영되었으며 세계대전 당시 만연하였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성으로 UN의

21) 이 절은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2) 아동권리위원회(2023).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관한 일반논평 제 26호(CRC/C/GC/26: General comment No. 26 (2023. 08.22)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UN SYMBOL 표기는 CRC/C/GC/26 이다. 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자세한 내용은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홈페이지(<https://www.ohchr.org/>)의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fr/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crcgc26-general-comment-no-26-2023-childrens-rights>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23) 「대한민국헌법」(헌법 제9호, 1980. 10. 27. 개정 및 시행) 제33조;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개정 및 988. 2. 25. 시행) 제35조 참조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인권 보호가 선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필두로 1966년 12월 16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자유권규약” 또는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사회권규약” 또는 “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 인권규범들이 채택 및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환경 파괴 및 그로 인한 위험성과 영향 등에 대한 공감의 수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다 보니 주요 인권조약들에서는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²⁴⁾

국제사회에서 환경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즈음으로 볼 수 있겠다. 1972년 12월 5일 스톡홀름에서 UN 환경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당시 결과물로서 인간 환경에 관한 UN 컨퍼런스 선언(Declaration o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소위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해당 선언은 천연자원의 보호, 해양오염방지,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이전 촉진 등 환경보호를 위한 26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자연적인 환경 및 인공적인 환경 모두 인간의 행복과 생명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향유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인권적 시각에서 환경에 대한 접근은 점차 확장되었다.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²⁵⁾은 인권규범 최초로 환경권을 명문화하였고²⁶⁾ 이후 1988년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²⁷⁾ 역시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²⁸⁾ 한편, 개별국 차원에서도 환경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였는데 1976년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헌법적 권리로 환경권을 규율한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24) 다만 사회권규약의 경우 환경과 관련되는 이슈들을 다루는 규정들이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사회권규약 제12조는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위해 “환경적 및 산업적 위생” 개선의무를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환경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혹은 특정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을 뿐 인권적 측면에서 환경권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25)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Banjul Charter”), CAB/LEG/67/3 rev. 5, 21 I.L.M. 58 (1982), 27 June 1981.

26) Art. 24 of the African Charter.

27)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A-52, 16 November 1999.

28) Art. 11 of the Protocol of San Salvador.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하였으며²⁹⁾ 더 나아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법령 차원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³⁰⁾

지역 인권기구 및 개별국 차원에서 환경을 인권 내지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UN에서는 환경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UN 환경 컨퍼런스 관련 1992년 리오 선언(Rio Declaration)³¹⁾이나 2002년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³²⁾ 등에서는 더 이상 환경과 인권을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1994년 환경과 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적 차원에서 환경에 접근하는 선언과 관련 원칙을 담은 보고서³³⁾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³⁴⁾는 해당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후 UN에서의 인권 차원에서의 환경권 논의는 한동안 정체되었다.³⁵⁾

UN 인권위원회가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재편되고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 창립된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환경 폐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으로 하면서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로 하여금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조약기구 등에게도 이러한 이슈를 조사할 것을 독려했다.³⁶⁾ 인권최고대표는 기후변화가 생명권 및 건강권 등 인권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³⁷⁾를 발표한 이후 인권이사회는 환경과 인권과

2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N Doc. A/73/188, para. 30 (2018).

30) *See id.* at para. 32.

31) UN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A/CONF.151/26 (Vol. I), UN General Assembly, 12 August 1992.

32)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ust-4 September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and corrigendum), chap. I, resolution 1, annex.

33)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nal Report of Mrs. Fatma Zohra Ksentini, Special Rapporteur : Review of Further Development in Fields with Which the Sub-Commission has been Concerned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E/CN.4/Sub.2/1994/9 (July 6, 1994).

34)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에 해당함.

35)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John H. Knox, A/HRC/22/43 para. 16 (24 December 2012).

36)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7/23 -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2008).

3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의 관련성 및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³⁸⁾ 한편,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를 통하여 인권과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는데 여러 분야 특별보고관들(special rapporteurs)의 활동 및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분야별 환경적 이슈를 인권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에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를 임명하여 전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권과 환경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환경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및 아동권리 등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2018년 최종 보고서에서는 인권이사회로 하여금 국제규범 차원에서 환경권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총회로 하여금 관련 결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³⁹⁾ 해당 보고서는 인권으로서 환경권을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를 재가열시켰고 이후 다양한 논의 끝에 2021년 10월 8일 인권이사회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하나의 인권으로서 인정”⁴⁰⁾한다는 기념비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UN 총회 역시 2022년 1월 28일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환경권은 여타의 권리 및 현행 국제법과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⁴¹⁾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 아동권리협약과 환경권

환경권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권조약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편적 인권규범(universal human rights law)에서는 명문으로 환경권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1989년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인권조약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성안되다 보니 환경에 대한 인권적 논의가 문서에 보다 폭넓게 반영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이 환경권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종래 UN 체제의 인권규범 보다 상당히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HRC/10/61, 15 January 2009.

38) See e.g.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0/4,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2009);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11,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HRC/RES/16/11 (12 April 2011).

3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HRC/37/59 (24 Jan. 2018).

40)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Res. 48/13, para. 1, UN Doc A/HRC/RES/48/13 (Oct. 8, 2021).

41) UN GA Res. 76/300 :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RES/76/300 (July 28, 2022).

진일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UN 인권규범체제에서는 환경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권규약 범주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권적 논의가 다소 존재하기는 한다. 사회권규약은 제12조에서 건강권을 천명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모든 부분에서의 환경 및 산업적 위생을 개선”⁴²⁾할 의무를 계약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동조의 문구가 환경을 ‘위생(hygiene)’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소위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모든 부분에서의 환경 및 산업 위생의 개선”⁴³⁾에는 “안전하고 이동가능한 물의 적정한 공급과 기본적인 정화(sanitation)를 담보하는 것”⁴⁴⁾은 물론, “방사선과 유해한 화학물질에 인류가 노출되는 것 또는 인간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들을 예방 또는 저감하는 것”⁴⁵⁾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비록 사회권협약이 물에 관한 권리(right to water)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적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정하고 있는 제11조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12조에 기반하여 물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⁴⁶⁾ 물권 보호를 위해서 각국으로 하여금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차별없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실시하고 있다.⁴⁷⁾

사회권규약이 건강권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환경적 위생’을 토대로 사회권위원회가 해석을 통해 환경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아동권리협약은 조약의 문구에서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다 넓게 확대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역시 환경권 그 자체를 인권의 하나로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건강권 및 교육과 같은 여타 아동권리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면서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우선

42) Art. 12(2)(a) of the ICESCR.

43) *See id.*

44)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14: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s. 12 of the Covenant), E/C.12/2000/4,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para. 15, 11 August 2000.

45) *See id.*

46)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Covenant), E/C.12/2002/1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para. 2, 20 January 2003.

47) *See id.* at paras 22 and 48.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 제24조를 통해 환경 이슈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동조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로서 “적절한 영양식품과 깨끗한 식수의 공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결핍을 퇴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오염의 위험과 위해를 감안”⁴⁸⁾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의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⁴⁹⁾ 여기에 환경 정화에 대한 사항도 명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동조 관련 일반논평⁵⁰⁾을 통해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환경오염의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모든 영역에서 아동 건강에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위험 및 위해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시할 것은 물론, 단순히 환경오염 방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비롯한 폭넓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대응까지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⁵¹⁾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교육권 차원에서도 환경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에서 교육 기회의 균등 등을 포함하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29조를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의 지향성을 천명하고 있다. 동조는 아동의 교육이 아동의 개성,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등에 대한 존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⁵²⁾ 특히, 아동은 “자연환경을 존중”하면서 성장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⁵³⁾ 아동권리위원회는 비록 조문이 ‘자연보호의 존중’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통계적 이슈에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슈들이 연계”⁵⁴⁾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윤리적 관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8) Art. 24(2)(b) of the CRC.

49) Art. 24(2)(e) of the CRC.

50)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CRC/C/GC/15, 17 April 2013.

51) *See id.* at paras 49 and 50.

52) Art. 29(1)(a) and (b) of the CRC.

53) Art. 29(1)(e) of the CRC.

5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1 (2001), Article 29 (1), The aims of education, CRC/GC/2001/1, para. 13, 17 April 2001.

면서 이러한 관념으로서 “평화, 관용 및 자연환경의 보호”⁵⁵⁾를 꼽고 있는바, 역설하면 자연환경은 아동권리협약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 중 하나라고 하겠다.⁵⁶⁾

1) 일반논평 제26호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1) 일반논평 제26호 구성 체계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5개의 대분류 그리고 26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대분류에는 서문, 아동권리협약상 각 권리와 환경의 연계, 환경권, 일반적 이행조치 그리고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논평을 작성함에 있어 그 구성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각 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맞게 내용을 편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논평 구성체계에 있어서 몇몇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공통점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 종래의 유사한 틀에서 탈피한 특징을 보이는 점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일반논평의 주제와 관련되는 권리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II 부분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적인 권리를 각각에 있어서 해당 권리들의 보장에 있어 환경 이슈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들의 실현을 위해서 환경 이슈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더 나아가 III 부분에서 이와는 별개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문에서 전제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에 관한 국제법이 논의를 거듭하며 진화하였고 인권을 녹지화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권 그 자체를 개별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 있다. 종래 인권규범 차원에서 환경권을 논함에 있어 초기에는 소위 “인권의 녹지화 (greening human rights)”⁵⁷⁾ 방식이었다. 즉 환경권 자체를 인권의 하나로서 독자적으

55) See *id.*

56) 아동권리 측면에서 환경의 개념 및 범위는 생활환경, 주거, 및 공동체 공간을 포함하여 아동이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및 사람들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ort of the 2016 Day of General Discussion :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8 (23 September 2016).

5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N Doc. A/73/188, para. 12 (2018).

로 인정하기 보다는 종래 인권규범에서 보장된 여러 인권과 환경권을 연계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인권조약에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을 주창하는 것이다.⁵⁸⁾

표 II-4-1. 일반논평 제26호 구성 체계

대분류	소분류
I. 서문	A. 환경 보호에 대한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
	B. 인권과 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진화
	C. 세대 간 형평성 및 미래세대
	D. 목적
II. 환경과 관련된 아동권리협약상 개별적 권리	A. 차별금지
	B. 아동 최선의 이익
	C. 생명,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D. 의견청문권
	E.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F. 정보 접근
	G.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H.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관한 권리
	I.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J. 교육권
III.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K. 선주민 아동 및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
	L. 휴식, 놀이,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권리
IV. 일반적인 이행 조치	A.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B. 아동권리영향평가
	C.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부분
	D. 사법 및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접근
	E. 국제협력
V. 기후변화	A. 완화
	B. 적응
	C. 손실 및 피해
	D. 비즈니스와 기후변화
	E. 기후 자원

* 출처: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를 기반으로 저자 번역 및 편집

58) 이주영(2017). 발전권, 평과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10(2), 33-57.

그러던 중 최근 환경권은 UN 인권규범체계에서 이미 독자적인 인권의 하나로 선언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비록 아동권리협약이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동권리 차원에서 여타 권리와 연계적인 것을 넘어 개별적인 아동권리의 하나로 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권에 대한 해석 및 이행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기후변화'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논평 제26호 제목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해당 논평은 환경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하면서도 환경 이슈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 차원에서의 논의 및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권리 관련하여 환경 이슈를 전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더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 예컨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등의 조치를 마련 및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① 서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서문을 통해 해당 논평이 제시하는 개별적인 논의 및 권고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방향성 내지 기본이념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첫째, 전 세계적인 환경적 위기와 아동권리의 연계성 및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 비상사태, 다양성의 붕괴 그리고 만연한 오염의 지구적 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선행 논의들을 통해 확인되었는데,⁵⁹⁾ 이러한 환경 이슈는 아동권리와도 연계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아동에게는 보다 더 시급하고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범위를 폭넓게 보았는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 이슈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기후변화는 물론, 현재의 과제들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쟁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⁶⁰⁾

둘째, 환경에 관한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기반 접근’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 실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⁶¹⁾

59) See *id.* at para. 4.

60) See *id.* at para. 5.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향유하거나 주장함에 있어 아동들이 권리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⁶²⁾

셋째, 환경권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아동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인권이다. 아동권리협약이 제24조제2항 및 제29조 제1항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환경권’에 대한 인정으로까지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유례없는 환경적 위기와 그로 인한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과제”⁶³⁾들은 아동권리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인권 분야에 있어 환경권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들, UN 인권이사회 및 UN 총회에서의 환경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그리고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법상 환경권에 대한 보장 등⁶⁴⁾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환경권을 독자적인 인권으로서 인식하고⁶⁵⁾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실현에 있어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⁶⁾

마지막으로 일반논평 제26호를 작성 및 이해함에 있어 ‘세대 간 형평 및 미래세대 이익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환경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현시대의 아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아동들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협약국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환경 위협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들”⁶⁸⁾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환경과 관련되는 아동권리협약상 개별적 권리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6호의 목적을 “환경 파괴의 역효과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 환경 보호 연관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증진하며 … 협약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및 정책적 조치 등에 대한 유권적 지침을 제공”⁶⁹⁾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면서 환경 이슈가 아동권리협약상 개별적 권리와

61) See *id.* at para. 8.

62) See *id.* at para. 7.

63) See *id.* at para. 9.

64) See *id.* at para. 10.

65) See *id.* at para. 8.

66) See *id.* at para. 9.

67) See *id.* at para. 11.

68) See *id.*

각각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련하여 환경 이슈는 특히 “주민 아동,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 장애 아동, 재난 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등 특정 집단의 아동”⁷⁰⁾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은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 ... 가장 위험에 처한 아동 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특별한 조치”⁷¹⁾를 취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가 정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환경에 관한 결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결정은 통상 아동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인데,⁷²⁾ 여기에서의 아동의 이익은 현재의 아동을 넘어 미래 사회에서의 아동의 이익까지 포함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⁷³⁾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은 환경 관련 이행 조치들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관련 입법이나 정책 등이 제안될 때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진단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행감시 및 평가 등이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⁷⁴⁾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따른 **생명,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측면에서 환경 피해로 직·간접적으로 촉발되는 아동 생명에 대한 위험에 대해 각국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환경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⁷⁵⁾ 생명 및 발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 아동에게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여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는 물론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접근과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⁷⁶⁾ 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규율하고 있는 아동의 **의견청문권(right to be heard)**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환경 관련 결정과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정기적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⁷⁷⁾ 이는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하면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통해”⁷⁸⁾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환경권과 인권에 대한 교육, 연령에

69) See *id.* at para. 12.

70) See *id.* at para. 14.

71) See *id.* at para. 15.

72) See *id.* at para. 16.

73) See *id.* at para. 17.

74) See *id.* at para. 18.

75) See *id.* at paras. 20–21.

76) See *id.* at paras. 24–25.

77) See *id.* at para. 26.

78) See *id.* at para. 27.

적합하며 접근 가능한 정보, 적절한 시간과 자원, 도움이 되며 실현 가능한 여건⁷⁹⁾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제15조가 확립하고 있는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관련하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⁸⁰⁾ 환경 이슈 관련하여 아동의 표현의 자유 등은 종종 위협받거나 보복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 바, 국가는 해당 권리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및 정책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⁸¹⁾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제17조를 통해 보장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표현의 자유, 의견청문권 등 여타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요소인 바,⁸²⁾ 환경 이슈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후 및 환경 피해의 원인과 결과, 실제 및 잠재적 유발요인, 적응적 대응, 적절한 기후 및 환경 관련 법률, 규정, 기후 및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정책 및 계획,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선택지 등”⁸³⁾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국은 이러한 정보를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적합해야 하며, 문맹, 장애, 언어 장벽, 거리, 정보통신기술”⁸⁴⁾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여건에서 적절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측면에서 볼 때,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 파괴는 아동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의 한 형태”⁸⁵⁾이다. 게다가 환경 파괴는 “빈곤,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식량 불안정, 강제 이주로 인해 아동이 폭력, 학대, 착취”⁸⁶⁾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국은 아동이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는 각종 환경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⁸⁷⁾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생 및 환경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79) *See id.*

80) *See id.* at para. 29.

81) *See id.* at para. 30.

82) *See id.* at para. 32.

83) *See id.* at para. 33.

84) *See id.* at para. 34.

85) *See id.* at para. 35.

86) *See id.*

87) *See id.* at para. 36.

있다.⁸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독성 물질 및 유해폐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즉각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 피해들은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더 아동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건강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보건 및 환경 관련 계획 및 정책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아동 관련 사항들도 함께 포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환경보건기준을 설정·적용하는 등 각종 입법적 및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⁸⁹⁾ 더 나아가 환경 피해로 인하여 건강권이 침해된 아동들은 양질의 공중보건 및 의료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⁹⁰⁾ 아동권리협약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전제조건이라 하겠다.⁹¹⁾ 환경 문제는 아동의 빈곤 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입은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있어 사회보장은 매우 중요하다.⁹²⁾ 한편, 난민 아동, 이주아동 및 분쟁지역에 있는 아동 등 취약한 집단의 아동에게 있어 환경 측면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⁹³⁾

아동권리협약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교육권**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환경 피해에 따른 폐교 및 휴교, 학교 또는 놀이 장소의 파괴 등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환경 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⁹⁴⁾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은 아동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발달 상태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에 기반하여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⁹⁵⁾ 더 나아가 환경 관련 아동의 교육권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 이외에도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에게 훈련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⁹⁶⁾ 아동권리협약

88) 아동권리협약 제24조제2항 참조.

89) *See id.* at para. 42.

90) *See id.* at para. 43.

91) *See id.* at para. 44.

92) *See id.* at para. 47.

93) *See id.* at paras. 48-50.

94) *See id.* at para. 51.

95) *See id.* at para. 53.

제31조가 정하는 휴식, 놀이,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권리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이며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효능감,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⁹⁷⁾하는 반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은 아동의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⁹⁸⁾ 따라서 각국은 아동들이 자연 공간, 공원, 놀이터 등에서 놀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적 및 정책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⁹⁹⁾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a)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해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녹지, 넓은 공터 및 자연에 대한 접근성 제공
- (b) 공해,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c) 아동의 놀이,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이 우선시되는 구역 설계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놀이터 근처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 교통 대책 수립 등¹⁰⁰⁾

③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아동권리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아동권리들이 환경과 연계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즉 환경권을 아동인권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은 환경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권이 아동권리협약에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그리고 건강권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¹⁰¹⁾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도출되는 아동의 환경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기 위하여 체약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a) 실내외 대기 오염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예

96) *See id.* at para. 54.

97) *See id.* at para. 59.

98) *See id.* at para. 60.

99) *See id.* at para. 61.

100) *See id.*

101) *See id.* at para. 63.

방한다.

- (b) 안전하고 충분한 물과 위생, 건강한 수증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수인성 질병이 아동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 (c) 산업형 농업과 수산업을 혁신하여 영양실조 예방과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생산한다.
- (d)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공평하게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한다.
- (e) 생물다양성을 보존, 보호 및 복원한다.
- (f) 아동 건강 및 해양 생태계에 유해한 물질이 해양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여 해양 오염을 예방한다.
- (g) 아동 건강에 불균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 특히 신경발달 독성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방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제거할 때는 타당성 있게 한다.¹⁰²⁾

아동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 계약국은 국내법 차원에서 이를 규율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수행하여야 한다.¹⁰³⁾ 각국은 환경 관련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¹⁰⁴⁾ 아동권리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관련 법률, 정책 및 사업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¹⁰⁵⁾ 특히,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이 아동의 환경권 침해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각국은 “아동에 민감한 입법, 규제, 집행 및 정책과 시정, 모니터링, 조정, 협력, 인식 제고 조치”¹⁰⁶⁾를 마련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및 정책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아동의 환경권은 과정에서의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환경 관련 정보에의 접근, 환경 관련 결정에 있어서의 아동의 의견청문권 보장,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사법적 조치 등 피해구제수단에서의 아동친화적 접근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¹⁰⁷⁾

102) *See id.* at para. 65.

103) *See id.* at para. 67.

104) *See id.* at para. 69.

105) *See id.* at para. 75.

106) *See id.* at para. 80.

107) *See id.* at para. 82.

④ 기후변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가 환경 이슈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는 특성상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관련 완화 측면에서 각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하여 긴급한 공동 행동”¹⁰⁸⁾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국으로 하여금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하는 각종 기준에 따라 감축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¹⁰⁹⁾ 특히, 주요 배출국들에게 감축 노력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⁰⁾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국가가 관련 예산, 정책 및 사업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제도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과 더불어 물, 위생 및 보건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제공, 사회 안전망과 보호 기본체계 강화와 함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 우선 고려 등”¹¹¹⁾ 아동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조치에는 영유아, 여아,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 취약 집단에 속한 아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포함되어야 한다.¹¹²⁾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¹¹³⁾

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이외에 손실과 피해가 세 번째 기동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¹⁴⁾ 더 나아가 기후재원 메커니즘이 아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¹⁵⁾ 기후재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기후재원 승인과 집행에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¹¹⁶⁾

한편, 기후변화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각국으로 하여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아동권리 피해로부터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기업의 역외 활동 및 운영으로 인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피해 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계약국은 이를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권리가 침해된 아동에게

108) *See id.* at para. 95.

109) *See id.* at para. 98.

110) *See id.* at para. 95.

111) *See id.* at para. 101.

112) *See id.* at para. 102.

113) *See id.*

114) *See id.* at para. 111.

115) *See id.* at para. 112.

116) *See id.* at para. 114.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¹⁷⁾ 더 나아가 각국은 누진세, 공공조달 요건으로 지속가능성 도입 또는 재생에너지 장려 등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도모하여야 한다.¹¹⁸⁾

1) 일반논평 제26호의 의미 및 시사점

(1) 일반논평 제26호의 의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동권리에 있어서 환경권을 개별적 인권으로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일반논평은 인권조약기구들이 수십 년 간 발표하였던 약 200개의 일반논평 또는 일반권고 중에서 처음으로 환경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¹¹⁹⁾ 뿐만 아니라 일반논평 제26호는 인권조약 메커니즘 차원에서 환경권을 새로운 유형의 인권으로 접근한 독보적인 문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랜 논의를 거쳐 UN 인권이사회 및 UN 총회는 개별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인권조약기구에서는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각종 인권조약기구들은 사회권협약 일반논평 제26호,¹²⁰⁾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제39조¹²¹⁾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제37번¹²²⁾ 등 몇몇 최신의 일반논평 또는 일반권고를 통해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¹²³⁾ 반면에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환경이 아동권리협약상

117) *See id.* at para. 108.

118) *See id.* at para. 109.

119)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제37호(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2018) on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CEDAW/C/GC/37 (March 13, 2018))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기는 하였으나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가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기는 하였으나 환경 전반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0)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6 (2022) on land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GC/26 (Jan. 24, 2023).

12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39 (2022) on the rights of Indigenous women and girls, CEDAW/C/GC/39 (Oct. 31, 2022).

12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health, CERD/C/GC/37 (Aug. 243, 2024).

123) *See e.g.*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6 at para. 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6 at para. 2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at para. 22.

아동권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넘어 아동 인권 차원에서 환경권이 개별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위원회가 일반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인권으로서 환경권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역동적인 해석’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협약에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필수불가결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환경의 개념 내지 범위를 한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다. 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디지털 환경’을 진화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던 것과 같이,¹²⁴⁾ ‘환경’ 역시 기후변화를 포함한 현 시대의 이슈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까지도 포함하는 폭넓고 확장성 있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환경 이슈들이 환경권 내에서 포섭되어 아동의 자유와 권리의 범주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둘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세대 간 형평성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을 아동의 환경권 해석 및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로 사용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대 간 형평성이란 세대 간 공정성(fairness) 개념과 연관된 것으로서 “현 세대의 수요는 다음 세대의 희생으로 충족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요 역시 현 세대 내지 그 다음 세대의 희생 또는 빈곤 등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¹²⁵⁾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형평은 지속가능 발전이 주요 논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들이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동권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각종 인권조약기구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세대 간 형평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일반논평은 세대 간 형평 원칙을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주요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는 아동의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각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종래의 아동권리는 주로 국가 또는 부모 등 개인의 행위로 인한 침해를

1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25, para. 2 (March 2, 2021).

125) UN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United Nations System Common Principles on Future Generations, CEB/2023/1/Add.1, 4 (May 4, 2023).

방지하거나 아니면 보장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중심이었다. 그런데 환경 이슈의 경우 핵심적인 행위자 중 하나가 기업이라는 특성상 환경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역할도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 일반논평에서는 기업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이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조약이라는 특성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업이 환경 이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사(due diligence)를 포함하여 적절한 입법, 규제 및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나와 인식제고, 이행감시 및 피해구제 방안 등도 함께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 일반논평 제26호의 이행감시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체약국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8월 22일 해당 일반논평의 공식적 채택 이후 이행감시체계에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일반논평 제26호 이전만 하더라도 아동권리협약 관련 국가보고 절차에서 환경의 문제는 주요한 논제가 아니었다. 최종견해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권 내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이라는 소재목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이었다.¹²⁶⁾

하지만 일반논평 제26호 채택 이후에는 최종견해에서 교육권 및 건강권 등의 항목처럼 '아동권리와 환경'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항목의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논의 대상이 기후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에너지, 물, 위생 등 여러 환경적 이슈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¹²⁷⁾ 환경권 관련하여 아동권

126) See e.g.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Sweden, CRC/C/SWE/CO/6-7, 7 March 202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Germany, CRC/C/DEU/CO/5-6, 13 October 202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Canada, CRC/C/CAN/CO/5-6, 23 June 2022.

127) See e.g.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ussian Federation, CRC/C/RUS/CO/6-7, para. 38 1 March 20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Georgia, CRC/C/GEO/CO/5-6, para. 35, 25 June 20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Armenia, CRC/C/ARM/CO/5-6, para. 36, 16 September 2024.

리위원회는 각국의 입법 및 정책 등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²⁸⁾ 또한 위원회는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아동의 환경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환경 교육 및 인식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을 포함하여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의 이행도 독려하고 있다.¹²⁹⁾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반논평 제26호 채택 초기만 하더라도 최종견해에 ‘환경’이라는 문구는 사용하면서도 ‘환경권’ 자체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2024년 하반기에는 ‘깨끗하고 건강하면 지속가능한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라는 점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¹³⁰⁾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 절차에서 환경권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동권리 관련 이행감시체제에서는 이미 환경권에 대한 국가 이행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가 채택된 지 일 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파급력은 점차 증대·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대상과 정도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에 있어서 환경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겠다. 첫째, 정부가 환경 관련 계획,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권리 보호 관련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계획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한 기반으로 아동권리와 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구축되어 활용될 것이 요청된다. 내용적으로는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계획 등이 수립되는 경우 아동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되고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대기질 개선, 수질 및 위생, 식량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산업 혁신, 에너지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오염 방지 및 독성 물질 규제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은 단기적인 경우는 물론 지속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계획 등의 경우 단기적 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인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 마련

128) *See id.*

129) *See id.*

130) *See e.g.*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Argentina, CRC/C/ARG/CO/7, para. 42, 16 September 2024.

되어야 한다.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바, 특히 환경 관련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고려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청된다. 더 나아가 수단 및 절차적 측면에서 환경 관련 국가의 입법, 예산, 정책 또는 사업 등이 제안되는 경우 아동권리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관련 계획, 정책 또는 사업 등의 시행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 제공 및 인식제고가 요청된다. 환경 이슈에 대하여 아동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환경 피해에 대하여 아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 등 관련자의 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 피해는 기업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성이 있는 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는 환경 정책 및 사업 등의 실시함에 있어 기업이 아동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권리 실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환경 관련 사항들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보장이 요청된다. 아동들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해당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정보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여건에서 제공되어야 하겠다. 한편, 환경 피해로 영향을 받은 아동들의 경우 양질의 보건의료 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 대하여 사법절차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인권기구 및 사법기구 등을 포함한 각종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되며 이 경우 아동의 발달상태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아동친화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동향: 영국,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¹³¹⁾

1) 개요

(1) 목적 및 배경

이 절의 목적은 다른 국가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보다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두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국가 모두 우리와 같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이다. 둘째, 우리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와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동일하지만 제3선택의정서(개인청원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IC)를 비준한 것에는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핀란드는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영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복지제도 차원에서 우리나라 학계가 여러 사례를 참고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국내에서 아동학대, 아동보호체계, 아동수당 등 여러 아동 관련 정책개발에서 참고하는 국가이다(소라미, 2021; 양재진, 2009). 핀란드는 우리와 유사하게 높은 교육 성취를 보여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핀란드는 과거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나 정책적 노력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티모 파르토넨, 2018).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영국과 핀란드 모두 우리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 국가가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에서 우리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2) 분석자료 취합 방법

이 분석에서 살펴볼 자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제시하는 최종견해

131)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concluding observations) 문서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국가들의 국가보고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¹³²⁾

(3)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의 협약 비준,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현황, 국가보고서 제출 상황은 국가마다 각각 다르다. 핀란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및 선택의정서 비준을 모두 마쳤고, 영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은 비슷한 시기 제Ⅰ차~제Ⅱ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보고서 제출 시기가 달라졌다. 가장 최근 국가보고서(state party's report)를 제출한 국가는 핀란드로 2021년 제Ⅴ-Ⅵ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가 전달되었다. 영국은 제Ⅵ-Ⅶ차 보고서를 2021년에 제출하였고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가 전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12월 19일로, 정부는 현재 제Ⅶ차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최신 자료는 2017년 제출된 제Ⅴ-Ⅵ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2019년 제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이다.

표 II-5-1.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현황

구분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명 및 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1990 비준/가입: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1990 비준/가입: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1990 비준/가입: 1991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	제1선택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00 비준/가입: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00 비준/가입: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00 비준/가입: 2004
	제2선택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00 비준/가입: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00 비준/가입: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00 비준/가입: 2004

13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https://indicators.ohchr.org/>)를 통해 비준 이력 및 상황 등을 정리하였음.

구분	핀란드	영국	대한민국	
제3선택 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2012 비준/가입: 2015 	-	-	
국가보고서 제출 시점 (최종견해 발간 시점)	제Ⅰ차	1994(1996)	1994(1995)	1994(1996)
	제Ⅱ차	1998(2000)	1999(2002)	2000(2003)
	제Ⅲ차	2003(2005)	2007(2008)	2011(2012)
	제Ⅳ차	2008(2011)		
	제Ⅴ차	2019(2023)	2014(2016)	2017(2019)
	제Ⅵ차		2022(2023)	
	제Ⅶ차	-		

*출처: 저자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https://indicators.ohchr.org/>)를 통해 각 국가의 비준 이력을 파악하였고, 국가보고서 제출 상황 등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음.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각 국가의 최신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핀란드(Finland) 자료는 핀란드 정부의 제V-VI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FIN/CO/5-6),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자료는 영국 정부의 제VI-VII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GBR/CO/6-7) 문서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자료는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정부의 제V-VI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CO/5-6)를 활용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분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핀란드:**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Finland (15 November 2023, CRC/C/FIN/CO/5-6)
- **영국:**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22 June 2023, CRC/C/GBR/CO/6-7)
- **대한민국:**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24 October 2019, CRC/C/KOR/CO/5-6)

2) 국가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주요 내용

(1) 핀란드(Finland) 사례¹³³⁾

2023년 11월 15일 발간된 핀란드의 제V-VI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Finland, 15 November 2023, CRC/C/FIN/CO/5-6)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인 몇 가지 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핀란드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행을 위해 다양한 입법, 제도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2015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16년 파리 기후협정 등을 비준하였다.

②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사항

A. 일반 이행 조치(제4조, 제42조 및 제44조(6))

협약의 국내법적 통합, 입법과정에서 아동 권리 영향 평가 강화, 사미족(Sami people) 어린이의 권리 관련 법률 개혁 등을 권고하였다. 국가 아동 전략의 수립과 국가 차원에서의 조정과정은 환영하나 협약 이행의 조정 책임을 맡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아동 권리 관련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지위에 따른 데이터 분류로 아동의 상황 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데이터를 구성해야 하며, 아동옹부즈맨(Ombudsman)의 독립성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B. 일반 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해야 하고, 인종, 이민상태,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모든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적용할 것, 아동 최선의 이익 적용에 책임 있는

13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내 핀란드 유엔 협약 데이터베이스(DB)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fin&Lang=EN 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전문가들이 이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심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의견 존중을 위해 모든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아동복지법이 12세 이상의 아동에게만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지적하였다.

C. 시민권 및 자유(제7조, 제8조 및 제13~17조)

국적(nationality)과 관련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정부 관리들이 추방 전에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적절하게 등록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무국적 상태 방지를 위한 입법 개정안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차원에서 일반논평 제25호(2021)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유해한 콘텐츠 및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교사, 가족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과 기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D. 아동에 대한 폭력(제19조, 제24조(3), 제28조(2), 제34조, 제37조(a) 및 제39조)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하여 비폭력적 아동기 행동 계획(Non-Violent Childhoods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2020~2025)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 친화적 바르나하우스모델(the barnahus model) 시행을 위해 영역 간 조정에 대한 법적 기반 확보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취약 집단 아동을 위한 맞춤형 전략 및 지원 제공, 온/오프라인 폭력 예방 및 폭력 근본 원인 연구 수행, 모든 형태의 괴롭힘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노력,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학제 지원, 의학적 평가, 트라우마 치료 제공 등 바르나하우스 모델의 강화 및 표준화 등을 권고하였다.

E. 가족 환경 및 대안양육(제5조, 제9~11조, 제18조(1) 및 (2), 제2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7조(4))

가족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전국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이혼 및 별거 사건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지원 강화 및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트라우마 지원, 이혼 및 별거 후 공동 양육 장려, 가족 구성원들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개입 치료와 아동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시설 및 위탁 가정 보호 조건의 품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가족 재결합을 목표로 배치 결정이 장기적으로 검토되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폭력이나 학대 신고 채널의 접근성 강화 및 아동 친화적 구성 등도 권고하였다.

F. 장애아동(제23조)

장애 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 아동의 포용적 교육 조치 강화, 장기 기관 배치 방지 및 감소 노력, 장애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 보장, 사회적 포용 및 개인적 발달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G. 기초 보건 및 복지(제6조, 제18조(3), 제24조, 제26조, 제27조(1)-(3) 및 제33조)

불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특히 우울, 불안, 자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취약성이 있는 여성 청소년, 망명 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 저소득 가정 아동, 장애 아동 및 성소수자 아동(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간성애자 등)의 요구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권고에서는 주기적 가정 방문과 지역사회 기반 교육 및 지원을 강조하였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조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아동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며, 당사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영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을 통한 아동 빈곤 해소, 취약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 노숙자 발생을 예방하고 거리에 있는 아동의 통계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요구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H.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제28조~31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가 포용적 교육 원칙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 접근성의 불평등과 이민자 출신 아동의 교육 격차,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교육 불평등 해소, 학교 중퇴 및 결석 예방, 다국어 및 문화 간 교육

제공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휴식, 여가,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7호(2013)와 같이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접근성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I. 특별보호조치(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b)-(d) 및 제38조-제40조)

특별보호조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 제22호, 제23호와 관련하여 망명 신청 아동, 난민 아동,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망명 절차 및 이주 결정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사례 134

2023년 6월 22일 발간된 영국의 제VI-VII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2 June 2023, CRC/C/GBR/CO/6-7)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인 몇 가지 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법·정책적 변화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국과 웨일즈에서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웨일즈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스코틀랜드와 저지(Jersey)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웨일즈에서 합리적 체벌을 폐지하고, 2021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북아일랜드에서 2020~2030년 아동 및 청소년 전략을 채택한 것” 등이다.

13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내 영국 유엔 협약 DB (CRC/C/GBR/CO/6-7).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uk&Lang=EN 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②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사항

A. 일반 이행 조치(제4조, 제42조 및 제44조(6))

위원회는 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해외 영토 및 왕령지에서 협약의 국내법적 통합, 의무적인 아동 권리 영향 평가 절차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 관련 종합적인 정책·행동 계획 개발 등을 진행하고 계획에 측정 가능한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는데, 특히 “난민 및 이주민 아동, 소수자 집단에 속한 아동, 장애 아동, 보호를 받는 아동(보호대상아동),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애자(intersex) 아동,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아동 및 소위 청소년 보호자 또는 보호자 책임이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초점이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조정 기구 설립, 아동 권리 관련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강화, 독립적인 아동 권리 모니터링 기구 설립 등을 권고하였다.

B. 아동의 정의(제1조)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 중 16세 및 17세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아동으로 정의되고 실제로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직 18세 미만 아동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외 없이 금지하라고 권고하였다.

C. 일반 원칙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위원회는 영국에서 소수 민족 아동과 성소수자 아동 등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차별과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불리한 상황에 있는 아동¹³⁵⁾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타겟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모든 정책, 프로그램, 법률 등에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이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하고,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차별, 장애 등 기저 요인들을

135) 소수 민족 집단에 속한 아동, 망명 신청 아동, 난민 및 이주민 아동, 로마인, 집시 및 여행자 아동, 장애 아동, 대안양육 보호를 받는 아동, 수감 된 부모의 아동, 미혼 부모의 아동,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아동,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아동 및 사법 제도에 있는 아동(children in disadvantaged situations, including children belonging to ethnic minority groups,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Roma, gypsy and traveller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hildren of unmarried parent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and children in the justice system)

해결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아동 사망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사망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취합하고 공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모든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아동 및 시민단체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D. 시민권 및 자유(제7조, 제8조 및 제13~17조)

위원회는 국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주 아동과 망명 신청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신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애자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이 표현의 자유와 신체적, 심리적 완전성, 성 정체성 및 새로운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정보 접근권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2021)에 따라 디지털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모든 법률과 정책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및 안전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며,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교사의 디지털 문해력과 기술을 향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E. 아동에 대한 폭력(제19조, 제24조(3), 제28조(2), 제34조, 제37조(a) 및 제39조)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 피해자가 지역사회 기반 트라우마 치료 및 아동 중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F. 가족 환경 및 대안양육(제5조, 제9~11조, 제18조(1) 및 (2), 제2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7조(4))

위원회는 가족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부모와 보호자가 직업적 책임과 가족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환경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대안양육 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대안양육 시설의 질을 개선하며, 대안양육을 떠나는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G. 장애아동(제23조)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교육, 의료, 사회적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 아동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아동의 사회 통합과 개인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H. 기초 보건 및 복지(제6조, 제18조(3), 제24조, 제26조, 제27조(1)-(3) 및 제33조)

아동이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5호(2013)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에 아동 관점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정신 건강 증진 전략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포함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소년의 성 및 생식 건강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적합한 가족 계획 서비스, 저렴한 피임약, 안전한 임신 중절 및 임신 중절 후 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과 약물 남용 예방 정보 제공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경권과 기후 변화로 인한 아동 권리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아동의 환경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기후 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의 아동이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생활 수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혜택을 늘려 아동 빈곤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아동 노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 주택 지원 등을 권고하고, 특히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I.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제28조~31조)

영연방에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교육 수준과 성취 수준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통합 학급에 전문 교사와 전문가를 배치하여 장애가 있거나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이

교육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하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권고도 포함이 되었는데 “시민사회 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모든 학교에 트랜스 젠더 및 성별에 대한 의문을 품은 아동·청소년을 포용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이러한 지침이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도시 계획 과정에서 아동의 놀이 공간 개발 결정에 아동이 참여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J. 특별보호조치(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b)-(d) 및 제38조-제40조)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2호, 제23호에 따라 망명 신청자, 난민 및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망명 신청 아동, 난민 아동,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영국은 형사 책임 연령이 10세 혹은 12세로 설정되어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상향하고, 아동 구금을 최소화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사법 절차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핀란드, 영국 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시사점¹³⁶⁾

지금까지 영국, 핀란드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1) 일반 이행 조치

일반 이행 조치 클러스터에서는 의무적인 아동 권리 영향 평가 시행 및 강화,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수립과 자원 지원, 국가 차원의 조정 기구의 설립과 강화, 데이터 수집

136) OHCHR 홈페이지 내 한국 유엔 협약 DB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 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CO/5-6)와도 유사한데 우리나라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 중인 아동영향평가(아동권리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조정 기구를 신설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과 데이터 수집에서 불리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성소수자, 장애, 이민배경, 빈곤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서 세부적인 인구 집단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 및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시행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II-5-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영국, CRC/C/GBR/CO/6-7)

<p>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p> <p>12. 아동 권리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위원회는 국가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p> <p>(a) 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도록 질적 및 양적 지표에 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연령,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민족적 기원, 국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분류되도록 보장하라.</p> <p>(b) 폭력 없는 아동, 정신 건강, 식량 불안, 영양실조, 교육 및 대안양육 보호 받는 아동, 장애 아동, 망명 신청 아동, 이주 아동, 수감된 부모의 아동을 포함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해외 영도를 포함하여 개선하라.</p>
--

* 출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내 영국 유엔 협약 DB (CRC/C/GBR/CO/6-7)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uk&Lang=EN 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2) 일반 원칙

일반 원칙 클러스터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정책, 프로그램, 법률에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적용하고, 모든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나 행정 절차의 맥락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권고한 것은 참고할만하다.

표 II-5-3. 아동의 의견 표명권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핀란드, CRC/C/FIN/CO/5-6)

<p>아동의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p> <p>19. 아동의 의견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과 아동복지법(the</p>

Child Welfare Act, No.417/2007)이 12세 이상의 아동에게만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특히 이주와 망명, 양육권, 거주, 부모와의 접촉, 대안양육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채택, 사회 서비스 및 가정 폭력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행정 절차의 맥락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 출처: OHCHR 홈페이지(UN Treaty Body Databas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Finland (CRC/C/FIN/CO/5-6). <https://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6QkG1d%2FPPRiCAqhKb7yhsuVBUBTyzJAKnGyrgeWDKEEjVMPBVcA oCgvc0lPYdpgsZG3BhVn5%2FLtdR%2BuF%2FhVe8Ei6tMxuNATGxVx55q%2FOYnnyTeaJxm3Gtf3144GBxd %2Bi> 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또한, 핀란드와 영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차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최종견해(CRC/C/KOR/CO/5-6)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받았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아동·청소년기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시민권 및 자유

시민권 및 자유 클러스터에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성소수자 아동의 신원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등을 사생활, 정보 접근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최종견해(CRC/C/KOR/CO/5-6)의 권고사항을 실현하고자 출산통보제를 시행하였으나 핀란드와 영국에서처럼 이주배경 아동, 특히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출생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과 자유 증진을 위한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신원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보호 노력과 정보 접근성 강화 노력 등은 우리나라 나라에서도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관련 연구나 정책개발 등이 요구된다.

(4)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클러스터에서는 두 국가 모두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권고받았다.

핀란드는 아동 친화적 바르나후스모델(the barnahus model) 시행을 권고받았는데, 이는 다소 사후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핀란드 정부는 바르나후스모델을 통해 모든 폭력 피해자, 특히 성학대 및 착취 피해자를 위한 다학제간 아동 친화적 치료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처벌 중심의 아동학대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대응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중심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학제적인 협력 및 트라우마 중심 치료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매우 필요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표 II-5-4.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핀란드, CRC/C/FIN/CO/5-6)

<p>성적 착취 및 학대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children)</p> <p>23. 위원회는 국가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합니다.</p> <p>(a)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비폭력적 아동기 행동 계획(2020~2025)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고, 부문 간 및 아동 친화적 바르나후스 서비스의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라.</p> <p>(e)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희생자가 된 모든 아동이 다학제 지원, 의학적 평가 및 트라우마 중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르나후스 모델의 국가적 구현을 강화하고 표준화하라.</p>
--

* 출처: OHCHR 홈페이지(UN Treaty Body Databas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Finland (CRC/C/FIN/CO/5-6). <https://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6QkG1d%2FPPRiCAqhKb7yhsuVBUBtYzJAKnGyrgcWDKEEjVMPBVcAoCgvc0iPYdpgsZG3BhVn5%2FLtdR%2BuF%2FhVe8Ei6tMxuNATGxVx55q%2F0YnnyTeaJxm3Gtf3144GBxd%2Bi> 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5) 가족 환경 및 대안양육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족 환경 부족 아동에 대해 가정 외 보호 시설 아동 수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고, 보호 조건 및 품질 관리, 아동 권리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외 보호 시설 아동 수를 감소시키고, 양질의 가정 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6) 장애 아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핀란드와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

아동 포용 정책 실현과 통합교육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두 나라 정부에 장애 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 장기 시설 배치 방지, 의견 표명권 보장, 사회적 포용 및 개인적 발달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해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일반 학교 등의 교육체제로 포용하고,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교사 배치 및 보조교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기초 보건 및 복지

기본적 건강 및 복지 클러스터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의료 불평등 개선,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환경권과 환경 건강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 아동 빈곤 해소 노력,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해(CRC/C/KOR/CO/5-6)의 지적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 기반한 기후변화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 환경 권 등은 새롭게 우리사회가 고민해봐야 하는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8)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클러스터에서는 핀란드와 영국 정부는 교육 불평등 해소, 장애 아동 교육 지원, 다국어 및 문화 간 교육 제공, 아동의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접근성 개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을 권고받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교육 성취를 보이고 있는 핀란드도 우리와 유사하게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접근성 보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이 학업 몰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신 건강의 서비스의 확대 및 양적·질적 개선, 휴식, 여가, 놀이, 문화 활동 보장 등의 과제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9) 특별보호조치

핀란드와 영국은 난민 아동을 수용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난민 아동,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포용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아동·청소년 인권 차원에서의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과제

이 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정책 동향 및 언론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및 비준 이후 30여년 간 이행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졌고 일정 정도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해소하지 못한 쟁점들이 있고,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인구 집단 속성에 맞는 법·정책적 개선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과 핀란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계획을 명시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리한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취약성이 있는 여성 청소년, 망명 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 저소득 가정 아동, 장애 아동 및 성소수자 아동·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간성애자 등)들에 관한 논의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책의 계획과 실행 절차에서 아동·청소년 권리가 법·정책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 및 기후변화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와 제26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역량 증진(디지털 문해력 및 기술)으로 비교적 명료화될 수 있으나, 아직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환경과 권리는 관련 활동은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인다. 아직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와 환경에서의 권리(혹은 환경권)가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권리는 아직 증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가정과 학교가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권리는 그 자체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권리는 이제 출발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차별과 폭력, 중요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사례를 참고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회적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어려움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및 증진 등 정부의 적극적 인권보장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다.

○ — 제3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조사 방법

- 1. 개요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 3.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개요

1. 개요¹³⁷⁾

이 장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 연구에서 생산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402001호)」의 조사 방법 및 조사 도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조사 방법을 지표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본 장에서 함께 다루어 독자들이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 장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부의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변화를 어떻게 지표를 통해 보여줄 것인가?”라는 두 개의 연구 질문과 관련이 있다(유민상 외, 2023). 여기에는 표준화된 측정 모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에 따른 변화상도 함께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념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맞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초기에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의 인권영역 구분에 맞추어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1; 유민상 외, 2023).

다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부의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변화를 어떻게 지표를 통해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시계열적으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인데 본 보고서는 되도록 5년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기초분석보고서에서는 2013년 혹은 지표가 추

137)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가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계열 지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권상황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권 문제나 삶의 질 영역에 대해 새롭게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전체 지표체계에 생태환경과 디지털환경 등에 관한 지표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에 추가하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하거나 2차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방법 및 설문문항에 대해 살펴본 후, 올해 연구에서 개선한 것과 향후 개선 방향에 시사점으로 정리하였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¹³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방대한 인권에 관련한 사항을 집대성하고 있으나 이에 맞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또한 몇 가지 지표들로 인권 영역을 모두 측정할 수 없으므로 간명하게 지표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권리 영역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2). 여기에 이번 연구는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지표체계에 '23년 아동·청소년의 발달 결과(outcome) 지표'들을 추가하였고, '24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와 26호 관련 지표'들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추가된 영역은 '일반논평'이라는 영역으로 추가하였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와 기후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로 하위분류(중분류)하였다. 아직 영역과 지표의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의 침해 및 역량과 기후환경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노력으로 구체화하였다.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와 기후변화 등 환경에서의 권리 상황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아동·청소년 권리로서 공고화된다면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는 기존의 행정데이터들과 본 조사에서 생산된

138)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된 지표를 결합하여 구성된다. 기존의 행정데이터들은 주로 객관적 수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주로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아래 인권지표체계 중 기존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지표 이외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생산한 지표들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인권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실태조사 생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조사방법 등)은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다.

표 III-2-1. 202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음영과 * 표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항목, *이탈리제*는 2024년도 수정·추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전체, 온라인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1-3. 차별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 여가 시간 존중)*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2. 미디어 리터러시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2-5-2-2. 미디어 역량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3-1-1-2.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1-3.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가정 내 방임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인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1-2.	4-1-2-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항, 2항)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관리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정 밖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1. 가정 밖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을 및 취업률 추이				
5-1-1-4. 학대피해 장애아동 수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율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1-2. 운동 실천율*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제24조)	5-4-2. 정신적 건강	5-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4-2-1. 자살 및 자해 생각과 그 이유*
			5-4-2-2. 우울감*
			5-4-2-3. 외로움과 고립감*
			5-4-2-4. 자아존중감*
		5-4-2-5. 고민거리 대화상대*	
	5-4-3. 주관적 웰빙	5-4-3-1.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2. 삶의 만족도*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빈곤을 포함)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
		6-2-2. 진로·직업교육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 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시설 수*
			6-3-1-2.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3. 하루 평균 학습시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7-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7-2-3-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7-2-3-2.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7-3-1-3. 청소년 실업을 추이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7-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8. 일반논평	8-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8-1-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및 역할	8-1-1-1.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 인식*	
			8-1-1-2.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	
	8-2. 기후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8-2-1. 기후환경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노력	8-1-2-1.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8-1-2-2. 환경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	

* 주: 음영과 * 표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항목, 이탤릭체는 2024년도 수정·추가 항목

3.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개요¹³⁹⁾

1) 표본설계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실시하기 위해 리서치 회사의 통계전문가에게 표본설계를 의뢰하였다.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전국(세종시, 제주도 포함)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로 설정하였다. 표집틀인 2023년 4월 기준 한국교육통계 DB상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수는 3,956,314명(100.0%)이었고, 이들 중 초등학교 4~6학년은 1,351,214명(34.2%), 중학교 1~3학년은 1,326,831명(33.5%), 고등학교 1~3학년은 1,278,269명(32.3%)이었다(강현철, 2024, p.1).

목표표본수는 비용 및 시간과 같은 조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9,000명(단순무작위추출을 가정할 때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로 허용가능한 수준임)으로 정하였는데, 이들 중 초등학교 4~6학년은 3,074명, 중학교 1~3학년은 3,018명, 고등학교 1~3학년은 2,908명이었다(강현철, 2024, p.5).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층화는 지역(17개 시도), 교급 및 학교유형(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을 기준으로 층을 나누었는데, 모집단의 특성상 특성화고는 17개 시도별 층화가 어려워 5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자율고, 특수목적고는 지역별로 나누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17개 시도별 층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층별 표본배분은 단순비례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하기보다는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배분되도록 하는 변형비례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하였다(강현철, 2024, pp.5-9). 표본추출은 표본배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층에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이고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들 중에서 크기비례(PPS)방식으로 학교를 추출한 후,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추출하고 추출된 학년에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사전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 학급은 제외)한 후, 추출된 학급의 청소년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여러 사정으로 추출된 학교에 대한 조사가 힘들 경우에는 같은 층에서 무작위로 다른 학교를 추출하여 대체하였다. 사후적으로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강현철, 2024, pp.9-10).

139) 이 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표 III-3-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서울	450	486	300	150	150	150	
경기	825	729	450			150	150
인천	150	162	150			150	150
강원	75	81	75			150	150
충북	75	81	75			150	150
충남	150	162	75			150	150
대전	75	81	75			150	150
세종	75	81	75			150	150
경북	150	162	75			150	150
경남	225	243	150			150	150
부산	150	162	150			150	150
대구	150	162	75			150	150
울산	75	81	75			150	150
전북	75	81	75			150	150
전남	75	81	75			150	150
광주	75	81	75			150	150
제주	75	81	75	150	150		
합계	2,925	2,997	2,100	150	150	750	

* 출처: 강현철(2024).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p.8

※ 총계: 9,072명

2) 통계청 변경 승인 및 기관 IRB 승인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삭제, 수정, 추가 과정을 거쳐 최종 수성보완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에 대해,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판단 검토 및 변경 승인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IRB 승인을 받았다.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판단은 4월 중순에 통계청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에 통계 작성 기획서, 초등학생용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항목별 판단결과표를 업로드하여 우선활용 행정자료가 없음을 자체 판단으로 제출하였고, 통계청 통계변경승인은 4월 중순에 통계청 통계변경승인시스템에 변경 승인신청서, 기획서, 조사지침서, 표본설계 보고서,

문항변경 세부내역서, 설문지, 결과표 서식, 행정자료우선활용판단 판단결과표 등을 업로드하여 통계청의 통계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본원 연구윤리 승인은 4월 말~5월 초에 본원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설문지, 조사설명문, 참여동의서, 생명윤리 준수서약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IRB 승인(202404-HR-고유-007)을 받았다.

3) 조사준비 및 조사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준비 및 조사는 3월에 전문 리서치 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원은 학교방문조사 유경험자, 표본학교인근 거주자, 조사원교육 A등급 이수자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5월 7일~10일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방사무소에서 조사원 지침서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리서치앤리서치, 2024a, 2024c). 조사원 교육에서는 조사이해도 제고(조사목적, 조사체계, 조사개요 등), 자료수집과정(학교방문, 자료수집절차, 주요예상 질문 및 시나리오 등), 문항별 세부지침, 면접원 유의사항(면접원의 역할, 면접조사 태도, 조사진행시 사용멘트, 면접원 지침물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리서치앤리서치, 2024b).

조사대상 학교의 선정은 학교 접촉 담당자가 표본추출 학교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연락을 통해 조사협조를 얻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조사협조 거절이 발생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라도 단위무응답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층에서 무작위로 대체표본을 추출하여 다시 조사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컨택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파라데이터(paradata)로 수집, 관리되었다(리서치앤리서치, 2024a).

조사는 전문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조사대상 학급을 약속된 일시에 방문하여 종이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 기입식(self-reported)으로 기입해서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항목무응답, 응답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및 조사 보완 등의 현장에디팅을 실시하였다. 학급 전체의 항목무응답, 응답오류 등이 심할 경우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대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

로 조사원의 학교방문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완료된 설문지를 학생이 직접 서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우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리서치앤리서치, 2024a, 2024c).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작하여 6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진행과정 및 조사완료 후 조사진행 여부, 조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사원 규칙 준수, 조사표 작성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현장 방문검증 및 표본학교 전수 협력교사 전화검증을 실시하였다(리서치앤리서치, 2024a, 2024c).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는 항목무응답, 응답오류 등에 대한 각 지역 실사팀의 1차 에디팅, 본사 전담에디터의 2차 에디팅의 두 차례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입력은 단순 입력 오류를 찾아내거나 설문 로직을 고려한 입력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리서치 기관의 두 명의 자료입력 요원이 스피드펀칭 프로그램을 통해 더블 펀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입력 후 최종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계팀의 검증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검증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리서치앤리서치, 2024a, 2024c).

최종 데이터는 검증완료된 데이터에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 단위무응답에 대한 조정가중치, 성별에 대한 사후가중치를 부여하여 완성하였다(강현철, 2024, p.11).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로 최종 구축된 사례수는 8,759명(100.0%)이었다. 하위유형별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 51.5%(4,512명), 여학생 48.5%(4,247명)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4.2%(2,991명), 중학교 33.5%(2,938명), 고등학교 32.3%(2,830명),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일반고 중 일반고, 자율고 중 일반고, 특목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고) 81.8%(2,314명), 특성화계고 18.2%(516명)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38.5%(3,372명), 중소도시 47.6%(4,167명), 읍면지역 13.9%(1,220명)였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 89.8%(7,823명), 한부모가정 7.9%(688명), 조손가정 1.1%(96명), 기타 1.2%(106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 38.5%(3,358명), 중 39.7%(3,464명), 하 21.7%(1,895명)였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 60.2%(5,242명), 중 31.5%(2,747명), 하 8.3%(724명)의 분포를 보였다.

표 III-3-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759	100.0
성별	남학생	4,512	51.5
	여학생	4,247	48.5
학교급	초등학교	2,991	34.2
	중학교	2,938	33.5
	고등학교	2,830	32.3
고교유형	일반계고	2,314	81.8
	특성화계고	516	18.2
지역규모	대도시	3,372	38.5
	중소도시	4,167	47.6
	읍면지역	1,220	1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823	89.8
	한부모가정	688	7.9
	조손가정	96	1.1
	기타	106	1.2
학업성적	상	3,358	38.5
	중	3,464	39.7
	하	1,895	21.7
경제적 수준	상	5,242	60.2
	중	2,747	31.5
	하	724	8.3

4) 조사표 수정¹⁴⁰⁾

(1) 2024년도 신규 문항

① 정신적 건강(마음 건강, 중고등학생용)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을 측정하는 영역이 ‘신체’에 한정되었던 것을 확대하여 정신적 건강도 측정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의 건강 수준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신뢰로운 척도로 여겨지고 있으며(Ocampo, 2010), 주관적인 건강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건강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예측(Ferraro, Farmer & Wybraniec, 1997)할

140)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통해 본 연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Idle, & Benyamini, 1997). 이에 연구진은 기존 설문 문항에서 신체적 건강을 측정하는 문항을 참고하여 정신적 문항을 묻는 문항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신적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문항은 중고등학생용에서만 측정되었다.

표 III-3-3. 신규 설문 문항: 정신적 건강

조사영역	내용
주관적인 건강 수준 _정신적 건강	<p>자신의 정신적 건강(마음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p> <p>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p>

②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초등·중고등학생용)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가족의 돈 문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은서, 정슬기, 2019; Wetherall, Daly, Robb, Wood & O'Connor, 2015)에 근거하여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의 문항을 차용하였고, 이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행된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문항은 초등학생용(13번), 중고등학생용(19번)에서 모두 동일한 문구로 구성하여 측정되었다.

표 III-3-4. 신규 설문 문항: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조사영역	내용
가족의 돈 문제로 인한 걱정	<p>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p> <p>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자주 걱정한다 ④ 항상 걱정한다</p>

* 주: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참조

③ 여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초등·중고등학생용)

다음으로, 여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여가활동이 재미를 주는 활동이어서가 아니라, 여가활동은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여러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스스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며, 또래 및 주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익히게 되고, 본인의 흥미와 재능을 찾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 성인만큼 다양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여가활동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은 아동·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여가활동 시간을 치명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아동의 여가시간 부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기를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을 과도하게 스마트폰 사용에만 할애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표명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 또한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화시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진들은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3년 사회조사의 여가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올해의 설문문항으로 여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III-3-5. 신규 설문 문항: 여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문항	내용
여가 만족도	<p>최근 1년 동안 평소 여가활동* 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여가활동이란 여가(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p> <p>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p>

문항	내용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불만족 이유	(위 문항의 ①, ②에 응답한 경우) 만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①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②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③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④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⑤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⑥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⑦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⑧ 보호자(혹은 부모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⑨ 기타()

* 주: 여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문항은 2023 사회조사(통계청)의 여가 관련 문항을 참조하였으며, 위의 문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포함되었음.

④ 자해 생각 및 시도(중고등학생용)

다음으로, 자해 생각 및 시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023년 설문조사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이유를 묻는 문항만이 포함되었는데, 자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자해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죽음을 기대하며 시행하는 자살과 다르게,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하여 시행되는 자해는 신체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서고운, 2021). SNS에 자해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의 일명 ‘자해 놀이’ 현상도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등 청소년 자해는 더 이상 일부 특별한 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박세훈, 유금란, 2021).

올해 새로 포함된 자해 문항은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의 문항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는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따라 자해 생각과 시도를 한 문항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질문과 응답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해 문항은 중·고등학생용 설문지에만 포함하였다.

표 III-3-6. 신규 설문 문항: 자해 생각 및 시도

문항	내용
자해	<p>최근 1년 동안 자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픈게 하는 등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p> <p>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③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다 ④ 가끔 시도한다 ⑤ 자주 시도한다</p>

* 주: 202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참조

⑤ 일상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 - 환경권(중고등학생용)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기후변화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6호 발표를 대비하여 추가한 것이었으나, 2024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기존 문항이 기후변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환경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에서 발간된 환경권 및 기후위기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나 간소하게 환경권을 측정하는 문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헌법의 환경권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 문항에 환경권과 관련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에서 2024년 5월 13일 인출.

표 III-3-7. 신규 설문 문항: 환경권

조사영역	내용
	53.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목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얼마나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예. 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기타(인권 인식)	① 전혀 보장 받지 못했다 ② 보장 받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보장 받은 편이다 ⑤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

5) 최종 설문 문항

표 III-3-8.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이텔라+밀줄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33(1~3)	43(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온라인공간)	34(1~4)	44(1~4)
		인권 의식 및 태도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성적체성/ 성적지향)	35(1~7)	45(1~8)
		인권교육 경험	36	46
		인권교육 받은 기관	36-1	46-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36-2 (1~3)	46-2 (1~3)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39(1~4)	49(1~4)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동네·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7 (1~10)	47 (1~10)
		차별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37-1	47-1
		차별 가해 경험	38(1~10)	48(1~10)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 여가시간 존중)	4(1~3)	4(1~6)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5(1~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5(1)	7(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6	8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7	9
		참여 장애 이유	8	10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11(2)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학교)	-	12,12-1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	11(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3-1
	사생활의 보호	<u>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용모, 복장, 소지품)</u>	-	<u>14(1~3)</u>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공개,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 징계시 의견 수렴)	5(2~3)	7(2~5)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9(1~2)	15(1~2)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9(3~4)	15(3~4)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10(1~6)	16(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11(1~5)	17(1~5)
		성적 피해 경험률 및 도움 제공자	26,26-1	36,36-1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무관심, 결식시 방치, 결석 무관심)	질병 12(1~5)	18(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4	20
		가출 이유	14-1	20-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	20-2, 20-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범죄, 교통사고)	15	21
		거주지역(동네)의 상황(안전, 놀 장소, 도와줄 사람, 지역 의사결정 과정 참여)	16(1~3)	22(1~4)
		<i>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i>	<u>13</u>	<u>19</u>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7	23
		<i>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i>	-	<u>24</u>
		운동 실천율	18	25
		수면시간	19	26
		수면부족 여부	20	27
		수면부족 이유	20-1	27-1
		자살에 대한 생각	-	28
		자살 생각 이유	-	28-1
		<i>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i>	-	<u>29</u>
		우울감	21(1~3)	30(1~3)
		자아존중감	21(4~6)	30(4~6)
		외로움	25(1~3)	34(1~3)
		고립감	25(4)	34(4)
		고립감을 느낀 기간	25-1	34-1
		고민거리 대화상대	22	31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23	3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4(1~6)	33(1~6)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주관적 웰빙	행복도	1	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1	1-1
		삶의 만족도	2,3	2,3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중단 생각 여부	27	37
		학업중단 생각 이유	27-1	37-1
	교육의 목표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28(1~4)	38(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9(1~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만족도		29-1	39-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30	40
	<u>여가활동 만족도</u>		<u>32</u>	<u>42</u>
	<u>여가활동 불만족 이유</u>		<u>32-1</u>	<u>42-1</u>
		하루평균 학습시간	31	41
	7. 특별보호조치	<u>경제적 착취</u>	<u>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u>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8. 일반논평	디지털 환경	디지털(온라인) 환경 인식	41(1~2)	51(1~4)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생각	42(1~4)	52(1~4)
	기후환경	기후변화 인식	40(1~5)	50(1~5)
기타	<u>인권 인식</u>	<u>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u>	=	<u>53(1~10)</u>
배경문항	출생년도, 가족구성, 부모님 학력, 다문화 가정 여부, 장애 여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 출처 : 유민상 외(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pp. 64-67의 표를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 ————— 제4장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1. 개요
-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4. 폭력 및 학대
-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8. 특별보호조치
- 9. 일반논평(제25호, 제26호 관련 지표)

4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개요¹⁴¹⁾

이 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인권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장에서는 해당 클러스터를 각 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지표들은 행정데이터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생산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의 하단에 출처를 기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¹⁴²⁾ 또한, 각 절의 내용은 소결을 두어 지표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별권으로 발간하는 기초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통계청 KOSIS를 통해 서비스되는 지표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은 2013년부터 입력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2017년 이후 자료들만 개별 지표들의 결과를 연차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개편을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지표를 시계열로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원자료는 통계청 MDIS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 아카이브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141)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142) 인권실태조사 통계 분석표의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표내 수치의 합계 수치와 전체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올림된 수치의 특성으로 인해 그래프의 수치와 표내 수치의 합계 역시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43) 144)

1) 인권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¹⁴⁵⁾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V-2-1). 법률별로는 「아동복지법」 3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건, 「청소년기본법」 1건, 「청소년복지지원법」 1건, 「청소년활동진흥법」 1건, 「초·중등교육법」 1건,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1건,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 2건이 개정되었다. 인권영역별로는 폭력 및 학대 관련 6건, 장애·기초 보건의 및 복지 관련 2건,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3건이 개정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 교권 보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지원 등의 주제에 법률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표 IV-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아동복지법」	개정 2024.1.2. 시행 2024.1.2.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③ 폭력 및 학대
「아동복지법」	개정 2024.1.23. 시행 2024.7.24.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⑤ 장애·기초 보건의 및 복지

143) 이 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144) IV장의 이 부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중분류-지표(소분류)-지표항목에 따라 단계별 소제목 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횡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도 살펴보는 연속과제이므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 자료, 타분야 통계 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등을 누적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많아, 일부는 자료 성격에 따라 출처 표기시 전년도 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 년도 참고자료를 대표로 제시하고 신규 참고자료의 출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170; 김영지 외, 2021: 93; 김영지 외, 2022: 72; 유민상 외, 2023: 7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전체 통계결과표와 그래프는 별도로 발간되는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145) 아동·청소년 법률 제·개정 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1년 동안 제·개정된 아동·청소년 법률들을 검색하여 법률별 제·개정 일과 제·개정 이유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아동복지법」	개정 2024.2.6. 시행 202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사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③ 폭력 및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3.12.26. 시행 2023.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여야 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함. 	③ 폭력 및 학대
「청소년 기본법」	개정 2024.3.26. 시행 2024.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 	③ 폭력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2023.10.24. 시행 2024.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기초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건 및 복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⑤ 장애·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2024.3.26 시행 2024.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문화 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적'하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⑥ 교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3.10.24. 시행 2024.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 교 육·여가 및 문화 적 활동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4.3.26 시행 2024.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교육청의 교육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⑥ 교·여가 문화 활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23.10.24. 시행 202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가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인 경우 출석 정지, 학급교체 등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한편,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을 및 학대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 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며, 집행 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 등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③ 폭력 및 학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9. 시행 202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인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하도록 함. 	③ 폭력 및 학대

* 출처: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6일 인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6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 * 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제·개정 법령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후 제·개정 일과 제·개정 이유를 제시하였음.
 2) 영역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영역인 ①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폭력 및 학대,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⑤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⑥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⑦ 특별보호조치, ⑧ 일반논평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제시하였음.

②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V-2-2). 이 지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각 부처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을 합산한 것을 활용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1:99-100; 김영지 외, 2022:75-76; 유민상 외, 2023: 80). 산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4.0%로 2022년 3.7%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최근 수년간의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3.4%, 2019년 3.5%, 2020년 3.6%, 2021년 3.2%, 2022년 3.7%, 2023년 4.0%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수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V-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7~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 전체 예산(A)	275,010,413,607	301,417,202,896	331,777,014,900	356,568,644,000	380,850,870,030	421,416,033,950	446,242,181,700	
유아·초중등교육	47,149,425,794	53,716,467,248	59,401,432,000	60,324,475,000	58,428,301,000	70,554,438,000	80,379,069,000	
아동·청소년 예산	소년사법	22,371,000	23,967,000	23,864,000	27,043,000	27,407,000	29,268,000	31,037,000
	아동복지	245,178,000	899,377,000	2,385,469,000	2,541,321,000	2,526,208,000	2,857,310,000	2,493,606,000
	보육	5,373,451,000	5,505,231,000	5,689,214,000	5,872,783,000	5,959,703,000	5,893,110,000	6,678,017,000
	(아동폭력예방)	11,773,000	12,251,000					
	청소년	87,169,000	77,353,000	99,909,000	122,217,000	126,724,000	156,391,000	123,501,000
	소계(B)	52,889,367,794	60,234,646,248	67,558,216,000	68,888,339,000	67,068,343,000	79,490,517,000	89,705,230,000
(B)/(A)*100(%)	19.2	20.0	20.3	19.3	17.6	18.9	20.1	
아동·청소년 인구(명)	8,480,447	8,176,335	7,964,880	7,710,946	7,483,944	7,271,460	7,077,206	
1인당 지출비용(천원)	6,237	7,367	8,487	8,945	8,962	10,932	12,675	
GDP(국내총생산)	1,730.4조원	1,782.3조원	1,919.9조원	1,933.2조원	2,071.6조원	2,161.7조원	2,236.3조원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3.1	3.4	3.5	3.6	3.2	3.7	4.0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0). 나라살림예산.
 기획재정부 (2021~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사이트(<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4년 8월 7일 인출.

-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 전체 국가 예산(A)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나라살림 예산개요」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 2019년부터 '청소년' 예산에 여성가족부의 '아동폭력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산출함.
- *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도부터 포함됨.
- * 인구 출처: 통계청 KOSIS(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 * 1인당 지출비용(천원): 아동·청소년 예산(총계)(B)/아동·청소년인구(명)
-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B)/GDP×100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V-2-3).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른다' 31.3%, '이름만 들어봤다' 48.8%,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20.0%였고, 학생인권조례는 '모른다' 41.6%, '이름만 들어봤다' 46.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12.4%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른다' 22.2%, '이름만 들어봤다' 55.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22.7%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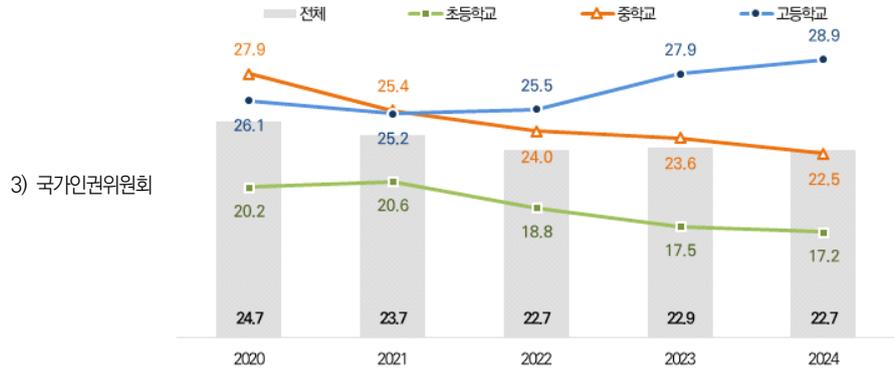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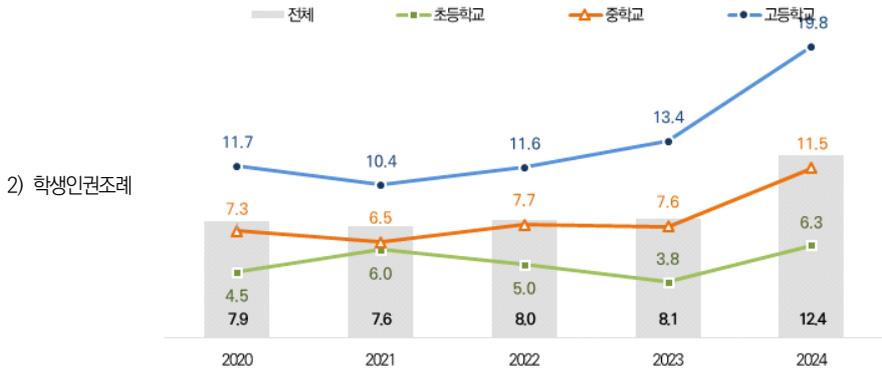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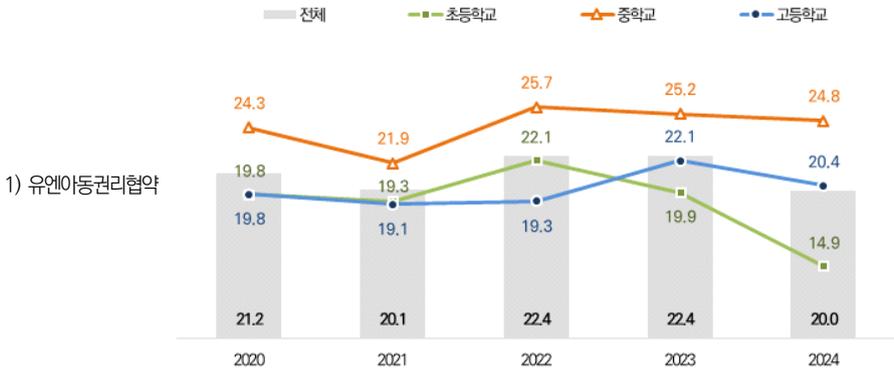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IV-2-1),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최근 조금씩 증가하다가 올해 약간 감소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최근 조금씩 증가하다가 올해 많이 증가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에 약간 증가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

표 IV-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1) 유엔아동 권리협약	전체	31.3	48.8	20.0	100.0(8,733)	1.222	
	성별	남학생	31.7	48.2	20.1		100.0(4,495)
		여학생	30.8	49.4	19.8		100.0(4,238)
	학교급	초등학교	49.8	35.3	14.9	100.0(2,976)	739.603***
		중학교	21.0	54.2	24.8	100.0(2,931)	
		고등학교	22.4	57.3	20.4	100.0(2,826)	
	지역 규모	대도시	28.3	49.0	22.7	100.0(3,359)	35.909***
		중소도시	33.0	48.5	18.6	100.0(4,160)	
		읍면지역	33.6	49.1	17.4	100.0(1,213)	
2) 학생인권 조례	전체	41.6	46.0	12.4	100.0(8,728)	48.851***	
	성별	남학생	45.1	43.5	11.4		100.0(4,492)
		여학생	37.8	48.6	13.6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58.8	34.9	6.3	100.0(2,973)	741.939***
		중학교	39.6	48.8	11.5	100.0(2,929)	
		고등학교	25.4	54.8	19.8	100.0(2,826)	
	지역 규모	대도시	41.2	46.9	11.9	100.0(3,357)	7.132
		중소도시	41.0	46.0	13.0	100.0(4,157)	
		읍면지역	44.5	43.6	11.9	100.0(1,213)	
3) 국가인권 위원회	전체	22.2	55.1	22.7	100.0(8,725)	21.319***	
	성별	남학생	24.1	53.9	21.9		100.0(4,489)
		여학생	20.1	56.4	23.6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29.2	53.6	17.2	100.0(2,972)	227.268***
		중학교	22.2	55.4	22.5	100.0(2,928)	
		고등학교	14.7	56.4	28.9	100.0(2,825)	
	지역 규모	대도시	20.8	54.3	25.0	100.0(3,356)	18.807***
		중소도시	22.9	55.3	21.8	100.0(4,156)	
		읍면지역	23.5	56.5	20.0	100.0(1,21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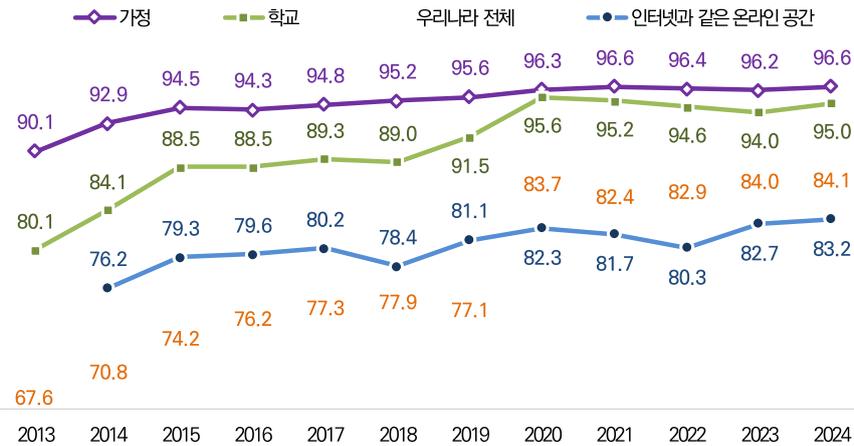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0~2024년)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별로 살펴보았다(그림 IV-2-2).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 중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96.6%), 학교(95.0%), 우리나라 전체(84.1%), 온라인 공간(83.2%)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모두 약간 높아졌다. 2013년부터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모두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인데, 최근 수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2013~2024년)

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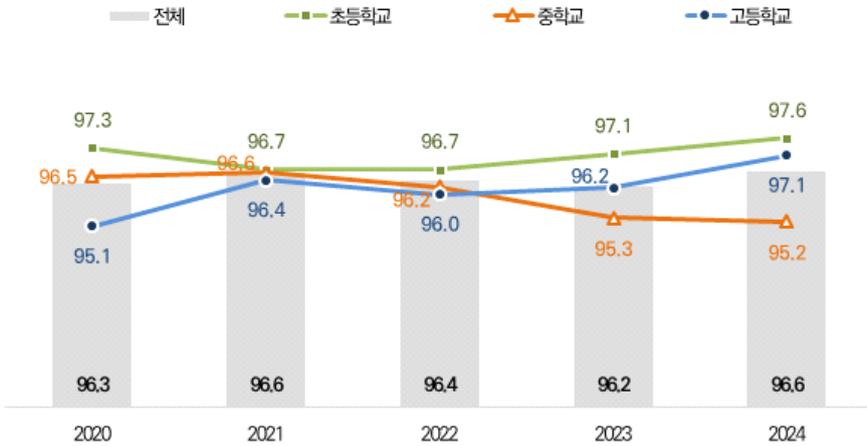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정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존중받는 편 37.1%, 매우 존중 59.6%, 합계 96.7%로 많이 높았다. 매우 존중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없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V-2-4).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V-2-3).

표 IV-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6(0.57)	0.4	3.0	37.1	59.6	100.0(8,734)	5.187
성별							
남학생	3.57(0.57)	0.5	2.7	36.5	60.3	100.0(4,494)	136.493***
여학생	3.55(0.58)	0.3	3.3	37.7	58.8	100.0(4,239)	
학교급							527.547***
초등학교	3.64(0.53)	0.2	2.2	30.6	67.0	100.0(2,975)	
중학교	3.52(0.60)	0.4	4.3	38.3	57.0	100.0(2,931)	
고등학교	3.51(0.58)	0.6	2.3	42.7	54.4	100.0(2,828)	
경제적 수준							527.547***
상	3.65(0.52)	0.2	1.8	30.4	67.6	100.0(5,231)	
중	3.46(0.58)	0.4	3.3	45.8	50.4	100.0(2,740)	
하	3.22(0.70)	1.8	10.4	52.0	35.8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3.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20~2024년)

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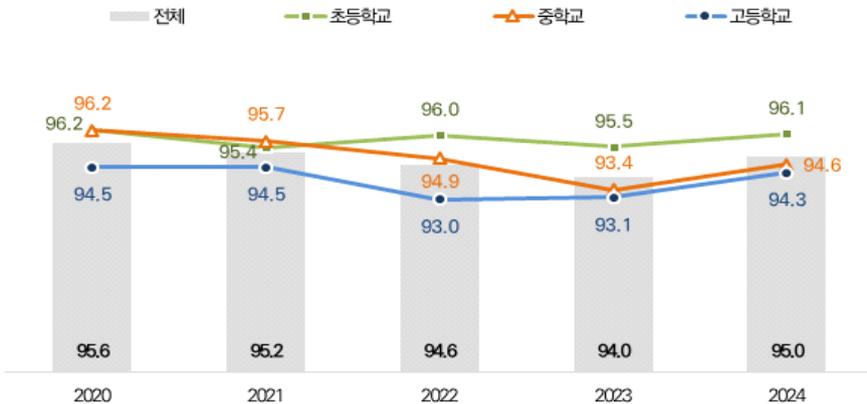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존중받는 편 54.3%, 매우 존중 40.7%, 합계 95.0%로 많이 높았다. 매우 존중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V-2-5).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V-2-4).

표 IV-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35(0.61)	1.0	4.0	54.3	40.7	100.0(8,731)	16.959***
성별							
남학생	3.35(0.62)	1.3	4.1	52.8	41.7	100.0(4,491)	148.334***
여학생	3.35(0.58)	0.6	3.9	55.8	39.7	100.0(4,240)	
학교급							203.946***
초등학교	3.45(0.59)	0.6	3.3	46.5	49.5	100.0(2,976)	
중학교	3.30(0.60)	1.0	4.3	58.0	36.6	100.0(2,929)	
고등학교	3.29(0.61)	1.3	4.5	58.5	35.7	100.0(2,827)	
경제적 수준							203.946***
상	3.41(0.60)	0.8	3.3	49.8	46.0	100.0(5,227)	
중	3.28(0.58)	0.9	4.2	60.9	34.0	100.0(2,741)	
하	3.14(0.66)	2.3	8.4	61.9	27.3	100.0(723)	

* $p < .05$,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20~2024년)

다.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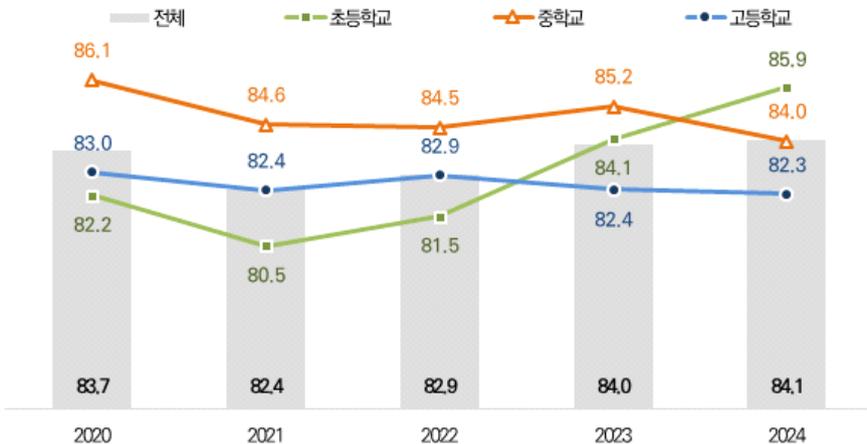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존중받는 편 58.2%, 매우 존중 25.9%, 합계 84.1%로 높았다. 매우 존중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V-2-6).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IV-2-5).

표 IV-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7(0.71)	3.0	12.9	58.2	25.9	100.0(8,721)	42.924***
성별							
남학생	3.06(0.75)	3.8	13.8	55.3	27.2	100.0(4,485)	105.461***
여학생	3.08(0.67)	2.2	12.0	61.2	24.6	100.0(4,236)	
학교급							149.810***
초등학교	3.15(0.72)	2.8	11.4	53.5	32.3	100.0(2,972)	
중학교	3.05(0.69)	2.8	13.1	60.0	24.0	100.0(2,927)	
고등학교	3.00(0.70)	3.4	14.3	61.1	21.1	100.0(2,822)	
경제적 수준							149.810***
상	3.13(0.70)	2.4	11.7	56.2	29.7	100.0(5,222)	
중	3.01(0.69)	3.2	13.6	61.8	21.3	100.0(2,738)	
하	2.84(0.77)	6.5	19.0	58.2	16.3	100.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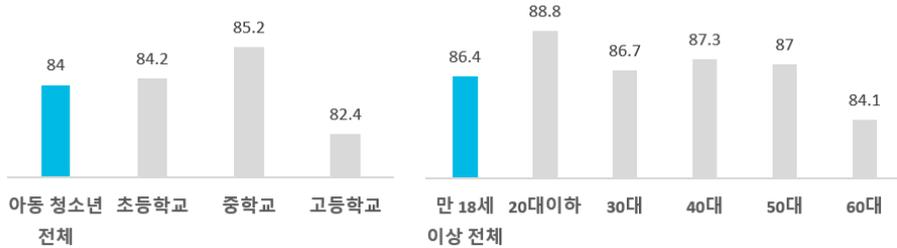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20~2024년)

전년도인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의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성인 대상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공통문항인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은 84.0%, 성인은 86.4%가 존중받는다고 응답해, 성인이 약간 더 높았다(그림 IV-2-6).



* 출처: 유민상 외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87. 국가인권위원회 (2023). 2023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p.215.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 주: 1)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2) 2023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최종 조사 표본은 9,070가구의 15,303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5일에서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였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로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조사가 병행되었다.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11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3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IV-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2023년)

라. 온라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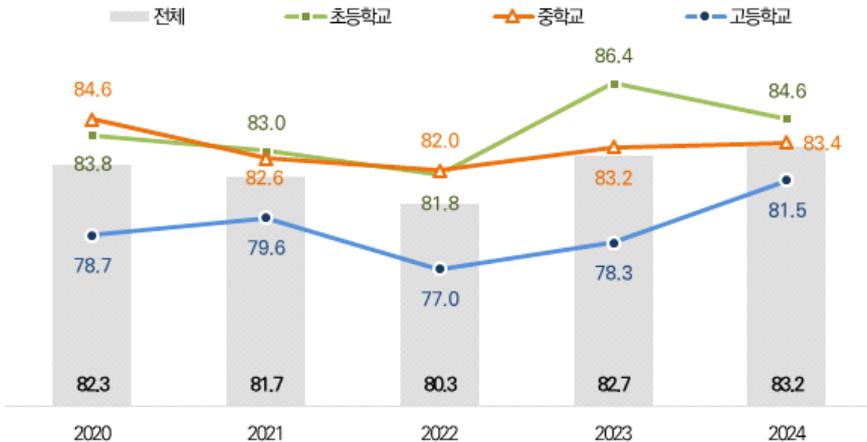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존중받는 편 57.7%, 매우 존중 25.5%, 합계 83.2%로 높았다. 매우 존중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V-2-7).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권존중 정도의 중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V-2-7).

표 IV-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4(0.75)	4.6	12.2	57.7	25.5	100.0(8,712)	101.202***
성별							
남학생	2.99(0.80)	6.1	14.4	53.9	25.6	100.0(4,482)	103.518***
여학생	3.09(0.68)	3.1	9.9	61.7	25.3	100.0(4,231)	
학교급							112.384***
초등학교	3.12(0.77)	4.5	10.9	52.9	31.7	100.0(2,960)	
중학교	3.03(0.73)	4.4	12.2	59.3	24.1	100.0(2,927)	
고등학교	2.97(0.73)	5.0	13.5	61.1	20.4	100.0(2,825)	
경제적 수준							112.384***
상	3.10(0.74)	4.0	11.3	55.8	29.0	100.0(5,214)	
중	2.98(0.73)	4.9	13.0	60.9	21.1	100.0(2,737)	
하	2.85(0.79)	7.8	16.2	59.5	16.5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2020~2024년)

③ 인권의식 및 태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관련 인식을 살펴보았다(표 IV-2-8).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는 65.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3.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1%)고 하였고,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82.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55.8%, 매우 그렇다 26.3%)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는 85.9%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60.8%, 매우 그렇다 25.1%)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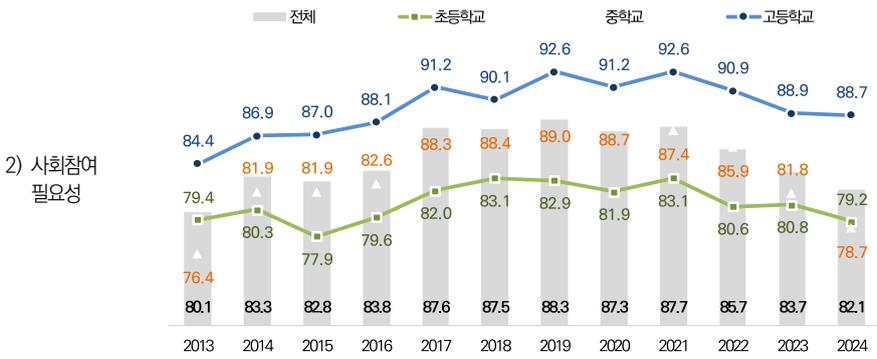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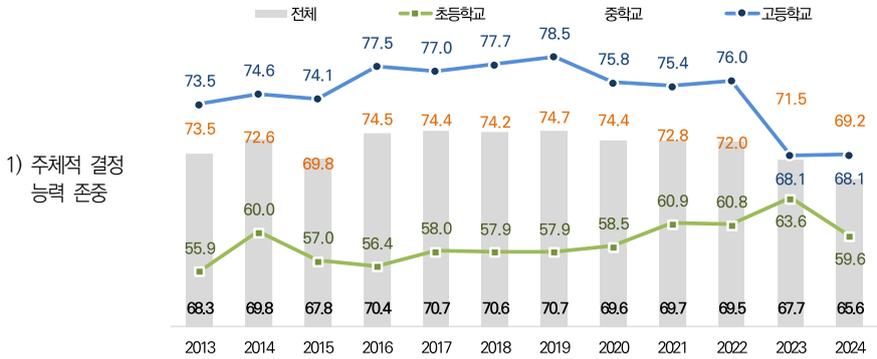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주체적 결정능력,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최근 수년간 약간씩 감소하고 있고, 자치조직의 의의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최근 수년간 약간씩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IV-2-8).

표 IV-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주체적 결정 능력 부족 (*부정적 질문)	전체	2.16(0.84)	23.5	42.1	29.6	4.8	100.0(8,730)	38.676***		
	성별	남학생	2.21(0.85)	22.2	40.5	31.6	5.7		100.0(4,494)	
		여학생	2.10(0.82)	24.8	43.8	27.5	3.9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2.25(0.90)	23.4	36.2	32.4	8.1		100.0(2,972)	150.221***
		중학교	2.09(0.80)	24.7	44.5	28.0	2.8		100.0(2,931)	
고등학교		2.13(0.79)	22.3	45.8	28.3	3.5	100.0(2,827)			
2) 사회참여 필요성	전체	3.05(0.74)	3.8	14.1	55.8	26.3	100.0(8,728)	92.342***		
	성별	남학생	2.98(0.78)	5.0	16.5	54.2	24.3		100.0(4,493)	
		여학생	3.12(0.70)	2.5	11.5	57.4	28.5		100.0(4,235)	
	학교급	초등학교	3.03(0.82)	5.5	15.2	49.5	29.8		100.0(2,968)	208.795***
		중학교	2.95(0.73)	3.9	17.4	58.0	20.6		100.0(2,933)	
고등학교		3.15(0.66)	1.9	9.4	60.1	28.6	100.0(2,828)			
3) 자치조직 의의	전체	3.08(0.69)	3.0	11.1	60.8	25.1	100.0(8,722)	63.934***		
	성별	남학생	3.03(0.72)	3.7	13.2	59.8	23.4		100.0(4,490)	
		여학생	3.13(0.66)	2.3	8.8	62.0	26.9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3.19(0.72)	2.8	9.6	53.6	34.0		100.0(2,965)	192.630***
		중학교	3.01(0.68)	3.4	12.1	64.1	20.3		100.0(2,929)	
고등학교		3.03(0.66)	2.8	11.6	65.0	20.6	100.0(2,828)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첫 번째 문항은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부정형 질문이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자치조직 의의 문항은 초등학교 조사에는 2019년부터 포함됨. 2022년 조사부터 '학교의 문제'에서 '학교나 사회 문제로 수정함.'

그림 IV-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2013~2024년)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차별관련 인식을 살펴보았다(표 IV-2-9).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96.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9.0%, 매우 그렇다 57.3%)고 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 안 된다’는 질문에는 97.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2.7%, 매우 그렇다 74.6%)고 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96.6%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4.8%, 매우 그렇다 71.8%)고 하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94.2%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3.1%, 매우 그렇다 61.1%)고 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92.8%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5.5%, 매우 그렇다 57.3%)고 하였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의견표명권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작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였고,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작년까지 약간씩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작년에 약간 증가하였다가 올해 다시 약간 감소하였고,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평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작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IV-2-9).

표 IV-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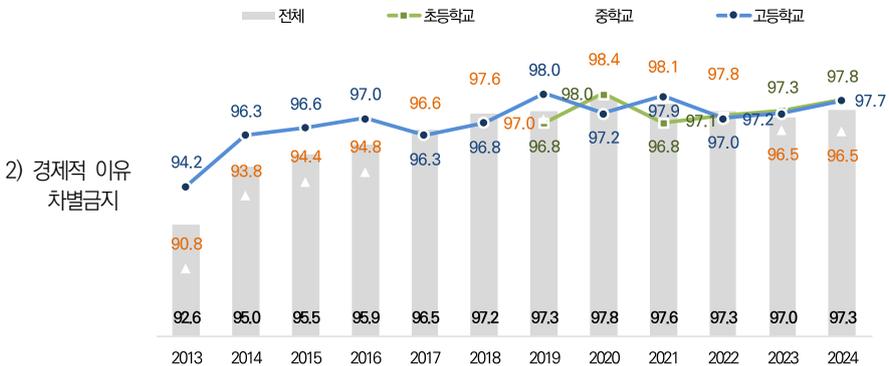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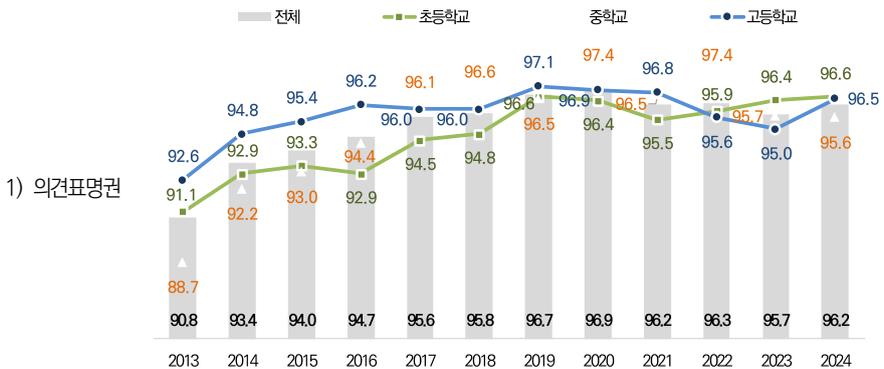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의견표명권	전체	3.53(0.60)	1.0	2.8	39.0	57.3	100.0(8,717)	184.024***	
	학교급	초등학교	3.63(0.58)	0.9	2.5	29.5	67.1		100.0(2,963)
		중학교	3.47(0.62)	1.3	3.1	43.1	52.5		100.0(2,926)
		고등학교	3.48(0.59)	0.8	2.7	44.5	52.0		100.0(2,828)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전체	3.71(0.56)	1.2	1.5	22.7	74.6	100.0(8,728)	365.455***	
	학교급	초등학교	3.83(0.48)	1.2	1.0	11.2	86.5		100.0(2,972)
		중학교	3.64(0.60)	1.5	2.0	27.8	68.7		100.0(2,932)
		고등학교	3.65(0.56)	0.9	1.4	29.6	68.2		100.0(2,825)
3) 양성평등	전체	3.67(0.58)	1.2	2.1	24.8	71.8	100.0(8,719)	331.632***	
	학교급	초등학교	3.81(0.49)	1.0	1.2	13.9	83.8		100.0(2,970)
		중학교	3.62(0.61)	1.5	2.5	29.0	67.1		100.0(2,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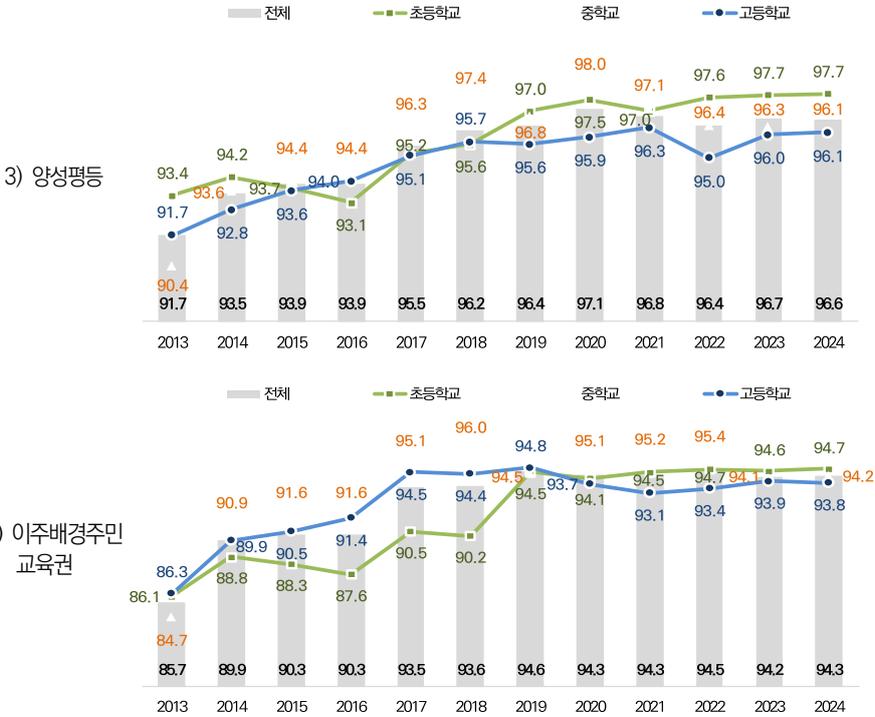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4) 아주배경 주민 교육권 평등	고등학교	3.59(0.61)	1.2	2.7	31.9	64.2	100.0(2,824)	283.806***	
	전체	3.54(0.66)	1.7	4.0	33.1	61.1	100.0(8,728)		
	학교급	초등학교	3.66(0.63)	1.7	3.6	22.0	72.7		100.0(2,971)
		중학교	3.50(0.66)	1.7	4.1	36.7	57.6		100.0(2,929)
		고등학교	3.45(0.67)	1.9	4.3	41.1	52.7		100.0(2,828)
5) 성장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전체	3.47(0.71)	2.8	4.4	35.5	57.3	100.0(5,757)	26.234***	
	학교급	중학교	3.52(0.67)	2.3	3.4	34.7	59.6		100.0(2,930)
		고등학교	3.43(0.74)	3.3	5.5	36.3	54.9		100.0(2,827)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성장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문항은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 조사에 하위문항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2) 양성평등 문항은 2022년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2023년부터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로 변경되었음.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문항은 초등학교 조사에는 2019년부터 포함됨.

그림 IV-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13~2024년)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여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3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175회(5,245명), 방문 프로그램 360회(5,277명), 사이버 인권교육 2,747회(584,760명), 인권특강 1,278회(53,829명),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1,994회(113,021명)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표 IV-2-10). 2023년 전체 6,554회(762,132명)로 2022년보다 횟수나 인원 모두 많이 증가했는데,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은 감소하였고,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플랫폼공동 활용교육은 증가하였다(표 IV-2-10).

표 IV-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2024년)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2021	4,607	351,463	257	6,279	322	4,332	1,677	205,738	1,012	33,669	1,339	101,445
2022	5,804	582,733	214	5,947	423	6,488	2,419	433,244	1,076	46,837	1,672	90,217
2023	6,554	762,132	175	5,245	360	5,277	2,747	584,760	1,278	53,829	1,994	113,021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92.

② 인권교육 경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학교, 학교 밖 기관 등)은 49.0%였는데, 여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았다(표 IV-2-11).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수년간 약간씩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약간씩 감소하였다(그림 IV-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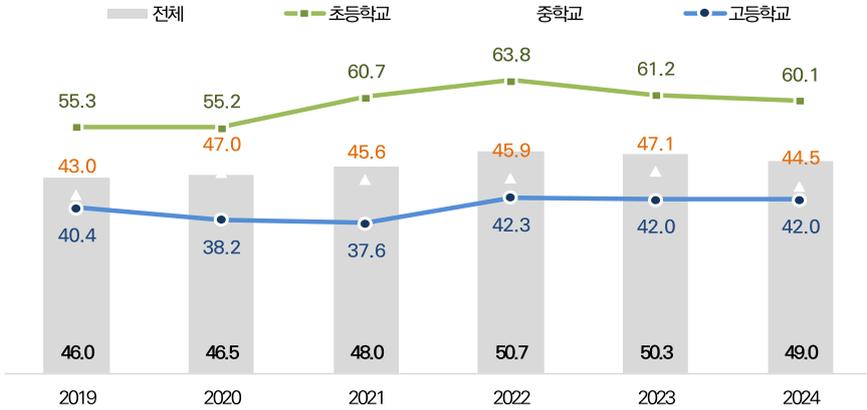
표 IV-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9.0	51.0	100.0(8,685)	
성별	남학생	43.8	56.2	100.0(4,469)	97.546***
	여학생	54.4	45.6	100.0(4,216)	
학교급	초등학교	60.1	39.9	100.0(2,948)	223.854***
	중학교	44.5	55.5	100.0(2,913)	
	고등학교	42.0	58.0	100.0(2,824)	
학업성적	상	56.7	43.3	100.0(3,329)	152.316***
	중	46.5	53.5	100.0(3,438)	
	하	39.7	60.3	100.0(1,884)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9년 조사부터 '횟수→경험유무'로 척도 변경



* 주: 1) '있다' 응답값(단위: %)
 2) 2019년부터 '횟수' → '경험유무'로 척도 변경됨.

그림 IV-2-10. 인권교육 경험(2019-2024년)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를 살펴본 결과, 학교 교과수업시간 76.8%,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4.1%,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2.0%, 기타 1.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과수업시간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다(표 IV-2-12).

표 IV-2-12.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2024년)

(단위 : %, 명)

구분	학교 교과 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76.8	34.1	12.0	1.8	100.0(4,213)	
학교급	초등학교	85.4	23.4	13.5	3.6	100.0(1,756)
	중학교	79.9	32.5	13.2	0.6	100.0(1,286)
	고등학교	60.6	52.0	8.6	0.3	100.0(1,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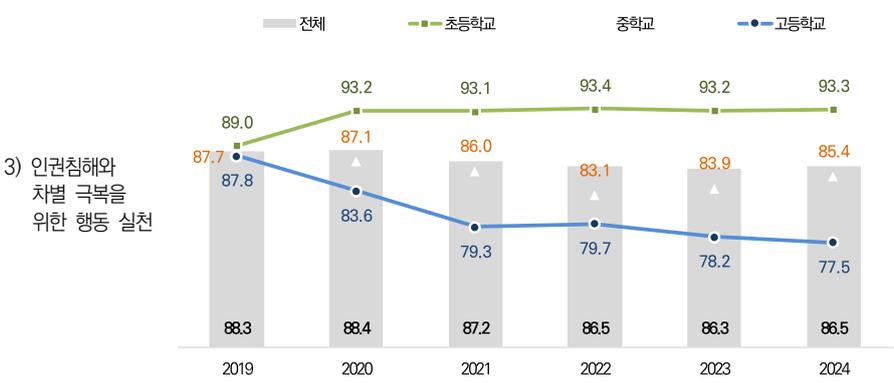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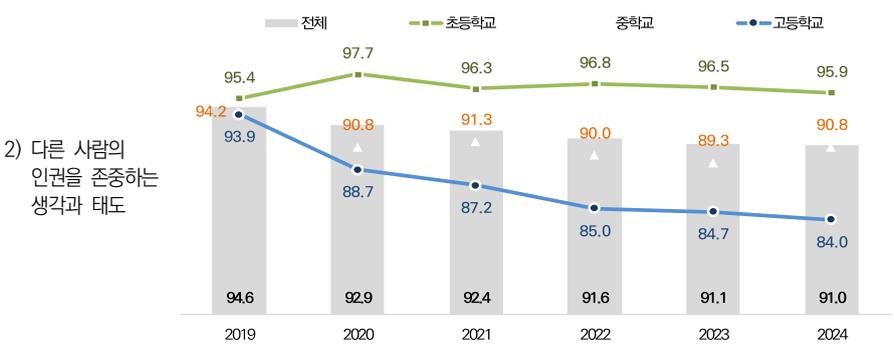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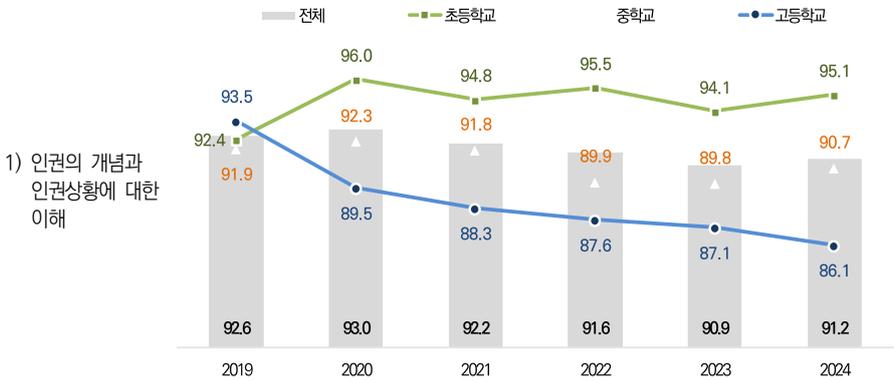
또한,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정도와 관련하여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는 91.3%(도움이 되는 편이다 61.8%, 매우 도움이 된다 29.5%),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에는 91.1%(도움이 되는 편이다 53.1%, 매우 도움이 된다 38.0%),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는 86.5%(도움이 되는 편이다 52.5%, 매우 도움이 된다 34.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IV-2-13).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는 작년까지 약간씩 감소하다가 올해 약간 증가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는 최근 수년간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은 작년까지 약간씩 감소하다가 올해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IV-2-11).

표 IV-2-13.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전체	3.19(0.64)	1.9	6.8	61.8	29.5	100.0(4,209)
	초등학교	3.34(0.60)	1.0	3.9	54.7	40.3	100.0(1,751)
	중학교	3.15(0.62)	1.9	7.4	64.6	26.1	100.0(1,285)
	고등학교	3.00(0.64)	3.4	10.5	69.1	17.0	100.0(1,173)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전체	3.27(0.68)	2.1	6.9	53.1	38.0	100.0(4,207)
	초등학교	3.49(0.61)	1.0	3.1	41.6	54.4	100.0(1,748)
	중학교	3.21(0.65)	1.8	7.4	58.4	32.4	100.0(1,285)
	고등학교	3.00(0.69)	3.9	12.1	64.4	19.6	100.0(1,173)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전체	3.18(0.73)	2.9	10.6	52.5	34.0	100.0(4,208)
	초등학교	3.42(0.66)	1.5	5.2	43.4	50.0	100.0(1,748)
	중학교	3.11(0.72)	3.0	11.6	56.5	28.9	100.0(1,286)
	고등학교	2.88(0.72)	4.8	17.7	61.7	15.8	100.0(1,17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2019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그림 IV-2-11.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2019~2024년)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최근 1년간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V-2-14).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차별 피해 경험은 성별 14.2%, 학업성적 13.6%, 나이 13.2%, 외모 및 신체조건 14.7%, 경제적 이유 1.1%, 사는 동네 1.9%, 종교 1.3%, 가족 유형 0.5%, 장애 0.4%, 다문화가정 0.9%였다. 최근 1년간 차별 가해 경험은 성별 6.8%, 학업성적 7.5%, 나이 5.9%, 외모 및 신체조건 9.6%, 경제적 이유 0.9%, 사는 동네 1.0%, 종교 0.8%, 가족 유형 1.0%, 장애 2.9%, 다문화가정 0.9%의 분포를 보였다. 차별 피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성별, 학업성적, 나이 순으로 높았고,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나이 순으로 높았다.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차별 피해 경험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성별,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이 올해 약간 증가하였고, 차별 가해 경험도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외모·신체조건, 장애가 올해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IV-2-12).

표 IV-2-14.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2024년)

(단위 : %)

차별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성별	85.9	9.6	2.5	1.4	0.7	93.2	5.2	0.8	0.4	0.4
2) 학업성적	86.4	7.5	3.1	1.9	1.1	92.4	5.0	1.5	0.6	0.4
3) 나이	86.9	8.8	2.7	1.1	0.6	94.1	3.9	1.2	0.5	0.3
4) 외모·신체조건	85.2	8.2	2.6	2.3	1.6	90.3	5.8	1.9	1.0	0.9
5) 경제적 이유	99.0	0.6	0.2	0.1	0.2	99.1	0.5	0.2	0.1	0.1
6) 고향/지역	98.1	1.3	0.3	0.1	0.2	98.9	0.6	0.2	0.1	0.1
7) 종교	98.7	0.9	0.2	0.1	0.1	99.2	0.4	0.2	0.1	0.1
8) 가족유형	99.5	0.4	0.1	0.0	0.0	99.1	0.5	0.2	0.1	0.2
9) 장애	99.7	0.2	0.1	0.0	0.1	97.0	1.9	0.5	0.2	0.3
10) 다문화가정	99.1	0.5	0.2	0.1	0.1	99.1	0.5	0.2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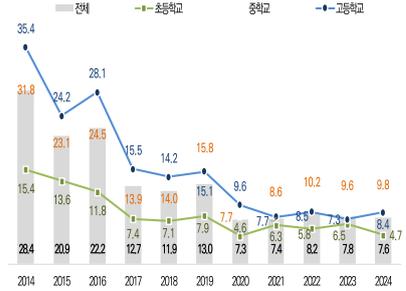
차별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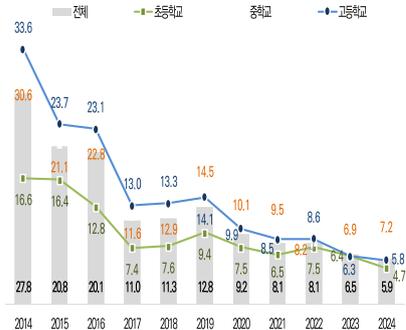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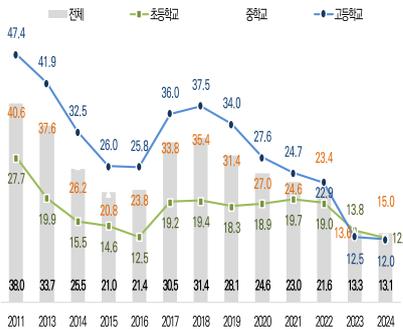
차별 가해 경험



2) 학업 성적



3) 나이



4) 외모·신체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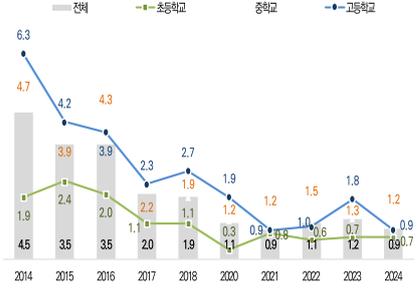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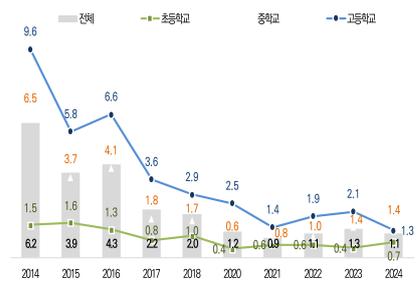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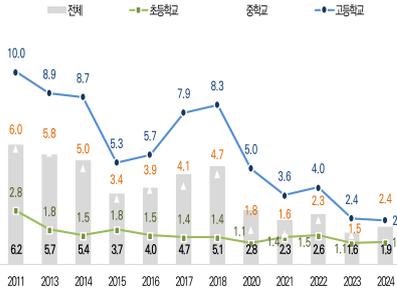
차별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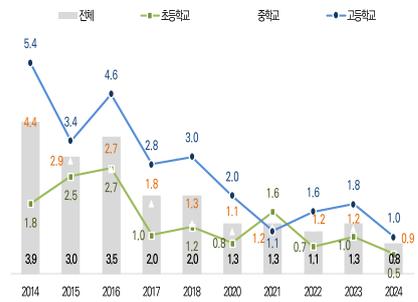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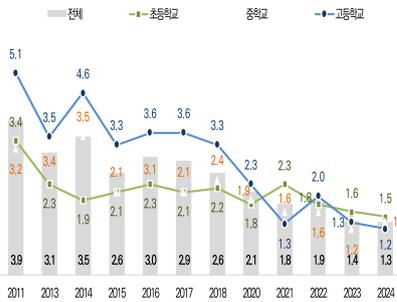
차별 가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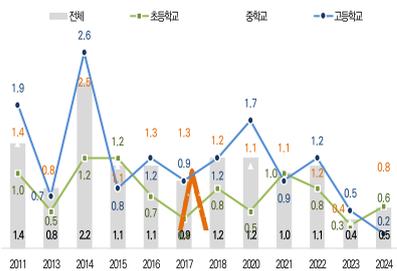
6) 교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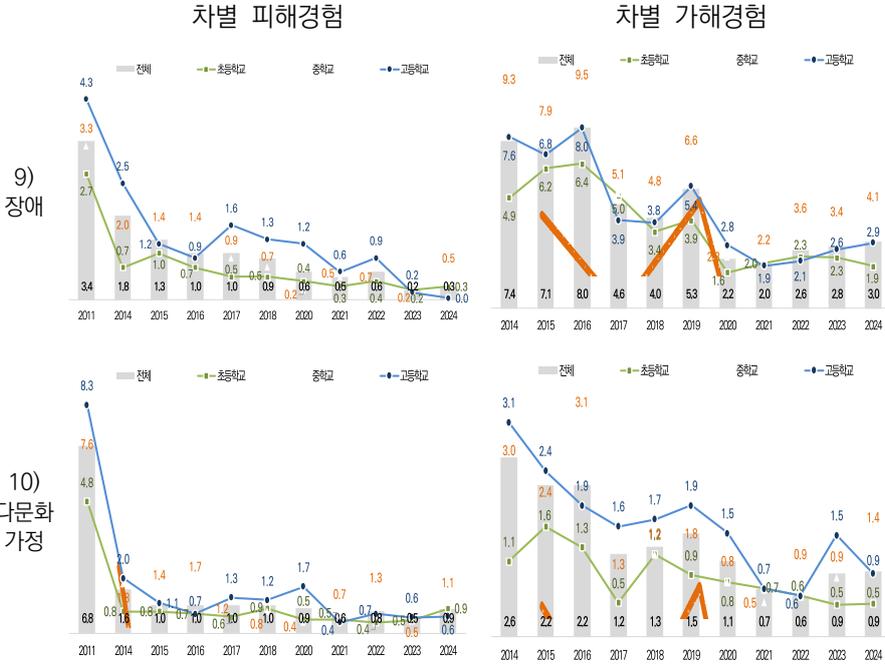
7) 종교



8) 가족 유형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주: 1)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차별 피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6개 문항과 차별 가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등 3개 문항은 2019년 제외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됨.

그림 N-2-12. 차별 경험(2011~2024년)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자체평가 지원과 전문평가 수행 및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데, 2019년 1차 시범운영과 2020년 2차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1년에는 99개 지자체에서 237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건의 전문평가(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영향평가,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영향평가,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140개 지자체에서 509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4건의 전문평가(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전문영향평가, 재난관리 정책 전문영향평가,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

향평가, 여가·놀이·문화 정책 전문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2023년에는 23년 자체평가 및 21년 자체평가의 이행점검을, 4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연구(아동주거지원정책,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진로교육정책, 아동 의료보장정책)를 실시하였다 (표 IV-2-15).

표 IV-2-15.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현황(2021~2023년)

연도	추진경과
2021	자체평가 본 사업 추진 1년차(99개 지자체, 237건)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21.12.1.)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1.12.)/ii)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및 교육영상 4편 개발('21.12.)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연구('21.7.)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축·운영('21.2.~12.) [전문평가 실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영향평가('21.10.)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영향평가('21.10.)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21.10.)
2022	자체평가 본 사업 추진 2년차(140개 지자체, 509건)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포상('22.12.)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 발간('22.1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및 작성사례집 발간('22. 5.)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22.1.~12.) [전문평가 실시] 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전문영향평가('22.10.) 재난관리 정책 전문영향평가('22.10.)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22.10.) 여가·놀이·문화 정책 전문영향평가('22.11.)
2023	'23년 자체평가 및 '21년 자체평가의 이행점검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23.5.)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연구 4건(아동주거지원정책,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진로교육정책, 아동 의료보장정책, '23.12.)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3.12.)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97&cntntslid=1326>에서 2024년 9월 15일 인출.

3) 소결

이 절에서는 이 연구 지표체계의 대분류 영역 중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의 하위 지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법률들의 제·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폭력 및 학대 관련 6건,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관련 2건,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3건이 개정되었다. 2023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4.0%로 2022년 3.7%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기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0.0%, 학생인권조례 12.4%, 국가인권위원회 22.7%로 낮았는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올해 증가했고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올해 감소했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는 가정(96.6%), 학교(95.0%), 우리나라 전체(84.1%), 온라인 공간(8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모두 전년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에서 참여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주체적 결정 능력에는 65.6%,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는 82.1%, 자치조직의 의의에는 8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에서 차별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의견표명권에는 96.3%가,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에는 97.3%가, 양성평등에는 96.6%가, 이주배경주민 교육권에는 94.2%가,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에는 9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자치조직의 의의, 의견표명권,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평등만 올해 약간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교육 경험은 49.0%로 작년보다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장소는 학교 교과수업시간 76.8%,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4.1%,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2.0% 순이었다.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91.3%,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91.1%,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86.5%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7%, 성별 14.2%, 학업성적 13.6%, 나이 13.2% 순으로 높았고,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9.6%, 학업성적 7.5%, 성별 6.8%, 나이 5.9% 순으로 높았다. 종단적 추세를 보면, 차별 피해 경험은 수년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는데, 올해 성별,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이 약간 증가하였고, 차별 가해 경험도 수년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는데, 올해 외모·신체조건, 장애가 약간 증가하였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99개 지자체에서 237건의 자체평가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건의 전문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140개 지자체에서 509건의 자체평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4건의 전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23년 자체평가 및 21년 자체평가의 이행점검과 4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법률들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은 높은 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인권교육 경험은 부족한 상태이고, 여전히 외모 및 신체조건, 성별, 학업성적, 나이 등에 대한 차별피해 경험과 차별가해 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¹⁴⁶⁾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90.1%, 상급학교 진학결정시 나의 의사 존중 93.3%,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존중 93.5%,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 89.2%, 쉬는 시간 선택 존중 86.9%,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존중 89.5%로 모든 항목의 의견 존중 응답이 높았다(표 IV-3-1).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문항만 전년도에 비해 약간 올라갔고 다른 문항들은 최근 수년간 약간씩 낮아졌다(그림 IV-3-1).

146) 이 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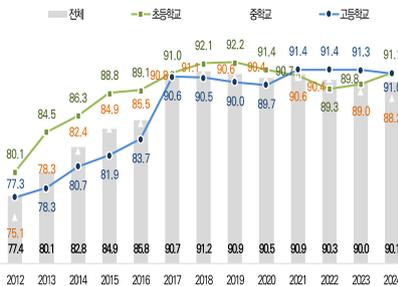
표 IV-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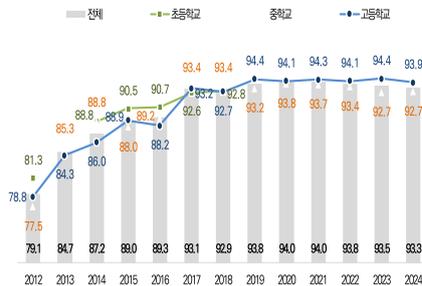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29(0.68)	1.3	8.6	49.4	40.7	100.0(8,734)	34.052***	
	학교급	초등학교	3.34(0.67)	1.3	7.6	47.2	43.8		100.0(2,982)
		중학교	3.25(0.69)	1.3	10.4	50.2	38.0		100.0(2,928)
		고등학교	3.30(0.66)	1.2	7.8	50.9	40.0		100.0(2,824)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2(0.65)	1.0	5.7	43.7	49.7	100.0(5,749)	7.128	
	학교급	중학교	3.40(0.65)	1.0	6.3	44.5	48.2		100.0(2,927)
		고등학교	3.44(0.64)	1.0	5.1	42.8	51.2		100.0(2,822)
3) 진로(직업) 결정	전체	3.49(0.64)	0.7	5.8	37.6	56.0	100.0(8,695)	90.133***	
	학교급	초등학교	3.56(0.62)	0.5	5.3	31.8	62.4		100.0(2,972)
		중학교	3.42(0.66)	1.0	6.6	41.8	50.6		100.0(2,910)
고등학교		3.48(0.63)	0.6	5.4	39.2	54.8	100.0(2,813)		
4) 공부시간· 방법 결정	전체	3.31(0.70)	1.6	9.2	46.2	43.1	100.0(5,739)	74.676***	
	학교급	중학교	3.23(0.74)	2.3	11.6	46.5	39.6		100.0(2,920)
		고등학교	3.38(0.65)	0.8	6.7	45.8	46.7		100.0(2,818)
5) 쉬는시간 결정	전체	3.25(0.73)	2.3	10.8	46.9	40.0	100.0(8,678)	74.079***	
	학교급	초등학교	3.24(0.74)	2.2	11.6	46.6	39.6		100.0(2,942)
		중학교	3.18(0.77)	3.3	12.7	46.8	37.2		100.0(2,920)
고등학교		3.33(0.68)	1.3	7.9	47.3	43.5	100.0(2,817)		
6)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전체	3.30(0.71)	2.0	8.5	46.7	42.8	100.0(5,741)	66.444***	
	학교급	중학교	3.24(0.74)	2.4	11.1	46.7	39.8		100.0(2,922)
		고등학교	3.37(0.67)	1.6	5.7	46.8	45.9		100.0(2,82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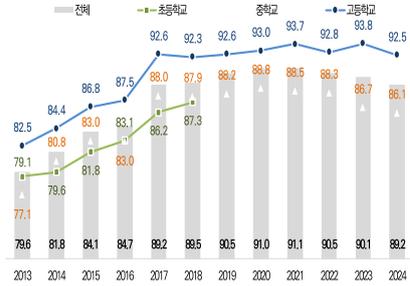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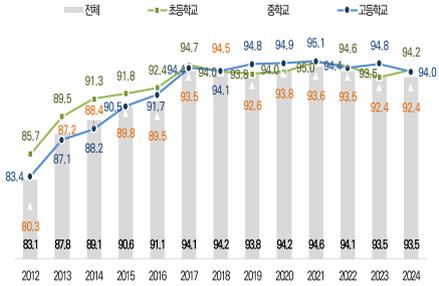
* 주: 쉬는시간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문항은 2023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2) 상급학교 결정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시간·방법 결정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IV-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12-2024년)

(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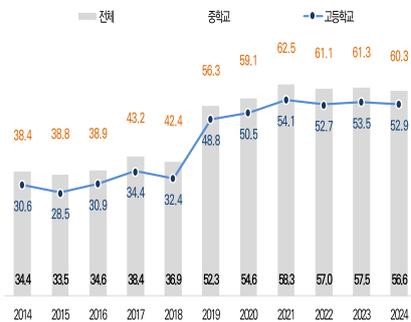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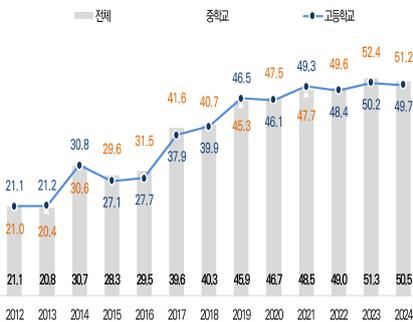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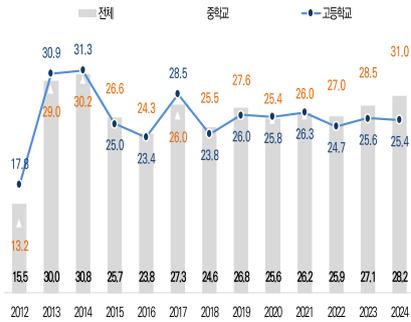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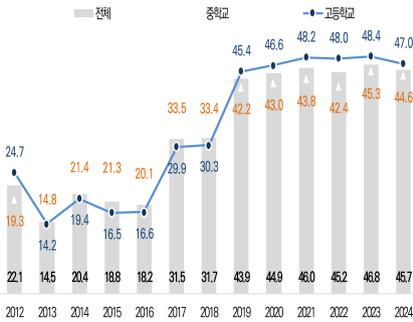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문항 45.7%,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문항 28.2%,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문항 50.5%,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문항 5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문항과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문항은 차이가 없었고,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문항과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문항은 중학생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3-2).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문항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문항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그림 IV-3-2).

표 IV-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선생님의 간섭없이 활동(자율권)
학교급	중학교	8.7	44.6	46.8	100.0(2,921)	
	고등학교	9.3	47.0	43.8	100.0(2,817)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역문항)	전체	36.0	28.2	35.7	100.0(5,736)	27.693***
	중학교	33.3	31.0	35.7	100.0(2,919)	
	고등학교	38.8	25.4	35.8	100.0(2,817)	
3) 예산·장소·시간 보장	전체	5.0	50.5	44.5	100.0(5,728)	4.135
	중학교	5.3	51.2	43.4	100.0(2,916)	
	고등학교	4.6	49.7	45.7	100.0(2,812)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4.9	56.6	38.5	100.0(5,731)	34.486***
	중학교	4.0	60.3	35.7	100.0(2,917)	
	고등학교	5.8	52.9	41.3	100.0(2,815)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1, 3, 4번 그래프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2) 2번 그래프는 '아니다' 응답값(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이 없음을 나타냄.)

그림 IV-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2012~2024년)

②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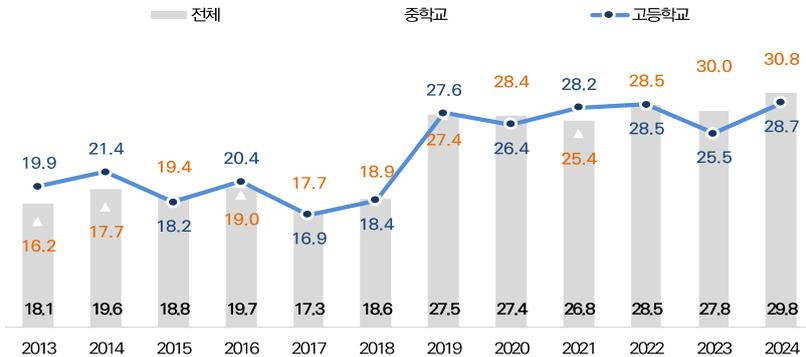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항목 29.8%,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항목 5.8%, 참여할 수 없음 항목 5.1%로 나타났다.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항목의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중학생이 약간 더 높았다(표 IV-3-3).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의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약간씩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IV-3-3).

표 IV-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24년)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5.1	5.8	29.8	59.3	100.0(5,659)	64.560***
성별						
남학생	6.3	6.4	25.4	62.0	100.0(2,895)	18.286***
여학생	3.9	5.2	34.4	56.5	100.0(2,764)	
학교급						18.286***
중학교	4.8	6.9	30.8	57.5	100.0(2,879)	
고등학교	5.4	4.7	28.7	61.2	100.0(2,780)	

* $p < .05$, ** $p < .01$, *** $p < .001$.



*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13~2024년)

③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1.0%(그런 편이다 53.3%, 매우 그렇다 27.7%)로 높았다.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다(표 IV-3-4).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참여 정도가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수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IV-3-4).

표 IV-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4(0.77)	4.4	14.6	53.3	27.7	100.0(8,714)	40.061***
성별							
남학생	3.06(0.78)	5.1	12.5	53.9	28.4	100.0(4,486)	1209.220***
여학생	3.03(0.76)	3.6	16.8	52.6	27.0	100.0(4,228)	
학교급							1209.220***
초등학교	3.38(0.73)	3.1	5.5	41.6	49.7	100.0(2,972)	
중학교	2.92(0.74)	4.6	17.4	58.9	19.1	100.0(2,924)	
고등학교	2.81(0.73)	5.5	21.3	59.8	13.5	100.0(2,818)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2012~2024년)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정책 분야 대표적 참여기구인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참여 아동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서 제안한 14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표 IV-3-5)(보건복지부, 2023.8.10.).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해당 부처에 전달되며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표 IV-3-5.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사설인 노키즈존을 없애 주세요.
2. 아동 기획 놀이터를 지자체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시켜주세요.
3.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4.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을 연 2회 시행해 주세요.
5. 더 다양한 과목과 난이도, 시간대가 있도록 방과후 수업을 보충하여 주세요.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 아동의 의견을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해 장애 아동의 이동권을 개선시켜 주세요.
7. 아동이 독립 후에 필요한 실생활 속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강연을 실시해 주세요.
8.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고졸 등 검정고시 및 대학 입시 준비 학교 밖 아동에게 연 1회 5만 원의 온라인교육비를 지원해 주세요.
9. 아동에게 다양한 직업을 정기적(1년 단위)으로 교사를 초청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세요.
10. 세금이나 대출 등과 같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교과 내용에 추가해주세요.
11. 아동들이 더 발전된 디지털 미디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매 학기 2회 이상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12. 국가에서 학교별 교육의 질 불균형을 해소해 주세요.
13. 9세-18세의 아동이 체험형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세요.
14.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적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2023.08.10.) 보도자료: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에서 2024년 7월 9일 인출.

다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청소년정책 분야 대표적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243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331개 운영하고 있고(표 IV-3-6),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2023년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 건강 등 3개 분야 34개 과제를 직접 제안했는데, 관련 정부 부처에서 33개를 수용하여 의제수용률 97.1%를 기록하였다(표 IV-3-7).

표 IV-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2014~2023년)

(단위 :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청소년참여위원회	197 (81.1)	204 (84.0)	216 (88.9)	221 (90.9)	230 (94.7)	239 (98.4)	239 (98.4)	240 (98.8)	243	243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331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19-120. 재구성.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150-152. 재구성.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p.125-126. 재구성.

*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율 = 위원회수/전국 기초지자체 수*100

표 IV-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3년)

연도	의제	수용률(%)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희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2021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3.3)
2022	•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 뉴미디어·유희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4개 분야 32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90.6)
2023	• 70억 조별과제, 청소년이 먼저 용기 내다! -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건강 등 3개 분야 34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97.1)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21-122.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154.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p.128.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2%(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은 2.2%)였다. 배경변수별로는 여학생이, 초등학교, 대도시 지역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3-8).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수년 동안 11%를 중심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다(그림 IV-3-5).

표 IV-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49.4	39.4	9.0	2.2	11.2	100.0(8,727)	75.663***
성별	남학생 53.8	35.4	8.6	2.2	10.8	100.0(4,492)	
	여학생 44.7	43.6	9.5	2.2	11.7	100.0(4,235)	27.008***
학교급	초등학교 47.6	40.2	10.4	1.8	12.2	100.0(2,979)	
	중학교 52.3	37.3	7.8	2.5	10.3	100.0(2,926)	
	고등학교 48.2	40.6	8.9	2.2	11.1	100.0(2,822)	15.262*
지역 규모	대도시 47.2	41.0	9.6	2.2	11.8	100.0(3,356)	
	중소도시 50.9	38.1	9.1	2.0	11.1	100.0(4,156)	
	읍면지역 50.4	39.5	7.5	2.6	10.1	100.0(1,215)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교 응답이 포함됨.

그림 IV-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2012~2024년)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 결정 및 해결 과정에 당사자 의견 및 참여권 보장 항목에 대해 72.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54.0%, 매우 그렇다 18.1%)고 하였다. 배경별수별로는 여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IV-3-9).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후 약간씩 감소하다가 올해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IV-3-6).

표 IV-3-9.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5(0.76)	4.8	23.1	54.0	18.1	100.0(8,712)	13.540**
성별							
남학생	2.84(0.78)	5.6	22.5	53.9	18.0	100.0(4,478)	610.343***
여학생	2.87(0.75)	3.9	23.7	54.2	18.2	100.0(4,234)	
학교급							610.343***
초등학교	3.11(0.70)	2.0	13.5	56.2	28.2	100.0(2,974)	
중학교	2.82(0.75)	4.9	24.0	55.6	15.5	100.0(2,919)	
고등학교	2.62(0.77)	7.6	32.3	50.0	10.0	100.0(2,818)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13~2024년)

나. 참여의 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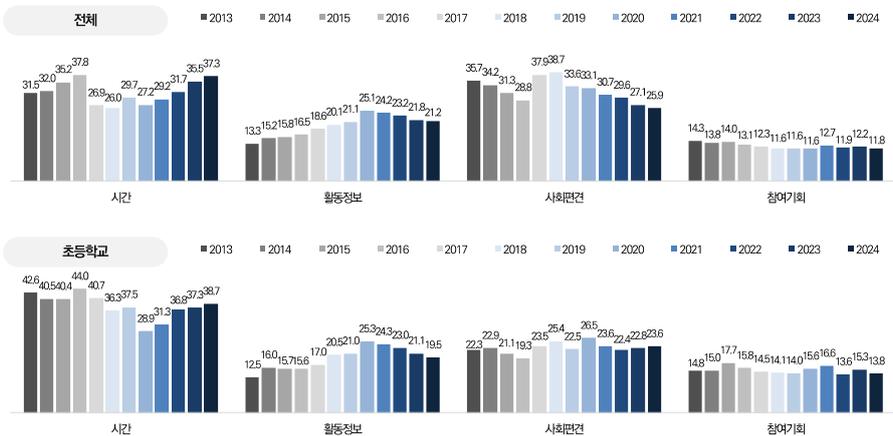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으로는 시간 부족 37.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5.9%, 참여활동정보 부족 21.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1.8%, 부모님 반대 2.0%,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함 1.8%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10). 종단적 추세를 살펴 보면, 최근 수년간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시간 부족은 늘어나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나 참여활동정보 부족은 줄어들고 있다(그림 IV-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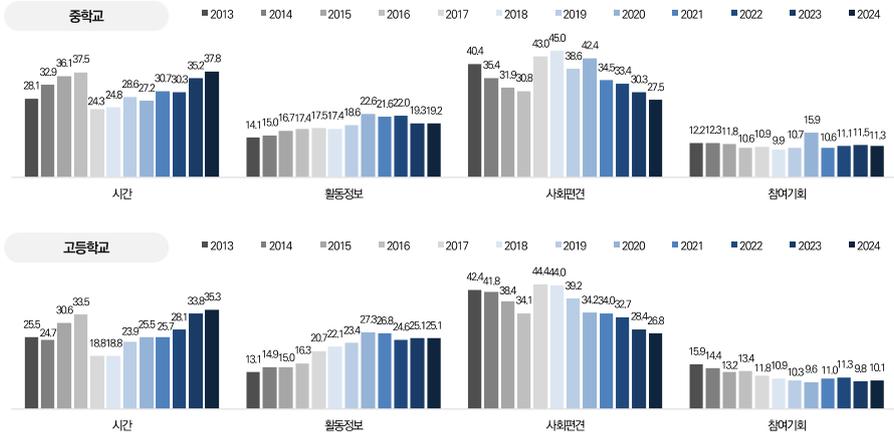
표 IV-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2024년)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 (보호자) 반대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37.3	21.2	2.0	1.8	25.9	11.8	100.0(8,659)	68.983***
성별	남학생	40.5	19.9	2.1	2.4	24.6	100.0(4,443)	
	여학생	33.9	22.6	1.9	1.2	27.4	100.0(4,216)	
학교급	초등학교	38.7	19.5	3.2	1.2	23.6	100.0(2,952)	110.143***
	중학교	37.8	19.2	1.9	2.3	27.5	100.0(2,913)	
	고등학교	35.3	25.1	0.9	1.8	26.8	100.0(2,794)	

* $p < .05$, ** $p < .01$, *** $p < .001$.





* 주: 단위: %

그림 IV-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2013~2024년)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항목에 중고등학생들의 93.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9.2%, 매우 그렇다 43.9%)고 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고등학생이 높게 응답했다(표 IV-3-11).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약간씩 감소하다가 다시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그림 IV-3-8).

표 IV-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6(0.65)	1.3	5.6	49.2	43.9	100.0(5,737)	14.915**
성별	남학생	3.35(0.67)	1.7	6.0	47.8	100.0(2,959)	
	여학생	3.37(0.62)	0.8	5.1	50.8	100.0(2,77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중학교	3.32(0.67)	1.6	6.7	49.6	42.1	100.0(2,923)	22.192***
	고등학교	3.39(0.62)	1.0	4.4	48.8	45.8	100.0(2,814)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2019~2024년)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①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정, 학교)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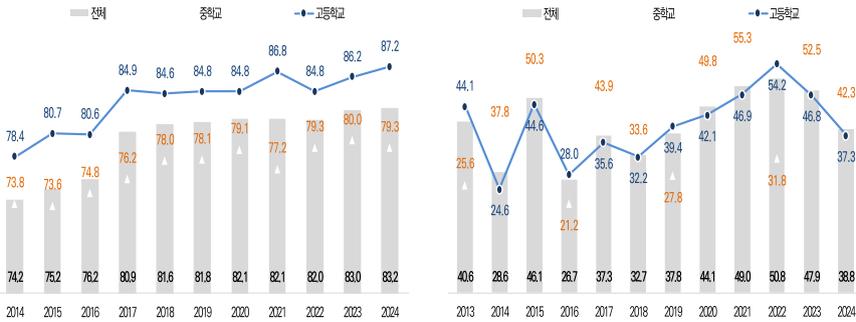
가정과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 항목에는 83.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8.2%, 매우 그렇다 44.9%)고 하였고,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 항목에는 38.8%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6.7%, 매우 그렇다 12.1%)고 하였다(표 IV-3-12).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최근 수년간 증가하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였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최근 수년간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많이 감소하였다(그림 IV-3-9).

표 IV-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23(0.85)	5.0	11.8	38.2	44.9	100.0(5,745)	76.446***
	학교 급							
	중학교	3.14(0.88)	6.2	14.5	38.4	40.9	100.0(2,927)	
	고등학교	3.33(0.79)	3.8	8.9	38.0	49.2	100.0(2,819)	
2)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16(1.04)	35.1	26.1	26.7	12.1	100.0(414)	5.662
	학교 급							
	중학교	2.24(1.12)	35.6	22.1	24.7	17.6	100.0(127)	
	고등학교	2.12(1.00)	34.9	27.9	27.6	9.7	100.0(287)	

* $p < .05$, ** $p < .01$, *** $p < .001$.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3)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IV-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13~2024년)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경험 여부, 피해 경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결사 및 집회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3.3%(가끔 9.0%, 자주 4.3%)였고,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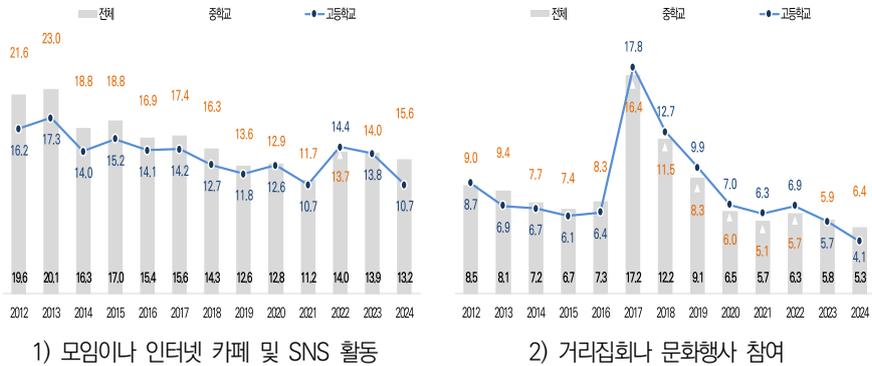
비율은 5.3%(가끔 4.5%, 자주 0.8%)였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더 높았다(표 IV-3-13).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참여,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모두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그림 IV-3-10). 반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경고 및 훈계, 징계, 상담 등의 피해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IV-3-11).

표 IV-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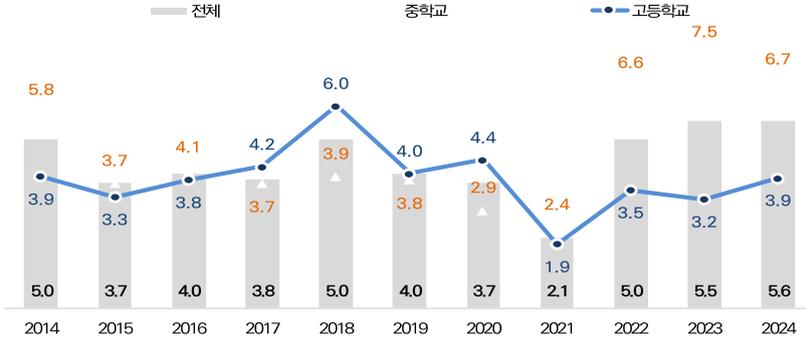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전체	1.62(0.82)	55.6	31.1	9.0	4.3	100.0(5,733)	38.681***
	중학교	1.68(0.87)	53.2	31.2	10.0	5.6	100.0(2,918)	
	고등학교	1.55(0.76)	58.2	31.1	7.8	2.9	100.0(2,815)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41(0.62)	65.3	29.4	4.5	0.8	100.0(5,681)	50.993***
	중학교	1.46(0.65)	61.1	32.5	5.2	1.2	100.0(2,884)	
	고등학교	1.35(0.57)	69.6	26.2	3.7	0.4	100.0(2,797)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12~2024년)



* 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2014~2024년)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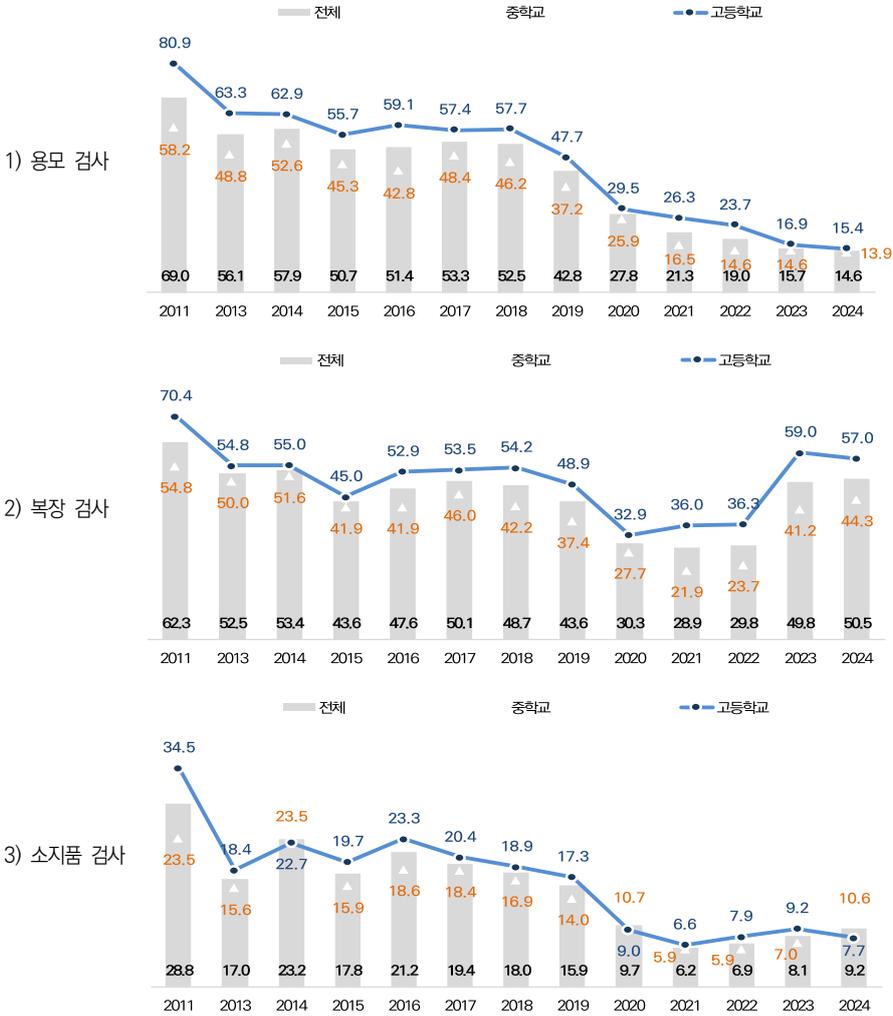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 경험 14.7%, 복장 검사 경험 50.5%, 소지품 검사 경험 9.1%로 나타났다(표 IV-3-14).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용모검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장검사와 소지품 검사는 최근 수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IV-3-12).

표 IV-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빈도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 검사	전체	85.4	6.9	2.6	2.5	2.7	14.7	20.879***
	학교 중학교	86.1	6.3	2.4	3.1	2.2	14	
	급 고등학교	84.6	7.5	2.8	1.8	3.3	15.4	
2) 복장 검사	전체	49.5	16.5	6.7	8.1	19.2	50.5	166.866***
	학교 중학교	55.7	17.1	6.5	7.5	13.1	44.2	
	급 고등학교	43.0	15.9	6.8	8.7	25.5	56.9	
3) 소지품 검사	전체	90.8	6.1	1.4	1.0	0.6	9.1	31.515***
	학교 중학교	89.4	6.8	1.9	1.4	0.4	10.5	
	급 고등학교	92.3	5.3	0.9	0.6	0.9	7.7	

* $p < .05$, ** $p < .01$, *** $p < .001$.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11~2024년)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①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는 8.4%(그런 편이다 5.5%, 매우 그렇다 2.9%), 징계사

항에 대한 공개는 13.9%(그런 편이다 11.4%, 매우 그렇다 2.6%),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정도는 11.9%(그런 편이다 9.4%, 매우 그렇다 2.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5).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했고,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감을 반복하였다(그림 IV-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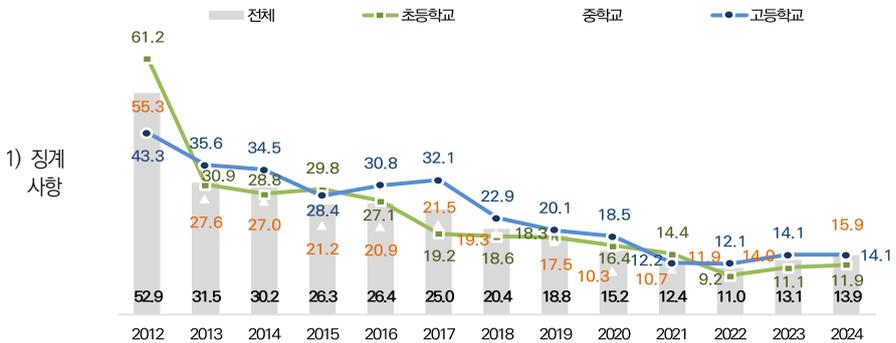
표 IV-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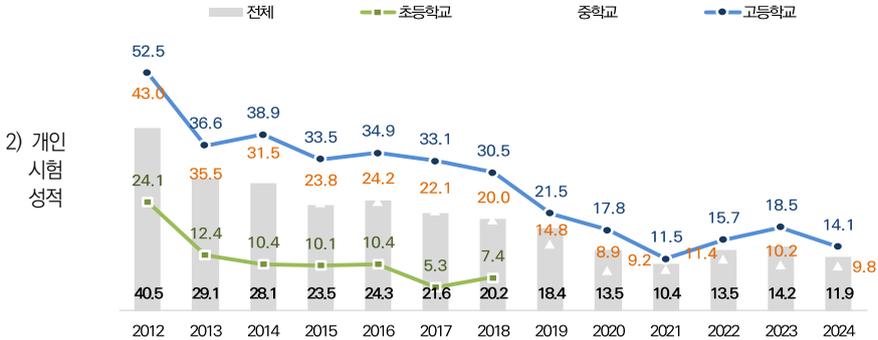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개인 (민감) 정보
학교 급	초등학교	1.28(0.67)	80.9	13.2	2.8	3.2	100.0(2,963)		
	중학교	1.49(0.75)	63.6	26.8	6.7	2.9	100.0(2,919)		
	고등학교	1.51(0.74)	60.8	29.6	7.0	2.6	100.0(2,820)		
2) 징계 사항	전체	1.71(0.77)	45.8	40.2	11.4	2.6	100.0(8,657)	311.273***	
	학교 급	초등학교	1.56(0.76)	58.6	29.5	9.5	2.3		100.0(2,942)
		중학교	1.81(0.76)	37.8	46.3	13.4	2.5		100.0(2,900)
		고등학교	1.76(0.76)	40.7	45.2	11.3	2.9		100.0(2,814)
3) 개인 시험 성적	전체	1.61(0.76)	53.1	35.0	9.4	2.5	100.0(5,720)	66.326***	
	학교 급	중학교	1.54(0.72)	58.1	32.1	7.9	1.9		100.0(2,912)
		고등학교	1.69(0.79)	47.8	38.1	11.0	3.1		100.0(2,808)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개인(민감) 정보 공개 경험 문항은 2022년부터 신규 추가됨.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문항에서 제외됨.
 3) 2022년부터 교육비 미납 공개여부는 삭제하고 개인(민감)정보 공개 문항을 신규 추가함.

그림 IV-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12~2024년)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2023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하루 1회 이상 응답 비율이 3~9세 78.2%, 10대 96.5%, 20대 99.3%로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3~9세, 10대는 약간 줄었고 20대는 약간 늘었다. 2023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9세 11.2시간, 10대 21.1시간, 20대 29.5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경향이였다. 전년도에 비해 3~9세, 10대, 20대 모두 약간 줄었다(표 IV-3-16).

표 IV-3-1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7~2023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	3~9세	82.3	15.2	2.5	0.0	9.3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	3~9세	85.6	13.2	1.1	0.1	12.5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	0.0	29.5
2021	3~9세	86.2	13.0	0.7	0.0	11.1
	10대	98.8	1.1	0.0	0.0	24.9
	20대	99.8	0.2	0.0	0.0	30.4
2022	3~9세	82.2	16.5	1.3	0.1	12.4
	10대	96.7	3.2	0.1	0.0	24.3
	20대	98.2	1.7	0.0	0.0	33.4
2023	3~9세	78.2	19.9	1.5	0.5	11.2
	10대	96.5	3.0	0.4	0.1	21.1
	20대	99.3	0.6	0.0	0.0	29.5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7-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3-124.

2023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3~9세는 여가활동 95.6%, 자료 및 정보획득 73.4%, 교육 및 학습 58.3%, 커뮤니케이션 57.4%, 홈페이지 운영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0대는 여가활동 99.2%, 커뮤니케이션 99.1%, 교육 및 학습 98.3%, 자료 및 정보획득 95.8%, 홈페이지 운영 68.6%로 나타났으며, 20대는 여가활동 99.9%, 커뮤니케이션 99.9%, 자료 및 정보획득 99.9%, 홈페이지 운영 85.7%, 교육 및 학습 78.6%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3~9세 홈페이지 운영이 많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이었다(표 IV-3-17).

표 IV-3-17.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3년)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2019	3~9세	48.9	96.1	36.0	10.3	50.0	0.0	3.4
	10대	98.6	99.5	96.0	69.9	83.5	8.9	27.3
	20대	100.0	99.7	100.0	91.8	70.2	60.8	91.0
2020	3~9세	53.1	89.3	43.1	18.6	48.5	2.4	3.1
	10대	98.5	99.1	95.2	64.8	99.9	9.4	37.7
	20대	99.9	99.8	100.0	87.4	82.6	51.5	96.2
2021	3~9세	71.5	91.2	54.9	87.0	56.2	1.1	3.8
	10대	99.8	100.0	99.9	47.4	99.9	9.4	71.8
	20대	100.0	100.0	100.0	99.8	77.9	55.2	99.9
2022	3~9세	66.8	99.1	58.5	87.6	63.9	2.6	2.1
	10대	100.0	100.0	100.0	48.9	100.0	11.3	88.2
	20대	100.0	100.0	100.0	100.0	90.7	59.0	100.0
2023	3~9세	57.4	95.6	73.4	18.5	58.3	0.0	1.7
	10대	99.1	99.2	95.8	68.6	98.3	3.5	48.6
	20대	99.9	99.9	99.9	85.7	78.6	29.3	98.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7.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 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2023년 아동·청소년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3~9세는 7.2시간, 10대는 12.6시간, 20대는 16.1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높은 경향이였다. 전년도에 비해 3~9세, 10대, 20대 모두 약간 줄었다(표 IV-3-18).

표 IV-3-18.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7~2023년)

(단위 : %, 시간)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17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2018	3~9세	7.9	17.8	22.3	35.8	12.1	3.7	0.4	7.2
	10대	1.2	4.9	14.4	34.6	29.9	13.3	1.8	12.0
	20대	0.3	1.4	7.4	33.3	32.2	21.6	3.8	14.8
2019	3~9세	15.6	17.4	26.1	29.1	8.7	2.6	0.5	5.8
	10대	3.8	6.2	12.8	35.8	25.3	13.9	2.3	11.7
	20대	2.2	3.1	6.7	32.8	30.0	19.8	5.4	14.9
2020	3~9세	9.2	15.6	24.9	33.5	11.8	4.5	0.5	7.1
	10대	1.5	5.3	9.8	35.9	26.5	15.5	5.5	13.6
	20대	0.4	2.9	7.0	32.1	27.0	21.4	9.2	16.2
2021	3~9세	6.0	20.0	22.1	28.2	15.5	4.0	4.2	9.7
	10대	0.8	6.8	9.5	33.6	25.5	19.0	4.8	13.6
	20대	0.2	2.8	5.5	23.7	33.6	29.0	5.2	16.3
2022	3~9세	-	-	-	-	-	-	-	7.8
	10대	-	-	-	-	-	-	-	14.1
	20대	-	-	-	-	-	-	-	17.2
2023	만 3세 이상	2.3	7.0	11.0	34.0	25.2	16.7	3.7	13.0
	3~9세	-	-	-	-	-	-	-	7.2
	10대	-	-	-	-	-	-	-	12.6
2023	20대	-	-	-	-	-	-	-	16.1
	만 3세 이상	2.6	6.2	12.4	33.3	26.5	16.4	2.6	12.5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b~2019b).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b).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58,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37.

* 주: 2022년부터 보고서에 연령별로 구분하여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만 3세 이상'으로 전체 수치만 제시되어 있음.

2023년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40.1%(초등학생 35.2%, 중학생 42.1%, 고등학생 36.0%)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고위험군은 5.2%, 잠재적 위험군은 34.9%였다. 과의존 위험군(10~19세),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모두 전년도인 2022년과 동일하였다. 2023년 일반사용자군과 과의존위험군을 모두 포함한 아동·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 메신저, 영화·TV·동영상, 게임, 학업·업무용 검색, 음악, 관심사 검색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표 IV-3-19).

표 IV-3-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2019~2023년)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10-19세)	주이용 콘텐츠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메신저	영화 TV 동영상	학업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검색	음악
2019	30.2	3.8	26.4	97.3	97.5	93.9	93.1	91.0	88.5
2020	35.8	5.0	30.8	98.3	98.2	96.6	95.6	95.2	91.1
2021	37.0	5.7	31.3	96.5	98.5	96.0	96.7	92.2	91.0
2022	40.1	5.2	34.9	96.5	98.4	94.9	94.4	90.3	90.0
2023	40.1	5.2	34.9	99.5	96.5	92.5	95.2	90.9	91.1
초등학생	35.2	2.8	32.4	96.7	94.9	83.1	97.2	79.5	79.6
중 학생	42.1	5.6	36.5	100.0	97.7	94.4	98.5	94.2	95.6
고등학생	36.0	6.3	29.7	100.0	99.0	96.2	97.5	95.4	96.8

* 출처: 여성가족부(2022.05.25.). 보도자료: 2022 청소년 통계. p.34.
 여성가족부(2023.05.30.). 보도자료: 2023 청소년 통계. p.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여성가족부(2024.05.29.) 보도자료: 2024 청소년 통계. p.3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059#pressRelease>에서 2024년 7월 12일 인출.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c).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c).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b).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4.

*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상위 콘텐츠를 제시함.

2022년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1,129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07개관이 운영되었다. 2021년에 비해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26개관, 어린이도서관은 2개관이 증가하였다(표 IV-3-20).

표 IV-3-20.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2년)

(단위 : 개관)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997	1,033	1,068	1,103	1,129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99	101	104	105	10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0b).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2c).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8.
 문화체육관광부(2023d). 2023년('22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6.

2023년 아동·청소년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독서량을 살펴보면, 종이책의 경우 초등학생(4-6학년) 57.7권, 중학생 13.0권, 고등학생 6.8권이었고, 전자책의 경우 초등학생(4-6학년) 11.2권, 중학생 6.9권, 고등학생 5.1권이었으며, 오디오북은 초등학생(4-6학년) 4.3권, 중학생 1.0권, 고등학생 0.7권이였다. 2021년에 비해 오디오북은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약간 증가하였다(표 IV-3-21).

표 IV-3-21. 학생 독서량(2011~2023년)

(단위 : 권)

종류 구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연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19	2021
초등학교 4~6학년	45.0	65.1	70.8	67.1	69.8	51.7	57.7	3.6	8.6	8.1	8.7	9.1	11.8	11.2	7.8	3.1	4.3
중학교	14.4	22.0	19.4	18.5	20.1	14.8	13.0	5.3	7.8	5.8	5.4	4.5	8.0	6.9	0.4	0.7	1.0
고등학교	15.4	9.8	8.9	8.8	8.8	7.5	6.8	2.5	5.2	4.0	3.7	3.2	4.9	5.1	0.3	0.2	0.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p.84-88.
문화체육관광부(2023a).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p.91-92.

* 주: 1) 전체 응답자(비독서자 포함) 기준 지난 1년 간 평균 독서량
2) 오디오북 조사는 2019년 신규 추가

② 유해매체 이용 경험

2022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을 살펴보면, 초(4-6학년), 중, 고 전체 응답자의 47.5%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는 남자가,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많이 증가하였다(표 IV-3-22).

표 IV-3-22.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2016~2022년)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6	41.5	51.7	30.5	18.6 (5~6학년 16.1)	42.4	58.0
2018	39.4	48.7	29.4	19.6 (5~6학년 17.7)	41.6	53.3
2020	37.4	44.3	29.7	33.8 (5~6학년 29.3)	32.2	45.1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2	47.5	53.4	41.2	40.0 (5-6학년 38.6)	46.1	56.6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6.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94.

* 주: 1) 초등학교의 경우, 4~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022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31.2%, 인터넷 포털 사이트 25.2%,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21.3%, TV 방송 19.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12.6%, SNS 11.6%, 메타버스 8.1%의 순으로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TV 방송은 증가하였고, SNS는 약간 감소하였다(표 IV-3-23).

표 IV-3-23.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2018~2022년)

(단위 : %)

구분	TV 방송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 (OTT)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전체	12.9	13.5	19.3	-	-	31.2	28.2	23.9	25.2	17.7	17.3	21.3	10.5	12.6	12.6	
성별	남자	15.2	14.5	19.8	-	-	32.0	37.5	31.3	34.4	20.8	19.9	24.9	12.9	13.6	13.9
	여자	10.4	12.5	18.8	-	-	30.4	18.2	15.9	15.3	14.2	14.6	17.5	8.0	11.6	11.1
학교급	초등학교	9.5	16.1	24.3	-	-	24.2	10.6	19.4	18.8	13.8	21.6	24.9	10.3	18.4	17.1
	중학교	12.6	11.0	16.1	-	-	29.7	31.0	20.1	24.3	20.2	14.4	19.4	11.5	10.5	10.6
	고등학교	15.7	13.3	17.7	-	-	39.7	39.8	31.8	32.5	18.7	15.9	19.6	9.8	9.0	9.9

구분	SNS			메타버스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전체	16.5	12.8	11.6	-	-	8.1	6.6	5.7	-	11.0	13.4	-	
성별	남자	18.7	12.8	12.1	-	-	9.0	9.4	6.9	-	14.0	14.7	-
	여자	14.1	12.8	11.2	-	-	7.2	3.6	4.4	-	7.9	11.9	-
학교급	초등학교	6.2	11.1	8.8	-	-	17.5	2.6	6.9	-	11.2	18.5	-
	중학교	18.7	12.5	13.1	-	-	4.4	5.8	4.4	-	11.5	11.2	-
	고등학교	22.8	14.6	13.1	-	-	2.5	10.4	5.7	-	10.5	10.3	-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5.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7.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96.

-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18년도와 '20년도'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22년도'에는 '성인용(19금)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질의함.
 3) TV방송의 예시는 각 년도별로 다름. '18년도'에는 'TV방송(유선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 '20년도'에는 'TV방송(지상파, 케이블, IPTV 등)', '22년도'에는 'TV방송(KBS, MBC, SBS, EBS, tvN, Mnet, OCN, JTBC 등)임.
 4)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예시는 각 년도별로 다름.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 '20년도'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팝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 '22년도'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틱톡 등)임.
 5)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6) '18년도' SNS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질의하였고 '20년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22년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7)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22년도'에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문항 삭제함.
 8) '22년도'에는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 문항 삭제하였으며,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왓차 등)',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문항 추가함.

(3) 디지털 리터러시

① 매체이용 교육 경험

2022년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은 57.8%가,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55.5%가,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80.9%가, SNS 등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68.7%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모두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였다(표 IV-3-24).

표 IV-3-24.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2018~2022년)

(단위 : %)

구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SNS 등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22	
전체	51.3	51.2	57.8	36.5	48.4	55.5	71.0	73.5	80.9	68.7	
성별	남자	55.2	55.0	61.4	40.4	52.5	57.9	69.9	73.3	79.3	67.4
	여자	47.0	47.1	54.1	32.3	44.0	53.0	72.2	73.6	82.5	70.0

구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SNS 등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2022
학교급	초등학교	49.4	50.3	57.4	31.8	42.4	43.8	75.4	78.4	80.9	66.2
	중학교	59.2	55.4	62.1	38.2	51.7	62.0	73.6	75.2	85.2	75.4
	고등학교	46.1	48.3	53.9	38.8	51.3	60.8	65.4	67.1	83.0	64.1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3.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28.

-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2) '22년도부터 'SNS 등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문항 추가함.

2022년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은 65.1%(약간 도움이 됨 39.9%, 매우 도움이 됨 25.2%)가,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69.8%(약간 도움이 됨 38.8%, 매우 도움이 됨 31.0%)가,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63.7%(약간 도움이 됨 39.9%, 매우 도움이 됨 23.8%)가, SNS 등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73.2%(약간 도움이 됨 42.4%, 매우 도움이 됨 30.8%)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매체이용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IV-3-25).

표 IV-3-25.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2018-2022년)

(단위 : 명, %)

매체 종류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1) 성인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성별	전체	48.3	52.0	39.9	19.4	19.7	25.2
		남자	45.5	48.6	38.3	19.0	18.7	23.7
		여자	51.8	56.3	41.9	19.8	21.1	27.0
	학교급	초등학교	48.9	51.0	38.3	44.2	38.8	51.6
		중학교	54.0	57.1	45.1	12.5	14.3	14.3
		고등학교	41.9	47.6	35.5	5.6	6.6	9.2
2)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성별	전체	47.5	51.3	38.8	25.5	24.9	31.0
		남자	44.2	47.9	35.8	26.2	25.5	32.1
		여자	52.0	55.6	42.3	24.6	24.1	29.6
	학교급	초등학교	42.2	46.5	31.2	52.3	44.5	59.0
		중학교	53.4	56.5	43.4	21.8	23.1	25.5
		고등학교	46.2	50.1	39.5	11.2	11.1	15.7

매체 종류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8	2020	2022	2018	2020	2022	
3)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성별	전체	47.4	50.9	39.9	18.5	18.1	23.8
		남자	45.1	48.9	38.3	20.0	18.7	23.5
	여자	49.7	53.1	41.6	17.0	17.5	24.2	
	학교 급	초등학교	51.6	54.8	41.9	38.1	32.5	43.9
		중학교	50.3	52.8	41.8	13.6	13.9	15.6
		고등학교	40.7	44.6	35.3	5.4	6.6	9.5
4) SNS 등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성별	전체	-	-	42.4	-	-	30.8
		남자	-	-	39.1	-	-	30.8
	여자	-	-	45.8	-	-	30.8	
	학교 급	초등학교	-	-	35.7	-	-	54.1
		중학교	-	-	47.1	-	-	23.7
		고등학교	-	-	43.8	-	-	14.5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6.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5.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30.

-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원자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값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 수치 위주로 제시함.
 4) '22년도부터 'SNS 등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문항 추가함.
 5) '22년도에 '도움이 안 됨'을 '별로 도움이 안 됨'으로, '도움이 됨'을 '약간 도움이 됨'으로 수정함.

② 미디어 역량

2023년 아동·청소년(10~19세) 디지털 사용 역량을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90.2%(초 80.3%, 중 93.8%, 고 93.2%),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74.1%(초 55.8%, 중 74.9%, 고 84.4%),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62.7%(초 43.1%, 중 64.1%, 고 72.8%),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66.2%(초 55.5%, 중 69.0%, 고 70.6%),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57.2%(초 36.6%, 중 61.4%, 고 65.0%),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48.4%(초 29.9%, 중 50.7%, 고 56.4%)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역량이 증가하였다(표 IV-3-22).

표 IV-3-26. 디지털 사용 역량(2020~2023년)

(단위 : %)

매체 종류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020	전체	20.2	79.8	27.3	72.7	37.0	63.0	40.3	59.7	44.2	55.8	65.5	34.5
	청소년(만 10~19세)	18.3	81.7	30.3	69.7	39.7	60.3	41.4	58.6	33.2	66.8	63.0	37.0
	초등학교	27.9	72.1	45.2	54.8	56.4	43.6	56.3	43.7	40.7	59.3	73.8	26.2
	중학교	17.5	82.5	28.5	71.5	36.7	63.3	39.4	60.6	32.1	67.9	67.0	33.0
	고등학교	11.8	88.2	20.4	79.6	29.7	70.3	32.0	68.0	29.0	71.0	52.8	47.2
2021	전체	21.4	78.6	29.4	70.6	37.5	62.5	46.4	53.6	47.0	53.0	59.0	41.0
	청소년(만 10~19세)	16.3	83.7	29.8	70.2	41.6	58.4	48.8	51.2	34.5	65.5	57.4	42.6
	초등학교	26.6	73.4	49.1	50.9	59.0	41.0	60.2	39.8	42.6	57.4	71.1	28.9
	중학교	15.1	84.9	25.9	74.1	41.0	59.0	50.0	50.0	34.1	65.9	55.6	44.4
	고등학교	8.4	91.6	16.5	83.5	27.0	73.0	38.0	62.0	27.9	72.1	47.1	52.9
2022	전체	22.5	77.5	31.3	68.7	40.2	59.8	47.0	53.0	45.8	54.2	58.5	41.5
	청소년(만 10~19세)	17.7	82.3	33.1	66.9	44.7	55.3	46.9	53.1	35.9	64.1	53.1	46.9
	초등학교	24.1	75.9	45.3	54.7	60.9	39.1	60.5	39.5	44.5	55.5	66.3	33.7
	중학교	15.8	84.2	32.1	67.9	41.8	58.2	47.3	52.7	36.5	63.5	50.1	49.9
	고등학교	14.9	85.1	24.5	75.5	35.7	64.3	36.0	64.0	29.3	70.7	46.8	53.2
2023	전체	15.4	84.6	24.4	75.6	32.9	67.1	39.9	60.1	44.5	55.5	55.0	45.0
	청소년(만 10~19세)	9.8	90.2	25.9	74.1	37.3	62.7	42.8	57.2	33.8	66.2	51.6	48.4
	초등학교	19.7	80.3	44.2	55.8	56.9	43.1	63.4	36.6	44.5	55.5	70.1	29.9
	중학교	6.2	93.8	25.1	74.9	35.9	64.1	38.6	61.4	31.0	69.0	49.3	50.7
	고등학교	6.8	93.2	15.6	84.4	27.2	72.8	35.0	65.0	29.4	70.6	43.6	56.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c).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c).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b).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9.

* 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가구방문조사로 실시되며 통계표의 '전체'값은 성인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응답값임.

6) 소결

이 절에서는 이 연구 지표체계의 대분류 영역 중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하위 지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정에서의 참여(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90.1%, 상급학교 진학결정 시 나의 의사 존중 93.4%,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존중 93.6%,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 89.3%, 쉬는 시간 선택 존중 86.9%,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존중 89.5%로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참여 중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에 대해서는,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5.7%,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28.2%,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0.5%,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6.6%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9.8%,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5.8%, 참여할 수 없음 5.1%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1.0%였다. 사회에서의 참여 관련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14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23년 청소년 특별 회의에서는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 건강 등 3개 분야 34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에 대한 인지도는 11.2%로 최근 수년 동안 11%를 중심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다.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72.1%가 긍정적이었다. 참여의 방해요인으로는 시간 부족 37.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5.9%, 참여활동정보 부족 21.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1.8% 순이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에 9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에 83.1%가,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에는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결사·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참여 비율은 13.3%,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비율은 5.3%였다.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해서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 14.6%, 복장 검사 50.5%, 소지품 검사 9.2%였다.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에 대해서는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 8.4%,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 14.0%, 개인 시험성적

에 대한 공개 11.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접근권과 관련해서, 2023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응답 비율이 3~9세 78.2%, 10대 96.5%, 20대 99.3%로 대부분이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 11.2시간, 10대 21.1시간, 20대 29.5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았다. 2023년 아동·청소년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9세 7.2시간, 10대 12.6시간, 20대 16.1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 2023년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는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40.1%(고위험군은 5.2%, 잠재적 위험군은 34.9%)였다. 2022년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1,129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07개관이 운영되었다. 2023년 아동·청소년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독서량은 종이책의 경우 초등학생(4-6학년) 57.7권, 중학생 13.0권, 고등학생 6.8권이었고, 전자책의 경우 초등학생(4-6학년) 11.2권, 중학생 6.9권, 고등학생 5.1권이었으며, 오디오북은 초등학생(4-6학년) 4.3권, 중학생 1.0권, 고등학생 0.7권이었다. 2022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초(4-6학년), 중, 고 전체 응답자의 47.5%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교육 경험은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57.8%,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55.5%,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80.9%, SNS 등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68.7%로 나타났다. 2023년 아동·청소년(10~19세) 디지털 사용 역량은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90.2%,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74.1%,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62.7%,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66.2%,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57.2%,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48.4%로 나타났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전반적으로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 부족, 사회의 편견, 정보 부족 등 표현의 자유 제약 요인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보다 향상된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폭력 및 학대¹⁴⁷⁾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한 폭력피해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4.4%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V-4-1).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중학생은 2023년보다 2024년 약 2.5%p 상승하였고, 고등학생은 약 4.2%p 증가하였다(그림 IV-4-1).

표 IV-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5.6	16.9	7.6	5.4	4.5	100.0(8,725)	7.035
성별	남학생	66.8	16.4	7.4	5.0	100.0(4,494)	
	여학생	64.3	17.4	7.8	5.8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63.4	18.7	7.7	5.4	100.0(2,972)	73.084***
	중학교	62.5	17.0	8.5	6.2	100.0(2,928)	
	고등학교	71.1	14.9	6.5	4.5	100.0(2,825)	
지역 규모	대도시	64.1	16.7	7.9	6.5	100.0(3,357)	23.802**
	중소도시	65.6	17.4	7.6	4.9	100.0(4,153)	
	읍면지역	69.6	15.9	7.0	4.2	100.0(1,2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7	17.0	7.6	5.3	100.0(7,794)	15.951
	한부모가정	63.8	16.1	7.1	6.6	100.0(686)	
	조손가정	68.5	13.9	6.3	9.0	100.0(95)	
	기타	70.8	15.0	7.0	5.6	100.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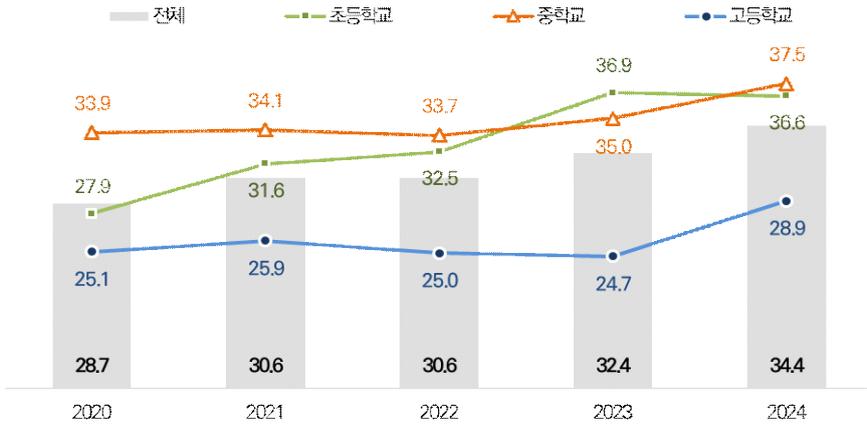
147) 이 절은 서고운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66.4	16.2	7.7	5.4	4.2	100.0(3,345)	29.818***
	중	66.1	18.0	7.2	4.9	3.8	100.0(3,449)	
	하	63.2	16.0	8.3	6.4	6.2	100.0(1,889)	
경제적 수준	상	67.3	16.8	7.3	4.7	3.8	100.0(5,221)	115.262***
	중	65.9	16.9	7.4	5.4	4.4	100.0(2,738)	
	하	52.1	17.4	10.9	9.8	9.9	100.0(720)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모욕적인 말(욕설)'에서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2020~2024년)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한 폭력피해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별(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5.6%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별(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약 5명 중 2명 정도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신체적인 별(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인 경우(27.8%)와 상인 경우(31.0%)가, 중인 경우(23.9%)보다 높았다(표 IV-4-2).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2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다시 올해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 2.9%p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은 1.8%p, 고등학생은 0.4%p 증가하였다(그림 IV-4-2).

표 IV-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4.4	17.2	4.6	2.7	1.2	100.0(8,733)	8.848	
성별	남학생	73.5	17.3	4.8	3.0	100.0(4,498)		
	여학생	75.3	17.0	4.4	2.3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61.4	25.1	7.0	4.0	2.5	100.0(2,982)	565.598***
	중학교	74.4	16.9	4.8	3.1	0.8	100.0(2,925)	
	고등학교	88.1	9.1	1.8	0.8	0.3	100.0(2,825)	
지역 규모	대도시	87.7	9.5	1.8	0.8	0.2	100.0(2,309)	3.380
	중소도시	89.7	7.3	2.1	0.6	0.3	100.0(516)	
	읍면지역	74.1	17.1	4.7	2.7	1.3	100.0(3,36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0	17.6	4.5	2.8	1.1	100.0(4,151)	16.653
	한부모가정	76.6	15.9	4.4	1.8	1.3	100.0(1,217)	
	조손가정	74.0	17.5	4.7	2.7	1.2	100.0(7,802)	
	기타	78.5	13.7	3.7	2.5	1.7	100.0(687)	
학업 성적	상	69.0	23.9	6.0	1.2	0.0	100.0(95)	26.905***
	중	76.1	15.0	3.8	2.8	2.3	100.0(105)	
	하	72.2	18.6	5.0	2.8	1.4	100.0(3,353)	
경제적 수준	상	74.9	16.9	4.9	2.3	1.0	100.0(3,452)	19.764*
	중	77.7	15.0	3.4	2.9	1.0	100.0(1,886)	
	하	74.0	17.9	4.4	2.6	1.2	100.0(5,227)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체벌'에서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2020~2024년)

②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중,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10.9%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V-4-3).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이후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이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그림 IV-4-3).

표 IV-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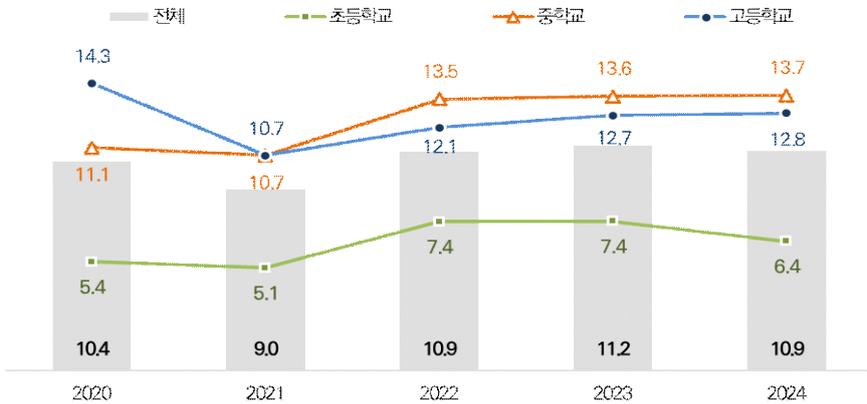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9.1	6.5	2.0	1.5	1.0	100.0(8,715)	27.838***	
성별	남학생	87.6	7.0	2.4	1.7	100.0(4,487)		
	여학생	90.7	5.9	1.6	1.2	100.0(4,228)		
학교급	초등학교	93.6	4.1	1.2	0.6	100.0(2,965)	106.380***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중학교	86.3	7.5	2.8	2.3	1.2	100.0(2,927)	20.107**	
	고등학교	87.2	7.9	2.1	1.5	1.3	100.0(2,823)		
지역 규모	대도시	88.1	7.5	1.6	1.7	1.1	100.0(3,355)		
	중소도시	89.4	5.8	2.4	1.4	1.0	100.0(4,145)		
	읍면지역	90.6	5.9	1.9	0.9	0.7	100.0(1,2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1	6.5	2.0	1.4	1.0	100.0(7,785)		12.218
	한부모가정	87.4	7.0	2.1	2.1	1.4	100.0(687)		
	조손가정	89.6	2.8	2.4	2.7	2.6	100.0(93)		
	기타	94.5	2.2	1.1	1.3	1.0	100.0(105)		
학업 성적	상	89.3	6.2	2.0	1.6	1.0	100.0(3,342)		16.183*
	중	89.2	6.9	2.0	1.1	0.8	100.0(3,446)		
	하	88.3	6.1	2.1	1.9	1.6	100.0(1,886)		
경제적 수준	상	89.7	6.3	1.7	1.3	0.9	100.0(5,218)	24.831**	
	중	88.8	6.4	2.1	1.5	1.2	100.0(2,736)		
	하	84.9	8.0	3.9	2.2	1.0	100.0(717)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모욕적인 말(욕설)'에서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2020~2024년)

아동·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중, 신체적인 벌(체벌)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5.1%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중학생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V-4-4).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이후 교사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21년 이후 교사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체벌)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그림 IV-4-4).

표 IV-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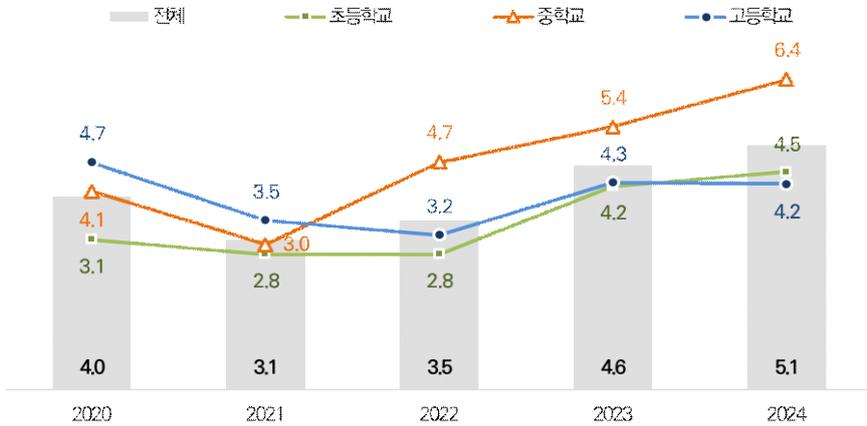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2-3개월에	한 달에	1주일에	전체(N)	χ^2
		1-2회 정도	1-2회 정도	1-2회 정도	1-2회 이상		
전체	94.9	2.9	0.9	0.8	0.4	100.0(8,718)	97.215***
성별	남학생	92.7	4.1	1.4	1.1	100.0(4,488)	
	여학생	97.3	1.7	0.4	0.5	100.0(4,230)	
학교급	초등학교	95.5	2.7	1.1	0.7	100.0(2,967)	40.363***
	중학교	93.6	3.7	1.0	1.2	100.0(2,927)	
	고등학교	95.8	2.5	0.6	0.5	100.0(2,824)	
지역 규모	대도시	94.2	3.2	1.1	0.9	100.0(3,359)	10.918
	중소도시	95.2	2.9	0.9	0.7	100.0(4,146)	
	읍면지역	96.1	2.3	0.7	0.7	100.0(1,2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0	2.9	0.9	0.8	100.0(7,787)	19.672
	한부모가정	94.7	3.7	0.8	0.4	100.0(688)	
	조손가정	90.8	3.8	3.8	1.6	100.0(93)	
	기타	95.9	3.4	0.0	0.7	100.0(105)	
학업 성적	상	95.6	2.3	0.8	0.9	100.0(3,345)	9.471
	중	94.6	3.4	0.9	0.7	100.0(3,444)	
	하	94.6	3.1	1.0	0.8	100.0(1,889)	
경제적 수준	상	95.0	2.8	1.0	0.8	100.0(5,216)	13.195
	중	95.4	2.9	0.6	0.8	100.0(2,738)	
	하	92.8	3.9	1.6	1.1	100.0(720)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체벌'에서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2020~2024년)

③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폭력은 욕설 및 모욕 21%, 폭행 및 구타 9.8%, 따돌림 8.5%, 성적인 희롱 및 추행 3.8%, 돈, 물건 빼앗김 3.1%, 강제적인 심부름 2.2%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폭력피해 유형에서 남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성적인 희롱 및 추행을 제외한 모든 폭력피해 유형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폭력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욕설 및 모욕을 경험한 비율이 28.7%, 폭행 및 구타를 경험한 비율이 21.7%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표 IV-4-5).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욕설 및 모욕, 폭행 및 구타, 따돌림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돈, 물건 빼앗김은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한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성적인 희롱 및 추행은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3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4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강제적인 심부름은 2021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23년에 비해 모든 피해 경험율이 증가한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IV-4-5).

표 IV-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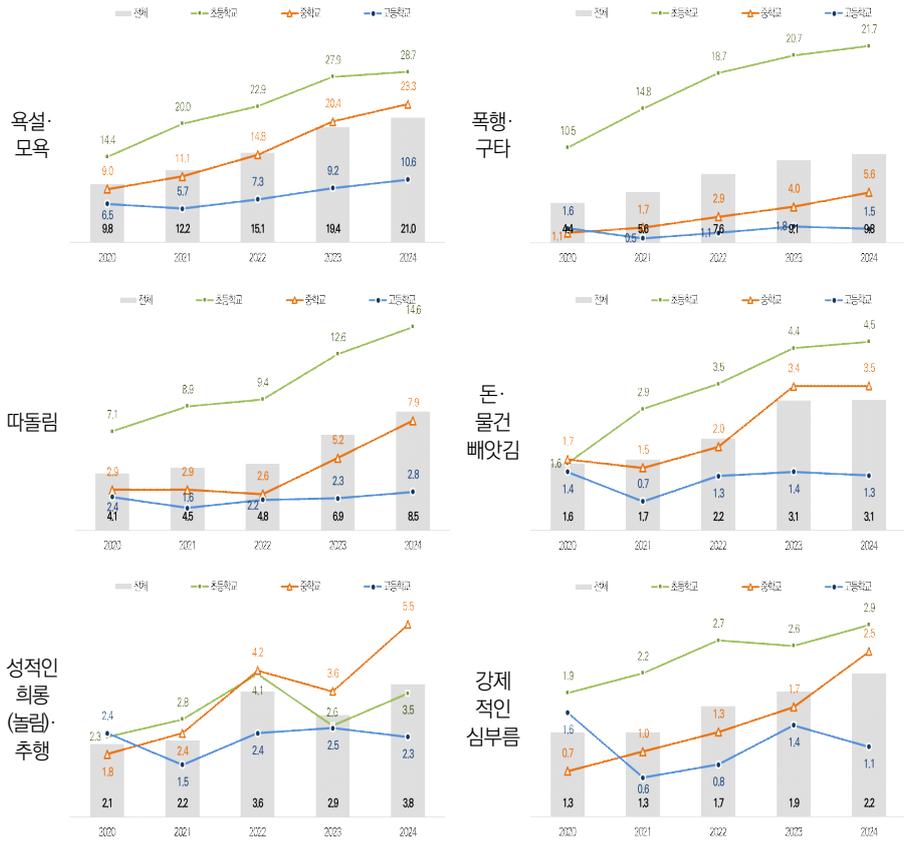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육성 모욕	전체	79.0	11.5	3.8	2.4	3.2	100.0(8,745)	85.669***	
	성별	남학생	75.6	12.5	4.4	3.0	4.5		100.0(4,503)
		여학생	82.5	10.5	3.2	1.8	1.9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71.3	16.4	5.6	2.9	3.7		100.0(2,985)
		중학교	76.7	12.0	4.3	2.9	4.1		100.0(2,933)
		고등학교	89.4	5.9	1.5	1.4	1.8		100.0(2,827)
	지역 규모	대도시	78.7	12.2	3.5	2.6	3.0		100.0(3,368)
		중도시	79.2	11.1	4.2	2.1	3.5		100.0(4,159)
		읍면지역	78.9	11.4	3.5	3.0	3.2		100.0(1,21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0	11.7	3.7	2.4	3.1		100.0(7,812)
		한부모가정	78.7	10.7	3.7	2.4	4.6		100.0(688)
		조손가정	78.7	8.7	8.2	0.0	4.4		100.0(95)
		기타	79.9	9.7	4.9	3.1	2.4		100.0(105)
	학업 성적	상	78.7	12.1	3.9	2.3	3.0		100.0(3,352)
		중	79.2	11.5	4.0	2.4	2.9		100.0(3,459)
		하	79.0	10.7	3.5	2.7	4.2		100.0(1,892)
	경제적 수준	상	78.3	12.4	3.8	2.4	3.2		100.0(5,233)
		중	81.1	9.9	3.7	2.4	3.0		100.0(2,746)
하		76.1	11.3	4.3	3.3	5.0	100.0(721)		
폭행 구타	전체	90.2	5.2	1.6	1.3	1.6	100.0(8,743)	97.621***	
	성별	남학생	87.2	6.9	2.0	1.6	2.3		100.0(4,503)
		여학생	93.4	3.4	1.3	0.9	1.0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78.3	11.9	3.3	2.9	3.7		100.0(2,983)
		중학교	94.4	2.8	1.2	0.8	0.8		100.0(2,933)
		고등학교	98.5	0.7	0.4	0.1	0.4		100.0(2,827)
	지역 규모	대도시	90.4	5.2	1.7	0.9	1.8		100.0(3,368)
		중도시	90.0	5.4	1.5	1.6	1.6		100.0(4,158)
		읍면지역	90.5	4.9	1.9	1.2	1.5		100.0(1,2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2	5.4	1.6	1.2	1.6		100.0(7,810)
		한부모가정	91.3	3.1	1.6	2.1	1.9		100.0(688)
		조손가정	83.9	5.0	6.2	2.6	2.3		100.0(95)
		기타	89.6	7.4	0.0	2.0	1.0		100.0(105)
	학업 성적	상	88.8	6.2	1.4	1.5	2.1		100.0(3,351)
		중	90.1	5.4	2.1	0.9	1.5		100.0(3,458)
		하	93.3	3.1	1.2	1.4	1.1		100.0(1,892)
	경제적 수준	상	89.3	5.9	1.6	1.3	1.9		100.0(5,230)
		중	92.0	4.2	1.5	1.0	1.4		100.0(2,747)
하		90.7	4.2	2.2	1.7	1.2	100.0(721)		
따돌림	전체	91.5	5.6	1.3	0.7	0.9	100.0(8,732)	267.124***	
	성별	남학생	91.5	5.1	1.5	0.8	1.0		100.0(4,493)
		여학생	91.4	6.1	1.0	0.7	0.8		100.0(4,239)
	학교 급	초등학교	85.4	9.7	2.2	1.3	1.4		100.0(2,976)
		중학교	92.1	4.9	1.2	0.8	1.0		100.0(2,930)
		고등학교	97.2	2.0	0.4	0.1	0.3		100.0(2,826)
	지역 규모	대도시	91.4	5.4	1.5	0.7	1.0		100.0(3,363)
		중도시	91.3	5.9	1.2	0.7	0.9		100.0(4,154)
		읍면지역	92.4	4.8	1.0	0.9	0.9		100.0(1,2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6	5.6	1.2	0.7	0.8		100.0(7,805)
		한부모가정	91.2	5.0	1.5	0.9	1.4		100.0(687)
		조손가정	85.3	7.8	2.4	1.1	3.5		100.0(95)
기타		90.4	4.5	1.6	2.6	0.8	100.0(104)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1.5	5.9	1.2	0.5	0.8	100.0(3,347)	6.199	
	중	91.5	5.3	1.4	0.9	0.9	100.0(3,455)		
	하	91.4	5.5	1.2	0.8	1.1	100.0(1,889)		
	경제 적 수준	상	91.4	5.5	1.4	0.8	0.9	100.0(5,225)	13.639
		중	92.2	5.4	0.9	0.5	1.0	100.0(2,745)	
하		89.4	6.6	2.1	0.9	1.0	100.0(719)		
전체		96.9	2.1	0.5	0.2	0.3	100.0(8,734)		
돈· 물건 배앗김	성별	남학생	96.2	2.4	0.7	0.3	0.4	100.0(4,498)	19.783***
		여학생	97.6	1.8	0.3	0.1	0.2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95.5	3.5	0.4	0.2	0.4	100.0(2,978)	70.106***
		중학교	96.5	2.0	0.8	0.2	0.4	100.0(2,929)	
		고등학교	98.7	0.8	0.2	0.2	0.1	100.0(2,827)	
	지역 규모	대도시	96.9	2.0	0.6	0.2	0.4	100.0(3,365)	3.845
		중도시	96.8	2.2	0.5	0.2	0.3	100.0(4,153)	
		읍면지역	97.2	2.0	0.5	0.2	0.1	100.0(1,2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2.0	0.5	0.2	0.3	100.0(7,802)	24.619*
		한부모가정	95.9	2.9	0.6	0.4	0.1	100.0(687)	
		조손가정	97.0	2.1	0.0	0.9	0.0	100.0(95)	
		기타	95.0	2.9	0.0	2.0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97.4	1.8	0.4	0.2	0.2	100.0(3,348)	16.541*
		중	97.1	2.0	0.5	0.1	0.3	100.0(3,454)	
		하	95.7	2.6	0.9	0.4	0.5	100.0(1,889)	
경제적 수준	상	97.0	2.1	0.5	0.1	0.3	100.0(5,225)	20.598**	
	중	97.1	2.0	0.4	0.2	0.3	100.0(2,744)		
	하	95.7	2.2	0.5	0.7	1.0	100.0(721)		
전체		96.2	2.2	0.6	0.5	0.6	100.0(8,742)		
성적인 희롱 (놀림) 추행	성별	남학생	95.6	2.3	0.7	0.6	0.7	100.0(4,501)	14.347**
		여학생	96.9	2.0	0.4	0.3	0.4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96.5	2.3	0.5	0.4	0.4	100.0(2,985)	46.682***
		중학교	94.5	3.0	0.9	0.7	1.0	100.0(2,931)	
		고등학교	97.7	1.2	0.4	0.3	0.4	100.0(2,826)	
	지역 규모	대도시	95.7	2.4	0.6	0.7	0.7	100.0(3,367)	7.450
		중도시	96.4	2.1	0.5	0.4	0.6	100.0(4,157)	
		읍면지역	96.8	1.8	0.7	0.2	0.4	100.0(1,2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3	2.1	0.5	0.5	0.5	100.0(7,809)	16.893
		한부모가정	95.2	3.1	0.6	0.2	1.1	100.0(688)	
		조손가정	95.4	0.6	2.5	0.0	1.6	100.0(95)	
		기타	94.9	1.7	2.1	1.3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97.0	1.7	0.4	0.4	0.4	100.0(3,352)	25.806**
		중	96.4	2.1	0.5	0.5	0.6	100.0(3,458)	
		하	94.5	3.1	1.1	0.6	0.6	100.0(1,890)	
경제적 수준	상	96.4	2.2	0.5	0.4	0.6	100.0(5,231)	33.460***	
	중	96.8	1.6	0.5	0.6	0.5	100.0(2,747)		
	하	92.7	4.2	1.6	0.6	0.9	100.0(719)		
전체		97.8	1.3	0.4	0.2	0.2	100.0(8,743)		
강제 적인 심부름	성별	남학생	97.3	1.5	0.7	0.3	0.3	100.0(4,504)	18.090**
		여학생	98.4	1.1	0.2	0.2	0.1	100.0(4,239)	
	학교급	초등학교	97.1	1.9	0.5	0.3	0.3	100.0(2,984)	28.931***
		중학교	97.5	1.4	0.5	0.3	0.3	100.0(2,933)	
		고등학교	98.9	0.6	0.3	0.1	0.1	100.0(2,827)	
	지역 규모	대도시	97.7	1.2	0.5	0.4	0.3	100.0(3,368)	13.508
		중도시	98.0	1.2	0.4	0.1	0.2	100.0(4,159)	
		읍면지역	97.4	1.9	0.5	0.0	0.3	100.0(1,217)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1	1.2	0.4	0.2	0.2	100.0(7,810)	62.619***
	한부모가정	95.6	2.4	1.4	0.3	0.3	100.0(688)	
	조손가정	92.3	4.0	0.0	1.5	2.3	100.0(95)	
	기타	95.7	1.6	1.0	1.7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98.2	1.1	0.3	0.1	0.3	100.0(3,351)	12.819
	중	97.6	1.5	0.4	0.2	0.3	100.0(3,458)	
	하	97.4	1.4	0.8	0.3	0.1	100.0(1,892)	
경제적 수준	상	98.1	1.1	0.4	0.2	0.2	100.0(5,231)	24.091**
	중	97.8	1.3	0.5	0.2	0.2	100.0(2,747)	
	하	95.7	2.6	0.5	0.7	0.5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2020~2024년)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한 피해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21.0%, 사생활 침해 5.1%, 성희롱 3.3%, 협박 3.2%, 따돌림 2.8% 순으로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모든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표 IV-4-6).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욕설 및 모욕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협박은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4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감소하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였고, 따돌림은 2021년 조금 감소하는 듯하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2023년에 비해 모든 피해 경험율이 증가한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IV-4-6).

표 IV-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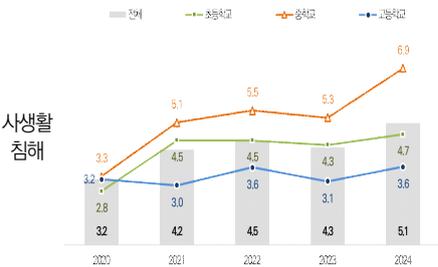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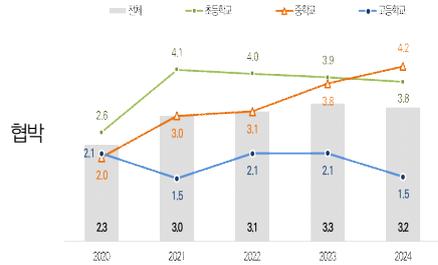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 모욕	전체	79.0	10.7	3.7	2.9	3.7	100.0(8,745)	82.364***	
	성별	남학생	76.6	10.3	4.3	3.8	5.0		100.0(4,504)
		여학생	81.5	11.0	3.1	2.0	2.4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79.1	11.8	3.4	2.3	3.3		100.0(2,986)
		중학교	72.7	13.0	5.0	4.0	5.3		100.0(2,932)
		고등학교	85.3	7.0	2.7	2.4	2.5		100.0(2,828)
	지역 구분	대도시	79.0	10.4	3.9	2.6	4.1		100.0(3,369)
		중소도시	79.4	10.5	3.7	3.1	3.4		100.0(4,158)
		읍면지역	77.6	12.0	3.3	3.2	4.0		100.0(1,21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3	10.6	3.7	3.0	3.5		100.0(7,813)
		한부모가정	76.5	11.4	4.2	2.1	5.7		100.0(688)
		조손가정	75.3	9.5	5.3	3.8	6.0		100.0(93)
		기타	79.6	11.1	2.6	2.0	4.8		100.0(105)
	학업 성적	상	80.0	10.5	3.2	2.8	3.5		100.0(3,354)
		중	80.1	10.4	3.7	2.7	3.1		100.0(3,459)
		하	75.3	11.3	4.5	3.6	5.3		100.0(1,892)
	경제적 수준	상	79.5	10.8	3.4	2.9	3.4		100.0(5,233)
		중	79.7	10.0	3.4	3.0	3.9		100.0(2,747)
하		72.8	11.9	6.8	2.9	5.7	100.0(721)		
협박	전체	96.8	1.8	0.5	0.4	0.4	100.0(8,743)	30.227***	
	성별	남학생	96.0	2.0	0.9	0.5	0.6		100.0(4,504)
		여학생	97.7	1.6	0.2	0.2	0.3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96.2	2.3	0.6	0.4	0.6		100.0(2,985)
		중학교	95.8	2.2	0.8	0.6	0.6		100.0(2,931)
		고등학교	98.5	1.0	0.2	0.1	0.2		100.0(2,828)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성희롱	지역 규모	대도시	96.7	1.9	0.5	0.4	0.5	100.0(3,369)	5.208	
		중소도시	96.9	1.8	0.6	0.3	0.5	100.0(4,157)		
		읍면지역	96.9	1.7	0.5	0.7	0.3	100.0(1,2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1.8	0.5	0.3	0.4	100.0(7,813)	23.361*	
		한부모가정	95.6	2.1	1.0	0.6	0.8	100.0(688)		
		조손가정	94.7	1.6	2.4	0.0	1.2	100.0(92)		
		기타	93.6	2.0	2.1	2.3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97.7	1.3	0.4	0.3	0.4	100.0(3,354)	24.232**	
		중	96.7	1.9	0.6	0.3	0.4	100.0(3,458)		
		하	95.4	2.6	0.7	0.7	0.6	100.0(1,890)		
	경제적 수준	상	97.3	1.6	0.4	0.4	0.3	100.0(5,233)	48.729***	
		중	96.7	2.0	0.6	0.2	0.6	100.0(2,747)		
		하	93.4	3.0	1.1	1.5	0.9	100.0(719)		
	성희롱	전체	전체	96.7	1.7	0.7	0.5	0.5	100.0(8,743)	15.607**
			남학생	96.4	1.5	0.8	0.7	0.6	100.0(4,503)	
성별		여학생	97.0	1.8	0.6	0.3	0.3	100.0(4,240)	53.182***	
		초등학교	98.0	1.1	0.4	0.3	0.2	100.0(2,984)		
학교 급		중학교	95.1	2.1	1.2	0.7	0.9	100.0(2,932)	9.889	
		고등학교	97.0	1.7	0.6	0.4	0.3	100.0(2,828)		
지역 규모		대도시	96.3	1.6	0.8	0.6	0.7	100.0(3,368)	69.361***	
		중소도시	96.8	1.7	0.8	0.4	0.3	100.0(4,158)		
		읍면지역	97.2	1.6	0.3	0.4	0.3	100.0(1,2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1.5	0.7	0.5	0.3	100.0(7,812)	33.424***	
		한부모가정	93.7	3.2	1.2	0.4	1.5	100.0(687)		
		조손가정	91.6	2.4	0.0	1.8	4.1	100.0(93)		
		기타	97.5	1.7	0.0	0.7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97.5	1.4	0.5	0.3	0.4	100.0(3,354)	58.444***	
		중	96.9	1.5	0.8	0.3	0.4	100.0(3,457)		
	하	94.8	2.4	1.0	1.0	0.7	100.0(1,892)			
경제적 수준	상	97.2	1.4	0.5	0.4	0.4	100.0(5,233)	5.927		
	중	96.6	2.0	0.7	0.3	0.5	100.0(2,746)			
	하	92.7	2.5	2.1	1.7	1.0	100.0(720)			
사생활 침해	전체	전체	94.9	3.3	0.9	0.5	0.4	100.0(8,739)	59.679***	
		남학생	94.9	3.2	1.1	0.4	0.4	100.0(4,501)		
	성별	여학생	95.0	3.4	0.7	0.6	0.3	100.0(4,238)	7.955	
		초등학교	95.3	3.5	0.7	0.2	0.4	100.0(2,983)		
	학교 급	중학교	93.1	3.9	1.4	1.1	0.5	100.0(2,930)	10.820	
		고등학교	96.4	2.6	0.5	0.2	0.2	100.0(2,827)		
	지역 규모	대도시	94.6	3.8	0.8	0.4	0.3	100.0(3,369)	11.637	
		중소도시	95.3	2.9	0.9	0.5	0.3	100.0(4,153)		
		읍면지역	94.3	3.3	1.2	0.7	0.6	100.0(1,2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0	3.4	0.9	0.4	0.4	100.0(7,809)	28.096***	
		한부모가정	94.6	2.8	1.3	0.8	0.4	100.0(688)		
		조손가정	92.6	5.3	0.0	1.2	0.9	100.0(92)		
		기타	95.7	3.2	0.0	0.7	0.4	100.0(105)		
	학업 성적	상	95.4	3.2	0.7	0.4	0.3	100.0(3,353)	11.637	
		중	95.2	3.1	0.9	0.5	0.4	100.0(3,456)		
하		93.6	3.9	1.2	0.7	0.5	100.0(1,889)			
경제적 수준	상	95.2	3.4	0.7	0.4	0.3	100.0(5,229)	28.096***		
	중	95.0	3.1	1.0	0.5	0.4	100.0(2,746)			
	하	92.3	3.7	1.8	1.1	1.2	100.0(719)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따돌림	전체	97.2	1.7	0.5	0.2	0.4	100.0(8,745)	12.274*	
	성별	남학생	97.2	1.4	0.5	0.3	0.5		100.0(4,505)
		여학생	97.2	2.0	0.4	0.2	0.3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96.0	2.5	0.7	0.3	0.5	100.0(2,986)	47.644***
		중학교	96.9	1.8	0.4	0.4	0.5	100.0(2,931)	
		고등학교	98.8	0.7	0.3	0.0	0.2	100.0(2,828)	
	지역 규모	대도시	96.9	1.9	0.5	0.2	0.4	100.0(3,369)	4.137
		중소도시	97.4	1.5	0.4	0.2	0.4	100.0(4,159)	
		읍면지역	97.2	1.8	0.4	0.3	0.2	100.0(1,2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4	1.6	0.4	0.2	0.4	100.0(7,812)	51.521***
		한부모가정	95.7	2.4	0.6	0.5	0.7	100.0(688)	
		조손가정	93.6	2.5	0.0	1.5	2.4	100.0(93)	
		기타	94.1	1.8	1.2	2.9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97.7	1.5	0.3	0.2	0.3	100.0(3,355)	18.065*
		중	97.1	1.6	0.7	0.1	0.5	100.0(3,458)	
		하	96.6	2.1	0.3	0.5	0.4	100.0(1,891)	
경제적 수준	상	97.3	1.7	0.4	0.2	0.3	100.0(5,233)	42.911***	
	중	97.4	1.7	0.5	0.0	0.4	100.0(2,747)		
	하	95.6	1.6	0.5	1.3	1.0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2020~2024년)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2022년 총 38,625건으로, 이 중 13세 미만이 3.5%(1,342건), 13세 이상이 96.5%(37,283건)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3만 건을 조금 밑돌았으나, 2022년 3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를 보였는데, 연령 별로 살펴보면, 13세 미만 연령의 피해가 약 1백 건 정도 증가하였고, 13세 이상 피해가 약 8천5백 건 정도 증가하였다(표 IV-4-7).

표 IV-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7~2022년)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7		30,099(100)	1,261(4.2)	28,838(95.8)
2018		29,244(100)	1,278(4.4)	27,966(95.6)
2019		29,676(100)	1,375(4.6)	28,301(95.4)
2020		28,289(100)	1,155(4.1)	27,134(95.9)
2021		29,901(100)	1,210(4.0)	28,691(96.0)
2022		38,625(100)	1,342(3.5)	37,283(96.5)

* 출처: 법무연수원(2024). 2023 범죄백서. p.191.

* 주: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 성별, 연령 미상은 제외.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3.6%가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순으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가 중이나 상인 경우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표 IV-4-8).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2023년 감소하였으나, 2024년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IV-4-7).

표 IV-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6	96.4	100.0(8,667)	0.161	
성별					
남학생	3.5	96.5	100.0(4,459)	37.493***	
여학생	3.7	96.3	100.0(4,209)		
학교급				8.004*	
초등학교	4.6	95.4	100.0(2,943)		
중학교	4.2	95.8	100.0(2,912)		
고등학교	1.9	98.1	100.0(2,812)	6.629	
지역 규모					
대도시	4.3	95.7	100.0(3,343)		
중소도시	3.2	96.8	100.0(4,120)	7.507*	
읍면지역	3.0	97.0	100.0(1,205)		
가족 유형				8.453*	
양부모가정	3.5	96.5	100.0(7,755)		
한부모가정	5.0	95.0	100.0(681)		
조손가정	6.3	93.7	100.0(92)		
기타	3.4	96.6	100.0(100)	7.507*	
학업 성적					
상	3.3	96.7	100.0(3,324)		
중	3.3	96.7	100.0(3,425)	8.453*	
하	4.6	95.4	100.0(1,878)		
경제적 수준					
상	3.6	96.4	100.0(5,190)	8.453*	
중	3.2	96.8	100.0(2,717)		
하	5.4	94.6	100.0(71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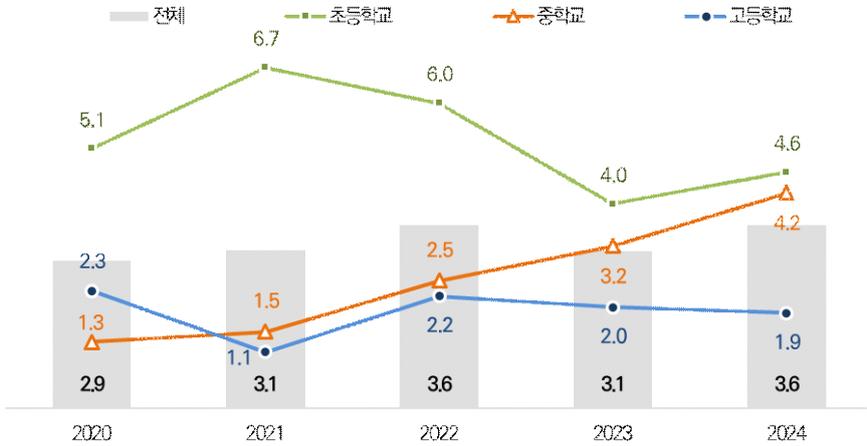


그림 IV-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20~2024년)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26.3%, 부모님(보호자) 16.1%, 선생님 12.0%, 형제·자매 4.3%, 선후배 1.6%, 경찰 1.4%, 전문 상담가 0.7% 순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IV-4-9).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와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 중이나 상인 경우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IV-4-9).

표 IV-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2024년)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6.4	26.3	1.6	16.1	4.3	12.0	0.7	1.4	1.3	100.0(303)	
성별	남학생	34.4	29.6	1.0	15.6	4.8	12.6	0.9	0.4	0.6	100.0(151)
	여학생	38.4	23.0	2.2	16.5	3.8	11.3	0.5	2.4	1.9	100.0(152)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 (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학교급	초등학교	26.5	23.6	0.8	28.5	8.2	9.7	0.0	1.7	1.1	100.0(130)
	중학교	42.2	27.3	1.3	7.0	1.4	17.1	1.7	1.2	0.8	100.0(120)
	고등학교	48.0	30.5	4.4	6.0	1.0	6.0	0.0	1.2	2.9	100.0(52)
지역 규모	대도시	26.7	31.3	2.2	18.2	4.2	13.8	1.5	1.2	1.0	100.0(142)
	중소도시	48.2	23.2	1.1	12.3	1.9	11.6	0.0	0.9	0.8	100.0(126)
	읍면지역	33.6	16.4	1.3	21.3	13.2	5.7	0.0	4.2	4.4	100.0(3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9.2	25.1	1.2	15.6	3.4	11.6	0.8	1.6	1.5	100.0(261)
	한부모가정	21.3	35.3	5.8	17.1	5.2	15.2	0.0	0.0	0.0	100.0(33)
	조손가정	0.0	52.9	0.0	22.0	25.1	0.0	0.0	0.0	0.0	100.0(5)
	기타	28.1	0.0	0.0	34.6	37.3	0.0	0.0	0.0	0.0	100.0(3)
학업 성적	상	36.5	27.4	0.0	17.4	2.5	11.6	0.0	3.4	1.3	100.0(108)
	중	34.7	26.0	3.1	21.6	5.4	6.6	2.0	0.6	0.0	100.0(107)
	하	39.3	25.8	1.8	7.9	5.3	17.0	0.0	0.0	2.9	100.0(86)
경제적 수준	상	34.6	26.7	1.1	18.2	3.3	11.7	0.4	2.4	1.6	100.0(178)
	중	37.6	24.4	3.1	17.0	4.2	12.0	1.7	0.0	0.0	100.0(83)
	하	44.6	26.8	0.9	5.0	8.9	11.4	0.0	0.0	2.4	100.0(39)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 문항 중 '선배'가 '선·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8,522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4.3%(45,771건), 일반 상담이 1.9%(1,997건), 동일 신고가 1.6%(753건), 해외발생 사례가 0.0%(1건)였다(표 IV-4-10).

표 IV-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3년)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45,771(94.3)	753(1.6)	1,997(1.9)	1(0.0)	48,522(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2.

2023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총 45,771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56.2%(25,739건)였으며, 일반사례는 42.7%(19,530건), 조사 진행 중 사례는 1.1%(502건)였다(표 IV-4-11).

표 IV-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3년)

(단위 : 건(%))

아동학대사례 ¹⁾	일반사례 ²⁾	조사진행중사례	계
25,739 (56.2)	19,530 (42.7)	502 (1.1)	45,771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8.

* 주: 1)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사례
2)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

2023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25,739건(19,947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50.0%, 여아 50.0%로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3세~15세 24.6%, 10세~12세 23.9%, 7세~9세 18.3%, 4세~6세 12.1%, 16세~17세 10.7%, 3세 이하 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4-12).

표 IV-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3년)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비율)	명수(비율)
성별	남아	12,878(50.0)	10,051(50.0)
	여아	12,861(50.0)	9,896(50.0)
연령별	3세 이하	2,253(8.8)	1,500(7.5)
	4세 ~ 6세	3,116(12.1)	2,172(10.9)
	7세 ~ 9세	4,713(18.3)	3,529(17.7)
	10세 ~ 12세	6,141(23.9)	4,826(24.2)
	13세 ~ 15세	6,328(24.6)	5,244(26.3)
	16세 ~ 17세	2,746(10.7)	2,385(12.0)
계		25,739(100.0)	19,947(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1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례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 22.0% 증가, 2020년 2.9% 증가, 2021년 21.7% 증가하였다가, 2022년 25.6% 감소, 2023년 8.0% 감소하였다(표 IV-4-13).

표 IV-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2019~2023년)

(단위 :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학대사례수 (증가율)	30,045 (22.0)	30,905 (2.9)	37,605 (21.7)	27,971 (-25.6)	25,739 (-8.0)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2023년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가 85.9%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부모동거인, 유치원/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3%, 타인(이웃 및 낯선 사람) 3.3%,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3.0%,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표 IV-4-14).

표 IV-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23년)

(단위 : 건(%))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21,335	731	40	22,106	249	199	209	114	771	25,739 (100.0)		
(%)	(82.9)	(2.9)	(0.2)	(85.9)	(1.0)	(0.8)	(0.8)	(0.4)	(3.0)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부모 동거인	유치원/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아이 돌보미		소계	
명	190	415	793	259	129	50	3	5	30	1,874	846	142
(%)	(0.7)	(1.6)	(3.1)	(10.0)	(0.5)	(0.2)	(0.0)	(0.0)	(0.1)	(7.3)	(3.3)	(0.6)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p.50~51.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2023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 28.7%, 신체학대 18.3%, 방임 7.7%, 성학대 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4-15).

표 IV-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23년)

(단위 : 건(%))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건수(%)	4,698 (18.3)	11,094 (43.1)	585 (2.3)	1,979 (7.7)	7,383 (28.7)	25,73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18.

아동학대 사례 유형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총 아동학대 사례 중 정서학대 비율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복학대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체학대 비율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방임 비율은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 성학대 비율은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표 IV-4-16).

표 IV-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19~2023년)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9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30,045(100.0)
2020	3,807(12.3)	8,732(28.3)	695(2.2)	2,737(8.9)	14,934(48.3)	30,905(100.0)
2021	5,780(15.4)	12,351(32.8)	655(1.7)	2,793(7.4)	16,026(42.6)	37,605(100.0)
2022	4,911(17.6)	10,632(38.0)	609(2.2)	2,044(7.3)	9,775(34.9)	27,971(100.0)
2023	4,689(18.3)	11,094(43.1)	585(2.3)	1,979(7.7)	7,383(28.7)	25,739(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3.
 보건복지부(2023c).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30.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18.

③ 가정 내 방임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정 내 방임 중 야간시간 방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야간시간 방임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학업성적별로는 하인 경우,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표 IV-4-17).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4년 약 10.7%p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4년 약 8.7%p 증가하였다(그림 IV-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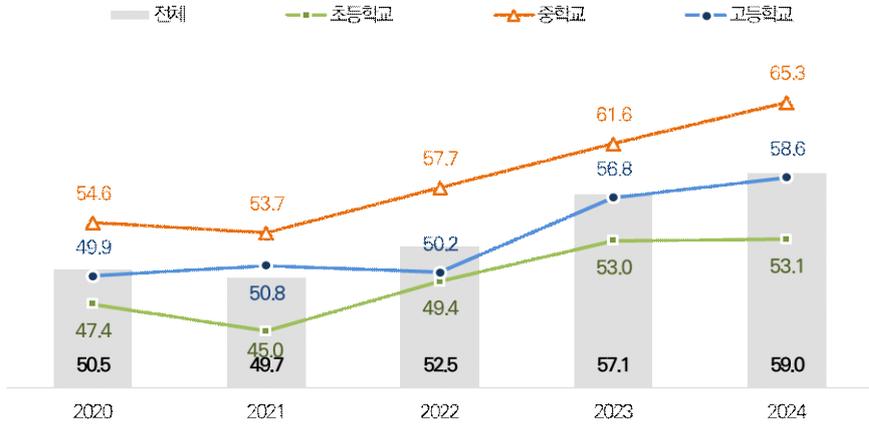
표 IV-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2024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1.0	35.7	10.9	6.8	5.5	100.0(8,721)	2.580
성별	남학생 41.7	35.4	11.0	6.5	5.4	100.0(4,485)	
	여학생 40.4	36.1	10.9	7.1	5.6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46.9	32.2	9.4	5.6	5.9	100.0(2,978)	103.216***
	중학교 34.7	38.8	12.8	8.2	5.5	100.0(2,920)	
	고등학교 41.4	36.3	10.6	6.7	5.1	100.0(2,822)	
지역 규모	대도시 41.7	35.9	10.8	6.5	5.0	100.0(3,357)	11.617
	중소도시 40.5	36.2	11.1	6.6	5.5	100.0(4,155)	
	읍면지역 41.0	33.5	10.6	8.2	6.7	100.0(1,2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7	36.5	10.9	6.3	4.6	100.0(7,796)	186.553***
	한부모가정 32.0	29.6	12.1	11.5	14.8	100.0(683)	
	조손가정 32.5	35.4	13.7	11.4	7.0	100.0(93)	
	기타 56.5	26.0	4.1	6.2	7.3	100.0(104)	
학업 성적	상 44.8	35.1	9.9	5.8	4.3	100.0(3,346)	78.577***
	중 40.7	36.2	10.8	6.8	5.5	100.0(3,448)	
	하 34.8	36.0	13.1	8.5	7.6	100.0(1,886)	
경제적 수준	상 43.8	35.2	10.4	5.7	4.9	100.0(5,222)	109.037***
	중 37.4	37.8	11.6	7.8	5.5	100.0(2,735)	
	하 34.0	31.7	12.7	11.2	10.4	100.0(719)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8.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2020~2024년)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깨닫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깨닫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표 IV-4-18).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2023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202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2024년 다시 약 2.2%p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그림 IV-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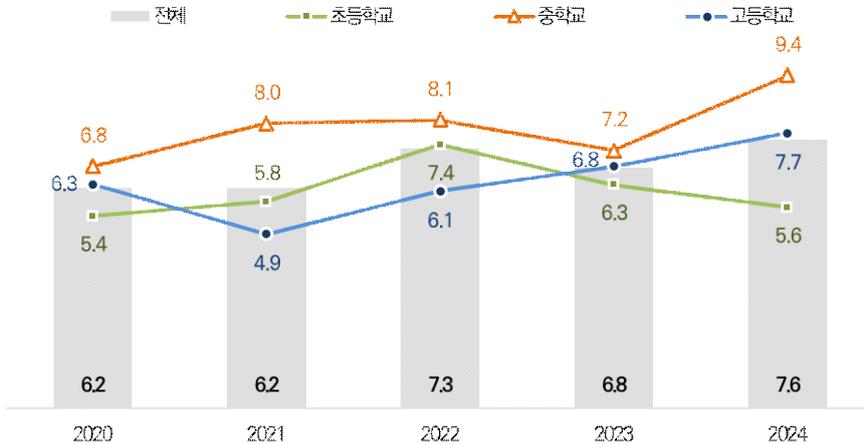
표 IV-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2024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4	4.7	1.3	0.6	1.0	100.0(8,706)	18.237**
성별	남학생 91.3	5.3	1.6	0.7	1.1	100.0(4,473)	
	여학생 93.6	4.1	0.9	0.5	0.9	100.0(4,234)	39.781***
학교급	초등학교 94.4	3.9	0.7	0.3	0.8	100.0(2,966)	
	중학교 90.6	6.0	1.4	0.9	1.1	100.0(2,918)	
	고등학교 92.3	4.3	1.7	0.7	1.1	100.0(2,823)	14.706
지역 규모	대도시 92.2	4.4	1.4	0.9	1.1	100.0(3,348)	
	중소도시 92.9	4.7	1.0	0.5	0.8	100.0(4,148)	
	읍면지역 91.3	5.5	1.5	0.3	1.3	100.0(1,210)	48.8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8	4.6	1.2	0.5	0.9	100.0(7,787)	
	한부모가정 88.8	5.9	1.3	1.8	2.1	100.0(678)	
	조손가정 87.9	2.8	2.8	2.0	4.4	100.0(95)	49.528***
학업 성적	상 93.9	4.1	0.7	0.5	0.9	100.0(3,339)	
	중 92.9	4.4	1.4	0.5	0.9	100.0(3,439)	
	하 89.1	6.4	2.0	1.1	1.4	100.0(1,887)	114.074***
경제적 수준	상 94.2	3.8	0.9	0.4	0.8	100.0(5,212)	
	중 91.1	5.4	1.8	0.7	1.0	100.0(2,733)	
	하 84.5	8.9	1.9	2.3	2.4	100.0(717)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9.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2020~2024년)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았고,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중이나 상인 경우보다 높았다(표 IV-4-19).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학생은 2020년 이후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올해에는 2023년에 비해 약 1.4%p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다시 2023년에 비해 약 0.9%p 증가하였다(그림 IV-4-10).

표 IV-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2024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2	3.4	0.9	0.3	0.2	100.0(8,704)	17.581**
성별	남학생 95.8	2.8	0.7	0.4	0.4	100.0(4,472)	
	여학생 94.5	4.0	1.0	0.3	0.1	100.0(4,232)	22.833**
학교급	초등학교 96.3	2.9	0.5	0.2	0.1	100.0(2,968)	
	중학교 94.0	3.9	1.3	0.4	0.3	100.0(2,917)	
	고등학교 95.1	3.3	0.9	0.5	0.3	100.0(2,819)	4.866
지역 규모	대도시 95.4	3.2	0.9	0.3	0.1	100.0(3,346)	
	중소도시 94.9	3.6	0.8	0.3	0.3	100.0(4,146)	
	읍면지역 95.2	3.1	1.0	0.3	0.4	100.0(1,212)	58.1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6	3.2	0.7	0.3	0.2	100.0(7,788)	
	한부모가정 90.2	6.1	2.4	1.0	0.3	100.0(676)	
	조손가정 94.2	2.6	3.3	0.0	0.0	100.0(94)	
	기타 97.8	1.2	0.9	0.0	0.0	100.0(104)	67.541***
학업 성적	상 96.6	2.4	0.7	0.2	0.2	100.0(3,337)	
	중 95.7	3.2	0.6	0.3	0.2	100.0(3,442)	
	하 91.7	5.5	1.7	0.7	0.4	100.0(1,884)	145.387***
경제적 수준	상 96.6	2.5	0.5	0.2	0.2	100.0(5,213)	
	중 94.5	4.0	0.9	0.3	0.3	100.0(2,734)	
	하 87.2	7.4	3.3	1.2	0.8	100.0(713)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10.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2020~2024년)

가정 내 방임 중 결식방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비율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가장 높고 중인 경우, 상인 경우 순이었다(표 IV-4-20).

중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 전년도보다 미세하게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2023년까지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올해에는 2023년에 비해 약 0.7%p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보다 올해 감소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올해 약 1.2%p, 중학생의 경우 약 2.4%p 증가하였다(그림 IV-4-11).

표 IV-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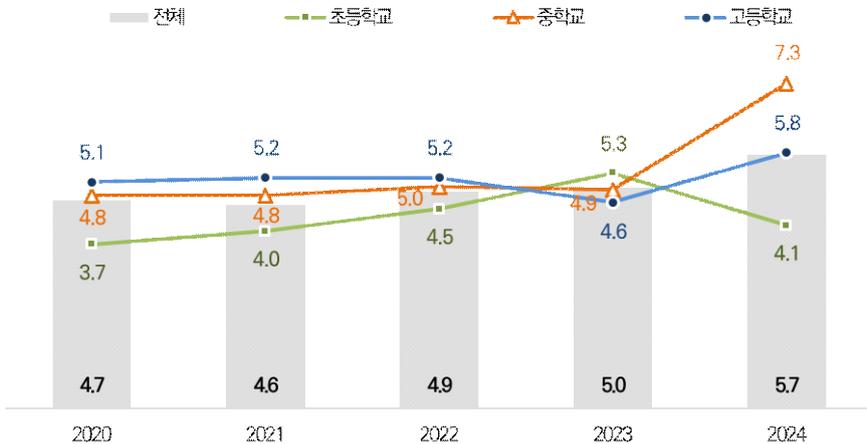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3	3.4	1.0	0.6	0.8	100.0(8,707)	7.256
성별	남학생	94.7	3.3	0.8	0.5	100.0(4,480)	
	여학생	93.8	3.5	1.2	0.7	100.0(4,227)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95.9	3.0	0.5	0.3	0.4	100.0(2,972)	43.094***
	중학교	92.7	4.2	1.4	0.9	0.8	100.0(2,915)	
	고등학교	94.2	3.0	1.1	0.6	1.1	100.0(2,820)	
지역 규모	대도시	93.8	3.7	1.1	0.7	0.7	100.0(3,352)	12.692
	중소도시	94.6	3.3	1.0	0.6	0.6	100.0(4,145)	
	읍면지역	94.6	3.0	0.6	0.4	1.4	100.0(1,2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7	3.4	0.7	0.6	0.7	100.0(7,787)	52.221***
	한부모가정	91.2	4.1	2.2	1.1	1.5	100.0(677)	
	조손가정	86.5	5.6	5.3	0.0	2.6	100.0(95)	
	기타	96.4	0.8	0.4	0.9	1.4	100.0(104)	
학업 성적	상	96.6	2.2	0.4	0.3	0.5	100.0(3,340)	77.875***
	중	93.7	3.9	1.0	0.7	0.7	100.0(3,444)	
	하	91.2	4.6	1.9	0.8	1.4	100.0(1,882)	
경제적 수준	상	95.7	2.8	0.5	0.4	0.5	100.0(5,213)	139.668***
	중	93.5	3.9	1.3	0.7	0.6	100.0(2,732)	
	하	86.6	6.0	2.8	1.5	3.2	100.0(717)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11.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0-2024년)

가정 내 방임 중 결석방임에 대한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중이나 상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표 IV-4-21).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비해 2024년 약 1.0%p가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그림 IV-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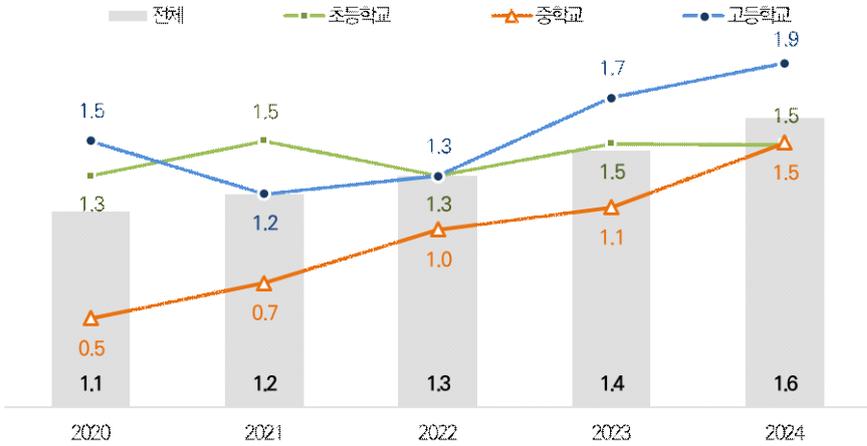
표 IV-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4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4	0.8	0.4	0.1	0.3	100.0(8,710)	20.144***
성별	남학생 97.9	1.0	0.5	0.2	0.5	100.0(4,478)	
	여학생 98.9	0.7	0.3	0.1	0.1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98.5	1.0	0.2	0.0	0.3	100.0(2,972)	16.195*
	중학교 98.5	0.7	0.3	0.1	0.3	100.0(2,916)	
	고등학교 98.1	0.7	0.6	0.2	0.4	100.0(2,821)	
지역 규모	대도시 98.5	0.7	0.5	0.1	0.3	100.0(3,350)	5.950
	중소도시 98.3	0.9	0.4	0.1	0.4	100.0(4,148)	
	읍면지역 98.3	0.9	0.3	0.2	0.3	100.0(1,2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5	0.9	0.3	0.1	0.3	100.0(7,790)	68.540***
	한부모가정 97.6	0.3	1.1	0.2	0.7	100.0(677)	
	조손가정 91.7	2.5	1.4	1.5	2.9	100.0(95)	
	기타 98.7	0.0	0.4	0.9	0.0	100.0(104)	
학업 성적	상 99.0	0.6	0.2	0.0	0.2	100.0(3,338)	57.266***
	중 98.4	1.0	0.4	0.0	0.2	100.0(3,445)	
	하 97.2	0.8	0.7	0.4	0.8	100.0(1,885)	
경제적 수준	상 98.9	0.5	0.2	0.1	0.3	100.0(5,215)	49.036***
	중 97.9	1.2	0.5	0.0	0.4	100.0(2,734)	
	하 96.6	1.7	1.1	0.5	0.1	100.0(716)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12.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2020~2024년)

(2)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2023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살펴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는 92개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약 279.8개였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7개 증가하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감소하였다(표 IV-4-22).

표 IV-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8~2023년)

(단위: 건, 개소)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2008	5,578	43	129.7	2016	18,700	59	316.9
2009	5,685	44	129.2	2017	22,367	60	372.8
2010	5,657	44	128.6	2018	24,604	62	396.8
2011	6,058	44	137.7	2019	30,045	67	448.4
2012	6,403	46	139.2	2020	30,905	71	435.3
2013	6,796	50	135.9	2021	37,605	77	488.4
2014	10,027	51	196.6	2022	27,971	85	329.1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2015	11,715	56	209.2	2023	25,739	92	279.8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1.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53.
 보건복지부(2023c).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60.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② 서비스 제공 정도와 조치 결과

2023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에게는 872,694건, 학대 행위자에게는 580,794건, 부모 또는 가족에게는 296,63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년도에 비하여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는 조금 감소하였고, 학대 행위자와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는 증가하였다(표 IV-4-23).

표 IV-4-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7~2023년)

(단위: 건)

구분	서비스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피해아동	501,465	461,891	555,312	651,619	791,587	886,989	872,694
학대 행위자	196,458	206,419	259,967	335,818	437,644	536,730	580,794
부모 또는 가족	186,923	137,127	144,634	165,586	183,756	244,761	296,634
계	884,846	805,437	956,913	1,153,023	1,412,987	1,668,480	1,750,12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2018). 2016~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4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40.
 보건복지부(2023c).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46.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34.

2023년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모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제공되었다. 아동에게 제공된 총 872,694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70.6%, 가족기능 강화 10.7%, 심리치료지원 7.2%, 기타 5.4%, 사건처리지원 4.6% 순이었으며, 행위자에게 제공된 총 580,794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74.7%, 사건처리지원 7.2%, 가족기능 강화 5.9%,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5.8%, 심리치료지원 5.1% 순이었다.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총 296,634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79.2%, 가족기능 강화 11.6%, 심리치료지원 5.1% 순이었다(표 IV-4-24).

표 IV-4-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2023년)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담	616,414	(70.6)	433,646	(74.7)	235,060	(79.2)
의료지원	4,856	(0.6)	1,002	(0.2)	448	(0.2)
심리치료지원	62,743	(7.2)	29,845	(5.1)	15,101	(5.1)
가족기능 강화	93,032	(10.7)	34,419	(5.9)	34,525	(11.6)
학습 및 보호지원	7,741	(0.9)	1,108	(0.2)	448	(0.2)
사건처리지원	39,804	(4.6)	41,579	(7.2)	3,191	(1.1)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816	(0.1)	33,824	(5.8)	681	(0.2)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327	(0.0)	87	(0.0)	52	(0.0)
기타	46,961	(5.4)	5,284	(0.9)	7,128	(2.4)
계	872,694	100.0	580,794	100.0	296,634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2023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 90.2%, 분리 보호 9.3%, 가정복귀 1.3%, 기타 0.5% 순이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분리보호와 가정복귀는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IV-4-13).

표 IV-4-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7~2023년)

(단위: 건(%))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¹⁾	기타 ²⁾	가정복귀 ³⁾	계
2017	17,589(78.6)	3,527(15.8)	58(0.3)	54(0.2)	1,139(5.1)	22,367(100.0)
2018	20,164(82.0)	3,287(13.4)	32(0.1)	101(0.4)	1,020(4.1)	24,604(100.0)
2019	25,206(83.9)	3,669(12.2)	60(0.2)	121(0.4)	989(3.3)	30,045(100.0)
2020	25,916(83.9)	3,926(12.7)	90(0.3)	175(0.6)	798(2.6)	30,905(100.0)
2021	31,804(84.6)	4,439(11.8)	44(0.1)	320(0.9)	998(2.7)	37,605(100.0)
2022	25,028(89.5)	2,293(8.2)	52(0.2)	104(0.4)	494(1.8)	27,971(100.0)
2023	23,234(90.2)	2,393(9.3)	-	132(0.5)	325(1.3)	25,739(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7.
 보건복지부(2023c).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p.33-34.
 보건복지부(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1-22.

* 주: 1) 2023년부터 피해아동의 상황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기타로 구분하여, 사망 인원이 집계에서 제외됨
 2)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2022년부터 가정복귀 인원은 분리보호에 포함하여 산정



* 주: 본 그림은 <표 IV-4-25>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그림 IV-4-13.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2017~2023년)

3) 소결

본 절에서는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중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살펴 보았다. 폭력 및 학대 영역의 하위지표로는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하는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있고,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해당하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이 있다. 폭력 및 학대 영역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34.4%,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25.6%였다.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 약 5명 중 2명 정도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하였다.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10.9%였으며,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5.1%였다.

친구, 선후배로부터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폭력은 욕설 및 모욕 21%, 폭행

및 구타 9.8%, 따돌림 8.5%, 성적인 희롱 및 추행 3.8%, 돈, 물건 빼앗김 3.1%, 강제적인 심부름 2.2% 순으로 높았다.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경험률은 돈, 물건 빼앗김을 제외한 모든 폭력피해 유형이 2023년보다 2024년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모든 폭력피해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욕설 및 모욕을 경험한 비율이 28.7%, 폭행 및 구타를 경험한 비율이 21.7%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으로는 욕설 및 모욕 21.0%, 사생활 침해 5.1%, 성희롱 3.3%, 협박 3.2%, 따돌림 2.8% 순으로 높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은 협박을 제외한 모든 폭력피해 유형이 2023년보다 2024년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모든 폭력피해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2022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총 38,625건으로, 이 중 13세 미만이 3.5%(1,342건), 13세 이상이 96.5%(37,283건)였다.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6%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생도 작년보다 올해 증가하였다.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친구 26.3%, 부모님(보호자) 16.1%, 선생님 12.0%, 형제·자매 4.3%, 선후배 1.6%, 경찰 1.4%, 전문 상담가 0.7% 순이었다.

다음으로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관련해서는,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8,522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94.3%인 45,771건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45,771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56.2%인 25,739건이었으며, 일반사례는 42.7%(19,530건), 조사 진행 중 사례는 1.1%(502건)였다. 아동학대 사례 수는 2019년 22.0% 증가, 2020년 2.9% 증가, 2021년 21.7%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25.6% 감소, 2023년에는 8.0% 감소하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가 85.9%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7.3%, 타인 3.3%, 친인척 3.0%, 기타 0.6% 순이었다. 2023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 28.7%, 신체학대 18.3%, 방임 7.7%, 성학대 2.3% 순이었다.

가정 내 방임으로는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0%,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4.8%,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7%,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방임유형에서 2023년보다 2024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서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4년 중학생은 약 10.7%, 고등학생은 약 8.7%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살펴보면, 2023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는 92개,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279.8개였다. 2022년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는 7개 증가하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감소하였다. 2023년 피해아동에게는 872,694건, 학대 행위자에게는 580,794건, 부모 또는 가족에게는 296,634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로는 상담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족기능 강화(10.7%), 심리치료지원(7.2%), 기타(5.4%), 사건처리지원(4.6%) 순이었다.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역시 상담이 74.7%로 가장 높았으며, 사건처리지원(7.2%), 가족기능 강화(5.9%), 행위자 수탁프로그램(5.8%), 심리치료지원(5.1%) 순이었고,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로는, 상담이 79.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가족기능 강화(11.6%), 심리치료지원(5.1%) 순이었다. 2023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으로는 원 가정 보호 90.2%, 분리 보호 9.3%, 가정복귀 1.3%, 기타 0.5% 순이었다.

여전히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폭력 및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률이 높고(모욕적인 말 34.4%, 신체적인 별 25.6%),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장 많다(85.9%)는 점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가족 보호 체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또래로부터의 폭력,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성폭력, 가정 내 방임의 영역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작년보다 증가한 영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률(육설 및 모욕 28.7%, 폭행 및 구타 21.7%, 따돌림 14.6%)이 높은 만큼 저연령층을 위한 폭력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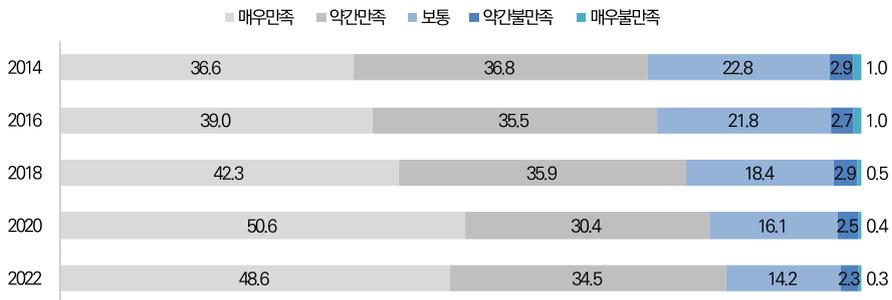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¹⁴⁸⁾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조사(승인번호 제101018호)에 의하면, 만 13~19세 아동·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48.6%가 매우 만족한다고, 34.5%가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약 8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2014년 이후로 만13~19세 아동·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모와의 관계의 만족 정도는 73.4%~78.2%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0년 81.0%에서 2022년에 83.1%로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대부분의 만13~19세 아동·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그림 IV-5-1).



* 출처: 통계청 (2014, 2016, 2018, 2020, 2022). 2014~2022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웹사이트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주: 단위: %

그림 IV-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2014~2022년)

148) 이 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원(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어린이집 설치 개소 수와 재원 아동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수는 2017년 40,238개소에서 2023년 28,954개소로 2017년 대비 약 28%가 감소하였고, 재원 아동 수는 2017년 1,450,243명에서 2023년 1,011,813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0.2%가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로 인해 영유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형 어린이집이 10,692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 8,886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6,187개소, 직장 어린이집 1,308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206개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551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 124개소 순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해마다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 수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2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은 386개소, 직장 어린이집은 17개소가 증가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420,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86,487명, 가정 어린이집 159,864명, 직장 어린이집 61,570명,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6,812명,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24,010명, 부모협동 어린이집 2,8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 수와 유사하게 재원 아동 수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아동 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수는 2017년 이래 설치 수와 비례하여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으나 직장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는 어린이집 설치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표 IV-5-1).

표 IV-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7~2023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보육 시설 설치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2019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37,371
개소 수 (개소)	2020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35,352
	2021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33,246
	2022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30,923
	2023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28,954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 시설 재원 아동 수 (명)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2019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2020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2021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2022	276,670	64,503	27,743	477,628	184,053	3,203	61,650	1,095,450
	2023	286,487	56,812	24,010	420,219	159,864	2,851	61,570	1,011,813

* 출처: 보건복지부(2024f).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p.2-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 79.6%, 가정 어린이집이 79.5%로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각각 70.5%, 직장 어린이집 63.1%,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61.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54.7% 순이었다. 2017년 어린이집 이용률은 82.6%에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3년 현재 72.2%로 하락하였다(표 IV-5-2).

표 IV-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7~2023년)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7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2018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2019	정원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1,686,873
	현원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이용률	86.1	70.0	74.5	79.7	85.9	77.8	77.3	80.9
2020	정원	302,378	119,289	48,839	772,536	290,123	4,958	90,137	1,628,260
	현원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이용률	83.8	65.7	69.8	74.8	79.4	74.9	73.7	76.4
2021	정원	326,210	113,294	46,084	715,671	259,901	4,636	91,700	1,557,496
	현원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이용률	82.5	63.6	67.3	74.8	80.4	74.7	70.8	76.1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22	정원	343,104	108,825	43,619	654,154	226,994	4,401	95,589	1,476,686
	현원	276,670	64,503	27,743	477,628	184,053	3,203	61,650	1,095,450
	이용률	80.6	59.3	63.6	73.0	81.1	72.8	64.5	74.2
2023	정원	359,817	103,921	39,011	596,075	201,026	4,046	97,544	1,401,440
	현원	286,487	56,812	24,010	420,219	159,864	2,851	61,570	1,011,813
	이용률	79.6	54.7	61.5	70.5	79.5	70.5	63.1	72.2

*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9c). 2019 보육통계. p.17. 보건복지부(2022a). 2021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4f).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0e). 2020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5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가족의 기능과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정 내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돌봄 기능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방과후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지자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여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함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방과후학교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3년 방과후학교의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율은 41.0%로 전년도에 비해 4.8%p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 비용은 1.2만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학교 수업 축소, 휴교 등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2022년 이후 점차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참여율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 참여율의 경우, 초등학교 53.2%, 중학교 24.0%, 고등학교 33.8%이었으며, 참여 비용은 초등학교가 2.1만원, 중학교 0.1만원, 고등학교 0.4만원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71,328개 프로그램 중에 특기적성이 59%(160,007개), 교과 41%(111,321개)의 비율로 제공되었다(표 IV-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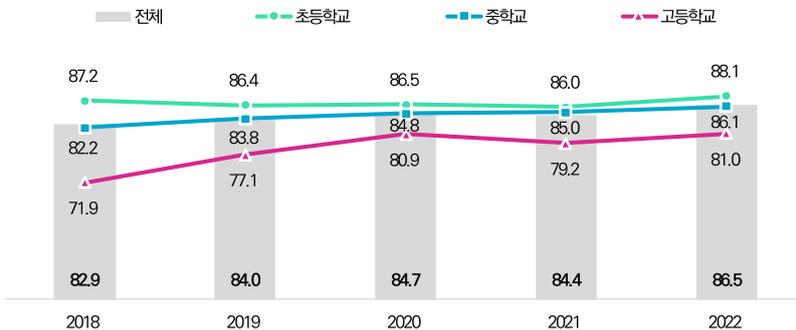
표 IV-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¹⁾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2023년)

(단위 : %, 만원, 개)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과(%)	특기적성(%)	계
	참여율 ²⁾	비용 ³⁾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9	58.7	2.2	27.4	0.2	47.7	1.0	48.4	1.4	147,416(43.8)	188,971(56.2)	336,387
2020	10.9	0.1	4.2	0.0 ⁴⁾ **	12.0	0.2	9.5	0.1	69,656(43.1)	89,068(56.9)	158,725
2021	35.3	1.1	15.3	0.1	29.8	0.5	28.9	0.7	132,101(50.0)	132,321(50.0)	264,422
2022	47.0	1.8	20.2	0.1	30.6	0.6 ⁴⁾ *	36.2	1.1	111,321(41.0)	160,007(59.0)	271,328
2023 ⁵⁾	53.2	2.1	24.0	0.1	33.8	0.4	41.0	1.2			

* 출처: 통계청, 교육부(2019, 2021~2023).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 참여율,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6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통계청, 교육부(2019, 2021~2023).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통계청, 교육부(2020a).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어학연수 참여율,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6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통계청, 교육부(2020b).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어학연수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5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교육부 (2022.05.02). 2020~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1480>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교육부 (2023.06.13).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5316>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4) 상대표준오차(RSE)가 크면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 상대표준오차가 25%~50% 미만으로 신뢰도 다소 낮음, **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으로 신뢰도 낮음)
 5) 2023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24년 9월 30일 현재 미발표되어 공란으로 둬م.



* 출처: 교육부 (2023.06.13).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5316>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주: 단위: 점

그림 IV-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8~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82.9점이었던 만족도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84점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 86.5점으로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초등학교의 만족도는 2018년 87.2점에서 매년 조금씩 하락하다가 2022년에 88.1점으로 상승하였다. 중학교는 매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이를,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그림 IV-5-2).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설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연계를 제공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24d).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현재 전국에 4,00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 이용인원은 105,210명이었다. 학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미취학 아동 1,972명, 초등학생 저학년 38,133명, 고학년 43,846명, 중학생 17,495명, 고등학생 3,680명, 탈학생 84명이 이용하였는데,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이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4).

표 IV-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18~2022년)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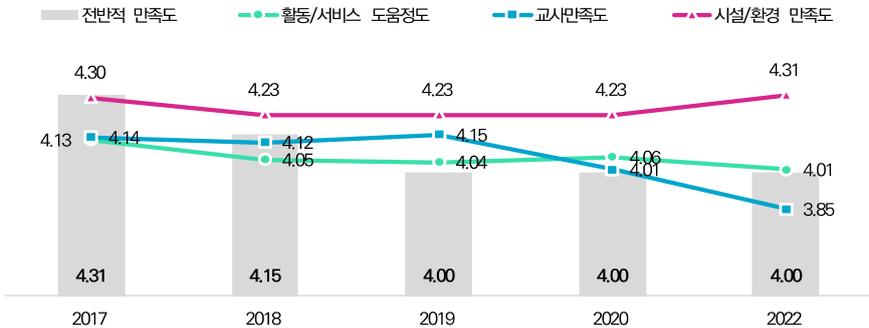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저학년	고학년			
2018	4,138	109,610	1,798	43,438	44,063	16,321	3,902	88
2019	4,081	108,971	2,146	44,094	43,681	15,531	3,443	76
2020	4,008	106,510	1,900	40,199	43,492	17,207	3,578	134
2021	4,057	106,746	2,067	38,471	44,260	18,064	3,800	84
2022	4,005	105,210	1,972	38,133	43,846	17,495	3,680	84

* 출처: 보건복지부(2023e).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2년 12월말 기준). pp.44-45.

* 주: 이용 아동 현황에 대해 무응답한 센터 2개소가 제외됨.

202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가 아동보호통합패널로 통합되어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에 대한 항목별 만점 기준이 이전 조사와는 달리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 센터 이용 만족도는 8점 만점, 서비스 도움 정도는 45점 만점, 교사 만족도는 20점 만점, 시설 및 환경 만족도는 8점 만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를 추이를 살펴보고자 2022년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보았다.

비공개 처리된 2021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를 제외하고 최근 6년간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만족도는 2017년 4.31점에서 2019년 4.00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까지 4.00점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활동 및 서비스 도움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4.01점(36.1점/45점 만점 기준)으로 보고되었으며, 교사만족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4.10점대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3.85점(15.4점/20점 만점 기준)에 머물렀다. 또한, 시설 및 환경 만족도는 2017년 4.30점에서 2018년~2020년 동안 4.23점을 유지하다가 2022년 4.31점(6.9점/8점 만점 기준)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V-5-3).



* 출처: 김희진, 임희진, 정유미 (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p.206, pp.270-277. 민소영 외(2023).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Ⅲ: 지역아동센터. p.89, p.94, p.95, p.98.

* 주: 1) 2017~2020년의 경우,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이며, 2022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가 아동보호통합패널로 통합되어 각 만족도 항목별로 만점 기준이 달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제시하였음.
2) 2021년도 만족도 조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비공개 자료로 지정하여 공개되지 않음.

그림 IV-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2017~2022년)

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초등학교 아동들을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2017년 7월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모한 ‘다함께돌봄시범사업’을 통해 10개소가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돌봄 정책’이 발표되면서 17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었고, 2020년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이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e).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와 방학 중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의 돌봄서비스를 연계 및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e). 2024년 9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1,17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334개소, 서울이 271개소로 많은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표 IV-5-5).

표 IV-5-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4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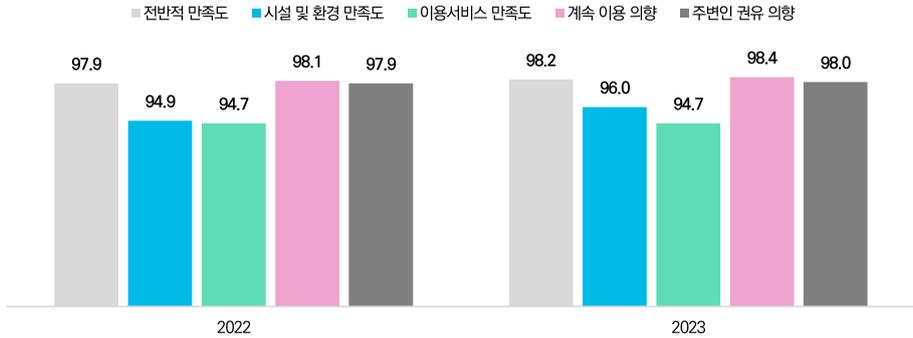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271	66	13	41	33	31	29	9	33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47	39	56	50	38	71	36	7	1,171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2022년부터 2023년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2022년 97.9%에서 2023년 98.2%로 2023년에 긍정 응답률이 다소 상승하였다. 또한, 시설 및 환경 만족도도 2022년 94.9%에서 2023년 96.0%로, 계속 이용 의향이 2022년 98.1%에서 2023년 98.4%, 주변인 권유 의향은 2022년 97.9%에서 2023년 98.0%으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용서비스 만족도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94.7%로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들은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할만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IV-5-4).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2). 돌봄 행복 플러스(2편) 통계로 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웹진 홈페이지 <https://dadol.or.kr/upload/dadolWebzine/202212/sub3-3.html>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홈페이지 https://dadol.or.kr/board/library_print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 주: 긍정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의 비율을 제시하였음(단위 %)

그림 IV-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2022~2023년)

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학기간을 포함한 연중 1일 4시간 이상 체험활동이나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00개소에서 운영되었고(여성가족부, 2024a), 이후 매해 운영하는 기관 수가 증가하여 2023년 현재 전국 3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인원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만 여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한 이래로 2023년에는 14,588명이 이용하였다(표 IV-5-6).

표 IV-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4~2023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개소	인원	구분	개소	인원
2014	200	8,091	2019	280	11,584
2015	244	9,490	2020	304	12,341
2016	250	9,745	2021	332	13,145
2017	250	9,773	2022	342	14,059
2018	260	10,742	2023	350	14,588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19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전체 만족도 점수는 2021년 4.09점에서 2022년 4.10점, 2023년 4.15점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23년 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는 4.15점,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생각이 4.13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이 4.0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5-7).

표 IV-5-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1~2023년)

(단위 : 점)

연도	구분	만족도 영역	청소년방과후	프로그램에	개인생활지원에	전체
			아카데미 만족도	대한 생각	대한 생각	
2021	평균(표준편차)		4.06(0.66)	4.02(0.68)	4.18(0.73)	4.09(0.63)
	100점 만점 환산점수		81.2	80.4	83.6	81.8
2022	평균(표준편차)		4.07(0.68)	4.15(0.75)	4.08(0.79)	4.10(0.67)
	100점 만점 환산점수		81.3	83.0	81.7	82.0
2023	평균(표준편차)		4.15(0.63)	4.05(0.70)	4.13(0.72)	4.15(0.60)
	100점 만점 환산점수		83.0	80.9	82.7	82.9

* 출처: 서정아, 조아미(2021).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2).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p.25. 서정아, 조아미(2023).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p.30.

* 주: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들이 신체 및 정서·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4c).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입양숙려제, 국내외 입양에 대한 법원 허가제,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부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 국내·외 입양이 모두 급감된 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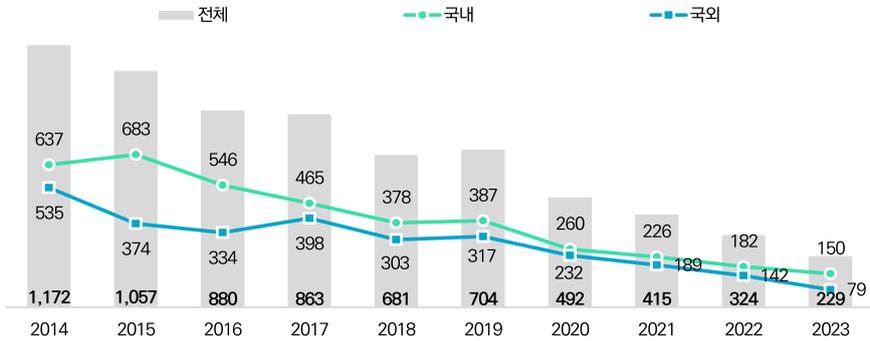
2023년 국내·외 입양 현황을 보면, 입양된 아동 수는 총 229명이었고, 국내 입양 아동 수는 150명(65.5%), 국외 입양 아동 수는 79명(34.5%)이었다. 전년 대비 전체 입양 아동 수는 95명이 줄어들어 약 29.3%가 감소하였으나 국내 입양 비율은 증가하였다(표 IV-5-8, 그림 IV-5-5).

표 IV-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2014~2023년)

(단위 :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연도	계	국내	국외
2014	1,172	637 (54.4)	535 (45.6)	2019	704	387 (55.0)	317 (45.0)
2015	1,057	683 (64.6)	374 (35.4)	2020	492	260 (52.8)	232 (47.2)
2016	880	546 (62.0)	334 (38.0)	2021	415	226 (54.5)	189 (45.5)
2017	863	465 (53.9)	398 (46.1)	2022	324	182 (56.2)	142 (43.8)
2018	681	378 (55.5)	303 (44.4)	2023	229	150 (65.5)	79 (34.5)

* 출처: 보건복지부(2014~2024).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0~20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120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및 재구성.



* 출처: 보건복지부(2014~2024).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3~202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및 재구성.

* 주: 단위: 명

그림 IV-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2014~2023년)

② 입양 사후관리

입양 사후관리는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서로 간 적응 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입양가정의 의사를 존중함과 더불어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1년간 총 6회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3번의 가정방문이 필수로 진행되며 가정방문 이외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을 하게 된다. 이 때 사후관리 담당자는 주로 양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국내·외 입양인을 위한 사후서비스 사업은 4개 부처(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 이관된 이후, 2014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외입양인이 모국 방문과 정책을 위한 생활지원, 국내입양인의 입양 후 가족 간 상호적응 및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지원 등의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표 IV-5-9).

표 III-5-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예시)

대상	구분	내용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 (재외공관 경유)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음식, 명절, 전통음악, 태권도 등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현지 사회 적응력 제고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돕기 위한 단체 지원
국내 단체 (국외 입양인)	모국방문	연고지 방문 및 문화체험 등 입양인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
	모국생활지원	한국에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사업(한국 국적회복, 취업, 법률 및 재정관련 안내, 사회서비스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테마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기타 행사지원 등	국외입양인 관련 국제행사 등 지원 사업
국내 단체 (국내 입양인)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양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연장아 등 특수육구 입양가족 지원	연장아(만 1세 이상 아동) 등 특수육구가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국내입양인 및 입양 가족 간 지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 지원	국내 입양가정 중 상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대상 지원 사업(사례관리 등)
	기타 행사지원	기타 국내입양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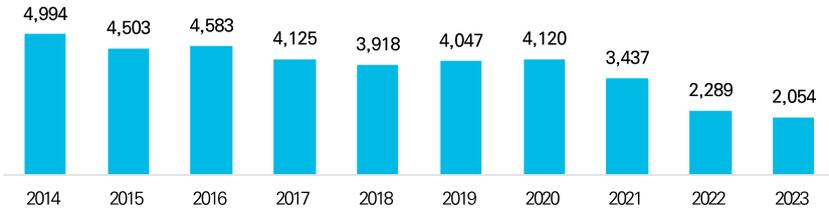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4b). 2024 입양실무매뉴얼. p.95.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nfo.do?mi=1177&bbsId=1014&nttSn=6567>에서 2024년 7월 17일 인출.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보호대상아동은 2014년 4,994명에서 2023년 현재 2,054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까지 4천여 명에 머물렀던 보호대상아동 수는 2021년 3,437명에서 2022년 2,28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에 2023년에 2,054명으로 보고되었다(그림 IV-5-6).



* 출처: 보건복지부(2024g).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4년 9월 9일 인출.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단위: 명)

그림 IV-5-6.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추이(2014~2023년)

2023년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보면, 전체 2,054명 중 빈곤 및 실직, 학대로 발생한 경우가 1,692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부모 및 혼외자로 인한 발생이 259명(12.6%), 유기가 88명(4.3%), 비행 및 가출이 14명(0.7%), 미아 1명(0.0%)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표 IV-5-10).

표 IV-5-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7~2023년)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125	3,918	4,047	4,120	3,437	2,289	2,054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빈곤·실직·학대 ¹⁾	2,778 (67.3)	2,726 (69.6)	2,865 (70.8)	3,006 (73.0)	2,661 (77.4)	1,953 (85.3)	1,692 (82.4)
비행·가출 ²⁾	227 (5.5)	231 (5.9)	473 (11.7)	468 (11.4)	293 (8.5)	11 (0.5)	14 (0.7)
미혼부모·혼외자	847 (20.5)	623 (15.9)	464 (11.5)	466 (11.3)	366 (10.6)	252 (11.0)	259 (12.6)
유기	261 (6.3)	320 (8.2)	237 (5.9)	169 (4.1)	117 (3.4)	73 (3.2)	88 (4.3)
미아	12 (0.3)	18 (0.5)	8 (0.2)	11 (0.3)	0 (-)	0 (-)	1 (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g).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4년 9월 9일 인출.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이며, 2020년부터는 부모교정시설입소가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또한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54명의 보호대상아동 중에서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1,067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가정위탁 및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이 포함된 가정위탁이 783명(38.1%), 입양이 162명(7.9%), 가정형 보호 42명(2.0%)의 순으로 보고되었다(표 IV-5-10).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내에서 보호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되,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여전히 시설보호가 대안양육 체계 내에서 공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한 보호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표 IV-5-11).

표 IV-5-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7~2023년)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125	3,918	4,047	4,120	3,437	2,289	2,054
시설보호 ¹⁾	2,421 (58.7)	2,449 (62.5)	2,739 (67.7)	2,727 (66.2)	2,183 (63.5)	1,294 (56.5)	1,067 (51.9)
가정위탁	994 (24.1)	937 (23.9)	1,003 (24.8)	1,068 (25.9)	1,028 (29.9)	802 (35.0)	783 (38.1)
입양 ³⁾	285 (6.9)	174 (4.4)	104 (2.6)	88 (2.1)	75 (2.2)	52 (2.3)	162 ⁴⁾ (7.9)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양전 위탁	423 (10.3)	357 (9.1)	196 (4.84)	237 (5.8)	151 (4.4)	114 (5.0)	-
소년소녀가정	2 (0.0)	1 (0.0)	5 (0.1)	0 (-)	0 (-)	0 (-)	0 (-)
가정형 보호	-	-	-	-	-	27 (1.2)	42 (2.0)

* 출처: 보건복지부(2024g),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4년 9월 9일 인출.

-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2022년부터 기존 통계표의 시설입소-일시보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별도 일시보호로 구분 및 일시보호-가정보호 항목 신설
 3)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4) 2023년부터 입양대상 아동으로 입양+입양전위탁 아동 통합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정 외 환경에서 대안양육 체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가정위탁과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까지 가정위탁 유형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해 가정 양육을 위탁하는 ‘일반인 위탁가정’으로 구분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21a),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2021년 6월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4조에 명시된 가정위탁보호 유형이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보호’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 현황을 보면, 전체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9,330명의 아동 중에 중장기 보호를 받는 아동은 9,312명이었고, 그 중에서 일반가정에서 친인척의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8,204명(87.9%), 친인척 외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871명(9.3%)이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237명(2.5%)였으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을 보호하는 일시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18명(0.2%)이었다(표 IV-5-12).

표 IV-5-12.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구분	2022		
전체	11,141	10,384	9,923	9,535	전체	9,330		
대리양육 위탁아동	7,426 (66.7)	6,905 (66.5)	6,542 (65.9)	6,107 (64.0)	중장기 보호	소계	9,312(99.8)	
친인척 위탁아동	2,801 (25.1)	2,572 (24.8)	2,447 (24.7)	2,344 (24.6)		일반가정 위탁아동	친인척	8,204(87.9)
							친인척외	871(9.3)
						전문가정위탁아동		237(2.5)
일반 위탁아동	914 (8.2)	907 (8.7)	934 (9.4)	1,084 (11.4)	일시가정위탁	18(0.2)		

* 출처: 보건복지부(2017~2021),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7~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l2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2022f)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_1&conn_path=l2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4c).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자립지원시설',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상담소'로 분류된다.

최근 5년 간 아동복지시설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호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아동복지시설 수는 279개소에서 2022년 306개소, 보호아동 수는 2018년 12,193명에서 2022년 10,312명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 아동복지시설 수는 전년에 비해 7개소가 늘었으며,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수는 693명이 줄어들었다(표 IV-5-13).

표 IV-5-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¹⁾ 현황(2018~2022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 수	279	281	274	299	306
현재 입소아동 ²⁾	12,193	11,665	11,356	11,005	10,312

* 출처: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2d).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p.1.

-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의 경우, 시설 수는 2018년 558개소에서 2022년 520개소로 다소 감소되었으며,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도 2018년 2,872명에서 2022년 2,669명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 현재,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전년에 비해 77개소가,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수도 436명이 줄어들었다(표 IV-5-14).

표 IV-5-14.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18~2022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 수	558	578	595	617	520	
이용 인원	계	2,872	2,949	3,126	3,105	2,669
	남	1,547	1,602	1,686	1,676	1,467
	여	1,325	1,347	1,440	1,429	1,202

* 출처: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 (2021a).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p.1.

(3) 가정 밖(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정 밖(가출)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정 밖(가출) 청소년 가출 비율과 사유를 파악하고자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1년 간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가출 경험이 있었는데, 중학생(4.0%)이 고등학생(2.9%)과 초등학생(2.3%)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을 해본 경험이 많았다. 또한, 조손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률(6.9%)이 양부모가정 속한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률(2.8%)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표 IV-5-15).

표 IV-5-15. 가출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0	97.0	100.0(8,587)	2.239
성별	남학생	3.3	96.7	100.0(4,412)	
	여학생	2.8	97.2	100.0(4,175)	
학교급	초등학교	2.3	97.7	100.0(2,878)	15.363***
	중학교	4.0	96.0	100.0(2,894)	
	고등학교	2.9	97.1	100.0(2,815)	
지역규모	대도시	2.8	97.2	100.0(3,313)	1.658
	중소도시	3.3	96.7	100.0(4,090)	
	읍면지역	2.8	97.2	100.0(1,18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	97.2	100.0(7,686)	14.180**
	한부모가정	5.0	95.0	100.0(677)	
	조손가정	6.9	93.1	100.0(89)	
	기타	2.7	97.3	100.0(97)	
학업 성적	상	2.0	98.0	100.0(3,295)	56.637***
	중	2.7	97.3	100.0(3,392)	
	하	5.6	94.4	100.0(1,861)	
경제적 수준	상	2.3	97.7	100.0(5,130)	53.225***
	중	3.3	96.7	100.0(2,708)	
	하	7.3	92.7	100.0(709)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5년 간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을 보면, 2020년 2.9%에서 2022년 3.6%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2.7%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3.0%로 다소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 가출 경험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2020년 2.3%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8%로 급증하였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2020년 3.2%에서 2024년 2.9%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감을 반복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2020년 3.1%에서 2022년 3.8%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3.0%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4.0%로 1.0%p가 급증하였다(그림 IV-5-7). 특히,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최근 5년 간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과 그 이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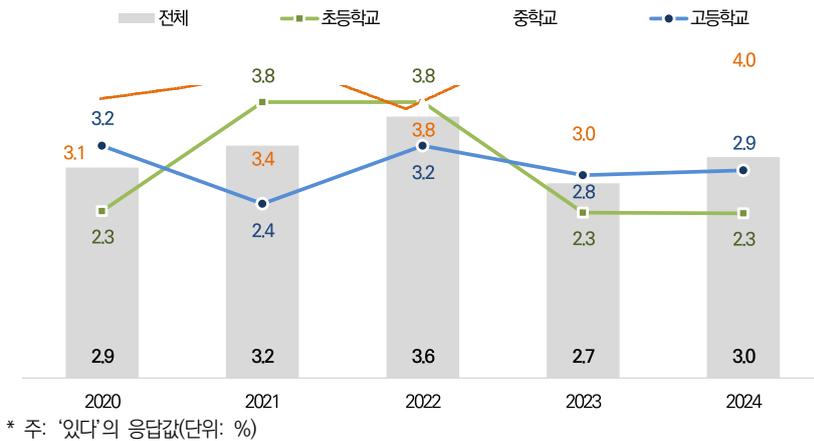


그림 IV-5-7. 가출 여부: 학교급별(2020~2024년)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출한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부모님과의 문제'가 70.2%로 가장 높게 보고되어 가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7명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혹은 어려움에 의해 가출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문제'가 10.8%,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7.9%, '기타' 6.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3% 순으로 보고되었다(표 IV-5-16).

표 IV-5-16. 가출한 주된 이유(2024년)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 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10.8	70.2	2.3	2.3	7.9	6.5	100.0(250)	10.762	
성별	남학생	12.9	64.8	3.2	3.8	6.8	8.4		100.0(141)
	여학생	8.0	77.3	1.1	0.4	9.3	3.9	100.0(109)	
학교급	초등학교	5.8	66.3	7.4	3.4	7.3	9.8	100.0(60)	20.281*
	중학교	9.2	78.9	0.0	1.7	5.9	4.3	100.0(112)	
	고등학교	16.8	60.8	1.7	2.4	11.2	7.0	100.0(78)	
지역 규모	대도시	6.9	73.1	1.5	3.8	7.8	6.8	100.0(90)	9.657
	중소도시	13.2	69.5	3.5	0.9	5.9	7.0	100.0(128)	
	읍면지역	11.8	65.2	0.0	3.7	16.0	3.1	100.0(3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5	70.0	1.8	1.8	7.9	6.0	100.0(208)	5.153
	한부모가정	0.0	77.0	0.0	4.6	10.3	8.0	100.0(33)	
	조손가정	17.8	39.7	33.5	9.0	0.0	0.0	100.0(6)	
	기타	0.0	100.0	0.0	0.0	0.0	0.0	100.0(3)	
학업 성적	상	20.2	65.4	1.8	3.3	6.4	3.1	100.0(60)	9.657
	중	8.7	66.9	5.4	1.9	8.3	8.7	100.0(87)	
	하	7.1	75.6	0.0	2.1	8.5	6.6	100.0(102)	
경제적 수준	상	16.2	73.8	2.1	2.5	3.6	1.8	100.0(113)	39.084***
	중	6.0	66.5	2.6	1.0	9.4	14.4	100.0(86)	
	하	7.0	68.1	2.3	4.2	15.1	3.4	100.0(50)	

* $p < .05$, *** $p < .001$.

아동·청소년이 꼽은 주요한 가출 이유를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님과과의 문제’는 2020년 61.0%에서 2021년 62.4%로 다소 상승하였다가 2023년 52.0%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70.2%로 다시 급증하였다.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해 가출을 했다는 응답률은 2020년 20.8%에 비해 2024년에는 10.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2020년 8.0%에서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4년 7.9%에 머물렀다(그림 IV-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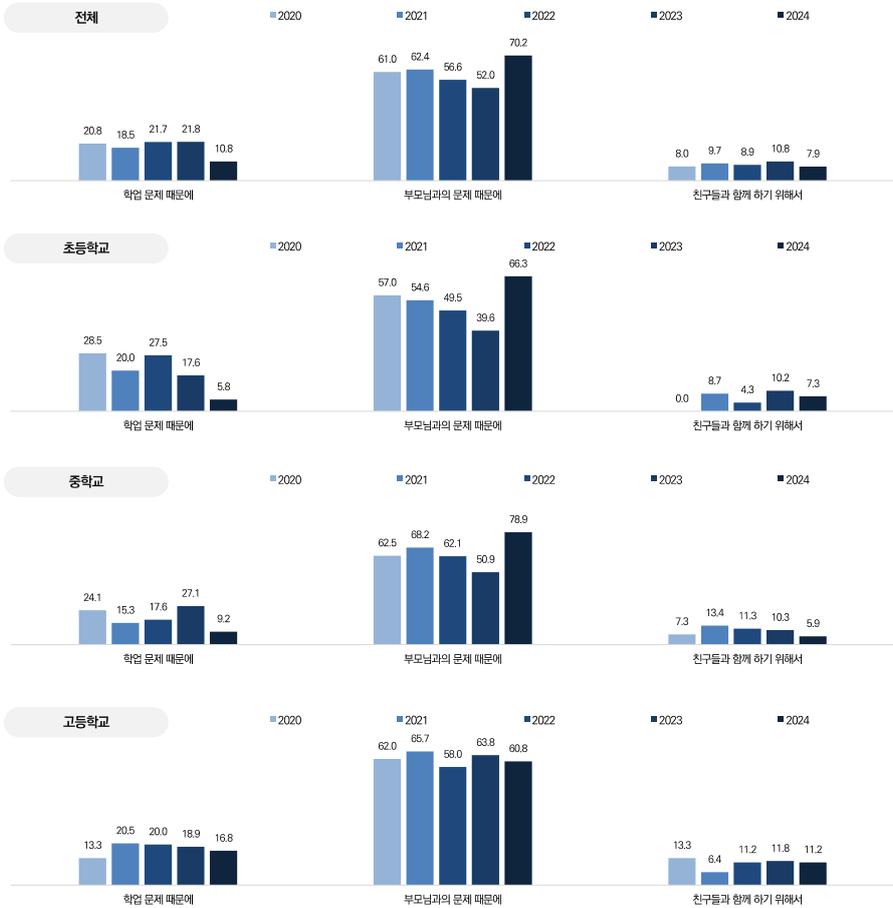


그림 IV-5-8. 가출을 한 주된 이유(2020~2024년)

② 가정 밖(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쉼터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쉼터는 9~24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및 선도,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학업과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a).

청소년쉼터는 보호기간에 따라 7일 이내 일시보호를 하는 일시쉼터,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하는 단기쉼터, 3년 이내 중장기보호(필요시 1년 연장)를 하는 중장기쉼터로 나뉜다(표 IV-5-17).

표 IV-5-17.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4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정 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176.

2023년 현재, 일시쉼터는 33개소, 단기쉼터는 66개소, 중장기쉼터는 39개소로, 총 138개소의 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청소년쉼터의 운영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쉼터 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2014년 109개소에서 2023년 138개소로 10년 동안 29개소가 증가하였다. 또한, 예산도 2014년 8,710백만원에서 2023년 25,290백만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비해 2023년 예산은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만,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2014년 24,079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에 최대치인 32,402명이 이용하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24,654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IV-5-18).

표 IV-5-1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4~2023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연도	구분	쉼터 수(개소)			총계	예산 (백만 원)	입소 청소년 수(명)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2014		22	50	37	109	8,710	24,079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2019		31	63	40	134	18,970	32,402
2020		32	61	40	133	19,385	20,401
2021		32	63	36	134	19,556	21,475
2022		32	67	39	138	22,314	28,627
2023		33	66	39	138	25,290	24,654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p.175-177.
 여성가족부(2016-2022). 여성가족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2023b).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77.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쉼터 3.9%, 청소년 상담기관 2.4%, 청소년전화 1388 1.6%, 청소년수련관(센터) 1.4% 순으로 나타났다(표 IV-5-19).

표 IV-5-19. 가출 후 이용한 기관(2024년)

(단위 : %)

구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성별	남학생	90.6	3.0	3.0	2.7	0.7	-	100.0(90)
	여학생	90.9	4.8	1.8	0.0	2.5	-	100.0(81)
학교급	중학교	91.7	3.2	2.0	1.5	1.6	-	100.0(100)
	고등학교	89.4	4.8	3.0	1.2	1.5	-	100.0(71)
지역 규모	대도시	85.7	7.0	4.0	1.4	1.9	-	100.0(64)
	중소도시	92.3	2.6	2.0	1.9	1.2	-	100.0(81)
	읍면지역	98.3	0.0	0.0	0.0	1.7	-	100.0(2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4	2.2	2.5	1.4	1.5	-	100.0(144)
	한부모가정	81.7	16.2	0.0	0.0	2.0	-	100.0(21)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조손가정	81.6	0.0	18.4	0.0	0.0	-	100.0(3)	7.725	
	기타	68.3	0.0	0.0	31.7	0.0	-	100.0(1)		
학업 성적	상	95.3	4.7	0.0	0.0	0.0	-	100.0(36)		
	중	88.0	2.3	3.8	4.7	1.2	-	100.0(52)		
	하	90.3	4.6	2.6	0.0	2.5	-	100.0(82)		
경제적 수준	상	92.2	2.5	2.7	1.7	0.9	-	100.0(67)		4.458
	중	89.4	6.5	1.4	0.0	2.6	-	100.0(61)		
	하	90.1	2.2	3.6	3.1	1.0	-	100.0(42)		

최근 5년 간 가출 후에 가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2020년 91.5%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3년에 94.2%로 나타난 후, 2024년에 전년 대비 3.5%p 감소한 90.7%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률은 2022년 6.1%를 제외하고 2020년에서 2024년 동안 3.0%대를 유지하였다. 또한, 청소년 상담기관 이용 경험률의 경우, 2020년 2.3%에서 매년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최저치인 0.6%로 보고되었다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8%p 증가한 2.4%로 나타났다(그림 IV-5-9).



그림 IV-5-9.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202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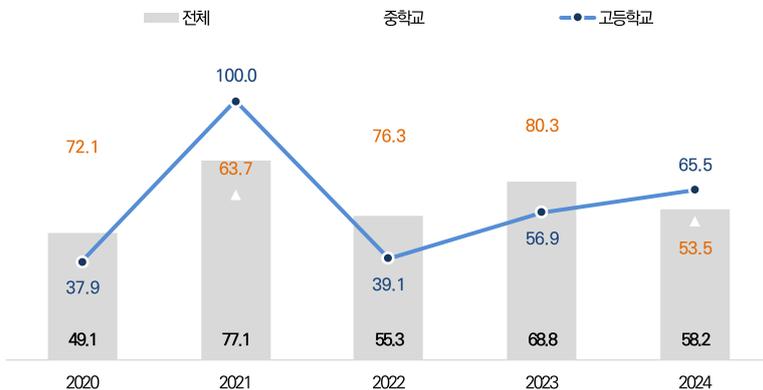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가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n=35)들에게 해당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 및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과 관련된 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표 IV-5-20).

표 IV-5-2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2024년)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2.59(1.22)	29.7	12.1	28.0	30.2	100.0(35)	1.646
성별							
남학생	2.51(1.25)	31.6	16.2	21.8	30.4	100.0(20)	1.183
여학생	2.69(1.21)	27.2	6.9	36.0	29.9	100.0(15)	
학교급							5.184
중학교	2.50(1.26)	33.4	13.1	23.8	29.7	100.0(21)	
고등학교	2.73(1.18)	23.9	10.6	34.5	31.0	100.0(14)	6.394
지역 규모							
대도시	2.86(1.14)	16.9	17.7	27.7	37.6	100.0(16)	
중소도시	2.42(1.28)	39.1	5.4	30.1	25.5	100.0(18)	8.005
읍면지역	1.35(1.16)	64.5	35.5	0.0	0.0	100.0(1)	
양부모가정	2.62(1.25)	28.9	14.5	22.4	34.1	100.0(26)	
한부모가정	2.52(1.14)	29.1	5.5	50.1	15.4	100.0(8)	4.824
조손가정	1.00(0.00)	100.0	0.0	0.0	0.0	100.0(1)	
기타	4.00(0.00)	0.0	0.0	0.0	100.0	100.0(0)	
학업 성적							8.005
상	2.89(1.24)	16.7	20.9	19.4	43.0	100.0(7)	
중	3.00(1.25)	22.0	6.5	20.9	50.7	100.0(14)	
하	2.07(1.05)	42.5	13.5	38.3	5.8	100.0(15)	4.824
경제적 수준							
상	2.33(1.33)	41.6	12.0	18.0	28.4	100.0(13)	
중	2.97(1.04)	14.4	9.2	41.3	35.2	100.0(15)	4.824
하	2.25(1.30)	39.9	18.7	18.3	23.1	100.0(7)	

최근 5년간 청소년이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추이를 보면, 가출 관련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77.1%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10.6%p 감소한 58.2%로 나타났다(그림 IV-5-10).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5-1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2020~2024년)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생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근거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의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3년을 주기로 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평가받고 있다(중앙사회서비스원, 2023).

2022년 평가지표 대비 2025년도 평가지표에서는 세부유형별 지표와 배점 등이 변경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평가지표 및 세부유형별 지표 수의 경우, 시설 및 환경(5개), 재정 및 조직운영(12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13개), 아동의 권리(8개), 지역사회관계(5개), 시설운영전반(3개)으로, 총 6개 평가영역과 4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25년 평가지표와 세부유형별 지표 수는 시설 및 환경(5개), 재정 및 조직운영(11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12개), 아동의 권리(7개), 시설운영전반(4개)으로, 총 5개 평가영역과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표 IV-5-21).

표 IV-5-21. 2022년도 대비 2025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영역	2022년도 평가지표	2025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1. (전체공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A2. (생활공통)시설 이용의 편리성
	A3. (전체공통)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A3. (생활공통)시설 이용의 쾌적성
	A4. 기본시설의 적절성 및 충분성	A4. 기본시설의 적절성 및 충분성
	A5. 식품보관 위생상태	A5. 조리공간 위생상태 및 식품(식재료) 구입·보관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사업비	B1. (전체공통)사업비
	B2. (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B2. (전체공통)후원금
	B3.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3. (전체공통)직원총원율
	B4. (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 금액(배점)	B4.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B5. (전체공통)직원총원율	B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B6.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B6. (생활공통)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영역	2022년도 평가지표	2025년도 평가지표
	B7. (전체공통)직원교육 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B7. (전체공통)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B8.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B8. (전체공통)직원복지
	B9. (전체공통)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B9. (전체공통)직원의 인권 및 안전보장
	B10. (전체공통)직원교육	B10.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B11. (전체공통)직원복지	B11. (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 기여
	B12.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안전보장(배점적용)	-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C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C2. 초기적응 프로그램	C2. 초기적응 프로그램
	C3.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C3.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체계성과 전문성
	C4. 퇴소지원 프로그램	C4. 아동의 건강한 식사지원
	C5.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C5. 가족·연고자 연계 서비스
	C6.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C6. 초등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
	C7.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C7. 지역사회연계
	C8.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C8.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C9. 건강한 식사지원	C9.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C10. 가족·연고자 연계 서비스	C10.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C11. 초등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 실적	C11.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종료 아동 관리의 적절성
	C12. 특성화 사업 I, II	C12. 특성화 사업 I, II
	C13. 자립지원 및 자립준비의 적절성	-
D. 아동의 권리	D1. (전체공통)비밀보장	D1. (전체공통)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D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 (전체공통)고충처리	D3. (전체공통)고충처리
	D4. (생활공통)서비스 정보제공	D4. (생활공통)서비스 정보제공
	D5. (생활공통)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결정권	D5. (생활공통)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결정권
	D6.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D6. 아동의 인권보호
	D7. 아동의 인권보호	D7.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D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
E. 지역 사회 관계	E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B10)으로 이동
	E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
	E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E4~5. 지역사회 연계	-
F. 시설 운영 전반	F1. (전체공통)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 인터뷰)	E1. (전체공통)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시설장 인터뷰 및 현장평가 자료)
	F2. (전체공통)서비스 질적 수준(직원 인터뷰)	E2. (전체공통)서비스 질적 수준(직원 인터뷰 및 현장평가 자료)

영역	2022년도 평가지표	2025년도 평가지표
	F3. (전체공통)자체평가의 정확성	E3. (전체공통)자체평가의 정확성
	-	E4. (전체공통)시설의 정보화 수준

*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2023).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pp.14-15.

평가영역별 배점의 경우, 2025년도에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제외됨에 따라 2022년도 배점이 시설 및 환경 10점, 재정 및 조직운영 2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아동의 권리 15점, 지역사회관계 10점, 시설운영전반 5점으로 구성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시설 및 환경 10점, 재정 및 조직운영 2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아동의 권리 20점, 시설운영전반 6점으로 변경되었다(표 IV-5-22).

표 IV-5-22.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배점

2022년도 평가영역별 배점			2025년도 평가영역별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 수(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 수(개)
A. 시설 및 환경	10	5	A. 시설 및 환경	10	5
B. 재정 및 조직운영	25	12	B. 재정 및 조직운영	29	11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13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12
D. 아동의 권리	15	8	D. 아동의 권리	20	7
E. 지역사회 관계	10	5	E. 시설운영전반	6	4
F. 시설운영전반	5	3			
총계	100	46	총계	100	39

*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2023).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p.12.

최근에 발표된 2022년 아동생활시설의 평가등급을 보면, 전체 277개 시설 중 A등급은 150개소(54.2%), B등급은 65개소(23.5%), C등급 39개소(14.1%), D등급 12개소(4.3%), F등급은 11개소(4.0%)로 보고되었다. 2022년 아동생활시설의 평가점수 평균은 86.7점이었고, 아동생활시설의 77.7%는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영역별 점수 추이를 보면, 시설 및 환경이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권리 영역은 90점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점수는 80점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2022년에는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운영전반 영역에 대한 점수는 90점대인 반면, 아동권리 영역의 점수는 81.0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재정 및 조직 점수도 79.5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각 시설별로 재정 및 조직과 아동권리 영역을 개선하고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표 IV-5-23).

표 IV-5-23.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2010	266	88.4	94.8	83.5	85.6	88.6	94.0	88.8
2013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2016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2019	285	88.8	92.2	81.2	83.7	93.0	90.1	87.6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2022	277	86.7	95.4	79.5	91.0	81.0	87.8	91.1
2022 세부결과		A : 150개소 / B : 65개소 / C : 39개소 / D : 12개소 / F : 11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p.129.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p.48.
 보건복지부(2017.0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p.2.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p.41.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고서. p.187.

나.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과 원가정 복귀에 따른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에서 이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였고,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더불어, 보호자의 의뢰가 없을 시 아동의 상황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과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부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이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이에 2016년 3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 상담 및 조사, 양육상황 점검, 보호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였고, 2017년 7월에는 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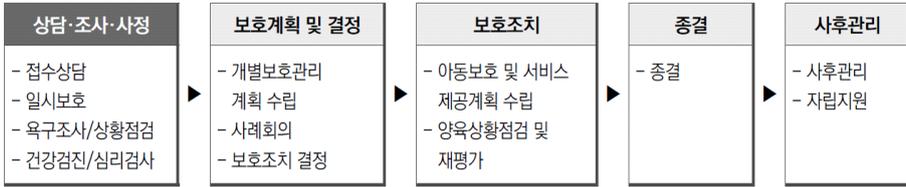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핵심과제로 발표하였으며, 2020년 10월에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각 시·군·구에 배치하였다. 이후 2021년 1월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배치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국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과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이러한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분리보호에 대한 결정 및 평가, 적절한 보호유형과 요구되는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하고, 보호조치가 변경되거나 종결되는 경우에는 원가정복귀의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 아동보호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 연계를 지역사회로 확대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의 절차는 ▲(1단계) 상담 및 조사·사정, ▲(2단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3단계) 보호조치, ▲(4단계) 보호조치 종결, ▲(5단계) 사후관리 등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IV-5-11, 그림 IV-5-12, 그림 IV-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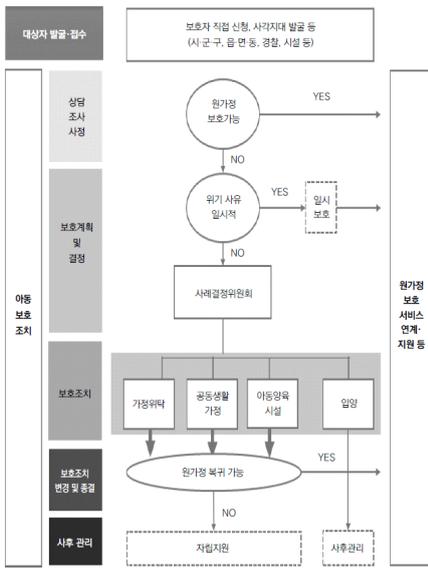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인 ‘상담 및 조사·사정’에서는 상담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단계인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와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 결정하게 된다. 3단계 ‘보호조치’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하게 된다. 4단계 ‘보호조치 종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에(18세) 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5단계 ‘사후관리’를 통해 보호가 종료된 후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서비스기관을 연계하는 등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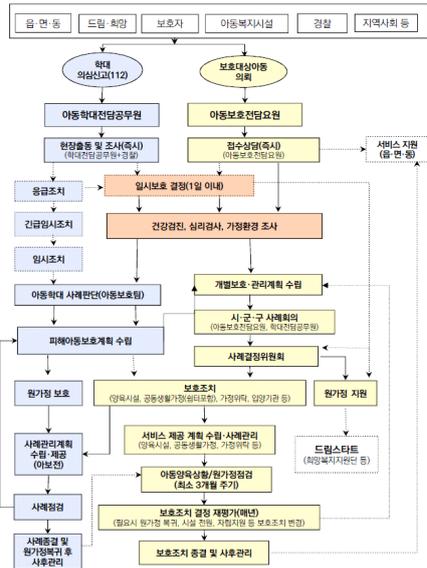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4a).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76.

그림 IV-5-11.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4a).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74.

그림 IV-5-12.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4a).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75.

그림 IV-5-13.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4)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에서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의 지표 내용을 보면, ‘4-1-1.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만13~19세 아동·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도 만 13~19세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약 8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설치 개소 수와 재원 아동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집 수는 2017년 40,238 개소에서 2023년 28,954개소로 2017년 대비 약 28%가 감소하였고, 재원 아동 수는 2017년 1,450,243명에서 2023년 1,011,813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0.2%가 감소하였으며,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 79.6%, 가정 어린이집이 79.5%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또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23년 방과후학교의 이용 현황은 전체 참여율은 41.0%, 초등학교 53.2%, 중학교 24.0%, 고등학교 33.8%이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2022년 86.5점으로 보고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22년 현재 전국에 4,00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 이용인원은 105,210명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전체 만족도는 2017년 4.31점에서 2019년 4.00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까지 4.00점을 유지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 9월 현재 전국에 1,17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22년 97.9%에서 2023년 98.2%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매해 운영하는 기관 수가 증가하여 2023년 현재 전국 3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인원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3년에는 14,588명이 이용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중 전체 만족도 점수는 2021년 4.09점에서 2022년 4.10점, 2023년 4.15점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다음으로,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서 ‘4-2-1. 입양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도에 입양된 아동 수는 총 229명이었고, 국내 입양 아동 수는 150명(65.5%), 국외 입양 아동 수는 79명(34.5%)이었다. 입양 사후관리는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서로 간 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총 6회(최소 3번의 가정방문 필수 및 가정 이외 장소에서 대면 상담 실시)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4-2-2. 대안양육 비율’과 관련하여 최근 10년 간 보호대상아동은 2014년 4,994명에서 2023년 현재 2,054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는데, 2023년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은 전체 2,054명 중 빈곤 및 실직, 학대로 발생한 경우가 1,692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부모 및 혼외자로 인한 발생이 259명(12.6%), 유기가 88명(4.3%), 비행 및 가출이 14명(0.7%), 미아 1명(0.0%)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의 경우, 전체 2,054명 중에서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이 1,067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783명(38.1%), 입양이 162명(7.9%), 가정형 보호 42명(2.0%)의 순이었다. 또한,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의 경우, 중장기 보호를 받는 아동은 9,312명이었고, 그 중에서 일반가정에서 친인척의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8,204명(87.9%), 친인척 외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871명(9.3%)이었으며,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237명(2.5%), 일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18명(0.2%)이었다. 최근 5년 간 아동복지시설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호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아동복지시설 수는 279개소에서 2022년 306개소, 보호아동 수는 2018년 12,193명에서 2022년 10,312명으로 보고되었다.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의 경우, 시설 수는 2018년 558개소에서 2022년 520개소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도 2018년 2,872명에서 2022년 2,669명으로 감소하였다. ‘4-2-3.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초·중·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3.0%가 가출 경험이 있었고, 가출 이유로는 주로 부모님과의 문제(70.2%)나 학업문제(10.8%)를 꼽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쉼터는 2023년 현재, 일시쉼터가 33개소, 단기쉼터는 66개소, 중장기쉼터 39개소로, 총 138개소의 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가출 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 경험률이 9.3%였으며, 이러한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58.2%가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에서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과 관련하여 아동생활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2022년 아동생활시설의 평가등급을 보면, 전체 277개 시설 중 A등급은 150개소(54.2%), B등급은 65개소(23.5%), C등급 39개소(14.1%), D등급 12개소(4.3%), F등급은 11개소(4.0%)로 보고되었다. 2022년 아동생활시설의 평가점수 평균은 86.7점이었고, 아동생활시설의 77.7%는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2년 평가지표 대비 2025년도

평가지표에서는 세부유형별 지표와 배점 등이 변경되는데, 2025년에는 평가영역 중 '지역 사회관계' 영역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재편하고, 2020년부터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거 투입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 연계를 지역사회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아동 인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보육시설 설치·운영 수 및 이용 아동 수와 더불어 보호대상아동 수도 매년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보호가 대안양육 체계 내에서 공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한 보호 형태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 진행된 아동생활 시설의 평가결과에서 아동권리 영역의 평가점수가 81점으로 현저히 하락한 것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 관련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대안양육 체계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고민과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¹⁴⁹⁾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V-6-1).

표 IV-6-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4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율(%)	1.2	1.2	1.3	1.3	1.4	1.4	1.5	1.6	1.7	1.8	1.9	2.0

* 출처: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149)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024년 특수학교 수는 195개교였고 특수학급 수는 13,931학급, 학생 수는 115,610명, 교원 수는 27,084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특수학교는 1개, 특수학급은 644개, 학생 수는 5,907명, 교원 수는 644명 늘어난 결과이다(표 IV-6-2).

표 IV-6-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7~2024년)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급 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7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2018	175	10,676	582	5,630	38,031	18,788	22,584	5,165	90,780	20,039
2019	177	11,105	532	5,989	41,091	18,462	21,502	5,382	92,958	20,773
2020	182	11,661	439	6,536	43,205	19,140	20,655	5,445	95,420	22,145
2021	187	12,042	369	7,197	44,814	20,212	20,169	5,393	98,154	23,494
2022	192	12,712	359	8,248	48,448	21,462	19,867	5,311	103,695	24,962
2023(A)	194	13,287	407	8,781	51,585	23,005	20,725	5,200	109,703	25,599
2024(B)	195	13,931	470	8,746	54,283	25,013	22,040	5,058	115,610	27,084
B-A	1	644	63	-35	2,698	2,008	1,315	-142	5,907	644

* 출처: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5.

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보육교육비용

2023년 현재 장애아동·청소년 통합보육교육비용을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73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464개소로 총 1,637개소였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022년에 비해 4개소 감소하였으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22년에 비해 71개소 증가하였다(표 IV-6-3).

표 IV-6-3.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황(2014~2023년)

(단위: 개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1,570	1,637
장애아전문시설	174	175	177	178	177	176	177	178	177	173
장애아통합시설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1,393	1,464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은 115,610명이었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85,220명으로 73.7%,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30,390명으로 26.3%였다. 전체 학생수 대비 일반학교 배치학생 비율은 2020년 72.1%에서 2024년 73.7%로 소폭 증가하였다(표 IV-6-4).

표 IV-6-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20~2024년)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소계	
2020	26,615(27.9)	52,744(55.3)	16,061(16.8)	68,805(72.1)	95,420(100.0)
2021	27,288(27.8)	54,266(55.3)	16,600(16.9)	70,866(72.2)	98,154(100.0)
2022	28,233(27.2)	57,948(55.9)	17,514(16.9)	75,462(72.8)	103,695(100.0)
2023	29,236(26.7)	61,993(56.5)	18,474(16.8)	80,467(73.3)	109,703(100.0)
2024	30,390(26.3)	65,996(57.1)	19,254(16.6)	85,220(73.7)	115,610(100.0)

* 출처: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6.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학률과 취업률, 그리고 그 이외의 비진학·미취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4년을 기준으로 특수학교의 경우 진학률이 59.9%, 취업률이 7.1%, 비진학·미취업률이 37.2%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진학률이 57.5%, 취업률이 37.1%, 진학·미취업률이 26.7%였다. 5년 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진학률은 높아지는 추세이고, 취업률은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6-5).

표 IV-6-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020~2024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비진학·미취업(명)
2020	특수학교	2,386	57.3 (1,366)	6.3 (64)	36.4 (956)
	특수학급	3,796	44.9 (1,705)	34.2 (716)	20.9 (1,375)
	일반학급	1,157	57.4 (664)	13.2 (65)	29.4 (428)
	계	7,339	50.9 (3,735)	23.4 (845)	25.7 (2,759)
2021	특수학교	2,108	58.6 (1,235)	2.9 (61)	38.5 (812)
	특수학급	3,614	49.5 (1,789)	17.0 (617)	33.4 (1,208)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비진학·미취업(명)
	일반학급	1,105	63.0 (696)	4.9 (54)	32.1 (355)
	계	6,827	54.5 (3,720)	10.7 (732)	34.8 (2,375)
2022	특수학교	2,167	60.3 (1,307)	2.7 (59)	37.0 (801)
	특수학급	3,497	51.3 (1,795)	16.0 (559)	32.7 (1,143)
	일반학급	1,098	63.6 (698)	4.8 (53)	31.6 (347)
	계	6,762	56.2 (3,800)	9.9 (671)	33.9 (2,291)
	계	6,528	57.6 (3,761)	21.2 (586)	33.4 (2,181)
2023	특수학교	2,076	57.9 (1,202)	5.1 (45)	39.9 (829)
	특수학급	3,354	56.1 (1,883)	32.8 (483)	29.5 (988)
	일반학급	1,098	61.6 (676)	13.7 (58)	33.2 (364)
	계	6,528	57.6 (3,761)	21.2 (586)	33.4 (2,181)
2024	특수학교	2,032	59.9 (1,218)	7.1 (58)	37.2 (756)
	특수학급	3,263	57.5 (1,876)	37.1 (515)	26.7 (872)
	일반학급	952	65.7 (625)	15.3 (50)	29.1 (277)
	계	6,247	59.5 (3,719)	24.6 (623)	30.5 (1,905)

* 출처: 교육부(2020, 2021, 2022, 2023, 2024). 2020-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④ 장애 아동·청소년 학대 현황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에서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총 249명이며, 남자 아동은 164명, 여자 아동은 85명이었다. 0~2세는 2명, 3~6세는 28명, 7~9세는 38명, 10~12세는 57명, 13~15세는 75명, 16~17세는 49명으로 13~17세 사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수가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다(표 IV-6-6).

표 IV-6-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2022년)

(단위: 명/%)

구분	0~2세		3~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남	2	0.8	22	8.8	27	10.8	38	15.3	50	20.1	25	10.0	164	65.9
여	0	0.0	6	2.4	11	4.4	19	7.6	25	10.0	24	9.6	85	34.1
계	2	0.8	28	11.2	38	15.3	57	22.9	75	30.1	49	19.7	24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100.

같은 자료를 통해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 학대피해 건수가 141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인 49건(19.7%), 미등록 장애인 26건(10.4%), 뇌병변장애인 12건(4.8%), 지체장애인 9건(3.6%)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총 223건 중 219건(98.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4건(1.8%)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부분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표 IV-6-7).

표 IV-6-7.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2022년)

(단위: 건/%)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9	3.6
뇌병변장애	12	4.8
시각장애	3	1.2
청각장애	3	1.2
언어장애	5	2.0
지적장애	141	56.6
자폐성장애	49	19.7
정신장애	1	0.4
미등록	26	10.4
계	249	100.0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219	98.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4	1.8
계	22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p.100-101.

장애아동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총 249건 중 91건(36.5%)로 가장 많았고, 중복 학대가 74건(29.7%), 정서적 학대가 35건(14.1%), 방임이 27건(10.8%), 성적 학대가 21건(8.4%), 경제적 착취가 1건(0.4%)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유기로 집계된 사례는 없었다.

표 IV-6-8. 장애아동 학대유형(2022년)

(단위: 건/%)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91	36.5
정서적 학대	35	14.1
성적 학대	21	8.4
경제적 착취	1	0.4

학대유형	건수	비율
유기	-	-
방임	27	10.8
중복 학대	74	29.7
계	24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p.105-106.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의 1년 이내 사망률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세 가지 지표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생후 28일 미만의 영아 사망을 의미하는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 당 1.3명이었고, 남아가 1.4명, 여아가 1.1명으로 남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생후 4주 이상~1년 이내 사망률을 의미하는 신생아 후기사망률은 1,000명 당 1.2명이었고, 남아가 1.3명, 여아가 1.1명이었다. 생후 1년 이내 사망률을 의미하는 영아사망률은 1,000명 당 2.5명이었고, 남아 2.7명, 여아 2.2명이었다. 연도별 영아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 다소 높아져 영아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표 IV-6-9).

표 IV-6-9. 연도별 영아사망률(2018~2023년)

(단위 : 명/1,000명 당)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1.8	1.4	1.7	1.6	1.5	1.5	1.4	1.1	1.3	1.3	1.2	1.3	1.3	1.1	1.2	1.4	1.1	1.3
신생아 후기사망률	1.3	1.1	1.2	1.4	1.0	1.2	1.4	1.0	1.2	1.3	1.0	1.2	1.2	0.9	1.1	1.3	1.1	1.2
영아 사망률	3.2	2.5	2.8	3.0	2.4	2.7	2.8	2.2	2.5	2.6	2.2	2.4	2.5	2.0	2.3	2.7	2.2	2.5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 주: 1) 신생아 사망률: 생후 28일 미만의 영아 사망률 (당해연도 28일 미만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신생아 후기 사망률: 생후 4주 이상 1년 이내 사망률 (당해연도 28일 미만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영아사망률: 생후 1년 이내 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0세에서 24세까지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을 살펴보면, 2023년 0세 사망자 수는 564명이었으며 10만명 당 사망률은 239.9명이었다. 1~4세 10만명 당 사망률은 13.5명, 5~9세 10만명 당 사망률은 7.2명, 10~14세 10만명 당 사망률은 10.5명, 15~19세 10만명 당 사망률은 24.0명, 20~24세 10만명 당 사망률은 36.3명이었다(표 IV-6-10).

표 IV-6-10.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8~2023년)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931	280.7	822	268.3	674	240.6	626	241.2	565	226.8	564	239.9
1~4세	220	13.0	233	14.5	185	12.5	151	11.2	201	16.3	155	13.5
5~9세	177	7.6	178	7.7	142	6.2	136	6.0	183	8.4	148	7.2
10~14세	221	9.5	184	8.0	203	8.8	237	10.1	246	10.4	245	10.5
15~19세	620	21.6	610	22.4	563	22.1	536	22.4	550	23.5	558	24.0
20~24세	1,144	33.3	1,126	33.6	1,118	34.2	1,138	35.8	1,073	35.5	1,039	36.3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0세에서 24세까지 연령별 사고 사망률을 보면, 0세는 10만명 당 19.1명, 1~4세는 10만명 당 4.4명, 5~9세는 10만명 당 2.0명, 10~14세는 10만명 당 5.2명, 15~19세는 10만명 당 16.4명, 20~24세는 10만명 당 24.7명으로 나타났다(표 IV-6-11).

표 IV-6-11. 연령별(0~24세) 사고 사망률(2018~2023년)

(단위: 명/10만 명당)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0세	12.7	16.6	20.0	21.2	21.3	19.1
1~4세	4.0	4.7	3.5	4.1	3.4	4.4
5~9세	2.4	2.9	2.4	1.8	1.9	2.0
10~14세	3.7	3.4	3.7	4.7	4.9	5.2
15~19세	13.9	14.4	15.6	15.4	15.2	16.4
20~24세	22.6	23.6	24.8	25.9	24.7	24.7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연도별 사망 사고의 외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운수사고는 15~19세, 20~24세에서 10만명 당 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추락사고는 1~4세에서 10만명 당 0.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익사사고도 1~4세에서 10만명 당 0.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재사고는 20~24세에서 10만명 당 0.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독사고도 20~24세에서 10만명 당 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살은 20~24세(10만명 당 19.6명), 15~19세(10만명 당 12.3명), 10~14세(10만명 당 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살은 0세가 10만명 당 4.0명으로 가장 높았다(표 IV-6-12).

표 IV-6-12.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9~2023년)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9	0세	1.0	1.0	0.7	-	-	4.9
	1~4세	1.2	0.6	0.6	0.1	-	1.0
	5~9세	0.9	0.3	0.3	0.0	0.0	0.1
	10~14세	0.4	0.3	0.3	-	-	2.1
	15~19세	3.0	0.4	0.6	0.1	0.1	8.5
	20~24세	3.9	0.3	0.2	0.1	0.2	17.8
2020	0세	0.4	1.4	0.4	-	-	6.1
	1~4세	0.6	0.9	0.5	0.3	0.1	-
	5~9세	0.7	0.3	0.2	0.3	-	0.1
	10~14세	0.2	0.3	0.2	0.2	0.1	2.1
	15~19세	3.7	0.2	0.5	0.0	0.1	10.4
	20~24세	3.0	0.3	0.4	-	0.1	19.6
2021	0세	0.8	1.5	1.5	-	-	5.4
	1~4세	0.6	1.0	0.4	0.1	0.1	-
	5~9세	0.6	0.2	0.2	0.2	-	0.0
	10~14세	0.5	0.1	0.2	0.1	-	3.2
	15~19세	3.2	0.2	0.5	-	0.1	11.0
	20~24세	3.4	0.5	0.4	0.0	0.2	20.4
2022	0세	0.4	1.2	-	-	-	4.0
	1~4세	0.5	0.6	0.7	-	-	0.7
	5~9세	0.4	0.3	0.3	0.1	-	-
	10~14세	0.4	0.1	0.3	0.0	0.0	3.3
	15~19세	2.6	0.0	0.3	0.0	0.1	11.1
	20~24세	3.4	0.3	0.5	0.0	0.1	18.1
2023	0세	0.9	-	-	-	-	4.0
	1~4세	0.6	0.8	0.9	-	0.1	-
	5~9세	0.3	0.2	0.4	0.0	-	-
	10~14세	0.3	0.1	0.2	-	-	3.6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15~19세	2.4	-	0.5	0.0	0.1	12.3	0.4
20~24세	2.4	0.3	0.5	0.1	0.2	19.6	0.3

* 출처: 통계청 KOSIS(2019~20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2023년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8,475,767명 중 50,869명이 피해를 당하여 0.6%의 범죄 피해율을 기록했다.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2019년 1.0%에서 2024년 0.6%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IV-6-1).

전체 범죄 피해자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이 25,971명, 여성이 24,898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피해는 여성의 비율이 90.9%로 나타나 여성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 범죄 피해는 남성이 54.8%로 높게 나타났다(표 IV-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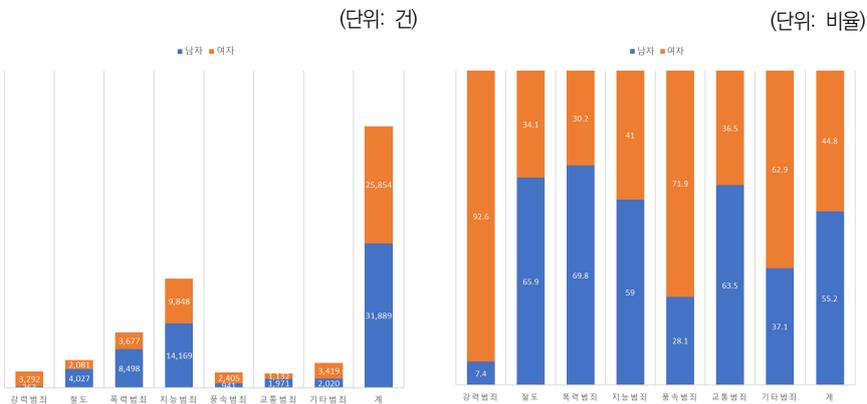


그림 IV-6-1.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범죄 유형별 건수, 성별 비율, 2023년)

표 IV-6-13.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2019~2023년)

(단위 : 건, %)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19	강력범죄	607	8.8	6,290	91.2	6,897	100.0
	절도	8,905	70.4	3,749	29.6	12,654	100.0
	폭력범죄	15,902	68.1	7,450	31.9	23,352	100.0
	지능범죄	15,554	63.8	8,828	36.2	24,382	100.0
	풍속범죄	124	5.1	2,299	94.9	2,422	100.0
	교통범죄	10,976	65.2	5,855	34.8	16,801	100.0
	기타범죄	4,864	44.8	5,993	55.2	10,857	100.0
	계	45,624	58.4	38,986	41.6	84,610	100.0
피해율	56,932/5,029,754(1.1)		40,464/4,715,205(0.9)		97,365/9,744,959(1.0)		
2020	강력범죄	478	8.1	5,400	91.9	5,878	100.0
	절도	7,060	72.2	2,717	27.8	9,777	100.0
	폭력범죄	13,481	68.3	6,262	31.7	19,743	100.0
	지능범죄	17,428	58.0	12,609	42.0	30,037	100.0
	풍속범죄	141	5.1	2,619	94.9	2,760	100.0
	교통범죄	9,352	66.9	4,628	33.1	13,980	100.0
	기타범죄	5,551	45.5	6,645	54.5	12,196	100.0
	계	53,491	56.7	40,880	43.3	94,371	100.0
피해율	53,491/4,847,451(1.1)		40,880/4,554,063(0.9)		94,371/9,401,514(1.0)		
2021	강력범죄	437	7.7	5,206	92.3	5,643	100.0
	절도	5,705	71.3	2,302	28.7	8,007	100.0
	폭력범죄	11,152	67.9	5,275	32.1	16,427	100.0
	지능범죄	12,175	54.1	10,341	45.9	22,516	100.0
	풍속범죄	421	11.7	3,168	88.3	3,589	100.0
	교통범죄	7,618	66.8	3,788	33.1	11,406	100.0
	기타범죄	8,116	47.7	8,906	52.3	17,022	100.0
	계	25,971	53.9	24,898	46.1	50,869	100.0
피해율	45,624/4,649,020(1.0)		38,986/4,378,594(0.9)		84,610/9,027,614(0.9)		
2022	강력범죄	263	7.4	3,292	92.6	3,555	100.0
	절도	4,027	65.9	2,081	34.1	6,108	100.0
	폭력범죄	8,498	69.8	3,677	30.2	12,175	100.0
	지능범죄	14,169	59.0	9,848	41.0	24,017	100.0
	풍속범죄	941	28.1	2,405	71.9	3,346	100.0
	교통범죄	1,971	63.5	1,132	36.5	3,103	100.0
	기타범죄	2,020	37.1	3,419	62.9	5,439	100.0
	계	31,889	55.2	25,854	44.8	57,743	100.0
피해율	31,889/4,490,755(0.7)		25,854/4,238,002(0.6)		57,743/8,728,757(0.7)		
2023	강력범죄	298	9.1	2,991	90.9	3,289	100.0
	절도	4,098	65.6	2,149	34.4	6,247	100.0
	폭력범죄	4,188	54.8	3,450	45.2	7,638	100.0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지능범죄	12,918	56.6	9,904	43.4	22,822	100.0
풍속범죄	842	27.7	2,197	72.3	3,039	100.0
교통범죄	1,499	65.2	799	34.8	2,298	100.0
기타범죄	2,128	38.4	3,408	61.6	5,536	100.0
계	25,971	51.1	24,898	48.9	50,869	100.0
피해율	25,971/4,355,810(0.6)		24,898/4,119,957(0.6)		50,869/8,475,767(0.6)	

* 출처: 경찰청(2019). 2019 경찰범죄통계.
경찰청(2020). 2020 경찰범죄통계. pp.466-467.
경찰청(2021). 2021 경찰범죄통계. pp.474-475.
경찰청(2022). 2022 경찰범죄통계. pp.474-475.
경찰청(2023). 2023 경찰범죄통계. pp.476-477.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4년 9월 13일 인출.

- * 주: 1) 피해율: 전체, 성별에 따른 전체 피해 건수/해당연도 만 20세 이하 인구*100
(피해자 연령: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산정)
2) 강력범죄: 살인미·기수, 강도, 강간 등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협박 등
4) 지능범죄: 통화, 문서·인장, 사기, 횡령 등
5) 전체인구: 2023년 20세 이하 청소년 총 8,475,767명(남:4,355,810명/여:4,119,957명)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 내 안전 인식 중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은 2013년 이래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생의 긍정 비율은 2013년 56.8%에서 2020년 86.4%로 점차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정체되어 2024년에도 86.4%를 기록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IV-6-3).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해 1점부터 4점 척도의 평균 점수로 보면 3.16점이었으며,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더 동네의 안전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표 IV-6-14).

표 IV-6-1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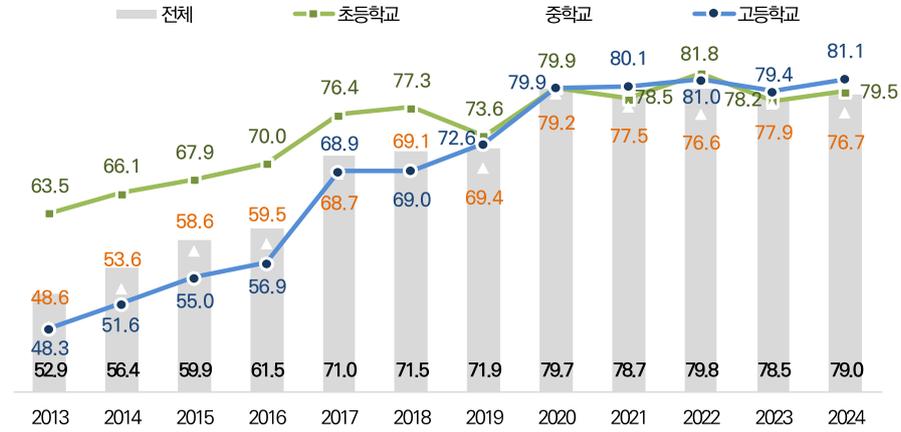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6(0.72)	3.0	10.6	54.0	32.4	100.0(8,740)	202.921***
성별							
남학생	3.23(0.75)	3.7	8.5	49.2	38.7	100.0(4,496)	186.094***
여학생	3.08(0.69)	2.4	12.7	59.2	25.7	100.0(4,244)	
학교급							11.234
초등학교	3.23(0.78)	4.0	9.2	46.1	40.7	100.0(2,985)	
중학교	3.09(0.71)	2.9	12.5	57.5	27.1	100.0(2,930)	
고등학교	3.15(0.67)	2.1	10.0	58.7	29.1	100.0(2,825)	30.603***
지역 규모							
대도시	3.16(0.73)	3.1	10.5	53.3	33.1	100.0(3,364)	
중소도시	3.17(0.71)	2.6	10.5	54.3	32.6	100.0(4,161)	102.901***
읍면지역	3.10(0.75)	4.1	11.2	55.1	29.7	100.0(1,215)	
양부모가정	3.17(0.72)	2.9	10.2	54.1	32.8	100.0(7,810)	
가족 유형							221.089***
한부모가정	3.04(0.75)	4.0	14.5	55.1	26.4	100.0(686)	
조손가정	3.12(0.83)	6.1	11.0	48.2	34.8	100.0(95)	
기타	3.21(0.81)	4.3	11.1	44.3	40.3	100.0(105)	102.901***
학업 성적							
상	3.24(0.72)	2.6	9.1	50.3	38.0	100.0(3,353)	
중	3.14(0.72)	3.1	10.4	56.0	30.5	100.0(3,458)	221.089***
하	3.05(0.73)	3.5	13.4	57.4	25.7	100.0(1,888)	
경제적 수준							
상	3.22(0.73)	3.0	8.9	50.9	37.2	100.0(5,231)	221.089***
중	3.09(0.69)	2.7	11.1	60.2	25.9	100.0(2,742)	
하	2.92(0.76)	4.1	20.9	53.6	21.3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2013~2024년)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13~2024년)

아동·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 내 안전 인식 중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 역시 코로나19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초·중·고등학생의 긍정 비율은 52.9%였으나, 2020년 79.7%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후 정체되어 2024년 79.0%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해 1점부터 4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2.98점이었으며, 남학생이 3.00점, 여학생이 2.95점으로 남학생의 안전 인식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상'인 그룹은 3.03점, '하'인 그룹은 2.80점으로 차이가 있었다(표 IV-6-15).

표 IV-6-1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73)	3.3	17.6	57.0	22.1	100.0(8,699)	93.046***	
성별	남학생	3.00(0.77)	4.4	16.2	54.2	25.2		100.0(4,469)
	여학생	2.95(0.68)	2.2	19.1	59.8	18.8		100.0(4,229)
학교급	초등학교	3.04(0.78)	4.1	16.5	51.3	28.2	100.0(2,961)	131.481***
	중학교	2.91(0.71)	3.5	19.8	59.3	17.4	100.0(2,91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고등학교	2.99(0.68)	2.4	16.5	60.5	20.6	100.0(2,822)	18.197**
	대도시	2.98(0.74)	3.7	17.2	56.5	22.6	100.0(3,352)	
	중소도시	2.99(0.71)	2.8	17.1	58.0	22.1	100.0(4,136)	
	읍면지역	2.92(0.76)	4.3	20.4	54.7	20.6	100.0(1,2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8(0.72)	3.2	17.3	57.4	22.0	100.0(7,775)	21.712**
	한부모가정	2.92(0.75)	3.6	21.7	54.2	20.6	100.0(681)	
	조손가정	3.03(0.76)	3.4	17.0	53.2	26.4	100.0(95)	
학업 성적	기타	3.00(0.88)	7.9	14.9	46.3	30.8	100.0(104)	82.880***
	상	3.04(0.74)	3.3	16.1	54.2	26.4	100.0(3,340)	
	중	2.97(0.70)	3.1	16.9	59.8	20.2	100.0(3,438)	
경제적 수준	하	2.88(0.73)	4.0	21.5	56.7	17.8	100.0(1,879)	118.929***
	상	3.03(0.73)	3.3	15.8	55.8	25.1	100.0(5,209)	
	중	2.93(0.69)	2.9	18.8	60.7	17.5	100.0(2,729)	
	하	2.80(0.78)	5.4	26.1	51.2	17.3	100.0(716)	

* $p < .05$, ** $p < .01$, *** $p < .001$.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24년 처음 추가된 문항이다. 이는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응답 범주는 1점(전혀 걱정하지 않는다)에서부터 4점(항상 걱정한다)까지이다. 분석 결과 평균 점수는 1.89점으로 '가끔 걱정한다'에 가까웠다. 자주 걱정한다는 10.7%, 항상 걱정한다는 5.4%였다. 특히 가족 유형 중에 한부모 가정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경제적인 걱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V-6-16).

표 IV-6-16.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한다	자주 걱정한다	항상 걱정한다	전체(N)	χ^2	
전체	1.89(0.80)	32.7	51.1	10.7	5.4	100.0(8,716)	23.187***	
성별	남학생	1.85(0.79)	34.8	50.4	9.9	5.0		100.0(4,484)
	여학생	1.93(0.81)	30.5	51.9	11.7	5.9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1.83(0.76)	35.0	51.3	9.5	4.2	100.0(2,973)	36.249***
	중학교	1.89(0.80)	32.5	51.4	10.8	5.3	100.0(2,920)	
지역 규모	고등학교	1.95(0.84)	30.6	50.6	12.0	6.9	100.0(2,822)	4.017
	대도시	1.90(0.81)	32.8	50.5	10.9	5.8	100.0(3,355)	
	중소도시	1.88(0.79)	32.9	51.1	10.8	5.1	100.0(4,14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한다	자주 걱정한다	항상 걱정한다	전체(N)	χ^2	
읍면지역	1.90(0.80)	31.7	52.7	9.9	5.7	100.0(1,2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6(0.78)	33.7	51.3	10.1	4.9	100.0(7,789)	117.960***
	한부모가정	2.18(0.90)	21.9	48.7	18.5	10.9	100.0(684)	
	조손가정	1.94(0.77)	26.8	57.5	10.1	5.6	100.0(95)	
	기타	1.78(0.82)	41.2	45.5	7.4	5.9	100.0(104)	
학업 성적	상	1.78(0.76)	38.5	49.3	8.0	4.2	100.0(3,347)	214.525***
	중	1.88(0.76)	31.7	53.0	11.0	4.3	100.0(3,444)	
	하	2.10(0.88)	24.6	50.6	15.0	9.7	100.0(1,883)	
경제적 수준	상	1.68(0.70)	43.4	48.1	5.8	2.6	100.0(5,218)	1822.043***
	중	2.04(0.73)	19.9	61.1	13.9	5.1	100.0(2,733)	
	하	2.85(0.87)	4.1	34.4	34.3	27.2	100.0(720)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율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6년 64.3%에서 2023년 78.0%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2019년 73.4%에서 2023년 82.7%로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019년 57.8%에서 2023년 69.8%, 고등학교는 2019년 72.4%에서 2023년 77.3%로 증가하였다. 다만 특수학교는 2019년 80.8%, 2023년 79.4%로 정체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IV-6-17, 표 IV-6-18).

표 IV-6-17. 보건교사 배치현황(2019~2023년)

(단위 : 개교,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9	학교 수	6,087	3,214	2,356	177	11,657
	교사 수 (배치율)	4470 (73.4)	1,859 (57.8)	1,706 (72.4)	143 (80.8)	8,035 (69.1)
2020	학교 수	6,120	3,223	2,367	182	11,892
	교사 수 (배치율)	4,562 (74.5)	1,972 (61.2)	1,701 (71.9)	146 (80.2)	8,381 (70.5)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21	학교 수	6,157	3,245	2,375	187	11,964
	교사 수 (배치율)	4,814 (78.2)	2,098 (64.7)	1,776 (74.8)	151 (80.7)	8,839 (73.9)
2022	학교 수	6,163	3,258	2,373	192	11,986
	교사 수 (배치율)	5,047 (81.9)	2,243 (68.8)	1,821 (76.7)	155 (80.7)	9,266 (77.3)
2023	학교 수	6,175	3,265	2,379	194	12,013
	교사 수 (배치율)	5,104 (82.7)	2,279 (69.8)	1,838 (77.3)	154 (79.4)	9,375 (78.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a),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menuSeq=3894&itemCode=0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각 학교급별 개황, 직위별 교원수(2)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표 IV-6-18.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6~2023년)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교사 배치율	64.3	64.5	67.1	69.1	70.5	73.9	77.3	78.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a),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menuSeq=3894&itemCode=0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②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91호(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고시에 의하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고 센터 내 전문분야 간 유기적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전국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보건복지부, 2023.4.7.). 2023년 소아전문응급센터는 10개소였고, 2024년 11개소로 증가하였다(표 IV-6-19).

표 IV-6-19.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의료기관 유형	운영 현황	개소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서울(4), 인천(1), 경기(1), 강원(1), 경남·부산·울산(1), 경북·대구(1), 충북(1), 충남·대전·세종(1), 전북(1), 전남·광주(1), 제주(1)	14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 서울(3), 인천(2), 경기(1), 충남(1), 경남(1), 세종(1), 대구(1), 전북(1) 소아전문응급실 : 서울(1), 울산(1), 경기(1)	11(3)
달빛 어린이병원	서울(12), 부산(7), 대구(2), 인천(7), 광주(2), 대전(6), 울산(1), 세종(1), 경기(24), 강원(2), 충북(5), 충남(5), 전북(5), 전남(3), 경남(7), 제주(3)	92

*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2022)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2.09).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2024). 달빛 어린이병원 웹사이트.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달빛어린이 병원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토요일 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23i). 2024년 10월 현재 경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¹⁵⁰⁾

③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시·도센터 17개소, 시·군·구센터 223개소 등 총 24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율 100%인 지역은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었다. 반면 설치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강원 73.7%, 대전 50.0% 등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은 2022년 자료와 2023년 자료 간에 차이가 없었다(표 IV-6-20).

150)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

표 IV-6-20.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2023년)

(단위 : 개소,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23	25	15	8	10	5	2	5	-	32	13	12	15	14	22	22	21	2
계	240	26	16	9	11	6	3	6	1	33	14	13	16	15	23	23	22	3
설치율	94.7	96.2	94.1	100	90.9	100	50.0	83.3	100	100	73.7	100	100	100	100	95.8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p.220.

나. 위(Wee) 프로젝트 운영 현황

교육부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Wee) 프로젝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중 하나로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위(Wee)프로젝트는 학생의 심리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현재 위(Wee)클래스는 8,863개소, 위(Wee)센터 일반형 203개소, 가정형 19개소, 병원형 14개소, 위(Wee)스쿨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별, 학교급별 설치율에 차이가 나고,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에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표 IV-6-21).

표 IV-6-21.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2019~2023년)

(단위 :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Wee클래스	7,230	7,631	8,059	8,619	8,863	
Wee센터	일반형	190	204	206	206	203
	가정형	17	17	19	19	19
	병원형	9	10	13	13	14
Wee스쿨	14	15	15	16	17	
계	7,460	7,877	8,312	8,873	9,116	

* 출처: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위(Wee) 프로젝트가 학교 기반 정신건강 사업이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반면 자살예방센터는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8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두 기관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세종이 유일했다(표 IV-6-22).

표 IV-6-22.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22년)

(단위 :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신 건강	광역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초	244	25	16	8	11	5	5	5	1	37	18	14	16	14	22	25	20
	계	261	26	17	9	12	6	6	6	2	38	19	15	17	15	23	26	21
자살 예방센터	6	2	0	0	1	0	0	0	0	3	0	0	0	0	0	0	0	0
중독관리 통합지원	58	3	3	2	5	5	4	2	0	9	4	2	2	4	2	2	6	3

* 출처: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급여란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급여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을 보면 전체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162,450명이었다.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100분의 4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수의 감소는 아동·청소년 인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6-23).

표 IV-6-23.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합계
2018	2,886	20,206	43,927	60,811	101,152	228,982
2019	2,458	18,156	41,556	56,468	89,678	208,316
2020	2,133	16,338	38,948	55,629	79,497	192,545
2021	1,640	14,336	34,630	54,257	70,653	175,516
2022	1,347	12,342	30,729	51,934	66,098	162,450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 의료급여통계. pp.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2019 의료급여통계. pp.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2020 의료급여통계. pp.16-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2021 의료급여통계. pp.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2022 의료급여통계. p.20.

아동·청소년(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이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 2022년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13.7%로 2018년 9.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연령별,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5~18세의 치과 미충족의료율이 17.1%로 1~5세 9.8%, 12~14세 12.4%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는 ‘하’ 집단이 20.6%로 ‘상’ 집단의 12.5% 등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지난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표 IV-6-24).

표 IV-6-24.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8~2022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8	N	1,104	291	473	161	179	214	234	-	214	215
	분율 (표준오차)	9.4 (1.3)	9.4 (2.0)	5.4 (1.4)	11.1 (2.5)	15.0 (3.1)	13.2 (2.3)	10.1 (2.6)	-	9.2 (2.5)	8.7 (2.5)
2019	N	1,089	259	511	156	163	202	223	-	237	216
	분율 (표준오차)	9.3 (1.0)	10.8 (2.2)	7.1 (1.5)	7.1 (2.0)	13.7 (2.8)	16.9 (3.3)	8.9 (2.1)	-	6.2 (1.9)	5.9 (1.8)
2020	N	907	205	397	158	147	177	181	-	190	181
	분율 (표준오차)	12.4 (1.4)	13.2 (2.9)	10.4 (2.0)	12.7 (2.8)	15.1 (2.9)	17.1 (3.5)	10.9 (2.4)	-	6.0 (3.1)	7.5 (2.3)
2021	N	792	160	370	137	125	154	160	-	162	161
	분율 (표준오차)	11.0 (1.3)	13.5 (3.1)	9.2 (1.7)	7.3 (2.4)*	15.1 (3.4)	15.8 (3.3)	10.1 (3.3)*	-	8.3 (2.3)*	11.4 (3.1)*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	중상	상
2022	N	775	160	370	137	108	148	148	152	151	174
	분율 (표준오차)	13.7 (1.8)	9.8 (2.8)*	14.3 (3.1)	12.4 (3.1)*	17.1 (3.8)	20.6 (5.5)*	11.0 (3.2)*	14.3 (3.0)	10.8 (3.7)*	12.5 (4.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감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a),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감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b),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표번호 7-2. 소아청소년 연감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3), 2022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표번호 7-2. 소아청소년 연감미충족의료율(차파))

- * 주: 1) 소아청소년 연감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2022년도 자료 부터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중고대학생의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은 4.2%로 지난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7%에서 2023년 4.2%로, 2.5%p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흡연율은 5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2019년 3.2%에서 2020년 1.7%로 감소한 이후 매년 다시 증가세에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19년 9.9%에서 2023년 6.4%로 감소하고 있다(표 IV-6-25).

표 IV-6-25. 흡연율 추이(2019~2023년)

연도	(단위 : %)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9	6.7	3.2	9.9	1.0	3.5	5.0	8.3	10.0	11.4
2020	4.4	1.7	7.1	0.7	1.6	3.0	4.8	7.2	9.2
2021	4.5	1.9	7.2	0.8	1.8	3.0	5.4	7.3	8.8
2022	4.5	2.1	7.1	0.8	2.2	3.1	5.1	7.1	9.2
2023	4.2	2.2	6.4	0.9	2.1	3.5	4.3	7.3	7.9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4),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15.0%에서 2023년 11.1%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 음주율이 중고등학생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2023년 다시 감소 되었다. 특히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에서 음주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표 IV-6-26).

표 IV-6-26. 음주율 추이(2019~2023년)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9	15.0	7.6	21.8	3.9	7.4	11.2	17.1	22.8	25.3
2020	10.7	5.4	15.9	3.7	4.9	7.8	10.9	15.8	20.9
2021	10.7	5.6	16.0	3.4	5.4	8.2	12.1	16.4	19.3
2022	13.0	7.0	19.5	4.0	7.1	9.6	14.5	20.3	23.7
2023	11.1	5.9	16.5	3.2	5.5	9.0	11.6	18.1	20.7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4).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55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을 묻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평생 약물 경험률을 측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습관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먹거나 본드(접착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의 아동과 청소년이 습관적 및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은 2022년 1.6%, 2023년 1.7%였고, 여학생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5%로 나타났다(표 IV-6-27).

표 IV-6-27.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2022~2023년)

(단위 : %)

구분	2022	2023
남학생	1.6	1.7
여학생	1.5	1.5
전 체	1.8	1.8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4),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134

* 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먹거나 본드(접착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신체적 건강

① 주관적 건강평가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주관적 건강평가에 대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존 조사 문항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이었으므로 연차별로 조사된 문항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새롭게 조사된 문항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보고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결과를 보면, 1점부터 4점까지의 4점 척도에서 3.16점으로 ‘건강한 편이다’를 약간 상회하였다.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 3.29점, 중학생 3.13점, 고등학교 3.04점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건강 상태를 약간씩 낮게 인식하였다(표 IV-6-28, 그림 IV-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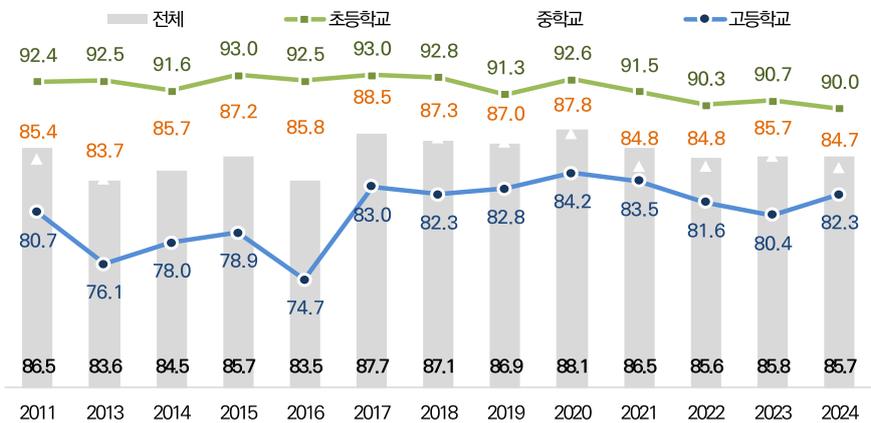
표 IV-6-2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6(0.67)	0.8	13.5	55.0	30.7	100.0(8,721)	42.831***
성별	남학생	3.17(0.69)	0.9	14.1	51.7	100.0(4,482)	
	여학생	3.14(0.65)	0.7	12.9	58.6	100.0(4,239)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3.29(0.66)	0.7	9.3	50.8	39.2	100.0(2,966)	207.432***
	중학교	3.13(0.67)	0.7	14.7	55.4	29.3	100.0(2,930)	
	고등학교	3.04(0.66)	1.1	16.6	59.1	23.2	100.0(2,825)	
지역 규모	대도시	3.15(0.67)	0.8	13.4	55.6	30.2	100.0(3,360)	1.935
	중소도시	3.16(0.67)	0.8	13.4	54.8	31.0	100.0(4,147)	
	읍면지역	3.15(0.68)	1.0	14.1	54.2	30.8	100.0(1,2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6(0.67)	0.8	13.1	55.3	30.9	100.0(7,793)	32.479***
	한부모가정	3.06(0.69)	0.7	18.8	54.4	26.1	100.0(685)	
	조손가정	3.13(0.74)	2.8	13.4	52.0	31.8	100.0(94)	
	기타	3.28(0.69)	0.8	11.2	47.2	40.8	100.0(105)	
학업 성적	상	3.27(0.66)	0.7	9.7	52.0	37.6	100.0(3,345)	223.736***
	중	3.13(0.64)	0.6	13.3	58.4	27.8	100.0(3,446)	
	하	3.00(0.71)	1.5	20.6	54.2	23.8	100.0(1,889)	
경제적 수준	상	3.24(0.66)	0.7	10.8	52.5	36.1	100.0(5,215)	263.144***
	중	3.07(0.65)	0.8	15.7	59.5	24.0	100.0(2,740)	
	하	2.89(0.69)	1.5	25.0	56.2	17.2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11~2024년)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은 3.24점, '하'인 집단은 2.89점이었는데, 비교집단 중 유일하게 2점대에 속하였다. 연차별로도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변화하였는데,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결과를 보면, 1점부터 4점까지의 4점 척도에서 2.92점으로 '건강한 편이다'를 약간 밀돌았다. 신체적 건강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정신적 건강에서는 여성(2.83점)이 남성(3.01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 비교적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은 3.02점, '하'인 집단은 2.75점,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은 3.02점, '하'인 집단은 2.53점이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표 IV-6-29).

표 IV-6-29.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2.92(0.78)	4.5	21.1	52.5	21.9	100.0(5,758)	99.109***	
성별								
	남학생	3.01(0.78)	4.0	18.3	50.8	26.9	100.0(2,973)	21.723***
	여학생	2.83(0.76)	5.0	24.2	54.3	16.6	100.0(2,785)	
학교급	중학교	2.95(0.78)	4.2	20.5	50.9	24.4	100.0(2,930)	12.407
	고등학교	2.88(0.77)	4.8	21.8	54.2	19.3	100.0(2,828)	
	대도시	2.90(0.76)	4.3	21.6	54.4	19.7	100.0(2,235)	
지역 규모	중소도시	2.93(0.79)	4.7	20.7	51.6	22.9	100.0(2,742)	22.554**
	읍면지역	2.95(0.79)	4.1	21.2	50.3	24.4	100.0(781)	
	양부모가정	2.93(0.77)	4.3	20.7	53.1	21.9	100.0(5,126)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2.81(0.81)	6.1	26.3	48.4	19.3	100.0(514)	134.386***
	조손가정	3.08(0.79)	3.2	16.8	48.6	31.4	100.0(45)	
	기타	2.94(0.91)	9.9	14.2	47.5	28.3	100.0(53)	
학업 성적	상	3.02(0.76)	3.0	18.4	51.7	26.9	100.0(1,707)	217.313***
	중	2.96(0.74)	3.5	18.7	56.2	21.6	100.0(2,351)	
	하	2.75(0.82)	7.3	27.2	48.4	17.1	100.0(1,682)	
경제적 수준	상	3.02(0.75)	3.3	17.7	52.9	26.1	100.0(3,067)	217.313***
	중	2.89(0.76)	4.3	22.2	54.1	19.4	100.0(2,071)	
	하	2.53(0.80)	10.6	35.1	45.3	9.0	100.0(602)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운동 실천율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운동 실천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2011년부터 조사된 것으로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였다. 분석 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9%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은 26.2%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은 13.9%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12.3%p가량 차이가 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응답에 대해 8.0%, 중학교는 20.9%, 고등학교는 31.2%가 응답하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육시간 이외에 운동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30, 그림 IV-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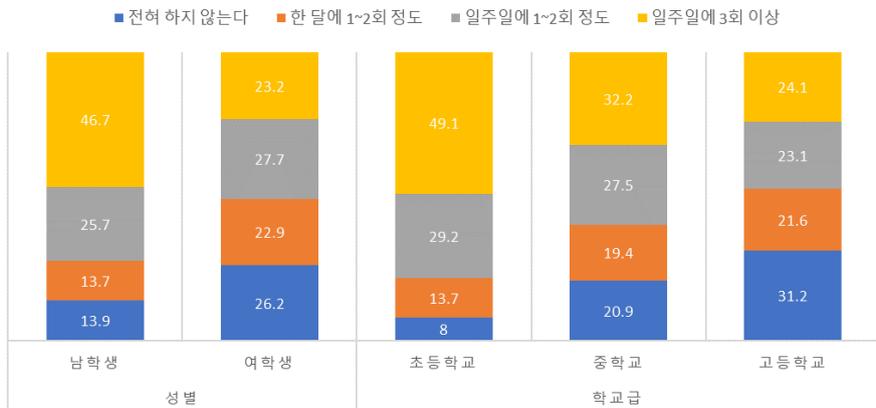


그림 IV-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2024년)

표 IV-6-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19.9	18.2	26.7	35.3	100.0(8,721)	610.174***
성별	남학생	13.9	13.7	25.7	100.0(4,490)	
	여학생	26.2	22.9	27.7	100.0(4,231)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8.0	13.7	29.2	49.1	100.0(2,968)	736.294***
	중학교	20.9	19.4	27.5	32.2	100.0(2,927)	
	고등학교	31.2	21.6	23.1	24.1	100.0(2,826)	
지역 규모	대도시	19.7	18.0	27.3	35.0	100.0(3,364)	13.836*
	중소도시	21.0	18.2	26.0	34.9	100.0(4,149)	
	읍면지역	16.4	18.4	27.2	37.9	100.0(1,2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7	18.0	27.0	35.3	100.0(7,791)	17.384*
	한부모가정	23.0	20.3	22.9	33.7	100.0(687)	
	조손가정	12.4	20.0	21.5	46.1	100.0(93)	
	기타	18.1	14.7	27.1	40.2	100.0(105)	
학업 성적	상	16.4	15.1	27.7	40.8	100.0(3,346)	137.544***
	중	20.4	20.6	27.6	31.4	100.0(3,446)	
	하	25.2	19.3	22.9	32.6	100.0(1,887)	
경제적 수준	상	15.8	16.9	28.7	38.6	100.0(5,217)	194.302***
	중	25.2	20.1	24.6	30.1	100.0(2,739)	
	하	29.6	19.7	19.4	31.4	100.0(72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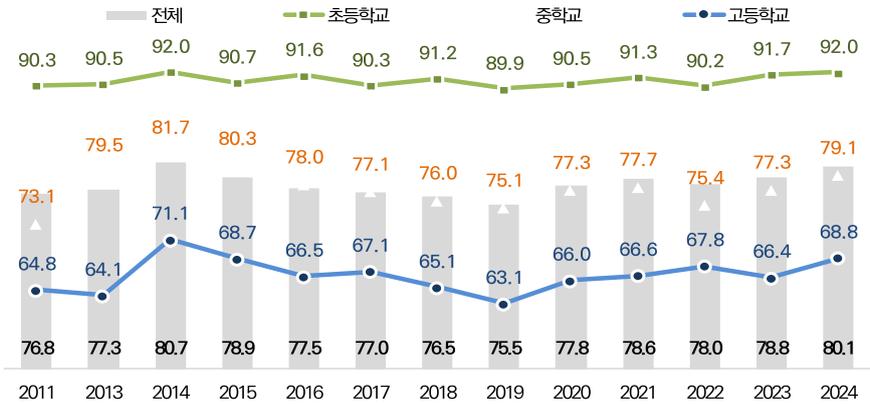


그림 IV-6-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11~2024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추이를 보면 학교급 간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생은 큰 변화 없이 유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4년에는 전체에 비해 약간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스크린 타임(screen time) 증가로 아동·청소년의 놀이, 여가, 야외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늘어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수면시간과 수면 부족 이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평일 학교가는 날의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은 평균 7.3시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평균 8.7시간, 중학생은 7.2시간, 고등학생은 6.0시간을 잔다고 응답하였다. 수면시간은 2011년 처음 조사된 이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에 큰 차이가 나는 패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표 IV-6-31, 그림 IV-6-7).

표 IV-6-31. 수면 시간(2024년)

(단위 : %(명),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체(N)	
전체	6.5	13.0	18.8	21.7	20.7	19.3	7.3	100.0(8,550)	
성별	남학생	4.6	10.7	18.0	22.3	23.5	7.5	100.0(4,405)	
	여학생	8.4	15.5	19.6	21.1	17.9	7.2	100.0(4,144)	
학교급	초등학교	0.6	0.7	3.3	14.2	33.5	47.6	8.7	100.0(2,927)
	중학교	3.4	10.9	22.8	32.0	23.0	7.9	7.2	100.0(2,861)
	고등학교	15.8	28.2	31.0	19.0	4.8	1.2	6.0	100.0(2,761)
지역 규모	대도시	8.6	14.6	18.4	21.5	20.4	16.5	7.2	100.0(3,291)
	중소도시	5.4	12.0	19.0	21.5	20.8	21.2	7.4	100.0(4,072)
	읍면지역	4.0	11.8	18.9	22.9	21.5	20.8	7.5	100.0(1,18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2	13.1	18.9	21.5	21.2	19.1	7.4	100.0(7,651)
	한부모가정	10.2	13.6	19.3	24.4	16.3	16.1	7.1	100.0(665)
	조손가정	5.7	5.1	13.4	18.5	25.1	32.1	8.0	100.0(89)
	기타	2.1	6.0	15.2	23.5	15.4	37.8	8.0	100.0(104)
학업 성적	상	3.4	9.7	15.8	20.3	24.6	26.1	7.7	100.0(3,306)
	중	6.7	13.1	18.3	22.3	21.1	18.6	7.3	100.0(3,376)
	하	11.2	19.0	25.4	23.2	13.3	8.0	6.7	100.0(1,828)
경제적 수준	상	5.0	10.9	17.3	20.8	22.7	23.2	7.6	100.0(5,133)
	중	7.8	15.6	20.5	22.9	19.2	14.1	7.1	100.0(2,682)
	하	11.0	19.0	23.8	24.5	12.4	9.3	6.7	100.0(692)



그림 IV-6-7. 수면 시간(2011~2024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수면 부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47.4%의 응답자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3.5%, 남성이 41.4%로 여성의 수면 부족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 31.6%, 중학교 49.8%, 고등학교 60.9%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면 부족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시기 아동·청소년의 수면 부족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이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완화가 되었고 중학생은 2023년 완화되었다가 2024년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IV-6-32, 그림 IV-6-8).

표 IV-6-32. 수면 부족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47.4	52.6	100.0(8,394)	123.396***
성별				
남학생	41.4	58.6	100.0(4,291)	491.152***
여학생	53.5	46.5	100.0(4,104)	
학교급				9.317**
초등학교	31.6	68.4	100.0(2,806)	
중학교	49.8	50.2	100.0(2,820)	
고등학교	60.9	39.1	100.0(2,769)	15.421**
지역규모				
대도시	49.4	50.6	100.0(3,236)	
중소도시	45.9	54.1	100.0(4,010)	15.421**
읍면지역	46.6	53.4	100.0(1,148)	
가족유형				15.421**
양부모가정	47.3	52.7	100.0(7,522)	
한부모가정	52.1	47.9	100.0(659)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조손가정	35.0	65.0	100.0(87)	102.073***
	기타	37.0	63.0	100.0(96)	
학업성적	상	42.8	57.2	100.0(3,229)	
	중	46.4	53.6	100.0(3,316)	
	하	57.4	42.6	100.0(1,817)	
경제적 수준	상	43.2	56.8	100.0(5,028)	
	중	51.0	49.0	100.0(2,635)	
	하	64.0	36.0	100.0(699)	

* $p < .05$, ** $p < .01$, *** $p < .001$.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IV-6-8. 수면 부족 여부(2013~2024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을 받았다. 이 문항에 응답한 사람은 3,853명이었다. 1순위의 응답을 먼저 살펴보면,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이 22.7%, 학원, 과외가 19.0%,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이 14.4%,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등)이 1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이 18.9%, 학원, 과외가 18.0%,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등)이 18.0%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이 25.7%, 학원, 과외가 19.8%,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이 15.8%로 나타났다(그림 IV-6-9, 표 IV-6-33).

한 사람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응답한 결과(다중응답)를 합산해서 보면,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이 38.3%로 가장 많았고, 학원, 과외가 34.8%,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이 30.7%,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이 22.2%,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등)이 21.8%,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 채팅이 18.2% 순이었다(표 IV-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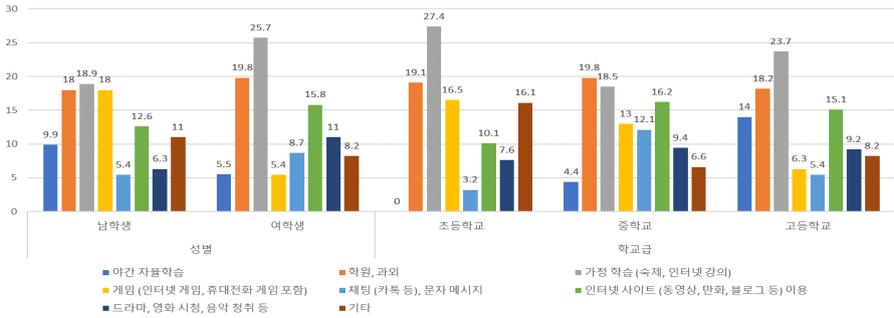


그림 IV-6-9. 성별, 학교급별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4년)

표 IV-6-33.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전체	7.4	19.0	22.7	11.0	7.2	14.4	8.9	9.4	100.0(3,853)	
성별	남학생	9.9	18.0	18.9	18.0	5.4	12.6	6.3	100.0(1,703)	235.370***
	여학생	5.5	19.8	25.7	5.4	8.7	15.8	11.0	100.0(2,151)	
학교급	초등학교	0.0	19.1	27.4	16.5	3.2	10.1	7.6	100.0(876)	401.110***
	중학교	4.4	19.8	18.5	13.0	12.1	16.2	9.4	100.0(1,361)	
	고등학교	14.0	18.2	23.7	6.3	5.4	15.1	9.2	100.0(1,616)	
지역 규모	대도시	5.8	20.2	25.7	9.4	6.6	15.0	7.2	100.0(1,541)	123.128***
	중소도시	6.2	19.6	22.8	11.3	7.7	13.3	9.9	100.0(1,798)	
	읍면지역	16.2	13.2	13.7	14.7	7.4	16.1	10.6	100.0(5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	19.5	23.7	10.6	6.7	14.3	8.9	100.0(3,450)	59.736***
	한부모가정	8.4	14.0	12.4	14.1	11.7	16.1	9.2	100.0(330)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학업 성적	조손가정	11.5	13.5	22.7	16.4	18.2	12.3	0.0	5.3	100.0(30)	238.090***
	기타	6.8	15.3	24.4	12.0	4.8	10.1	16.8	9.7	100.0(32)	
	상	7.8	23.9	30.8	7.6	4.1	12.6	5.0	8.3	100.0(1,345)	
	중	7.4	17.5	22.0	13.1	7.0	12.9	9.9	10.1	100.0(1,488)	
경제적 수준	하	7.0	14.3	13.4	12.3	11.6	19.0	12.6	9.8	100.0(1,008)	71.544***
	상	7.6	20.9	25.6	10.7	6.9	12.3	7.4	8.7	100.0(2,104)	
	중	6.6	16.6	20.4	12.1	7.1	17.3	10.0	9.9	100.0(1,307)	
	하	9.5	16.4	16.0	8.9	9.7	15.9	12.3	11.2	100.0(43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34.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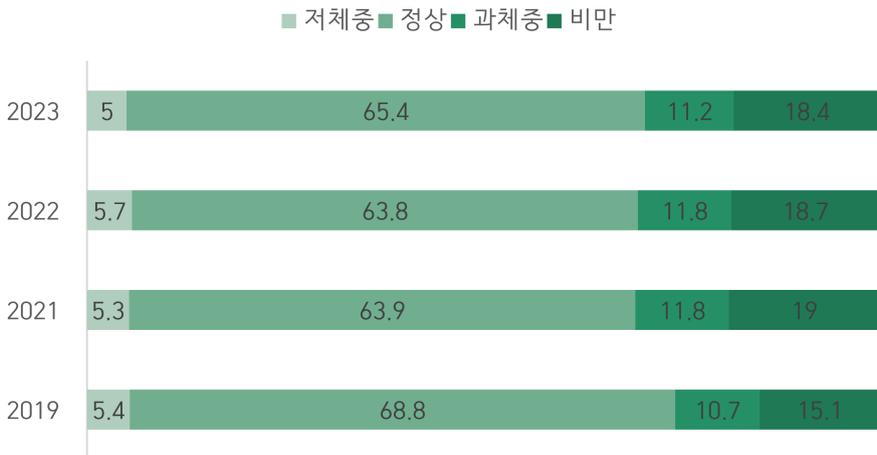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10.8	34.8	38.3	21.8	18.2	30.7	22.2	14.8	100.0(3,853)
성별	남학생	13.3	33.5	32.5	33.4	13.8	29.4	15.7	17.1	100.0(1,703)
	여학생	8.8	35.9	42.9	12.6	21.7	31.7	27.3	13.0	100.0(2,151)
학교급	초등학교	0.0	36.1	45.0	27.8	12.8	24.2	17.7	24.5	100.0(876)
	중학교	7.2	35.3	33.5	25.2	25.4	32.0	23.4	10.6	100.0(1,361)
	고등학교	19.7	33.7	38.7	15.7	15.2	33.2	23.5	13.0	100.0(1,616)
지역 규모	대도시	9.6	38.5	41.6	18.7	17.3	29.7	21.0	15.3	100.0(1,541)
	중소도시	9.1	35.4	38.0	22.4	18.9	31.7	22.3	14.3	100.0(1,798)
	읍면지역	20.3	21.9	29.5	29.1	18.5	30.2	25.0	14.7	100.0(5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9	36.0	39.8	21.2	17.3	30.5	21.9	14.1	100.0(3,450)
	한부모가정	10.0	24.1	23.9	25.1	26.9	34.8	26.0	21.5	100.0(330)
	조손가정	16.3	26.3	34.0	35.2	27.5	19.7	8.2	8.4	100.0(30)
	기타	6.8	32.1	35.1	35.7	17.9	20.3	23.1	19.5	100.0(32)
학업 성적	상	11.9	43.0	49.4	16.5	13.3	27.6	14.6	15.2	100.0(1,345)
	중	11.1	32.6	38.3	24.4	18.3	27.4	24.1	15.2	100.0(1,488)
	하	9.1	27.0	23.8	25.1	24.7	39.8	29.2	13.5	100.0(1,008)
경제적 수준	상	10.6	39.2	41.8	21.6	17.6	27.5	18.8	14.7	100.0(2,104)
	중	10.8	30.6	35.2	22.8	17.3	34.5	25.8	14.5	100.0(1,307)
	하	11.9	26.9	31.4	20.5	24.0	34.6	26.8	15.7	100.0(431)

④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가. 비만율

2023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비만도는 코로나19 이후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비만율은 15.1%이었으나 2023년에는 18.4%로 3.3%p 증가하였다. 과체중율은 10.7%에서 11.2%로 0.5%p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2023년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2019년에는 아동·청소년 4명 중 1명이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했다면 2023년에는 3명 중 1명가량이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의 운동 및 야외활동 감소 등이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미친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V-6-10).



* 출처: 교육부(2024.03.28.). 보도자료: 2023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pp. 4-5.

- * 주: 1) 본 그림은 (표 IV-6-35)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2)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표본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만 제시하고 기준산술치를 제시하지 않음.

그림 IV-6-10. 비만도 현황(2019~2023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2023년 학생 건강검사에서의 비만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만은 18.4%, 과체중은 11.2%, 정상은 65.4%, 저체중은 5.0%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과체중 비율과 비만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저체중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과 성별을 비교할 때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생 남성으로 22.1%이었고,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중학교 여성으로 13.9%였다. 반면, 저체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생 여성으로 6.3%였고, 저체중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중학교 남자로 3.8%였다(표 IV-6-35).

표 IV-6-35.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2019~2023년)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9	전체	5.4	68.8	10.7	15.1	
	초등학생	남학생	5.1	66.8	11.5	16.6
		여학생	5.8	72.9	10.7	10.6
	중학생	남학생	5.3	66.2	11.3	17.2
		여학생	4.9	72.4	10.1	12.5
	고등학생	남학생	6.0	64.3	9.9	19.7
여학생		5.4	68.6	10.0	16.1	
2021	전체	5.3	63.9	11.8	19.0	
	초등학생	남학생	3.9	60.2	13.3	22.6
		여학생	5.2	68.2	12.0	14.6
	중학생	남학생	5.0	57.7	13.1	24.2
		여학생	6.1	70.2	10.0	13.7
	고등학생	남학생	6.4	60.9	11.0	21.7
여학생		6.5	66.7	9.6	17.2	
2022	전체	5.7	63.8	11.8	18.7	
	초등학생	남학생	5.1	60.6	13.8	20.5
		여학생	6.4	68.6	10.4	14.7
	중학생	남학생	3.8	58.8	12.0	25.3
		여학생	6.8	65.7	10.1	17.5
	고등학생	남학생	7.0	59.9	13.3	19.8
여학생		6.4	67.1	9.8	16.6	
2023	전체	5.0	65.4	11.2	18.4	
	초등학생	남학생	4.6	61.1	12.4	21.9
		여학생	5.4	68.6	11.6	14.4
	중학생	남학생	3.8	63.8	11.2	21.2
		여학생	4.2	72.2	9.7	13.9
	고등학생	남학생	5.5	61.4	11.0	22.1
여학생		6.3	67.4	9.5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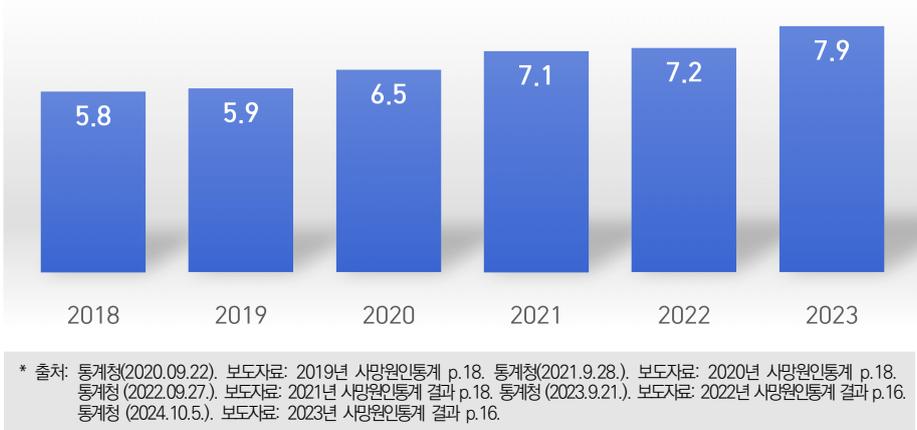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24.03.28.). 보도자료: 2023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pp. 4-5.

-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미만 / 과체중군,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비만도는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의 '연령별 체질량지수, 남자'와 '연령별 체질량지수, 여자'를 사용함
 3)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표본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만 제시하고 가중산술치를 제시하지 않음.

(2) 정신건강

① 자살률

2023년 10~19세 인구의 10만당 자살률은 7.9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V-6-11). 이는 2022년에 비해 10.4% 증가한 수치이며, 2013년 4.9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간 자살률 성비(남/여)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높게 나타나지만 유일하게 10대에서는 성비가 0.8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주: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그림 IV-6-11.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2018~2023년)

② 자살 생각과 그 이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8%(‘가끔 생각한다’ 26.3%, ‘자주 생각한다’ 4.5%)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보다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3.3%였으나, 여성은 39.5%로 큰 차이가 났다. 학업성적으로 보면 학업성적 ‘상’ 집단은 27.4%였으나, ‘하’ 집단은 40.1%였다.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경제적 수준 ‘상’인 집단은 28.5%, ‘하’인 집단은 50.1%였다.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차이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의 시사점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이든 자살 생각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

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격차가 나타나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표 IV-6-36).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조사에서 33.5%, 2023년 조사에서 31.2%로 나온 것에 비해 줄어든 수치였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추세가 달랐는데 고등학생의 비율은 (‘22) 33.9% → (‘23) 30.2% → (‘24) 29.2%로 감소한 반면, 중학생의 비율은 (‘22) 33.1% → (‘23) 32.1% → (‘24) 32.3%로 유지되고 있어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과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2년 연속 중학생의 자살생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교급별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그림 IV-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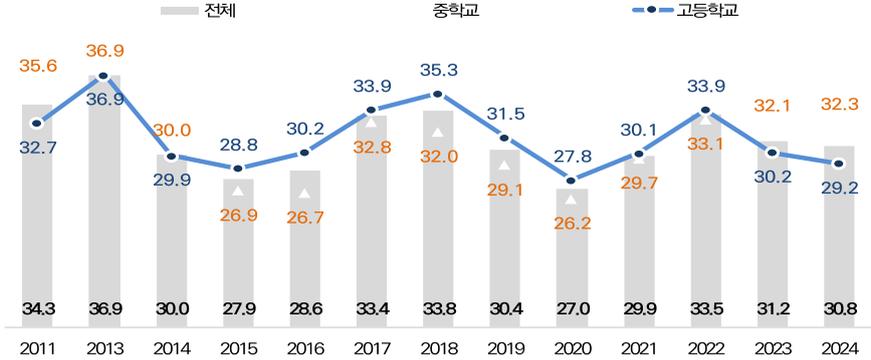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가 40.5%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19.8%, 가족 간의 갈등이 19.2%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는 학업문제 38.1% > 가족 간의 갈등 24.7% > 미래에 대한 불안 14.8% 순이었고, 고등학교는 학업문제 43.2% > 미래에 대한 불안 25.5% > 가족 간의 갈등 12.9% 순이었다(표 IV-6-37).

표 IV-6-36. 자살 생각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전체(N)	χ^2	
	본	가끔	자주			
	적	생각한다	생각한다			
	없다					
전체	69.2	26.3	4.5	100.0(5,693)		
성별	남학생	77.1	20.2	2.7	100.0(2,936)	181.605***
	여학생	60.9	32.8	6.3	100.0(2,757)	
학교급	중학교	67.7	28.0	4.3	100.0(2,897)	9.192*
	고등학교	70.8	24.5	4.7	100.0(2,796)	
지역규모	대도시	69.0	26.9	4.2	100.0(2,204)	9.323
	중소도시	68.3	26.7	5.0	100.0(2,714)	
	읍면지역	73.3	23.2	3.5	100.0(77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69.8	25.8	4.4	100.0(5,072)	8.639
	한부모가정	63.8	31.1	5.2	100.0(5,09)	
	조손가정	68.2	27.1	4.7	100.0(42)	
	기타	72.1	22.1	5.7	100.0(51)	
학업성적	상	72.6	24.3	3.1	100.0(1,692)	61.549***
	중	71.1	25.3	3.6	100.0(2,322)	
	하	63.3	29.5	7.2	100.0(1,661)	
경제적 수준	상	72.1	24.4	3.5	100.0(3,031)	97.956***
	중	69.8	25.7	4.5	100.0(2,050)	
	하	52.9	37.8	9.3	100.0(596)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12. 자살 생각 여부(2011~2024년)

표 IV-6-37. 자살 생각 이유(2024년)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40.5	19.2	7.1	1.7	19.8	11.8	100.0(1,663)	
성별	남학생	37.9	20.6	7.0	1.2	20.3	100.0(633)	5.969
	여학생	42.0	18.3	7.2	2.0	19.5	100.0(1,030)	
학교급	중학교	38.1	24.7	9.9	1.5	14.8	100.0(889)	77.026***
	고등학교	43.2	12.9	3.9	1.8	25.5	100.0(774)	
지역 규모	대도시	42.1	18.2	6.9	1.2	21.3	100.0(659)	11.665
	중소도시	39.8	20.2	7.2	1.8	19.3	100.0(818)	
	읍면지역	37.4	18.2	7.5	2.8	16.8	100.0(1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6	18.3	7.4	1.3	20.2	100.0(1,455)	32.459**
	한부모가정	32.9	24.8	6.3	4.3	16.8	100.0(177)	
	조손가정	29.4	43.4	0.0	0.0	4.4	100.0(12)	
학업 성적	상	48.4	17.8	7.2	1.0	14.5	100.0(432)	23.207*
	중	40.4	18.8	7.0	1.8	20.3	100.0(642)	
	하	34.9	20.7	7.3	2.0	22.9	100.0(581)	
경제적 수준	상	44.5	16.9	8.1	0.5	18.7	100.0(806)	89.689***
	중	40.9	20.4	6.6	0.7	19.3	100.0(588)	
	하	27.1	23.4	5.5	7.6	24.0	100.0(264)	

* $p < .05$, ** $p < .01$, *** $p < .001$.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은 74.0%였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6.0%였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는 응답자는 15.6%, 한 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5.2%, 가끔 시도하는 응답자는 4.2%, 자주 시도하는 응답자는 1.1%였다. 이 문항에서도 성별과 학교급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자해 생각 및 시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문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표 IV-6-38).

표 IV-6-38.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2024년)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한 번 시도해 본 적 있다	가끔 시도한다	자주 시도한다	전체(N)	χ^2
전체	74.0	15.6	5.2	4.2	1.1	100.0(5,736)	
성별	남학생	79.5	13.7	4.0	2.3	100.0(2,959)	123.729***
	여학생	68.1	17.7	6.4	6.1	100.0(2,777)	
학교급	중학교	68.3	18.6	6.6	5.0	100.0(2,920)	104.064***
	고등학교	79.9	12.5	3.7	3.2	100.0(2,817)	
지역 규모	대도시	73.1	16.8	5.0	4.2	100.0(2,229)	9.326
	중소도시	73.7	15.5	5.4	4.2	100.0(2,729)	
	읍면지역	77.5	12.9	4.8	3.9	100.0(7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7	15.4	4.8	4.1	100.0(5,109)	36.602***
	한부모가정	66.8	18.9	7.8	4.1	100.0(511)	
	조손가정	75.7	5.7	13.1	3.6	100.0(42)	
기타	기타	79.0	14.0	3.5	2.6	100.0(53)	57.329***
	상	77.5	14.7	4.6	2.7	100.0(1,700)	
	중	75.0	15.1	5.1	3.9	100.0(2,343)	
학업 성적	하	68.9	17.4	5.7	6.1	100.0(1,675)	93.238***
	상	76.2	13.9	5.4	3.5	100.0(3,056)	
	중	74.9	16.2	4.2	4.1	100.0(2,063)	
경제적 수준	하	60.0	22.3	7.4	7.5	100.0(600)	

* $p < .05$, ** $p < .01$, *** $p < .001$.

*주 :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우울감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3가지 문항으로 우울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문항들은 직접적으로 우울증 여부를 진단하고 측정한다기보다는 우울과 유사한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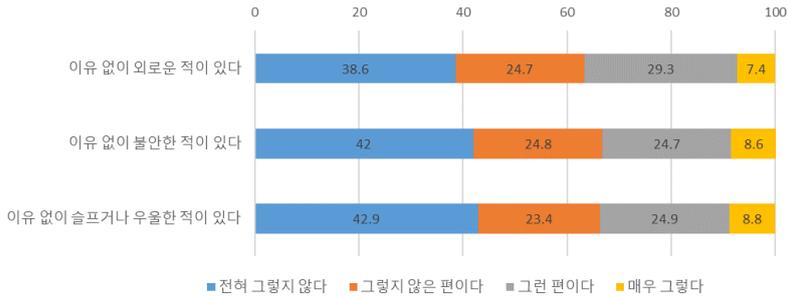


그림 IV-6-13. 우울 정도 척도의 항목별 응답 결과(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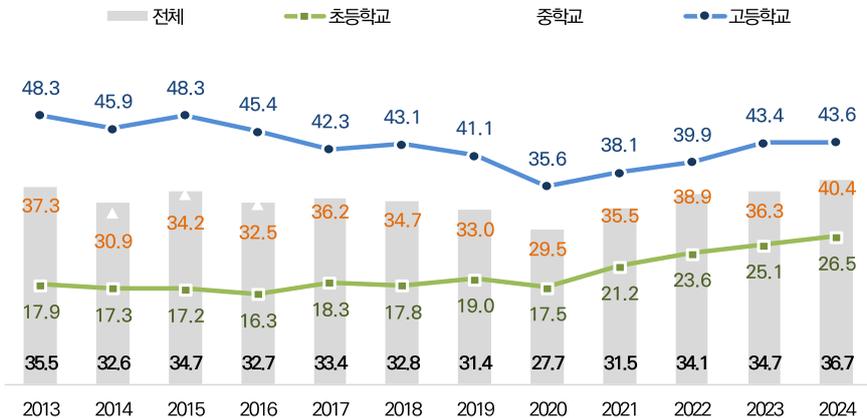
각각의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는 29.3%, 매우 그렇다는 ‘7.4%’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는 24.7%, ‘매우 그렇다’는 8.6%로 나타났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는 24.9%, ‘매우 그렇다’는 8.8%로 나타났다. 기준점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 문항의 위험군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매우 그렇다’로 보면 아동·청소년 100명 중 7명 가량이 우울 관련 위험군으로 볼 수 있고,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볼 때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을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항에서의 공통점은 성별로 봤을 때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평균 결과가 좋지 않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이 높아지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아동·청소년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아동·청소년들이 위기를 느끼는 상태에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그림 IV-6-13).

표 IV-6-39.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5(0.99)	38.6	24.7	29.3	7.4	100.0(8,723)	261.388***
성별							
남학생	1.90(0.97)	46.5	23.2	24.3	6.0	100.0(4,487)	278.211***
여학생	2.22(0.98)	30.2	26.3	34.6	8.9	100.0(4,236)	
학교급							13.298*
초등학교	1.82(0.94)	49.5	24.0	21.3	5.2	100.0(2,973)	
중학교	2.16(0.98)	32.7	26.8	32.3	8.1	100.0(2,929)	
고등학교	2.19(1.00)	33.2	23.2	34.6	9.0	100.0(2,821)	55.568***
지역 규모							
대도시	2.04(0.97)	38.4	26.1	28.6	6.9	100.0(3,359)	
중소도시	2.07(1.00)	39.1	23.2	29.6	8.0	100.0(4,153)	275.886***
읍면지역	2.06(0.97)	37.5	25.9	30.0	6.7	100.0(1,211)	
양부모가정	2.03(0.98)	39.4	24.9	28.6	7.1	100.0(7,792)	
가족 유형							272.711***
한부모가정	2.31(0.99)	27.6	24.0	37.7	10.6	100.0(688)	
조손가정	1.92(0.96)	45.8	20.3	30.0	3.9	100.0(94)	
기타	2.04(1.02)	41.2	22.7	27.0	9.0	100.0(106)	272.711***
학업 성적							
상	1.88(0.94)	46.3	24.9	23.8	5.1	100.0(3,340)	
중	2.07(0.98)	37.5	24.9	30.6	7.0	100.0(3,451)	272.711***
하	2.34(1.00)	27.0	23.9	37.0	12.1	100.0(1,890)	
경제적 수준							
상	1.94(0.97)	43.8	24.4	25.7	6.1	100.0(5,220)	272.711***
중	2.15(0.97)	33.4	25.6	33.3	7.6	100.0(2,735)	
하	2.52(0.99)	20.4	23.1	40.4	16.1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14.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13~2024년)

표 IV-6-40.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0(1.00)	42.0	24.8	24.7	8.6	100.0(8,718)	277.748***	
성별								
	남학생	1.83(0.96)	49.9	23.7	20.1	6.3	100.0(4,484)	
	여학생	2.18(1.02)	33.5	25.9	29.6	11.0	100.0(4,234)	
학교급	초등학교	1.78(0.96)	52.8	22.1	18.8	6.2	100.0(2,971)	242.387***
	중학교	2.09(1.01)	36.9	27.4	26.1	9.7	100.0(2,926)	
	고등학교	2.13(1.01)	35.8	24.9	29.5	9.8	100.0(2,822)	
지역 규모	대도시	2.00(1.01)	42.3	24.3	24.8	8.6	100.0(3,357)	4.185
	중소도시	2.01(1.01)	41.5	24.7	25.2	8.6	100.0(4,149)	
	읍면지역	1.97(0.99)	42.4	26.4	22.8	8.3	100.0(1,2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8(1.00)	42.6	24.9	24.4	8.1	100.0(7,788)	54.942***
	한부모가정	2.24(1.04)	31.7	26.4	28.5	13.4	100.0(686)	
	조손가정	1.89(1.09)	53.4	15.1	20.3	11.2	100.0(94)	
	기타	1.97(1.06)	46.9	19.8	22.5	10.7	100.0(106)	
학업 성적	상	1.84(0.97)	49.5	23.2	21.0	6.3	100.0(3,335)	247.754***
	중	2.00(0.98)	40.6	26.3	25.4	7.6	100.0(3,450)	
	하	2.28(1.05)	30.8	24.9	30.0	14.3	100.0(1,891)	
경제적 수준	상	1.89(0.98)	47.1	23.8	22.0	7.1	100.0(5,217)	247.664***
	중	2.08(1.00)	37.0	26.7	27.3	9.0	100.0(2,733)	
	하	2.46(1.03)	22.9	25.2	34.6	17.4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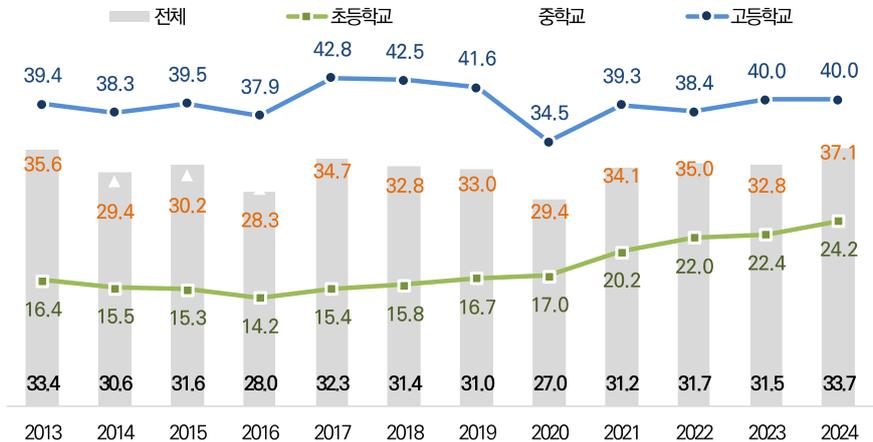
그림 IV-6-15.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13~2024년)

표 IV-6-41.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0(1.02)	42.9	23.4	24.9	8.8	100.0(8,698)	471.933***	
성별	남학생	1.77(0.94)	52.7	23.3	18.0	5.9		100.0(4,480)
	여학생	2.24(1.03)	32.5	23.5	32.2	11.9		100.0(4,218)
학교급	초등학교	1.76(0.96)	54.2	21.6	17.8	6.4	100.0(2,956)	265.904***
	중학교	2.10(1.02)	37.7	25.2	27.0	10.1	100.0(2,922)	
지역 규모	고등학교	2.14(1.02)	36.5	23.5	30.1	9.9	100.0(2,820)	13.368*
	대도시	1.98(1.00)	43.3	23.6	25.2	7.9	100.0(3,349)	
	중소도시	2.01(1.03)	42.9	22.5	25.0	9.7	100.0(4,140)	
가족 유형	읍면지역	1.99(1.00)	41.8	26.1	23.7	8.4	100.0(1,209)	61.693***
	양부모가정	1.98(1.01)	43.6	23.6	24.4	8.4	100.0(7,770)	
	한부모가정	2.26(1.05)	32.3	22.2	32.8	12.7	100.0(682)	
학업 성적	조손가정	1.86(1.02)	48.8	27.1	13.4	10.7	100.0(96)	252.295***
	기타	1.87(1.07)	52.4	19.5	16.5	11.6	100.0(106)	
	상	1.83(0.96)	49.9	22.9	21.1	6.1	100.0(3,323)	
경제적 수준	중	1.99(1.00)	42.2	24.4	25.3	8.1	100.0(3,444)	253.627***
	하	2.29(1.07)	31.7	22.5	30.9	14.9	100.0(1,889)	
	상	1.88(0.99)	48.1	22.9	21.5	7.5	100.0(5,199)	
	중	2.09(1.01)	38.0	24.1	28.7	9.3	100.0(2,734)	
	하	2.46(1.02)	23.1	24.2	35.9	16.8	100.0(723)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16.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13~2024년)

③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행복한 정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행복한 정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점수는 3.08점이었다. 응답 범주별 비율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1.2%,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14.7%, '행복한 편이다' 58.7%, '매우 행복하다' 25.3%였다. 행복도 역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났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가족 유형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인, 학업성적은 '하'인 집단에 비해 '상'인 집단이, 경제적 수준도 '하'인 집단에 비해 '상'인 집단에서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행복도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의 비율을 봤을 때 지난 10년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81.1%에서 2024년 84.0%로 약간 상승하였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 74.9%에서 2024년 81.0%로 상승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2013년 80.3%에서 2020년 87.1%까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하여 2024년 82.4%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은 2013년 89.3%였으나 코로나19 시기 이후 85.6%까지 하락하였고 다시 최근 상승하여 88.5%로 나타났다(그림 IV-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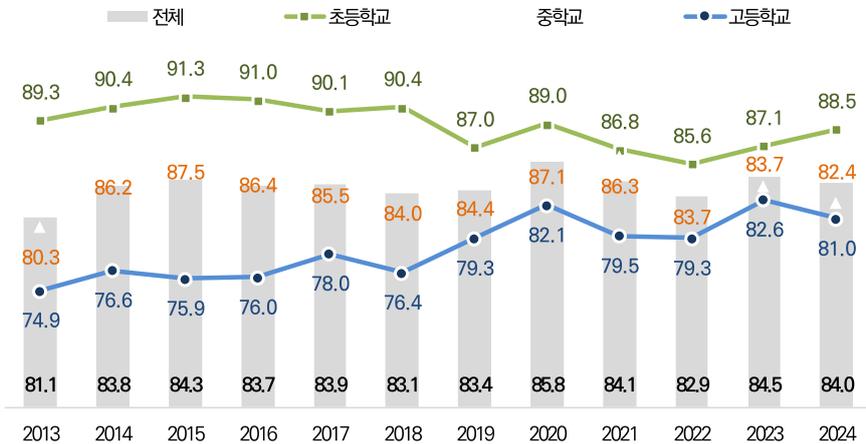
응답자 중 행복하지 않다('전혀 행복하지 않다'와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에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47.0%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19.9%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11.3%,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가 7.0%,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6.7%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게는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가 주요한 행복 저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42).

표 IV-6-42. 행복한 정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08(0.67)	1.2	14.7	58.7	25.3	100.0(8,346)	38.001***
성별	남학생 3.12(0.68) 여학생 3.04(0.65)	1.4 1.1	13.6 15.9	57.0 60.5	28.0 22.5	100.0(4,270) 100.0(4,077)	
학교급	초등학교 3.26(0.68)	1.0	10.5	50.1	38.4	100.0(2,865)	420.300***
	중학교 3.01(0.65)	1.4	16.2	61.9	20.5	100.0(2,787)	
	고등학교 2.96(0.63)	1.3	17.8	64.5	16.4	100.0(2,694)	
지역 규모	대도시 3.08(0.67)	1.2	15.2	58.4	25.3	100.0(3,209)	8.474
	중소도시 3.07(0.66)	1.2	15.0	59.1	24.7	100.0(3,999)	
	읍면지역 3.12(0.67)	1.4	12.6	58.1	27.9	100.0(1,1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9(0.66)	1.1	14.2	59.0	25.7	100.0(7,469)	63.238***
	한부모가정 2.91(0.70)	2.7	21.3	58.0	18.1	100.0(650)	
	조손가정 3.25(0.71)	1.3	11.8	47.8	39.0	100.0(86)	
학업 성적	기타 3.12(0.77)	2.5	16.8	46.9	33.8	100.0(101)	347.392***
	상 3.23(0.65)	0.6	10.6	54.4	34.4	100.0(3,218)	
	중 3.05(0.64)	1.3	14.4	62.7	21.7	100.0(3,297)	
경제적 수준	하 2.88(0.68)	2.2	23.1	58.7	16.0	100.0(1,792)	452.720***
	상 3.19(0.65)	0.8	10.7	57.4	31.0	100.0(4,998)	
	중 2.98(0.64)	1.1	18.1	62.6	18.2	100.0(2,609)	
	하 2.71(0.73)	4.6	31.1	52.9	11.5	100.0(699)	

* $p < .05$, ** $p < .01$, *** $p < .001$.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17. 행복한 정도(2013~2024년)

표 IV-6-43.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4년)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47.0	7.0	11.3	1.3	6.7	19.9	6.9	100.0(1,267)	7.121
성별	남학생 48.6 여학생 45.5	7.3 6.8	9.6 12.9	1.0 1.6	5.7 7.6	21.2 18.6	6.7 7.0	100.0(612) 100.0(656)	
학교급	초등학교 39.1	10.8	15.2	2.5	8.4	14.5	9.6	100.0(317)	68.092***
	중학교 46.2	7.2	14.5	0.7	7.3	18.0	6.1	100.0(466)	
	고등학교 52.9	4.4	5.6	1.1	5.0	25.2	5.8	100.0(484)	
지역 규모	대도시 50.1	7.4	10.3	1.3	4.7	21.2	4.9	100.0(501)	23.518*
	중소도시 45.8	7.4	11.4	1.4	7.3	17.8	8.9	100.0(617)	
	읍면지역 41.2	4.4	14.1	0.8	10.8	24.0	4.7	100.0(1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8.4	6.2	11.6	1.1	6.3	19.9	6.6	100.0(1,080)	30.745*
	한부모가정 38.4	13.9	8.8	2.7	9.3	19.7	7.2	100.0(153)	
	조손가정 41.3	6.9	6.4	7.6	6.0	31.7	0.0	100.0(11)	
학업 성적	상 54.8	7.3	11.1	0.0	3.6	16.0	7.2	100.0(337)	34.325***
	중 46.8	7.2	10.9	2.0	5.4	20.7	7.0	100.0(501)	
	하 41.0	6.7	11.9	1.5	10.7	21.9	6.4	100.0(425)	
경제적 수준	상 52.6	5.2	11.1	0.2	5.1	19.6	6.3	100.0(544)	81.113***
	중 44.5	7.8	11.9	0.4	6.5	23.2	5.7	100.0(482)	
	하 38.7	9.9	10.4	5.8	10.9	13.7	10.5	100.0(23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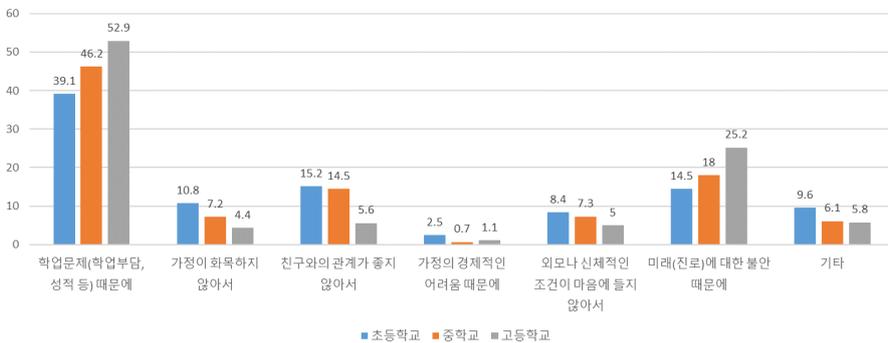


그림 IV-6-18. 학교급별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4년)

④ 삶의 만족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7.06점이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들은 보통 이상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10점 만점 중 6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5.8%이었다. 행복 정도를 살펴본 것과 같이 성별, 학교급, 가족 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표 IV-6-44).

표 IV-6-44. 삶의 만족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 편차)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N)	χ^2	
전체	7.06(2.14)	0.3	0.7	2.0	4.0	5.5	11.8	10.0	17.6	21.5	12.9	13.8	100.0(8,519)	88.936***	
성별															
남학생	7.26(2.07)	0.3	0.5	1.6	3.3	4.5	10.5	9.4	18.4	22.5	13.2	15.7	100.0(4,398)		
여학생	6.86(2.19)	0.3	0.9	2.4	4.6	6.5	13.2	10.7	16.8	20.3	12.6	11.7	100.0(4,121)		
학교급														625.364***	
초등학교	7.71(2.06)	0.3	0.5	1.1	2.2	4.1	8.8	7.0	13.2	21.0	19.0	22.8	100.0(2,926)		
중학교	6.84(2.12)	0.2	0.9	2.5	4.4	5.8	13.0	11.2	18.3	22.2	11.2	10.3	100.0(2,851)		
고등학교	6.60(2.07)	0.5	0.7	2.4	5.4	6.6	13.7	12.1	21.7	21.2	8.1	7.8	100.0(2,743)		
지역 규모														19.656	
대도시	7.08(2.10)	0.3	0.7	1.8	3.8	5.5	11.4	9.8	18.5	21.8	13.3	13.0	100.0(3,273)		
중소도시	7.03(2.16)	0.4	0.6	2.1	4.2	5.7	12.3	10.0	17.0	21.0	12.9	13.8	100.0(4,068)		
읍면지역	7.15(2.15)	0.3	0.9	2.1	3.4	4.5	10.9	10.9	17.2	22.0	11.7	16.1	100.0(1,178)		
가족 유형														111.910***	
양부모가정	7.11(2.11)	0.3	0.6	1.9	3.7	5.3	11.4	10.0	17.8	21.8	13.1	13.9	100.0(7,621)		
한부모가정	6.42(2.31)	0.9	1.7	3.3	6.3	8.0	14.9	10.5	17.8	18.4	9.1	9.2	100.0(661)		
조손가정	7.74(2.21)	0.8	0.7	0.0	3.9	3.1	12.1	4.5	7.4	20.7	23.0	23.7	100.0(92)		
기타	7.34(2.38)	1.3	0.8	0.9	5.4	3.3	9.6	11.5	15.4	13.0	13.7	24.9	100.0(102)		
학업 성적														585.826***	
상	7.62(1.98)	0.1	0.3	1.4	2.5	3.6	7.4	8.2	16.6	23.0	17.2	19.6	100.0(3,289)		
중	6.98(2.03)	0.2	0.5	1.5	3.6	5.8	13.7	10.6	19.1	21.7	11.7	11.6	100.0(3,356)		
하	6.21(2.30)	1.0	1.7	4.0	7.2	8.3	15.9	12.0	16.8	18.4	7.3	7.6	100.0(1,834)		
경제적 수준														752.785***	
상	7.49(1.99)	0.2	0.3	1.5	2.5	3.9	8.4	9.4	17.4	23.1	16.0	17.3	100.0(5,114)		
중	6.63(2.10)	0.3	0.8	1.9	5.1	6.8	17.8	10.7	18.3	20.2	8.8	9.4	100.0(2,665)		
하	5.66(2.41)	1.6	3.2	6.0	9.9	12.0	13.0	12.1	16.9	14.6	5.8	4.8	100.0(702)		

* $p < .05$, ** $p < .01$, *** $p < .001$.

Children's Worlds의 아동·청소년 주관적 안녕감 척도(CW-SWBS)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한 결과, 6문항으로 구성된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6.99점으로 중간 이상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이 문항 역시 성별, 학교급, 가족 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은 이 조사에서 정서적 웰빙을 측정한 여러지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7.46점인 반면,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평균 점수는 5.45점으로 중점 이하에 위치해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IV-6-45).

표 IV-6-45. 주관적 안녕감(CW-SWBS, 2024년)

(단위 : 점)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6)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	전체 평균
전체		7.11	6.54	7.26	6.63	7.18	7.19	6.99
성별	남학생	7.32	6.71	7.44	6.68	7.43	7.36	7.16
	여학생	6.90	6.36	7.07	6.57	6.92	7.01	6.81
학교급	초등학교	7.75	7.36	8.14	7.18	8.07	7.99	7.75
	중학교	6.83	6.23	6.94	6.34	6.79	6.87	6.67
	고등학교	6.74	5.98	6.67	6.34	6.66	6.67	6.51
지역규모	대도시	7.19	6.60	7.32	6.73	7.24	7.25	7.06
	중소도시	7.06	6.47	7.20	6.53	7.14	7.14	6.92
	읍면지역	7.09	6.60	7.32	6.67	7.20	7.19	7.0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15	6.60	7.32	6.68	7.24	7.25	7.04
	한부모가정	6.62	5.79	6.50	6.00	6.42	6.51	6.31
	조손가정	7.71	6.87	7.88	6.74	7.92	7.85	7.50
	기타	7.13	6.68	7.29	6.63	7.27	7.19	7.03
학업성적	상	7.64	7.34	7.95	7.25	7.88	7.80	7.64
	중	7.00	6.40	7.18	6.53	7.11	7.12	6.89
	하	6.39	5.36	6.19	5.69	6.08	6.22	5.99
경제적 수준	상	7.52	7.02	7.79	7.08	7.68	7.67	7.46
	중	6.66	6.03	6.70	6.15	6.67	6.68	6.48
	하	5.86	4.98	5.57	5.14	5.52	5.63	5.45

⑤ 자아존중감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문항을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3가지 문항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등이었다(그림 IV-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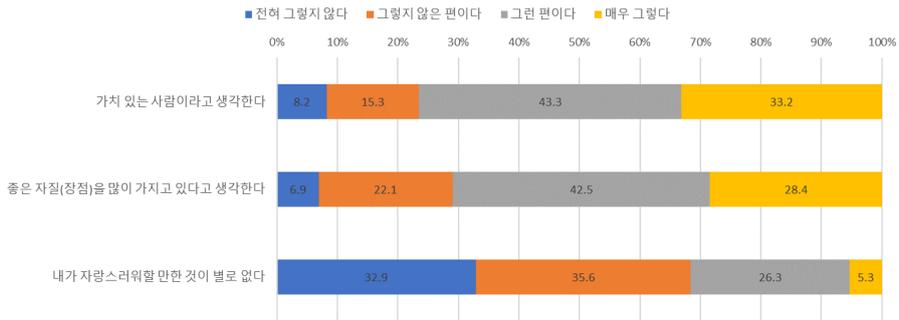


그림 IV-6-19.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2024년)

각 문항의 응답을 보면 자기 자신에 관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해 10명 중 7명가량은 긍정적 응답을, 나머지 3명 가량은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먼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76.5%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산비율)고 응답하였으나, 23.5%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합산비율)고 응답하였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산비율)가 70.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합산비율)가 29.0%였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산비율)가 31.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합산비율)가 68.5%였다.¹⁵¹⁾

각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평균 점수는 3.02점으로 '그런 편이다(3점)'에 가까웠다. 응답은 각 하위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여성(3.00점)보다 남성(3.03점)이, 학교급에

151) 이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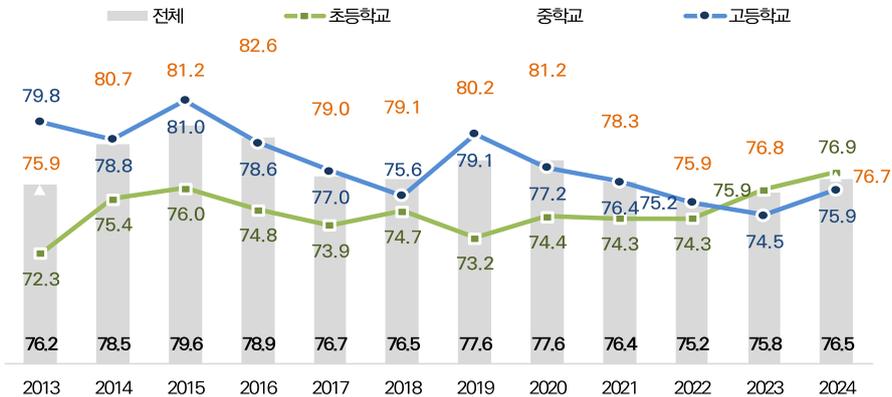
서는 중학교(3.01점), 고등학교(2.97점)보다 초등학교(3.07점)가 높았다(표 IV-6-46).

표 IV-6-46.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90)	8.2	15.3	43.3	33.2	100.0(8,699)	50.988***
성별	남학생 3.03(0.92) 여학생 3.00(0.88)	9.4 6.9	13.2 17.6	42.7 44.0	34.8 31.6	100.0(4,480) 100.0(4,219)	
학교급	초등학교 3.07(1.00) 중학교 3.01(0.85) 고등학교 2.97(0.84)	12.0 6.1 6.3	11.0 17.2 17.8	35.2 46.4 48.6	41.7 30.3 27.3	100.0(2,954) 100.0(2,927) 100.0(2,818)	306.441***
지역 규모	대도시 3.04(0.88) 중소도시 3.00(0.91) 읍면지역 3.00(0.93)	7.3 8.3 9.9	14.6 16.4 13.6	44.5 42.5 42.8	33.6 32.8 33.6	100.0(3,348) 100.0(4,141) 100.0(1,210)	16.4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89) 한부모가정 2.89(0.90) 조손가정 3.00(1.09) 기타 2.70(1.08)	7.7 8.7 15.8 20.6	15.0 19.9 11.2 15.8	43.5 44.7 30.3 36.6	33.8 26.7 42.7 27.0	100.0(7,768) 100.0(686) 100.0(96) 100.0(104)	57.377***
학업 성적	상 3.20(0.90) 중 2.96(0.88) 하 2.79(0.87)	7.9 8.3 8.3	8.8 16.2 25.5	39.0 46.6 44.6	44.3 28.9 21.6	100.0(3,328) 100.0(3,444) 100.0(1,884)	463.590***
경제적 수준	상 3.13(0.89) 중 2.89(0.88) 하 2.67(0.88)	7.8 8.2 10.1	10.9 19.8 30.1	41.8 46.5 42.2	39.5 25.4 17.6	100.0(5,199) 100.0(2,732) 100.0(722)	383.059***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2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13~2024년)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점수가 2.92점으로 ‘그런 편이다(3점)’에 가까웠다. 하위 집단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성별에서는 여성(2.91점)보다 남성(2.94점)이 더 높았고,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2.82점), 중학교(2.80점)에 비하여 초등학교(3.15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중학교가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 학업 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으로 보면 한부모 가정(2.82점)에 비해 양부모가정(2.94점)이 높았고, 학업성적에서는 ‘하’로 응답한 집단(2.61점)에 비해 ‘상’으로 응답한 집단(3.17점),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로 응답한 집단(2.52점)보다 ‘상’으로 응답한 집단(3.07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6-47, 그림 IV-6-21).

표 IV-6-47.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2(0.88)	6.9	22.1	42.5	28.4	100.0(8,691)	30.894***	
성별	남학생	2.94(0.90)	7.8	20.0	42.9	29.3		100.0(4,472)
	여학생	2.91(0.87)	6.0	24.3	42.2	27.5		100.0(4,219)
학교급	초등학교	3.15(0.86)	5.1	15.4	39.0	40.4	100.0(2,945)	365.129***
	중학교	2.80(0.89)	8.2	26.9	42.0	23.0	100.0(2,925)	
	고등학교	2.82(0.85)	7.5	24.1	46.9	21.5	100.0(2,821)	
지역 규모	대도시	2.96(0.86)	6.2	20.5	44.2	29.1	100.0(3,349)	16.267*
	중소도시	2.90(0.89)	7.3	23.4	41.2	28.1	100.0(4,137)	
	읍면지역	2.90(0.89)	7.7	22.1	42.7	27.5	100.0(1,2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88)	6.7	21.8	42.8	28.8	100.0(7,763)	44.649***
	한부모가정	2.82(0.87)	7.1	26.7	43.0	23.2	100.0(684)	
	조손가정	3.03(1.00)	10.5	16.6	32.1	40.9	100.0(96)	
	기타	2.67(1.04)	17.4	24.1	33.1	25.4	100.0(104)	
학업 성적	상	3.17(0.84)	5.1	13.2	41.6	40.2	100.0(3,327)	608.942***
	중	2.86(0.85)	6.5	24.4	45.7	23.4	100.0(3,437)	
	하	2.61(0.89)	11.0	33.9	38.4	16.7	100.0(1,885)	
경제적 수준	상	3.07(0.85)	5.5	16.6	43.2	34.8	100.0(5,197)	452.800***
	중	2.75(0.87)	8.2	28.8	43.0	20.1	100.0(2,727)	
	하	2.52(0.89)	12.8	36.6	36.6	14.0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2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13~2024년)

마지막으로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성별, 학교급 등 여러 변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문항은 부정 문항이므로 4점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5점이었고, 여성은 2.13점으로 여성의 점수가 좋지 않았다. 학교급에서도 초등학교는 1.79점, 중학교는 2.18 점, 고등학교는 2.16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결과가 유사하면서도 중학교의 점수가 약간 더 좋지 못하였다(표 IV-6-48).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산비율)고 응답한 결과를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로 살펴 보면, 고등학교는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지난 10년간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조금씩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들과 차이가 있지만, 2013년 16.1%에서 2024년 21.3%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는 높았으나 고등학교보다는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고등학교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상태에 유지되었던 반면, 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등학교와 유사해지거나 약간 높은 해(2022년, 2024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심리정서적 문제의 자연평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그림 IV-6-22).

표 IV-6-48.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4(0.90)	32.9	35.6	26.3	5.3	100.0(8,706)	84.983***
성별							
남학생	1.95(0.88)	36.6	35.8	23.2	4.4	100.0(4,477)	402.938***
여학생	2.13(0.90)	28.9	35.3	29.6	6.2	100.0(4,229)	
학교급							20.001**
초등학교	1.79(0.86)	45.9	32.8	17.5	3.8	100.0(2,962)	
중학교	2.18(0.90)	26.7	35.8	30.7	6.8	100.0(2,925)	
고등학교	2.16(0.87)	25.5	38.2	31.0	5.3	100.0(2,819)	55.202***
지역 규모							
대도시	2.01(0.88)	33.3	36.6	25.6	4.5	100.0(3,349)	
중소도시	2.07(0.91)	32.4	34.2	27.8	5.7	100.0(4,149)	758.317***
읍면지역	2.02(0.90)	33.4	37.4	23.1	6.1	100.0(1,207)	
양부모가정	2.03(0.89)	33.0	36.0	25.8	5.2	100.0(7,773)	
한부모가정	2.20(0.92)	27.6	31.6	34.3	6.5	100.0(688)	450.568***
조손가정	1.80(0.96)	51.1	24.7	17.7	6.5	100.0(96)	
기타	1.86(0.85)	37.7	44.2	12.2	5.8	100.0(105)	
학업 성적							21.3
상	1.77(0.83)	45.1	35.9	16.0	3.1	100.0(3,328)	
중	2.08(0.86)	28.7	38.6	28.4	4.3	100.0(3,448)	
하	2.44(0.92)	18.8	29.5	40.7	11.1	100.0(1,888)	31.6
경제적 수준							
상	1.90(0.87)	39.6	35.4	20.8	4.2	100.0(5,207)	
중	2.20(0.87)	24.4	36.9	33.1	5.6	100.0(2,731)	36.2
하	2.50(0.90)	15.3	31.5	40.7	12.5	100.0(723)	

* $p < .05$,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2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2013~2024년)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고민거리 대화상대를 한 사람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 다양한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9%는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요한 고민거리 대화상대는 어머니로 41.8%였고 아버지는 5.8%로 낮게 나타났다. 친구는 34.5%, 형제자매는 6.0%였다. 공식적 체계인 학교 담임선생님(0.9%), 학교 상담선생님(0.6%), 청소년 상담전화 1388과 같은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0.2%) 등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었다.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났는데 특히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표 IV-6-49).

표 IV-6-49. 고민거리 대화상대(2024년)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관련기관선생님	기타	전체(N)	χ^2	
전체	9.0	5.8	41.8	6.0	0.9	0.6	34.5	0.9	0.2	0.3	100.0(8,305)		
성별	남학생	8.0	8.5	45.7	4.3	1.1	0.5	30.4	1.1	0.2	0.3	100.0(4,235)	236.782***
	여학생	10.1	3.0	37.7	7.7	0.7	0.6	38.7	0.8	0.3	0.3	100.0(4,070)	
	초등학교	8.5	6.3	52.5	5.8	0.9	0.6	23.6	1.5	0.2	0.1	100.0(2,773)	
중학교	9.0	5.7	35.7	5.6	0.9	0.6	40.9	0.8	0.4	0.4	100.0(2,810)		
고등학교	9.7	5.4	37.2	6.5	0.9	0.4	38.9	0.5	0.2	0.4	100.0(2,722)		
지역 규모	대도시	9.0	5.8	42.6	6.4	0.9	0.5	33.3	1.0	0.2	0.4	100.0(3,193)	21.388
	중소도시	8.9	5.7	41.8	5.8	1.0	0.5	34.9	0.9	0.3	0.2	100.0(3,964)	
	읍면지역	9.8	6.3	39.2	5.2	0.8	1.1	36.1	1.1	0.2	0.2	100.0(1,1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7	5.5	43.2	5.9	0.8	0.5	34.0	0.9	0.2	0.3	100.0(7,462)	185.010***
	한부모가정	11.9	9.7	28.2	5.4	1.5	0.9	40.8	1.2	0.3	0.1	100.0(647)	
	조손가정	2.6	8.5	45.4	11.2	1.7	3.3	21.5	3.8	2.0	0.0	100.0(85)	
	기타	20.6	1.7	14.2	13.1	1.2	3.3	39.8	3.4	0.6	2.1	100.0(74)	
학업 성적	상	6.9	6.2	49.2	5.5	0.7	0.4	29.8	0.8	0.2	0.3	100.0(3,177)	223.882***
	중	9.1	5.9	40.9	6.8	0.9	0.5	34.3	1.2	0.2	0.3	100.0(3,286)	
	하	12.7	4.9	30.4	5.5	1.2	0.9	43.1	0.7	0.4	0.2	100.0(1,804)	
경제적 수준	상	6.7	6.4	46.1	5.9	0.8	0.5	32.0	1.1	0.2	0.3	100.0(4,948)	246.035***
	중	10.4	5.4	37.2	6.4	0.9	0.5	37.9	0.7	0.3	0.4	100.0(2,623)	
	하	19.9	3.0	27.6	5.6	1.4	1.2	39.7	0.9	0.4	0.4	100.0(694)	

* $p < .05$, ** $p < .01$, *** $p < .001$.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90.5%는 ‘있다’고 응답하였고 9.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10.4%)이 여성(8.6%)에 비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 양부모 가정(9.1%)에 비해 한부모가정(11.4%), 조손가정(10.8%), 기타가정(20.4%)에서의 ‘없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7.6%)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17.5%)에서의 ‘없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6-50).

표 IV-6-50.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2024년)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전체(N)	χ^2	
전체	9.5	90.5	100.0(8,722)		
성별	남학생	10.4	89.6	100.0(4,490)	8.820**
	여학생	8.6	91.4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8.2	91.8	100.0(2,975)	8.760*
	중학교	10.3	89.7	100.0(2,925)	
	고등학교	10.0	90.0	100.0(2,821)	
지역규모	대도시	9.2	90.8	100.0(3,363)	0.954
	중소도시	9.5	90.5	100.0(4,143)	
	읍면지역	10.2	89.8	100.0(1,21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1	90.9	100.0(7,796)	18.657***
	한부모가정	11.4	88.6	100.0(686)	
	조손가정	10.8	89.2	100.0(93)	
	기타	20.4	79.6	100.0(105)	
학업성적	상	7.0	93.0	100.0(3,346)	59.351***
	중	9.6	90.4	100.0(3,446)	
	하	13.5	86.5	100.0(1,888)	
경제적 수준	상	7.6	92.4	100.0(5,221)	81.236***
	중	10.9	89.1	100.0(2,734)	
	하	17.5	82.5	100.0(722)	

* $p < .05$, ** $p < .01$, *** $p < .001$.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6가지로 나누어 물어보았고, 각 문항에 대해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결과를 정리하였다(표 IV-6-51).

표 IV-6-51.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사회적 지지체계, 2024년)

(단위 : %)

구분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전체	6.7	11.2	7.2	5.8	9.3	6.4
성별	남학생	7.5	11.0	8.4	6.4	11.0	7.7
	여학생	5.9	11.3	6.0	5.2	7.5	5.1
학교급	초등학교	6.1	12.4	7.5	3.8	12.8	6.0
	중학교	7.1	12.1	7.8	6.6	8.4	6.9
	고등학교	6.9	8.9	6.2	6.9	6.6	6.4
지역 규모	대도시	6.0	10.3	6.6	5.6	8.8	6.0
	중소도시	6.9	11.8	7.8	5.7	9.3	6.5
	읍면지역	7.9	11.4	6.7	6.5	10.9	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3	10.9	6.8	5.4	9.1	6.2
	한부모가정	9.6	11.6	9.7	8.7	9.4	7.9
	조손가정	14.3	18.7	14.8	8.3	18.5	9.6
	기타	10.9	19.4	11.2	9.1	16.4	10.2
학업 성적	상	4.8	8.6	5.3	3.9	7.8	4.7
	중	7.0	11.8	7.4	5.7	9.6	6.6
	하	9.5	14.4	10.3	9.1	11.7	9.1
경제적 수준	상	5.5	9.7	5.7	4.4	8.1	5.1
	중	7.6	12.6	8.4	6.8	9.9	7.3
	하	12.5	16.4	13.4	11.8	15.6	12.8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6.7%,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1.2%,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7.2%,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5.8%,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9.3%,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6.4%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에 비해 ‘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 중에서는 양부모나 한부모가정에 비하여 조손가

정과 기타가정에서 ‘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의 ‘하’ 집단과 경제적 수준의 ‘하’ 집단에서도 ‘없다’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⑦ 사회적 고립감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subjective social isolation) 혹은 외로움(loneliness)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로 알려진 척도로 그중 일부 문항만 대규모 조사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각 척도는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그림 IV-6-23. 사회적 고립감 4개 문항 결과(UCLA 외로움 척도, 2024년)

그렇다(‘드물게 그렇다’+‘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의 비율을 보면,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3.5%,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37%,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48.2%,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14.2%였다(그림 IV-6-23).

표 IV-6-52. 외로움 정도(2024년)

(단위 : 점)

구분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1.64(0.83)	1.56(0.83)	1.75(0.90)	1.22(0.59)
성별	남학생	1.59(0.81)	1.50(0.82)	1.63(0.86)
	여학생	1.70(0.85)	1.63(0.85)	1.87(0.91)
학교급	초등학교	1.55(0.80)	1.44(0.77)	1.59(0.84)
	중학교	1.71(0.85)	1.59(0.84)	1.79(0.91)
	고등학교	1.67(0.84)	1.67(0.88)	1.88(0.92)
지역 규모	대도시	1.63(0.82)	1.54(0.81)	1.73(0.88)
	중소도시	1.65(0.84)	1.59(0.85)	1.77(0.91)
	읍면지역	1.66(0.83)	1.56(0.84)	1.74(0.8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4(0.83)	1.55(0.82)	1.73(0.89)
	한부모가정	1.77(0.88)	1.72(0.93)	1.97(0.97)
	조손가정	1.55(0.79)	1.48(0.78)	1.56(0.78)
	기타	1.36(0.68)	1.59(0.92)	1.76(1.00)
학업 성적	상	1.55(0.79)	1.44(0.74)	1.61(0.83)
	중	1.63(0.82)	1.56(0.82)	1.75(0.88)
	하	1.83(0.90)	1.79(0.95)	2.00(0.98)
경제적 수준	상	1.56(0.79)	1.46(0.76)	1.63(0.84)
	중	1.71(0.85)	1.65(0.87)	1.84(0.91)
	하	2.03(0.95)	2.00(1.02)	2.25(1.01)

4점 척도 평균점수로 보면,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1.64점,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는 1.56점,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1.75점,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1.22점이었다. 외로움에 관한 문항들은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4가지 문항에서 모두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학교급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외로움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보면 '상'인 집단보다 '하'인 집단에서 4가지 문항 모두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V-6-52).

외로움 문항 중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6개월 미만은 43.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6.4%, 1년 이상 2년 미만이 16.9%, 2년 이상 3년 미만이 9.3%, 3년 이상이 13.7%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

교에서 3년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 안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립의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고립이 앞으로의 성장과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IV-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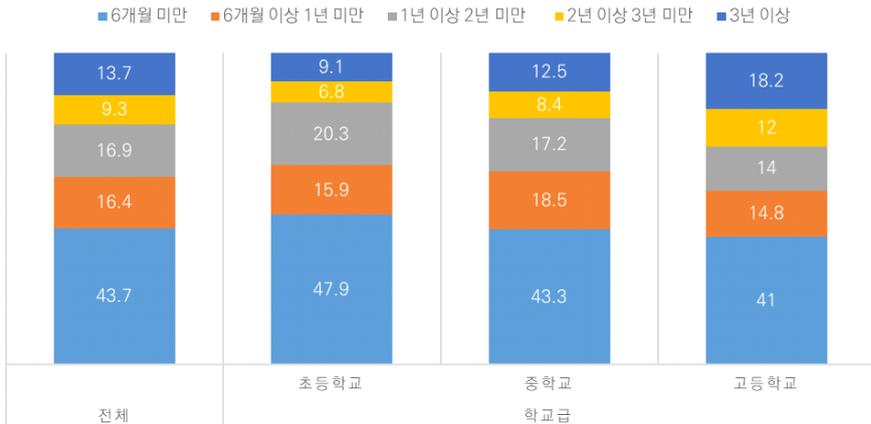


그림 IV-6-2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고립된 기간 응답(2024년)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 현황(빈곤율 포함)

가.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child poverty rate)은 상대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상대빈곤 방식으로 아동빈곤율을 계산하였을 때 2017년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은 14.2%, 2021년은 9.9%로 4.3%p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차이가 0.3%p로 미미하였으나, 2021년에는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차이가 2.8%p로 증가하

였다. 이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공적이전 소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 IV-6-53).

표 IV-6-53. 아동빈곤율(2017~2021년)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50%기준 상대적 아동빈곤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7	14.5	13.9	14.2
2018	13.1	12.3	12.3
2019	12.1	10.8	10.6
2020	12.9	10.5	9.8
2021	12.7	10.2	9.9

* 출처: 김태완, 최준영(2023). 2023 빈곤통계연보 <표 3-11>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43.

* 주: 1) 빈곤율을 조사하는 원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2016년 변경되었음.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과 연금·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수를 보면, 2018년 도에서부터 2023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급자 중 아동·청소년 가구의 비율은 0~4세가 1.0%, 5~9세가 3.0%, 10~19세가 11.2%였다. 아동·청소년 인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인 0~4세, 5~9세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표 IV-6-54).

표 IV-6-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8~2023년)

(단위 : 명, %)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8	21,744	64,948	281,224	1,653,781
	1.3	3.9	8.5	100.0
2019	24,198	68,695	263,138	1,792,012
	1.4	3.8	14.7	100.0
2020	27,383	75,857	273,719	2,046,213
	1.3	3.7	13.4	100.0
2021	27,473	79,313	278,053	2,268,852
	1.2	3.5	12.3	100.0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22	25,829	75,178	275,527	2,359,228
	1.1	3.2	11.7	100.0
2023	25,145	73,831	275,640	2,458,608
	1.0	3.0	11.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4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한부모가구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10천가구였고, 한부모가족지원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5천 가구, 한부모 가족은 31천가구였다. 여기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IV-6-55).

표 IV-6-55. 한부모가구 비율(2017~2021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한부모 가구수 (전체가구 대비 %)	한부모가족지원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2017	1,533(7.6)	181	57
2018	1,539(7.5)	184	56
2019	1,529(7.3)	183	51
2020	1,533(7.1)	184	40
2021	1,510(6.9)	185	31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p.45.

- * 주: 1)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을 의미함
 3) 원자료의 한부모 가구수 추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음.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가족이 151,733가구, 378,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자가족은 37,381가구, 92,964명이었다. 조손가족은 1307가구, 3054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모자가족은 79.7%, 부자가족은 19.6%, 조손가족은 0.7%로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자가족의 비율은 약간씩 감소하고, 모자가족과 조손가족의 비율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6-56).

표 IV-6-56.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2018~2022년)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8	수	182,731	452,341	142,830	353,658	38,979	96,522	922	2,161
	비율	100.0		78.2		21.3		0.5	
2019	수	182,606	453,045	143,740	356,895	37,969	94,064	897	2,086
	비율	100.0		78.7		20.8		0.5	
2020	수	184,006	457,236	145,482	361,998	37,660	93,234	864	2,004
	비율	100.0		79.1		20.5		0.4	
2021	수	185,461	463,084	146,973	367,366	37,432	93,260	1,056	2,458
	비율	100.0		79.2		20.2		0.6	
2022	수	190,421	474,194	151,733	378,176	37,381	92,964	1,307	3,054
	비율	100.0		79.7		19.6		0.7	

* 출처: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4.
여성가족부(2024b).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 주: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2) 비율은 세대 기준임

②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예산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2024년 52,27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은 1,038백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가정위탁 지원 역시 약간 감소한 6,340백만원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13,666백만원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표 IV-6-57).

표 IV-6-57.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20~2024년)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호대상아동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보호대상아동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20		22,793	3,028	1,044	142,900
2021		26,746	3,164	940	148,600
2022		39,426	1,276	7,995	158,000
2023		47,131	1,276	7,874	189,198
2024		52,276	1,038	6,340	213,666

* 출처: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7.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일반회계). p.428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0, 84.
 보건복지부(2021d).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28, 133.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1, 85.
 보건복지부(2022g).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443,452
 보건복지부(2023f).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3, 91.
 보건복지부(2023g).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57, 165, 172
 보건복지부(2023h).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p.12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64
 보건복지부(2024c).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68, 178, 185
 보건복지부(2024d).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p.9

나.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2024).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229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 아동 수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17년 대상 가구 수는 93,298가구, 아동 수는 144,289명이었고, 2021년에는 108,047가구, 아동 수는 162,451명으로 늘어났다(표 IV-6-58). 아동 수 감소에도 대상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인다. 다만 같은 시기 드림스타트의 예산은 다소 감소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표 IV-6-58.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7~2021년)

(단위 : 억원, 명, 가구)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억원)	아동 수(명)	가구 수(가구)
2017	229	668	144,289	93,298
2018	229	668	150,052	97,739
2019	229	677	156,439	102,459
2020	229	551	160,501	105,730
2021	229	533	162,451	108,047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241-242

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는 2007년 국내 도입이 되었고, 2009년 “디딤씨앗통장”이 대국민브랜드로 선정되어 정책명으로 사용 중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4).

디딤씨앗통장의 운영 상황을 보면, 지원 아동 수는 2018년 81,412명에서 2022년 64,79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적립금 누계는 3,880억원에서 7,35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월평균 매칭금이 상향되어 보장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6-59).

표 IV-6-59.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18~2022년)

(단위 : 명, 원, 억원)

구분	지원아동수(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원)
2018	81,412	46,970	32,538	3,880
2019	80,770	52,515	33,688	4,570
2020	74,685	65,013	39,632	5,397
2021	68,481	66,034	41,379	6,195
2022	64,791	76,308	89,582	7,359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2.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은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등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하위 영역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지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에서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보다는 특수학급으로 배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교사와 보조교사의 배치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생존 및 발달 지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영아사망률이 '18년 1,000명 당 2.8명에서 '22년 1,000명 당 2.3명까지 하락하였으나 '23년 1,000명 당 2.5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영아사망률의 감소 추세가 변화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사망 외인 중 자살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10대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서비스 지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이 증가하고 있고 2016년 64.3%에서 2023년 78.0%까지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수가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기 건강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지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은 정신 건강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로 인한 자살과 자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정신 건강 문제의 저연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지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가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감소폭이 더 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제도를 통해 공적 이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기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인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내실 있는 운영과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¹⁵²⁾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152) 이 절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작성하였음.

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육기회의 보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우선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2000년 이후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교육비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등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2020년에 더 증가하였으며, 공교육비의 비율의 차이도 같은 기간 동안 2%p에서 11%p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폭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고등교육과정의 경우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과정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비율도 오히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등교육과정에서의 공교육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2003)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2008)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2013)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5 (2018)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2016 (2019)	한국	11,029	30	12,370	33	10,486	28
	OECD 평균	8,470	21	9,968	25	15,556	38
2017 (2020)	한국	11,702	29	13,579	33	10,633	26
	OECD 평균	9,090	21	10,547	24	16,327	36
2018 (2021)	한국	12,535	30	14,978	35	11,290	27
	OECD 평균	9,550	21	11,192	25	17,065	37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19 (2022)	한국	13,341	31	17,078	40	11,287	26
	OECD 평균	9,923	22	11,400	24	17,559	37
2020 (2023)	한국	13,278	30	17,038	38	12,225	27
	OECD 평균	10,658	23	11,942	25	18,105	38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34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5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년도.

-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기준 변경
 - 기존 산출식: {(경상지출+자본적 지출)/학생 수}/PPP
 - 신규 산출식: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과정보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3) 「OECD 교육지표 2019」부터 전년도 아월금 및 적립금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됨(고등교육단계는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제외)
 4)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 '10년(회계연도) 한국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KEDI에서 산출한 수치임
 5) 한국 1인당 GDP(회계연도 기준)은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16년 US\$ 37,143, '17년 US\$ 41,001, '18년 US\$ 42,487, '19년 US\$43,045, '20년 US\$ 44,695
 6) 한국 PPP환율(회계연도 기준)은 '00년 \$1당 731.19원, '05년 \$1당 788.92원, '10년 \$1당 823.67원, '16년 \$1당 862.55원, '17년 \$1당 871.70원, '18년 \$1당 865.72원, '19년 \$1당 864.63원, '20년 \$1당 837.67원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2023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9.4명, 초등학교가 13.3명, 중학교가 11.6명, 고등학교가 9.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7.4명, 7.3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는 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3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11.9	11.4	10.9	10.3	9.4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14.6	14.2	14.0	13.7	13.3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11.7	11.8	11.9	11.7	11.6	
고등 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10.6	10.1	9.9	9.6	9.8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11.1	10.7	10.5	10.3	10.5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8.3	8.0	7.9	7.6	7.4
특성학교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9.1	8.4	8.0	7.5	7.3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11.5	11.1	11.2	11.4	11.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1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1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16.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교원 1인당 학생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6>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2) 유치원~고등학교 교원은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 교원 포함. 퇴직 교원 및 강사는 제외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2023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16.1명, 초등학교가 20.7명, 중학교가 24.6명, 고등학교가 22.9명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33.1명에서 22.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34.7명에서 24.1명으로, 특성학교도 28.5명에서 17.7명으로 1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등학교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3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17.0	16.7	17.5	16.7	16.1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22.2	21.8	21.5	21.1	20.7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25.1	25.2	25.5	25.0	24.6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6.2	24.5	23.4	23.1	22.6	22.9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25.2	24.2	24.0	23.7	24.1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22.8	22.3	22.1	21.3	20.8
	특성학교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21.3	19.8	19.2	18.1	17.7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26.5	25.5	25.9	26.0	26.7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344.

* 주: 1) 학급당 학생수=학생수/학급수 (학급수는 인가학급 기준임)
 2) 학급수 기준은 인가기준(-2020년)에서 편성기준(2021년-)으로 변경됨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양상을 OECD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는 32.1명에서 16.1명으로 16명, 중학교는 21.5명에서 13.3명으로 8.2명, 고등학교는 20.9명에서 10.7명으로 10.2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OECD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는 3.1명, 중학교는 1.8명, 고등학교는 0.6명이 감소하였다. 200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거나(초등 및 중등) 오히려 낮은 수준(고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같은 기간 동안 OECD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초등학교는 36.5명에서 22.5명으로, 중학교는 38.5명에서 26.5명으로 10명 이상 감소한데 비해, OECD는 같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각각 21.9명에서 20.6명으로 1.3명, 중학교에서 23.6명에서 23명으로 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ECD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0여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이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2000~2021년)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5	한국	28.0	20.8	16.0	32.6	35.7
(2007)	OECD 평균	16.7	13.7	13.0	21.5	24.1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5	한국	16.8	15.7	14.1	23.4	30.0
(2017)	OECD 평균	15.2	13.0	13.1	21.1	23.3
2016	한국	16.5	14.7	13.8	23.2	28.4
(2018)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2017	한국	16.4	14.0	13.2	23.1	27.4
(2019)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18	한국	16.5	13.5	12.2	23.1	26.7
(2020)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2019	한국	16.6	13.0	11.4	23.0	26.1
(2021)	OECD 평균	14.5	13.1	13.0	21.1	23.3
2020	한국	16.3	13.1	10.9	22.7	26.2
(2022)	OECD 평균	14.4	13.2	12.6	20.3	22.6
2021	한국	16.1	13.3	10.7	22.5	26.5
(2023)	OECD 평균	14.6	13.2	13.3	20.6	23.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5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51.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345.
 *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 연도는 학년도,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3) 2020학년도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2021학년도 학급당 학생수 자료는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에만 수록됨
 4)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③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공교육비와 더불어 사교육비는 전체 교육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초·중·고등학생별로 살펴보면, 각각 39.8만원, 44.9만원, 49.1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포함한 수치인데 비해 참여학생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다. 이 경우 모든 참여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55.3만원이었으며, 초·중·고등학생이 46.2만원, 중학생이 59.6만원, 고등학생이 7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의 사교육비 수준과 비교해 보면, 전체 학생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35.2%, 참여학생의 경우에는 28.9%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교육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학생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9~2023년)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	32.1	29.0	33.8	36.5	42.9	34.7	47.4	59.9
2020	30.2	23.5	34.2	39.6	45.0	33.8	50.8	64.3
2021	36.7	32.8	39.2	41.9	48.5	40.0	53.5	64.9
2022	41.0	37.2	43.8	46.0	52.4	43.7	57.5	69.7
2023	43.4	39.8	44.9	49.1	55.3	46.2	59.6	74.0
증감률	5.8	6.8	2.6	6.9	5.5	5.7	3.7	6.1

* 출처: 통계청(2022.0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8.
 통계청(2023.03.07). 보도자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8.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2024.03.14). 보도자료: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9923&act=view&mainXml=Y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3년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6만원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67.1만원으로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약 4.9배 정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2022년에도 동일하게 관찰됨으로써 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도 사교육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49.8%인데 비해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7.9%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구 월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2020년이나 2021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나 사교육 참여율과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를 교육기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기회는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은 사교육을 매개로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0~2023)

(단위 : 만원, %, %p)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20	2021	2022	증감률	2020	2021	2022	증감
전체	30.2	36.7	41.0	11.8	67.1	75.5	78.3	2.8
300만원 미만	-	15.8	17.8	12.2	-	53.8	57.2	3.5
200만원 미만	10.3	11.6	12.4	7.0	40.4	46.6	49.9	3.3
200~300만원 미만	15.8	18.0	20.5	13.7	51.1	57.6	61.0	3.5
300~400만원 미만	20.4	25.3	27.2	7.5	60.9	70.0	70.4	0.4
400~500만원 미만	26.9	33.2	35.1	5.7	68.4	77.2	78.7	1.6
500~600만원 미만	32.5	38.1	39.9	5.0	72.5	80.3	81.2	0.9
600~700만원 미만	37.2	44.4	46.9	5.6	75.2	83.5	84.8	1.4
700~800만원 미만	44.1	48.6	51.8	6.5	80.2	84.9	86.6	1.6
800만원 이상	52.6	59.3	64.8	9.2	80.8	86.0	88.1	2.2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22	2023	증감률	2022	2023	증감
전체	41.0	43.4	5.8	78.3	78.5	0.2
300만원 미만	17.8	18.3	3.0	57.2	57.2	-0.1
200만원 미만	12.4	13.6	-	49.9	49.8	-
200~300만원 미만	20.5	20.6	-	61.0	60.7	-
300~400만원 미만	27.2	27.9	2.4	70.4	70.3	-0.2
400~500만원 미만	35.1	35.3	0.7	78.7	76.8	-1.9
500~600만원 미만	39.9	41.2	3.0	81.2	80.6	-0.6
600~700만원 미만	46.9	48.4	3.4	84.8	85.1	0.3
700~800만원 미만	51.8	52.7	1.8	86.6	85.8	-0.8
800만원 이상	64.8	67.1	3.5	88.1	87.9	-0.3

* 출처: 통계청(2022.0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5.
 통계청(2023.3.7). 보도자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2024.03.14). 보도자료: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0, 31-3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9923&act=view&mainXml=Y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 주: 1) 가구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 포함
 2) 결과표 분류지표 추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구간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교육에의 권리에서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 전체 학업중단율은 1.0%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7%, 고등학교는 2.0%로 보고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0.4%에서 0.7%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0.5%~0.9%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2년에 1.8%에서 2015년 1.3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2020년의 학업중단율이 1.1%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2023년에 2.0%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이후의 학업중단율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3년)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0.7	0.4	0.6	0.7	0.7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0.8	0.5	0.5	0.7	0.7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1.7	1.1	1.5	1.9	2.0
계 (학업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1.0 (52,261)	0.6 (32,027)	0.8 (42,755)	1.0 (52,981)	1.0 (54,615)

* 출처: 교육부(2022.8.30.). 2022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31&pWise=main&pWiseMain=C3>에서 2022년 8월 31일 인출.
 교육부(2023.8.30.). 2023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9월 8일 인출.
 교육부(2024.8.29.). 2024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8월 31일 인출.

- * 주: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 장기결석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3)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포행), 유예, 면제, 제적임
 4)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②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 가운데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인데 비해 대도시나 읍면지역

의 경우에는 각각 27.4%, 29.3%로 나타남으로써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생각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 가운데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양부모 조손부모 가정의 경우에서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족구조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 학교 성적등이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7-8. 학업중단 생각 경험(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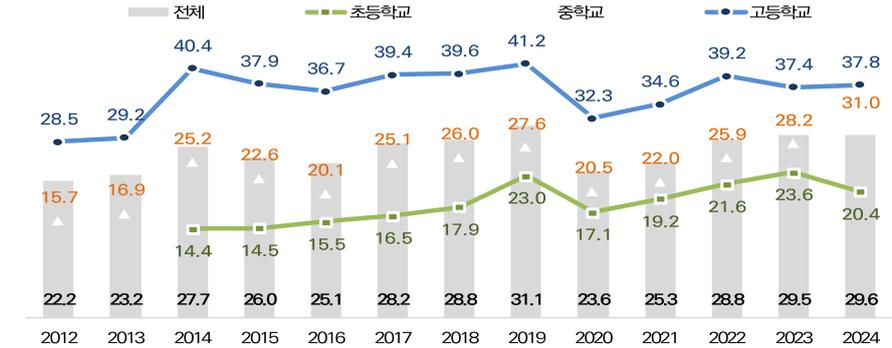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9.6	70.4	100.0(8,683)		
성별	남학생	23.9	76.1	100.0(4,465)	144.889***
	여학생	35.7	64.3	100.0(4,219)	
학교급	초등학교	20.4	79.6	100.0(2,933)	212.417***
	중학교	31.0	69.0	100.0(2,925)	
	고등학교	37.8	62.2	100.0(2,825)	
지역 규모	대도시	27.4	72.6	100.0(3,341)	15.238***
	중소도시	31.5	68.5	100.0(4,140)	
	읍면지역	29.3	70.7	100.0(1,2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1	70.9	100.0(7,771)	21.784***
	한부모가정	37.2	62.8	100.0(676)	
	조손가정	24.4	75.6	100.0(94)	
	기타	26.3	73.7	100.0(100)	
학업 성적	상	22.2	77.8	100.0(3,328)	308.307***
	중	28.4	71.6	100.0(3,429)	
	하	45.1	54.9	100.0(1,885)	
경제적 수준	상	25.6	74.4	100.0(5,208)	164.060***
	중	32.6	67.4	100.0(2,717)	
	하	47.7	52.3	100.0(716)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각 학교급에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20년에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2024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은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로 증가하는 양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게 증가였으나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24년에는 202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주 :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7-1. 학업중단 생각 경험(2012~2024년)

학업중단을 생각한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하면,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거나 학교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을 생각한 이유에 대한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의 경우는 '공부하기 싫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각각 28.5%, 21.3%인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2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가 22.7%로 남학생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0.0%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은 학교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업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해본 경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교육기회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7-9. 학업중단 생각 이유(2024년)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6.5	12.9	2.8	0.4	25.1	3.9	7.9	24.8	15.7	100.0(2,520)
성별	남학생	7.6	11.1	4.1	0.5	28.5	4.8	8.9	21.3	100.0(1,045)
	여학생	5.8	14.3	1.8	0.3	22.7	3.2	7.2	27.2	100.0(1,475)
학교급	초등학교	14.2	8.9	4.9	0.8	26.3	2.0	2.9	20.8	100.0(582)
	중학교	7.0	7.2	2.7	0.1	28.8	3.7	8.6	26.7	100.0(886)
	고등학교	1.9	20.0	1.6	0.4	21.4	5.0	10.2	25.4	100.0(1,052)
지역 규모	대도시	6.4	14.2	3.3	0.5	23.6	2.7	7.9	25.9	100.0(901)
	중소도시	6.3	12.3	2.6	0.3	26.3	4.5	7.3	24.1	100.0(1,275)
	읍면지역	7.7	12.0	1.9	0.4	24.8	4.8	10.4	24.3	100.0(3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	12.8	2.7	0.3	25.8	3.8	7.6	24.8	100.0(2,216)
	한부모가정	7.0	16.7	2.9	0.6	19.6	3.7	11.1	25.5	100.0(244)
	조손가정	0.0	6.8	8.3	0.0	16.2	4.4	16.7	20.8	100.0(23)
	기타	12.4	4.2	3.2	3.1	21.8	12.3	5.8	12.4	100.0(26)
학업 성적	상	7.8	6.4	4.4	0.4	23.1	4.6	7.0	26.0	100.0(727)
	중	7.6	12.7	2.5	0.4	27.8	3.9	7.4	22.7	100.0(958)
	하	4.2	19.2	1.7	0.4	23.5	3.3	9.4	26.0	100.0(826)
경제적 수준	상	7.7	11.8	3.8	0.1	26.4	3.8	8.2	22.6	100.0(1,312)
	중	5.6	14.1	1.4	0.4	26.2	3.5	7.0	27.0	100.0(866)
	하	4.7	14.4	2.4	1.6	17.2	5.5	9.4	27.5	100.0(332)

* 주: * 항목은 2016년부터 추가되었으며, 2019년 조사부터 1개 선택으로 변경됨(2018년까지는 우선순위에별 3개 선택).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생활 만족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생활의 즐거움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먼저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93.3%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친구 간의 존중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남학생들 가운데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92.4%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94.2%로 여학생들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이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들의 경우 95.5%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이 91.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90.9%에 불과한 것에 비해 양부모 가정은 93.6%, 조손가정은 91.7%로 나타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친구 간 존중 정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9(0.63)	1.4	5.3	56.3	37.0	100.0(8,660)	21.634***	
성별	남학생	3.26(0.65)	1.8	5.7	56.8	35.6		100.0(4,443)
	여학생	3.32(0.61)	0.9	4.9	55.7	38.5	100.0(4,217)	
학교급	초등학교	3.34(0.66)	1.6	5.7	49.7	43.0	100.0(2,966)	113.507***
	중학교	3.22(0.64)	1.7	6.6	59.5	32.3	100.0(2,903)	
	고등학교	3.30(0.58)	0.9	3.6	59.9	35.6	100.0(2,791)	
지역 규모	대도시	3.32(0.63)	1.2	5.3	53.6	39.8	100.0(3,336)	19.807**
	중소도시	3.27(0.63)	1.5	5.3	58.2	35.0	100.0(4,127)	
	읍면지역	3.28(0.63)	1.4	5.3	57.1	36.2	100.0(1,19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0(0.62)	1.3	5.1	56.2	37.4	100.0(7,739)	28.538***
	한부모가정	3.20(0.64)	1.6	7.5	60.0	30.9	100.0(678)	
	조손가정	3.34(0.75)	4.2	4.0	45.0	46.7	100.0(95)	
	기타	3.29(0.69)	2.6	5.7	51.8	39.9	100.0(102)	
학업 성적	상	3.39(0.63)	1.2	3.9	49.1	45.7	100.0(3,327)	207.794***
	중	3.25(0.60)	1.1	5.5	60.6	32.9	100.0(3,424)	
	하	3.17(0.65)	2.2	7.5	61.4	28.9	100.0(1,867)	
경제적 수준	상	3.36(0.62)	1.1	4.2	52.7	42.0	100.0(5,184)	192.634***
	중	3.21(0.62)	1.5	6.3	61.7	30.5	100.0(2,713)	
	하	3.08(0.69)	3.0	10.5	61.5	25.0	100.0(718)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응답한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긍정 응답의 비율이 2020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긍정응답의 비율은 94%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은 2020년의 96.7%에서 2024년에는 91.8%로 4.9%p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도 중학생의 경우에 비해 감소 폭은 다소 작지만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24년)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5.4%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교사의 학생 존중 정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긍정 평가비율은 각각 98.0%, 94.2%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의 학생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가운데 교사의 학생 존중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인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3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사의 학생 존중 정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적어도 학업성적이 낮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 가운데 교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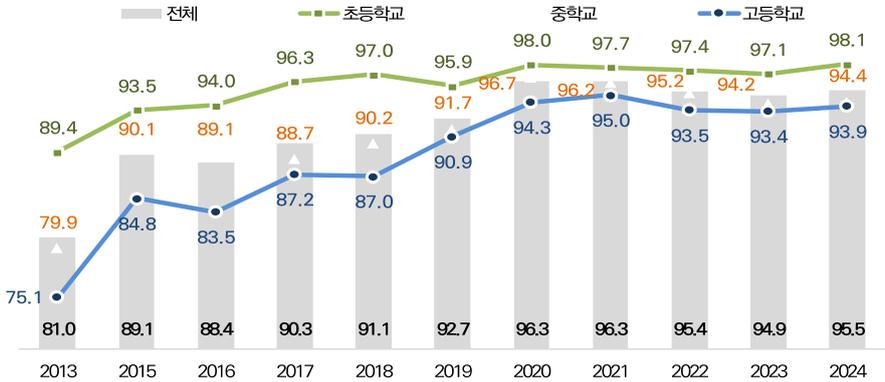
표 IV-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6(0.62)	1.2	3.3	43.9	51.5	100.0(8,649)	13.117**	
성별	남학생	3.46(0.64)	1.4	3.7	42.5	52.4		100.0(4,436)
	여학생	3.46(0.60)	1.0	2.9	45.5	50.6	100.0(4,213)	
학교급	초등학교	3.70(0.53)	0.8	1.1	25.4	72.6	100.0(2,961)	816.118***
	중학교	3.35(0.63)	1.3	4.3	52.1	42.2	100.0(2,898)	
	고등학교	3.31(0.63)	1.4	4.7	55.1	38.8	100.0(2,790)	
지역 규모	대도시	3.46(0.64)	1.6	3.6	41.8	53.1	100.0(3,329)	20.719**
	중소도시	3.45(0.61)	0.9	3.5	44.8	50.8	100.0(4,125)	
	읍면지역	3.46(0.59)	0.9	2.3	46.8	49.9	100.0(1,1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6(0.62)	1.2	3.3	43.6	51.9	100.0(7,730)	27.020**
	한부모가정	3.38(0.62)	1.0	4.3	50.8	44.0	100.0(678)	
	조손가정	3.51(0.62)	1.9	1.0	41.6	55.4	100.0(95)	
	기타	3.55(0.67)	2.0	4.1	30.7	63.2	100.0(102)	
학업 성적	상	3.56(0.61)	1.1	3.0	34.7	61.3	100.0(3,321)	287.104***
	중	3.44(0.59)	0.8	2.5	48.4	48.3	100.0(3,422)	
	하	3.30(0.67)	2.0	5.6	52.7	39.6	100.0(1,864)	
경제적 수준	상	3.52(0.61)	1.0	3.2	38.5	57.3	100.0(5,175)	190.388***
	중	3.37(0.62)	1.3	3.5	52.1	43.2	100.0(2,712)	
	하	3.31(0.66)	2.3	4.3	53.0	40.3	100.0(717)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24년 조사결과는 202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조금 하락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사의 학생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는 2019년 이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13~2024년)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2.1%로 앞의 2개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 가운데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인 반면, 여학생들은 70.9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생 가운데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1%인데 비해 중학생은 68.6%, 고등학생은 67.2%가 재미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에 대한 흥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교육기회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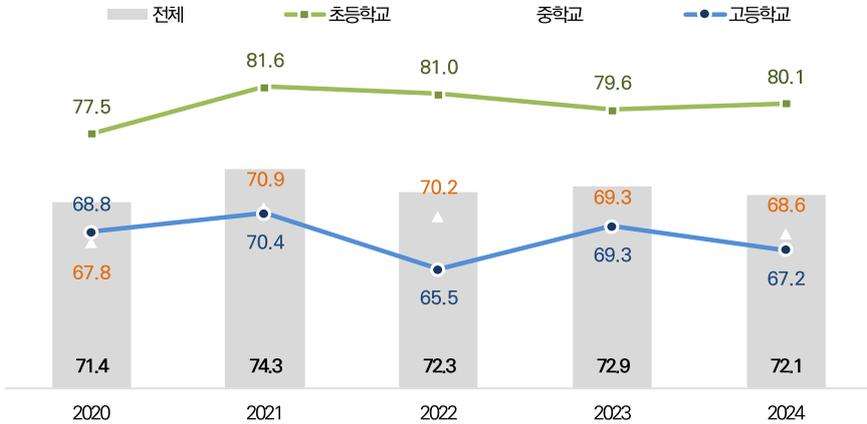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1(0.85)	6.4	21.5	46.9	25.2	100.0(8,651)	19.105***	
성별	남학생	2.93(0.86)	6.7	20.1	46.4	26.8		100.0(4,436)
	여학생	2.88(0.83)	6.1	23.0	47.4	23.5		100.0(4,21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3.10(0.82)	4.7	15.2	45.7	34.4	100.0(2,963)	277.764***
	중학교	2.85(0.84)	6.4	24.9	46.1	22.5	100.0(2,899)	
	고등학교	2.77(0.84)	8.3	24.6	49.0	18.2	100.0(2,789)	
지역 규모	대도시	2.96(0.84)	5.9	20.2	46.3	27.6	100.0(3,330)	24.524***
	중소도시	2.88(0.85)	6.9	22.6	46.4	24.1	100.0(4,126)	
	읍면지역	2.88(0.82)	6.3	21.3	50.1	22.2	100.0(1,1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2(0.84)	6.2	21.1	47.1	25.6	100.0(7,733)	30.733***
	한부모가정	2.77(0.84)	7.7	26.7	46.6	18.9	100.0(677)	
	조손가정	3.00(0.87)	7.4	15.7	46.6	30.3	100.0(95)	
	기타	2.94(0.93)	7.5	23.9	35.9	32.7	100.0(102)	
학업 성적	상	3.12(0.81)	4.1	15.0	45.8	35.1	100.0(3,324)	579.135***
	중	2.90(0.80)	5.2	22.2	50.2	22.4	100.0(3,422)	
	하	2.56(0.87)	12.7	31.9	42.7	12.8	100.0(1,863)	
경제적 수준	상	3.01(0.82)	4.9	18.3	47.2	29.5	100.0(5,178)	243.697***
	중	2.79(0.85)	7.8	24.9	47.6	19.7	100.0(2,711)	
	하	2.59(0.88)	12.0	31.6	41.9	14.4	100.0(717)	

* $p < .05$, ** $p < .01$, *** $p < .001$.

수업에의 흥미도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던 2020년 이후 2021년에 약간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2024년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0~2024년)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72.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인데 비해 중학생은 71.2%, 고등학생은 6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업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는 수업시간 흥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론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생각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것이 선행 요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더라도, 양자 간의 관계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기회나 성과에 대한 의의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2(0.88)	7.4	20.2	45.1	27.3	100.0(8,655)	3.426	
성별	남학생	2.94(0.87)	7.1	19.8	45.1	28.0		100.0(4,440)
	여학생	2.91(0.88)	7.7	20.6	45.1	26.6	100.0(4,215)	
학교급	초등학교	3.10(0.87)	6.2	14.4	42.6	36.8	100.0(2,966)	276.767***
	중학교	2.90(0.87)	7.2	21.6	45.5	25.7	100.0(2,899)	
	고등학교	2.76(0.86)	8.9	24.9	47.2	19.0	100.0(2,790)	
지역 규모	대도시	2.99(0.86)	6.7	18.0	45.4	29.9	100.0(3,332)	37.750***
	중소도시	2.88(0.89)	7.9	22.1	43.9	26.1	100.0(4,128)	
	읍면지역	2.90(0.86)	7.7	19.5	48.3	24.5	100.0(1,1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3(0.87)	7.2	20.0	45.1	27.7	100.0(7,735)	27.041**
	한부모가정	2.79(0.89)	9.8	23.1	45.7	21.3	100.0(679)	
	조손가정	3.12(0.85)	5.5	13.7	44.3	36.5	100.0(95)	
	기타	2.87(0.90)	6.9	26.7	39.3	27.1	100.0(102)	
학업 성적	상	3.12(0.83)	5.0	14.2	44.5	36.3	100.0(3,323)	470.373***
	중	2.90(0.84)	6.6	20.6	48.4	24.3	100.0(3,426)	
	하	2.60(0.91)	13.2	30.1	40.0	16.7	100.0(1,864)	
경제적 수준	상	3.04(0.84)	5.7	16.7	46.0	31.6	100.0(5,179)	282.204***
	중	2.81(0.88)	8.6	24.4	44.6	22.3	100.0(2,714)	
	하	2.54(0.92)	15.6	29.4	40.4	14.7	100.0(717)	

* $p < .05$, ** $p < .01$, *** $p < .001$.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앞의 항목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77%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20년에 71.7%로 하락하였다. 학교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2021년에 다시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016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 다시 상승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13~2024년)

(2) 진로·직업교육

① 진로교육 현황

진로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의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에서의 진로활동 참여 정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업 중 진로탐색의 경우 초·중·고 모두 80%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90.1%, 81.7%로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의 경우 85%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체험의 경우 초등학생이 73.3%, 중학생은 81.5%, 고등학생은 69.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진로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높았으며, 진로 동아리 경험도 고등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근 창업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창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을 받은 경험도 40% 내외 수준이었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해당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활동 참여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척도에서 초등학생은 4.10점, 중학생은 3.71점, 고등학생은 3.54점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진로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학교 진로활동 참여 비율							진로활동 만족도 (평균)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체험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초등학교	92.2	-	86.7	73.3	41.6	-	47.3	4.10
중학교	89.7	90.1	85.3	81.5	59.7	42.6	40.8	3.71
고등학교	84.3	81.7	84.6	69.4	64.1	58.0	37.7	3.54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p.75-80.

* 주: 1) 만족도 문항의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임.
2)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② 직업교육 현황

가. 직업교육 경험

표 IV-7-15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이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직업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남자는 15%, 여자는 18.5%로 여자 청년들의 직업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남자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15~29세 청년들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8년 직업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은 18.8%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16.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감소 추세는 여자 청년들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4년)

(단위 : 천명, %)

구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18	9,157	18.8	16.3	21.3
2019	9,073	18.0	15.4	20.6
2020	8,934	18.2	15.8	20.6
2021	8,799	17.9	15.4	20.5

구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22	8,595	17.0	14.5	19.5
2023	8,416	16.1	13.6	18.6
2024	8,173	16.7	15.0	18.5

* 출처 : 통계청(2018~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3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년 8월 24일 인출.
 통계청(2022.07.19). 보도자료: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0.
 통계청(2023.07.18). 보도자료: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0. https://kostat.go.kr/boar.rd.es?mid=a10301010000&bid=210&tag=&act=view&list_no=426365&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2024.07.16.). 보도자료: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1. https://kostat.go.kr/boar.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31803에서 2024년 8월 6일 인출.

* 주: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과 관련하여 먼저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학이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63,595명의 졸업자 중에 진학자는 32,174명으로 50.6%였으며, 취업자는 15,473명으로 24.3% 수준으로 진학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자 가운데는 전문대학 진학자가 4년제 대학 진학자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졸업자 중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2.8%,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0% 수준이었으나 이후 진학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의 차이가 2023년에는 정반대 양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7-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3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입대자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 대학	교육 대학	대학	각종 학교	전문 대학	대학			
2017	96,022	31,466	21,934	6	8,937	400	79	110	48,001	429	16,126

구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입대자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 대학	교육 대학	대학	각종 학교	전문 대학	대학			
2018	91,886	33,072	23,556	7	9,160	187	65	97	37,995	489	20,330
2019	90,116	38,321	27,139	8	10,845	139	36	154	27,904	701	23,190
2020	81,190	36,412	25,508	14	10,875	4	0	11	20,885	1,189	22,704
2021	70,802	33,859	22,290	0	11,557	0	7	5	18,492	1,295	17,156
2022	68,585	33,115	20,179	0	12,934	0	0	2	18,355	1,433	15,682
2023	63,595	32,174	18,517	0	13,648	0	6	3	15,473	1,412	14,53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b). 2021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ch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1&itemCode=01&menuld=m_010105&supCd1=010105&supCd2=010105&flag=A 2022년 8월 25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b). 2022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ch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2&itemCode=01&menuld=m_010105&supCd1=010105&supCd2=010105&flag=B 2023년 8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c). 2023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ch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6863&survSeq=2023&itemCode=01&menuld=m_010105&supCd1=010105&supCd2=010105&flag=B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 * 주: 1) 조사 기준일
 - 졸업자: 해당년도 2월 기준 졸업자
 - 진학자: 2010년까지 해당년도 2월 기준, 2011년부터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2) 고등학교 유형은 2011년 변경되었으나, 졸업자는 2014년부터 발생되어 2013년까지는 변경 전 학제로 졸업자를 표기함
 - 2010년까지: 일반계고/전문계고
 - 2011년부터: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대안, 특성화고 포함)/자율고
 3) 기타에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무직 및 미상, 제외인정자, 미취업자가 포함됨
 4) 진학자 학교 구분
 -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각종학교),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국내 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 대학),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전문대학: 전문대학(2,3,4년제), 기능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 포함
 · 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포함
 5) 2020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 시행되면서 기존의 교육통계조사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졸업 후 상황은 매년 12월에 업데이트함
 6) 2009년~2010년 교육통계연보에는 진학자에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본 자료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는 진학자에서 제외됨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71,591명의 졸업자 가운데 19,526명이 취업한 반면 진학자는 33,621명으로 진학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률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직업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 입대자 및 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상황에서의

취업률은 2020년 이후 56%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농림어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해외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IV-7-17.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3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 취업자	진학자 (진학률)	진학자 현황	
			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 어업 종사자					전문 대학	대학
2020	89,998	24,938 (27.8)	24,858	-	80	1,585	970	24,290	38,215 (42.5)	27,169	11,046
2021	78,994	22,583 (55.4)	22,492	-	91	1,809	862	18,211	35,529 (45.0)	23,751	11,778
2022	76,760	22,709 (57.8)	22,603	21	85	1,873	942	16,550	34,686 (45.2)	21,517	13,169
2023	71,591	19,526 (55.7)	19,401	70	55	1,940	971	15,533	33,621 (47.0)	19,750	13,87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c). 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p.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8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d).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p.2, 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86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 * 주: 1) 조사기준일 : 2023년 4월 1일
 2) 학교수 : 2020학년도 입학생 없는 2개교 포함(특성화고 2개교)
 3) 졸업자 : 2023년 1월 및 2월 졸업자
 4) 취업자 : 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5)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6) 보험가입자에는 '21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됨
 7)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8)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①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이용경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여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전국에 850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661개로 77.8%이며, 민간시설은 189개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문화의집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 199개소, 청소년수련원 152개소, 유스호스텔이 104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수련관은 199개로 2019년 대비 11개소가 늘어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346개소로 2019년 대비 57개소가 증가하였다. 2023년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각각 152개소, 104개소로 집계되었는데, 2019년에 비해 시설 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시설의 대부분은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인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을 중단한 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특화시설의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9~2023년)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9	전 체	814	188	289	171	38	114	14
2020	전 체	799	191	294	159	32	108	15
	공 공	601	190	290	62	18	27	14
	민 간	198	1	4	97	14	81	1
2021	전 체	813	195	314	154	33	103	14
	공 공	622	193	310	62	19	25	13
	민 간	191	2	4	92	14	78	1
2022	전 체	837	198	333	154	32	106	14
	공 공	647	196	329	64	19	26	13
	민 간	190	2	4	90	13	80	1
2023	전 체	850	199	346	152	35	104	14
	공 공	661	197	342	64	19	26	13
	민 간	189	2	4	88	16	78	1

* 출처: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3.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2023.3.13.).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2.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여성가족부(2024.2.28.).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3.12.31.기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2023년 기준 전국의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0개 시설 중 경기도가 17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이 77개소, 서울과 경남이 75개소, 전남이 62개소, 경북이 61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개소수는 경기, 서울, 경남, 경북과 강원 순으로 많았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경기도가 8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서울, 전남과 제주의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가 32개소, 경남이 20개소, 충북이 19개소 등이었고 유스호스텔은 제주, 경남, 경북, 경기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특화시설의 경우 전국의 14개소 가운데 8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에 2개소, 광주와 경기, 강원 및 전북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의 850개 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32.26%에 해당하는 275개소가 서울,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9.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	아영장	유스호스텔
계	850	199	346	14	152	35	104
서울	75	32	28	8	3	-	4
부산	26	9	11	-	3	1	2
대구	22	5	10	2	3	-	2
인천	22	9	8	-	2	-	3
광주	18	5	11	1	1	-	-
대전	15	4	9	-	2	-	-
울산	14	4	7	-	1	2	-
세종	5	2	3	-	-	-	-
경기	177	37	83	1	32	10	14
강원	77	16	35	1	12	3	10
충북	49	8	16	-	19	1	5
충남	46	11	15	-	12	2	6
전북	57	11	22	1	13	3	7
전남	62	9	25	-	13	6	9
경북	61	16	19	-	12	1	13
경남	75	18	19	-	20	4	14
제주	49	3	25	-	4	2	15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505-506.

* 주: 국립 청소년시설(7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경상북도 봉화군),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사하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3,248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국립도서관이 4개소, 공공도서관이 1,236개소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박물관이 913개소, 미술관이 286개소, 문예회관이 272개소, 지방문화원이 231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2013년 2,182개소에서 2023년까지 1,066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408개소 증가하였고, 박물관은 173개소, 미술관이 115개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 시설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V-7-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3년)

(단위 : 개소)

구분	총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문학관
2013	2,182	-	828	740	171	-	214	229	-	-
2014	2,375	1	865	754	190	-	220	229	116	-
2015	2,519	1	930	809	202	-	232	229	116	-
2016	2,595	1	978	826	219	-	229	228	114	-
2017	2,657	1	1,010	853	229	-	236	228	100	-
2018	2,749	1	1,042	873	251	-	251	231	100	-
2019	2,825	3	1,096	881	258	-	255	231	101	-
2020	3,017	3	1,134	897	267	129	256	230	101	-
2021	3,087	4	1,172	900	271	147	262	230	101	-
2022	3,145	4	1,208	909	285	173	267	231	68	-
2023	3,248	4	1,236	913	286	189	272	231	69	48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b).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 w.jsp?pSeq=1683&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2023c).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 w.jsp?pSeq=1818&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 주: 1)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의 집('14~), 생활문화센터('20~), 문학관('23~)을 통계에 포함
2) 2019년부터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개관, 2021년부터 국립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1개관을 통계에 포함

문화시설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는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35,94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간이운동장이 25,953개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관이 1,337개소, 축구장이 1,109개소, 테니스장이 873개소였으며, 기타 시설의 수도 6,63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 수는 2010년 15,137개소에서 꾸준히 증가

하여 2023년에는 2010년 시설 수의 2배가 넘는 시설이 설치되었다. 또한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23년에 4.89㎡로 2010년의 3.12㎡에 비해 1.77㎡가 증가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V-7-21.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3년)

(단위 : 개소, ㎡)

구분	공공체육시설 수						1인당
	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체육시설 면적
2010	15,137	618	639	11,458	549	1,783	3.12
2011	16,127	649	681	12,194	565	2,038	3.29
2012	17,157	718	738	12,855	598	2,248	3.31
2013	19,398	801	819	14,536	660	2,582	3.57
2014	21,317	852	875	16,046	696	2,848	3.81
2015	22,662	886	905	17,111	718	3,042	3.89
2016	24,303	928	955	18,394	740	3,286	4.05
2017	26,927	984	1,010	20,602	772	3,559	4.28
2018	28,578	1,019	1,066	21,847	797	3,849	4.45
2019	30,185	1,040	1,139	22,866	818	4,322	4.51
2020	31,554	1,064	1,194	23,834	832	4,630	4.59
2021	33,729	1,095	1,275	25,455	856	5,048	4.64
2023	35,941	1,109	1,337	25,983	873	6,639	4.89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364.
 통계청 e-나라지표(2021).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2022).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2023).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PageDetail.do;jsessionid=SK2laQ-NXVXOR60rbo4CwPL-N8pvj0NFXh2sCRsl.node11?idx_cd=2751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 원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설의 설치는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시설의 설치가 곧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된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여가·문화·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시설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도서관의 경우 한달에 1~2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이고,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을 한 달에 1~2회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29.6%, 여학생이 33.3%인 반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35.1%, 여학생이 22.1%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공공도서관 이용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한 달에 1~2회 이상 이용 비율은 낮아지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이용 정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8.8	26.5	18.3	15.9	10.5	100.0(8,710)		
성별	남학생	35.1	25.4	16.0	14.7	8.8	100.0(4,478)	194.338***
	여학생	22.1	27.7	20.7	17.3	12.3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19.0	26.1	19.6	19.3	16.0	100.0(2,962)	328.817***
	중학교	32.2	26.5	17.9	14.6	8.8	100.0(2,930)	
	고등학교	35.5	26.9	17.4	13.8	6.5	100.0(2,818)	
지역 규모	대도시	29.2	26.1	18.6	15.5	10.6	100.0(3,353)	10.556
	중소도시	27.6	26.9	18.3	16.6	10.7	100.0(4,146)	
	읍면지역	31.7	26.2	17.8	15.0	9.3	100.0(1,2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0	26.3	18.4	16.5	10.9	100.0(7,787)	43.816***
	한부모가정	34.8	28.4	18.2	11.4	7.1	100.0(682)	
	조손가정	41.5	21.1	16.3	15.6	5.5	100.0(96)	
	기타	36.7	26.7	17.5	9.5	9.5	100.0(103)	
학업 성적	상	21.4	24.0	19.7	19.9	15.0	100.0(3,341)	337.516***
	중	30.2	28.0	18.4	15.2	8.3	100.0(3,441)	
	하	39.4	28.0	15.4	10.6	6.6	100.0(1,887)	
경제적 수준	상	26.9	25.7	18.9	17.0	11.6	100.0(5,214)	52.882***
	중	30.8	27.5	17.7	14.6	9.5	100.0(2,731)	
	하	35.0	28.0	16.6	13.8	6.7	100.0(720)	

* $p < .05$, ** $p < .01$, *** $p < .001$.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코로나19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19 이전의 이용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7-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13~2024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은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2.3%로, 응답자의 3/4 정도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90.3%는 전혀 이용한 적이 없거나 1년에 1~2회 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경험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로는 언급할만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즉,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중학교가 69.4%, 초등학교가 70.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거나 1년에 1~2회 정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면, 고등학생이 93.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이 90.6%, 초등학생이 86.7%로 학교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업성적이 낮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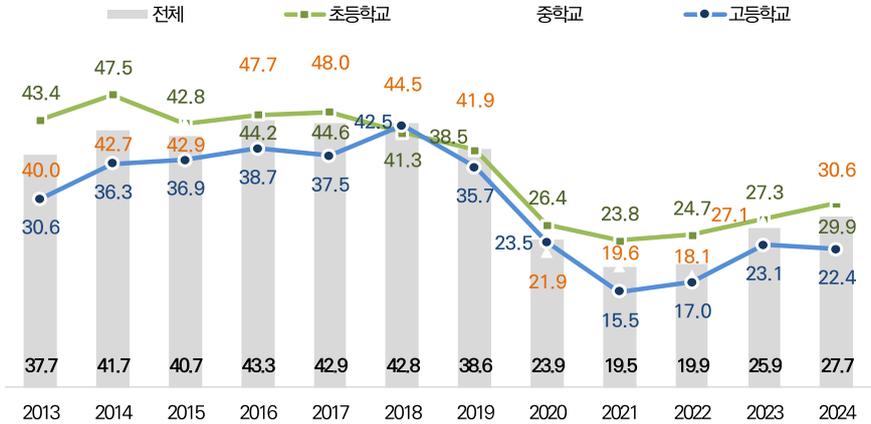
표 IV-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2.3	18.0	4.0	3.2	2.6	100.0(8,639)	6.341
성별	남학생 73.3	17.0	3.9	3.2	2.6	100.0(4,448)	
	여학생 71.2	19.0	4.1	3.2	2.5	100.0(4,191)	
학교급	초등학교 70.1	16.6	4.9	4.3	4.0	100.0(2,917)	122.274***
	중학교 69.4	21.2	4.2	2.8	2.5	100.0(2,905)	
	고등학교 77.6	16.0	2.8	2.5	1.1	100.0(2,817)	
지역 규모	대도시 73.2	18.8	3.7	2.2	2.1	100.0(3,327)	37.327***
	중소도시 72.6	17.1	4.1	3.5	2.6	100.0(4,112)	
	읍면지역 68.7	18.4	4.4	4.8	3.7	100.0(1,20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2.4	18.0	4.0	3.2	2.5	100.0(7,715)	26.232**
	한부모가정 71.9	18.5	3.8	3.5	2.2	100.0(683)	
	조손가정 71.0	12.5	7.0	0.0	9.5	100.0(95)	
	기타 72.3	17.5	3.4	3.2	3.6	100.0(104)	
학업 성적	상 69.1	19.7	4.3	3.5	3.4	100.0(3,306)	43.355***
	중 73.7	17.1	4.4	2.9	2.0	100.0(3,419)	
	하 75.5	16.3	2.7	3.3	2.3	100.0(1,874)	
경제적 수준	상 71.0	18.4	4.3	3.5	2.9	100.0(5,166)	17.206*
	중 74.5	16.9	3.7	2.8	2.1	100.0(2,712)	
	하 73.4	18.5	3.0	2.9	2.2	100.0(71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7-7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1년에 1~2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도서관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용 경험 비율이 감소한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까지 향상되지는 않았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2013~2024년)

다음으로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 장 등 체육시설 이용 경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인 반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있어서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교급에 따른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빈도는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절반 가량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신체활동을 위해 반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교급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빈도의 차이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앞서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과 약 20%p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신체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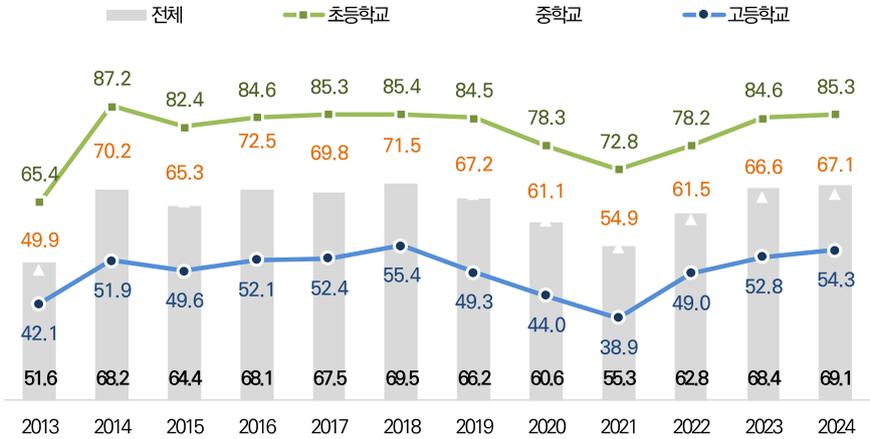
표 IV-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0.9	25.2	14.5	11.5	17.9	100.0(8,657)	377.974***
성별							
	남학생	29.0	19.8	13.5	13.1	100.0(4,454)	819.819***
	여학생	32.9	30.9	15.6	9.8	100.0(4,203)	
학교급	초등학교	14.7	25.9	16.9	13.9	100.0(2,931)	15.755*
	중학교	32.9	26.2	15.5	10.3	100.0(2,908)	
	고등학교	45.7	23.4	10.9	10.2	100.0(2,818)	
지역 규모	대도시	29.3	25.5	14.3	11.5	100.0(3,333)	28.378**
	중소도시	31.4	24.8	15.0	11.6	100.0(4,121)	
	읍면지역	33.5	25.7	13.2	10.9	100.0(1,2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	25.2	14.6	11.4	100.0(7,735)	241.311***
	한부모가정	36.7	25.6	11.9	10.9	100.0(683)	
	조손가정	28.0	25.8	15.4	11.0	100.0(94)	
	기타	38.9	22.1	10.9	18.2	100.0(103)	
학업 성적	상	23.8	24.3	15.5	12.9	100.0(3,315)	174.947***
	중	32.3	26.4	14.8	11.0	100.0(3,422)	
	하	40.8	24.7	11.7	10.0	100.0(1,881)	
경제적 수준	상	26.5	24.7	15.6	12.4	100.0(5,176)	174.947***
	중	35.8	26.6	13.4	10.2	100.0(2,723)	
	하	43.4	24.2	10.4	9.2	100.0(715)	

* $p < .05$, ** $p < .01$, *** $p < .001$.

체육시설 이용 정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시기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2013~2024년)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 수준이었으나 일년이 1~2회 정도나 2~3개월에 1~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응답자의 2/3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문화예술 공간 이용 빈도가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이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공간 이용 빈도가 더 적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시설 인프라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문화활동 시설의 이용 경험은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업성적이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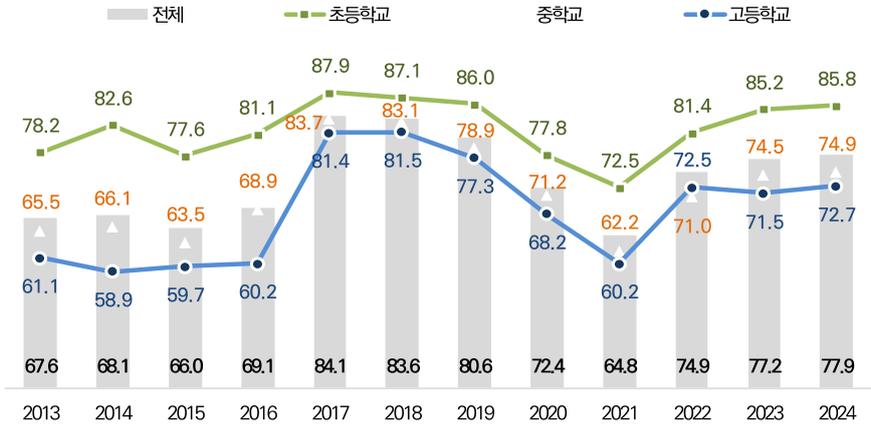
표 IV-7-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2024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1	34.1	27.9	13.7	2.2	100.0(8,676)	211.307***	
성별								
	남학생	28.4	31.8	24.8	12.9	2.1	100.0(4,457)	
	여학생	15.5	36.5	31.2	14.6	2.2	100.0(4,218)	
학교급	초등학교	14.2	39.6	30.3	12.7	3.2	100.0(2,945)	233.486***
	중학교	25.1	34.5	25.7	12.9	1.8	100.0(2,919)	
	고등학교	27.3	27.9	27.7	15.7	1.5	100.0(2,812)	
지역 규모	대도시	19.7	33.9	29.4	14.8	2.3	100.0(3,340)	25.569**
	중소도시	23.2	34.7	26.8	13.1	2.2	100.0(4,131)	
	읍면지역	25.0	32.6	27.6	13.0	1.8	100.0(1,2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3	34.4	28.4	13.8	2.1	100.0(7,753)	47.874***
	한부모가정	28.5	32.1	23.6	13.8	1.9	100.0(683)	
	조손가정	32.9	21.7	20.7	17.1	7.5	100.0(95)	
	기타	28.3	36.1	22.8	10.8	2.0	100.0(103)	
학업 성적	상	16.1	34.7	31.1	15.2	2.9	100.0(3,328)	164.160***
	중	24.0	35.2	26.7	12.8	1.4	100.0(3,427)	
	하	29.5	31.0	24.4	12.9	2.3	100.0(1,879)	
경제적 수준	상	19.2	34.1	29.3	14.9	2.5	100.0(5,188)	89.386***
	중	25.4	35.1	25.8	12.1	1.6	100.0(2,725)	
	하	30.6	30.4	25.2	12.0	1.8	100.0(718)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예술 공간 이용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년에 1~2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초·중고 학생에게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2013~2024년)

②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였고, 4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3.2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가운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33.9%로 여학생 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생의 만족도가 3.42점인데 비해 중학생은 3.24점, 고등학생은 3.16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평균 점수는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 이용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26.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28(0.55)	0.6	3.3	63.4	32.6	100.0(7,733)	33.858***	
성별	남학생	3.28(0.58)	0.9	4.1	61.1	33.9		100.0(3,845)
	여학생	3.28(0.52)	0.4	2.5	65.7	31.4	100.0(3,888)	
학교급	초등학교	3.42(0.57)	0.6	2.5	51.1	45.8	100.0(2,776)	368.604***
	중학교	3.24(0.54)	0.7	3.3	67.6	28.4	100.0(2,554)	
	고등학교	3.16(0.51)	0.7	4.1	73.2	21.9	100.0(2,402)	
지역 규모	대도시	3.30(0.55)	0.5	3.3	62.0	34.2	100.0(2,990)	7.207
	중소도시	3.27(0.55)	0.8	3.2	64.5	31.5	100.0(3,706)	
	읍면지역	3.27(0.56)	0.7	3.3	63.7	32.2	100.0(1,0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8(0.55)	0.6	3.1	63.4	32.9	100.0(6,956)	20.779*
	한부모가정	3.23(0.57)	1.0	4.1	66.1	28.7	100.0(589)	
	조손가정	3.33(0.69)	1.5	8.3	46.3	43.9	100.0(76)	
	기타	3.37(0.54)	0.0	2.8	57.7	39.4	100.0(81)	
학업 성적	상	3.36(0.56)	0.5	2.5	57.2	39.9	100.0(3,095)	151.941***
	중	3.25(0.54)	0.5	3.6	66.3	29.6	100.0(3,026)	
	하	3.17(0.56)	1.4	4.2	70.2	24.3	100.0(1,574)	
경제적 수준	상	3.34(0.55)	0.4	2.6	60.0	37.0	100.0(4,719)	140.900***
	중	3.21(0.54)	0.8	3.7	69.0	26.5	100.0(2,362)	
	하	3.13(0.60)	1.8	6.8	67.9	23.5	100.0(612)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가·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시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13~2024년)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살펴본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수준을 살펴보면, 2023년 15~19세 연령대의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등과 관련한 활동에의 참여 수준은 전체 응답자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관광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취미나 오락 등의 활동에서는 15~19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는 일반인의 경우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일반인과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 관람의 경우 15~19세 연령대의 경우 2018년에는 13.7%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2023년에는 3.4%만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약 10%p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관람이 실제 시설에 가서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 참여나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일반인의 스포츠 참여 활동은 2018년에 44.0%에서 2023년이 38.3%로 다소 감소한 반면, 15~19세 연령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0.2%에서 3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미·오락이나 사회 및 기타 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7-2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2018~2023년)

(단위 :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2018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2019	전체	6.5	4.9	1.8	36.1	2.5	30.8	17.5
	15-19세	13.1	9.6	1.0	30.6	-	35.0	10.9
2020	전체	2.1	4.1	1.4	44.3	2.7	33.4	12.0
	15-19세	2.6	8.0	1.8	33.1	0.2	49.8	4.5
2021	전체	1.5	4.2	1.3	42.6	4.0	35.8	10.5
	15-19세	4.9	6.6	1.2	38.4	0.2	46.1	2.5
2022	전체	2.4	3.1	2.5	36.2	4.2	31.8	19.7
	15-19세	3.3	4.1	4.3	30.8	0.9	41.9	14.7
2023	전체	3.5	3.3	2.5	38.3	4.2	28.9	19.4
	15-19세	3.4	5.4	2.1	38.2	2.8	35.1	13.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p.34, 74.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 2)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 3)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활동을 의미함.

평일과 휴일의 일일 여가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전체 집단이 3.6시간인데 비해 15~19세 집단에서는 3.2시간으로 다소 적었으나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각각 5.5시간, 5.6시간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은 평일에는 전체 집단이 1.6시간, 15~19세 집단이 1.8시간, 휴일에는 각각 2.0시간, 2.6시간으로 15~19세 집단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의 사용시간에 있어 큰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2018년의 평일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집단이 3.3시간, 15~19세 집단이 2.8시간이었으나, 2023년에는 각각 3.6시간, 3.2시간으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여가활동 시간도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집단이 5.3시간에서 5.5시간으로, 15~19세 집단이 5.1시간에서 5.6시간으로 약간 증가함으로써 최근 여가활동 시간이 전체 연령대에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일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전체 집단이 1.3시간에서 1.6시간으로, 휴일 활용시간은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5~19세 집단에서는 평일 1.9시간에서 1.8시간으로, 휴일 2.8시간에서 2.6시간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집단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다소 증가한 반면, 15~19세 집단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7-2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2018~2023년)

(단위 : 시간)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18	전체	3.3	1.3	5.3	1.8
	15~19세	2.8	1.9	5.1	2.8
2019	전체	3.5	1.3	5.4	1.6
	15~19세	3.0	1.9	5.5	2.6
2020	전체	3.7	2.0	5.6	2.3
	15~19세	3.3	2.8	5.8	3.6
2021	전체	3.8	1.9	5.8	2.3
	15~19세	3.4	2.6	5.8	3.4
2022	전체	3.7	1.4	5.5	1.8
	15~19세	3.1	1.8	5.4	2.6
2023	전체	3.6	1.6	5.5	2.0
	15~19세	3.2	1.8	5.6	2.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p.84.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및 만족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8%로 나타났다. 반면에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7%로 10명 중 1명 정도는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여가시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평일 하루평균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34%, 중학생이 33.5%, 고등학생이 40.4%로 나타난 반면, 4시간 이상(‘4시간 이상 5시간 미만’과 ‘5시간 이상’의 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29.4%, 중학생이 24.5, 고등학생이 19.0%로 학교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과 관련하여 성적이 높을수록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성적이 낮을수록 하루 여가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업성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하루 평균 여가시간 간의 부적 관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29. 평일 여가시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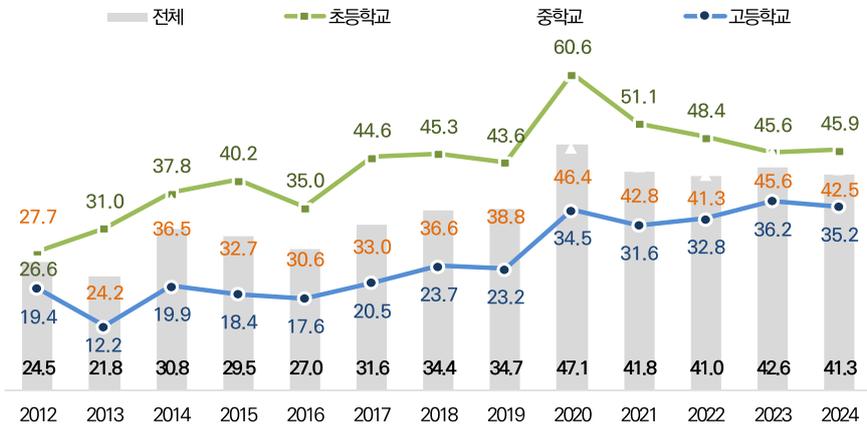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성별	남학생	11.8	23.7	23.1	17.2	9.3	15.0	100.0(4,481)
	여학생	11.7	24.6	22.6	16.6	10.7	13.7	100.0(4,220)
학교급	초등학교	13.8	20.2	20.1	16.6	12.5	16.9	100.0(2,957)
	고등학교	10.3	23.2	24.1	18.0	9.4	15.1	100.0(2,925)
지역 규모	대도시	11.1	29.3	24.5	16.1	8.0	11.0	100.0(2,819)
	중소도시	12.7	26.3	22.8	15.8	9.6	12.8	100.0(3,349)
	읍면지역	11.0	23.2	23.4	17.8	10.1	14.6	100.0(4,1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7	21.4	21.2	17.0	10.7	18.0	100.0(1,207)
	한부모가정	11.9	24.8	23.2	17.0	9.5	13.7	100.0(7,781)
	한부모가정	9.7	18.8	19.8	15.6	14.3	21.8	100.0(678)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조손가정	10.0	14.2	20.3	19.9	14.3		
기타	13.2	19.7	22.2	18.5	13.3	13.1	100.0(103)		
학업 성적	상	15.1	28.5	22.4	15.2	8.9	9.8	100.0(3,336)	
	중	10.7	22.5	24.0	17.4	10.3	15.0	100.0(3,439)	
	하	7.7	19.4	21.3	19.0	11.3	21.2	100.0(1,885)	
경제적 수준	상	11.8	25.6	23.0	16.3	9.7	13.6	100.0(5,208)	21.667*
	중	11.4	22.2	22.8	17.9	10.4	15.3	100.0(2,729)	
	하	12.6	21.4	21.9	17.2	10.5	16.3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8%로 보고된 이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 시기 다소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41%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에게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가운데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나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IV-7-11. 평일 여가시간(2012~2024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85.9%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3.12점)보다는 남학생들(3.24점)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들의 교육 및 여가 활동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30. 여가활동 만족도(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18(0.72)	2.1	11.9	51.8	34.1	100.0(8,698)	82.662***
성별							
남학생	3.24(0.71)	2.3	9.4	50.8	37.5	100.0(4,476)	440.158***
여학생	3.12(0.72)	2.0	14.6	53.0	30.5	100.0(4,222)	
학교급							5.115
초등학교	3.37(0.68)	1.1	8.4	42.6	47.9	100.0(2,950)	
중학교	3.14(0.71)	2.4	12.0	54.5	31.0	100.0(2,922)	
고등학교	3.02(0.71)	2.9	15.5	58.7	22.9	100.0(2,826)	22.719**
지역 규모							
대도시	3.19(0.72)	2.2	11.8	50.8	35.2	100.0(3,349)	
중소도시	3.18(0.71)	1.9	11.9	52.6	33.6	100.0(4,146)	157.508***
읍면지역	3.16(0.73)	2.6	12.2	52.4	32.9	100.0(1,202)	
가속 유형							
양부모가정	3.18(0.71)	1.9	12.1	52.0	34.0	100.0(7,778)	339.081***
한부모가정	3.13(0.76)	3.8	11.5	52.5	32.2	100.0(686)	
조손가정	3.40(0.64)	0.6	6.1	45.4	47.8	100.0(92)	
기타	3.27(0.73)	3.0	7.9	48.7	40.4	100.0(102)	157.508***
학업 성적							
상	3.26(0.72)	1.8	11.1	46.3	40.9	100.0(3,330)	
중	3.18(0.69)	1.7	11.1	55.0	32.1	100.0(3,441)	339.081***
하	3.04(0.74)	3.5	14.7	56.1	25.7	100.0(1,886)	
경제적 수준							
상	3.28(0.69)	1.5	9.1	49.6	39.9	100.0(5,211)	339.081***
중	3.08(0.71)	2.4	14.0	56.5	27.0	100.0(2,726)	
하	2.84(0.80)	5.8	23.5	51.4	19.3	100.0(719)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여가활동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요인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보호자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간적 제약 및 금전적 부담이었다.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시간 제약이나 금전적 부담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의 간섭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불만족 사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간 제약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47.2%인데 비해 중학생은 51.9%, 고등학생은 57.9%로 나타났고, 보호자의 간섭은 초등학생이 14.2%인데 비해 중학생은 7.8%, 고등학생은 3.9%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가활동 관련 시간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보호자의 간섭으로 인한 불만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관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반면, 여가활동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여가 활동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다. 즉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여가와 관련한 시간 부족과는 정적인 관계가, 여가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31.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순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여가 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 해서	교통 수단이 불편 해서	여가 활동 공간 (시설) 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보호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17.5	53.3	1.7	3.4	1.1	3.8	8.8	7.7	2.8	100.0(1,173)		
성별	남학생	17.5	53.2	1.6	2.6	1.1	4.6	6.5	10.4	2.5	100.0(488)	15.977*
	여학생	17.6	53.4	1.7	4.0	1.1	3.3	10.3	5.7	3.0	100.0(684)	
학교급	초등학교	16.2	47.2	1.4	2.1	0.8	6.7	8.4	14.2	2.9	100.0(271)	46.575***
	중학교	15.9	51.9	2.1	4.1	1.5	3.8	10.4	7.8	2.6	100.0(410)	
	고등학교	19.7	57.9	1.4	3.6	0.9	2.2	7.6	3.9	2.8	100.0(492)	
지역 규모	대도시	16.3	54.6	1.5	3.0	1.4	2.7	9.1	8.8	2.6	100.0(452)	9.752
	중소도시	18.4	52.4	1.7	3.6	0.5	4.7	8.9	7.2	2.6	100.0(559)	
	읍면지역	17.9	52.9	2.2	3.9	1.9	3.8	7.4	6.2	3.8	100.0(1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7	54.3	1.6	3.6	1.2	3.8	8.7	7.4	2.7	100.0(1,054)	26.277
	한부모가정	21.7	45.4	1.7	2.1	0.0	4.8	10.7	9.8	3.8	100.0(99)	
	조손가정	37.7	0.0	23.8	0.0	0.0	0.0	17.6	20.9	0.0	100.0(5)	
	기타	29.4	56.8	0.0	0.0	0.0	0.0	0.0	13.9	0.0	100.0(9)	
학업 성적	상	10.6	61.5	1.2	2.8	0.7	1.6	8.3	9.8	3.6	100.0(415)	66.613***
	중	17.4	56.0	1.8	3.5	1.0	4.0	7.3	7.2	1.8	100.0(420)	
	하	26.3	39.7	2.1	4.1	1.6	6.3	11.1	5.7	3.0	100.0(330)	
경제적 수준	상	10.7	58.6	1.2	3.4	0.9	3.8	7.8	10.1	3.5	100.0(524)	86.628***
	중	17.0	53.3	2.4	2.7	1.6	3.1	10.9	6.1	2.9	100.0(436)	
	하	35.8	39.7	1.5	5.1	0.4	5.7	6.4	4.7	0.7	100.0(201)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표 IV-7-32.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2순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여가 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 해서	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 해서	여가 활동 공간 (시설)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보호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타	전체(N)	
전체	34.4	67.9	4.3	13.9	5.5	14.1	24.9	17.1	5.3	100.0(1,173)	
성별	남학생	32.7	68.1	3.6	15.0	5.1	14.2	21.8	20.0	5.1	100.0(488)
	여학생	35.6	67.7	4.8	13.2	5.8	14.0	27.1	15.0	5.4	100.0(684)
학교급	초등학교	28.0	62.1	3.1	10.6	3.5	22.3	25.7	29.2	5.2	100.0(271)
	중학교	34.3	67.5	4.5	12.8	5.3	14.1	26.3	20.8	3.6	100.0(410)
	고등학교	38.0	71.4	4.8	16.7	6.6	9.6	23.3	7.4	6.7	100.0(492)
지역 규모	대도시	34.5	69.9	2.5	12.4	6.0	11.5	27.2	17.7	5.1	100.0(452)
	중소도시	35.7	67.4	4.4	14.0	5.1	16.3	22.8	17.8	4.4	100.0(559)
	읍면지역	29.9	63.7	8.9	17.9	5.0	13.9	25.6	13.0	8.9	100.0(1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4	68.8	4.1	14.4	5.4	13.7	25.0	17.1	5.4	100.0(1,054)
	한부모가정	39.0	61.9	6.5	9.9	6.9	14.3	26.6	17.6	4.9	100.0(99)
	조손가정	55.3	11.4	23.8	0.0	0.0	50.1	38.5	20.9	0.0	100.0(5)
	기타	56.2	76.5	0.0	9.6	0.0	20.6	0.0	13.9	0.0	100.0(9)
학업 성적	상	28.0	76.7	3.4	14.2	4.1	11.1	22.6	20.9	6.9	100.0(415)
	중	34.6	69.2	4.8	13.0	6.7	13.0	25.6	15.4	4.2	100.0(420)
	하	41.8	55.1	4.9	15.0	5.7	18.9	27.0	14.2	4.8	100.0(330)
경제적 수준	상	22.8	74.3	3.5	13.8	5.1	13.4	26.4	20.3	6.3	100.0(524)
	중	36.9	66.1	5.1	13.3	6.6	14.6	26.4	14.7	4.8	100.0(436)
	하	58.3	55.3	4.9	16.4	3.9	14.4	18.4	13.4	3.9	100.0(2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③ 하루 평균 학습 시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하루 3시간 이상(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및 '6시간 이상'의 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응답자의 1/3 이상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을 학습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였으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21.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5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습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40.8%로 남학생(36.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9.7%, 여학생이 15.9%로 여학생들의 학습시간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하루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33.1%, 중학생은 40.3%, 고등학생은 42.8%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유형별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양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39.9%인데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는 27.5%로 12.4%p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성적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4%인데 비해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서는 23.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학업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들의 학습시간과도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33. 평일 학습 시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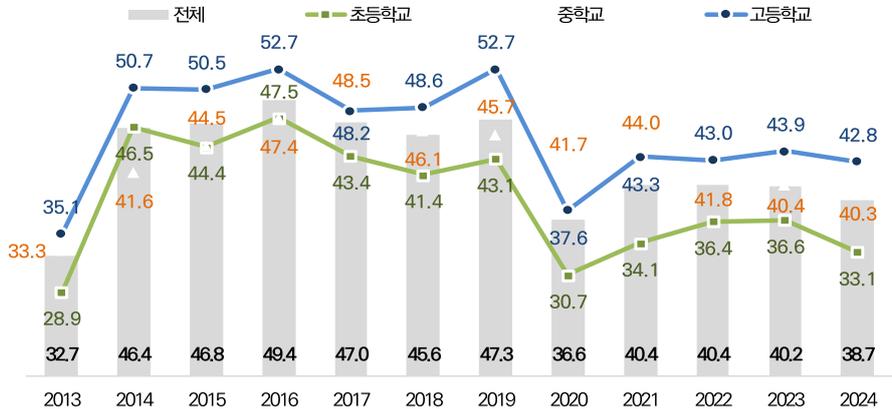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이상	전체(N)	χ^2
		이상 - 2시간 미만	이상 - 3시간 미만	이상 - 4시간 미만	이상 - 5시간 미만	이상 - 6시간 미만				
전체	17.9	21.0	22.5	18.3	10.4	6.2	3.7	100.0(8,714)		
성별	남학생	19.7	21.6	22.1	17.6	9.0	5.9	4.1	100.0(4,483)	43.690***
	여학생	15.9	20.3	23.0	18.9	11.9	6.6	3.4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17.2	25.8	23.8	15.7	9.1	5.3	3.0	100.0(2,967)	140.517***
	중학교	15.8	19.9	24.0	20.2	10.4	6.0	3.7	100.0(2,925)	
	고등학교	20.7	17.0	19.5	19.0	11.9	7.3	4.6	100.0(2,822)	
지역 규모	대도시	14.9	19.9	22.0	19.4	11.9	7.1	4.8	100.0(3,356)	93.664***
	중소도시	18.4	21.5	23.2	18.0	10.0	5.7	3.3	100.0(4,144)	
	읍면지역	24.1	22.1	21.7	16.2	7.8	5.6	2.4	100.0(1,21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1	21.1	22.9	18.8	10.8	6.3	4.0	100.0(7,790)	184.986***
	한부모가정	33.2	21.0	18.2	13.5	6.7	5.3	2.0	100.0(682)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조손가정	38.0	11.0	16.0	12.6	13.8	5.9		
기타	29.2	22.8	20.6	15.6	7.1	4.7	0.0	100.0(104)		
학업 성적	상	8.4	18.3	22.9	22.1	13.2	8.9	6.2	100.0(3,340)	818.616***
	중	17.3	23.6	23.7	17.9	9.9	5.0	2.6	100.0(3,449)	
	하	35.8	20.9	19.4	12.4	6.5	3.5	1.5	100.0(1,883)	
경제적 수준	상	14.4	21.1	23.0	18.9	11.4	6.8	4.5	100.0(5,216)	153.496***
	중	21.7	21.0	21.7	18.1	9.2	5.5	2.8	100.0(2,732)	
	하	28.8	20.1	21.2	15.2	8.0	5.0	1.8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학습시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하루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소요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이 예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IV-7-12. 평일 학습 시간(2013~2024년)

4) 소결

본 절에서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에의 권리는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학교 부적응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교육기회 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2000년 이후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공교육비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하여 2011년 이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동안 OECD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35.2%, 참여학생의 경우에는 28.9%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교육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기회는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부적응률과 관련하여 우선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 학업중단율은 1.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이후의 학업중단율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9.6%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을 생각한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해본 경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교육기회의 관점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두 번째 중분류에 해당하는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93.3%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친구 간의 존중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5.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2.1%로 앞의 2개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72.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4개 항목에서 모두 70% 이상의 긍정 응답이 보고됨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꾸준히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이 두 요인과 관련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진로 및 직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진로활동 참여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활동참여 따른 만족도도 5점 척도에서 초등학생은 4.10점, 중학생은 3.71점, 고등학생은 3.54점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특히 고등학생들의 진로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직업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7%로 나타났는데, 특히 15~29세 청년들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진학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세 번째 영역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2019년 814개소에서 2023년 85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013년 2,182개소에서 2023년 3,248개소로 1,066개소가 증가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수는 2010년 15,137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10년 시설 수의 2배가 넘는 시설이 설치되는 등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시설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도서관의 경우 한달에 1~2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이고,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이용 빈도가 높았고, 고등학생보다는 초·중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2.3%로 응답자의 3/4 정도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 장 등 체육시설 이용 경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인 반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이용도가 높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빈도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간의 경우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 수준이었으나 일년에 1~2회 정도나 2~3개월에 1~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응답자의 2/3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시설의 이용 경험에 있어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성적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였고, 4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3.2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가·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시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청소년들의 경우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7%로 10명 중 1명 정도는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시간도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85.9%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여가활동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요인이었다. 특히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간적 제약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여가와 관련한 시간 부족과는 정적인 관계가, 여가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과는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습시간과 관련하여 하루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소요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이 예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특별보호조치¹⁵³⁾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① 아동·청소년 난민 수

2023년 기준 18세 미만 난민 신청자 수는 1,058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837명의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101명이었으나,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청소년은 45명으로 아동·청소년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전체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인도적 체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난민 신청 비율은 2021년의 8.0%를 기점으로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정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의 55.6%에서 2023년에는 44.6%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2021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 수가 이전에 비해 급감하였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가장 많은 수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실제 난민 인정비율은 2021년의 2,341명의 신청자 중 3%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나, 2023년에는 그 비율이 0.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2003~2023년)

(단위 : 건, 명, %)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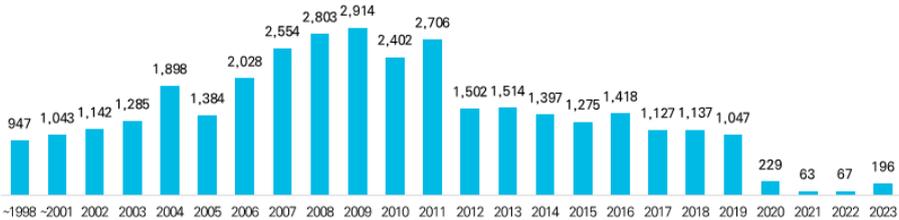
153) 이 절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작성하였음.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2019	459	3.0	15,451	37	46.8	79	41	17.7	232	-	-	5,287	-	-	4,139
2020	279	4.2	6,684	36	52.2	69	20	12.9	155	-	-	6,542	-	-	5,930
2021	188	8.0	2,341	40	55.6	72	11	24.4	45	-	-	5,920	-	-	3,694
2022	646	5.6	11,539	87	49.7	175	23	34.3	67	-	-	5,277	-	-	639
2023	1,058	5.6	18,837	45	44.6	101	23	17.8	129	-	-	6,872	-	-	1,136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96-107.
 법무부(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104, p.107, p.110.
 법무부(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98, 102, 103, 105, 106, 107, 109.
 법무부(2024a).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98, 102, 104, 105, 107, 108, 110.

②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그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2,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기에는 그 수가 70명 이하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23년에는 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이전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일부(2022). 2022 통일백서. p.287.
 통일부(2023). 2023 통일백서. p.121.
 통일부(2024). 2024 통일백서. p.84.

* 주: 단위: 명

그림 IV-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998~2023년)

2024년 3월말 기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056명 가운데 10~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2%이고,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 입국자 가운데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7%였으며, 20~29세의 경우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입국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28%, 여성의 비율이 72%임을 감안하면, 10~19세 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2024년)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2	1,707	2,639	2,174	1,406	599	358	9,535
여	646	2,112	7,006	7,617	4,661	1,476	1,003	24,521
합계	1,298	3,819	9,645	9,791	6,067	2,075	1,361	34,056

* 출처: 통일부(2024.3). 북한이탈주민정책(2024.3월 기준). 연령대별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4년 7월 15일 인출.

* 주: 2024년 3월말 기준.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99,440명으로 이 가운데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가 17,363명으로 5.8%이었으며, 국내 출생 자녀는 144,310명으로 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의 222,455명에서 2022년에 299,440명으로 34.6%가 증가하였다.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수도 2017년에 비해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체 자녀 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에 4.5%에서 2022년에 5.8%로 소폭 상승하였다. 국내 출생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3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2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7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2018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2019	264,626	135,110	129,516	12,660	6,026	6,634	251,966	129,084	122,882
2020	275,990	140,750	135,240	14,344	6,846	7,498	261,646	133,904	127,742
2021	289,529	147,612	141,917	15,807	7,513	8,294	273,722	140,099	133,623
2022	299,440	152,620	146,820	17,363	8,310	9,053	282,077	144,310	137,767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p. 7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p. 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p. 73.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행정안전부(2022.1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1년 11월 1일 기준). p. 7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행정안전부(2023.11).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 p. 73.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04797#none에서 2024년 7월 15일 인출.

*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2) 전체 외국인주민 유형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및 한국국적취득자로 분류

2022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아동이 36.4%, 중고생이 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고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생이 38.1%, 미취학아동이 20.9% 수준이었다. 국내 출생 자녀는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생이 36.5%, 중고생이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들 가운데 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80%에 육박함에 따라 이들의 학교는 물론 국내 생활 적응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2022년)

(단위 : 명, %)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국내 출생		
	N	구성비	N	구성비	N	구성비	
계	299,440		17,363		282,077		
소계	109,081	36.4	3,630	20.9	105,451	37.4	
미취학 아동	0세	12,386	4.1	22	0.1	12,364	4.4
	1세	14,230	4.8	92	0.5	14,138	5.0
	2세	15,995	5.3	326	1.9	15,669	5.6
	3세	16,701	5.6	580	3.3	16,121	5.7
	4세	16,115	5.4	716	4.1	15,399	5.5
	5세	16,496	5.5	851	4.9	15,645	5.5
	6세	17,158	5.7	1,043	6.0	16,115	5.7
소계	109,519	36.6	6,622	38.1	102,897	36.5	
초등학생	7세	17,397	5.8	1,066	6.1	16,331	5.8
	8세	17,473	5.8	1,126	6.5	16,347	5.8
	9세	17,592	5.9	1,089	6.3	16,503	5.9
	10세	18,844	6.3	1,171	6.7	17,673	6.3
	11세	19,190	6.4	1,079	6.2	18,111	6.4
	12세	19,023	6.4	1,091	6.3	17,932	6.4
소계	80,840	27.0	7,111	41.0	73,729	26.1	
중고생	13세	18,130	6.1	1,218	7.0	16,912	6.0
	14세	17,617	5.9	1,395	8.0	16,222	5.8
	15세	15,799	5.3	1,279	7.4	14,520	5.1
	16세	11,688	3.9	1,154	6.6	10,534	3.7
	17세	9,509	3.2	1,072	6.2	8,437	3.0
	18세	8,097	2.7	993	5.7	7,104	2.5

* 출처: 행정안전부(2023.11).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 p. 76.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lId=104797#none에서 2024년 7월 15일 인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3년간 학교급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181,178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63.8%에 해당하는 115,639명이었으며, 중학생은 24.1%, 고등학생은 11.7%였으며,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71.7%는 국내출생자녀였으며, 중도입국은

6%, 외국인가정은 22.3%였으며, 특히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각종학교 재학 비율이 각각 37.3%, 40.2%로 국내출생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수 가운데 국내출생자의 비율은 76.3%에서 7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가정 학생의 비율이 17.8%에서 22.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재학생 가운데 국내출생 학생의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각종학교 재학생 중 국내출생 비율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20%p가량 감소한 반면,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1~2023년)

(단위 : 명, %)

구분	2021					2022					2023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국내 출생	86,399	25,368	10,183	145	122,095	84,241	29,940	11,614	234	126,029	82,491	32,210	15,063	146	129,910
중도 입국	4,953	2,773	1,519	182	9,427	5,087	2,874	1,784	193	9,938	5,617	3,108	1,928	243	10,896
외국인 가정	20,019	5,809	2,606	102	28,536	22,312	6,900	3,346	120	32,678	27,531	8,380	4,199	262	40,372
계	111,371	33,950	14,308	429	160,058	111,640	39,714	16,744	547	168,645	115,639	43,698	21,190	651	181,178
비율	69.6	21.2	8.9	0.3	100	66.2	23.5	9.9	0.3	100	63.8	24.1	11.7	0.3	100

* 출처: 교육부(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p.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menuld=m_02_03_01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2-1)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2-2)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 3)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 국적에 따름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다문화학생 수는 38.678명에서 181.178명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에 0.55%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3.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IV-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3년)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다문화 학생 수(A)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전체 학생 수(B)	6,986,853	6,732,071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55	0.70	0.86	1.08	1.35	1.68	1.9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문화 학생 수(A)	122,212	137,225	147,378	160,058	168,645	181,178	
전체 학생 수(B)	5,592,792	5,461,614	5,355,832	5,332,044	5,284,718	5,261,818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2.19	2.51	2.75	3.00	3.19	3.5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7.
 교육부(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교육부(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p.386.
 교육부(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p.26.
 한국교육개발원(2023.12.19.). KEDI분석 브리프. 2023년 27호.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p.3.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5449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주: 2013년도 이후의 수치는 가장 최근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참고하였음.

다음으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탈북학생의 연도별 재학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23년 기준 1,769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23.8%, 중학생은 29.0, 고등학생은 68.4%, 기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8.5%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래의 재학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재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의 6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8%로 36.9%p나 감소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고등학생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기타학교에 재학하는 비율도 7%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3년)

(단위 : 명, (%))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2021.4	654(28.6)	740(32.4)	739(32.3)	176(6.7)	2,287
2022.4	522(25.3)	659(32.0)	725(35.2)	155(7.5)	2,061
2023.4	421(23.8)	513(29.0)	684(38.7)	151(8.5)	1,769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3). 탈북학생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3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webm_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원자료: 교육부(2023). 2023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23.4. 기준).

*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2023년에 전체 학업을 중단한 탈북 청소년은 36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중도탈락률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탈북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일반학생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업중단률 비율은 일반학생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IV-8-8.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2008	2007.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자 수	12	30	32	74
	학업중단율	3.5	12.9	28.1	10.8
2017	2016.4. 재학생 수	1,143	773	601	2,517
	학업중단자 수	11	14	26	51
	학업중단율	1.0	1.8	4.3	2.0
2018	2017.4. 재학생 수	1,026	697	661	2,384
	학업중단자 수	7	20	32	59
	학업중단율	0.7	2.9	4.8	2.5
2019	2018.4. 재학생 수	932	682	751	2,365
	학업중단자 수	13	22	35	70
	학업중단율	1.4	3.2	4.7	3.0
2020	2019.4. 재학생 수	877	738	752	2,367
	학업중단자 수	13	20	36	69
	학업중단율	1.5	2.7	4.8	2.9
2021	2020.4. 재학생 수	741	782	738	2,261
	학업중단자 수	4	9	14	27
	학업중단율	0.5	1.2	1.9	1.2
2022	2021.4. 재학생 수	654	740	739	2,133
	학업중단자 수	2	13	19	34
	학업중단율	0.3	1.8	2.6	1.6
2023	2022. 4. 재학생수	522	659	725	1,906
	학업중단자 수	6	8	22	36
	학업중단율	1.1	1.2	3.0	1.9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3). 2023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3년 4월 기준). p.4. https://www.hu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2&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 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8326&p_srch_text=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 주: 1) 학업중단율 산출식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2) (~2017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3) (2018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제외하여 산출*
 *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정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경험한 차별 경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15~19세 청소년들이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였으며, 20대의 경우에는 8.5%가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30대 이상의 차별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30대 이상의 성인들에 비해 젊은 층의 차별경험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에 비해 2023년에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8-9.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3년)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있음	없음												
15~19세	7.9	92.1	6.0	94.0	8.8	91.2	4.1	95.9	4.9	95.1	2.7	97.3	2.6	97.4
20대	17.4	82.6	16.6	83.4	15.1	84.9	13.2	86.8	11.8	88.2	11.2	88.8	8.5	91.5
30대	24.2	75.8	20.4	79.6	16.9	83.1	16.6	83.4	15.3	84.7	17.6	82.4	15.6	84.4
40대	26.2	73.8	25.0	75.0	19.4	80.6	21.4	78.6	16.8	83.2	21.8	78.2	18.1	81.9
50대	27.8	72.2	21.2	78.8	18.3	81.7	21.4	78.6	22.1	77.9	26.1	73.9	17.1	82.9
60대 이상	17.1	82.9	10.9	89.1	14.7	85.3	15.6	84.4	12.3	87.7	15.7	84.3	18.4	81.6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conn_path=l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조사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 현황

2023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9명, 청주외국인보호소의 4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9명 등 총 22명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개 시설에 구금된 아동·청소년의 수가 2015년의 34명에서 2019년의 5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그 수가 12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22년에는 3명에 불과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2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3개 시설에 구금된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인원이 급감하였다가 코로나19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10.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화성외국인보호소	25	24	24	24	32	8	5	1	9
청주외국인보호소	7	13	8	25	19	2	2	-	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4	3	4	6	2	1	2	9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3.9.19.).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4.10.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현재 전원 퇴소

2) 소년 사법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 인원수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되거나 위탁된 인원 및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은 총 6,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위탁소년은 4,665명, 보호소년은 2,092명으로 위탁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192명이었으며, 이 중 위탁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경우 보호소년의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8-11.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3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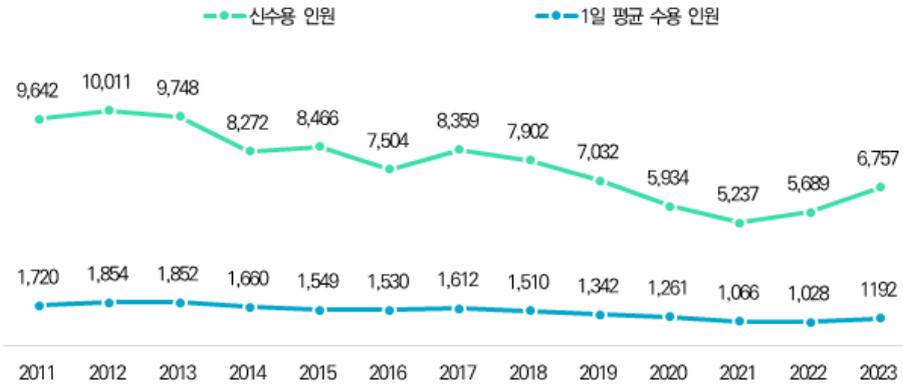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수용 인원	계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7,032	5,934	5,237	5,689	6,757
	보호소년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2,092
	위탁소년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3,876	4,169	4,665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1,342	1,261	1,066	1,028	1,192
	보호소년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946	927	782	700	807
	위탁소년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396	334	284	328	385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원자료: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 주: 1) 보호소년: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
 3)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범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지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일일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보호 및 위탁소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신수용인원의 경우 2011년의 9,642명에서 2023년에는 6,757명으로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1천명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경우에도 2012년에 1,85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66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원자료: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단위: 명

그림 IV-8-2.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3년)

2022년의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88명 가운데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개월 미만인 경우가 32.6%, 1년 이상인 경우가 15.3%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수용기간은 5.51개월 이었다.

2012년에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은 3,399명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용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인 경우 2012년에 49.4%이었으나,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23.4%에서 4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년 이상인 경우는 증감은 있으나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수용기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들의 범죄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8-1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2012~2022년)

(단위 : 명, (%), 월)

연도	구분	계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평균 수용 기간
2012		3,399 (100.0)	1,680 (49.4)	125 (3.7)	796 (23.4)	209 (6.1)	589 (17.3)	4.93
2013		3,005 (100.0)	1,348 (44.9)	96 (3.2)	894 (29.8)	232 (7.7)	435 (14.5)	5.00
2014		2,531 (100.0)	969 (38.3)	80 (3.2)	769 (30.4)	208 (8.2)	505 (20.0)	5.91
2015		2,171 (100.0)	883 (40.7)	62 (2.9)	670 (30.9)	181 (8.3)	375 (17.3)	5.56
2016		2,138 (100.0)	773 (36.2)	62 (2.9)	676 (31.6)	189 (8.8)	438 (20.5)	6.03
2017		2,275 (100.0)	902 (39.6)	47 (2.1)	777 (34.1)	179 (8.0)	370 (16.2)	5.52
2018		2,328 (100.0)	830 (35.6)	64 (2.7)	773 (33.2)	214 (9.2)	447 (19.3)	5.91
2019		1,944 (100.0)	713 (36.7)	74 (3.8)	680 (35.0)	185 (9.5)	292 (15.0)	6.51
2020		1,546 (100.0)	408 (26.4)	46 (3.0)	600 (38.8)	167 (10.8)	325 (21.0)	7.80
2021		1,524 (100.0)	355 (23.3)	64 (4.2)	662 (43.4)	135 (8.8)	308 (20.3)	8.42
2022		1,588 (100.0)	517 (32.6)	46 (2.9)	695 (43.8)	87 (5.5)	243 (15.3)	5.51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88.

* 원자료: 법무부(2013~2023). 법무연감.

* 주: 퇴원 및 입시퇴원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②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소년범죄자 수는 61,026명으로, 이 가운데 16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8세가 20.9%, 15세가 20.3%였다.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14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0.1%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18.1%로 증가한 반면,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4.4%에서 40.3%로 감소함으로써 청소년범죄에 있어 어린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13.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3.7)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2021	54,017 (100.0)	-	8,091 (15.0)	10,301 (19.1)	11,594 (21.5)	11,211 (20.8)	12,820 (23.7)
2022	61,026 (100.0)	-	11,069 (18.1)	12,411 (20.3)	13,003 (21.3)	11,815 (19.4)	12,728 (20.9)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59.

* 원자료: 대검찰청(2014~2023). 범죄분석.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018년 이후 14세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소년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2023년 기타를 제외하고 절도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18.1%, 강도 등의 경우가

16.3%였다. 특히 절도의 경우는 2016년에는 15.3%에 불과하였으나 그 비율이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간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20~30%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년 수형자의 경우 절도와 강간 등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14.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3년)

(단위 : 명(%))

구분	계	절도	사기 · 횡령	폭력 · 상해	강간 등	강도 등	살인	과실범	기타
2016	150(100)	23(15.3)	2(1.3)	27(18.0)	35(23.3)	19(12.7)	5(3.3)	2(1.3)	37(24.7)
2017	130(100)	27(20.8)	9(6.9)	5(3.8)	44(33.8)	11(8.5)	5(3.8)	0(0.0)	29(22.3)
2018	105(100)	17(16.2)	12(11.4)	3(2.9)	24(22.9)	5(4.8)	4(3.8)	1(1.0)	39(37.1)
2019	116(100)	10(8.6)	9(7.8)	11(9.5)	26(22.4)	14(12.1)	3(2.6)	4(3.4)	39(33.6)
2020	115(100)	21(18.3)	8(7.0)	13(11.3)	21(18.3)	13(11.3)	1(0.9)	1(0.9)	37(32.2)
2021	142(100)	26(18.3)	6(4.2)	7(4.9)	31(21.9)	11(7.8)	1(0.7)	2(1.4)	58(40.8)
2022	133(100)	23(17.3)	6(4.5)	10(7.5)	36(27.0)	9(6.8)	1(0.7)	0(0.0)	48(36.1)
2023	160(100)	41(25.6)	3(1.9)	8(5.0)	29(18.1)	26(16.3)	1(0.6)	2(1.3)	50(31.3)

* 출처: 법무부(2024b), 2024 교정통계연보, p.82-83.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폭력은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

소년 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133명이 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5년 미만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1%의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인 경우도 18.8%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0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의 변화 추이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형기가 비교적 짧은 1년 미만과 3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는 51.6%로 절반을 넘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32.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5년 미만 및 10년 미만의 경우는 2015년 46.2%에서 2022년에는 65.4%로 19.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15.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구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30 (100)	1 (0.8)	11 (8.5)	56 (43.1)	48 (37.0)	12 (9.2)	2 (1.4)	-	-
2016	149 (100)	1 (0.7)	8 (5.4)	69 (46.3)	56 (37.6)	13 (8.7)	2 (1.3)	-	-
2017	130 (100)	-	7 (5.4)	67 (51.5)	46 (35.4)	9 (6.9)	-	1 (0.8)	-
2018	105 (100)	1 (1.0)	2 (1.9)	55 (52.3)	33 (31.4)	13 (12.4)	-	1 (1.0)	-
2019	116 (100)	-	4 (3.4)	45 (38.8)	45 (38.8)	21 (18.1)	-	1 (0.9)	-
2020	115 (100)	2 (1.7)	2 (1.7)	55 (47.8)	41 (35.7)	15 (13.1)	-	-	-
2021	142 (100)	2 (1.4)	4 (2.8)	65 (45.8)	47 (33.1)	22 (15.5)	2 (1.4)	-	-
2022	133 (100)	2 (1.5)	3 (2.3)	40 (30.1)	62 (46.6)	25 (18.8)	1 (0.7)	-	-

* 출처: 법무연수원(2024). 2023 범죄백서. p.632.

-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 2)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금고형 선고자 제외).

(2)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

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 현황과 관련하여 2023년 국선보조인의 조력 횟수는 3,969회로 집계되었다. 2011년 이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2023년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국선보조인의 조력 횟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물론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년보호사건이 증가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결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16.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횡수(2011~2023년)

(단위: 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4,756	3,960	3,305	3,174	3,157	3,089	3,969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부록 통계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 원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 주: 국선보조인 조력 횡수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지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소년원, 대전소년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수용인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20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소년원이 88.9명, 광주소년원, 대전소년원, 대구소년원이 35명 내외 수준이었고 제주소년원은 3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5년부터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을 제외한 모든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도 10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17.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 정원 170명	219 (128.8)	178 (104.7)	207 (121.8)	212 (124.7)	192 (112.9)	170 (100)	284 (167.1)	158 (92.9)	202.5 (119.1)
부산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70명	95 (135.7)	87 (124.3)	88 (125.7)	82 (117.1)	82 (117.1)	63 (90.0)	137 (195.7)	77 (110)	88.9 (127.0)
대구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33 (66.0)	38 (76.0)	37 (74.0)	31 (62.0)	31 (62.0)	21 (42.0)	61 (122.0)	24 (48.0)	34.5 (69)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광주소녀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45 (90.0)	41 (82.0)	53 (106.0)	45 (90.0)	33 (66.0)	29 (58.0)	21 (42.0)	23 (46.0)	36.3 (90.8)
대전소녀원 (위탁 대행) / 정원 40명	31 (77.5)	42 (105.0)	39 (97.5)	44 (110.0)	37 (92.5)	36 (90.0)	25 (62.5)	32 (80.0)	35.8 (89.4)
춘천소녀원 (위탁 대행) / 정원 30명	10 (33.3)	10 (33.3)	17 (56.7)	14 (46.7)	16 (53.3)	11 (55.0)	24 (120.0)	11 (36.7)	14.1 (47.1)
제주소녀원 (위탁 대행) / 정원 10명	4 (40.0)	2 (20.0)	3 (30.0)	3 (30.0)	5 (50.0)	4 (40.0)	11 (110.0)	3 (30.0)	4.4 (43.8)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3-3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 원자료: 법무부 (2024c). 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법무부 내부자료.

* 주: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전국 소녀원의 연도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녀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녀원)가 97명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수용 정원을 감안한 수용률을 살펴보면,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녀원)가 96.7%로 가장 높았으며,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녀원)가 88.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녀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관에서 1일 평균 수용인원과 수용률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녀원)의 경우 수용률이 157.3%에서 79.4%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범죄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8-18.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소년원) / 정원 170명	236 (157.3)	234 (156.0)	246 (164.0)	204 (136.0)	172 (101.2)	206 (121.1)	170 (100.0)	135 (79.4)	200.4 (117.9)
오륜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 / 정원 90명	119 (119.0)	139 (139.0)	125 (125.0)	111 (111.0)	86 (95.6)	86 (95.5)	14 (15.6)	9 (0.001) (리모델링)	86.1 (95.7)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 정원 90명	130 (144.4)	141 (156.7)	137 (152.2)	114 (126.7)	94 (104.4)	86 (95.5)	89 (98.9)	87 (96.7)	109.8 (121.9)
고룡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 / 정원 120명 / '22. 부터 100명	94 (78.3)	104 (86.7)	135 (112.5)	108 (90.0)	95 (79.2)	104 (104)	99 (99.0)	82 (82.0)	102.6 (85.5)
송천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 / 정원 130명	108 (77.1)	92 (65.7)	81 (57.9)	91 (65.0)	102 (78.5)	103 (79.2)	97 (74.6)	97 (74.6)	96.4 (74.1)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 정원 80명	115 (115.0)	98 (98.0)	122 (122.0)	121 (121.0)	84 (105.0)	69 (86.2)	66 (82.6)	61 (76.3)	92 (115)
미평여자학교 (청주소년원) / 정원 80명	45 (50.0)	45 (50.0)	45 (50.0)	85 (94.4)	85 (106.3)	66 (82.5)	58 (72.5)	59 (73.8)	61 (76.3)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인양소년원) / 정원 80명	141 (176.3)	147 (183.8)	127 (158.8)	109 (136.3)	103 (128.8)	103 (128.8)	78 (97.5)	71 (88.8)	109.9 (137.3)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 정원 40명	31 (77.5)	43 (107.5)	43 (107.5)	33 (82.5)	33 (82.5)	25 (83.3)	25 (83.3)	25 (62.5)	32.3 (80.6)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 / 정원 120명	93 (93.0)	89 (89.0)	107 (107.0)	103 (103.0)	92 (76.7)	79 (87.8)	86 (95.6)	74 (61.7)	90.4 (75.3)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p.34-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 원자료: 법무부 (2024c). 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법무부 내부자료.

- * 주: 1)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2) 정원은 2021년 기준임. 2015년~2019년까지 각년도별 정원에 따라 비율 계산되어 있음.(2015~2018년까지 정원: 서울소년원 150명, 부산소년원 100명, 대구소년원 90명, 광주소년원 120명, 전주소년원 140명, 대전소년원 100명, 청주소년원 90명, 인양소년원 80명, 제주소년원 40명, 춘천소년원 100명, 2019년 정원: 서울소년원 170명, 부산소년원 90명, 대구소년원 90명, 광주소년원 120명, 전주소년원 130명, 대전소년원 80명, 청주소년원 80명, 인양소년원 80명, 제주소년원 40명, 춘천소년원 120명)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소년교도소에서의 처우에 불복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4,5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원이 686건, 고소 및 고발이 677건, 행정심판 신청이 640건이었다.

소년교도소 처우불복 신청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고소·고발과 헌법소원을 제외하고 청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8-19.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3년)

(단위 : 건)

구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2014	903	369	61	614	3,745	27
2015	957	552	74	733	3,790	23
2016	797	347	56	698	3,716	38
2017	744	437	70	783	4,528	70
2018	772	310	86	855	4,322	32
2019	558	509	91	916	4,211	29
2020	593	630	60	867	4,124	54
2021	558	443	61	719	4,522	58
2022	508	382	56	716	4,187	49
2023	686	610	70	677	4,530	19

* 출처: 법무부(2024b), 2024 교정통계연보. p.134-141.

- * 주: 1) 주요 고소·고발 사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2) 주요 행정심판 청구 내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
- 3) 주요 행정소송 청구 사유: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
- 4) 주요 헌법소원 청구 내역: 징벌처분, 직원고소사건 처리 결과(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 보호장비 사용 등

④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총 29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32건으로 10.8% 수준이었고, 약 90%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항고의 경우에는 인용된 경우는 없었고, 모두 기각 또는 취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소년보호 항고 및 재항고 사건 수는 2021년까지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3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항고 또는 재항고된 사건 가운데 인용된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8-20.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2019~2023년)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인용(환송)	기각	취하	기타
2019	항고	271	232	26	186	18	2
	재항고	13	13	-	12	1	-
2020	항고	221	239	25	189	22	3
	재항고	22	26	1	24	1	-
2021	항고	189	195	26	152	16	1
	재항고	15	16	-	16	-	-
2022	항고	219	221	33	167	21	
	재항고	20	14	-	14	-	
2023	항고	297	284	32	213	36	3
	재항고	23	25	-	24	1	-

*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p.1099.
 법원행정처(2022). 2022 사법연감. p.1181.
 법원행정처(2023). 2023 사법연감. p.779.
 법원행정처(2024). 2024 사법연감. p.1229.

(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①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회복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26,714명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사랑의 교실에 16,547명, 치유선도에 10명, 경찰선도에 10,5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37.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9년 이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랑의 교실 및 경찰선도 참여자 수도 동일한 양상의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선도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사랑의 교실과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참여자 수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치유 선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참여자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치유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급감한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21.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2019~2022년)

(단위 : 명(%))

구분	참가 인원	참여율 (%)	사랑의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					경찰 선도프로그램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2019	25,940	39.2	18,929	485	7,389	9,793	1,262	196	6	122	59	9	6,815	330	3,102	3,089	294
2020	23,464	36.3	15,243	337	5,959	7,952	995	56	4	31	21	0	8,165	431	3,144	4,088	502
2021	20,411	37.7	14,174	507	5,670	6,965	1,032	21	1	12	8	0	6,216	227	2,286	3,380	323
2022	26,714	-	16,547	-	-	-	-	10	-	-	-	-	10,157	-	-	-	-

* 출처: 경찰청(2022.6).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p.67.
경찰청(2023). 2023 경찰백서. p.114.

②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인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특정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닌 사회 내에서 처우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2022년 전체 보호관찰 대상 46,444명 가운데 청소년은 12,507명으로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4세 이상이 91.9%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8.1%에 불과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4.6%로 전체 대상자의 약 2/3 정도였다.

청소년 보호관찰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관찰 대상 인원은 2014년에 20,378명에서 2022년에 12,50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보호관찰 대상 인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44.2%에서 26.9%로 감소함으로써 전체 보호관찰 대상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가운데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에 3.2%에서 2022년에 8.1%로 다소 증가하였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4.8%에서 64.6%로 증가하였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여자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22.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현황(2014~2022년)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전체 보호 관찰 (A)	청소년 보호관찰		성별		연령별		학생여부별	
		인원(B)	(A)/(B)* 100	남자	여자	촉법 소년	14세 이상	학생	비학생
2014	46,110	20,378	44.2	16,885 (82.9)	3,493 (17.1)	-	-	-	-
2015	47,991	19,271	40.2	16,330 (84.7)	2,971 (15.4)	-	-	-	-
2016	51,884	18,218	35.1	14,980 (82.2)	3,238 (17.8)	-	-	-	-
2017	53,419	17,799	33.3	14,341 (80.6)	3,458 (19.4)	573 (3.2)	17,226 (96.8)	9,756 (54.8)	8,043 (45.2)
2018	49,073	16,659	33.9	13,111 (78.7)	3,548 (21.3)	714 (4.3)	15,945 (95.7)	9,119 (54.7)	7,540 (45.3)
2019	48,508	14,439	29.8	11,118 (77.0)	3,321 (23.0)	768 (5.3)	13,671 (94.7)	7,620 (52.8)	6,819 (47.2)
2020	45,592	13,489	29.6	10,488 (77.8)	3,001 (22.2)	704 (5.2)	12,785 (94.8)	8,159 (60.5)	5,330 (39.5)
2021	43,992	11,853	26.9	9,181 (77.5)	2,672 (22.5)	811 (6.8)	11,042 (93.2)	7,535 (63.6)	4,318 (36.4)
2022	46,444	12,507	26.9	9,668 (77.3)	2,839 (22.7)	1,019 (8.1)	11,488 (91.9)	8,078 (64.6)	4,429 (35.4)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569-570.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95.

* 원자료: 법무부(2015~2023). 법무연감.

주: 2014년~2016년 연령과 학생여부별 인원수와 구성비는 공표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6,338명의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집행유예, 벌금미납, 가석방 등의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082명으로 3.0% 수준이었으며, 보호처분이 92.6%에 해당하는 33,639명, 선도위탁이 3.8%인 1,38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처분 가운데에는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보호처분 중에는 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이후의 유형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형사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처분의 경우는 2013년 87.8%에서 2022년 92.6%로 4.8%p 증가한 반면, 선도위탁이 같은 기간

동안 10.0%에서 3.8%로 감소하였다.

표 IV-8-2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2013~2022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 보호관찰 전체	형사처분				기타 보호 처분	소년보호처분				선도 위탁	기타
		소계	집행 유예	벌금 미납	가석방		소계	보호 관찰	단독 명령	임시 퇴원		
2013	65,815 (100.0)	1,388 (2.1)	1,293 (2.0)	50 (0.1)	45 (0.1)	14 (0.0)	57,815 (87.8)	50,369 (76.5)	5,355 (8.1)	2,091 (3.2)	6,585 (10.0)	13 (0.0)
2014	57,064 (100.0)	1,377 (2.4)	1,264 (2.2)	85 (0.1)	28 (0.0)	33 (0.1)	47,874 (83.9)	41,955 (73.5)	3,876 (6.8)	2,043 (3.6)	7,774 (13.6)	6 (0.0)
2015	51,978 (100.0)	1,172 (2.3)	1,060 (2.0)	91 (0.2)	21 (0.0)	38 (0.1)	44,050 (84.7)	38,864 (74.8)	3,454 (6.6)	1,732 (3.3)	6,714 (12.9)	4 (0.0)
2016	49,687 (100.0)	1,035 (2.1)	956 (1.9)	67 (0.1)	12 (0.0)	73 (0.1)	40,693 (81.9)	35,740 (71.9)	3,227 (6.5)	1,726 (3.5)	7,864 (15.8)	21 (0.0)
2017	47,493 (100.0)	1,026 (2.2)	945 (2.0)	68 (0.1)	13 (0.0)	72 (0.2)	40,482 (85.2)	35,186 (74.1)	3,489 (7.3)	1,807 (3.8)	5,894 (12.4)	13 (0.0)
2018	45,364 (100.0)	1,017 (2.2)	949 (2.1)	56 (0.1)	12 (0.0)	55 (0.1)	40,108 (88.4)	34,460 (76.0)	3,685 (8.1)	1,963 (4.3)	4,173 (9.2)	12 (0.0)
2019	40,587 (100.0)	1,129 (2.8)	1,073 (2.6)	37 (0.1)	19 (0.0)	71 (0.2)	36,629 (90.2)	31,285 (77.1)	3,557 (8.8)	1,787 (4.4)	2,750 (6.8)	19 (0.0)
2020	39,291 (100.0)	1,129 (2.9)	1,086 (2.8)	26 (0.1)	17 (0.0)	53 (0.1)	36,281 (92.3)	30,296 (77.1)	4,403 (11.2)	1,582 (4.0)	1,821 (4.6)	17 (0.0)
2021	38,546 (100.0)	1,148 (3.0)	1,116 (2.9)	22 (0.1)	10 (0.0)	65 (0.2)	36,027 (93.5)	29,264 (75.9)	5,272 (13.7)	1,491 (3.9)	1,294 (3.4)	10 (0.0)
2022	36,338 (100.0)	1,082 (3.0)	1,041 (2.9)	23 (0.1)	18 (0.0)	101 (0.3)	33,639 (92.6)	28,193 (77.6)	4,003 (11.0)	1,443 (4.0)	1,384 (3.8)	18 (0.0)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p.570-571.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96.

* 원자료: 법무부(2014~2023). 법무연감.

* 주 : 1) 실시사건 기준임.

2) 기타보호처분은 성매매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3) 단독명령은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함.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사회봉사명령은 5,570명으로, 이 가운데 보호관찰부 사회봉사명령은 3,675명으로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수강명령은 6 705명에게 부과되었으며, 이 중 4,185명이 보호관찰

부 수강명령을 받음으로써 전체 수강명령의 62.4%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연계된 경우가 약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명령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수강명령 부과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단독명령부 수강명령의 경우 2016년의 1,588명에 비해 2022년에는 2,520명으로 거의 1천 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IV-8-24.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6~2022년)

(단위 : 명)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2020	6,292	4,004	2,288	6,724	4,143	2,581
2021	6,763	4,220	2,543	7,488	4,333	3,155
2022	5,570	3,675	1,895	6,705	4,185	2,520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97-498.

* 원자료: 법무부(2015~2023). 법무연감.

* 주: 실시사건 기준임.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소년사건 처리인원 61,542명 가운데 기소유예는 15,439명이었으며, 이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가 1,824명으로 전체 기소유예 인원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소년사건 처리 인원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기소유예 인원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소년사건 처리 인원 중 기소유예 비율은 2015년 32%에서 2020년에 22%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소유예 인원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8.2%로 감소하였는데, 2022년에는 다시 1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2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

구분	소년사건 처리인원 (A)	기소유예 (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비율 (C/B×100)
2015	88,733	28,333	3,413	12.0
2016	82,277	26,558	3,409	12.8
2017	84,030	25,416	3,495	13.8
2018	75,150	20,237	3,031	15.0
2019	75,197	19,157	3,000	15.0
2020	72,344	15,952	1,315	8.2
2021	55,854	13,420	1,037	7.7
2022	61,542	15,439	1,824	11.8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6.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547.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77.

* 원자료: 대검찰청(2014~2023). 검찰연감.
 대검찰청(2014~2023). 범죄분석.

- * 주: 1) 처분 인원은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종국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수, 기소유예 인원은 한 해 동안 종국처분 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수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연도에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 원표상 범죄소년 중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범죄소년 수를 집계한 결과인 검찰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 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처분 인원 및 기소유예 인원 수와는 차이가 있음.
 2) 검찰청별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선도위탁 3가지 유형만 제시함.

보호관찰소에서의 선도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11,509명의 기소유예자 가운데 선도대상자는 1,023명으로 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자 대비 선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4%에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8-2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2년)

(단위 : 명)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2020	206,374	998	977	455	73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21	186,400	781	495	283	43
2022	211,509	1,023	767	278	35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9.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p.489.
 대검찰청(2023). 2023 검찰연감. p.451.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이 제공하는 노동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들의 월평균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월평균 19.6일, 근로시간은 154.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월평균 12.1일, 77.9시간을, 20~14세 청소년들은 월평균 17.1일, 12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들은 평균 19.6일, 160.8시간을 일한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19.6일, 146.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월평균 근로일 수에서는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약 14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2010년 이래 월평균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근로일수에 있어서는 2019년까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20일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수에 있어서는 근로일 수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근로일 수와 시간 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 IV-8-27.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2년)

(단위 : 일, 시간)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0	전 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5	전 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 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 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 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 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2020	전 체	20.7	163.6	20.7	169.5	20.8	155.0
	15-19세	12.9	81.6	13.1	87.0	12.7	77.5
	20-24세	18.2	135.7	18.5	143.2	18.0	130.7
2021	전 체	20.8	164.2	20.8	170.4	20.8	155.4
	15-19세	12.9	82.8	13.1	91.8	12.7	77.1
	20-24세	18.0	132.0	18.4	139.6	17.8	127.0
2022	전 체	19.6	154.9	19.6	160.8	19.6	146.7
	15-19세	12.1	77.9	12.3	86.8	11.9	71.3
	20-24세	17.1	129.0	17.4	135.5	16.9	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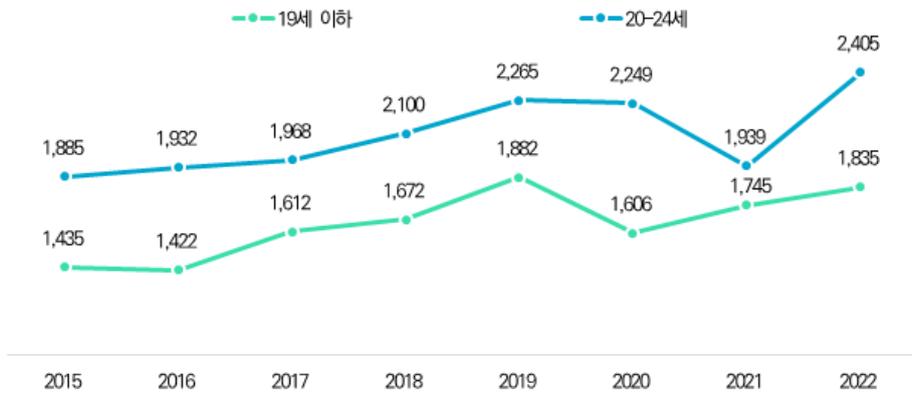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484.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25-426.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 주: 1) 근로일수 = 소정일근로일수 + 휴일일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일근로시간 + 초과일근로시간.
 3) 이전 년도의 수치는 최근 자료의 결과값으로 수정하였음.

②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청소년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 총액이 19세 이하는 1,835천원, 20~24세의 경우는 2,405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수준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을 전후로 나타나는 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 X IV.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 X IV.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 X IV.
 * 원자료: 고용노동부(2023).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주: 임금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단위: 천원).

그림 IV-8-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2015~2022년)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의 연령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때,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이며, 그 다음으로는 50~59세, 30~39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세 이하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9세의 시간당 임금은 60세 이상 집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29세 미만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9세 이하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즉, 40~49세의 경우 정규직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2.3% 수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50대가 73.1%, 30대가 76.5%로 나타났다. 반면에 19세 이하에서는 83.6%로 나타남으로써 19세 이하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이는 19세 이하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서 받는 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다른 연령대의 직업에 비해 가장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20년 이래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즉, 시간당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연령대별 차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도 연령대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28.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20~2023년)

(단위 : 원(%))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전체	19,316	19,806	22,651	22,878	20,731	21,230	24,409	24,799	15,015 (72.4)	15,482 (72.9)	17,233 (70.6)	17,586 (70.9)
19세 이하	10,149	10,651	11,478	11,600	11,631	11,746	13,148	13,445	9,808 (84.3)	10,359 (88.2)	11,014 (83.8)	11,246 (83.6)
20~29세	14,078	14,382	16,471	16,869	15,155	15,593	17,794	18,359	11,749 (77.5)	11,907 (76.4)	13,437 (75.5)	13,754 (74.9)
30~39세	19,708	20,185	22,986	23,580	20,343	20,803	23,770	24,481	16,029 (78.8)	16,593 (79.8)	18,427 (77.5)	18,725 (76.5)
40~49세	22,278	22,699	26,272	26,818	23,337	23,674	27,523	28,132	17,079 (73.2)	17,765 (75.0)	19,625 (71.3)	20,326 (72.3)
50~59세	21,312	21,952	25,135	25,374	22,845	23,395	26,923	27,182	16,777 (73.4)	17,425 (74.5)	19,358 (71.9)	19,878 (73.1)
60세 이상	16,419	17,073	18,901	18,876	17,920	18,703	20,905	20,744	14,647 (81.7)	15,105 (80.8)	16,575 (79.3)	17,054 (82.2)

* 출처: 고용노동부(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3.5).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4.4).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 주: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③ 청소년 실업률 추이

2023년 기준 15~19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5.5%이고, 15~24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5.8%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 2.7%의 약 2배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래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19세 청소년의 경우 2000년의 실업률이 14.5%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5.5%였고, 15~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10.8%에서 5.8%로 감소하였다. 물론 2000년은 IMF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실업률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15~19세 남자들의 실업률이 6.5%, 여자들은 4.7%였고, 15~24세의 남자들이 6.3%, 여자들은 5.3%로 남자들의 실업률이 여자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29.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3년)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계	계	4.4	3.7	3.7	3.6	4.0	3.7	2.9	2.7
	15~19세	14.5	12.3	11.9	10.6	8.7	8.7	6.5	5.5
	15~24세	10.8	10.2	9.7	10.5	10.5	8.5	7.1	5.8
남자	계	5.0	4.0	4.0	3.6	3.9	3.6	2.7	2.6
	15~19세	15.2	13.0	15.1	10.4	10.8	9.7	6.6	6.5
	15~24세	13.5	12.1	11.1	11.3	11.1	9.6	7.6	6.3
여자	계	3.6	3.4	3.3	3.5	4.0	3.8	3.1	2.8
	15~19세	13.8	11.7	9.6	10.7	7.1	8.0	6.4	4.7
	15~24세	9.1	8.9	8.9	10.0	10.1	7.8	6.7	5.3

* 출처: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 연령급간의 청소년 연령(15~19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고려한 연령급간(15~24세) 두 가지를 제시함.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 근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 처우 실태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4.8%인데 비해 읍면지역이 8.8%로 나타남으로써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부당 경험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3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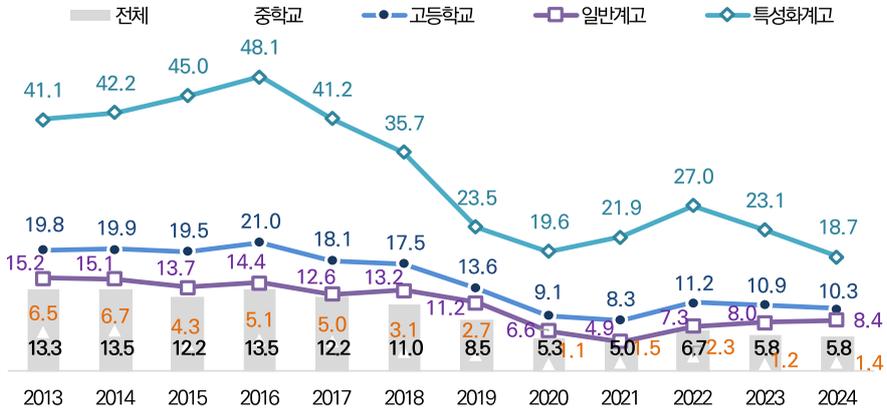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8	94.2	100.0(5,673)	1.728
성별	남학생	6.2	93.8	100.0(2,914)	
	여학생	5.4	94.6	100.0(2,759)	
학교급	중학교	1.4	98.6	100.0(2,875)	202.913***
	고등학교	10.3	89.7	100.0(2,799)	
지역 규모	대도시	4.8	95.2	100.0(2,207)	17.095***
	중소도시	5.7	94.3	100.0(2,701)	
	읍면지역	8.8	91.2	100.0(76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	94.8	100.0(5,061)	31.055***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한부모가정	10.3	89.7	100.0(507)	
	조손가정	12.4	87.6	100.0(40)	
	기타	13.8	86.2	100.0(51)	
학업 성적	상	2.7	97.3	100.0(1,688)	92.074***
	중	4.9	95.1	100.0(2,315)	
	하	10.2	89.8	100.0(1,653)	
경제적 수준	상	3.9	96.1	100.0(3,034)	82.898***
	중	6.3	93.7	100.0(2,032)	
	하	13.4	86.6	100.0(592)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급에 따른 아르바이트 부당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경우 2013년에 부당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3%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5.8%로 나타났으며, 2020년과 2021년의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기회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의 순으로 부당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성화계고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비율은 일반계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특성화계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2016년에 48.1%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아르바이트 부당경험과 관련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조사에서 18.7%가 부당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8-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13~2024년)

2024년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가 18.4%,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1%였으며,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3.3%,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31.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24년)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89.7	7.6	2.7	100.0(328)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81.6	12.9	5.5	100.0(327)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65.2	29.7	5.1	100.0(328)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93.9	5.5	0.6	100.0(328)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94.2	4.4	1.4	100.0(328)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90.3	7.5	2.2	100.0(32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97.4	1.4	1.2	100.0(325)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96.7	2.2	1.1	100.0(32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3.9	3.2	2.9	100.0(328)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당 경험 유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임금과 관련한 부당경험은 2011년의 17.3%에서 2024년에 10.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이후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들이 임금과 관련한 부당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학생들에 대한 근로권익과 관련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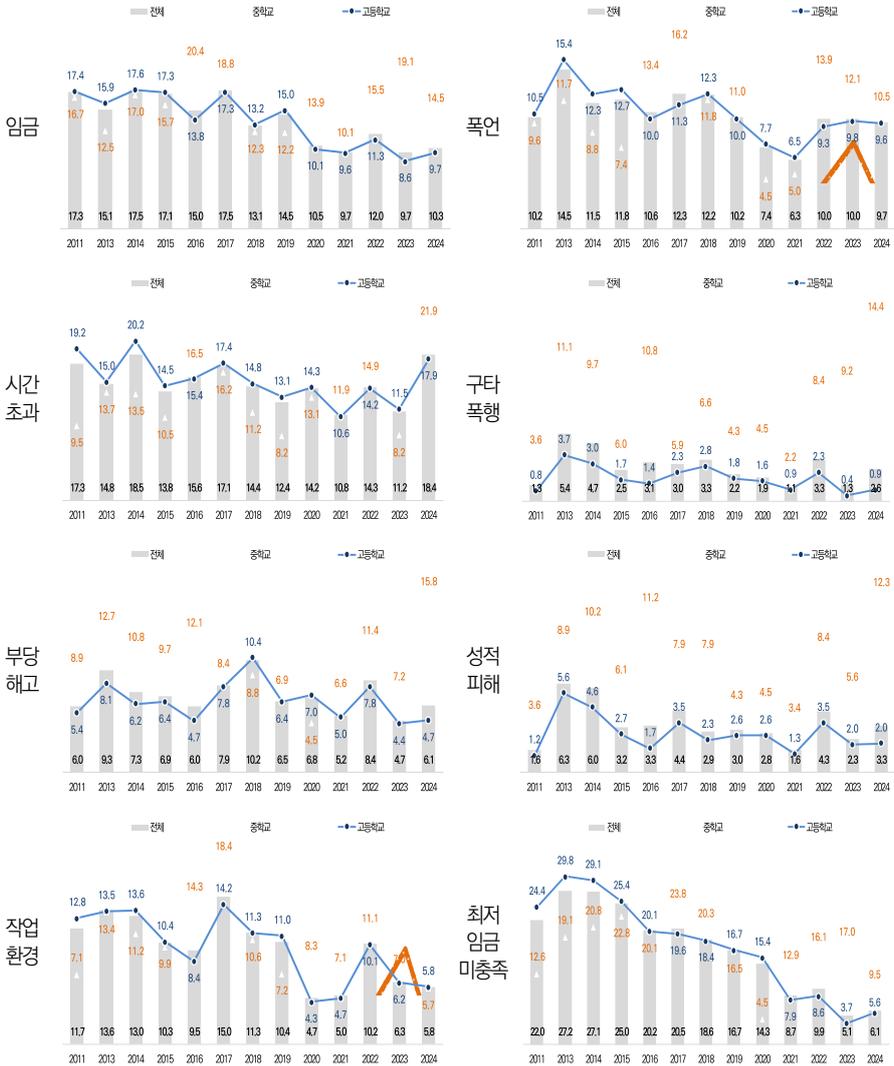
폭언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학생을 중심으로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초과와 관련한 부당경험은 2024년에 18.4%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1년 이해 별로 개선되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중학생들의 시간초과 경험이 고등학생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폭행 경험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이한 것은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4년에는 무려 14.4%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성적 피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타나 폭행, 성적 피해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구타나 폭행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학생들이 부당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이나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당경험 비율은 코로나19 관련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

한 경험을 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근로계약서 작성문항은 2021년까지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조사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로 변경 조사하여, 추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음

그림 IV-8-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11~2024년)

4) 성적 착취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총 6,972명이 접수되었으며, 처분된 경우는 6,86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원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988명으로 처리 인원 가운데 44% 수준이었고, 약식명령청구는 60명으로 0.9% 수준이었다. 반면에 불기소 처분한 경우는 684명으로 10% 수준이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처리인원이 36~44% 수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불기소 비율은 2019년에는 32%로 기소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후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소비율의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타관 이송 등의 기타 비율이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V-8-32.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22년)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2018	4,585	4,513	1,731	19	1,404	1,359
2019	4,468	4,521	1,642	21	1,468	1,390
2020	4,932	4,487	1,799	23	1,174	1,491
2021	5,715	6,071	2,487	49	573	2,962
2022	6,972	6,862	2,988	60	684	3,130

* 출처: 대검찰청(2018). 2018 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 2020 검찰연감. p.350.
 대검찰청(2021). 2021 검찰연감. p.373.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p.362.
 대검찰청(2023). 2023 검찰연감. p.328.

-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주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3) 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공판기소인원과 약식기소인원을 합한 인원이며, 불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인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합한 인원임. (기소인원과 불기소인원에 대한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지방검찰청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을 살펴보았다. 2023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은 9.0%로 나타났으며, 서울중앙지검의 구속률이 16.2%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검이 11.5%, 청주지검이 10.6%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5년 14.4%에서 2023년 9.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창원지검의 경우 2015년 구속률이 25.5%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8.6%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청주지검과 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1.5%에서 16.2%로, 부산지검이 같은 기간 동안 5.7%에서 11.5%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서부지검에서도 3.3%에서 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33.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3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4.4	12.5	11.9	10.9	9.3	10.5	9.3	9.3	9.0
서울중앙지검	11.5	12.5	11.2	10.4	6.0	9.2	5.2	6.5	16.2
서울동부지검	9.1	11.6	11.5	9.1	5.2	10.3	2.4	8.3	5.1
서울남부지검	9.2	9.3	6.7	9.9	3.8	10.5	4.8	5.4	4.5
서울북부지검	11.2	5.6	9.9	8.6	7.5	9.2	9.2	10.2	8.9
서울서부지검	3.3	7.7	9.1	6.0	3.6	15.2	6.5	4.2	6.3
의정부지검	16.1	7.6	9.2	10.2	6.0	5.6	9.4	6.8	9.7
청주지검	21.3	9.8	12.0	10.3	19.8	6.0	13.6	6.4	10.6
창원지검	25.5	18.7	12.5	14.8	9.2	8.8	7.8	10.1	8.6
부산지검	5.7	10.6	10.7	6.8	5.0	8.9	8.4	8.6	11.5

* 출처: 김진애 국회의원(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3.9.2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4.10.17.).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 * 주: 1) 관련 죄명(2021년 이전)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2) 관련 죄명(2021년~)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등, 위계등간음 추행, 성착취물제작 배포·소지등),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추행)
 3) 2021년 전후 관련 죄명의 차이 및 구속률 차이 산식(구속/처분계*100)에 포함되는 산정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구속률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율은 산정하지 않음.
 4) 2021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송치사건 포함, 송부사건(불송치, 수사중지) 미포함

(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국에 165개소의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성폭력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센터와 더불어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도 각각 39개소,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으며, 31개의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와 더불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도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122개의 가정폭력상담소와 65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위해 전국에 57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도 운영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시설을 통해 성폭력 및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IV-8-34.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2023년)

구분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65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5	성폭력 피해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년+1년 6월) • 장애인(2년+회복 시) • 특별지원(19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3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38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년+1년 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 까지+2년) 	생활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1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2년 	생활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시설
8	자활지원센터	13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31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3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생활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이용시설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122 (53)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 등)		이용시설
1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3개월 2회 연장)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 피해자		이용시설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56호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2년) 	생활시설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7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시설
17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지역특화상담소)	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등		이용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2024d).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4.

* 주: 2023년 12월 기준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하나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총 179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337,171건의 상담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심리·정서적 지원은 95,606건으로 전체 지원 내용의 5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수사 및 법적 지원, 의료지원, 기관 연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 163개소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179개소로 증가하여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상담 건수는 상담소 개소수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를 제외하면 수사·법적 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2013년 이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IV-8-35.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3년)

(단위 : 개소수,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개소수	169	154	159	167	167	170	168	169	163	168	179	
	상담건수	145,446	146,750	158,188	158,029	180,572	241,343	276,122	258,410	283,916	292,945	337,171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심리, 정서적 지원	건	48,473	46,414	57,469	65,178	68,352	92,293	77,925	75,797	87,157	86,326	95,606
		%	54	51	57	57	56	58	53	50	50	49	52
	수사, 법적 지원	건	15,921	15,944	14,760	16,614	15,736	20,795	22,331	30,387	30,556	31,707	32,281
		%	18	18	15	15	13	13	15	20	17	18	17
	의료 지원	건	5,227	5,652	5,760	6,326	6,304	8,290	8,473	9,904	14,111	13,698	15,846
		%	6	6	6	6	5	5	6	7	8	8	9
	기관 연계	건	2,076	890	1,199	1,747	3,317	4,371	7,063	6,874	8,809	8,222	8,783
		%	2	1	1	2	3	3	5	5	5	5	5
	기타	건	17,569	21,684	21,749	24,114	29,130	34,579	32,519	30,259	35,115	35,698	33,269
		%	20	24	22	21	24	22	22	20	20	20	18
	합계	건	89,208	90,584	100,937	113,979	122,839	160,328	148,311	153,221	175,748	175,651	185,78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1591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10.11.).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https://www.mogef.go.kr/io/ind/io_ind_s005d.do?mid=old919&bbtSn=30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 주: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시설입소 연계: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3) 기타: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 지원 등

2023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자 가운데 89.2%가 여성으로 8.6%의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받은 여성 가운데에는 20~64세의 성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4~19세의 청소년이 8.4%, 8~13세 어린이가 7.5%로 나타남으로써 8~19세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나타났다.

표 IV-8-36.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2023년)

(단위 : 명(%))

구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 (0.4)	366 (65.7)	47 (8.4)	42 (7.5)	18 (3.2)	22 (3.9)	497 (89.2)
남	-	34 (6.1)	7 (1.3)	3 (0.5)	-	4 (0.7)	48 (8.6)
기타	-	1 (0.2)	-	-	-	-	1 (0.2)
총계	2 (0.4)	405 (72.7)	55 (9.9)	46 (8.3)	18 (3.2)	31 (5.6)	557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4.3).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p.3.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7077>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 * 주: 1) 성별이 '미상'인 값은 제외함.
 2) 2023년 상담통계 기준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입소인원은 237명이었으며, 장애인은 138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입소 인원 가운데 13~18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25~64세는 30.8%, 19~24세는 27.9%로 나타남으로써 13~24세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64.5%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있어 보호시설은 매우 중요한 지원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13~24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50%이었으며, 25~64세 이하의 비율이 47.1%로 나타남에 따라 오히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 중요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3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7~2022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0	0.4	5.3	43.2	27.0	24.2	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0	0	1.7	31.2	34.7	32.4	0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0	0.7	4.9	43.3	25.0	25.7	0.4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0	0	2.4	29.3	31.1	36.6	0.6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0	0.3	5.2	43.6	24.8	25.8	0.3
	장애인	168	0	6	47	52	60	3
		100.0	0	3.6	28.0	31.0	35.6	1.8
2020	전체	295	1	16	114	88	66	10
		100.0	0.3	5.4	38.6	29.8	22.4	3.4
	장애인	166	0	4	46	48	59	9
		100.0	0.0	2.4	27.7	28.9	35.5	5.4
2021	전체	256	0	14	99	73	70	0
		100.0	0.0	5.5	38.7	28.5	27.3	0.0
	장애인	145	0	5	39	41	60	0
		100.0	0.0	3.4	26.9	28.3	41.4	0.0
2022	전체	237	0	11	86	66	73	1
		100.0	0.0	4.6	36.3	27.9	30.8	0.4
	장애인	138	0	4	31	38	65	0
		100.0	0.0	2.9	22.5	27.5	47.1	0.0

* 출처: 여성가족부(2023.9). 2022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https://www.mogef.go.kr/mp/po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99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심리·정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이 14.1%, 자립지원이 12.5%로 나타났고,

학교문제나 전학 등과 관련한 지원도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정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3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7~2022년)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0	48.7	1.2	8.9	8.3	11.0	21.7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0	52.1	1.1	7.4	9.0	14.1	16.4
2019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100.0	46.9	0.9	9.8	8.4	14.8	19.2
2020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100.0	44.3	0.8	11.0	9.8	12.2	21.8
2021	143,263	64,044	2,013	19,647	16,865	14,064	26,630
	100.0	44.7	1.4	13.7	11.8	9.8	18.6
2022	142,501	59,005	1,038	20,075	11,177	17,875	33,331
	100.0	41.4	0.7	14.1	7.8	12.5	23.4

* 출처: 여성가족부(2023.9). 2022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6.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99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1개의 상담소, 29개의 지원시설, 13개소의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에 3개 유형 시설을 합하여 76개소에서 2023년에 83개소로 약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건수는 2023년에 95,134건이었는데, 이는 2015년의 65,607건에 비해 29,527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2023년 입소이용인원은 905명, 자활지원인원은 78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5년의 입소이용인원 1,284명과 자활지원인원 829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입소나 자활 지원 등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8-39.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3년)

(단위 : 개,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담소	26	28	29	29	30	30	30	31	31
지원시설	40	39	39	40	40	40	40	39	39
자활지원센터	10	11	12	12	12	12	12	13	13
상담건수	65,607	64,198	60,322	65,241	61,554	88,672	92,742	89,887	95,134
입소이용인원	1,284	1,217	1,154	1,173	1,274	1,011	922	921	905
자활지원인원	829	910	929	883	920	922	832	782	780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	-	-	-	-	17	-	-

* 출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1592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시설 및 상담소가 위치한 17개 광역자치체의 보고를 통해 취득).

- * 주: 1) 누적 개념이 아니라 각 년도의 1년간 실적을 나타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숙식,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및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이 있으며 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은 전국 14개소 운영 중.
3)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이용시설인 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21년부터 개설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39,42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99.3%에 달하는 39,161건에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변호사 접수 현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접수된 건수 가운데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비율은 2015년부터는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접수 건수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선변호사를 신청한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33,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바라기센터가 4,286건, 검사가 1,930건으로 나타났고, 접수 건수 대비 국선변호사 지정 비율은 9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한 경우는 2014년 이후 5배 이상, 검사가 신청한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604건에서 1,93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해바라기센터의 경우에는 7,149건에서 4,286건으로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법기관에서의 국선변호사 신

청 건수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V-8-4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22년)

(단위 : 건(%))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4	14,310	13,363 (93.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481	6,479	2	64	63	1	786	786
2016	19,394	19,336 (99.7)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2017	20,048	19,903 (99.2)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18	22,859	22,755 (99.5)	14,940	14,866	74	7,011	6,981	30	52	52	-	856	856
2019	25,685	25,459 (99.1)	17,702	17,499	203	7,024	7,002	22	39	38	1	920	920
2020	26,102	26,007 (99.6)	19,201	19,107	93	5,723	5,722	1	38	38	-	1,140	1,140
2021	38,481	38,446 (99.9)	30,898	30,863	35	5,912	5,912	-	36	36	-	1,635	1,635
2022	39,422	39,161 (99.3)	33,188	32,932	256	4,286	4,281	5	18	18	-	1,930	1,930

* 출처: 법무연수원(2020). 2019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3). 2022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4). 2023 범죄백서. p.199.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 * 주: 1) '12. 3.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2) '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3) '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4) '20. 11.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가능.

5) 소결

본 절에서는 특별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 사범,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착취 및 성적 착취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년의 규모와 관련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난민 신청자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수준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전체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기에는 예전에 비해 규모가 급감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전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있다. 2024년 3월말 기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056명 가운데 10~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2%이고,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3%이었으며, 남성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의 222,455명에서 2022년에 299,440명으로 34.6%가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아동이 36.4%, 중고생이 27.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81,178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63.8%에 해당하는 115,639명이었으며, 중학생은 24.1%, 고등학생은 11.7%였으며,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다문화학생 수는 38,678명에서 181,178명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에 0.55%에서 2023년에는 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경우 2023년 기준 1,769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23.8%, 중학생은 29.0, 고등학생은 68.4%, 기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8.5%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7년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년 기준 15~19세 청소년들이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이상의 차별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30대 이상의 성인들에 비해 젊은 층의 차별 경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에 비해 2023년에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먼저 보호 및 위탁소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신수용인원의 경우 2011년의 9,642명에서 2023년에는 6,757명으로 약 30% 정도 감소하였으며, 소년원 수용인원의 경우 2012년의 3,399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용기간별로 1개월 미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용기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들의 범죄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의 경우 14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에는 18.1%로 증가한 반면,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범죄에 있어 어린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친화적 사법환경과 관련하여 최근 국선보조인의 조력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2015년부터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을 제외한 모든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율도 10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년원의 연도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용 정원을 감안한 수용률을 살펴보면,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가 9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교도소 처우불복 신청과 관련하여 2014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보호관찰의 경우 대상 인원은 2014년에 20,378명에서 2022년에 12,50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보호관찰 대상 인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44.2%에서 26.9%로 감소함으로써 전체 보호관찰 대상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명령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수강명령 부과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소년사건 처리 인원 중 기소유예 비율은 2015년 32%에서 2020년에 22%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8.2%로 감소하였는데, 2022년에는 다시 1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착취 현황과 관련하여 우선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 현황을 살펴본 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월평균 19.6일, 근로시간은 154.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월평균 12.1일, 77.9시간을, 20~24세 청소년들은 월평균 17.1일, 12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 일 수에서는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약 14시간 정도 더 많았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을 전후로 나타나는 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15~19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5.5%이고, 15~24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5.8%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 2.7%의 약 2배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3%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부당경험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아르바이트 부당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성화계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바이트 부당경험의 유형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와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1%였으며,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3.3%,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경우 2022년 총 6,972명이 접수되었으며, 처분된 경우는 6,862명이었고, 처분 대상에 대한 불기소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은 9.0% 수준이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비롯하여 성폭력 피해자, 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경우 2023년 기준 전국에 총 179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337,171건의 상담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13~18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25~64세는 30.8%, 19~24세는 27.9%로 나타남으로써 13~24세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64.5%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있어 보호시설은 매우 중요한 지원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1개의 상담소, 29개의 지원시설, 13개소의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입소나 자활 지원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접수 건수 대비 99.3%에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변호사 접수 현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접수된 건수 가운데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비율은 2015년부터는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접수 건수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일반논평(제25호, 제26호 관련 지표)¹⁵⁴⁾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및 역량

①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 인식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문항들은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짐 등이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주요 주체들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노력 정도는 정부(2.83점) > 게임 업체(2.58점) > 인터넷 업체(2.5점) 순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은 정부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게임 업체와 인터넷 업체와 같은 기업들의 보장 노력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교육 정도도 2.9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그림 IV-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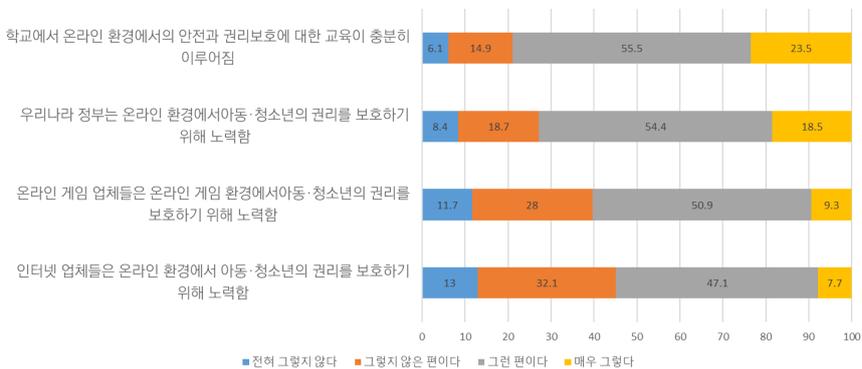


그림 IV-9-1.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기업, 학교의 노력 인식(2024년)

154)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5점 정도였다. 여학생(2.47점) 보다 남학생(2.52점)의 동의 정도가 높았고, 고등학생(2.41점)보다 중학생(2.58점)의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9-1).

표 IV-9-1.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1)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50(0.82)	13.0	32.1	47.1	7.7	100.0(5,753)	107.122***	
성별								
	남학생	2.52(0.87)	15.5	27.2	47.5	9.8	100.0(2,970)	
	여학생	2.47(0.75)	10.4	37.2	46.8	5.5	100.0(2,782)	
학교급							61.787***	
	중학교	2.58(0.81)	11.3	29.0	50.7	9.1		100.0(2,926)
	고등학교	2.41(0.82)	14.9	35.3	43.5	6.3	100.0(2,826)	
지역 규모							9.226	
	대도시	2.49(0.81)	13.3	32.1	47.4	7.2		100.0(2,233)
	중소도시	2.48(0.82)	13.7	32.1	46.4	7.8		100.0(2,736)
	읍면지역	2.57(0.79)	10.0	32.1	49.0	8.8	100.0(784)	
가족 유형							20.616*	
	양부모가정	2.50(0.81)	12.7	32.5	47.3	7.5		100.0(5,122)
	한부모가정	2.49(0.84)	14.7	29.9	47.2	8.2		100.0(512)
	조손가정	2.71(0.91)	10.7	26.7	43.2	19.3		100.0(45)
	기타	2.29(0.95)	25.9	27.4	38.4	8.3	100.0(53)	
학업 성적							16.985**	
	상	2.47(0.84)	14.3	32.7	44.3	8.7		100.0(1,703)
	중	2.52(0.79)	11.3	32.5	48.9	7.3		100.0(2,349)
	하	2.48(0.82)	14.1	30.9	47.6	7.3	100.0(1,682)	
경제적 수준							36.121***	
	상	2.52(0.83)	13.2	29.5	48.8	8.4		100.0(3,069)
	중	2.49(0.79)	11.4	35.2	46.2	7.2		100.0(2,068)
	하	2.37(0.84)	17.3	34.3	42.4	6.0	100.0(599)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58점이었다. 고등학생(2.51점)에 비해 중학생(2.65점)의 동의도가 높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2.60점)이 ‘하’인 집단(2.4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개인적 경험이나 어떠한 인식에 기인한 것인지는 더 심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표 IV-9-2).

표 IV-9-2.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2)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58(0.82)	11.7	28.0	50.9	9.3	100.0(5,751)	90.373***
성별							
남학생	2.59(0.87)	13.8	24.9	49.4	11.9	100.0(2,971)	59.971***
여학생	2.56(0.75)	9.5	31.3	52.6	6.6	100.0(2,780)	
학교급							5.837
중학교	2.65(0.81)	10.9	24.2	54.3	10.7	100.0(2,924)	
고등학교	2.51(0.81)	12.7	31.9	47.5	7.9	100.0(2,827)	16.595
지역 규모							
대도시	2.58(0.81)	11.7	27.7	51.3	9.3	100.0(2,233)	
중소도시	2.57(0.82)	12.3	27.6	51.0	9.1	100.0(2,734)	30.710***
읍면지역	2.61(0.80)	9.8	30.0	49.8	10.4	100.0(784)	
가족 유형							36.667***
양부모가정	2.58(0.81)	11.5	28.2	51.1	9.2	100.0(5,120)	
한부모가정	2.60(0.82)	11.7	26.5	52.4	9.5	100.0(512)	
조손가정	2.68(0.94)	10.9	32.1	35.1	21.9	100.0(45)	
기타	2.41(0.94)	20.6	28.8	39.5	11.1	100.0(53)	30.710***
학업 성적							
상	2.55(0.85)	12.8	29.7	46.6	10.8	100.0(1,703)	
중	2.60(0.78)	10.0	28.5	53.0	8.5	100.0(2,346)	36.667***
하	2.58(0.83)	13.0	25.5	52.5	9.0	100.0(1,684)	
경제적 수준							36.667***
상	2.60(0.83)	12.0	26.5	50.9	10.6	100.0(3,066)	
중	2.59(0.78)	10.2	28.8	52.9	8.1	100.0(2,068)	
하	2.44(0.83)	14.9	33.2	45.0	6.9	100.0(600)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83점이었다. 초등학생(3.17점)이 중학생(2.72점), 고등학생(2.58점)에 비해 더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2.93점)이 ‘하’인 집단(2.6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2.91점)이 ‘하’인 집단(2.5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IV-9-3).

표 IV-9-3.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3(0.82)	8.4	18.7	54.4	18.5	100.0(8,710)	79.552***	
성별								
	남학생	2.81(0.88)	10.7	17.9	51.7	19.8	100.0(4,484)	1015.897***
	여학생	2.85(0.77)	6.1	19.7	57.2	17.0	100.0(4,226)	
학교급							9.501	
	초등학교	3.17(0.75)	3.7	10.2	51.4	34.7		100.0(2,963)
	중학교	2.72(0.81)	10.2	19.4	58.1	12.3		100.0(2,921)
	고등학교	2.58(0.80)	11.6	27.0	53.6	7.8	100.0(2,826)	30.444***
지역 규모								
	대도시	2.82(0.83)	8.5	19.6	52.9	19.0	100.0(3,353)	
	중소도시	2.82(0.83)	8.8	18.4	54.9	17.9	100.0(4,144)	201.047***
	읍면지역	2.87(0.79)	7.0	17.5	56.6	18.8	100.0(1,213)	
가족 유형							194.476***	
	양부모가정	2.83(0.82)	8.1	18.9	54.5	18.5		100.0(7,791)
	한부모가정	2.77(0.83)	10.1	18.7	55.5	15.7		100.0(684)
	조손가정	2.84(0.87)	10.8	14.3	54.4	20.4		100.0(95)
	기타	2.86(1.03)	14.9	16.1	36.8	32.2	100.0(106)	201.047***
학업 성적								
	상	2.93(0.84)	7.5	16.6	51.2	24.7	100.0(3,346)	
	중	2.83(0.79)	7.5	19.0	56.7	16.7	100.0(3,447)	194.476***
	하	2.65(0.82)	11.9	22.0	55.4	10.7	100.0(1,887)	
경제적 수준							194.476***	
	상	2.91(0.83)	7.6	16.7	52.9	22.7		100.0(5,222)
	중	2.75(0.79)	8.6	21.3	56.8	13.2		100.0(2,737)
	하	2.58(0.82)	13.5	23.3	55.2	8.0	100.0(719)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96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3.32점) > 중학교(2.85점) > 고등학교(2.71점) 순으로 학교에서의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응답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떠한 현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IV-9-4).

표 IV-9-4.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6(0.79)	6.1	14.9	55.5	23.5	100.0(8,697)	27.637***
성별							
남학생	2.95(0.82)	7.3	14.7	53.8	24.1	100.0(4,473)	27.637***
여학생	2.98(0.76)	4.9	15.0	57.2	22.8	100.0(4,223)	
학교급							1156.323***
초등학교	3.32(0.70)	2.2	6.8	47.9	43.1	100.0(2,950)	
중학교	2.85(0.78)	7.8	15.6	60.4	16.2	100.0(2,920)	
고등학교	2.71(0.77)	8.6	22.5	58.3	10.6	100.0(2,827)	11.164
지역 규모							
대도시	2.97(0.80)	5.9	15.7	53.9	24.5	100.0(3,350)	
중소도시	2.96(0.80)	6.5	14.5	55.8	23.2	100.0(4,134)	11.164
읍면지역	2.96(0.77)	5.8	13.9	58.7	21.6	100.0(1,213)	
가족 유형							30.415***
양부모가정	2.97(0.78)	5.8	14.8	55.8	23.7	100.0(7,778)	
한부모가정	2.85(0.83)	8.5	17.1	55.0	19.4	100.0(684)	
조손가정	2.98(0.86)	7.5	15.2	48.8	28.4	100.0(93)	
기타	3.02(0.95)	9.8	13.7	40.9	35.6	100.0(106)	273.980***
학업 성적							
상	3.09(0.81)	5.3	12.4	50.5	31.8	100.0(3,336)	
중	2.95(0.75)	5.1	15.8	58.1	20.9	100.0(3,443)	273.980***
하	2.78(0.80)	9.3	17.6	59.4	13.7	100.0(1,889)	
경제적 수준							164.840***
상	3.04(0.78)	5.2	12.9	54.4	27.6	100.0(5,208)	
중	2.88(0.79)	6.9	17.1	57.5	18.5	100.0(2,737)	
하	2.73(0.82)	9.8	20.7	55.7	13.8	100.0(719)	164.840***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이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침해 걱정 정도 및 구제 방법 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주요 문항들은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됨,’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됨,’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됨,’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음’ 등이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온라인상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노출에 걱정하는 경우는 62.7%, 자신의 사진, 동영상 노출에 걱정하는 경우는 60.6%,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걸 걱정하는 경우는 40.1%였다. 온라인 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70%에 달하였으나 응답자 10명 중 1명꼴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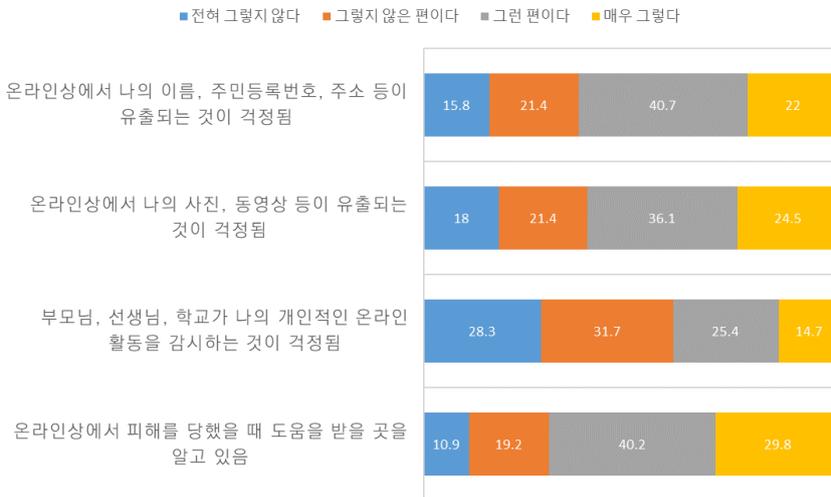


그림 IV-9-2.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침해 걱정 및 구제 방법 인지 여부(2024년)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69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2.82

점)이 남학생(2.57점)에 비해 걱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남학생은 57.3%, 여학생은 68.6%가 온라인상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에서도 고등학교(2.78점), 중학교(2.70점), 초등학교(2.59점) 순으로 걱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V-9-5).

표 IV-9-5.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9(0.99)	15.8	21.4	40.7	22.0	100.0(8,726)	181.742***	
성별								
	남학생	2.57(1.03)	20.7	22.0	37.1	20.2	100.0(4,492)	175.200***
	여학생	2.82(0.92)	10.7	20.7	44.6	24.0	100.0(4,234)	
학교급							8.185	
	초등학교	2.59(1.07)	21.8	20.9	34.1	23.2		100.0(2,972)
	중학교	2.70(0.97)	14.7	21.9	41.6	21.8		100.0(2,927)
	고등학교	2.78(0.90)	10.8	21.3	46.8	21.1	100.0(2,827)	35.784***
지역 규모	대도시	2.72(0.99)	15.3	20.6	40.6	23.4	100.0(3,359)	
	중소도시	2.67(0.98)	16.0	22.1	40.5	21.4	100.0(4,153)	
	읍면지역	2.66(0.98)	16.6	20.8	41.9	20.6	100.0(1,214)	42.78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0(0.98)	15.5	21.3	41.1	22.1	100.0(7,806)	
	한부모가정	2.69(0.99)	15.3	22.9	39.1	22.6	100.0(683)	
	조손가정	2.32(1.08)	29.9	24.2	29.5	16.4	100.0(95)	
	기타	2.44(1.13)	30.5	15.6	33.6	20.3	100.0(106)	25.019***
학업 성적	상	2.68(1.03)	18.0	20.2	38.1	23.7	100.0(3,349)	
	중	2.69(0.96)	15.1	21.6	43.1	20.3	100.0(3,454)	
	하	2.73(0.96)	13.3	23.1	41.1	22.5	100.0(1,892)	25.019***
경제적 수준	상	2.69(1.00)	16.7	20.5	40.0	22.8	100.0(5,231)	
	중	2.67(0.96)	15.1	23.0	41.8	20.1	100.0(2,741)	
	하	2.78(0.95)	12.1	21.5	42.2	24.2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67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도 남학생(2.54 점)에 비해 여학생(2.81점)이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남학생은 55%, 여학생은 68.6%가 온라인상에서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서 고등학교(2.74점), 중학교(2.70점), 초등학교(2.5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9-6).

표 IV-9-6.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7(1.04)	18.0	21.4	36.1	24.5	100.0(8,722)	183.031***	
성별								
	남학생	2.54(1.08)	23.1	21.8	32.5	22.5	100.0(4,491)	
	여학생	2.81(0.97)	12.5	21.0	39.8	26.7	100.0(4,232)	
학교급							228.105***	
	초등학교	2.58(1.13)	24.9	19.5	28.5	27.2		100.0(2,971)
	중학교	2.70(1.01)	16.0	22.0	37.9	24.0		100.0(2,923)
	고등학교	2.74(0.95)	12.8	22.8	42.1	22.4	100.0(2,828)	
지역 규모							10.814	
	대도시	2.71(1.04)	17.3	20.5	36.0	26.1		100.0(3,359)
	중소도시	2.65(1.03)	18.4	22.3	35.7	23.6		100.0(4,150)
	읍면지역	2.66(1.03)	18.4	20.7	37.6	23.3	100.0(1,214)	
가족 유형							27.786**	
	양부모가정	2.68(1.03)	17.7	21.4	36.1	24.7		100.0(7,802)
	한부모가정	2.67(1.01)	16.5	22.9	37.5	23.2		100.0(683)
	조손가정	2.48(1.11)	27.3	18.5	32.7	21.4		100.0(95)
	기타	2.39(1.17)	33.9	14.8	29.3	22.1	100.0(106)	
학업 성적							48.267***	
	상	2.67(1.08)	20.1	20.0	33.0	26.9		100.0(3,348)
	중	2.66(1.01)	17.3	22.2	38.0	22.4		100.0(3,452)
	하	2.71(1.00)	15.3	22.5	37.7	24.4	100.0(1,891)	
경제적 수준							44.190***	
	상	2.66(1.06)	19.4	20.8	34.4	25.4		100.0(5,229)
	중	2.66(1.00)	16.6	23.0	38.1	22.3		100.0(2,740)
	하	2.81(0.97)	12.7	20.2	40.1	27.1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26점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문항에 비해서는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난 편이나, 40%가량의 응답자는 여전히 걱정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2.21점)에 비해 여학생(2.33점)이, 초등학교(2.09점)에 비해 고등학교(2.29점), 중학교(2.42점)의 걱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V-9-7).

표 IV-9-7.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26(1.03)	28.3	31.7	25.4	14.7	100.0(8,722)	41.241***	
성별								
	남학생	2.21(1.03)	31.2	30.7	24.6	13.5	100.0(4,491)	
	여학생	2.33(1.02)	25.1	32.7	26.3	15.9	100.0(4,231)	
학교급							271.131***	
	초등학교	2.09(1.06)	38.3	27.7	20.0	13.9		100.0(2,969)
	중학교	2.42(1.02)	22.1	31.4	29.2	17.3		100.0(2,926)
	고등학교	2.29(0.97)	24.0	36.1	27.1	12.8	100.0(2,827)	
지역 규모							22.694***	
	대도시	2.31(1.05)	28.1	29.8	25.5	16.6		100.0(3,360)
	중소도시	2.23(1.01)	28.9	32.3	25.3	13.5		100.0(4,150)
	읍면지역	2.26(1.00)	26.4	34.5	25.6	13.5	100.0(1,213)	
가족 유형							22.707**	
	양부모가정	2.27(1.02)	28.0	31.7	25.6	14.6		100.0(7,801)
	한부모가정	2.30(1.04)	27.4	31.5	24.8	16.3		100.0(683)
	조손가정	2.18(1.00)	30.5	32.4	25.2	11.8		100.0(95)
	기타	1.86(0.97)	47.1	27.7	17.8	7.4	100.0(106)	
학업 성적							61.370***	
	상	2.22(1.06)	31.8	29.6	23.2	15.3		100.0(3,347)
	중	2.25(1.01)	27.6	33.2	25.7	13.5		100.0(3,453)
	하	2.37(1.00)	23.1	32.5	28.9	15.5	100.0(1,891)	
경제적 수준							83.229***	
	상	2.21(1.04)	31.1	30.9	23.4	14.6		100.0(5,228)
	중	2.30(0.99)	24.7	33.6	28.1	13.5		100.0(2,740)
	하	2.48(1.03)	20.8	29.6	30.1	19.6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89점으로 ‘도움 받을 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비율로 환산하면 70% 가량의 응답자가 도움 받을 곳을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10명 중 1명의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0.9%)’고 응답하여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8).

표 IV-9-8.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9(0.95)	10.9	19.2	40.2	29.8	100.0(8,723)	81.379***	
성별								
	남학생	2.85(1.00)	13.5	18.5	37.4	30.6	100.0(4,489)	291.316***
	여학생	2.93(0.90)	8.1	19.9	43.2	28.9	100.0(4,235)	
학교급							23.095***	
	초등학교	2.99(1.03)	12.9	14.9	32.9	39.3		100.0(2,973)
	중학교	2.88(0.93)	10.1	19.4	42.6	27.9		100.0(2,923)
	고등학교	2.79(0.89)	9.5	23.4	45.5	21.7	100.0(2,827)	26.987**
지역 규모								
	대도시	2.94(0.94)	9.9	18.2	40.3	31.6	100.0(3,359)	
	중소도시	2.88(0.96)	11.0	19.8	39.8	29.4	100.0(4,152)	97.073***
	읍면지역	2.80(0.97)	13.3	19.5	41.3	25.9	100.0(1,212)	
가족 유형							138.468***	
	양부모가정	2.90(0.95)	10.5	18.9	40.7	29.9		100.0(7,801)
	한부모가정	2.81(0.98)	12.3	22.3	37.8	27.6		100.0(684)
	조손가정	2.79(1.10)	17.9	19.0	29.8	33.3		100.0(95)
	기타	2.71(1.10)	19.8	19.5	30.2	30.5	100.0(106)	97.073***
학업 성적								
	상	2.98(0.96)	10.1	16.9	37.8	35.3	100.0(3,348)	
	중	2.87(0.93)	10.1	20.1	42.4	27.4	100.0(3,453)	138.468***
	하	2.76(0.97)	13.4	21.5	40.6	24.5	100.0(1,891)	
경제적 수준							138.468***	
	상	2.95(0.97)	10.8	16.9	38.5	33.8		100.0(5,228)
	중	2.81(0.91)	10.6	21.4	44.7	23.2		100.0(2,741)
	하	2.75(0.97)	11.9	26.8	35.7	25.6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2) 기후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1) 기후 환경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노력

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를 조사하였다. 주요 문항들은 ‘나는 평소에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다,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등이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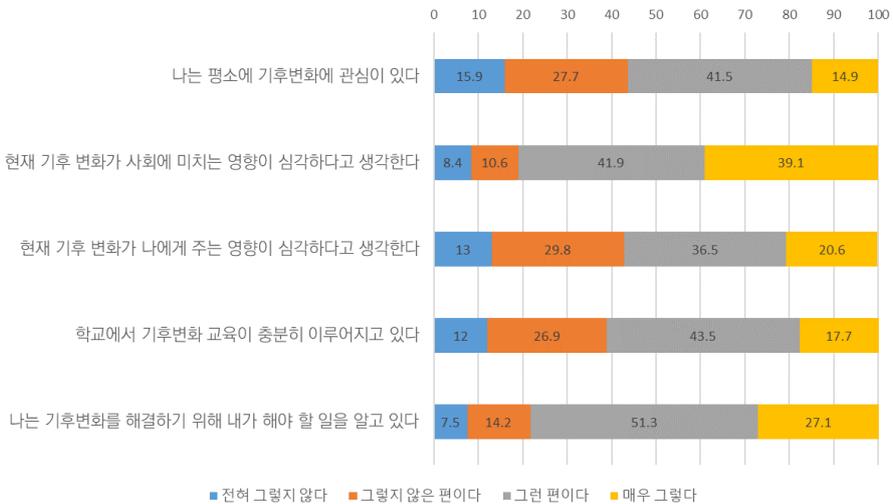


그림 IV-9-3.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2024년)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55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2.65점), 초등학교(2.58점), 중학교(2.43점) 순이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인 그룹(2.71점)에 비해 ‘중’(2.51점)인 그룹과 ‘하’인 그룹(2.35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표 IV-9-9).

표 IV-9-9.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55(0.93)	15.9	27.7	41.5	14.9	100.0(8,734)		
성별	남학생	2.52(0.96)	18.0	27.4	39.4	15.2	100.0(4,496)	34.121***
	여학생	2.59(0.90)	13.8	28.0	43.7	14.5	100.0(4,238)	
학교급	초등학교	2.58(0.96)	16.7	25.5	41.0	16.9	100.0(2,979)	108.764***
	중학교	2.43(0.93)	18.5	31.7	37.8	12.0	100.0(2,928)	
	고등학교	2.65(0.89)	12.5	25.9	45.8	15.8	100.0(2,827)	
지역 규모	대도시	2.63(0.93)	14.1	26.3	42.3	17.3	100.0(3,362)	39.322***
	중소도시	2.51(0.93)	17.3	28.4	40.9	13.5	100.0(4,155)	
	읍면지역	2.51(0.92)	16.7	29.2	41.2	13.0	100.0(1,2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7(0.93)	15.7	27.3	41.9	15.2	100.0(7,812)	21.733**
	한부모가정	2.45(0.92)	17.9	30.9	39.6	11.6	100.0(684)	
	조손가정	2.38(0.93)	18.0	39.0	30.2	12.8	100.0(95)	
	기타	2.48(1.00)	20.3	27.4	36.0	16.2	100.0(106)	
학업 성적	상	2.71(0.93)	12.6	24.0	43.0	20.4	100.0(3,352)	219.481***
	중	2.51(0.90)	16.0	29.4	42.5	12.1	100.0(3,459)	
	하	2.35(0.93)	21.8	31.1	36.9	10.2	100.0(1,892)	
경제적 수준	상	2.59(0.93)	15.5	26.2	42.4	15.9	100.0(5,236)	27.393***
	중	2.50(0.92)	16.4	30.4	40.2	13.0	100.0(2,743)	
	하	2.51(0.95)	17.5	28.6	39.0	15.0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3.12점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81%가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3.03점)과 중학생(3.08점)에 비해 고등학생(3.25점)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3.19점) 지역이 읍면지역(3.05점)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IV-9-10).

표 IV-9-10.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2(0.90)	8.4	10.6	41.9	39.1	100.0(8,721)	55.654***	
성별								
	남학생	3.05(0.94)	9.7	12.2	41.3	36.8	100.0(4,492)	145.634***
	여학생	3.19(0.86)	6.9	9.0	42.6	41.5	100.0(4,229)	
학교급							44.491***	
	초등학교	3.03(0.97)	10.3	14.3	37.8	37.6		100.0(2,968)
	중학교	3.08(0.91)	9.0	10.3	44.1	36.7		100.0(2,927)
	고등학교	3.25(0.82)	5.6	7.2	44.1	43.1	100.0(2,826)	86.336***
지역 규모	대도시	3.19(0.87)	7.1	8.9	41.7	42.3	100.0(3,355)	
	중소도시	3.08(0.92)	9.2	11.2	42.4	37.2	100.0(4,150)	
	읍면지역	3.05(0.93)	9.2	13.3	41.0	36.5	100.0(1,216)	116.08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0.90)	7.9	10.3	41.7	40.1	100.0(7,800)	
	한부모가정	2.99(0.91)	10.2	11.7	47.1	30.9	100.0(684)	
	조손가정	2.73(1.02)	13.5	28.3	29.9	28.3	100.0(95)	
	기타	2.76(1.11)	19.9	16.3	31.4	32.4	100.0(106)	37.299***
학업 성적	상	3.24(0.87)	6.5	9.3	38.3	45.9	100.0(3,347)	
	중	3.06(0.91)	9.2	11.6	43.7	35.5	100.0(3,453)	
	하	3.02(0.92)	10.1	11.3	45.0	33.6	100.0(1,891)	37.299***
경제적 수준	상	3.13(0.92)	8.6	10.7	39.8	40.9	100.0(5,226)	
	중	3.08(0.88)	8.1	10.7	46.2	35.0	100.0(2,743)	
	하	3.17(0.89)	7.5	9.8	40.8	41.9	100.0(720)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65점이었다. 여학생(2.70점)이 남학생(2.60점)에 비해 기후변화가 자신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고등학생(2.80점)이 중학생(2.65점)과 초등학생(2.50점)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IV-9-11).

표 IV-9-11.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5(0.95)	13.0	29.8	36.5	20.6	100.0(8,699)	46.878***	
성별								
	남학생	2.60(0.97)	15.4	29.5	35.1	20.0	100.0(4,483)	
	여학생	2.70(0.92)	10.5	30.1	38.0	21.4	100.0(4,216)	
학교급							203.638***	
	초등학교	2.50(0.99)	17.6	33.7	29.4	19.3		100.0(2,960)
	중학교	2.65(0.94)	12.8	29.5	37.7	19.9		100.0(2,920)
	고등학교	2.80(0.89)	8.5	25.9	42.7	22.8	100.0(2,819)	
지역 규모							32.707***	
	대도시	2.72(0.95)	11.6	28.2	37.2	23.0		100.0(3,350)
	중소도시	2.59(0.95)	14.4	31.0	35.8	18.8		100.0(4,140)
	읍면지역	2.65(0.94)	12.5	30.1	37.2	20.3	100.0(1,209)	
가족 유형							39.208***	
	양부모가정	2.66(0.95)	12.7	29.5	36.6	21.2		100.0(7,786)
	한부모가정	2.57(0.93)	13.7	32.4	37.1	16.8		100.0(6,776)
	조손가정	2.37(0.91)	18.0	38.2	32.7	11.1		100.0(94)
	기타	2.36(1.08)	28.0	26.2	27.3	18.5	100.0(106)	
학업 성적							57.897***	
	상	2.72(0.97)	12.1	29.0	34.2	24.7		100.0(3,344)
	중	2.60(0.93)	13.4	30.7	38.2	17.7		100.0(3,441)
	하	2.61(0.95)	14.1	29.7	37.4	18.8	100.0(1,883)	
경제적 수준							24.117***	
	상	2.65(0.97)	13.5	29.4	35.3	21.8		100.0(5,213)
	중	2.62(0.92)	12.5	31.4	37.7	18.4		100.0(2,736)
	하	2.70(0.93)	12.0	26.6	40.5	20.9	100.0(716)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6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초등학생(3.01점)이 고등학생(2.38점)에 비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업성적도 ‘상’인 그룹(2.78점)이 ‘하’인 그룹(2.46점)에 비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였고, 경제적 수준도 ‘상’인 그룹(2.75점)이 ‘하’인 그룹(2.36점)에 비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9-12).

표 IV-9-12.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7(0.90)	12.0	26.9	43.5	17.7	100.0(8,697)	13.770**	
성별								
	남학생	2.67(0.92)	12.9	25.5	43.4	18.3	100.0(4,479)	
	여학생	2.66(0.89)	11.1	28.3	43.6	17.0	100.0(4,217)	
학교급							815.574***	
	초등학교	3.01(0.85)	6.7	15.6	48.0	29.7		100.0(2,952)
	중학교	2.60(0.89)	12.9	28.2	44.4	14.5		100.0(2,919)
	고등학교	2.38(0.86)	16.7	37.3	37.7	8.3	100.0(2,826)	
지역 규모							11.754	
	대도시	2.70(0.91)	11.3	26.5	43.0	19.3		100.0(3,349)
	중소도시	2.64(0.90)	12.7	26.9	43.8	16.7		100.0(4,138)
	읍면지역	2.65(0.90)	12.0	27.8	43.6	16.7	100.0(1,210)	
가족 유형							25.445**	
	양부모가정	2.68(0.90)	11.8	26.8	43.6	17.9		100.0(7,781)
	한부모가정	2.59(0.89)	13.4	28.2	44.2	14.1		100.0(681)
	조손가정	2.65(0.91)	10.8	32.2	38.3	18.7		100.0(95)
	기타	2.65(1.09)	21.0	19.5	32.4	27.0	100.0(105)	
학업 성적							193.445***	
	상	2.78(0.92)	10.2	24.6	42.0	23.2		100.0(3,336)
	중	2.67(0.87)	11.3	26.1	46.9	15.6		100.0(3,443)
	하	2.46(0.90)	16.6	32.2	39.6	11.5	100.0(1,887)	
경제적 수준							164.053***	
	상	2.75(0.91)	10.7	24.8	43.6	20.9		100.0(5,215)
	중	2.60(0.88)	12.6	28.8	45.0	13.6		100.0(2,730)
	하	2.36(0.90)	19.4	34.6	36.8	9.2	100.0(72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서 2.98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3.04점)이 남학생(2.92점)에 비해 더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3.13점), 중학교(2.92점), 고등학교(2.89점) 순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9-13).

표 IV-9-13.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2024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84)	7.5	14.2	51.3	27.1	100.0(8,709)	60.252***	
성별								
	남학생	2.92(0.88)	9.3	15.3	49.4	25.9	100.0(4,484)	60.252***
	여학생	3.04(0.80)	5.6	12.9	53.3	28.2	100.0(4,225)	
학교급							375.403***	
	초등학교	3.13(0.89)	7.4	12.0	41.2	39.4		100.0(2,959)
	중학교	2.92(0.83)	8.3	13.7	55.8	22.2		100.0(2,926)
	고등학교	2.89(0.79)	6.8	16.8	57.2	19.2	100.0(2,825)	
지역 규모							18.601**	
	대도시	3.03(0.82)	6.3	13.4	51.6	28.6		100.0(3,349)
	중소도시	2.95(0.86)	8.4	14.4	51.1	26.1		100.0(4,148)
	읍면지역	2.96(0.84)	7.5	15.2	51.2	26.1	100.0(1,212)	
가족 유형							67.570***	
	양부모가정	3.00(0.83)	7.0	13.7	51.9	27.4		100.0(7,789)
	한부모가정	2.83(0.89)	10.8	17.0	50.2	22.0		100.0(683)
	조손가정	2.87(0.95)	9.2	24.6	36.8	29.5		100.0(95)
	기타	2.81(1.11)	17.8	18.8	28.2	35.2	100.0(106)	
학업 성적							228.127***	
	상	3.13(0.81)	5.2	11.8	48.3	34.8		100.0(3,342)
	중	2.94(0.83)	7.7	14.6	53.9	23.8		100.0(3,448)
	하	2.79(0.88)	11.3	17.5	51.9	19.4	100.0(1,888)	
경제적 수준							105.307***	
	상	3.03(0.85)	7.3	12.9	49.0	30.8		100.0(5,219)
	중	2.90(0.82)	7.8	15.2	56.0	21.0		100.0(2,738)
	하	2.89(0.85)	7.8	19.1	49.5	23.6	100.0(719)	

* $p < .05$, ** $p < .01$, ***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환경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보장 인식에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해 별도의 문항을 추가하여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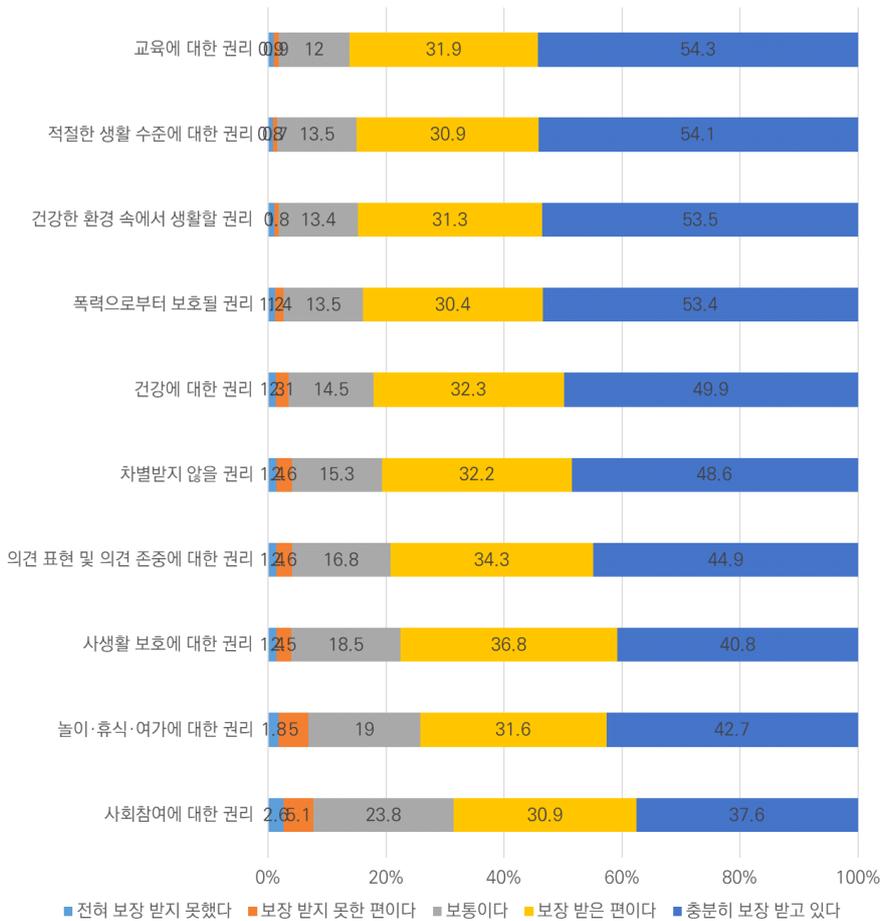


그림 IV-9-4.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정도(2024년)

각 권리의 ‘보장 받고 있다’(‘보장받는 편이다’+‘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 응답 비율의 합계) 순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권리(86.2%),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85%),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84.8%),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83.8%), 건강에 대한 권리(82.2%), 차별받지 않을 권리(80.8%),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79.2%),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77.6%),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74.3%),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68.5%)로 나타났다.

각 권리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보장 받지 못한 편이다')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1.8%에 불과하였다. 반면 놀이에 대한 권리는 6.8%,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는 7.7%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들 중 가장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고 있다'가 84.8%로 높은 편이었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가 1.8%에 불과하였다. 환경권에 대한 보장 정도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향후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인식 정도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기후변화와 이와 연관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 관련 문항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직 조사의 초기에 불과하여 정교한 상황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웠으나, 아동·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보장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진, 동영상 등)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이는 여자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금 당장의 거시사회적 변화가 아동·청소년들 모두를 위협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차등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제5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 1. 심층분석 개요
- 2.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 추이와 인권보장 수준
- 3.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
- 4.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
- 5.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1. 심층분석 개요¹⁵⁵⁾

이 장에서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생각,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사회적 고립 대응으로 현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이 주제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에서 두드러지는 이슈(자살, 자해, 다중 취약성, 고립)와 오래된 문제이지만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슈(청소년 노동)로 구성하였다. 이 중 중첩된 취약성과 청소년 노동은 2023년 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층 연구이다. 최근 네 가지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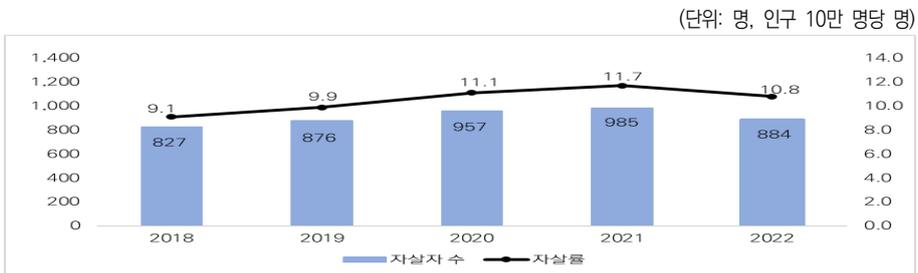
첫째, 최근 아동·청소년의 자살과 자해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심층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생각 변화추이와 인권보장수준에 관한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를 통해 개선이 촉구된 자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년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고, 유사 아동·청소년 자살 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지닌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에 관한 연구 II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로 살펴볼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질적연구를 통해 접근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인권 취약성이 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이라는 주제를 2023년에 이어 다루어보고자 한다. 셋째,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방안 II 역시 2023년에 이어 진행되는 심층 연구로 기존 연구들이 노동시장 안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권 보장이 규제나 금지와

155)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사회적 고립과 외로움)는 2023년 본 연구에서 처음 조사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지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디지털화로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 추이와 인권보장 수준¹⁵⁶⁾

아동·청소년 자살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과거보다 꽤 자주, 우리는 참혹하면서 안타까운 아동·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곤 한다. 2024년 발간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9세~24세) 자살자의 수는 총 884명(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2년 조금 감소하였다(그림 V-2-1;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살은 일부 특정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문제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4). 2024 자살예방백서. p.39. (통계청, 2018~2022년 사망원인통계) <https://www.kfsp.or.kr/home/kor/board.do?menuPos=82&act=detail&idx=4818&searchValue1=0&searchKeyword=&pageIndex=1#none> 에서 2024년 9월 10일 다운로드 받아 발췌.

그림 V-2-1. 9~24세 청소년의 2018~2022년 자살 현황 추이

156) 이 절은 서고운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아동 자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살 문제에 대한 우려와 예방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이로 인한 수면 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자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뿐 아니라, 이를 통한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취약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심층분석은 아래의 세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 생각 여부의 시간적 변화 추이를 성별,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경제적 수준별, 학업성적별로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자살 생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으며, 2023년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하여 2013년 이후의 자살 생각 여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심층분석에는 2023년 수행한 전반적인 시간적 변화 추이 탐색에 더하여, 성별, 학교급별 등의 집단별 시간 추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집단별 자살 생각 여부 추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매해 새로운 표집으로 진행되는 반복 횡단조사인 만큼, 매해 결과가 다른 참여자 응답의 결과이고, 이에 따라 집단별 분석 샘플수(N)가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2013년 이후 조사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살 생각을 변화 추이,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살 시도를 변화 추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실제 자살률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자살과 관련된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실제 자살로 인한 사망 등은 그 과정이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이러한 여러 차원을 한 조사에서 같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심층분석에서는 여러 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자살 생각을,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을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자살 생각을,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사망원인통계도 10대의 청소년을 응답자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세 종류의 조사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뿐 아니라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권보장수준 상황을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탐색해 왔는데, 그러한 요인은 크게 개인요인(예: 우울증 등), 가족요인(예: 부모의 학대 등), 학교요인(예: 학교 폭력 등)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윤소현, 2023). 일부 연구에서는 학교 요인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이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김기환, 전명희, 2000), 개인적인 요인을 제외한 가족, 학교, 사회적 요인들을 통틀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서고은,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반복 횡단조사로, 아동·청소년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과 실제 자살 생각과의 인과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살 생각 유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카이제곱검정),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상황을 탐색하였다. 본 심층분석에서 살펴본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권 관련 변인은 아래 표 V-2-1과 같다. 문항에 따라 크게 개인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개인요인으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운동 실천율, 수면시간 및 수면부족 여부를 포함하는 신체적 건강, 우울감, 외로움, 자아존중감, 고립감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건강, 행복도,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였다.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가정 내 방임 정도 등을 포함하는 가족 요인,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등을 포함하는 학교 요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성적 피해 경험률을 포함하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표 V-2-1.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권보장수준 상황 분석 시 활용한 변인

영역	조사내용	문항
개인요인 ¹⁵⁷⁾	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운동 실천율 • 수면시간, 수면부족 여부
	정신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감 • 외로움 • 자아존중감 • 고립감, 고립기간 •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 • 삶의 만족도
사회·환경요인	가족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체벌, 모욕적인 말·육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방임 정도(아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질병 무관심, 결석 시 방치, 결석 무관심) • 가출 경험 여부
	학교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체벌, 모욕적인 말·육설) • 친구, 선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육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생각 여부 • 학교생활 만족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 성적 피해 경험률 	

위와 같이, 본 절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와 유사 통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57) 개인요인의 조사내용은 '표 III-2-1. 202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소분류) 체계'를 따라 정리하였음

1) 자살 생각 변화 추이: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적 수준별(2013~2023년)¹⁵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자살 생각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적 수준별, 학업성적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2-2),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항상 여학생의 자살 생각률이 남학생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높은 자살 생각률을 보였고(남학생: 28.9%, 여학생 45.8%), 남학생은 2020년에 가장 낮은 자살 생각률(19.6%)을, 여학생은 2015년에 가장 낮은 자살 생각률(33.6%)를 보였다.



그림 V-2-2. 성별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다음으로 학교급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2-3), 2013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살 생각률 모두 36.9%로 동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 고등학생의 자살 생각률이 중학생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다가, 2023년 처음으로 중학생의 자살 생각률(32.1%)이 고등학생의 자살 생각률(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15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40201N_015&conn_path=I3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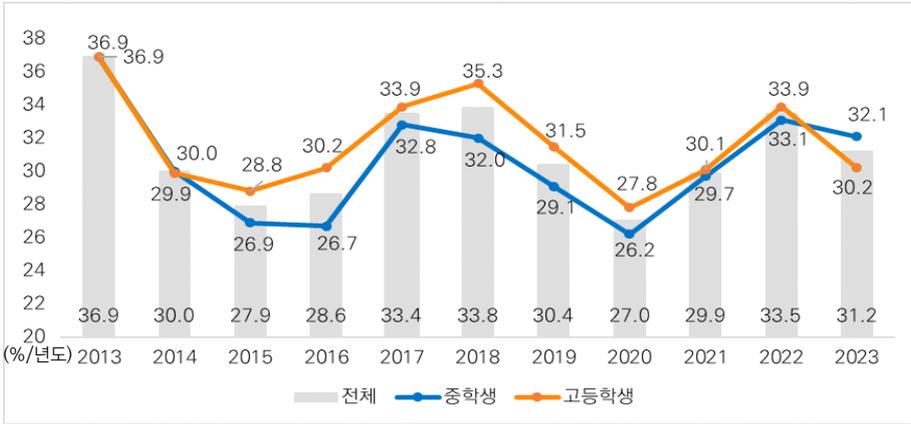


그림 V-2-3. 학교급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지역 규모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2-4),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도시의 자살 생각률이 가장 높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소도시의 자살 생각률이 가장 높았다. 2020년 이후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순서를 바꾸어가며 가장 높은 자살 생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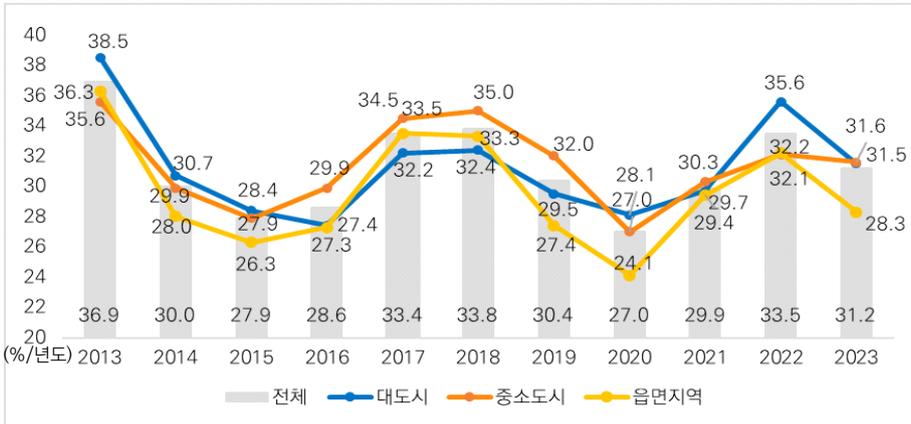


그림 V-2-4. 지역 규모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2-5)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경제적수준이 ‘하’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이, ‘상’, ‘중’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았으며, ‘상’과 ‘중’ 집단의 자살 생각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중’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이 ‘상’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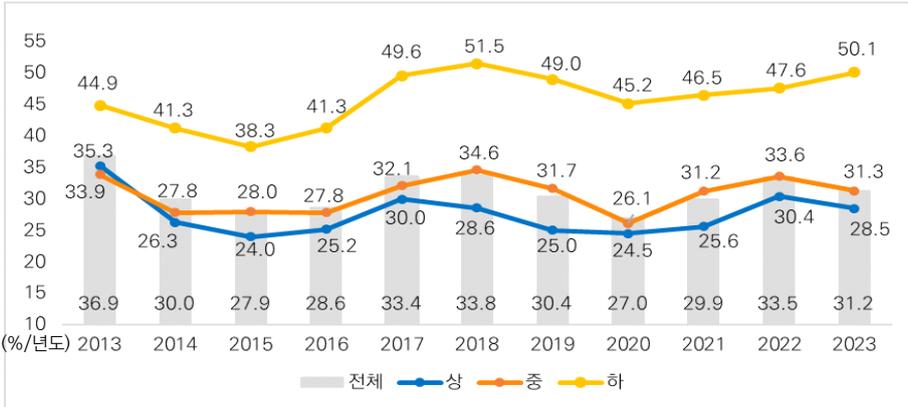


그림 V-2-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학업성적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2-6),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이 ‘상’, ‘중’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보다 항상 높았으며, ‘상’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과 ‘중’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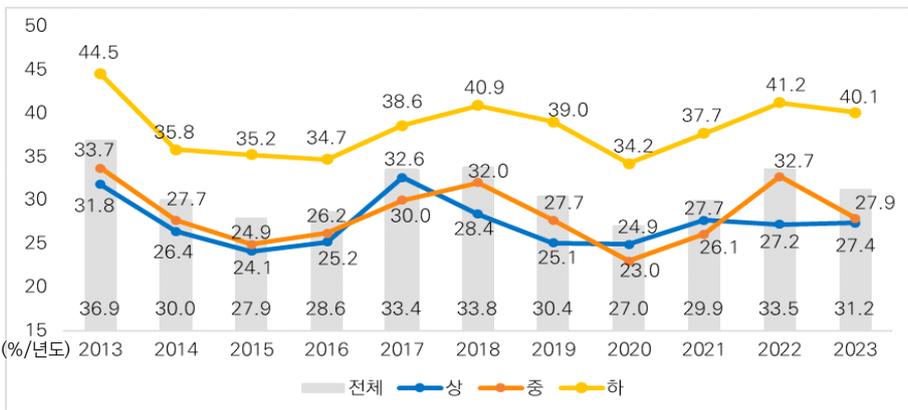


그림 V-2-6. 학업성적에 따른 연도별 자살 생각 추이

2) 자살 생각률¹⁵⁹⁾, 자살 시도율¹⁶⁰⁾, 실제 자살률¹⁶¹⁾ 변화 추이(2013~2022)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살 생각률,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살 시도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실제 자살률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그림 V-2-7).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실제 자살률은 15~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백분율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자살률은 십만명당의 비율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자살 생각률은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보다 연도별 변화의 폭이 다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보다 훨씬 높았다. 자살 시도율은 자살 생각률처럼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의 연도별 증감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예: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감소,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증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감소,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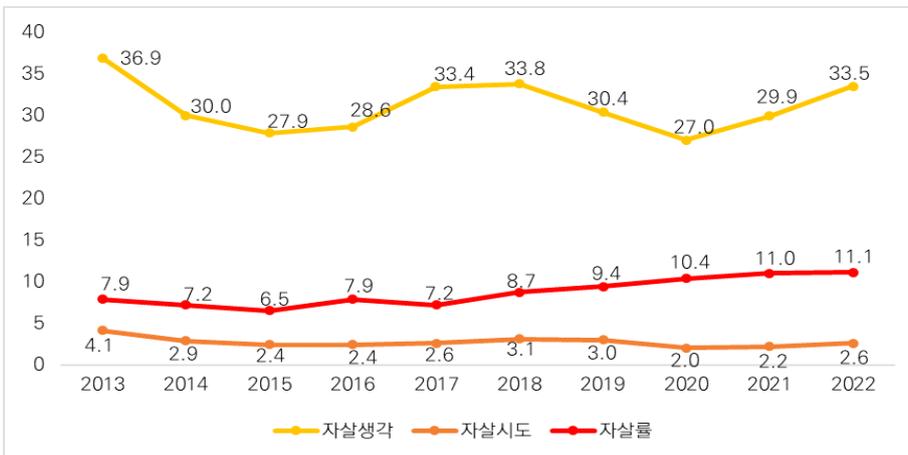


그림 V-2-7.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연도별 추이(전체)

*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백분율이지만, 실제 자살률은 십만명당의 비율임.

*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자살률은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15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40201N_015&conn_path=I3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였음

160)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살 시도율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71&conn_path=I3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였음

16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실제 자살률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3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였음

자살 생각을,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을 남자(그림 V-2-8), 여자(그림 V-2-9)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의 경우,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이 남자에 비해 높은 반면, 실제 자살률은 남자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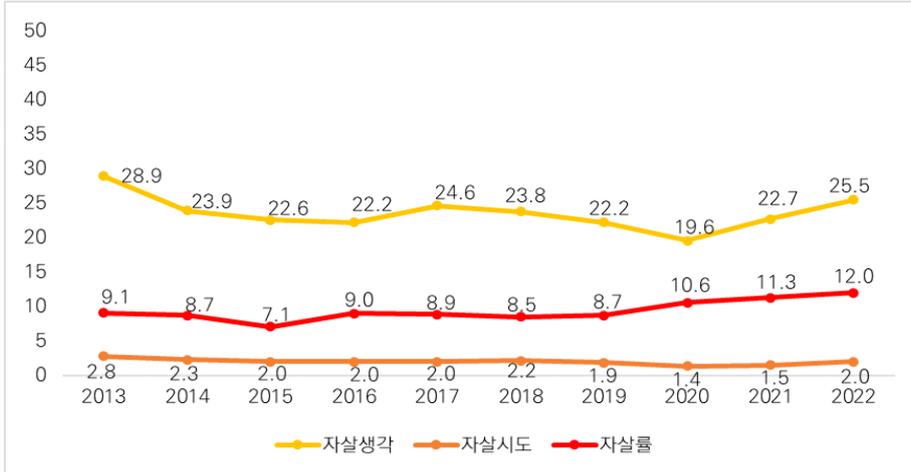


그림 V-2-8.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연도별 추이(남자)

*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백분율이지만, 실제 자살률은 십만명당의 비율임.
 *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자살률은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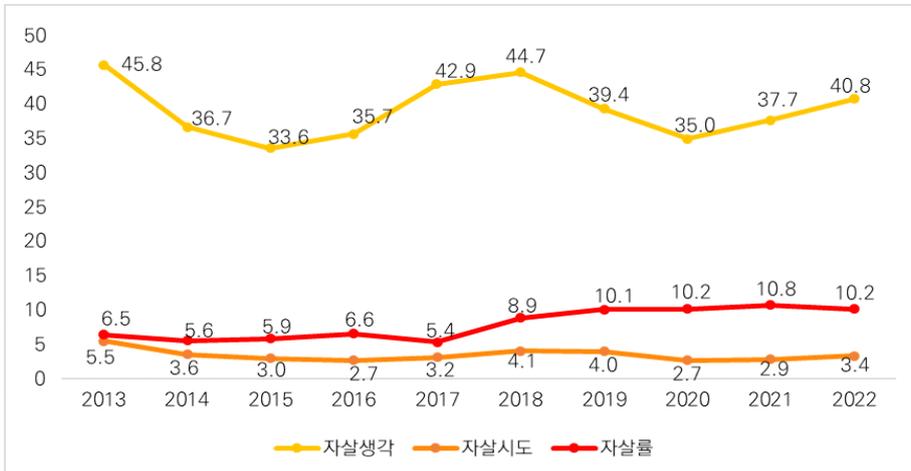


그림 V-2-9.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연도별 추이(여자)

*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백분율이지만, 실제 자살률은 십만명당의 비율임.
 *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자살률은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3) 자살 생각 유무¹⁶²⁾에 따른 인권보장수준 차이(2023)¹⁶³⁾

(1) 개인요인

① 신체적 건강

가. 주관적 건강평가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를 살펴보면(표 V-2-2),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자살 생각함: 2.7% vs. 자살 생각 안 함: 1.2%)’와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자살 생각함: 24.1% vs. 자살 생각 안 함: 11.3%)’라는 응답지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2-2.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명))

구분	평균	신체적 건강에 대한 생각				전체(N)	χ^2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17	1.2	11.3	57.0	30.5	100.0(3,901)	213.6***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89	2.7	24.1	54.6	18.5	100.0(1,764)	

* $p < .05$, ** $p < .01$, *** $p < .001$.

*주: 신체적 건강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나. 운동 실천율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운동 실천율을 살펴보면(표 V-2-3),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32.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27.7%)’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자살 생각함: 32.6% vs. 자살 생각 안 함: 26.1%)’와 ‘한 달에 1~2회 정도(자살 생각함: 21.5% vs. 자살 생각 안 함: 20.7%)’ 한다는 응답지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16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서 ‘①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집단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로, ‘②가끔 생각한다’와 ‘③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을 한 집단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63) 해당 내용은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V-2-3.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운동 실천율

(단위 : %(명))

구분	운동 실천율				전체(N)	χ^2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6.1	20.7	25.5	27.7	100.0(3,895)	32.1***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2.6	21.5	23.0	22.9	100.0(1,766)	

* $p < .05$, ** $p < .01$, *** $p < .001$.

*주: 운동 실천율은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다. 수면시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수면시간을 살펴보면(표 V-2-4),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5시간 미만(자살 생각함: 14.5% vs. 자살 생각 안 함: 9.9%)', '5시간 이상~6시간 미만(자살 생각함: 23.0% vs. 자살 생각 안 함: 19.8%)', '6시간 이상~7시간 미만(자살 생각함: 25.6% vs. 자살 생각 안 함: 25.5%)'의 수면시간을 갖는다는 응답지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2-4.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수면시간

(단위 : %(명))

구분	수면시간						전체(N)	χ^2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9	19.8	25.5	24.8	15.3	4.7	100.0(3,810)	51.2***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4.5	23.0	25.6	22.3	11.5	3.1	100.0(1,727)	

* $p < .05$, ** $p < .01$, *** $p < .001$.

*주: 수면시간은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라. 수면부족 여부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수면부족 여부를 살펴보면(표 V-2-5),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48.7%가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2-5.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수면부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면부족 여부		전체(N)	χ^2	
	부족함	부족하지 않음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8.7	51.3	100.0(3,865)	215.8***
	생각해 본 적이 있다	69.7	30.3	100.0(1,755)	

* $p < .05$, ** $p < .01$, *** $p < .001$.

*주: 수면시간 부족은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② 정신적 건강

가. 우울감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우울감을 살펴보면(표 V-2-6),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로 구성된 우울감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에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지의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또한 응답지를 4점 척도로 환산해 본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위의 3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1.78에서 1.89로 1점대였으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3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2.65에서 2.68의 2점대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6.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우울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89	43.9	27.3	24.8	4.0	100.0(3,889)	766.6***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7	14.6	21.2	46.8	17.4	100.0(1,763)	
구분		평균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8	49.0	27.6	20.2	3.3	100.0(3,887)	747.5***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5	16.1	22.1	42.5	19.2	100.0(1,761)	
구분		평균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8	49.2	26.8	20.7	3.2	100.0(3,875)	1007.7**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8	16.0	20.1	43.3	20.5	100.0(1,758)	

* $p < .05$, ** $p < .01$, *** $p < .001$.

나. 외로움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외로움을 살펴보면(표 V-2-7),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로 구성된 외로움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에서,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지의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또한 응답지를 4점 척도로 환산해 본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위의 3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1.42에서 1.56 정도를 나타내었으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3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1.97에서 2.31 정도를 나타내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외로움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7.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외로움

(단위 : %(명))

구분		평균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50	63.8	23.4	12.1	0.8	100.0(3,889)	402.0***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97	38.3	31.9	24.7	5.2	100.0(1,763)	

구분		평균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42	70.7	18.3	9.5	1.5	100.0(3,887)	725.9***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07	34.9	30.8	26.3	8.0	100.0(1,761)	

구분		평균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56	59.9	25.4	13.1	1.6	100.0(3,887)	823.4***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31	24.2	31.2	33.7	10.8	100.0(1,761)	

* $p < .05$, ** $p < .01$, *** $p < .001$.

다. 자아존중감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표 V-2-8),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부정적 응답지의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으며,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문항에서는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지의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또한 응답지를 4점 척도로 환산해 본 결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점수보다 낮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문항에서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표 V-2-8.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14	6.5	10.0	46.6	36.9	100.0(3,884)	567.8***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6	8.4	33.0	43.3	15.4	100.0(1,760)	
구분		평균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99	7.0	17.2	45.4	30.4	100.0(3,884)	407.2***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53	10.8	38.3	37.6	13.3	100.0(1,758)	
구분		평균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2	36.7	37.4	23.3	2.7	100.0(3,884)	613.4***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55	13.5	29.8	44.7	12.0	100.0(1,760)	

* $p < .05$, ** $p < .01$, *** $p < .001$.

라. 고립감 및 고립기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고립감을 살펴보면(표 V-2-9),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나는 다른 사람들로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의 문항에서 '드물게 그렇다(자살 생각함: 17.6% vs. 자살 생각 안 함: 5.1%)', '가끔 그렇다(자살 생각함: 10.6% vs. 자살 생각 안 함: 1.6%)', '항상 그렇다(자살 생각함: 4.5% vs. 자살 생각 안 함: 0.4%)'의 긍정적 응답지에 응답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또한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고립기간을 살펴보면(표 V-2-10),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이 '1년 이상~2년 미만(자살 생각함: 15.1% vs. 자살 생각 안 함: 11.6%)', '2년 이상~3년 미만(자살 생각함: 11.3% vs. 자살 생각 안 함: 10.1%)', '3년 이상(자살 생각함: 19.9% vs. 자살 생각 안 함: 13.1%)'의 장기간의 고립기간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표 V-2-9.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고립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09	93.0	5.1	1.6	0.4	100.0(3,859)	649.5***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52	67.4	17.6	10.6	4.5	100.0(1,752)	

* $p < .05$, ** $p < .01$, *** $p < .001$.

표 V-2-10.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고립기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고립기간					전체(N)	χ^2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8.1	17.2	11.6	10.1	13.1	100.0(268)	12.0**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7.3	16.4	15.1	11.3	19.9	100.0(568)		

* $p < .05$, ** $p < .01$, *** $p < .001$.

*주: 고립기간은 위의 고립감 문항에서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 응답하였음.

마.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 유무를 살펴보면(표 V-2-11),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9%였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였다.

표 V-2-11.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 유무

(단위 : %(명))

구분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4	91.6	100.0(3,891)	39.9***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3.9	86.1	100.0(1,770)	

* $p < .05$, ** $p < .01$, *** $p < .001$

*주: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표 V-2-12),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2.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단위 : %(명))

구분		공부나 학업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9	94.1	100.0(3,898)	22.7***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4	90.6	100.0(1,769)	

구분		진로나 진학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5	91.5	100.0(3,901)	74.7***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6.2	83.8	100.0(1,769)	

구분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6.2	93.8	100.0(3,901)	18.3***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4	90.6	100.0(1,771)	

구분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6	95.4	100.0(3,902)	70.9***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5	89.5	100.0(1,766)	

구분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6.8	93.2	100.0(3,900)	69.4***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3.6	86.4	100.0(1,767)	

구분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전체(N)	χ^2
		없다	있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7	94.3	100.0(3,900)	38.8***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3	89.7	100.0(1,769)	

* $p < .05$, ** $p < .01$, *** $p < .001$.

③ 주관적 웰빙

가. 행복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행복도를 살펴보면(표 V-2-13),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현재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지를 선택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특히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지를 선택한 비율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32.7%였으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7.6%에 불과했으며, ‘매우 행복하다’의 응답지를 선택한 비율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경우 27.8%였으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9.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2-13.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행복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체(N)	χ^2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20	0.3	7.6	64.3	27.8	100.0(3,761)	795.2***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8	4.0	32.7	54.3	9.0	100.0(1,711)	

* $p < .05$, ** $p < .01$, *** $p < .001$.

나. 삶의 만족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V-2-14),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응답지의 낮은 점수를 선택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표 V-2-14.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삶의 만족도										전체(N)	χ^2	
		0	1	2	3	4	5	6	7	8	9			10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40	0.2	0.2	0.6	1.5	4.2	10.9	8.9	20.5	25.4	13.5	14.2	100.0 (3,813)	921.1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54	1.8	2.5	5.9	10.0	12.3	15.8	12.9	17.1	14.1	4.8	2.9	100.0 (1,711)	***

* $p < .05$, ** $p < .01$, *** $p < .001$.

*주: 삶의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2) 사회·환경요인

① 가족요인

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체벌)을 살펴보면(표 V-2-15),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자살 생각함: 72.6% vs. 자살 생각 안 함: 86.5%)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낮았으며, 일 년에 1~2회 이상 신체적 처벌(체벌)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표 V-2-15.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신체적인 벌(체벌)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6.5	10.2	2.2	.9	0.3	100.0(3,894)	192.8***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2.6	16.7	6.0	3.5	1.2	100.0(1,764)	

* $p < .05$, ** $p < .01$, *** $p < .001$.

*주: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였음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을 살펴보면(표 V-2-16),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자살 생각함: 51.5% vs. 자살 생각 안 함: 78.4%)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낮았으며, 일 년에 1~2회 이상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다.

표 V-2-16.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모욕적인 말·욕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8.4	11.7	4.9	3.0	2.0	100.0(3,895)	481.8***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1.5	18.9	11.0	10.6	8.0	100.0(1,762)	

* $p < .05$, ** $p < .01$, *** $p < .001$.

*주: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였음

나. 가정 내 방임 정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가정 내 방임 정도를 살펴보면(표 V-2-17),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가정 내 방임 정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표 V-2-17.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가정 내 방임 정도

(단위 : %(명))

구분		밤 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3.7	34.8	10.4	6.6	4.5	100.0(3,891)	57.8***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3.6	38.3	13.0	8.8	6.4	100.0(1,761)	

구분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4.1	3.5	0.8	0.8	0.7	100.0(3,887)	24.0***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0.6	5.4	1.7	1.3	1.1	100.0(1,756)	

구분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1	1.9	0.4	0.4	0.3	100.0(3,888)	68.5***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2.5	4.8	1.8	0.4	0.5	100.0(1,756)	

구분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6.8	1.6	0.7	0.4	0.5	100.0(3,833)	77.8***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1.6	4.0	1.4	1.8	1.2	100.0(1,756)	

구분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8.8	0.5	0.2	0.3	0.2	100.0(3,882)	10.8*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8.2	1.2	0.3	0.1	0.2	100.0(1,756)	

* $p < .05$, ** $p < .01$, *** $p < .001$.

*주: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였음

다. 가출 경험 여부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표 V-2-18),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 1.4%보다 높았다.

표 V-2-18.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N)	χ^2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4	98.6	100.0(3,865)	101.4***
	생각해 본 적이 있다	6.2	93.8	100.0(1,750)	

* $p < .05$, ** $p < .01$, *** $p < .001$.

② 학교요인

가. 선생님께서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체벌)을 살펴보면(표 V-2-19),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자살 생각함: 93.9% vs. 자살 생각 안 함: 95.8%)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낮았으며, 일 년에 1~2회 이상 신체적 처벌(체벌)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표 V-2-19.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신체적인 벌(체벌)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5.8	2.4	1.0	0.4	0.4	100.0(3,889)	14.6**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3.9	3.0	1.2	0.9	1.1	100.0(1,762)	

* $p < .05$, ** $p < .01$, *** $p < .001$.

*주: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였음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선생님께서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을 살펴보면(표 V-2-20),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자살 생각함: 79.6% vs. 자살 생각 안 함: 90.0%)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낮았으며, 일 년에 1~2회 이상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다.

표 V-2-20.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선생님께서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모욕적인 말·욕설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0.0	5.6	2.0	1.1	1.3	100.0(3,888)	121.2***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9.6	12.4	3.2	2.8	1.9	100.0(1,762)	

* $p < .05$, ** $p < .01$, *** $p < .001$.

*주: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였음

나.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표 V-2-21),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모든 문항에서 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지의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표 V-2-21.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8.6	6.7	1.9	1.3	1.5	100.0(3,899)	140.2***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7.1	10.9	3.6	4.0	4.3	100.0(1,767)	
구분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7	1.2	0.5	0.2	0.4	100.0(3,900)	22.1***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5.6	1.8	0.8	0.5	1.2	100.0(1,766)	
구분		따돌림을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8	1.3	0.4	0.3	0.3	100.0(3,900)	95.7***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2.6	4.6	0.8	0.6	1.4	100.0(1,766)	
구분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8.1	1.0	0.4	0.2	0.3	100.0(3,900)	17.8**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6.3	1.7	1.1	0.3	0.6	100.0(1,768)	
구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9	1.0	0.3	0.3	0.5	100.0(3,898)	43.6***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4.7	2.3	0.9	1.1	0.9	100.0(1,765)	

구분		강제적인 심부름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8.8	0.5	0.2	0.2	0.3	100.0(3,900)	11.7*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7.7	1.2	0.3	0.3	0.5	100.0(1,767)	

* $p < .05$, ** $p < .01$, *** $p < .001$.

*주: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다. 학업중단 생각 여부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학업중단 생각 여부를 살펴보면(표 V-2-22),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10명 중 5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22.5%가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2.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학업중단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전체(N)	χ^2
		있다	없다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2.5	77.5	100.0(3,896)	586.8***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5.1	44.9	100.0(1,767)	

* $p < .05$, ** $p < .01$, *** $p < .001$.

라. 학교생활 만족도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V-2-23),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낮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더 높았다.

표 V-2-23.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38	1.1	2.8	53.5	42.7	100.0(3,884)	149.8***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17	2.3	7.0	62.6	28.1	100.0(1,767)	
구분		평균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41	1.3	3.4	48.3	47.0	100.0(3,884)	116.8***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22	2.2	7.4	56.9	33.6	100.0(1,764)	
구분		평균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94	5.8	20.2	48.3	25.6	100.0(3,887)	162.3***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3	10.7	30.2	44.6	14.5	100.0(1,762)	
구분		평균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전체(N)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00	5.7	17.1	48.3	28.9	100.0(3,885)	270.6***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0	12.8	30.0	41.7	15.5	100.0(1,763)	

* $p < .05$, ** $p < .01$, *** $p < .001$.

*주: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였음

③ 기타

가.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표 V-2-24),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피해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낮았으며,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높았다.

표 V-2-24.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5.2	7.7	2.5	1.6	2.9	100.0(3,900)	179.5***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0.6	13.3	4.5	4.9	6.7	100.0(1,767)	
구분		협박을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9	0.9	0.2	0.3	0.8	100.0(3,899)	37.2***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5.3	2.2	1.0	0.5	1.0	100.0(1,766)	
구분		성희롱을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9	0.7	0.4	0.3	0.7	100.0(3,899)	95.4***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2.9	3.6	1.4	1.1	1.1	100.0(1,764)	
구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7.1	1.7	0.5	0.3	0.4	100.0(3,901)	57.9***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2.9	4.5	1.0	1.0	0.6	100.0(1,766)	
구분		따돌림을 당함					전체(N)	χ^2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8.8	0.5	0.2	0.1	0.4	100.0(3,899)	39.3***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6.4	2.0	0.7	0.3	0.6	100.0(1,766)	

* $p < .05$, ** $p < .01$, *** $p < .001$.

*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나. 성적 피해 경험률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성적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표 V-2-25),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였으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1.3%였다.

표 V-2-25.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성적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N)	χ^2	
	있다	없다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3	98.7	100.0(3,894)	87.0***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6	94.4	100.0(1,763)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본 절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살 생각 변인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연도별 변화 추이, 자살 시도와 실제 자살률과의 비교,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권보장수준 상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연도별 변화 추이를 성별, 학교급별, 지역 규모별, 경제적 수준별, 학업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자살 생각률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항상 남학생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았다. 특히 근래 여학생의 자살 생각률은 40% 정도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자살 생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증감의 추이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 2022년에서 2023년에는 감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자살 생각률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항상 중학생의 자살 생각률보다 높았으나, 2023년에는 중학생의 자살 생각률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자살 생각률이 30%를 넘기면서, 10명 중 3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의 자살 생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생 자살 생각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를 번갈아 가며 가장 높은 자살 생각률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과 학업성적인 ‘하’인 집단의 자살 생각률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 자살 생각률이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50.1%로, 10명 중 5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아동·청

소년들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2013년 이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살 생각률,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살 시도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실제 자살률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¹⁶⁴⁾,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실제 자살률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의 연도별 증감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 실제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여자의 경우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이 남자에 비해 높았으나 실제 자살률은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더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나, 혹은 남자의 경우 평소의 자살 생각 없이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여자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자살 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권보장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인요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웰빙, 사회·환경 요인의 가족요인, 학교요인, 기타 영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 측면을 살펴보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운동실천을 측면에서는,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경우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면시간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7시간 미만'의 적은 수면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즉,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본인의 신체적 건강을 더 안 좋게 평가하였고, 운동을 더 적게 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더 적은 수면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우울감, 외로움, 자아존중감, 고립감 등을 통한 정신적 건강 측면을 살펴보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우울감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지에 응답하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

164) 본 분석에서의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백분율이지만, 실제 자살률은 십만명당의 비율이며, 자살 생각률과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자살률은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

보다 높았으며, 외로움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도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지에 응답하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 측면에서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부정적 응답지의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으며, 고립감 측면에서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에서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나의 곤란한 상황을 의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여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즉,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보다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성이 있고, 본인의 주변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통한 주관적 웰빙 측면을 살펴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현재 ‘전혀 행복하지 않다’와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지를 선택한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응답지에서도 낮은 점수대의 응답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즉,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재의 삶에도 만족하지 않는 편이었다.

넷째,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방임 정도, 가출 경험 여부를 포함하는 가족요인을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신체적인 별(체벌), 모욕적인 말·욕설을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았으며, 다양한 유형의 방임을 묻는 문항에서도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비율은 6.2%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가출 경험 비율(1.4%) 보다 높았다. 요약하자면, 자살을 생각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되는 정도가 더 심하였고, 가출을 경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생님,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학업중단 생각 여부, 학교 생활 만족도를 통한 학교요인을 살펴보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선생님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신체적인 별(체벌),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또한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55.1%가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은 22.5%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 측면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부정적 응답지에 응답하는 비율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즉,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선생님,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적 피해 경험률도 더 높았다.

이처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보다 취약한 인권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가족, 학교의 환경적 측면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자살 생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예방 및 개입 방법을 검토하기보다는 자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3.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¹⁶⁵⁾

1) 연구 개요¹⁶⁶⁾

이 절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에 대해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에 있다. 2023년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회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동·청소년기의 중첩된 취약성이 개인의 인생이 한 시점뿐만 아니라 중단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빈곤, 불평등,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경험이 본인들의 성장 궤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다. 중첩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성은 하나의 인권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 다중적인 영향을 미쳤다(유민상 외, 2023).

올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당사자를 면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3년 연구에서 청년 당사자들은 청소년기에 중첩된 취약성이 다양한 불리함을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들을 직접 인터뷰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인터뷰의 민감성으로 인해 청소년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청년에 대한 회고 조사만 진행하였었다.

올해는 연구진을 보강하고, 위기 청소년 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직접 수행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취약성이 어느 순간 두드러지고, 이것으로 인해 자꾸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취약성이 없었다면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기회와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악순환적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하였다. 연구진은 청소년들과의 면접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취약성이 중첩되는 현상, 그리고 이 때문에 여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연결 고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올해 연구는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의 실태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단지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발달 성과에의 관심에서 더 나아가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동·청소년기 중첩된

165)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유설희 전문연구원(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166) 연구에 참여해 주시어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신 모든 청소년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약성은 어떻게 나타나며, 취약성은 어떻게 다른 취약성과 연결되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1) 면접조사의 주요 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면담은 대면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2회 이상 면담을 하고자 하였다. 1회 면접은 60~90분 사이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상황이나 주제에 따라 면접 시간을 유동적으로 적용하였다. 청소년 당사자의 섭외는 현장 전문가의 추천이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소개받은 청소년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장 전문가에 대한 면담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면담하였다. 이는 전국의 전문가들을 섭외하기에 더 용이하게 초점집단면접의 특성상 일부 제한된 질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전문가의 섭외는 연구자의 네트워크나 외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였다.

표 V-3-1. 청소년 당사자 심층면담 개요

구분	주요내용
면담참여자 수	• 총 7명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 당사자
면담참여자 모집방법	• 현장 전문가의 추천 및 소개를 통한 모집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 • 개별 심층 면담
면담장소	•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 회의실 및 카페 (단, 청소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1회 비대면 면담 진행)
면담 시간 및 횟수	• 면접은 1인당 90분 내외로 진행하였음 • 2회 이상 면접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참여자 모집, 면담, 분석, 보고 등 연구진이 담당)
IRB 승인여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승인(2024-HR-고유-007)

표 V-3-2. 현장 전문가 FGI 개요

구분	주요내용
면담참여자 수	• 총 7명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취약 및 위기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면담참여자 모집방법	•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집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면담장소	• 온라인 줌(ZOOM) 회의실
면담 시간 및 횟수	• 초점집단면접은 90분 내외, 1회 진행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참여자 모집, 면담, 분석, 보고 등 연구진이 담당)
IRB 승인여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승인(2024-HR-고유-007)

(2)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프레임

이 연구는 현장 전문가의 아동·청소년과 관계 경험 및 청소년 당사자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사회 경험이나 친구 및 교사, 가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V-3-3. 청소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현재의 어려움	• 현재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의 시작	• 언제부터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지 • 언제부터 어려움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는지 •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도움을 받은 경험	•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받은 적이 있는지
희망하는 도움 방법	• 앞으로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표 V-3-4.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담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여러 취약성을 지닌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취약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의 사례가 있는지
중첩된 취약성의 첫 취약성과 연결된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어떻게 결합되어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취약성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취약성과 발달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발달 궤적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다중 인권침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 인권침해는 어떻게 발생하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새로운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취약성 이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성이 있는지

(3) 샘플링 및 참여자 정보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총 14명으로 청소년 7명과 현장 실무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은 현장실무자 인터뷰 이후 추천과 소개를 통해 섭외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2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주로 여성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각각 한 명씩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Children and Youth의 앞글자를 딴 'CY'를 ID에 추가하였고, 실무자는 Youth Worker의 앞글자를 딴 'WY'를 ID에 추가하였다.

표 V-3-5. 청소년 당사자(CY)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특성

연번	ID	성별	연령	주요 취약성
1	ACY	여	17세	학업·또래 스트레스, 학업중단
2	BCY	여	16세	학업·또래 스트레스, 학업중단, 노동인권침해
3	CCY	여	17세	취약한 가정환경, 학업중단, 정신건강
4	DCY	여	16세	탈가정
5	ECY	남	18세	학교폭력, 학업중단, 정신건강
6	FCY	기타*	12세	가정폭력, 학교폭력, 정신건강
7	GCY	여	19세	가정폭력, 탈가정, 정신건강

*주: 연구참여자 FCY는 성소수자 청소년임.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자각하고 있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청소년이나 아직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기타로 표기하였음.

현장 전문가 7명은 청소년 기관 실무자 그룹과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전문가는 연구자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섭외를 하였으며, 현장 전문가의 추천으로 나머지 그룹이 채워진 경우도 있었다.

표 V-3-6. 현장 전문가(YW)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특성

연번	ID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AYW	남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장	FG1 그룹
2	BYW	여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가	
3	CYW	여	대안교육기관 교사	
4	DYW	여	○○고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FG2 그룹
5	EYW	여	△△고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6	FYW	여	□□고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7	GYW	남	◇◇중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간접적인 경험과 청소년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경험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현장 전문가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을, 청소년들과는 개별면접을 진행하였고, 모든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녹음된 면담 자료를 전사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을 진행한 후, 녹취록 작성을 마친 다음에 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줄 단위로 분석하였고, 주요한 개념과 범주를 형성하여 다른 개념 및 범주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승인(2024-HR-고유-007)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 첫 만남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면접조사 방식,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등의 내용이 담긴 설명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구두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연구참여자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소년 연구참여자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관계, 과거 및 현재에 경험한 어려움 등에 대한 사항을 노출해야 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사항은 모두 익명 처리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알렸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연구참여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연구참여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가정에 법정대리인 연구 참여 설명문과 동의서를 배부한 후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아 동의를 획득하였다. 다만, 연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중에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나 친인척 등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분리된 경우 등으로 인해 부모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연구에 참여하고자 부모나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해당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복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대표나 담당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와 청소년 연구참여자는 개별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정 및 학교, 사회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위기 등과 더불어 이를 극복해하고자 노력했던 과정 등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한 연구참여자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후련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자신이 경험해왔던 어려움과 이를 이겨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면접조사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줄 단위로 분석을 하면서 주요한 개념들을 발견하였고, 유사한 개념들을 의미 있고 대표성 있는 범주로 묶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0개의 하위 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중첩된 취약성과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인권 미보장 사례에 대한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7. 자료에서 도출된 범주 및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어린 시절부터 쌓여가는 어려움과 무게	• 온전한 애정과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가정
	• 하루하루 견뎌내며 걸돌았던 학교생활
	• 갈등과 소외감으로 가득했던 친구 관계
	• 부정적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순간들
성장과정의 취약성과 약순환적 연결 고리	• 더욱 악화되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
	• 학생에서 학교밖청소년으로
	• 존중과 보호받지 못했던 가정 밖 생활
중첩된 취약성이 남긴 것	•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이어지는 일터
	• 내 팔의 상처들
	• 약순환적 고리와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
	• 문득 찾아오는 좌절의 시간
사람들 속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 회복 없는 성장
	• 스스로 다잡는 마음가짐과 행동 실현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한 안정
	•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얻는 자원과 지원
취약성을 지닌 이들에게도 불리함이 없는 사회	• 믿을 만한 사회적 지지 자원 연계
	• 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 가정 밖 보호 체계 개선

(1) 어린 시절부터 쌓여가는 어려움과 무게

① 온전한 애정과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가정

청소년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온전하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살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하였다. 연구참여자 DCY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늘 자신을 통제했던 부모님에게 생활 곳곳에서 감시와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가정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CCY도 무뚝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들으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존중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정은 편안함을 느낄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그래도 나가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계속 같이 계시고. 이제 그리고 학교 말고는 이제 제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카톡도 못하고 뭐 다른 어떤 인터넷 같은 것도 못 하고.”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아빠가 좀 말을 험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막 제가 하루 학교 간다고 해놓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엄마 들어왔는데 엄마가 저보고 왜 학교를 안 갔냐고 해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안 갔다 하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빠가 막 몇 분 뒤에 전화 오더니 막 너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죽어라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CCY, 여, 17세>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의 근원은 부모(또는 보호자)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자원이 부족하여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꼽았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DYW, GYW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이는 방임과 같은 형태로 돌봄이 제공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BYW와 FYW는 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다고도 말하였다.

“거의 대부분 자녀에게 청소년기에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 맞춰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어긋난 상태에서 대화를 추구하다가 부모도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고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다 보니까 그냥 너 알아서 자라라.” <연구참여자 GYW, 남,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저는 취약성이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것들이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은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아니면 이제 뭐 부모.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불화로 인해서 학생과의 관계도 한 쪽이랑만 이렇게 좀 친밀해 있고 한쪽이랑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 두 분과 모두 학생이 정서적으로는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 <연구참여자 FYW, 여,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특히, 연구참여자 CYW는 저소득층인 가정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아동·청소년 자녀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부모는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된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 학습이나 식사 등을 잘 챙기지 못하는 한편,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때에는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봄과 학습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결국 아동학대로 연결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저소득 가정의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제 아이를 집에서 교육으로 돌보기보다는 경제 활동을 어떻게든 해서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또 수행하셨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 학생들은 그 시간에 규칙적인 교육이나 학습 이런 것들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연구참여자 CYW, 여, 대안교육기관 교사>

“가정 안에서 보호자가 준비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들과 보호자가 이제 가정 안에서 학습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들이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CYW, 여, 대안교육기관 교사>

② 하루하루 견뎌내며 곁돌았던 학교생활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급급했다. 연구참여자 ACY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급격하게 마주하게 된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문화와 무심한 선생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매우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느꼈다. 또한, 연구참여자 CCY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였으나 정작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과 남학생이 대다수인 학교에서 자신만 홀로 여학생으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교생활에 도통 적응할 수가 없었다. 연구참여자 BCY도 특성화고에 진학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학업에 매진하기보다는 그저 놀고 싸우는 모습이 만연했던 학교 분위기에 매일 실망하기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학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도, 그렇다고 온전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곳도 아니었다.

“좀 이제 뭔가 다 끝났으니까 좀 쉬어볼까 하다가도 수행평가나 시험 때문에 계속 몰아치니까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그냥 중3 2학기 때부터 그냥 뭔가 학교 가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재미도 없고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냥 뭔가 만사가 귀찮고 하기가 싫어지고. 막 그냥 질병 지각이랑 막 결석도 많이 했었거든요. (중략) 가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이스티고 가서 공부 어느 정도 하면서 그냥 취업하자라는 마인드로 갔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학교생활 패턴도 저랑 안 맞고, 제가 그.. 여자인 친구가 작년에 없어서 학교에, 그러가지고 남자밖에 없어야 되고 그냥 좀 어렸웠어 가지고 그랬는데.” <연구참여자 CCY, 여, 17세>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학교가 아니라 그냥.. 디스코팡팡 아세요? 그런 테서 있을 만한 일들이 학교에 있을 때마다.. 학교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너무 그랬어요. ‘아, 언제 학교 마치지? 빨리 자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고 그냥.. 1년, 2년을 버텼어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아동·청소년 분야 종사자인 연구참여자 AYW도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닌다기보다는 “학교를 견딘다”고 말할 정도로 이러한 아이들은 학교를 견뎌낼 힘이 없다면 결국 학업 중단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③ 갈등과 소외감으로 가득했던 친구관계

대다수의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ACY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형성된 친구들 무리에서 곧잘 지냈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고 무시하는 친구를 ‘손절’하면서부터 진정한 친구관계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이후, 연구참여자 ACY는 새로운 친구들 무리에 쉽사리 끼일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 CCY도 언젠가부터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도 왠지 모르게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어 친구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BCY는 학교에 화장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여학생들로부터는 은근한 따돌림을, 남학생들로부터는 온갖 성희롱과 욕설 등의 폭력적인 언행에 시달리며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았다. 또한, 친구들이 학교 안팎에서 비행 행동을 당연스레 일삼는 모습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제가 사람들.. 생각보다 정을 좀 많이 주는 타입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손절을 해봤어요, 친구랑. 친구가 잘못해서 손절을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정을 너무 많이 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다가.. 올해 반 배정이 됐는데, 진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미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끼리 엄청 큰 그룹이 있는데.. 한 3분의 2가 그 그룹이라서...”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애들이 다 입에서.. 무조건 성희롱이 무조건 있었고. 그냥 진짜 입에 못 담을 만한 그런 성희롱들을 하고. 애들이 다 담배를 가방에 숨겨서 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화장실에서 담배 피기도 하고. 창문도 깨고. 그냥 거의 애들이 막 진짜.. 막 싸워요. 몸싸움.”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④ 부정적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순간들

연구참여자 BCY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성희롱과 욕설을 들은 후, 학교 선생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길 것을 건의하였지만 선생님은 그저 가벼운 사건으로 여겼고, 친구들끼리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BCY는 자신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해봤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혼자서 참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DCY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체 및 언어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점차 자신이 왜 이런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화와 분노를 느꼈지만, 결국 자신이 살아온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냥 오히려 방학 때.. 그냥 ‘그거(학교폭력위원회)를 이제 넘기면 너희만 학교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넘기자’ 이러셨어요. (중략) ‘이 학교 괜히 왔다...’ 이러면서 그냥 학교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졌는데. 여기에서 아 저 그냥 애네 신고할래요. 이러면 뭔가 굳이 쌤들이랑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참고 넘기자 해가지고... 똥 피하는 듯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이제 저는 그때 가정 안에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약간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좀 못했으니까 내가 어차피 이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지? 좀 이런 무력감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가정 및 학교 안팎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과정을 겪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그에 응당한 책임과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인 자신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등의 결과도 경험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알바하면서 생긴 일은 학생이다 보니까 만만해서 생긴 거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성격이 만만하다..? 제가 할 말을 잘 못 해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약점 잡아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2) 성장 과정의 취약성과 악순환적 연결 고리

① 더욱 악화되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위험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구참여자 DCY는 시험 기간마다 몸이 너무 아파 입원을 할 정도로 학교 시험과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ACY도 과도한 학업량과 성적에 대한 중압감과 더불어, 학급에서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만한 친구가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 결국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

“이제 사실 뭔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는 게 되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좀 입원할 정도로 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아팠고”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제가 너무 우울감이 계속되니까 학교 수업 듣다가도 계속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감정이 계속되니까 수업 내내 울고 이러면 어쨌든 그 수업을 못 듣고 쉬는 시간에 그 눈물 닦고 가라앉혔다가 다시

반에 들어오면 또 울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이 눈물이 안 멈춰서 조퇴도 많이 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이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해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구참여자 DCY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울과 불안이 밀려올 때면 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자해를 시도하고 나서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CCY도 가정과 학교에서 힘들음 경험하자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결석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모진 말을 들었을 때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방에 있는 창문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ACY와 BCY도 우울함이 극에 달할 때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지금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CCY는 스스로 만든 흉터에는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은 마음,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책망, 충동성 등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흉터를 본다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밝혔다.

“약간 그때 딱 처음에 든 생각은 그렇게(자해를) 하면 뭔가 나아질 것만 같았어요. 뭔가 이런 불안한 우울한 감정들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 다른 걸로 약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죠”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집에서 짐을 챙겨서 들고 나가서 그냥 좀 그런...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어디 가냐요. 그래서 아빠가 나보고 죽으라 해서 나 죽으러 갈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뭐 죽을 거면 여기서 죽어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도 그때는 그 감정 컨트롤이 그때는 안 돼서 알겠다 그럼 그냥 짐 냅두고 이제 제 방 창문이 있거든요? 방 창문이 있는데 좀 창문이 커요. 좀 큰데 이게 문 열고 방충망 열면 조심해서 넘어가면 그냥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자꾸 그 문턱, 문틈 그걸 잡고 한 30분 동안 막 대성통곡하고 그랬거든요.” <연구참여자 CCY, 여, 17세>

이처럼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취약함이 겹쳐진 환경에 머무르게 되면서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도 위협받게 되었고, 극단적으로 자해나 자살까지도 시도하게 되었다.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그 자체로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보낸 아동·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존중받고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들이 증첩된다면, 결국 자신의 생존권마저 스스로 파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② 학생에서 학교밖청소년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안 울타리를 벗어나기로 마음 먹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늘 압박감에 시달렸던 연구참여자 ACY는 의지할만한 친구도 없이 외로이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며 이러한 힘들음을 마음 속에서 삼키고 있다가 수업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조퇴를 반복하며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성적을 보며 고등학교 2학년 7월에 결국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는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기보다 놀기만 하고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비행을 학습하게 되는 곳으로 여겼던 연구참여자 BCY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학교를 그만두었다.

“제 생각으로 자퇴를 생각한 거는 3월 말쯤부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이 속마음이나 이런 거 남한테 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엄마한테 진짜 울면서 자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약간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4월 말쯤부터 상담을 먼저 받았거든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자퇴를 한 후에 자신만의 일상 계획을 세워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청소년 연구참여자도 있었으나 연구참여자 BCY나 CCY는 막상 자퇴를 하고나니 계획했던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부터 앞섰다. 학생에서 학교밖청소년이 된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시간 및 결정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졌다.

“원래 자퇴하기 전에는 ‘알바하면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약간 막연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제 계획대로 안 흘러가는 거예요. (중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③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정 밖 생활

연구참여자 DCY는 부모님의 감시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티셔츠 두 장과 약간의 돈만 갖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 며칠 동안 밤낮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DCY는 점점 갖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길거리 생활에도 지쳐갈 무렵에 쉼터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DCY는 당시 머물렀던 지역 근처에 있는 5~6군데 정도 연락을 돌리다가 그나마 자리가 있다는 곳에 입소하게 되었고, 잠깐동안 머물 수 있는 일시 쉼터를 전전하다가 단기 쉼터에 가게 되었지만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들이 너무 많아 금방 나와야만 했다. 또한, 다시 가게 된 일시쉼터에서는 연구참여자 DCY의 정신건강을 문제 삼아 당일에 바로 퇴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심지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부모님에게 DCY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가정 밖으로 나왔던 DCY는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쉼터에 깊은 좌절감과 함께 분노도 느끼게 되었다.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큰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9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쉼터를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중략) 처음에는 일시를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거기밖에 자리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시는 며칠이니까 있을 수 있는 게 바로바로 좀 옮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뱅뱅이를 돈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단기를 갔는데, 단기에서 이제 약간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주위에 시설도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서 거기도 결국 나오고 다시 다른 일시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 약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갔던 다른 일시에서 이제 제 약간 정신 건강적인 문제를 이유로 너를, 너는 이제 나가줘야겠다 라고 그냥 당일 날에 바로.”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청소년 당사자인 DCY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인 BYW도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거나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정 밖 청소년은 단기성의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결국 성매매나 범죄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사실은 주거가 불안정할 때는 사실 모든 어떤 그런 취약성이랑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오늘 하루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그런 학업을 지속하는 게 사실은 어렵고. (중략) 원가정과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일자리를 구할 수 밖에 없고. (중략) 주거가 그러니까 일상이 어쨌든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성매매 피해로 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연구참여자 BYW, 여,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가>

④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이어지는 일터

학교밖청소년이 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시도했으나 청소년으로서 노동시장에 머무는 것은 그 자체로도 녹록지 않았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더라도 어리다는 이유로 굵은 일을 도맡아 하거나 노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BCY는 자퇴를 한 후,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평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알바생이 늦게 오거나 핑크를 내는 날에는 BCY가 대신 근무를 하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다가 편의점 사장에게 자꾸 사적으로 연락이 오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 매장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길로 연구참여자 BCY는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를 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 두었다.

“이제 어느 순간 사장님이 자꾸 사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중략) 알바하면서 이제 또 며칠 동안 지냈는데, 또 며칠 지나서 갑자기 또.. 저한테 안마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원래 학생은 (밤) 10시부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알바비는 그대로인데 마감을 조금 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일한 적도 있고요. 6시부터. (중략)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곳이 아니면 또 알바를 구해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돈 벌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현장 전문가들도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함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안전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더 배달로 빠지게 되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성매매. 성매매로 빠지게 되는 게 뭐랄까 그런 서비스에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노동과 시간을 교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밤시간에 일을 하고. (중략) 근데 그 시간에 노동과 시간을 바꾸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고, 더 다음번 직업을 얻기 어려워지게 되는.” <연구참여자 AYW, 남,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장>

“어쨌든 가정에 뭔가 불안정이 있으면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자립을 하려고 노동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소득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고. 이제 다 뭐가 함정들이 있는 데 빠지게 되고, 이제 대출 2천만 원 걸면은 그 2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생기는 게 어디에 이렇게 족쇄 걸려서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이제 이런 계기인 것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BYW, 여,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가>

(3) 중첩된 취약성이 남긴 흔적들

취약성의 중첩은 아동·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향이 개인의 삶의 궤적에 생체기를 내는 것을 상흔 효과(scarring effect)로 부르는데, 청소년들에게 난 상흔 효과는 실제 몸과 마음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흔과 미래의 도전과도 연결되어 있기도 했다.

① 내 팔의 상처들

연구참여자 CCY, ECY, FCY, GCY는 모두 팔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팔에는 스스로를 물어뜯은 상처가 있었고, 누군가의 팔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 시도하다 난 상처가 있었다. 누군가의 상처는 한 범위에 집중되었지만, 누군가의 상처는 촘촘하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들의 취약성 궤적이 시작된 것은 모두 다른 이유와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어려움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비슷했다.

“자해를 많이 했어요. 약간 이렇게 목에 지금 아토피처럼 이런 흉터들도 좀 있는데 원래는 제가 피부가 되게 고운데 처음에는 볼로 시작해서 손들이 이렇게 물어서 지금 다 생긴 거거든요. 지금 많이 관촬아졌는데 원래는 엄청 시커맸어요. 여기 부분들이 다 그리고 여기 팔뚝에 지금도 좀 있는데 이렇게 까매지거나 아니면 긁거나 벽에 머리를 박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 지금도 그러긴한데... 아무것도 안 하거나 진짜 의미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서 울거나 자거나 아니면 밥을 과식으로 약간 안 좋은 것들로만 많이 스트레스를 풀었죠.” <연구참여자 ECY, 남, 18세>

이 상처들은 불안정의 표상이 된다. 심리적 고통으로 자해를 하고 상처를 남기지만, 이후에는 의미 없이 혹은 타인에게 자신의 힘듦을 보여주기 위해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런 상처는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되고, 힘든 사람 혹은 불안한 사람으로 구분 지어지며,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꼬리표가 달리게 된다. 불안정의 표상은 불안정의 궤적을 만들어 낸다.

“처음에는 해소였어요. 무조건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초반 이제 제가 일할 때 한번 티졌던 게 힘들어서도 있었지만,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드레싱 밴드만 붙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을 안 걸어도 그래서 저를 보면은 알아서 너네들이 멈춰라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신경 꺼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GCY, 여, 19세>

② 악순환적 고리와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

연구참여자 GCY는 가정폭력 이후 탈가정을 시도하고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대도시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그녀는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상담과 구제 과정에서 보호서비스 체계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녀는 악순환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듯 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것들을 거절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말하기 싫어진다 아니면 갑자기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연락하기가 다 싫으니까 친한 사람이고 뭐고 다 연락 끊어버려요.” <연구참여자 GCY, 여, 19세>

현재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다면 자원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다시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아직까지 상처가 커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다. 가정폭력의 피해가 탈가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 주거,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제는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을 스스로 원하고 있었다.

“저는 이미 청소년기에 도움 못 받았거든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나 잘해줘라 약간 이런...” <연구참여자 GCY, 여, 19세>

연구참여자 EGY는 학교폭력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다.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전문적 상담을 받기도 하였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 밖에는 없었다. 그는 방 안에 머물면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다행히 대안학교에 진학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기회가 있어 사회로 다시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견디고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혹은 감정 없이 마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외부 자극을 되게 많이 차단시켜 가지고 다 쳐놓으면 이렇게 폭 찌른다 해도 아프다. 그러니까 고통이랑 의식 체계랑 분리를 시켜 그래서 제가 그 상태가 제가 아무리 몸이 그래도 아프다에 가깝지만 멈추지는 않아요. 내려야 되는데 아파서 그만뒀야 되는데 딱 거기서 끊기니까 그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EGY, 남, 18세>

연구참여자 GCY와 EGY의 사례를 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시가 잃게 된 것, 그리고 얻지 못한 것들은 현재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③ 문득 찾아오는 좌절의 시간

중첩된 취약성은 다차원적으로 찾아온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로막는다. 이는 노동시장 진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득 찾아오는 좌절의 시간은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떠올라요. 이게 문득문득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더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일단 가족에 대해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게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 그분들은 당연히 잘못이 없지만 저 앞에서 엄마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밝게 전환한 다거나 아빠는 이렇게 밝게 전화하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들지만...(중략) 핸드폰 벨소리가 저희 아버지랑 똑같으면 제가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기고 특히 사투리까지 쓰면 제가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매번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혼자 해서 감수할 때 감당하다가 정 안 된다 싶을 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CY, 여, 19세>

④ 회복 없는 성장

취약성을 안고 성장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학습과 교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나, 아예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다른 청소년들과는 다른 궤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도 아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취약성의 경험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듯했다.

“저는 아직 하나도 회복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척을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GCY, 여, 19세>

“정신적으로 어른스럽게 성장한다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피해를 뱉는다. 아니면 거기에 밴드를 붙여놨다 이런 표현이 거의 가깝죠.” <연구참여자 ECY, 남, 18세>

회복 없는 성장은 가진 것을 잃게 하고, 그 시간 동안 새롭게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한 피해에는 회복과 치유가 강조되어야 한다.

(4) 사람들 속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① 스스로 다잡는 마음가짐과 행동 실현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불안이나 우울감과 좌절,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며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거나 하루 종일 방안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등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이들은 더 이상 계속 자신을 갇아먹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내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ACY는 자퇴를 한 후 자신의 삶이 나태해질 것을 우려하여 공부 및 운동,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있던 연구참여자 CCY와 DCY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자신이 무엇이든 노력한다면 이뤄낼 수 있다는 효능감도 얻게 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CCY는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왔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결국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비록 힘들음을 경험할지라도 이들의 내부에는 회복적 삶에 대한 희망과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은 자퇴를 했으니까 뭔가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많이 좋아진 편이기도 하고 또 수영하면서 뭔가 평소에는 안 했던 운동들도 하고 하니까 뭔가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약도 조금 줄이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그러니까 살아가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바뀌어야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바뀌고 그냥 뭐 평소처럼 집에 누워서 잠만 자거나 이랬으면... 그래서 저도 지금 막 그때였으면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바뀌어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CY, 여, 17세>

②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 얻은 안정감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묵묵히 바라봐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나 친구, 학교 선생님 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의 따스한 관심과 말 한마디에 큰 위로와 용기, 안정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자퇴를 한 후 방 안에서만 지내며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왔던 연구참여자 BCY는 무뚝뚝한 편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고,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려는 친구의 살가운 연락에 문득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연구참여자 DCY도 자신이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마다 곁에서 자신에게 웃음과 위로가 되어주는 애인을 통해 비로소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에 더하여 현장 전문가인 연구참여자 FYW도 상담교사로서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한결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즉, 취약한 환경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이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가 집에 박혀 있으니 제 친구한테도 연락와서 요즘 무기력해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운동이라도 하자 이려고... 주변인들의 그런 반응들 때문에 더 제가 힘을 내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그냥 정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학생들, 친구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랑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아니면 공부는 왜 하는 거고, 그냥 너무 당연하지만 누가 나눠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같이 그냥 이야기 해 줘보고, 그런 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는 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FYW, 여,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③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얻는 자원과 지원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 위클래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 내 상담센터 및 병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거나 생활 유지를 위한 물품 및 금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CY는 학교 내 위클래스와 지역 내 상담센터에서 학업 및 친구관계에서 얻은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했고, 병원으로 연계되어 적기에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어 우울 증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CCY도 고등학교 때 위클래스에서 상담과 멘토링도 연계해주었으며,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또한, CCY가 자퇴를 한 이후에는 지역에 있는 꿈드림센터(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검정고시 수업이나 자격증반, 취미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인 DCY는 지역 내 가정박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나 사업 등을 통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지원받았고, LH를 통해 주거지를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학교 및 지역사회 체계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역할과 자원이 적재적소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상담한다고 힘들었던 일이나 그때 감정 같은 걸 털어놓으면 이게 잠깐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도 나중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불신이 좀 있었거든요.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이게 좀 쌓이고 쌓여서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란 것도 뭔가 좀 관계가 친해지고, 좀 더 편하게 속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안정되는 기분이 상담하는 동안 생기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뭔가 그런 좀... 그냥 꿈드림 여기서 뭐 지원해주는 거, 그냥 뭐든 다 했던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한다고 하면,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자격증반 있다고 하면 자격증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CY, 여, 17세>

“저 이제 기관에서 받는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식료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 그쪽에 도움이고, 생활 자체는 이제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신청을 했었어요. 그 약간 LH. LH랑 이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10월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작년 에. (중략) 3월부터 이제 수급은 나오고 이제 LH는 그때부터 이제 집을 알아봐서 5월달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④ 믿을 만한 사회적 지지 자원 연계

청소년 연구참여자들과 현장 전문가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꼭 가족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신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여론’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장 전문가인 연구참여자들은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은 친구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와 삶에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어른의 존재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연구참여자 CYW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신청에 기반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자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전망에 다다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나 학교 교사, 이웃 주민 등 믿고 의지할만한 어른이 사회에 포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FWY는 가족이 아닌 다른 어른으로부터 진심으로 지지와 인정,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극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전 솔직히 어른들한테 좀 진짜 정말 그 어른의 입장 말고 제 입장에서 이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략) 저는 지금 당장의 제 현실만으로도 벅찬데, 미래도 생각하기 너무 힘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제 현실만 보고 뭔가 도움 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사실 이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아주 이성적인 사고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좀 드물어요. 위기가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보나 이런 제도에 대한 것도 너무 취약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래 안에서 어울리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힘을 내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지지해 줄 수 있는,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른, 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제도, 복지 제도들이 신청주의여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홀로 있을 때 그 제도를 활용하거나 신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고까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야 할 곳이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준의 제도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최저 안전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 안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맞고. 그게 사실은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가 있는 부모님, 또는 믿을 수 있는 교사 한 명,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이웃의 누나라든가 친구 한 명, 그런 멘토, 사회, 삶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한테는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CYW, 여, 대안교육기관 교사>

(5) 취약성을 지닌 이들에게도 불리함이 없는 사회

① 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다수의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아동·청소년의 행복권이나 발달권 등이 온전하게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 개인이 가진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적인 입시와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와 교내에 폭력이 만연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연구참여자 ACY는 높은 학업성과 입시가 중요시되는 교육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BCY는 학교 안에서 따돌림이나 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실태조사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였다.

“인간관계 같은 건 뭐가 타고난 성향 문제가 큰 것 같아서 누가 어떻게 돕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저처럼 막 성적 문제나 학교 문제로 받는 건 뭐가 진짜 제도가 바뀌면 충분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꼭 바뀌어서 한국의 학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ACY, 여, 17세>

“솔직히 요즘에 학교 폭력 이런 거 안 당해본 애가 없거든요. 그래 솔직히 그냥 막 폭력을 해야지 학교폭력이 아니고, 요즘은 왕따 이런 것보다 은따가 심하거든요. 은근슬쩍 왕따시키고 은근슬쩍 이간질시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중략) 학교 폭력 그.. 교육을 해도 애들이, 애들이 다 집중해서 안 듣거든요. (중략) 애들 그냥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 배운 내용인데 계속 우려 먹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런 영상을 계속 봤는데, 그거를 계속 영상만 보여주고 마니까 애들이 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②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청소년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

을 직접 체험했기에 청소년들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받으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BCY는 청소년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 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지인 추천이 있거나 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직업 교육을 해준다면 나중에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다.

“알바 같은 거. 학생을 다 안 뽑으려고 하는 게 보여서...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이라고 말하면은 저희 학생은 안 뽑아서요. 아니면 경력 있으세요? 경력은 솔직히 학생들 뽑아준 것도 없는데, 뽑아줘야 경력을 쌓으면서 하잖아요. (중략) 처음에 알바 구할 때가 제일 힘든 게, 그냥 경력도 없고 나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추천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냥 알바 교육 같은 거를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연구참여자 BCY, 여, 16세>

또한, 연구참여자 AYW는 가정과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은 결국 이른 나이에 자립을 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학력이나 전문 기술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결국 서비스직이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이나 작업 대출, 렌탈 등의 금융 피해도 겪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안전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를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도 근로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안과 유관 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독립을 결정을 마음에 먹지 않습니까? 살려고 나와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서비스직밖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중략) 10대의 아이들 16세, 17세, 18세 애들이 거의 월급도 못 받고 이렇게...” <연구참여자 AYW, 남,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장>

③ 가정 밖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

가정밖청소년인 연구참여자 DCY는 여러 쉼터를 전전했던 경험을 통해 가정 밖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쉼터의 수와 지원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였고, 범법이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쉼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가정으로 되돌려보내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LH를 통해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할 때, 절차상 친권자인 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와 다시 대면해야 한다는 현실에 매우 두려움과 놀라움을 표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정 밖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주거 및 사회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조금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있다고 해도 좀 전화를 막상 해보면 안 받아주는 데가 많거든요. 좀 아무래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인력 자체를 더 늘리는 게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 느꼈고 좀 쉼터들 돌아다니면서.”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제가 어쨌든 간에 LH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신고 들어갔고 조사하고 이래서 신청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걸 계약을 할 때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된다, 친권자가. 왜냐면은 제 친권은 어쨌든 지금 부모님한테 있으니까. 그러가지고 결국 계약할 때 아버지를 모셔 왔거든요. 이제 사실 그것도 음... 저한테는 좀 어머니가 좀 더 직접적인 가해자였어서 가능했던 거지, 약간 다른 분들은... 둘 다 못 모셔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맞나?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연구참여자 DCY, 여, 15세>

한편,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 BYW는 가정밖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가 주로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계되지 않으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설이나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지원 체계에 직접 소통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함을 말하였다.

“어쨌든 지금은 되게 기관이나 시설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제 청소년에게 이렇게 연결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청소년으로 옮겨가야지 그게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이 이제 모든 지원 기관들이랑 내가 개별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지는, 어떤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사실은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그냥 내가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을 좀 다양하게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청소년도 누군가에게 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산다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그런 수혜적인 어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결국엔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연결돼 있기도 하고, 서로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게 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우리의 고민.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BYW, 여,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가>

4) 소결

면접조사의 주제는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이며,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취약성이 어떻게 다른 취약성과 결합되면서 여러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취약성이 어느 순간 두드러지고, 이것으로 인해 자꾸만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취약성이 없었다면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기회와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악순환적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하였다.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과 강하게 결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다중적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성이 발생하지 않고, 취약성이 너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적 서비스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성이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차별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성의 중첩이 너무 강하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그 위험 행동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형태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는 매우 긴 영향을 미치며, 보호권의 침해가 탈가정과 학교 이탈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발전될 수 있고, 탈 가정은 주거권 보장과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불안정한 생활은 진로에 악영향을 미쳐 개인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초기의 취약성(보호권 미보장)이 연쇄적

으로 다른 취약성과 권리 미보장을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는 초기부터의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을 지원하여 악순환에 빠지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¹⁶⁷⁾

1) 왜 청소년 노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이 절의 목적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 규제 및 금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미래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 노동권 보장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법정정책 현황분석을 통해 기존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연령과 고용최저연령이 다른 점을 지적하였고,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96).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상황이 열악하고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 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며,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는 조치 시행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는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많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167) 이 절의 1)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 4)는 이수정 노무사가 작성하였음.

표 V-4-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내용 정리(노동권)

구 분	관련 견해
1차	<p>D. 주요 우려사항</p> <p>17. 위원회는 아동의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법적 개혁을 포함해 취한 여러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연령과 고용최저연령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위원회는 특별히 우려한다.</p> <p>E. 제안과 권고</p> <p>30. 아동의 노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 특히 협약 제32조를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해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며 이에 관해 ILO와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p>
2차	<p>B.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와 진전사항</p> <p>5. 위원회는 1999년 ILO 협약 138호, 2001년 ILO 협약 182호의 비준을 환영하고, 1차 심의 시 위원회의 권고대로 취업최저연령을 15세로 높인 것을 환영한다.</p>
3·4차	<p>III.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사항</p> <p>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p> <p>아동권리와 재계</p> <p>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 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p> <p>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p> <p>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p> <p>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p> <p>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p> <p>a) 근로아동의 수 증가</p> <p>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p>

구 분	관련 견해
	<p>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d) 노동 감독 불충분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p> <p>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p> <p>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p>
5·6차	<p>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p> <p>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p> <p>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p>

* 출처: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I』,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정부의 이행 노력으로 인해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도입되는 등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중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위험 노동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거리를 제공받고 소득을 올리는 킥 노동(gig

work) 형태는 사회적 보호망을 피해 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소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없어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유민상 외,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노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는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24년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2023년 하반기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로 변경되면서 기능을 확대하였는데 청소년보호 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청년 연령(19세~34세)을 포괄하면서 기존의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34세 이하까지의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청소년 노동은 기존의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함께 증첩되어 나타나는 상황이다. 즉, 공식 일자리에서의 노동권 미보장 문제, 비공식 일자리에서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인정 문제 등 오래된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적극적 대응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존의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접근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나 금지하더라도 노동 소득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안전한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제적 결핍으로 노동시장에 청소년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동기에는 아동수당과 가족수당과 같은 빈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15세 이상 노동시장 참여 가능한 청소년에게는 위험한 일자리로 들어가게 방지할 것이 아니라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면서 영구적인 손상, 장애, 심각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일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선진화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후진적인 일이므로 이제는 더 적극적인 사회 정책으로 대응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맞는 청소년 노동 경험과 성장 경험 제공으로 발전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보상받는 참여소득 논의에

서부터 도제 방식의 일경험 논의까지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문헌 연구와 사례조사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노동 특성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일하는 청소년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및 지원 제도

(1) 일하는 청소년 실태

① 청소년 노동의 보편화와 비임금 노동 증가

통계청이 2024년 7월 16일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19세 청소년 223만여 명 중 18만여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됐다.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226만 1천여 명 중 17만 8천여 명,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224만 3천여 명 중 21만 9천여 명으로 파악될 정도로 청소년의 노동은 보편화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8.11.)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이 보편화하면서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표 V-4-2>와 같이 2014년과 2024년 사이 청소년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순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표 V-4-2. 청소년 노동 상위 10개 업종 시계열 비교 (2014년 및 2024년)

순위	2014년		2024년	
	업종	비율 (%)	업종	비율 (%)
1	음식점 서빙	32.8	음식점·식당·레스토랑	39.3
2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22.4	뷔페/웨딩홀/연회장	13.6
3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18.0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7.2
4	24시간 편의점 점원	9.3	크몽, 깃몬, 업워크 등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일	5.8
5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7.3	패스트푸드점(피자/치킨/햄버거)	4.3
6	카페 점원	2.4	편의점/소형마트	4.1
7	택배 짐 나르기(이사집 운반 포함)	2.1	배달	3.3
8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2.1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3.3

순위	2014년		2024년	
	업종	비율 (%)	업종	비율 (%)
9	사무업무 보조	1.9	기타 매장관리(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용품 등)	2.5
10	PC방 점원	1.8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2.3

* 출처: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이수정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년 사이 변화를 살펴보면, 음식점·서빙, 뷔페·웨딩홀은 청소년이 주로 종사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10년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전단지 돌리기의 경우 10년 전에는 2위(22.4%)를 차지했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10위(2.3%)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4년 2.4%에서 2024년 7.2%로 늘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플랫폼노동 비중이다. ‘크몽, 깃몬, 업워크 등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일’이 주된 일자리였다는 응답이 5.8%, 배달 3.3%,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3.3% 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업종이 10위 안에 3개나 포함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노동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이수정, 2024).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비임금 노동 형태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30.). 비임금 노동 형태로 일하는 청소년이 2017년 3.2%에서 2020년 11.0%, 2023년 16.4%로 늘었다. 황여정 외(2024)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노동이 간접고용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정확하게 통계로 잡히지 않는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활동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증가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증가다. 청소년이 장래 직업으로 선호하는 업종¹⁶⁸⁾이고 K-문화로

168) 교육부의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상위 20위 안에 ‘크리에이터’, ‘만화가/웹툰작가’, ‘가수’ 등이 있다. 특히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크리에이터’가 2021년 3위, 2022년 4위, 2023년 3위로 꾸준히 꼽히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2023.11.27.).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201&lev=0&m=020402>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대표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규모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미진한 상태다.

위와 같이 10년 사이 청소년 노동이 보편화되고 비임금 노동 형태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지만, 청소년이 겪는 노동기본권 침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여정 외(2024)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34.5%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하는 청소년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14개 조사 항목 중 응답 비율이 10% 이상의 경험 비율을 보인 부당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했다'(17.4%),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17.1%), '같은 일 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16.4%),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15.1%),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3.7%),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10.1%)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의 경우, 2014년 25.5%에서 2024년 57.7%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2명 중에 한 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② '일 경험' 제도 참여 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문제 지속

'일 경험(work experience)'은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폭 넓게 사용하는(최수정, 허영준, 2012; 황여정, 김승경, 2018: 21에서 재인용) 학문적 개념이다. 주로 학문적으로 사용하던 개념을 정부에서 '일 경험 수련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학교 밖 청소년의 인턴 제도 등을 일경험 제도를 일컫고 있다. 일경험 제도로 포괄해서 칭하지만 각각의 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현장실습생, 학습근로자, 일 경험 수련생 등으로 부르고, <표 V-4-3>과 같이 법적 지위도 다르다. 2021년 기준 2만 2,077명의 현장실습생, 5,920명의 학습근로자(2022년 기준)가 일경험 제도에 참여하고(강문식 외, 2022; 유민상 외,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024년 기준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850명¹⁶⁹⁾이다.

일 경험 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문제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1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8.). "총 850명 규모...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 일경험 등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38>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측면이 크다. 예를 들어,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하는 일 경험 제도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권리 침해 발생시 ‘학생이냐 노동자냐’는 구분에 매몰되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지속되었다(유민상 외, 2023). 이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일 경험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일경험 수련생’,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자 지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직업계고 일경험 제도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표 V-4-3. 일경험 제도 참여 청소년의 법적 지위 비교

구분	주 적용 법	법적 지위	주 담당 부처	비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장 실습생 (학생)	교육부 (일부 노동관계법 준용 규정에 한해 고용노동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학교전담노무사에 의한 현장코칭 지원 -근로기준법 일부 준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특례 적용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학습 근로자 (노동자)	고용노동부/ 교육부	-근로계약서 작성 -재직자 중심 법률 근거로 직업계고(마 이스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중 특성화고에 적용 - 노동관계법 적용
학교 밖 청 소년 자립 취업 지원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경험 수련생 (노동자)	여성가족부	-직업훈련 과정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 습표준협약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 용) 작성하는 ‘일경험 수련생’ -인턴십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노 동관계법 적용) 작성하는 노동자

* 출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3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③ 청소년 노동 실태에서 조명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들

그간 청소년 노동 실태 파악은 주로 아르바이트 노동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노동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사고와 사망 사건 등이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발달 장애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에 있는 청소년의 노동 실태는 결가지 문제로 언급될 뿐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청소년이 겪는 노동의 문제는 청소년을 더욱 취약한 조건으로 내모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살필 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어떤 '사회적 상태'로 일터에 진입하는지에 따라 겪게 되는 문제는 사뭇 다를 수 밖에 없고(이수정 외, 2015), 법제도와 정책은 이와 같은 차이에 기반해 마련될 때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를 겪는 청소년의 경우 노동의 주체로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중층적인 차별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 구체적인 노동 실태를 알기 어렵다.

(2)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지원 정책

정부에는 청소년 전담 혹은 청소년 노동 전담 부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 역시 일관된 체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직업훈련과 청년 고용 정책, 교육부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정책,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지원 정책 중 청소년 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9세~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보호,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를 살피고자 한다.

①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규정

청소년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은 <표 V-4-4>와 같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노동 관련법에 정하고 있다.

표 V-4-4.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청소년 정의	주 내용	소관 부처
「헌법」	정의 규정 없음	- 노동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 -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할 것	

법령	청소년 정의	주 내용	소관 부처
「근로기준법」	- 정의 규정 없음 - 소년(19세 미만), 연소자(18세 미만), 미성년자(19세 미만) 혼용	- 차별 처우 금지 - 취업 연령 제한과 강제노동 금지 -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전자문서 포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 주 35시간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 제한,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노동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음. - 미성년자 임금 독자 청구 - 유해위험 업무 고용 제한 - 일터 괴롭힘 및 폭행 금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소년)
「최저임금법」	”	-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단순 노무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제한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	- 휴게시설 설치 의무 -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 보호 의무 - 배달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산업재해 예방과 치료 및 보상 의무 - 플랫폼 노동자 특례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고용보험법」	”	- 실업급여 및 직업 훈련 보장 등(15세 미만 고용보험 임의 가입)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적용(자료제공과 신고 의무 등)	고용노동부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권리 및 청소년 노동권 홍보와 교육 의무 - 청소년 차별 금지 -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의무 - 청소년 노동자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사업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 노동 보호 등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의무 - 청소년에게 유해위험한 환경에 고용 및 출입 제한 조치 의무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대중문화예술평업발전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 제한 -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 보장 내용 계약서에 명시 의무 등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출처: 황여정 외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18세를 기준으로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19세를 기준으로 삼는 소년법상 '소년'(제5장 여성과 소년), 민법상 '미성년자'(임금의 독자적 청구 등)의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과 대중문화예술발전법 등은 19세를 기준으로 보호 규정을 두는 등 청소년을 정의하는 규정과 정책 대상이 되는 나이 기준이 다르다. 또한,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소 복잡한 체계다(유민상 외, 2023; 황여정 외, 2024). 각 법령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시간 기준과 연장·야간·휴일 노동 제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고용·출입 제한, 노동권 상담과 구제 절차 지원, 교육 및 청소년보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청소년 종합보호대책과 지원 정책

가. 청소년 종합보호대책의 주요 대책과 변화

청소년 노동 관련 대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3년마다 발표하는 '청소년 종합보호대책'(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내놓은 주요 대책은 <표 V-4-5>와 같다.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찾아가는 근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노동권 내용 반영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체계 마련(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현장 도우미 등), 청소년 노동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일하는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근거법 마련 등)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024년 기준 4차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고, 주요 종합대책은 1차부터 4차까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반복되었다. 특히, 배달 노동 대책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지원 대책은 2차 종합대책부터 보완할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4차 종합대책에서도 보완할 점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변화가 무척 더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운영' 사업은 1차 종합대책 이후 사라졌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사업이 중복되어 20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표 V-4-5. 1~4차 청소년 종합보호대책 주요 대책과 변화

구분	주요 대책	변화	한계 및 보완
1차 (2013년~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바신고센터 및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운영 -공인노무사 권리구제 무료 지원 추진 -청소년 문자 상담 통해 현장 도우미 연계 서비스 운영 -현장실습생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직업계고 정규 교과과정에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강화 	-	-
2차 (2016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노동청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협의체(가칭) 구성운영 -배달대행 청소년 안전보호 강화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현장도우미 사업 내실화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노동관서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위원 위촉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피해 사례 상담, 진정 대리 지원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발굴되는 근로권익 침해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현장도우미 연계 서비스 운영('13~) 	배달대행 알바 등 특수형태 직종 근로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강화 필요
3차 (2019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청소년 근로권익협의체' 운영 -배달노동자 산재 의무 가입 추진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해결 및 종합 서비스 연계 지원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 및 특성화고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근로권익센터운영('15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3개 지역본부 운영('18년~) -근로상담(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법률지원(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방학기간 관계부처(고용부, 여가부, 지자체, 경찰) 합동 점검('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직업윤리 교육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청소년 고용업주에 대한 교육 및 근로청소년 보호 인식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점검 활동 및 안전관리 강화
4차 (2022년~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종사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 	-근로현장 부당처우 문제 해결 및 노동인권 교육 기반 확대	현장실습생, 배달 아르바이트 등 근로 청소년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구분	주요 대책	변화	한계 및 보완
	안전관리 강화 근로권의 보호 사업 전국 확대 근로청소년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연계체계 구축	-배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엄격 제한(산재보험법, 시행 '21.7.1) -근로청소년 상담 및 지원 근거 마련(청소년 기본법, '20.5.19 개정)	관리 및 지원 부족

* 출처: 여성가족부(2012).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여성가족부(2016).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여성가족부(2018b).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06.29).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13898>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나.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노동과 일자리 관련 정책

1차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전인 2005년부터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 홍보물 제작’, ‘피해 사례 접수 체계 구축’, ‘관계부처 점검 제도를 통해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차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5월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그림 V-4-1]과 같이 ‘청소년, 사업주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상담, 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각각의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제공, 상담과 구제 절차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등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감독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4).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2쪽.

그림 V-4-1.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2014년)

고용노동부 주요 추진 과제인 상담과 권리구제, 교육 활동은 2015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민간기관에 위탁¹⁷⁰⁾하여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전국에 3,227명(중복 합산)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 지역이 1,392명으로 가장 많은 보호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강원 70명(중복 합산), 부산광역시 175명(중복 합산) 등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 24세까지였으나 대상 연령을 점차로 확대해 2022년부터 34세까지 확대한 상태다. 대상 확대에 따라 기관명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로 바꿨다. 이후 <표 V-4-6>과 같이 상담 건수가 2022년 1만 9,028건에서 2023년 3만 7733건, 권리구제는 2022년 601건에서 2023년 1,105건, 교육 지원 횟수는 2022년 771회에서 2023년 4,734회로 각각 눈에 띄게 증가했다.

17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가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거점센터 사업은 2016년 6월부터 청년유니온,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대전 YMCA,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부산노동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복지회 등 7개 단체가 각 거점지역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서 진행’(황수옥, 이수정, 이주환, 박관성, 2017, 23쪽)했다. 2024년 10월 기준 거점센터 사업은 없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에서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V-4-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주요 실적

연도	상담	권리구제	현장캠페인	교육
2023년	37,733건	1,105건	5회	4,734회
2022년	19,028건	610건	5회	771회
2021년	18,678건	582건	4회	724회

* 출처: 고용노동부(2024).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 표 7-①-4. 255쪽.

한편, 청소년 일자리 정책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2024년판 노동백서에는 청소년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반영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고교생 맞춤’으로 청소년 대상 종합 취업 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소년 대상 종합 취업 서비스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 할 예정이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직업계고 또는 일반고 재학생에게 진로상담과 직무역량 향상 서비스, 취업연계 서비스를 진행한다.

③ ‘일경험’ 제도의 보호 체계와 지원 제도

일경험 제도의 보호 체계와 지원 제도는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체계와 취업 지원 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제도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규정으로는 <표 V-4-7>과 같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과 현장실습 시간과 야간휴일 노동 제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강제근로 금지, 휴게 시간 부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요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안전보건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해 운영하고, 2021년부터는 각 학교에 취업지원 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취업지원관’과 같은 취업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중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 센터 운영을 겸하고 있다.

표 V-4-7. 현장실습생 보호 내용과 취업 지원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현장실습표준 계약서 작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1항 -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표준협약서(교육부고시 제2018-165호, 2018. 9.28., 일부개정)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실습 시간과 야간 및 휴일 노동 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1항 및 제2항 -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 1일 7 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금지.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실습 금지	- 2016.2.3. 신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각 시도교육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 의무	- 2018.3.27. 신설
취업전담교사 지정과 운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운영) - 각 시도교육감은 각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음	- 2021.3.23. 신설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운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운영) - 각 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업무 등을 위한 취업지원인력을 둘 수 있음.	- 2021.3.23.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 및 벌칙 준용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준용함. - 주요 준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36조 금품청산, 제54조 휴게,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 2016.2.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규정 준용은 2023.4.18. 신설
산업안전보건 조치와 노동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 주요 적용 규정 :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8조~제40조 안전보건 조치,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등	- 2020.3.31. 신설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의 노동 재해 예방과 보상 규정 적용	- 2008.7.1. 시행

* 출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나. 학습근로자 보호 체계와 지원 제도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제도는 2014년 재직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로 특성화고 단계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와 산업 현장을 오가며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표 V-4-8>과 같이 관련법에 따라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습근로자는 일하기 전 '일학습병행의 목적', 기간과 1일 학습 시간 등을 정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학습 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다. 교육유형별 훈련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학습근로 기간이 지나 외부 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해야 한다.

표 V-4-8. 학습근로자 지원과 보호 내용

구분	해당 조항	비고
학습 근로자 정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호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 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적용 등	
학습 근로계약 체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 체결 의무 - 학습근로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일학습병행의 기간, 일일 학습근로시간,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학습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학습 근로자의 계속 고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할 의무. - 계속 고용하는 경우 동등한 처우 의무	- 계속 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학습 근로시간 및 휴식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시간을 합하여 산정함.	- 야간과 휴일에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시킨 사람에

구분	해당 조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금지.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 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 준용 	<p>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p>
교육훈련 유형별 일/월 단위 최대 훈련시간	<p>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3호~4호</p> <p>3. 교육훈련 유형별 일·월 단위 최대훈련시간</p> <p>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 :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다만, 재학생단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월 최대훈련시간은 공단이 별도로 정함.</p> <p>나.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 1일 9시간</p> <p>4.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과정별 훈련시간 편성 비율</p> <p>가. 산업형 과정 :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재학생단계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p> <p>나. 기업형 과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80 이하일 것</p>	<p>-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7호, 2024. 5. 20., 일부개정.</p>

* 출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취업 지원 제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일경험제도는 <표 V-4-9>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 지원,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7개 지역에서 ‘내일이룸학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12개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해 2023년 기준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표 V-4-9. 학교 밖 청소년 일경험 지원 제도 내용

구분	해당 조항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정의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p> <p>- “학교 밖 청소년”이란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p>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p>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 체험과 훈련 지원</p> <p>- 지원 내용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p>	<p>- 내일이룸학교 운영 (15세~24세 대상, 전국 7개)</p>

구분	해당 조항	비고
	<p>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p>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 지원 등</p>	<p>지역, 12개 직업 훈련기관에서 약 3~10개월 과정으로 운영, 2023년 기준)</p>
취업 정보 제공과 훈련 수당 지급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p> <p>- 취업체험 치 취업지원 정보 제공</p> <p>- 직업훈련 과정 청소년에게 훈련수당 지급</p>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p> <p>-지원 내용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등 제공</p>	<p>- 전국 222개소(광역시 16개소, 기초 206개소, 2023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중</p>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에서 2024년 10월 1일 인출.

또한, 전국 16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센터에서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1~4단계로 나눠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단계는 직업역량 강화 과정, 3~4단계는 자격증 취득과 일경험 과정으로 구분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1~2단계는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참여 청소년에게는 수당이 지원된다. 자격증 취득 과정과 일경험 과정에 해당하는 3~4단계는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3~4단계는 직업훈련 기관에 학원비를 지급하거나 기업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에게 간접 지원한다.

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제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과도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김경준 외, 2023)171).

171)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이 청소년이 놓인 ‘위기 상황’을 문제시하기보다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비정상화, 우범화한다는 우려(호연 외, 2018)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는 말도 청소년이 놓여 있는 취약성을 문제시하기보

비청소년 중심으로 마련한 노동 정책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나이와 일경험에 따라 상대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거나, <표 V-4-10>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책 대상으로 삼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터에서 더 취약해지기 쉬운 현실을 고려해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권을 고민할 때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취약한 위치에서 중층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노동 보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V-4-10.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취약계층 정의

조항	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노동 정책은 복지 지원 정책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표 V-4-11>과 같이 각 대상별로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수당과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2023.10.6.)에 따르면, 5만 6천여 명

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체를 비정상 범주에 놓고 정책을 접근한다는 우려가 있다.

으로 추정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경제·주거·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정책’을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이고, 15~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V-4-11.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 및 자립 지원 정책 내용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	정부 부처 및 담당부서
15세 이상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교통비(월 5만원) 식비(월 66,000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만 18~69세 장애인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만 9~24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청년)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취업역량강화 지원(바우처, 온라인교육,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부 정착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소년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직무체험 등 기업현장방문 프로그램 제공, 기업에 청년 1인당 3만원 제공	고용노동부

* 출처: 김경준 · 김영지 · 윤철경 · 이은주 · 이은주 · 임성은 (202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I. 표 II-5.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서비스. 32-36쪽에서 발췌 및 수정.
여성가족부 (2023.10.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경제 · 주거 · 교육 ·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582에서 2024년 10월 13일 인출.

(3)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와 지원 제도의 시사점

지난 10년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는 2013년부터 마련한 ‘청소년 종합보호대책’과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1차 종합보호대책 중 미비한 대책을 보완해 발표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추진방안’에 따라 갖춰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청소년 노동 실태에 비춰 볼 때, 청소년은 이와 같은 지원 체계를 통해 헌법에 정한 ‘누구나 향유하고 누려야 할 노동권’을 제대로 누려왔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단시간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을 이해하는 협소한 인식에

기반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 대응도 매우 소극적인 보호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간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보장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노동하는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바라본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려는 노동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명시한 노동권 보장의 의미와 확장된 논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를 살피고, 청소년 노동권 보장의 의미와 그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3) 헌법상 노동권의 의미와 적극적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들

(1) 헌법상 노동권 보장의 의미와 청소년노동기본권

① 헌법상 노동권 보장의 의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즉, 헌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헌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해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노동법실무연구회, 2020a: 96쪽).

표 V-4-12. 헌법에 정한 노동기본권 주요 내용

해당 조항	내용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당 조항	내용	관련 법률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p>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p> <p>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헌법 제32조 (개별적 노동기본권)	<p>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p> <p>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p> <p>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p> <p>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p>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헌법 제33조 (노동3권)	<p>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p> <p>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p> <p>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증진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p> <p>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p> <p>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p>	

해당 조항	내용	관련 법률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3일 인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근로의 권리’는 보통 ‘노동권’, ‘노동기본권’으로 부르고(김철식 외, 2021), ‘일 할 권리’와 ‘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가는 ‘국민’이 ‘일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헌법상 ‘근로’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뿐 아니라 노동관계에서 사업주와 중개인 등이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양승광, 2018)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향유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소극적으로는 개인이 근로를 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타인의 방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근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대체적 권리로서 생계비 지급·직업훈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노호창, 2011; 161쪽) 있다.

한편, 노동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변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소산이므로(도재형, 2017) 기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해 헌법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¹⁷²⁾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노동권 규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그 시기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37년이 지난 현재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과 플랫폼과 디지털 기반 산업으로,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일터는 물리적인 출퇴근이 필수인 공장 사무실 같은 실물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한 환경과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 노동기본권의 의미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미 역시 앞서 살핀 헌법상 노동권 보장의 의미에 기반한다. 또한, 생애 주기상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황여정 외, 2024) 헌법 제32조 제5항에 정한 특별한 보호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표 V-4-13>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¹⁷³⁾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내용이 마련되었으며, 기타 노동관련법과 청소년관련법에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표 V-4-4> 참고)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V-4-13. 근로기준법 5장 여성과 소년

구분	해당 조항	내용	유연한 경우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 증	- 고용 최저 연령 15세(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 - 13세~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고용 가능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65조 사용 금지	- 18세 미만 자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고용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72) “헌법 헌법 제32조와 관련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의 변경, ii) ‘국민’에서 ‘사람’으로 주체의 확장, iii) 고용 안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iv) 노동조건에 공동 결정, v) 해고로부터의 보호, vi) 직접 고용의 보장 등이다.”(양승광, 2018)

173) 근로기준법 제5장에 ‘여성’과 ‘연소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둔 것은 1987년 개정되기 이전 헌법 제30조 제4항에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해당 규정은 여성(제32조 제4항)과 연소자(제32조 제5항)로 분리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장 구성에는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제에 대해 남성과 달리 여성과 소년을 동일하게 약자로 취급하는 것의 부당성,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가 그 목적이나 규율 취지, 내용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노동법실무연구회, 2020b; 3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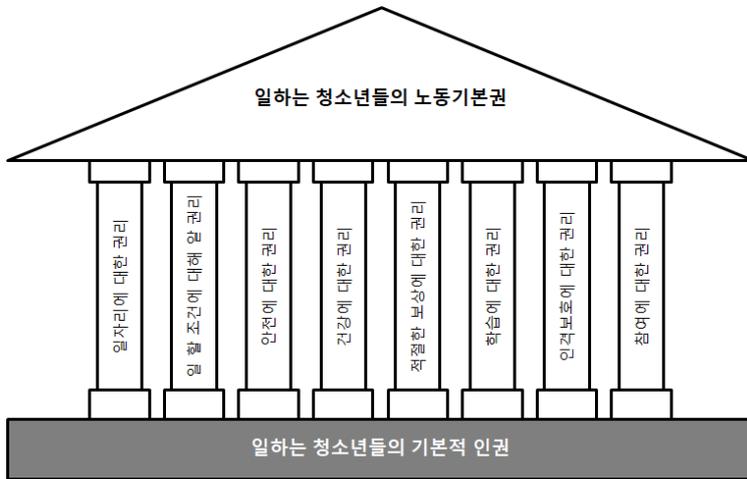
구분	해당 조항	내용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등 고용 금지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사업장에 18세 미만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의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67조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근로계약 금지 -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노동 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전자문서 포함)	500만 원 이하 벌금
	제68조 임금의 청구	-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 청구	500만 원 이하 벌금
	제69조 근로 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1일 노동시간 7시간, 1주일 노동시간 35시간 초과 금지 - 단,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 가능 ※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하는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노동시간 규정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70조 야간근로 와 휴일근로 의 제한	-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시간 및 휴일 노동 제한. - 단,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72조 갱내근로 의 금지	- 18세 미만인 사람 갱내 고용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황여정 외(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러나 아쉽게도 청소년 노동 특별 보호 조항은 청소년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내용보다는 제한과 금지 위주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15세를 기준으로 고용연령 가능한 나이를 정하고, 18세를 기준으로 하루 노동시간과 야간·휴일 노동 제한, 청소년에게 유해·위험한 일에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에 세부 나이 구분 없이 13세와 18세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더 어린 나이에 대해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학교를 다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같아 학생의 노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조화롭게 살피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위험한 물질 규정 역시 나이,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와 같이 청소년 내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 노동에 대해 제한·금지 위주로 규율하는 방식은 헌법에 정한 노동권의 보장 내용을 협소하게 해석해 적용하거나 아예 노동권의 주체가 아닌 양 배제하는 방식으로 굳어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4-2. 근로기준법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영역 중 그간의 법제도와 정책이 ‘일 할 조건에 대해 알 권리’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 등에는 주목했으나,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참여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출처: 황진구, 유민상, 정유진(20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5.

그림 V-4-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2020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에게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권리’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공공기관에 원하는 역할 중 1순위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73.8%), 2순위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모범사업체 소개 및 홍보'(42.2%)였다.

청소년 시기 일의 의미가 오로지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일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경험은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되어 있거나 구직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심(청소년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 중심)으로, 혹은 정책 대상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 재학 이상 청년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왔기에 청소년을 일자리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간 발표되었던 사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인식과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등의 정책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일자리 마련 정책도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접근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 청소년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노동권 보장의 재해석에 따른 새로운 접근들

헌법에 정한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사례에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통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에 대해 '누구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임금노동 중심에서 벗어나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청소년 노동권의 적극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주도성을 갖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사례들과 관련한 비판적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아래 사례에서는 청소년 노동권의 적극적인 보장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해 살펴보았다.

①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접근 사례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서 주목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대전제다. 청소년과 노동의 만남만큼이나 장애인과 노동은 조화하기 어려운 정책 영역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도 제외¹⁷⁴⁾되는 등 '누구나'에서 밀려난 존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174)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권리 중심’이라는 용어는 지역사회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처음 등장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재해석하고, 생산과 효율 중심의 임금 노동과 고용관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정책 기조를 ‘경제적 가치 생산’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 중심으로(조혁진, 명숙, 고태은, 2022) 바꿀 것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권리 중심’ 개념의 의미

비마이너(2024.05.13)에 따르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권리 중심’이라는 개념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권리 중심’이고, 정책의 목표도 생산성이 아닌 헌법적·시민적 권리를 구현하는 데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구현하려면 비경제적 활동 역시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권리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 자체’가 노동이 된다.

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례¹⁷⁵⁾ :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부는 그간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해 왔고, 사업주를 위한 각종 장애인 고용 장려 정책(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았고, 일자리도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적용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요구와 투쟁으로 2017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가 구성되었고,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그러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8일 인출.

175)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례는 조혁진 외(2022) 연구보고서 ‘제7장 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의미와 가능성’을 발췌 및 수정, 보완하여 정리했음을 밝힙니다.

나 정부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실적 위주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 지속하지 못했다. 현재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0년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2022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총 690여 개의 최종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가 운영되고 있다.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표 V-4-14>와 같이 중증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참여자는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사업 전담인력만 배치한 상태다. 전담인력의 경우 전남은 5명당 1명을 지원하지만 서울은 20명당 1명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역간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운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V-4-14.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대상	중증장애인	-
주로 하는 일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서울만 운영)
참여 기간	- 서울 1년 - 서울 지역 외 1년 미만으로 지역별 차이 있음	-
의미와 효과	- 생산성 중심주의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것 - 장애인 차별 없는 맞춤형 직무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 - 다양한 지원체계가 수반된다는 점, -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는 것,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의 기틀이 된다는 것,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절된 노동을 결합시켰다는 점.	당사자 조직에서 사업 제안 및 운영 관련 적극 참여
보완점	- 지역간 격차 해소 - 전담인력 확충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평가지표 개발 -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남의 경우 참여자 5명 당 1명, 서울의 경우 20명 당 1명 전담인력 배치(2022년 기준) -‘근로지원인 제도’는 서울만 운영

* 출처: 조혁진, 명숙, 고태은 (2022). 제7장 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능성에서 발췌하여 정리.

조혁진 외(2022)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생산성 중심주의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과 한정된 직무만 강요했던 기존 정책과 달리 장애인 차별 없는 직무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절된 노동을 결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꼽았다. 그러나 관련 법령 없이 시행되는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전담인력 확충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2020.06.22)은 이 사업에 대해 최종증장애인을 노동의 주체로 설정해 권리 옹호 활동, 인식 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을 노동으로 인정한 점, 이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원으로 삼도록 한 점, 노동하는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 무엇보다 이들이 하는 활동이 기업의 이윤보다 값진 사회적 가치 생산활동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② 기본소득 실험을 통한 접근 사례

청소년 노동권 관련 기본소득¹⁷⁶⁾ 실험을 통한 접근에 주목한 것은 기본소득이 임금노동만 ‘일’이라는 상식에 질문하고, 유급 노동만이 아닌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하승수, 2015; 인권교육센터 들, 2017)는 측면에서다. 청소년 시기 취약한 위치에 몰려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다른 의미의 일’을 상상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해 누군가에게 ‘떨린’ 존재, 경제적으로 ‘종속’된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의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제시될 때면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진다는 점에만 집중해 ‘일을 안 하려 할 것이다’는 우려가 많은데, 단편적인 접근으로 일을 안한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안 하게 되는지(오마이뉴스, 2024.08.06)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에 주목한 이유다.

176)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 급여’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초국적 정치단위에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구성요소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등이 있다.(117쪽~123쪽 참고)

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한 접근의 의미

기본소득 실험과 청소년의 만남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¹⁷⁷⁾. 시행 주체에 따라 저출생과 지역 정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부터 해소해 보기 위해, 또,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혹은 주도적으로 삶을 가꾸가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각 다른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는 지점은 지역사회와 조직에서 청소년을 조건 없이 환대하고, 그동안 ‘떨린’ 존재 취급을 받아온 청소년에게 정당한 자리와 몫을 마련하기(인권교육센터 들, 2017) 위한 시도라는 점이다. 정당한 자리와 몫에는 제한적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을 선택하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몫)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는 기대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 기본소득을 통한 접근 사례 :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의 실험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이하 이상한 나라)¹⁷⁸⁾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의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재정지원 활동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은 2015년부터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자몽(自夢)’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 인권교육센터 들은 2015년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위기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표 V-4-15>와 같이 ‘경제적 자율성’과 ‘일에 대한 통제권 갖기’라는 역량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생계 가능 소득 유지’와 ‘경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삶 살기’

177) 오마이뉴스(2024.08.06).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간을 믿어주는 돈”. <https://omn.kr/29oyu>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월간 옥이네 (2020.10.14.). “청소년 기본소득, 옥천에서 새바람 퍼져 나갈까”. <https://naver.me/x50dxEpd>에서 10월 3일 인출.

일다 (2020.2.15.). “조건없이 월 30만원 지급” 탈가정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https://www.ildaro.com/8651>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일다 (2020.2.15.). “조건없이 월 30만원 지급” 탈가정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https://www.ildaro.com/8651>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한겨레신문 (2022.1.30.). “어린이·청소년에 ‘기본소득 시도’ 나서는 기초단체·학교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29360.html>에서 2024년 10월 3일 인출.

한겨레신문 (2022.1.30.). “어린이·청소년에 ‘기본소득 시도’ 나서는 기초단체·학교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29360.html>에서 2024년 10월 3일 인출.

178)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에 대해 소개하자면, ‘가족팜(fam:패밀리)에 살며 ‘이상한’ 청소년이라는 눈총을 받는 이들이 ‘사회가 더 이상한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긍정하는 곳이다. (관련 기사: 일다 (2015.03.31.) 탈가정 후, 자립을 위해 도전하는 앨리스들. <http://ildaro.com/7043>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자립팜에선 최대 5명이 최장 2년 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립팜 ‘이상한나라’에 사는 이들은 만18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으로 ‘앨리스’라 불린다.”-일다 (2020.2.15.). “조건 없이 월 30만원 지급” 탈가정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https://www.ildaro.com/8651>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등을 제시했고, 자립지원 과정에서 여타의 소득 등에 대해 예측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급 노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work)에 참여할 기회 갖기’, ‘인간다운 조건의 일터 보장받기’, ‘나이와 무관하게 일터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고, 이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유급 일자리 창출’과 ‘임금노동’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은 자립 역량 중 ‘경제적 자율성’에 주목하면서 2017년에는 ‘청소년 기본소득팀’을 꾸려 연구를 이어갔다. 2017년은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실험이 늘어나던 때이기도 했고,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성은 언제나 청소년의 위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호연 외, 2018).

표 V-4-15. 청소년 자립 역량 중 ‘경제적 자율성’

자립 영역	역량	핵심내용(요소)	자립 지원 과정에서 염두에 둘 점
시민으로의 삶	경제적 자율성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가능 소득 유지하기 - 경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삶 살기 - 일상을 영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갖기 - 자기 소득, 재산에 대한 통제권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지급되는 용돈은 물론, 수급비, 노동 소득 등에 대해 예측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금 확대, 청소년을 위한 기초소득 보장 등이 중요한 자립 지원정책으로 요구되어야 함 - 훈련, 인턴십,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이 강요되지 않는지 살펴야 함
	일에 대한 통제권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 노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work)에 참여할 기회 갖기 - 인간다운 조건의 일터 보장받기 - 일터의 시간과 문화, 관계, 흐름, 변화 등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 갖기 - 일터의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 맺기 - 나이와 무관하게 일터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 - 일을 통한 전망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유급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자립 지원정책으로 요구되어야 함 - 임금노동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 프로젝트, 문화작업, 마을작업, 창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터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순응의 기술을 넘어 동료들로부터 존중받고 동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 감성, 법적 기반 등을 안내해야 함

* 출처: 배경내 (2015). 표 9. 84쪽-85쪽에서 일부 발췌.

‘청소년 기본소득팀’은 연구 결과 “‘청소년에게 직접, 조건 없이,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 하는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협상력, 시민으로 살아갈 여유, 미래를 계획할 시간, 사회적 관계 맺기, ‘별’이 된 노동을 벗어날 기회, 소득만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 삶에서 재미를 느낄 틈, 공공성과 ‘사회’에 대한 감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호연 외, 2018)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상한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됐다. 실험은 <표 V-4-16>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2018년부터 진행했다. 대상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8~24세 여성 청소년으로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5개월 동안 매월 1일 30만원씩 지급했다.

표 V-4-16.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구 분	청소년 자립패 이상한 나라
대상	서울 관악구 만 18-24세 여성 청소년 10명
지급 방식	매월 개인에게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참여 기간	1개월~15개월로 참여자마다 다름
재정 마련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에서 2018년~2019년 지원
의미와 효과	-‘경제적 자율성’이라는 자립 역량 강화 -소득만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 -공공성과 ‘사회’에 대한 감각 키우기
참여자 평가	“기본소득에 대해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기본소득 받는 입장을 잘 고려하여, 기본소득을 줄 때 갑질을 하지 않아야 되고, 30만원은 너무 적으니 적정량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올라가야 하고, 어디다가 지출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쿨하게 주어야 한다. 주는 사람은 편견을 갖지 않고 기분 좋게 주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출처: 일다 (2020.2.15.). “‘조건없이 월 30만원 지급’ 탈가정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https://www.ildaro.com/8651>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이호연 (2020). “기본소득과 자기결정의 삶”. 존엄을 부르는 청소년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이끈 청소년 현장의 변화-2020 청소년자립패 이상한나라 기본소득 경험연구 발표회-. 자료집.

이 실험을 시작하고 2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상한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고, 사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일다, 2020.2.15.).

실험 중 청소년에게 지급한 ‘30만원’의 돈은 경제적 자율성이 충족되거나 원하지 않는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밑천으로 삼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표 15>의 참여자 평가처럼 ‘어디다 지출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주는 사람은 편견을 갖지 않고 기분 좋게 주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다른 선택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더불어 사회적 관계 맺기, ‘별’이 된 노동을 벗어날 기회, 소득만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 공공성과 ‘사회’에 대한 감각(호연 외, 2018)을 얻을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 참여자 중 한 청소년은 실험 참가 후 달라진 노동 경험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안 받을 때는 일자리에선 잘리면 일용직이라도 가려고 엄청 목매달고 했어요. 몸 버려가면서 야간 알바 뛰러가는 애들도 있었고 솔직히 나쁜 일로 가려고 했던 이들도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좋은 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이호연, 2020)라고 밝히기도 했다.

③ ‘참여소득’을 활용한 접근 사례

참여소득(179)에서 주목한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이 이미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봉사 활동, 인턴,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참여’ 인정 가능성(180)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 ‘참여소득’을 활용한 접근의 의미

참여소득은 참여자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대가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김정훈, 최석현, 2018).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경제적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르바이트 노동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와 노동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79) 이상준(2022)에 따르면, 참여소득의 역사는 불과 30년이 되지 않았고, 대체로 옛킨슨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이해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참여라는 조건에 의해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참여를 노동시장 참여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 ‘훈련’, ‘자녀 돌봄’, ‘고령자 또는 장애인 돌봄’, ‘승인된 자발적인 일 형태의 임무’ 등을 포함한다. 이상준(2022)은 옛킨슨의 참여소득 정의는 주로 돌봄과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인 논쟁을 거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235쪽~239쪽, 315~343쪽 참고)

180) 프레스시안 (2020.12.02). “한국은 이미 참여소득 강국, 그러나...[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②] 참여소득 시작,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레임 변경에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116145470314>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현재의 청소년 일 경험 제도 또한, 청소년이 일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청소년이 원하는 경험을 위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단순 기능 습득 위주의 직업훈련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자립 준비 청년, 하나의 직무 완성을 위해 무수히 반복 훈련을 해야 하는 경계성 장애를 겪는 청소년,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은둔형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명확한(이상준, 2024) 제도라 할 수 있다.

일 경험 제도와 청소년 공공일자리를 마련할 때 참여소득을 통해 접근한다면, 다른 가능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고용'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일과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이를 청소년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참여소득 통한 접근 사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 시민수당' 지원 사업

'광산 시민수당' 지원사업(이하 시민수당 사업)은 '광산형 일자리 정책 모델'로 추진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라 필수 사회서비스 대응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정책인 시민수당 사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방역 활동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착안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돌보고, 내가 사는 곳에서 가치 있는 사회활동(면 마스크 나누기, 방역 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자존감을 살리고,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 시민수당 사업에서 일자리 개념을 '고용'에서 '참여'로 확장해 접근했다는 점¹⁸¹⁾에 의미를 부여했다.

광산구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광산구 시민수당 지급 조례의 주요 내용³⁰용은 <표 V-4-17>과 같다. '시민수당', '사회적 가치 실현활동', '참여' 등에 대해 정의(조례 제2조)하고, 사회적 가치의 기준과 이에 기반한

181) 프레시안 (2022.1.6.). "광주 광산구, 참여소득 일자리 '광산시민수당' 제도화 추진".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0611353249999>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활동을 지정하고 자문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단위로 '광산시민수당위원회' 설치 조항(조례 제4조)을 마련했다. 또한, 11가지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범위(조례 제7조)를 제시했다.

표 V-4-17. 광산구 광산 시민수당 지급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광산시 민수당 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시민 ”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광산구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광산구 소재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이란 사회·경제·문화·복지·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 참여 ”란 시민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시간 등을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 광산시민수당 ”이란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광산시 민수당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광산시민수당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산시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산시민수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광산시민수당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산시민수당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광산시민수당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매해 광산시민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산시민수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적 가치 실현활 동의 범위	제7조(사회적 가치 실현활동)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활동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활동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및 생활체육 활동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5.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동 6. 문화진흥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 7. 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활동 9.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활동 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활동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 출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조례에 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은 광산구 각 부서별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광산시민수당위원회’(조례 제4조)¹⁸²⁾에서 심의해 선정했다.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표 V-4-18>와 같이 자격증 보유 여부를 요건으로 했으나, 2023년부터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발굴해 진행 중이다. 사는 곳 근처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활동을 연결하기 위해 민간업체 ‘당근마켓’과 협업해 ‘당근(당신근처의)광산일자리 지원사업’¹⁸³⁾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표 V-4-18. 광주광역시 ‘광산 시민수당’ 지원사업 계획(2021년)

구 분	내 용	
참여 영역	면역력	우리동네 청년 견기왕, 작은도서관 도서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기록단 등
	기후대응	찾아가는 자원순환해설사, 온실가스 감축 그린리더, 거점수거센터 자원순환전문가 등
	돌봄	함께 놀자 유아 놀이터, 느린학습자 학습 매니저, 맞춤형 장애인 재활방문 서비스, 우리동네 아동 틈새돌봄 등
재정 마련	구비 자체 사업비와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비 확보 (14개 사업, 294명 활동 지원 및 20명 직접 고용)	
참여 대상	- 사업별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소득과 재산요건은 없음) - 일자리정책의 사각지대 계층(중장년, 여성 등)	
참여 수당	-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 - 수당형(활동지원, 294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인 54만 8천원, 시간당 9천원) 기준 - 임금형(직접고용, 20명) : 최소생계비(1인 109만 7천원, 시간당 1만 520원) 기준 - 참여 개인은 1인당 100시간 한정(시설과 기관은 450시간 한정)	

* 출처: 2021년 ‘광산 시민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서 발췌 구성.

사업 담당자¹⁸⁴⁾에 따르면 민간 업체와 협업하고 자격증 보유 요건을 없애는 등 진입

182) 연합뉴스 (2022.02.23.). “광주 광산구 시민수당위원회 출범…“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장””.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3116300054>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183) 광주드림 (2023.4.13.). “‘당근 광산’. 당근마켓 광산구와 손잡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166>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광산구 블로그 (2024.5.8.). “‘당근광산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343977272>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184) 2024년 6월 13일 광산구청 지속성장 일자리과 일자리 정책팀 면담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 참고함.

장벽을 낮추자 20~30대 참여율이 높아졌고, 10대 참여자도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자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참여자에게 적합한 ‘활동’을 발굴하고 매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공공복지 시설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겹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참여 활동으로 설정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시설과 기관 등에서 적합한 활동을 발굴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범사업과 달리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 기준을 설정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했다.

광산구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시민수당 사업을 ‘공공형 참여 일자리’ 지원과 ‘민간참여형 일자리’ 지원으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공공형 참여 일자리에 9개 사업에 54명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참여 직종으로 ‘아동 틈새 돌봄가’, ‘공론장 코디네이터’, ‘복지 파트너’, ‘작은도서관 도서 활동가’ 등을 제시했다. 민간참여형 일자리에 37개소 공공시설에 363명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을 공공시설 예로 제시했다.

시민수당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의 기준을 뚜렷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아직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광산구에서 수당을 주는 방식 외에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정책의 내용과 차별점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산구 사례를 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¹⁸⁵⁾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¹⁸⁶⁾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④ 새로운 접근법의 시사점

가. 헌법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적용의 필요성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례, 기본소득과 참여수당을 통한 접근 사례는 청소년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을 ‘노동하는 시민’으로 대우할 것과 청소년이 누려야 할 노동권이 유해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18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186) 광주시의회 (2023.4.24.). “제43차 정책토론회(광주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Dg50FCKPIPA>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할 권리와 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권을 알리는 영상 제작 활동’, ‘노동 인식 개선 공공 프로젝트’, ‘청소년 알바 지킴이 활동’,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청소년 일자리로 전환해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도 상상해 볼 수 있다. ‘행정부지센터 카페 운영’이라는 하나의 활동이 추진하는 부처와 기관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제도, 발달 장애 작업장, 자원봉사 활동이 되는데, 같은 일에 대해 어떤 관계에서 운영하는 지에 따라 체험인지 일인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법적 지위를 달리 부여해 발생하는 문제도 청소년 공공일자리로 접근해 해소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보고, 내가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다른 일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청소년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할 때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 원칙은 종종 ‘노동은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해롭다’는 식으로 오작동했다. 그 결과 ‘금지와 제한’ 위주의 소극적 보호 정책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진로교육/직업훈련/직업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에서 나아가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마련, 삶의 방향을 탐색할 기회 마련과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할 때 앞서 살펴 본 ‘권리 중심’의 의미, ‘유급 노동’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의 기준 마련, 복지의 시혜자가 아닌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을 환대하는 관점 등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나. 일하는 과정에서 맺는 관계와 성장의 중요성

각각의 사례는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고민할 때 살펴야 할 것 중 안정적인 소득 보장 못지않게 ‘동료’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각의 사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 성장했다. ‘권리 중심’ 공공일 자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소득이 늘고, 인간관계가 새로이 확대되는 것에 만족(조혁진 외, 2022)했고, 기본소득을 받은 청소년은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거부해 보고, 단체 활동 가에게 ‘커피 쿠폰을 쓰는’ 경험을 통해 그간 받기만 하고, 도움만 받는 관계에서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강영배(2014)는 일본에서 ‘직업체험에 참여한 청소년이 체험의 ‘내용’보다 체험을 통해

만남 ‘사람’과 ‘그 사람과의 대화’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직업체험에서 타인을 만나는 ‘기회’와 관계 맺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직업체험’을 청소년의 일 경험과 ‘참여’ 활동으로 치환해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지위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법 잘 지키는 일터도 중요하지만, 그 일터에서 청소년이 ‘나이 따지지 않고 동료’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4) 청소년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제언

(1) 청소년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숙의 과정 필요

청소년은 헌법을 비롯한 국제인권법과 규범을 통해 보장하는 ‘누구나’ 누려야 할 노동권 향유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에 따라 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을 규율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외에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중문화예술평산업발전법 등에 산재해 있고, 나이 기준이나 노동시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청소년 노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형태와 종사하는 업무의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나이, 성별, 장애, 가족 구성, 학교 재학 여부 등 청소년 내부 차이에 따라 노동권과 함께 살피야 하는 기본권의 내용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에 마련한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의 내용이나 청소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해 보장해야 할 내용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5년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20년을 앞두고 있다. 2013년부터는 청소년종합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제한과 금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에 치중되어 청소년 노동권을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많은 부분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리 중심’으로 노동권을 접근하는 방식, 임금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참여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시도들을 참고해 청소년 노동권의 내용과 보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정한 노동권을 청소년이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성과 청소년 내부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

청소년에게 보장해야 할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숙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민해야 할 영역은 청소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다. 또한, 후사당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천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원이다.

정부의 청소년종합보호대책에는 ‘공공일자리 마련’이라는 대책이 제시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에 <표 V-4-19>와 같이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규정이 있지만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일자리는 일부 일 경험 제도를 통해 체험/교육/훈련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노동기본권의 적극적인 보장 차원보다는 대상별 서비스 지원사업의 형태로 제공되는 측면이 크고,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대표되는 청소년의 일자리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표 V-4-19. 청소년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내용

구분		내용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6.7.19. 제정)	제6조(사업) 제7호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5.10.1. 제정)	제2조(정의) 제3호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제7호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2020.7.6. 제정)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시장은 노동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7.8.9. 제정)	제2조(정의) 제3호 “청소년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을 말한다.

구분	내용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호 청소년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출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또한, 최저임금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잘 지키면 청소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표 V-4-20>과 같이 강원도와 광주, 서울, 아산, 제주 지역 등에서 조례를 통해 ‘청소년 친화 사업장’,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기초적인 노동법 준수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눠 갖는 곳’,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곳’, ‘연소노동자 고용할 때 갖춰야 할 서류를 갖춘 사업장’ 등이다.

표 V-4-20.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정의 및 선정 관련 주요 조례

구분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강원도 청소년 행복 일터 기준(2024년 사업 중단) - 참여대상 : 청소년 고용 가능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과 연소자 증명서 비치 등 연소노동자 고용할 때 갖춰야 할 서류를 갖춘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청소년 노동시간 준수 사업장 - 지원내용 : 청소년 행복일터 스티커, 청소년 노동 관련 노무 자문, 표준계약서와 필요 서류 양식 제공, 사업장 홍보 등 </div>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정의) 제4호 4.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구분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나눠 갖는 곳 2)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곳 3) 주 15시간 이상 청소년노동자를 채용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 4) 사업주로부터 폭언·폭행·성적 피해 없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곳 5) 노동자가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추천해주는 곳 </div> <p>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로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p>	<p>제11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p> <p>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p>
<p>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p>	<p>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안심알바 사업장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안심알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인사노무컨설팅지원, 기초고용질서 준수사업장으로 홍보 및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p>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p>	<p>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p> <p>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p>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www.gwysc.or.kr/work-list?mcode=322> 2024년 10월 21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http://www.gj15886546.org/sub05/sub05_01.php 2024년 10월 21일 인출.

매일노동뉴스(2024.10.10)에 따르면, ILO는 1999년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중시하고, 일자리가 사회적 통합, 경제적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Decent Work'를 제시했다. 'Decent Work'는 고용기회 제공, 노동권 보장, 사회적 보호 확대, 사회적 대화 촉진의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는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인간으로서 체면과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앞서 강조한 청소년이 일을 통해 맺는 타자와의 '관계'와 '기회', '성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청소년에게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지위와 배경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 보장과 원하는 일 탐색과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청소년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잘 '의존'하고, 필요한 지원을 두려움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이를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 노동을 규율하는 법령은 아르바이트 노동뿐 아니라 현장실습 등 일 경험 제도를 통한 노동, 플랫폼 노동과 봉사 활동 및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 청소년 노동 전반을 규율하기에 부족한 체계여서 청소년 노동 규율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황여정 외, 2024).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인 사업장 기준과 주 15시간 미만 기준 등 노동법률에 정한 최소 기준조차 제외하는 차별적인 노동법령을 고쳐야 하고, 청소년 노동 전담 부처와 전담자 지정, 각 지방노동지청의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등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법률 용어와 간소한 구제 절차 마련 등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권의 향유자로 청소년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나이 차별 없이 청소년을 동료로 대하는 관계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청소년과 관련 있는 사람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노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¹⁸⁷⁾

이 절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아동·청소년 인권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관계망 변화로 인해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림 V-5-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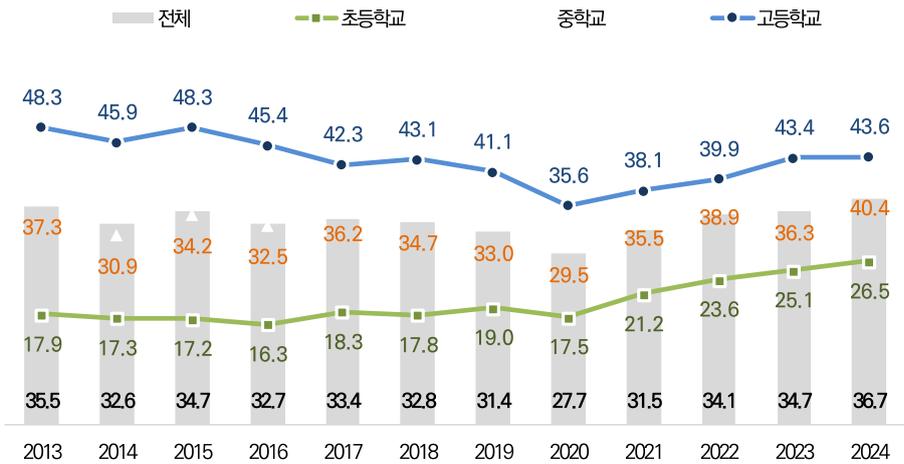


그림 V-5-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를 시행하였고,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한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사회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 분석 및 하위집단별 분석을 시행하여 현황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으

187)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로, 외로움은 인지된 고립감(perceived social isolation)으로 보고 관련 지표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는 전체 평균, 성별, 장애여부, 다문화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집단 및 취약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고립 지표가 아동·청소년의 웰빙 지표(삶의 만족도,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죽고 싶다는 생각 등)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법적, 정책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과연 권리 차원에서 대응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가? 그렇다면 어느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정책 수단은 어떠한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막 출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책과 근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과 관계망은 그동안 기본적 인권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부분으로 사회적 참여와 연결에 대한 논의를 인권과 함께 결부 지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정책적 제도화에 기여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관련 지표의 현황

먼저 살펴볼 지표는 UCLA 외로움 척도 중 4개 문항만 활용한 것이다. 이는 원래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였으나 대규모 조사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추려서 조사한 것이다. UCLA의 외로움 척도는 인지된 고립감에 대한 척도로도 사용되므로 이 척도의 수치 차이를 보는 것은 외로움 정도를 비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V-5-1.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외로움 문항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먼저 2023년 처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측정한 본 문항은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등이 약간 증가했으니 그 정도는 미미했다. 예를 들어, 2023년은 1점~4점의 척도 중에서 1.72점이었고, 2024년은 1.75점으로 변화량은 매우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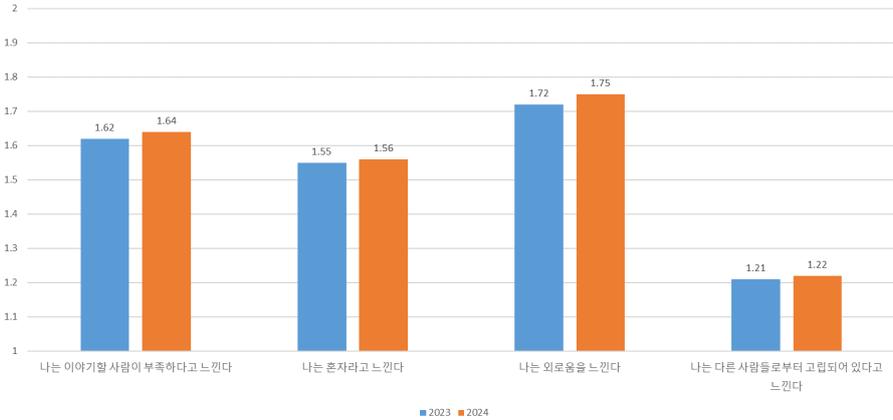


그림 V-5-2. UCLA 외로움 척도 4개 문항의 연차별 비교(2023~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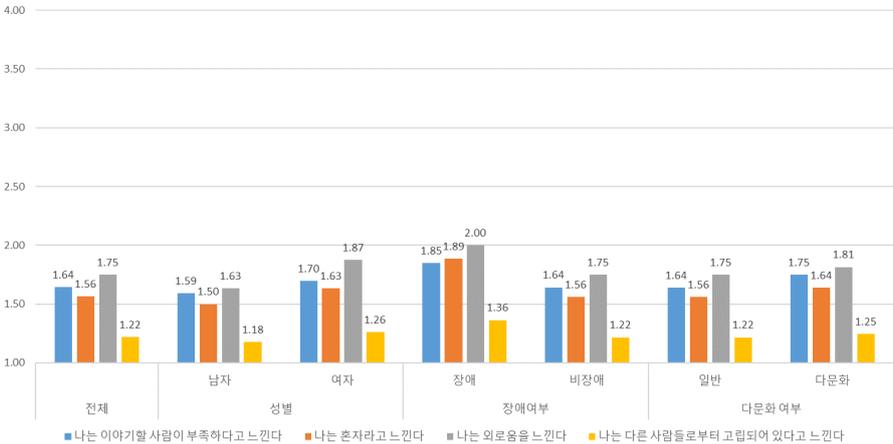


그림 V-5-3. UCLA 외로움 척도 4개 문항의 인구 대상별 비교(2024년)

평균을 넘어서 UCLA 외로움 척도를 전체, 성별, 장애여부, 다문화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UCLA 외로움 척도의 점수는 매우 낮은 편인데 특히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문항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장애 여부와 다문화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가 있는 응답자들은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변수의 점수가 2.00점으로 비교대상 수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체계 관련 문항 ('23~'24)

사회적 지지 관련 문항은 사회적인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여섯가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항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한 것으로,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표 V-5-2.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사회적 지지 체계 관련 문항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분석 결과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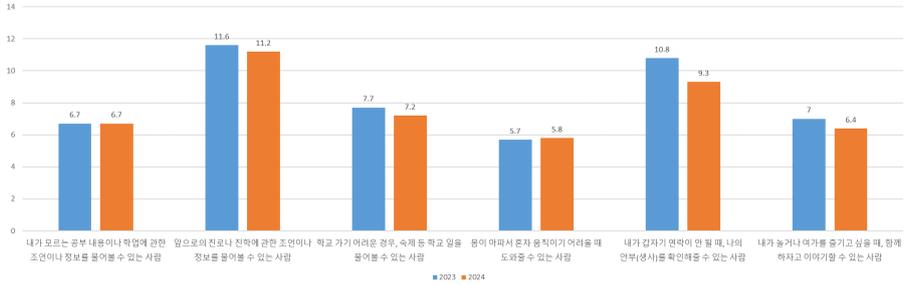


그림 V-5-4. 사회적 지지체계 6개 문항의 연차별 비교(2023~2024년)

사회적 지지체계 척도를 전체, 성별, 장애여부, 다문화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장애유무에 따라 지지체계의 정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아동도 위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 지지체계의 유무를 조사해보니 다른 인구 대상과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은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회복도 함께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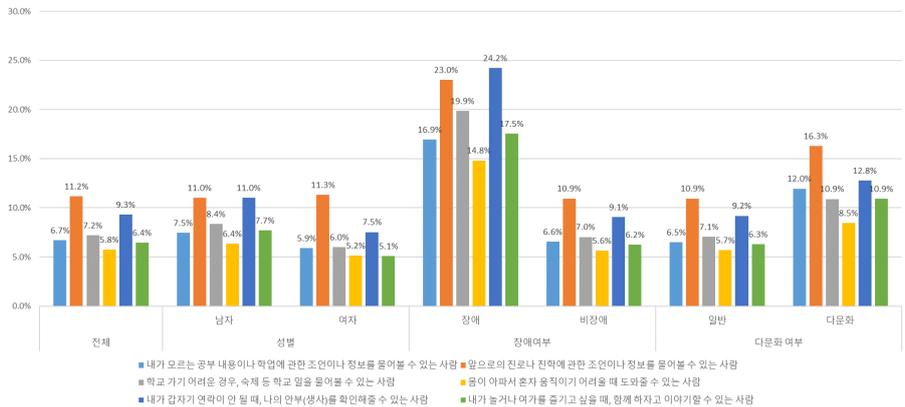


그림 V-5-5. 사회적 지지체계 6개 문항의 인구 대상별 비교(2024년)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삶의 가치,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필요할 때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삶의 가치 차이,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7.36점이었으며, 항상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3.86점에 불과했다. 반면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자살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상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자살생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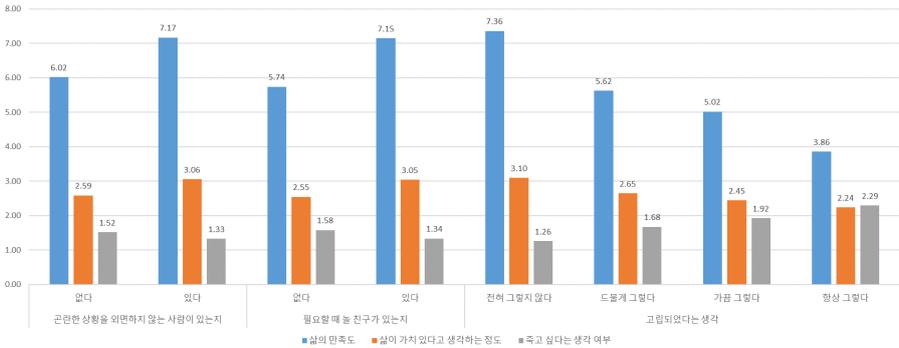


그림 V-5-7. 고립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삶의 가치,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비교(2024년)

이러한 분석을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은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나 감정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해 형성되고 인지하는 현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관한 아동·청소년 인권 차원에서의 검토

사회적 연결에 대한 권리가 실재하는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최근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사회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연결이 과연 권리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연결에 대한 권리가 실재한다면 이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포용 정책

(social inclusion)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립·은둔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결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더 정교하게 규정되어 각 국가로 확산된다면 많은 이들의 사회적 연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는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이를 권리성을 지니고 지원을 받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전국 4개소, 여성가족부의 전국 12개소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이 법정정책 근거 없이 자치단체 수준에서 설계되고 확대된다면 사업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결국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할 때 정책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사회적 연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사회와 참여를 사회와의 연결로 보고 관련 활동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관련 활동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더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이 권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비차별원칙을 기반으로 한 보편성과 사회적 참여 가능성 등 두 가지 틀이 필요하다. 현재 은둔형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은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개별 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사용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고립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참여 가능성이다. 사회적 연결은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참여 가능성을 보장하되 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같이 복지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면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주목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후적인 개입 중심의 프로그램 발전이 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문제시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디지털화, 개인주의화 같은 더 거시적인 사회적 변화가 함께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더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권리 혹은 사회적으로 연결될 권리가 타당한지, 사회적 연결에 대한 권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연결을 권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은둔한 상태에 개입하는 선별적이고, 사후적인 방식에 비해 더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연결을 권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 ————— 제6장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도출과정
-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

1. 정책제언 도출과정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을 알아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질적,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 지표연구, 심층분석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등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진행하고 제언을 도출하였다(그림 VI-1-1 참고).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에 맞게 세부 정책을 제안하였다.



* 출처: 유민상 외(2023)의 도식을 일부 수정하였음

그림 VI-1-1. 제언 도출과정

188) 이 장은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이 절에서는 문헌연구, 지표연구, 심층분석, 전문가 포럼 등에서 진행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정리하였다.

1) 문헌연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문헌연구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언론 동향 분석이다. 1990년대 이래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들이 증가하였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조례 마련) 등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과 관련한 공공, 민간의 행위자들도 증가하였다.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이후 교사에 대한 폭력, 폭언,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나타나는 등 권리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책임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언론 동향 분석의 시사점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동·청소년, 교사 등 전체 학교 구성원의 웰빙 증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 및 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영역에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국내 정책 동향 검토이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으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운영되었고,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책으로의 확대가 일어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련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방안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세부과제와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개인의 웰빙’ 영역 세부과제로 추가하였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6호에 관한 검토이다. 2023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는데, 올해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일반논평 내용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

를 돕고자 하였다. 일반논평 26호는 아동 권리 보호 측면에서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환경권에 대해 명시한 것에 특징이 있다. 정부는 환경 관련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아동권리 보장 방안을 반영하고,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인식 제고,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고려,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생태적 환경’ 영역을 세부 과제로 추가하였다.

네 번째는 핀란드와 영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검토이다. 이 장은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내용을 보면, 권리 수준은 우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해당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불리한 상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보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디지털 환경, 아동 견해 청취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되었다.

표 VI-2-1. 문헌연구의 주요내용·시사점 및 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언론동향 분석 - 1990년대 이래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사들이 증가하였고,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화(조례마련) 등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과 관련한 공공, 민간의 행위자들도 증가 -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새로운 영역과 주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 아동·청소년, 교사 등 전체 학교 구성원의 웰빙 증진을 위한 방안 검토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 및 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정책제언
<p>교사에 대한 폭력, 폭언,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나타나는 등 권리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책임성 등 과제로 등장</p>	
<p>• 국내 정책 동향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각 국가별 협약 이행 사항 심의 및 아동의 사법 접근법과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진행 -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늘봄학교 및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도 추진 -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 점검 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개인의 웰빙'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p>• 일반논평 26호(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청소년 권리)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특히 환경권에 대해 명시한 것이 특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논평 제26호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환경 관련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아동권리 보장 방안을 반영하고,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인식 제고,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고려,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보 접근성 보장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생태적 환경'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p>• 주요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핀란드, 영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이민자, 성소수자, 기후변화, 디지털 환경, 아동 견해 청취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표연구는 7개 클러스터와 1개의 일반논평(25호, 26호) 관련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타인을 차별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었다. 최근 1년간 차별 피해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순으로 높았고, 차별가해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순으로 높았다. 아동·청소년의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더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종합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이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정도는 높으나, 유해매체 이용 경험은 높고,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디지털 사용 역량 등은 아직 부족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고,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폭력 및 학대이다.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5명 중 약 2명 정도는 1년 이내에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이 작년보다 올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욕설·모욕(28.7%), 폭행·구타(21.7%), 따돌림(14.6%)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는 단 한 번일지라도 건강한 사회 적응 및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시급한 예방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하였다.

네 번째 클러스터는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이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보호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쉼터 이용 경험률은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시설 중심에서 가정 보호로, 가정밖청소년도 아우를 수 있는 점진적 탈시설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

을 얻게 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다섯 번째 클러스터는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이다.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자해 생각이나 시도 경험 비율도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취약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학교’,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의 세부 과제에 이를 반영하였다.

여섯 번째 클러스터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이다. 사교육비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격차가 나타나는 등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여가·문화·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놀이 불평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으며,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지역사회’ 영역에 관련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일곱 번째 클러스터는 특별보호조치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경험 비율이 5.8%이고, 직업계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심리·정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가 주로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초단기 일자리(혹은 일거리)에 몰려 있어 노동시장으로 일찍 나가는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폭력 및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회복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표 VI-2-2. 인권지표연구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p>•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들의 차별피해 및 가해 경험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차별피해 및 가해 경험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음. - 최근 1년간 차별피해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순으로 높았고, 차별가해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사는 동네,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순으로 높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보다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p>• 시민적 권리와 자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정도는 높으나, 유해매체 이용 경험은 높고,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디지털 사용 역량 등은 아직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p>• 폭력 및 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5명 중 약 2명 정도는 1년 이내에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함.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이 작년보다 올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욕설·모욕(28.7%), 폭행·구타(21.7%), 따돌림(14.6%) 피해는 심각한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는 단 한 번일지라도 건강한 사회 적응 및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시급한 예방 대응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p>• 가정환경과 대안양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쉼터 이용 경험률은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중심에서 가정 보호로, 가정밖청소년도 아우를 수 있는 집진적 탈시설화 추진 노력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자해 생각이나 시도 경험 비율도 낮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취약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및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 ➔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학교',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사교육비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격차가 나타나는 등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여가·문화·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놀이 불평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 필요 ➔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지역사회'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보호조치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경험 비율이 5.8%이고, 직업계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심리·정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가 주로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초단기 일자리(혹은 일거리)에 몰려 있어 노동시장으로 일찍 나가는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폭력 및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회복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폭력 및 학대',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3) 심층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심층연구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심층연구는 자살생각 변화추이와 인권보장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한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가족, 학교의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

였으며, 이를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두 번째 심층 연구는 증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이다.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취약성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로 이어져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착된 취약성이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불리함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단절됨으로 발달권을 제한하고, 다른 사회 참여를 막고 정신건강에서의 피해, 신체 건강에서의 피해 등을 유발하므로 초기의 취약성이 증착되어 더 크게 불리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취약성 및 인권 미보장에 대해 예방 및 회복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를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폭력 및 학대’,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와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가정’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세 번째 심층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이다. 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위험 노동으로의 유입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동 관계법의 한계로 취약 노동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경험을 통해 경험을 쌓는 일경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하는 청소년이 보호받고 경력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며 적극적 노동권 실현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네 번째 심층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하고 있고, 완충재가 줄어들면서 사회정서적 영향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 지원 정책은 이제 막 출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차원으로만 진행되거나 민간기관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권리 중심 접근을 통해 예방적 정책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으며,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개인의 웰빙’, ‘가정’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표 VI-2-3. 심층분석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생각 변화추이와 인권보장수준 -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가족, 학교의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에 대한 면접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취약성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로 이어져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기의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과 중첩되어 교육권, 발달권, 참여권,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미보장을 유발함 - 예를 들어,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단절됨으로 발달권을 제한하고, 다른 사회 참여를 막고 정신건강에서의 피해, 신체 건강에서의 피해 등 유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취약성 및 인권 미보장에 대해 예방 및 회복적 접근을 통한 지원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폭력 및 학대', '특별보호조치',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가정'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 친화적 개편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구권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 - 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위험 노동으로의 유입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동 관계법의 한계로 취약 노동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 경험을 통해 경험을 쌓는 일 경험 기회가 매우 부족함 - 적극적 노동권 및 사회권 보장 방식 중 하나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방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청소년이 보호받고 경력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며, 적극적 노동권 실현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하고 있고, 완충재가 줄어들면서 사회정서적 영향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지원 정책은 이제 막 출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차원으로 진행되거나 민간기관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권리 중심 접근을 통해 예방적 정책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개인의 웰빙', '가정'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

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포럼 개최 등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

그 외 전문가 자문과 포럼 등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참여형 지도 제작(커뮤니티 매핑) 포럼에서의 시사점이다. 임완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기반의 참여형 지도 제작(community mapping) 활동을 통해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소속감과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참여형 지도 제작 방법은 지도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고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환경 개선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개인 역량 증대, 효능감 개선의 영향이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지역사회’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두 번째는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에서의 시사점이다. 청소년 노동에 관한 심층연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변화하는 청소년 노동 환경을 법제나 지원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소년 노동 참여가 노동인권 침해나 상해 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규제와 금지 차원의 법제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제공 등이 필요하여, 기존 법제와 제도를 통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강화, 새로운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한 일할 권리 강화의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소득 등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하였다.

표 VI-2-4. 그 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시사점·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지도 제작(커뮤니티 매핑) 포럼 - 디지털 기기 기반의 참여형 지도 제작 (community mapping) 활동을 통해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소속감과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지도 제작 방법은 지도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고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 지역 환경 개선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개인 역량 증대, 효능감 개선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의 ‘지역사회’ 영역 세부 과제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은 오랜 역사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법제와 제도를 통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강화, 새로운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한 일할 권리 강화의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제언
<p>지니고 있으나 변화하는 청소년 노동 환경을 법제나 지원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p> <p>- 청소년기 노동 참여가 노동인권 침해나 상해 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규제와 금지 차원의 법제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제공 등 필요</p>	<p>를 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소득 등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이 필요함</p> <p>➔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의 '특별보호조치' 영역 세부 과제에 반영</p>

지금까지 살펴본 시사점과 제언을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비전, 원칙,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13개의 세부 정책 제안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

1) 정책의 비전, 원칙 도출

비전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모든 아동·청소년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정하였다.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직접적으로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를 기반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더 세부적인 과제를 2020년대 한국 사회라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 안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틀은 이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유민상 외(2023)의 도식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VI-3-1. 본 과제의 비전과 원칙

2) 세부정책과제 도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비전과 원칙하에 올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과제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402001호)」의 생산과 보고에 주된 목적이 있으나,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제언도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정책 설계 시에도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판단하고자 하였다.

세부정책 과제는 두 가지 틀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제언으로, 국가보고서 작성 시 기본틀이 되는 영역들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이는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연구의 작성 목적이 국가보고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제언이다. 클러스터 중심의 제언은 세부 주제와 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법·정책이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7가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6가지의 총 13개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각 세부 정책은 문헌검토, 이행 모니터링,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CRC 최종견해 등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폭력 및 학대 영역에서는 자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과제가 도출되었다. 넷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과제가 도출되었다. 다섯째,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과제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과제가 도출되었다. 일곱째,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영역별 세부 과제와 도출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I-3-1. 세부 정책 과제-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문헌 검토	이행 모니터링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CRC 최종 견해
영역 1-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 1-1.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
영역 1-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 1-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신제 모니터링 강화	●				●
영역 1-3. 폭력 및 학대					
과제 1-3.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	●		
영역 1-4. 가정환경과 대인양육					
과제 1-4.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		●		●
영역 1-5. 장애·가정·보건의 복지					
과제 1-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	●		
영역 1-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1-6.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			●	
영역 1-7. 특별보호조치					
과제 1-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보장			●	●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웰빙 영역에서는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가정 영역에서는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학교 영역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과제가 도출되었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 영역에서는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다섯째,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영역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과제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생태적 환경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영역별 세부 과제와 도출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I-3-2. 세부 정책 과제-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문헌 검토	이행 모니터링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포럼	CRC 최종 견해
영역 II-1. 개인의 웰빙					
과제 II-1.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	●		
영역 II-2. 가정					
과제 II-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			●
영역 II-3. 학교					
과제 II-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	●		
영역 II-4. 지역사회 환경					
과제 II-4.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			●
영역 II-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II-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			●
영역 II-6. 생태적 환경					
과제 II-6.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			●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정책의 비전, 원칙, 세부 정책과제를 반영한 정책제언 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절부터는 세부정책과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 영역 I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 I -1.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영역 I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 I -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 영역 I -3. 폭력 및 학대**
과제 I -3.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 영역 I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과제 I -4.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 영역 I -5.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과제 I -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 영역 I -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I -6.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 영역 I -7. 특별보호조치**
과제 I -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 할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 영역 II -1. 개인의 웰빙**
과제 II -1.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 영역 II -2. 가정**
과제 II -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 영역 II -3. 학교**
과제 II -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 영역 II -4. 지역사회 환경**
과제 II -4.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 영역 II -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II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기구 설치
- 영역 II -6. 생태적 환경**
과제 II -6.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출처: 유민상 외(2023)의 도식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VI-3-2. 본 과제의 비전, 원칙, 세부과제

3)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189)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각 과제를 보다 명료히 하기 위하여 각 제언 별로 추진 일정(단기, 중기, 장기), 관련 부처, 신규 여부로 정리하였다. 각 과제는 매우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제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야 하는 과제들로 구분된다. 이러한 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3-3.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추진일정			관련 부처	신규 여부
	단기 (25~26)	중기 (27~30)	장기 (31~36)		
영역 1-1. 인권일반 및 알권리 과제 1-1.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국회 법무부	신규
영역 1-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 1-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생제 모니터링 강화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존
영역 1-3. 폭력 및 학대 과제 1-3.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1-4. 가정환경과 대안교육 과제 1-4.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존
영역 1-5. 장애·기초 보편과 복지 과제 1-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신규
영역 1-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1-6. 통합자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영역 1-7. 특별보호조치 과제 1-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보장	●	●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신규

189) 이 절에서 인용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I」,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권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과제 I-1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주요한 원칙으로 ‘비차별’을 명시하고 있고, 비준한 국가들에 차별금지를 위한 법·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입법 활동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어 왔음.
-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만난 청소년과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좌절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IV장 2절). 이는 청년 대상 연구에서도 장애, 아동기 시절겨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임(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 아동·청소년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나 정체성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사회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관련 후속 입법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에 반영되어 생애전반기 당사자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VI-3-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무차별원칙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자아동, 이주가 정지녀 차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이 규정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금지를 당사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p>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아동, 이주자 자녀, 여자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지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p> <p>33. 위원회는 협약 제29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하여, 차기 보고서에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노력 중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조치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p>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p>
<p>비차별</p> <p>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 가정, 탈북자 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 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p> <p>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권해</p>
<p>비차별</p> <p>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우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사항인 것 (CRC/C/KOR/5-6, para. 36). <p>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력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 세부내용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혹은 「평등법(안)」의 제정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17대

(2004~2008년)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음. 2007년 최초로 접수된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도 유효함. 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차별금지의 요소로 지적하는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차별금지법안 (2007, 의안번호 178002)
<p>■ 제안 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p>■ 주요 내용</p> <p>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및 제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영역 및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하·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3)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구제 효과를 높임. <p>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평등이념의 사회 전반적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p>다.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규정의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영역별로 대표적인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모집·채용, 임금·금품 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융서비스 공급·이용, 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 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문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기회, 교육내용 등에서의 차별 유형을 적시함. (3) 차별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차별예방을 위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라.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안 제28조 및 제2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하고, 특히 법원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 관련 구제절차가 활성화되고,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외에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짐. <p>마. 입증책임의 배분(안 제30조 및 제3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 (3) 차별행위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8002] 차별금지법안(정부).

https://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I7L1G2F1T2P1N4Y5R0D3T1N3X7I2 에서 2024년 10월 22일 인출.

- 가장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음.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혹은 평등법안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함.
- 이미 여러 선진국은 차별금지 혹은 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영국은 「Equality Act(평등법)」을 2010년 제정하였고, 핀란드는 「Non-discrimination Act(반-차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성과와 한계에 관해 연구하여 국내 적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⁹⁰⁾ 입법 이후에는 국내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법률 및 정책에 차별금지 및 평등 원칙을 반영해야 함.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혹은 「평등법(안)」의 제정

관련부처 및 기관

- 국회, 법무부

표 VI-3-5.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국회, 법무부	신규

190) 각 국가의 법률은 다음 페이지 참조

핀란드: <https://www.finlex.fi/fi/laki/kaannokset/2014/en20141325.pdf>

영국: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과제 1-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에 등록하는 절차 마련 및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함과 더불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표 VI-3-6.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출생통보 관련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p>제7조</p> <p>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p> <p>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p>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p>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 19, 37(a)조)</p> <p>출생신고</p> <p>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p>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p>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p> <p>출생등록</p> <p>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p> <p>(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p> <p>(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p> <p>(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p> <p>(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p> <p>정체성에 대한 권리</p> <p>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p>

- 이에 202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음. 2024년 8월 현재,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16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였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8.20.). 그러나 여전히 병원에서 출산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호출산제가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부모의 익명성 보장으로 아동이 자신의 출생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우려도 제기됨.
- 따라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 확보, 위기·취약 가구의 임신·출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우선 제공 등 해당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부내용

-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소재·안전 파악 및 필요시 자원 연계
 - 2023년 8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재와 건강 상태,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도록 함. 또한, 가정 내 환경 및 부모,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 시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함.
- 위기·취약 가구의 임신·출산에 따른 서비스 및 가정양육 지원 강화
 - 보호출산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하기 위해 위기·취약 가정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필요
 - 미혼 또는 청소년 산모의 경우, 병원비가 없거나 임신 사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출산 여부 미결정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으므로(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위기 및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산모 당사자 또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출산용품 및 생필품, 산후조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이 확대되어야 함. 특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만19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로 지원 가능한 연령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호출산보다는 가정양육을 증진하기 위해 출산 이후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우선순위로 배정하여 즉각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시, 오류 사항에 대한 교차 점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현재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건수 및 지원 업무 등의 경증을 감안하여 추후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 등도 고려해야 함.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 범위를 19세에서 24세로 확대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표 VI-3-7.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존

과제 I-3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권고문 및 제5·6차 최종견해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폭력 및 학대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연령층의 폭력 및 학대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초4~초6)의 경우 5명 중 약 2명 정도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욕설 및 모욕 피해율 28.7%, 폭행 및 구타 피해율 21.7%, 따돌림 피해율이 14.6%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은 단 한 번일지라도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폭력 및 학대가 일어나기 전, 아동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유·초등 시절부터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함.

표 VI-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폭력 및 학대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p>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p> <p>체벌</p> <p>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인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p> <p>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p>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p> <p>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했었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p>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거 보고서에 포함하라.
 -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HCH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권해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과, 변호사의 부족
-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촉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 세부내용

- 유·초등학생 대상 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있음¹⁹¹⁾.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저연령층(유·초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만큼,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연령층(유·초등) 대상으로는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초등학생 대상 또래 관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과거의 유·초등 아동들이 동네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학교 쉬는 시간과 방과 후 또는 주말 기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또래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놀이 시간을 가졌던 반면, 요즘 우리나라 유·초등 아동들은 이러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연습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이러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유·초등학생 보호자 대상 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 채널 및 방법 다양화
 -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학대 문제는 아동·청소년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근절이 어려움. 가정 내 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초등학생 보호자 대상의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학교를 통한 학부모(보호자) 교육 뿐 아니라, 보호자와 접점이 있는 동사무소, 영유아 검진 기관 등 학부모(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안내책자 배부, 동영상 교육 이수, 실제 강연 개최, 유튜브/SNS 교육 등 교육 방법 또한 다양화해야 함.

191)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의 총 6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해당 내용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https://www.stopbullying.re.kr/board?menuId=MENU00345>에서 2024년10월 14일 인출)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계획에 저연령(유·초등) 대상 예방 대책을 강조하여 포함해야 함.
- 교육부는 지난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¹⁹²⁾, ‘제 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정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전학 기록을 4년 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학교폭력 정책을 제시하였음¹⁹³⁾.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의 처치 및 엄중 대처에 의한 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강조하였으나,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둔, 저연령층(유·초등)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은 다소 덜 강조하였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표 VI-3-9. 저연령층(유·초등) 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규

192) 교육부 보도자료(2024.09.25.).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107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10월 14일 인출.

193) 교육부 보도자료(2023.04.12.).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에서 10월 14일 인출.

과제 I-4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내에서 보호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되, 불가피한 경우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시설형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여전히 양육시설 중심의 시설보호가 대안양육 체계 내에서 공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한 보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제5·6차 최종견해를 통해 탈시설과 관련된 권고를 강조하였으며, 국정과제에서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명시하여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이봉주, 박정민, 김선숙, 2022)도 이루어진 바 있음.

표 VI-3-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안양육 관련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p>E.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상실 아동</p> <p>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 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p> <p>(a)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집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p>

- 이에 대안양육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대규모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 보호 체계로의 개편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특히, 탈가정을 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주로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 머무르게 되며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보호나 지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탈할 경우,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또한, 쉼터나 자립지원관 등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데 한계가 있음. 이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 당사자 개별면접에서도 쉽터를 전전했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장 전문가들도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머무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및 직업 등을 지속하기 어려워 결국 취약한 환경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함(V장 3절 심층연구). 따라서 탈가정 등으로 가정의 보호체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권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보호를 우선시 하기 위해 위탁가정 발굴 및 지원 확대
 - 2023년 현재, 보호대상아동 수 2,054명 중에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의 수는 783명으로(보건복지부, 2024b), 보호대상아동 수에 비해 위탁가정의 수는 적은 편임.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나(보건복지부, 2024c) 시설보호가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가정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발굴 및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구체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과 친밀도 및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가정의 지인이나 이웃, 친구 등의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이주연, 2024) 위탁가정의 수를 더욱 확보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30~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므로(보건복지부, 2024b), 보다 안정적인 위탁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육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조정해야 함.
- 단계적으로 시설의 소규모화 전환 진행
 - 2022~2023년 동안 서울의 ○○구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정선욱, 정익중, 김진숙, 강희주, 윤은영, 주휘진, 2024).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소규모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시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 장비 및 공간 문제 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함.

- 향후에도 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을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국비 보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양육시설 이외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탈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추진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인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원하는 보호 체계나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의 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주거 계약을 위해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여 학대 가해자인 부모와 대면을 해야 했으며 주거지도 노출되었음(V장 3절 심층연구). 이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행사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의 연계도 필요함.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필요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2항 주거지원필요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주거약자에 가정 밖 청소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 필요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표 VI-3-11.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구축 및 주거권 보장 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존

과제 I-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청소년(9~24세) 자살자 수는 총 884명으로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 10.8명에 해당하며(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¹⁹⁴),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10~1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5~2022¹⁹⁵),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3·4차 권고문 및 제5·6차 최종권해를 통하여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였음.

표 VI-3-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자살 관련 권고 및 최종권해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p> <p>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p> <p>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p> <p>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정신 건강</p> <p>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p>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권해</p> <p>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 <p>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p>

194)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4). 2024 자살예방백서. p.39. (통계청, 2018~2022년 사망원인통계). <https://www.kfsp.or.kr/home/kor/board.do?menuPos=82&act=detail&idx=4818&searchValue1=0&searchKeyword=&pageIndex=1#none> 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195)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5~2022.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id=218>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추이와 인권보장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물론, 가족, 학교 등의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V장 2절 심층연구).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인 개입보다는, 자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예방 및 개입 방법을 검토해야 함.

□ 세부내용

- 아동·청소년 자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예방 대책 수립
 - 아동·청소년의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탐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보다 면밀한 자살 관련 현황조사가 필요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이러한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표 VI-3-13).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¹⁹⁶⁾와 ‘심리부검’¹⁹⁷⁾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자살 관련 면밀한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96)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자살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3.28.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826&tag=&nPage=1에서 9월 12일 인출)

197)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최근 9년간(2015~2023)의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주변인들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의 심리적 행동적 양상과 변화를 검토하여 자살의 원인을 탐색하는 조사 방법으로, 19세 이상의 자살사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27.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885&tag=&nPage=1에서 9월 12일 인출)

-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를 모두 포괄하고,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함.

표 VI-3-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자살 관련 연구 및 조사 필요성에 대한 권고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p> <p>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p> <p>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p> <p>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정신건강</p> <p>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통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p>

- 자살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맞춤형 지원
 -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건강, 가족, 학교 등의 환경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V장 2절 심층연구), 자살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이거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 자살 생각이 다른 집단보다 크게 높은 만큼(V장 2절 심층연구),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각각의 아동·청소년마다 자살 위험에 놓이게 된 원인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다차원적이면서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및 생명존중 관련 교육 활성화
 - 위와 같은 다차원적·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년들이 스스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주변인(보호자, 교사, 친구 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과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자살 및 생명존중 관련 교육을 보다 실용성 있게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의 변화: 경쟁적 교육 환경 개선 및 정신적·체력적 회복 기회 제공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업 문제'였음(그림 VI-3-3). 경쟁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한 학업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의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과 높은 스트레스에 높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음(표 VI-3-14).

-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원활히 해소하고 체력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 음악, 미술 활동 등 다양한 여가·놀이 시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학교 교육 과정으로써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과목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그림 VI-3-3. 2013~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살 생각 이유

표 VI-3-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경쟁적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한 최종견해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p> <p>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p> <p>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p>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청소년 자살 관련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포함
- 자살은 연령대에 따라 위험요인, 대처방안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청소년 자살에 특화된 조항 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태조사와 심리부검과 같은 자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표 VI-3-15.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과제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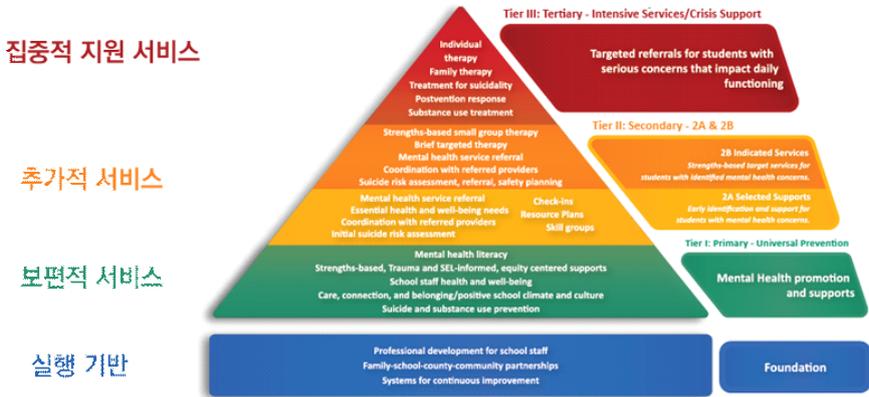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신규

과제 1-6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청소년의 학습, 사회, 정서, 행동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본 연구 지표들의 장기 추세도 변화되고 있어 일부 아동·청소년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디지털화로 인한 비대면 소통의 증대 같은 거시적 변화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함.
- 미국에서는 학교 차원의 통합적 접근인 교육영역에서의 다층지원체계(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in education, MTSS)를 통해 모든 학생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정은경, 2022; 권동현, 2024). 우리 사회도 이를 참고하여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비교: 원출처의 그림에 저자가 한글 설명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VI-3-4. 미국 다층지원체계(MTSS) 기본적 구조 (오레건 주의 예)

* 출처: 미국 오레건주 교육부 홈페이지 "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MTSS) in Education" <https://www.oregon.gov/ode/students-and-family/mental-health/pages/mtss.aspx> 에서 2024년 10월 24일 인출

□ 세부내용

-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층지원체계 구성과 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습, 사회, 정서, 행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일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 구조를 설계하고, 복합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다학제적, 다부처적으로 서비스 제공
 - 교육부 이외의 전달체계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 자원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지원
 - 사회복지, 상담, 정신보건 등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이 지원체계를 떠돌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통합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 및 시행
 - 21대 국회에 입안되었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설치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가 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음. 조속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통과를 통해 지원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과정 동안 다학제, 다부처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표 VI-3-16.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제도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신규

과제 1-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 보장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의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지속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음.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를 비준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
- 하지만 청소년 노동은 기존의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는 상황임. 공식 일자리에에서의 노동권 미보장 문제, 비공식 일자리에에서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인정 문제 등 오래된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일자리는 각 노동 문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또는 연습생 문제 등 불안정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음.
- 따라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 규제 및 금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미래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 노동권 보장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VI-3-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노동권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 d) 노동 감독 불충분
 -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 효력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구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세부내용

○ 아동·청소년기 빈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 마련 및 예방 원칙 수립

- 현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아주 엄격한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 결핍이나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탈빈곤 체계를 탄탄하게 수립하라는 것임. 빈곤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탈가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권 및 복지권 보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에 대한 연령 상향이 필요하며, 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을 벗어날 수 있는 현물, 서비스 제공 등 이원화 전략이 필요함.

○ 법률 정비를 통한 청소년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가칭)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방향성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노동을 규율하는 법령은 아르바이트 노동뿐 아니라 현장실습 등 일 경험 제도를 통한 노동, 플랫폼 노동과 봉사 활동 및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 청소년 노동 전반을 규율하기에 부족한 체계여서 청소년 노동 규율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유민상 외, 2023; 황여정 외, 2024).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인 사업장 기준과 주 15시간 미만 기준 등 노동법률에 정한 최소 기준조차 제외하는 차별적인 노동법령을 고쳐야 하고, 청소년 노동 전담 부처와 전담자 지정, 각 지방노동지청의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등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책무를 다해야 함. 특히, 청소년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법률 용어와 간소한 구제 절차 마련 등 방안이 필요함.

- (가칭) 청소년 인턴제 등 청소년기 안전한 일경험,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가칭) 청소년 참여 수당제 도입을 통한 청소년기 적극적 노동권 보장
- (가칭) 청소년 인턴제 등 청소년기의 활동은 주로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청년기 확대되고 있는 청년 인턴 제도와 같이 안전하고 소득 보충적 기능도 있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지역의 청소년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청소년 참여 수당제 도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나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참여소득 기제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수당제를 도입하여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편익을 함께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 역시 지역의 청소년 기관을 통해 지원된다면 청소년들의 활동과 지역의 발전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
- (가칭)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표 VI-3-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및 일할 권리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신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제언도 과제를 보다 명료히 하기 위하여 각 제언 별로 추진 일정(단기, 중기, 장기), 관련 부처, 신규 여부로 정리하였다. 이 제언의 구조는 아동·청소년의 웰빙을 중심에 놓고, 이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더 포괄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을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체계 안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증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3-19.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추진일정			관련 부처	신규 여부
	단기 (25~26)	중기 (27~30)	장기 (31~36)		
영역 II-1. 개인의 웰빙 과제 II-1. 아동 청소년기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자치단체	신규
영역 II-2. 가정 과제 II-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영역 II-3. 학교 과제 II-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	●		교육부 지방 교육청	신규
영역 II-4. 지역사회 환경 과제 II-4.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	●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영역 II-5. 사회문화적·디지털 환경 과제 II-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II-6. 생태적 환경 과제 II-6. 아동 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	●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존

과제 II-1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사회적 고립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 이를 위하여 최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 고립이 진행된 시점에 은둔 성향이 나타나는 참여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후적 접근의 한계를 가짐.
- 사회적 고립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나, 이 연구의 심층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교류 기회-그룹-기술의 감소가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음
 - ①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나 동네에서의 친구 그룹(peer group) 규모의 축소, 이에 따라 성장 과정이나 진학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확률 감소
 - ② 비대면 교류와 온라인 교류 그룹의 출현으로 인한 오프라인 그룹의 교류 감소
 - ③ 교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술의 약화
 - ④ 성장 과정에서의 축소된 친구 그룹→사회적 기술 약화→부정적 교류로 인한 악순환 발생
-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하면 생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 예방과 치유라는 투트랙의 접근이 필요함.
- 사후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을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정책적으로 안정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세부내용

○ 학교 안에서의 사회적 연결성 증진 정책 방향

- 본 연구의 2023년과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명가량은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7명 중 1명 가량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 학교 안에서도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과 치유라는 두 가지 경로로 고립 예방을 위한 협력적 활동 및 사회정서교육(social-emotional learning)을 시행하고, 치유를 위해서는 학교 내의 위(Wee) 클래스와 외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전문적 상담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적 관계 단절, 외로움, 고립감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동·청소년 스스로도 인지하고, 학교와 아동·청소년 기관에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에서의 사회적 연결성 증진 정책 방향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전환(transition)되는 시기에서부터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현재의 워크샵이나 보수교육 방식의 효용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장기적 시각으로 본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전문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기 연속된 사회적 연결성 증진 정책 방향

- 사회적 고립 상태의 당사자들 중에 위클래스, 청소년 상담서비스,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서비스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서비스 체계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단기적 서비스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치유 계획 수립하고 이를 아동 관련법, 청소년 관련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안정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치유 계획 수립
- 지자체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제정

※ 본 연구의 연구진이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성북구 의회와 함께 제정을 추진한 관련 조례의 예시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음.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회복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 위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이란 아동·청소년이 사회적·심리적인 이유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제한된 관계를 맺고 생활하거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은둔 생활하거나, 외로움 등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위기”란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나 사회적 관계의 단절 위험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5. “사회적 연결”이란 아동·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사회·경제·문화적 참여를 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북구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유형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개발·운영
 6.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성북구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밀착 상담
 2. 고립감 완화를 위한 상담 및 일상 회복 지원
 3. 사회적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진로 개발을 위한 교육, 진로, 직업훈련 지원
 6. 사회적 연결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지원
 7. 연결망 회복 및 공동체 형성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정책연구
4.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6.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관리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회적 연결 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북구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
3.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생애주기적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활동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의회 의원
2.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아동·청소년·청년 기관 및 학교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립 위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단체, 학교, 아동·청소년·청년 지원기관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관련부처 및 기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자치단체

표 VI-3-20.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방안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자치단체	신규

과제 II-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비폭력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는 권고를 내렸음.
-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학교에서의 차별은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나 가정에서의 비폭력적 양육을 장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차별 경험을 줄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처벌 중심으로 흘러간 경향이 있으나, 비폭력적 훈육방식 확산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후적인 개입이 아닌 예방적 개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비폭력적 훈육 방식의 하나인 “긍정적 양육 방법(positive discipline)”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를 제안함.

표 VI-3-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차별 및 비폭력 양육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p>체 별</p> <p>38. 위원회는 차별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의견 참조, E/C/12/1/Add.79, 36항).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차별사용 여부를 개별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실은 일정한 형태의 차별이 허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의 징벌을 장려하기 교육적 조치들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p> <p>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b) 차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의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 실시 c) 학교와 가정에서 차별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

체벌

-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권해

체벌을 포함한 폭력

-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중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고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학자,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 세부내용

○ 아동학대 대응의 처벌 중심 접근에서 서비스 중심 접근으로 전환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공론화 되었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은 사후적인 처벌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각 국가별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과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 접근과 서비스 중심 접근을 하는 국가군들로 정책을 비교하였으나, 최근 들어 처벌 중심 접근과 서비스 중심 접근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Gilbert, 1997; Gilbert, Parton, Skivenes, 2011). 우리사회 역시 아동을 중심에 놓고 예방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을 통한 '긍정 양육(positive discipline)' 방식의 확대

- 비폭력적 훈육을 위한 체벌 금지는 훈육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동안 체벌 금지 이후 훈육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므로 긍정적 훈육 혹은 긍정 양육 방식의 확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잘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긍정양육 129 원칙' 등 긍정 양육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 및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긍정 양육 교육은 다양한 대상과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함. 첫째, 성인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찍부터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폭력적 양육 방식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청년센터나 가족센터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어 국내에 이주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체벌금지 원칙과 함께 긍정양육 방식을 함께 교육하여 한국사회 양육의 표준에 대해 알리고 이에 맞는 양육행동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비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는 긍정양육 129에 대한 교육 소책자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긍정양육129 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411&cntntsId=1355> 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그림 VI-3-5. 긍정양육 129 원칙 홍보 자료 및 포스터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관계부처 합동의 「체벌 금지 및 비폭력적 훈육 확산을 위한 계획(안)」 수립 필요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부

표 VI-3-22.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긍정적 양육 부모 교육 확대 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 II-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사회, 정서, 행동 문제 등 복합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 정서 역량(Social Emotional Competency, SEC) 및 교육(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도승이, 2015; Lee, et al. 2023; OECD, 2021).
- OECD(2021)에 따르면 사회정서 역량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됨
 - 개방성(open-mindedness): 호기심, 허용성, 창의성
 - 과제 완수 능력(task performance): 책임감, 자기통제, 인내력
 - 사회성(engaging with others): 사교성, 자신감, 에너지
 - 협동성(collaboration): 공감 능력, 신뢰, 협력과 조화
 - 감정통제력(emotional regulation): 스트레스 저항력, 낙관주의, 감정 조절력
- 개인의 사회정서적 역량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발달 및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 등 개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침.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필요함(OECD, 2021).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 자해와 자살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은 예방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정서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학교 내 협력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향상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도 사회정서 역량 모델이 근거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정서역량에 초점을 맞춘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 역량 증진 프로그램 시행
-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 역량 증진을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아동·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회복 및 치유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에서의 사회정서역량 측정의 체계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에서의 사회정서학습 진행
-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 증진 지원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지방 교육청

표 VI-3-23. 학생과 교사의 사회정서역량(SEC) 증진 및 학습(SEL)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교육부, 지방 교육청	신규

과제 II-4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청소년의 휴식 및 놀이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휴식 및 놀이권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간하여 비준국들이 휴식 및 놀이권을 보장하도록 구체화하였음.¹⁹⁸⁾

[참고]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2013) (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icle 31)) CRC/C/GC/17

-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놀이권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일반논평 17호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에 관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고, 놀이를 하고, 오락 활동을 하고, 문화생활 및 예술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함.
 -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고, 놀이를 하고, 오락 활동을 하고, 문화생활 및 예술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키즈존(No kids zone)과 같이 연령 차별적인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한국 사회는 대도시 중심의 발전, 더 나아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 관련 환경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198) 일반논평 제17호 (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표 VI-3-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놀이 및 여가 환경 개선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p>
<p>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p> <p>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p> <p>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p>
<p>교육 및 교육의 목표</p> <p>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p>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p>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 세부내용

○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에 관한 권리보장

-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 및 수면 시간 부족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개선할 수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수업 과정에도 반영해야 함.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 아동·청소년들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에 관한 권리 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¹⁹⁹⁾

199)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영향평가의 의미와 목적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에 관련 지역사회 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 안에 아동·청소년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과 관련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음
 - 놀이터: 공공 놀이터의 확대, 공공 놀이터 중 의무적인 무장애(BF) 디자인 놀이터 확대
 - 여가 공간: 지역사회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지자체 운영
 - 문화 공간: 지역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역 단위의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시 아동·청소년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관람 및 문화 참여 활동 기회 제공
 - 또한 공공에서 제공하는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한 문화 활동 경험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청년문화패스'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²⁰⁰⁾ 사업을 청소년기에도 확대하여 '(가칭) 청소년문화패스'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휴식, 여가,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 명시
- (가칭) 「청소년문화패스」 혹은 「청소년문화예술패스」 시범사업 시행

관련부처 및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표 VI-3-25. 놀이 및 여가 환경 격차 개선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20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4.03.27.).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953에서 2024년 10월 8일 인출.

과제 II-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를 통해 디지털 환경과 아동 권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권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권고하였음.
- 일반논평 25호에 기본적인 방향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 역량 개발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맥락의 두 가지 큰 틀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 역량개발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증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영유아기 스마트폰 사용 금지, 소셜미디어(social media) 가입 연령 상향,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환경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중단,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라는 논평을 내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는 방법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2024년에는 10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음(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1.11.03.; 조선일보, 2024.10.07).
- 디지털 환경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관련 역량(competencies)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위주의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정책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음. 따라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총괄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장기적 계획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 디지털 환경과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2021)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25

표 VI-3-2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 관련 권고 및 최종견해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권고문</p>
<p>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p> <p>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p> <p>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p>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p>
<p>체벌을 포함한 폭력</p> <p>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p>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p>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p>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 세부내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은 다학제,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상호교차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임. 따라서 조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1안)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산하 실행 기구로 ‘디지털 환경과 아동·청소년 권리 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장기적 계획 도출
 - 2안) 대통령직속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의 권리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청년의 디지털 관련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의 보호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해당 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관련 교육정책 구성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유해매체 및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방식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도 있음.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아동정책조정회,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조정
- 별도 입법을 통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치

□ 관련부처 및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표 VI-3-27.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총괄 기구 설치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 II-6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호 채택 이후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서 환경권은 교육권, 건강권 등의 항목처럼 중요한 권리 분야로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기후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오염, 에너지, 물, 위생 등 여러 환경적 이슈를 포괄하고 있음.
 -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 ‘깨끗하고 건강하면 지속가능한 환경권’이 명시됨.
 - 각국의 입법 및 정책 등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권고

[참고]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 및 환경에 관한 일반논평 26호(2023) (General comment No. 26 (2023)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CRC/C/GC/26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도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권리 인식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

□ 세부내용

- 아동권리영향평가 등 정부의 환경 관련 계획, 정책 또는 사업 등 추진 시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호 관련 사항들이 반영 필요
 - 아동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대기질 개선, 수질 및 위생, 식량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산업 혁신, 에너지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독성 물질 규제 등이 다루어져야 함.
 -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은 단기적인 경우는 물론 지속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계획 등의 경우 단기적 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인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함.
 - 환경 관련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고려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요청되며,

더 나아가 수단 및 절차적 측면에서 환경 관련 국가의 입법, 예산, 정책 또는 사업 등이 제안되는 경우 아동권리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될 것이 요청됨.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제도 구축·운영되어야 함.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 3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체평가 기준이 4대 권리(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와 비차별, 생존과 발달, 의견 존중 및 참여, 최선의 이익 등의 거시적 틀로 되어 있어 세부 권리영역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CRIA)의 틀에서 환경권 등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세부 권리 사항 점검 및 진행 단계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 혹은 의견조희,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제 도입 필요가 있음.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환경부

표 VI-3-28. 아동·청소년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존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문식, 김성호, 노현정, 이수정, 임동헌, 조용화, 하인호 (202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강영배 (2014). “일본의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에 관한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40, 7-32.
- 강현철 (2024).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2019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2020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2022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청 (2019). **2019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20). **2020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21). **2021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22). **2022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23). **2023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22.06).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23). **2023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경향신문 (2020.06.22). 정말로 ‘노동의 권리’가 이런 거라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06220300065#csidxc1d449f691dccada5da4e6058ab6f4a>에서 2024년 10월16일 인출.
- 경향신문 (2024.01.03.). 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영아 유기’ 제대로 막으려면.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031223001#c2b>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4).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 (2021.0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2022.0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2023.05).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2024).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 (2024.04).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4).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508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c).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b).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c).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b).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광산구 블로그 (2024.05.08.). 당근광산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3439777272>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1). 2021년 '광산 시민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광주드림 (2023.04.13.). '당근 광산'. 당근마켓 광산구와 손잡다. <http://www.gi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166>에서 2024년 10월20일 인출.

광주시의회 (2023.04.24.). 제43차 정책토론회(광주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Dg50FCKPIPA>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교육부 (2020~2024). 2020~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05.02). 2020~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

=W&s=moe&m=0302&opType=N&boardSeq=91480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교육부 (2020.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0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0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2.8.30.). 2022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_ReleaseView.do?newsId=156523231&pWise=main&pWiseMain=C3에서 2022년 8월 31일 인출.
 교육부(2023). 2023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23.4. 기준).
 교육부 (2023.0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06.13).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5316>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교육부(2023.8.30.). 2023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9월 8일 인출.
 교육부(2024.8.29.). 2024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8월 31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3.01.12.). '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추진.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6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9월 31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3.04.12.). 학교폭력 전화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3.11.27.). 2023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

- 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201&lev=0&m=020402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2.05.).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91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4월 24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3.28.).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498&lev=0&m=020402>에서 2024년 10월 9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4.03.).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5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4월 24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5.02.).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8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9월 31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9.25.).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107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질병관리청.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4.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b). 2021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b). 2022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0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c). 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8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a).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menuSeq=3894&itemCode=0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c). 2023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05&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d).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86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2022.8.11.). **결정문.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2023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4).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1.11.03.).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중단, 관련 규정 개선 필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모색할 것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

- oardid=7607395에서 2024년 10월 8일 인출.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2).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서울: 국립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권동현 (2024).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시작과 과제”**. 서울교육 교육정보 2024년 봄호 (254호).
- 기획재정부 (2017-2020).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21-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종: 기획재정부.
- 김경준, 김영지, 윤철경, 이은주, 이은주, 임성은 (202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I(연구보고 23-일반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1-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2-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최홍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2-일반01-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0-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서, 정슬기 (2019). 청소년이 인식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2, 69-83.
- 김자연 (2023).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육아정책 Brief**,

98, 1-7.

김정훈, 최석현 (2018).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관한 소고. **지역발전연구**, 27(3), 1-20.

김진애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0.10.19.).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김철식, 김혜진, 신순영, 안명희, 엄진령, 윤지영, 이미숙, 장귀연, 최은실 (2021).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 오월의봄.

김태완, 최준영 (2023). **2023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진, 임희진, 정윤미 (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연구보고 20-R5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동법실무연구회 (2020a). **근로기준법 주해 I**. 박영사.

노동법실무연구회 (2020b). **근로기준법 주해 III**. 박영사.

노호창 (2011).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30, 125-164.

대검찰청 (2014~2023).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2-2021).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4~202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8). **2018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 **2019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0). **2020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1). **2021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2). **2022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3.9.2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4.10.17.).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2023). **202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8.). “총 850명 규모…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 일경험 등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38>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도승이 (2015). 사회정서학습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인성의 측정. **교육심리연구**, 29(4), 719-735.

도재형 (2017).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권의 재검토. **제8회 제주인권회의 “다시 인권이다” 발표 자료.**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리서치앤리서치 (2024a). **2024년 NYPI 횡단조사 착수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리서치앤리서치 (2024b). **202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원 지침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리서치앤리서치 (2024c). **2024년 NYPI 횡단조사 결과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매일노동뉴스 (2024.10.10). ILO ‘Decent Work’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42>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b).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1c).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b).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683&pDataCD=0417000000&pType=02 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2c).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3a).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3b).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3c).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18&pDataCD=0417000000&pType=02 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3d). **2023년(‘22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4.03.27.).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페스티벌’ 신청하세요”.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953 에서 2024년 10월 8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미국 오레건주 교육부 홈페이지 “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MTSS) in Education” <https://www.oregon.gov/ode/students-and-family/mental-health/pages/mtss.aspx> 에서 2024년 10월 24일 인출.
- 민소영, 장희선, 오세현, 강현아, 김세원, 김희진 외 (2023).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Ⅲ: 지역아동센터**.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박세훈, 유금란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429-1455.
- 배경내 (2015).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회 자료집. 인권교육센터
 들.
- 법무부(2013~2023). 법무연감.
-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4a).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4b). **2024 교정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 법무부 (2024c). **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법무부 내부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2022.9.26.).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조력 횟수 참고자료,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2023.10.6.).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조력 횟수 참고자료,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3.9.19.).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4.10.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 법무연수원 (2020). **2019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21). **2020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22). **2021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24). **2023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법원행정처 (2020). **2020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21). **2021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22). **2022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23). **2023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24). **2024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보건복지부 (2014~2024).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0-20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7-2021).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7~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7). **2017 보육통계**.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 **2018 보육통계**.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50602&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50602&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c). **2019 보육통계**.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59667&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

- &act=view&list_no=359667&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d).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일반회계)**.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e). **2020 보육통계**.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a).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67903&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c).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67902&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a). **2021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4390&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d).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4389&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e).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f).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 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_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g).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a). **2022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7896&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c).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7895&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e).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2년 12월말 기준). 아동권리 보장원 웹사이트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Detail.do>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f).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g).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h).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i).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375217에서 2024년 10월 7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d).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f).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

- 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1247에서 2024년 9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4g).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4년 9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0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851>에서 2017년 9월 15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08.10.)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에서 2024년 7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2.09.).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선정 결과 공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79384에서 2024년 10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3.28.).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826&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8.20.). 아동의 생명을 살리는 쌍둥이 제도 시행 한 달, 1.8만 건의 출생정보 통보, 419건의 위기임신 상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782&act=view&에서 2024년 9월 31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8.27.).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885&tag=&nPage=1에서 2024년 9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4.7.).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5752&cg_code=에서 2024년 10월 7일 인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6567>에서 2024년 7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tag=&act=view&list_no=374978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2018). **2016~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서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웹사이트 <https://kcpass.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0326&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boardStyle=&linkId=694>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336821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tag=&act=view&list_no=337228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2024 자살예방백서. <https://www.kfsp.or.kr/home/kor/board.do?menuPos=82&act=detail&idx=4818&searchValue1=0&searchKeyword=&pageIndex=1#none>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비마이너 (2024.05.1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민주주의의 재생”. <https://www.bem>

- 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88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 사회보장위원회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종: 사회보장위원회.
- 서고운 (20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연구보고 21-R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조아미 (2021).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21-R6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조아미 (2023).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23-수탁19)**.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소라미 (2021).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법제연구**, 12(2), 159-183.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아동권리보장원 (2022). **돌봄 행복 플러스(2편) 통계로 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웹진 홈페이지** <https://dadol.or.kr/upload/dadolWebzine/202212/sub3-3.html>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홈페이지** https://dadol.or.kr/board/library_print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http://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97&cntntsId=1326>에서 2024년 9월 15일 인출.
- 양승광 (2018).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노동법연구**, 44, 181-210.
- 양재진 (2009). 사회투자정책의 정책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연구: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연구**, 47(3), pp. 311-334.
- 여성가족부 (2012).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b).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03.0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6~2022). 여성가족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bbtSn=705000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2.03.0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2a).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b).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a). **202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3c).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03.13.).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2.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3.09). **2022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99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4a). **202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c).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2-3.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422에서 2024년 10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4d).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 (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05.25.). 2022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9.).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13898>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5.30.). 2023 청소년 통계. p.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0.0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경제·주거·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582에서 2024년 10월 13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8.).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3.12.31. 기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06.).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윈스톱 지원 실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45에서 2024년 9월 31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30.). 2023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26에서 2024년 8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29.). 2024 청소년 통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059#pressRelease>에서 2024년 7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11.). 전국규모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첫 실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24년 9월 31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10.11.).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https://www.mogef.go.kr/io/ind/io_ind_s005d.do?mid=old919&bbtSn

- =30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KYWA-2023-001-10)**.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합뉴스 (2022.02.23.) 광주 광산구 시민수당위원회 출범...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장".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3116300054>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 연합뉴스 (2024.03.06.). 교사 업무 늘고 공간 부족하고... "늘봄학교 불만 하루 새80여건".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117900530>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24.08.06).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간을 믿어주는 돈. <https://omn.kr/29oyu>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 월간 옥이네 (2020.10.14.). 청소년 기본소득, 옥천에서 새바람 퍼져 나갈까. <https://naver.me/x50dxEpd>에서 10월 3일 인출.
-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연구보고 23-수시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최정원, 이수정, 장혜림 (2020). **청소년 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 20-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21-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박미희, 신영규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II(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유성렬, 심수진, 류정희, 도남희, 김혜자, 박미선, 박미진, 최창용, 이창호, 김은아 (202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I(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1-20-01,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21-R32)**.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01-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

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편.),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편.),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II」.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 국가인권위원회(편.),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pp. 687-68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CRC/C/GC/26).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crccgc26-general-comment-no-26-2023-childrens-rights>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2항.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항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2013). 일반논평 제17호 CRC/C/GC/17. (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윤소현 (202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30(11), 109-133.

이봉주, 박정민, 김선숙 (202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이상준 (2022). **일·복지·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소득**. 온마음.
- 이상준 (2024). “참여소득을 활용한 청소년 일경험의 새로운 접근”. **제60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이수정, 윤지영, 배경내, 림보, 김성호, 권혁태 (2015). **십대 밑바닥 노동-야/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 세계**. 교육공동체 벗.
-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 2021-0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주연 (202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331. 4-19.
- 이주영 (2017). 발전권, 평과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10(2), 33-57.
- 이호연 (2020). “기본소득과 자기결정의 삶”. 존엄을 부르는 청소년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이끈 청소년 현장의 변화. **2020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기본소득 경험연구 발표회 자료집**.
- 인권교육센터 들 (2017).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청소년 기본소득팀’ 연구발표회 자료집**.
- 일다 (2015.03.31.) 탈가정 후, 자립을 위해 도전하는 앨리스들. <http://ildaro.com/7043>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 일다 (2020.2.15.). “조건없이 월 30만원 지급” 탈가정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https://www.ildaro.com/8651>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정선욱, 정익중, 김진숙, 강희주, 윤은영, 주휘진 (2024). 양육시설의 소규모화를 시도한 시범사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사회복지연구**, 55(2), 165-193.
- 정성희 (20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강화. **국회보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682, 62-63.
- 정은경 (2022). “미국의 다층지원체계: 모든 학생의 발달을 지원하는 학교 차원의 통합적 접근”.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겨울호(23호), pp.128-133.
- 조선일보 (2024.10.07.). 인권위, 10년 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0/07/727OSHL

- H2NHNL13JHN3BF7YCDY/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 조혁진, 명숙, 고태은 (2022).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I)**.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3).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중앙사회서비스원 웹사이트 <https://kcpass.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0326&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boardStyle=&linkId=1029>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질병관리청 (2022a).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2022b).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2023). **2022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 최수정, 허영준 (2012).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The HRD Review*, 15(2), 52-77.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3). 2023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3년 4월 기준). p.4. 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2&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8326&p_srch_text=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통계청 (2014, 2016, 2018, 2020, 2022). 2014-2022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웹사이트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웹사이트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통계청 (2015~2022)보도자료. 사망원인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 통계청 (2020.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22.0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통계청 (2023.9.21.). 보도자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통계청 (2024.10.5.).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통계청 (2018~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교원 1인당 학생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6>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 (2022.03.11).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2.07.19.).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3.03.07).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 (2023.07.18).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4.03.14).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9923&act=view&mainXml=Y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 (2024.07.16.).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31803에서 2024년 8월 6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2021).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22).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23).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SK2IaQ-NXVXOR60rbo4CwPL-N8pvj0NFXh2sCRsl.node11?idx_cd=2751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2011~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5~2022).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통계청 KOSIS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9~20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통계청 KOSIS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4

- 년 8월 14일 인출.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 통계청, 교육부 (2019, 2021~2023).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 참여율.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6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통계청, 교육부 (2020a).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어학연수 참여율.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6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통계청, 교육부 (2020b).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어학연수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통계청 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501&conn_path=I2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통일부 (2022). **202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23). **202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24). **202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24.03). 북한이탈주민정책(2024.3월 기준). 연령대별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4년 7월 15일 인출.
- 티모파르트넨(2018). 핀란드 자살예방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4권, pp. 5-15.
- 프레스리안 (2020.12.02). 한국은 이미 참여소득 강국, 그러나...[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②] 참여소득 시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레임 변경에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116145470314>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 프레스리안 (2022.1.6.). 광주 광산구, 참여소득 일자리 '광산시민수당' 제도화 추진.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0611353249999>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 하승수 (2015).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한티재.

한겨레신문 (2022.01.30.). “어린이·청소년에 ‘기본소득 시도’ 나서는 기초단체·학교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29360.html>에서 2024년 10월 3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menuId=m_02_03_01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23.12.19.). KEDI분석 브리프. 2023년 27호.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5449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한국성폭력상담소 (2024.03).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7077>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2.1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1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3.11).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

- 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04797#none에서 2024년 7월 15일 인출.
-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4년 9월 13일 인출.
- 호연, 한날, 배경내, 날맹, 공현, 고은채 (2018). **만나보고서-청소년 자립**. 아홉 현장 이야기. 교육공동체 벗.
- 황수옥, 이수정, 이주환, 박관성 (2017).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202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김승경 (2018).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연구보고 18-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이수정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진구, 유민상, 정유진 (20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연구보고 17-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6 (2022) on land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GC/26 (Jan, 24, 202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2018) on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CEDAW/C/GC/37 (March 13, 2018).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39 (2022) on the rights of Indigenous women and girls, CEDAW/C/GC/39 (Oct. 31, 202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health,

CERD/C/GC/37 (Aug. 243, 20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Retrieved August 31, 2024,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KOR%2FCO%2F5-6&Lang=en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Armenia, CRC/C/ARM/CO/5-6, para. 36, 16 September 20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Canada, CRC/C/CAN/CO/5-6, 23 June 202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Finland (15 November 2023, CRC/C/FIN/CO/5-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Georgia, CRC/C/GEO/CO/5-6, para. 35, 25 June 20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Germany, CRC/C/DEU/CO/5-6, 13 October 202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24 October 2019, CRC/C/KOR/CO/5-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Sweden, CRC/C/SWE/CO/6-7, 7 March 202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and Northern Ireland(22 June 2023, CRC/C/GBR/CO/6-7).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ussian Federation, CRC/C/RUS/CO/6-7, para. 38 1 March 202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Argentina, CRC/C/ARG/CO/7, para. 42, 16 September 202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25, para. 2 (March 2, 2021).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ort of the 2016 Day of General Discussion :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8 (23 September 2016).
- Ferraro, K. F., Farmer, M. M., & Wybraniec, J. A. (1997). Health trajectories: long-term dynamics among black and white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1), 38-54.
- Gilbert, N. (Ed.). (1997). *Combatting child abuse: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trends*.
- Gilbert, N., Parton, N., & Skivenes, M. (Eds.). (2011). *Child protection systems: International trends and orien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Idler, E. L., & Benyamini, Y. (1997).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 review of twenty-seven community studi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1), 21-37.
- Lee, J., Shapiro, V. B., & Kim, B. K. E. (2023). Universal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for diverse student subgroups: Implications for enhancing equity through SEL. *Prevention Science*, 24. 1011-1022. <https://doi.org/10.1007/s11121-023-01552-y>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Ocampo, J. M. (2010). Self-rated health Importance of use in elderly adults. *Colombia Medica*, 41(3), 275-289.
- OECD (2021). *Beyond Academic Learning: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Soci*

- al and Emotional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2a11084-en>.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년도.
-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Banjul Charter"), CAB/LEG/67/3 rev. 5, 21 I.L.M. 58 (1982), 27 June 1981.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A-52, 16 November 1999.
-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ust-4 September 2002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II.A.1 and corrigendum), chap. I, resolution 1, annex.
-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2. 1.). 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7-childrens-rights-access>.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2. 8.). UN Child Rights Committee publishes findings on Bulgaria, Congo, Lithuania, Russian Federation, Senegal and South Africa.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02/un-child-rights-committee-publishes-findings-bulgaria-congo-lithuania>.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5. 30.). UN Child Rights Committee publishes findings on Bhutan, Egypt, Estonia, Georgia, Guatemala, Mali, Namibia, Paraguay and Panama.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05/un-child-rights-committee-publishes-findings-bhutan-egypt-estonia-georgia>.에서 2024

년 9월 20일 인출.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8. 2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ens Ninety-Seventh Session and Sign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African Committee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Retrieved August 31, 2024, from <https://www.ohchr.org/en/news/2024/08/committee-rights-child-opens-ninety-seventh-session-and-signs-memorandum-understanding>.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nal Report of Mrs. Fatma Zohra Ksentini, Special Rapporteur : Review of Further Development in Fields with Which the Sub-Commission has been Concerned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E/CN.4/Sub.2/1994/9 (July 6, 199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1 (2001), Article 29 (1), The aims of education, CRC/GC/2001/1, para. 13, 17 April 200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CRC/C/GC/15, 17 April 2013.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14: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s. 12 of the Covenant), E/C.12/2000/4,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para. 15, 11 August 2000.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Covenant), E/C.12/2002/1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para. 2, 20 January 2003.

UN GA Res. 76/300 :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RES/76/300 (July 28, 2022).

UN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A/CONF.151/26 (Vol. I), UN General Assembly, 12 August 199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John H. Knox, A/HRC/22/43 para. 16 (24 December 201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HRC/10/61, 15 January 200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HRC/37/59 (24 Jan. 2018).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7/23 -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2008).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0/4,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2009).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11,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HRC/RES/16/11 (12 April 2011).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Res. 48/13, para. 1, UN Doc A/HRC/RES/48/13 (Oct. 8, 2021).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84413>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N Doc. A/73/188, para. 12 (201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N Doc. A/73/188, para. 30 (201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홈페이지. “Gen

eral comment No. 26 (2023)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6-2023-childrens-rights-and> 에서 2024년 10월 2일 인출.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UN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United Nations System Common Principles on Future Generations, CEB/2023/1/Add.1, 4 (May 4, 2023).

Wetherall, K., Daly, M., Robb, K. A., Wood, A. M., & O’Connor, R. C. (2015). Explaining the income and suicidality relationship: Income rank i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suicidal thoughts and attempts than incom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0(6), 929-937.

[참고사이트]

OHCHR 홈페이지 내 한국 유엔 협약 DB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 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OHCHR 홈페이지(UN Treaty Body Databas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Finland (CRC/C/FIN/CO/5-6). <https://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6QkG1d%2FPPRiCAqhKb7yhsuVBUBTyZJAKnGyrgcWDKEEjVMPBVcAoCgvc0lPYdpgsZG3BhVn5%2FLtdR%2BuF%2FhVe8Ei6tMxuNATGxVx55q%2F0YnnyTeaJxm3Gtf3144GBxd%2Bi>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PLAN International 웹사이트 <https://plan-international.org/paraguay-en/case-studies/normalisation-criadazgo-paraguay/>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UHCHR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Wee 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www.gwysc.or.kr/work-list?mcode=322>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http://www.gj15886546.org/sub05/sub05_01.php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사이트.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4년 8월 7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긍정양육129 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411&cntntsId=1355>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www.dreamstart.go.kr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

mi=1035&cntntsId=1142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reporting-guidelines>에서 8월 31일 인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내 영국 유엔 협약 DB. (CRC/C/GBR/CO/6-7)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uk&Lang=EN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내 핀란드 유엔 협약 데이터베이스(DB).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fin&Lang=EN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https://indicators.ohchr.org/>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중앙응급의료센터(2024). 달빛 어린이병원 웹사이트.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통계청. <https://kosis.kr/>에서 2024년 9월 6일 인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홈페이지. www.kdream.or.kr에서 2024년 10월 1일 인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https://www.stopbullying.re.kr/board?menuId=MENU00345>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www.bigkinds.or.kr에서 2024년 10월 19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4085,20101005\)](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_학생인권_조례/(4085,20101005))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21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에서> 2024년 5월 13일 인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6일 인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6일 인출.

-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 「차별금지법안(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17800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I7L1G2F1T2P1N4Y5R0D3T1N3X7I2 에서 2024년 10월 22일 인출.
-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2024년 10월 12일 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8일 인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10월 12일 인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9월 23일 인출.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 — 부 록

부 록

1.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연도별 현황(2018~2024년)201)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45.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p>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내용</th> </tr> <tr> <td>유엔(UN) 아동권리협약</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학생인권조례</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국가인권위원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p> <p>-초등학생용 35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 포함)</p>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p>35.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p>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내용</th> </tr> <tr> <td>유엔(UN) 아동권리협약</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학생인권조례</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국가인권위원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p> <p>-초등학생용 27번</p>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p>3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내용</th> </tr> <tr> <td>유엔(UN) 아동권리협약</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학생인권조례</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국가인권위원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p> <p>-초등학생용 26번</p>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p>3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내용</th> </tr> <tr> <td>유엔(UN) 아동권리협약</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학생인권조례</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국가인권위원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p> <p>-초등학생용 26번</p>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p>39.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내용</th> </tr> <tr> <td>유엔(UN) 아동권리협약</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학생인권조례</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국가인권위원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p> <p>-초등학생용 31번</p>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p>43.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내용</th> </tr> <tr> <td>유엔(UN) 아동권리협약</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학생인권조례</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국가인권위원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p> <p>-초등학생용 33번</p>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내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p>4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1) 가정</td> </tr> <tr> <td>2) 학교</td> </tr> <tr> <td>3) 내가 살고 있는 지역</td> </tr> <tr> <td>4) 우리나라 전체</td> </tr> <tr> <td>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 </tr> </table>	1) 가정	2) 학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p>3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1) 가정</td> </tr> <tr> <td>2) 학교</td> </tr> <tr> <td>3) 우리나라 전체</td> </tr> <tr> <td>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 </tr> </table> <p>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p>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p>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1) 가정</td> </tr> <tr> <td>2) 학교</td> </tr> <tr> <td>3) 우리나라 전체</td> </tr> <tr> <td>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 </tr> </table> <p>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p>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p>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1) 가정</td> </tr> <tr> <td>2) 학교</td> </tr> <tr> <td>3) 우리나라 전체</td> </tr> <tr> <td>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 </tr> </table> <p>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p>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p>40.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1) 가정</td> </tr> <tr> <td>2) 학교</td> </tr> <tr> <td>3) 우리나라 전체</td> </tr> <tr> <td>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td> </tr> </table> <p>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p>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p>44.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1) 가정</td> </tr> <tr> <td>2) 학교</td> </tr> <tr> <td>3) 우리나라 전체</td> </tr> <tr> <td>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td> </tr> </table> <p>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p>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1) 가정																																																																																																					
2) 학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1) 가정																																																																																																					
2) 학교																																																																																																					
3) 우리나라 전체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201) 김영지, 최홍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pp. 387-418. 자료에서 2023년 설문문항 업데이트함.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 받는다
-초등학생용 36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식재 -초등학생용 28번	-초등학생용 27번	-초등학생용 27번	-초등학생용 40번	-초등학생용 34번
4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3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41.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45.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8)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8)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div>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용 37번에는 3), 5) 문항 미포함_청소년 대신 아동으로 단어 대체	-초등학생용 29번_청소년 대신 아동으로 단어 대체	-초등학생용 28번_청소년 대신 아동으로 단어 대체	-문구수정: 3) 학교나 사회문제 -초등학생용 28번_청소년 대신 아동으로 단어 대체	-하위문항 6), 8) 추가 -초등학생용 33번에는 문항8) 미포함	-초등학생용 35번에는 문항 8) 미포함
48.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 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38.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42.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46.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초등학생용 38번	-'인권교육 경험 횟수'에서 '인권교육 경험 유무'로 수정 -설명문구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30번	-설명문구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29번	-설명문구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29번	-초등학생용 34번	-초등학생용 36번
48-1. (위 문항 8번의 '1회'부터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8-1. (문항 38번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7-1. (문항 37번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7-1. (문항 37번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2-1. (문항 37번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6-1. (문항 46번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초등학생용 38-1번	-응답문구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30-1번	-초등학생용 29-1번	-초등학생용 29-1번	-초등학생용 34-1번	-초등학생용 36-1번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48-2. (위 문항 48번의 '1회'부터 '5회 이상'에 응당한 경우)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p>38-2. (문항 38번 '① 있다'에 응당한 경우)인권교육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p> <p>2)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p> <p>3) 인권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37-2. (문항 37번 '① 있다'에 응당한 경우)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p> <p>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p> <p>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p> </div>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p>37-2. (문항 37번 '① 있다'에 응당한 경우)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p> <p>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p> <p>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p> </div>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p>42-2. (문항 37번 '① 있다'에 응당한 경우)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p> <p>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p> <p>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p> </div>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p>46-2. (문항 36번 '① 있다'에 응당한 경우)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p> <p>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p> <p>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p> </div>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초등학교 38-2번	-하위문항 추가(지식, 태도, 행동) -초등학교 30-2번	-하위문항 객관화(지식, 태도, 행동) -응답척도 2018년도와 같이 변경 -초등학교 29-2번	-하위문항 객관화(지식, 태도, 행동) -응답척도 2018년도와 같이 변경 -초등학교 29-2번	-초등학교 34-2번	-초등학교 34-2번
			<p>4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p> <p>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p> <p>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p> <p>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p> </div> <p>-2022년 신규 문항 -초등학교 33번</p>	<p>45.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p> <p>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p> <p>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p> <p>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p> </div> <p>-초등학교 37번</p>	<p>4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p> <p>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p> <p>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p> <p>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p> </div> <p>-초등학교 39번</p>
49.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39.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	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	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	43.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	47.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4), 5), 7), 8), 9), 10) 삭제 -초등학생용 31번	-이전 년도에 삭제했던 문항 복구 -초등학생용 30번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생용 39번			-초등학생용 30번	-하위문항 6) '고향이나 사는 지역'을 '사는 동네'로 문구 변경 -초등학생용 35번	-초등학생용 37번
				43-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47-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35-1번	-초등학생용 37-1번																																																									
50.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40.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4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4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5)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able>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5)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table border="1">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5)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7)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able>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7)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table border="1">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6)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able>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table border="1">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6)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able>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table border="1">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able>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table border="1">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r> </table>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5)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7)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고혈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한 번도 없음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① 한 번도 없음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생용 40번	-4), 5), 7) 삭제 -초등학생용 32번	-이전 년도에 삭제했던 문항 복구 -초등학생용 31번	-초등학생용 31번	-하위문항 6) '고향이나 사는 지역'을 '사는 동네'로 문구 변경 -초등학생용 36번	-초등학생용 38번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년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년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년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년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년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p> <p>6)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년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p> <p>6)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초등학생용 1번, 2)상급학교 예시에 '중학교' 추가/ 4)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초등학생용 1번, 2), 4) 삭제	-초등학생용 1번, 2), 4) 삭제	-초등학생용 1번, 2), 4) 삭제	-하위문항 5), 6) 신규 -초등학생용 4번 2), 4), 6) 삭제	-초등학생용 4번 2), 4), 6) 삭제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2.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p> <p>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p> <p>4) 학생회 의건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p> </div> <p>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p>	<p>2. 다음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p> <p>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p> <p>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p> </div> <p>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p>	<p>2. 다음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p> <p>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p> <p>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p> </div> <p>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p>	<p>2. 다음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p> <p>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p> <p>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p> </div> <p>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p>	<p>5. 다음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p> <p>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p> <p>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p> </div> <p>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p>	<p>5. 다음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p> <p>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p> <p>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p> </div> <p>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p>
-초등학생용 제외	-질문내용 수정/ 1), 4) 문구 수정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p>3.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p> <p>① 운영되고 있다 ② 운영되지 않는다</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초등학생용 2번					
<p>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초등학생용 2-1번					
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 방침(학교예산, 교과서,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p> <p>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p> <p>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p> <p>-학교운영위원회 설명 문구 수정 -초등학생용 제외</p>	<p>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p> <p>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p> <p>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p> <p>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p> <p>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학교는 학급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p> <p>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p>3)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를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p> <p>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p>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학교는 학급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p> <p>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p>3)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를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p> <p>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학교는 학급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p> <p>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p>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p> <p>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학교는 학급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p> <p>2)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p> <p>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p> <p>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7.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급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p> <p>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p> <p>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p> <p>4)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p>5)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7.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급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p> <p>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p> <p>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p> <p>4)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p> <p>5)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하위문항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3번_2)문항 미포함	-질문 문구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2번_2), 4) 미포함	-초등학생용 2번_2), 4) 미포함	-하위문항 2) 수정 -초등학생용 2번_4) 미포함	-하위문항 문구 수정 -초등학생용 5번_4) 5) 미포함	-초등학생용 5번_4) 5) 미포함
6.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 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 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 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초등학생용 4번	-초등학생용 3번, 청소년 참여기구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대체	-초등학생용 3번, 청소년 참여기구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대체	-문구추가: 아동·청소년의회 -초등학생용 3번, 청소년 참여기구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대체	-초등학생용 6번, 청소년 참여기구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대체	-초등학생용 6번, 청소년 참여기구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대체
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까?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예: 만 18세 등)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예: 만 20세 등) ④ 잘 모르겠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초등학생용 제외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5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4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4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4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9.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7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9.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7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p> <p>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p> <p>-초등학생용 6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p> <p>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p> <p>-초등학생용 5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p> <p>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p> <p>-초등학생용 5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p> <p>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p> <p>-초등학생용 5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10.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p> <p>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p> <p>-초등학생용 8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10.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p> <p>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p> <p>-초등학생용 8번 청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p>
<p>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성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p>	<p>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2) 나는 무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p>	<p>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2) 나는 무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p>	<p>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2) 나는 무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p>	<p>11.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2) 나는 무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p>	<p>11.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2) 나는 무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현 할 수 있다</p> <p>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p> <p>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질문내용 일부 수정 -가정, 학교, 사회를 포괄하는 하위문항 2)로 대체 -초등학생용 제외</p>	<p>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하위문항 2) 일부 수정 -초등학생용 제외</p>	<p>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1.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p> <p>① 예 ② 아니오</p> <p>-초등학생용 제외</p>	<p>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p> <p>① 예 ② 아니오</p> <p>-초등학생용 제외</p>	<p>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p> <p>① 예 ② 아니오</p> <p>-초등학생용 제외</p>	<p>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p> <p>① 예 ② 아니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p> <p>① 예 ② 아니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p> <p>① 예 ② 아니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1-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제외</p>
<p>12.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 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 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 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 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3.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 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p>13.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 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div>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div>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div>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및 SNS 활동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div>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및 SNS 활동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div>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및 SNS 활동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div>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p>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문구추가: SNS 활동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12-1.(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결코 및 흔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10-1.(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결코 및 흔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10-1.(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결코 및 흔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10-1.(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결코 및 흔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13-1.(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결코 및 흔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13-1.(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결코 및 흔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div>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p>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div>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p>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div>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p>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div>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p>	1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교복 착용, 외투나 운동복 착용)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4) 수업시간 이외에도 핸드폰 사용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 </div>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p>	1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교복 착용, 외투나 운동복 착용)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div>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⑤ 1주일에 1~2회 이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 수업시간 이외에도 핸드폰을 압수당한 적이 있다 </div>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초등학생용 제외	-하위문항 4),5) 추가됨 -초등학생용 제외	-하위문항 4),5)의 경우, 비일관적인 응답 경향으로 인해 삭제 -초등학생용 제외
1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2)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대상담, 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div> ① 아니다 ② 그렇다					
-초등학생용 제외					

3) 폭력 및 학대(*2015년도 신설: 2) 시민적 자유와 권리,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일부 문항 이동)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r> <td>학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r> <td>학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7번 2) 쉬운 단어로 수정 :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p>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p>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r> <td>학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학원 선생님께서의 체벌 및 욕설 삭제 --초등학생용 6번 2) 쉬운 단어로 수정 :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p>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p>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r> <td>학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6번 2) 쉬운 단어로 수정 :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p>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p>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r> <td>학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td> </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6번 2) 쉬운 단어로 수정 :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p>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p>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td> </tr> <tr> <td>학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td> </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신체적 벌"에서 "정서적인 공격"으로 문구 수정 --초등학생용 9번</p>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p>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td> </tr> <tr> <td>학교 선생님께서</td> <td>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td> </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9번</p>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학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2)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p>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p>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table border="1">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r> <tr><td>5) 협박을 당함</td></tr> <tr><td>6) 심각한 화상(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td></tr> <tr><td>7) 강제적인 심부름</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협박을 당함	6) 심각한 화상(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7) 강제적인 심부름	<table border="1">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r> <tr><td>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table border="1">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r> <tr><td>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table border="1">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r> <tr><td>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table border="1">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r> <tr><td>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table border="1">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r> <tr><td>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협박을 당함																																										
6) 심각한 화상(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7) 강제적인 심부름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성희롱(놀림)이나 성추행을 당함																																										
6) 강제적인 심부름																																										
-초등학생용 8번_2) '맞아 본 경험'으로 대체	-하위문항 '협박을 당함' 삭제 -초등학생용 7번	-초등학생용 7번	-초등학생용 7번	-'성희롱(놀림)'을 '성희롱'으로 표기 -초등학생용 10번	-초등학생용 10번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r> <tr><td>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table border="1">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table border="1">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table border="1">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table border="1">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table border="1">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r> </table>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따돌림을 당함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용 9번	-하위문항 5) 문구 간략화 -초등학생용 8번	-2021년부터 SNS의 예시로 인스타그램 추가 -초등학생용 8번	-초등학생용 8번	-초등학생용 11번	-초등학생용 11번
44.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3.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초등학생용 34번	-초등학생용 20번	-초등학생용 20번	-초등학생용 20번	-초등학생용 25번	-초등학생용 26번
4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28-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28-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28-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3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36-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초등학생용 34-1번	-초등학생용 20-1번	-초등학생용 20-1번	-초등학생용 20-1번	-초등학생용 25-1번	-초등학생용 25-1번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p> <p>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10번</p>	<p>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p> <p>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9번</p>	<p>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p> <p>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9번</p>	<p>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p> <p>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9번</p>	<p>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p> <p>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12번</p>	<p>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p> <p>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p> <p>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p> <p>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p> <p>-초등학생용 12번</p>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19.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p> <p>*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p> <p>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p> <p>-초등학생용 11번</p>	<p>16.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p> <p>*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p> <p>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p> <p>-초등학생용 10번</p>	<p>16.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p> <p>*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p> <p>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p> <p>-초등학생용 10번</p>	<p>16.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p> <p>*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p> <p>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p> <p>-초등학생용 10번</p>	<p>19.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p> <p>*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p> <p>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p> <p>-초등학생용 13번</p>	<p>20.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p> <p>*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p> <p>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p> <p>-초등학생용 14번</p>
<p>19-1.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초등학생용 11-1번</p>	<p>16-1.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초등학생용 10-1번</p>	<p>16-1.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보기③을 명료화하기 위해 문구 수정 -초등학생용 10-1번</p>	<p>16-1.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초등학생용 10-1번</p>	<p>19-1.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초등학생용 13-1번</p>	<p>20-1.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초등학생용 14-1번</p>
<p>19-2.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p>	<p>16-2.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p>	<p>16-2.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p>	<p>16-2.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p>	<p>19-2.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p>	<p>20-2. (위 문항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② 청소년 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 -초등학생용 제외	② 청소년 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 -초등학생용 제외	② 청소년 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 -초등학생용 제외	② 청소년 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 -초등학생용 제외	② 청소년 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 -초등학생용 제외	② 청소년 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 -초등학생용 제외
19-3. (위 문항 ②번~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초등학생용 제외	16-3. (위 문항 ②번~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초등학생용 제외	16-3. (위 문항 ②번~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초등학생용 제외	16-3. (위 문항 ②번~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초등학생용 제외	19-3. (위 문항 ②번~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초등학생용 제외	20-3. (위 문항 ②번~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초등학생용 제외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20.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교생용 12번</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p>19.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p> <p>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자주 걱정한다 ④ 항상 걱정한다</p> <p>-2024년 신규문항 -초등학교생용 13번</p>
<p>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p> <p>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p> <p>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p> </div>	<p>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p> <p>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p>	<p>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p> <p>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p>	<p>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p> <p>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p>	<p>20.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p> <p>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p>	<p>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p> <p>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p> </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13번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하위문항 3) 삭제 -초등학생용 11번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11번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11번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14번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15번
				21.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4) 우리 지역은 아이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15번_4)제외	22.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4) 우리 지역은 아이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16번_4)제외
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23.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초등학생용 14번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초등학생용 12번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초등학생용 12번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초등학생용 12번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초등학생용 16번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초등학생용 17번
					24. 자신의 정신적 건강(마음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2024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제외
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초등학생용 15번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초등학생용 13번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초등학생용 13번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초등학생용 13번	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초등학생용 17번	2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초등학생용 18번
24. 학교에 가기 전 아침식사를 합니까? * 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먹는 편이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초등학생용 16번					
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초등학생용 16-1번					
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은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9시 0분, 22시 0분)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은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9시 0분, 22시 0분)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은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9시 0분, 22시 0분)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은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9시 0분, 22시 0분)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은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9시 0분, 22시 0분) 1)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 보통 □□시 □□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 보통 □□시 □□분	26.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은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9시 0분, 22시 0분) 1)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 보통 □□시 □□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 보통 □□시 □□분
-초등학생용 17번	-초등학생용 14번	-초등학생용 14번	-초등학생용 14번	-초등학생용 18번	-초등학생용 19번
26.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25.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27.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예 ② 아니요 -초등학생용 18번	① 예 ② 아니요 -초등학생용 15번	① 예 ② 아니요 -초등학생용 15번	① 예 ② 아니요 -초등학생용 15번	① 예 ② 아니요 -초등학생용 19번	① 예 ② 아니요 -초등학생용 20번
26-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1-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1-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1-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5-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7-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초등학생용 18-1번_1)문항이 학원, 과외부터 시작(① 야간 자율학습 제외)	-3순위에서 2순위로 응답 방식 변경 -초등학생용 15-1번_1)문항이 학원, 과외부터 시작(① 야간 자율학습 제외)	-초등학생용 15-1번_1)문항이 학원, 과외부터 시작(① 야간 자율학습 제외)	-초등학생용 15-1번_1)문항이 학원, 과외부터 시작(① 야간 자율학습 제외)	-초등학생용 19-1번_1)문항이 학원, 과외부터 시작(① 야간 자율학습 제외)	-초등학생용 20-1번_보기 ①이 학원, 과외부터 시작(① 야간 자율학습 제외)
27.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6.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용 제외					
27-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2-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2-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2-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6-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8-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초등학생용 제외					
					29. 최근 1년 동안 자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자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하는 등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③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다 ④ 가끔 시도한다 ⑤ 자주 시도한다
					-2024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제외
28.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	27.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	3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심시오.</p> <table border="1">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r> <tr><td>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r> <tr><td>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p>심시오.</p> <table border="1">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p>심시오.</p> <table border="1">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p>심시오.</p> <table border="1">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p>심시오.</p> <table border="1">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r> <tr><td>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초등학생용 19번_4) 다른 사람처럼 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문구 수정, 7) 삭제 -초등학생용 16번_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용 16번_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용 16번_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용 20번_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용 21번_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p>29.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r><td>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td></tr> <tr><td>2) 가정 불화</td></tr> <tr><td>3) 또래와의 관계</td></tr> <tr><td>4) 경제적인 어려움</td></tr> <tr><td>5) 외모, 신체조건</td></tr> <tr><td>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p>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2) 가정 불화	3) 또래와의 관계	4) 경제적인 어려움	5) 외모, 신체조건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2) 가정 불화																																			
3) 또래와의 관계																																			
4) 경제적인 어려움																																			
5) 외모, 신체조건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용 20번_1) 공부하는 문제, 2)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3) 친 구와의 관계					
30.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말들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말 씁주세요. ※ 아래 질문들은 0~10 점 사이에서 개를 선택하여 대답해주 세요. 0점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은 '매우 찬성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선택지: 0-10점</u> <u>(0=전혀 찬성하지 않음, 10=매우 찬성)</u>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삭제	삭제	삭제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 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u>선택지: 0-10점</u> <u>(0=전혀 찬성하지 않음, 10=매우 찬성)</u>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 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u>선택지: 0-10점</u> <u>(0=전혀 찬성하지 않음, 10=매우 찬성)</u>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초등학생용 21번				-2018년 30번 문항 재 추가 -초등학생용 3번	-초등학생용 3번
3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용 22번	-초등학생용 17번	-초등학생용 17번	-초등학생용 17번	-초등학생용 1번	-초등학생용 1번
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초등학생용 22-1번_1)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초등학생용 17-1번_1)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초등학생용 17-1번_1)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초등학생용 17-1번_1)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초등학생용 1-1번_1)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초등학생용 1-1번_1)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3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삶의 만족도 낮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중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삶의 만족도 높음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5px;">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삶의 만족도 낮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중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삶의 만족도 높음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5px;">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삶의 만족도 낮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중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삶의 만족도 높음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5px;">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삶의 만족도 낮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중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삶의 만족도 높음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5px;">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삶의 만족도 낮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중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삶의 만족도 높음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5px;">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삶의 만족도 낮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중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삶의 만족도 높음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5px;">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div>
-초등학생용 23번	-초등학생용 18번	-초등학생용 18번	-초등학생용 18번	-초등학생용 2번	-초등학생용 2번
3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28.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3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
-초등학생용 24번	-초등학생용 19번	-초등학생용 19번	-초등학생용 19번	-초등학생용 21번	-초등학생용 22번
				29.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32.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__명)	① 없다 ② 있다 (__명)
				-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22번	-초등학생용 23번
				3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div>	3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div>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내가 늘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div> <p>① 없다 ② 있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23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6) 내가 늘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div> <p>① 없다 ② 있다</p> <p>-초등학생용 24번</p>
				<p>3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24번</p>	<p>34.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5번</p>
				<p>31-1. 31의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p> <p>① 6개월 미만</p>	<p>34-1. 34의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p> <p>① 6개월 미만</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㉔ 6개월 이상 1년 미만 ㉕ 1년 이상 2년 미만 ㉖ 2년 이상 3년 미만 ㉗ 3년 이상 -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24-1번	㉔ 6개월 이상 1년 미만 ㉕ 1년 이상 2년 미만 ㉖ 2년 이상 3년 미만 ㉗ 3년 이상 -초등학생용 25-1번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3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p>-초등학생용 25번</p>	<p>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p>-초등학생용 21번</p>	<p>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p>-초등학생용 21번</p>	<p>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p>-초등학생용 21번</p>	<p>3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p>-초등학생용 26번</p>	<p>37.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p>-초등학생용 27번</p>
<p>3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p> <p>1순위() 2순위() 3순위()</p> <p>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p> <p>-초등학생용 25-1번</p>	<p>2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p> <p>-1~3순위의 복수 응답에서 단수 응답으로 응답 방식 변경 -초등학생용 21-1번</p>	<p>2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p> <p>-초등학생용 21-1번</p>	<p>2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p> <p>-초등학생용 21-1번</p>	<p>3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p> <p>-초등학생용 26-1번</p>	<p>37-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p> <p>-초등학생용 27-1번</p>
<p>3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p>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p>	<p>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p>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p>	<p>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p>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p>	<p>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p>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p>	<p>3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p>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p>	<p>38.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p>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6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2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하위문항_3) 추가(수업의 재미) -초등학생용 22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2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7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해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8번</p>
<p>36.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준다</div>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27번</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p>31. 최근 1년 동안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초등학생용 23번																												
37.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32.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3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3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36.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39.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 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table border="1"> <tr><td>1) 공공도서관</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td></tr> </table>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table border="1"> <tr><td>1) 공공도서관</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td></tr> </table>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table border="1"> <tr><td>1) 공공도서관</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td></tr> </table>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table border="1"> <tr><td>1) 공공도서관</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td></tr> </table>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table border="1"> <tr><td>1) 공공도서관</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td></tr> </table>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table border="1"> <tr><td>1) 공공도서관</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td></tr> </table>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1) 공공도서관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번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번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번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번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번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번 정도 ③ 2~3개월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생용 28번	-초등학생용 24번	-초등학생용 23번	-초등학생용 23번	-초등학생용 28번	-초등학생용 29번																								
37-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32-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31-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31-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36-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39-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초등학생용 28-1번	-초등학생용 24-1번	-초등학생용 23-1번	-초등학생용 23-1번	-초등학생용 28-1번	-초등학생용 29-1번
3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초등학생용 29번, 청소년단체를 아동·청소년 단체(예: 겹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으로 대체					
39.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동호회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구 수정: 질문 명료화 -초등학생용 30번					
40.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33.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37.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40.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31번</p>	<p>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25번</p>	<p>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25번</p>	<p>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25번</p>	<p>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29번</p>	<p>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30번</p>						
<p>41.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32번</p>	<p>34.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p>-설명 문구 수정 -초등학생용 26번</p>	<p>3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p>-설명 문구 삭제 -초등학생용 26번</p>	<p>3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25번</p>	<p>38.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30번</p>	<p>41.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p>-초등학생용 31번</p>						
<p>42.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내容</td> <td>전혀 지지 않는다</td> <td>지지 않는다</td> <td>지지 않는 편이다</td> <td>지지 않는다</td> <td>매우 지지한다</td> </tr> </table>	내容	전혀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 편이다	지지 않는다	매우 지지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내容	전혀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 편이다	지지 않는다	매우 지지한다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가평	1	2	3	4					
2)학교	1	2	3	4					
-초등학생용 33번 질문 문구: ~ 얼마나 지지하고(도움 등)이 있나요?									
									<p>42. 최근 1년 동안 평소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여가활동'이란 여가(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p> <p>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p>
									<p>-2024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32번</p>
									<p>42-1. (42의 ①, ②에 응답한 경우) 만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p> <p>①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②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③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④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⑤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⑥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⑦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⑧ 보호자(혹은 부모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32-1번

7) 특별보호조치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3.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2.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5.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초등학생용 제외					
43-1.(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27-1.(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27-1.(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27-1.(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32-1.(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35-1.(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9) 최저임금(2017년 기준 시간 당 6,470원, 2018년 기준 시간 당 7,5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 최저임금(2018년 기준 시간 당 7,530원, 2019년 기준 시간 당 8,35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간 당 8,350원, 2020년 기준 시간 당 8,59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간 당 8,720원, 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 2023년 기준 시간 당 9,6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 최저임금(2023년 기준 시간 당 9,620원, 2024년 기준 시간 당 9,8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없다 ② 1-2번 ③ 3번 이상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문구 수정: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 반영 -초등학생용 제외	-문구 수정: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 반영 -초등학생용 제외	-문구 수정: 2020년도, 2021년도 최저임금 기준 반영 -초등학생용 제외	-문구수정: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반영 -문구수정: 3) 아르바이트 시작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긍정문)에서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부정문)로 문항 일관성이 있게 수정 -초등학생용 제외	-문구수정: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반영 -초등학생용 제외	-문구수정: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반영 -초등학생용 제외

8) 일반논평

2023년	2024년										
<p>46.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td></tr> <tr><td>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td></tr> <tr><td>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td></tr> <tr><td>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r> <tr><td>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38번</p>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p>5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td></tr> <tr><td>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td></tr> <tr><td>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td></tr> <tr><td>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r> <tr><td>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초등학생용 40번</p>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p>47.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r> <tr><td>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r> <tr><td>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r> <tr><td>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39번_1),2) 문항 문항 제외</p>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p>5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r> <tr><td>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r> <tr><td>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r> <tr><td>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td></tr> </table>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41번_1),2) 문항 문항 제외</p>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p>48.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td></tr> <tr><td>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td></tr> </table>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p>52.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td></tr> <tr><td>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td></tr> </table>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2023년	2024년
<p>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p> <p>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p> <p>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40번</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42번</p>

9) 기타

2023년	2024년																								
<p>49.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목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얼마나 보장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td>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td></tr> <tr><td>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td></tr> <tr><td>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td></tr> <tr><td>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td></tr> <tr><td>5) 건강에 대한 권리(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td></tr> <tr><td>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td></tr> <tr><td>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td></tr> <tr><td>8)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td></tr> <tr><td>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td></tr> </table> <p>①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② 보장받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보장받은 편이다 ⑤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p> <p>-2023년 신규 문항 -초등학생용 제외</p>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5) 건강에 대한 권리(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8)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p>53.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목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얼마나 보장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td>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td></tr> <tr><td>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td></tr> <tr><td>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td></tr> <tr><td>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td></tr> <tr><td>5) 건강에 대한 권리(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td></tr> <tr><td>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td></tr> <tr><td>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td></tr> <tr><td>8)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td></tr> <tr><td>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td></tr> <tr><td>10)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예. 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td></tr> </table> <p>①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② 보장받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보장받은 편이다 ⑤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p> <p>-하위문항 10) 추가 -초등학생용 제외</p>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5) 건강에 대한 권리(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8)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10)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예. 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5) 건강에 대한 권리(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8)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5) 건강에 대한 권리(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8)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10)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예. 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p>※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p> <p>50-1. 현재 본인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매우 낮음</th> <th>약간 낮은 편임</th> <th>보통임</th> <th>약간 높은 편임</th> <th>매우 높은 편임</th> </tr> </thead> <tbody> <tr> <td>내가 지닌 권리 수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r> </tbody> </table> <p>50-2.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매우 낮음</th> <th>약간 낮은 편임</th> <th>보통임</th> <th>약간 높은 편임</th> <th>매우 높은 편임</th> </tr> </thead> <tbody> <tr> <td>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r> </tbody> </table> <p>50-3. 지난 3년 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p>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내가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p>삭제</p>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내가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약간 낮은 편임	보통임	약간 높은 편임	매우 높은 편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023년

2024년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없음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변화 (3년 간)	①	②	③	④	⑤

50-4. 앞으로 3년 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변화없을 것임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권리 예측 (3년 후)	①	②	③	④	⑤

-초등학생용 41-1번, 41-2번
-초등학생용은 하위문항 3)_4)번 제외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번호 변경이력(2013~2024년)²⁰²⁾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1.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	인권 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35	43 (1~3)	30 (1~3)	39 (1~3)	32 (1~3)	41 (1~3)	33 (1~3)	41 (1~3)	34 (1~3)	45 (1~5)	35 (1~3)	45 (1~3)	27 (1~3)	35 (1~3)	26 (1~3)	34 (1~3)	26 (1~3)	34 (1~3)	26 (1~3)	34 (1~3)	31 (1~3)	39 (1~3)	33 (1~3)	43 (1~3)	43 (1~3)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	-	38 (1~5)	41 (1~5)	40 (1~5)	43 (1~5)	41 (1~5)	43 (1~5)	35 (1~5)	45 (1~5)	36 (1~5)	46 (1~5)	28 (1~4)	36 (1~4)	2 (1~4)	2 (1~4)	2 (1~4)	2 (1~4)	27 (1~4)	35 (1~4)	32 (1~4)	40 (1~4)	34 (1~4)	44 (1~4)	44 (1~4)	
		인권감수성과 태도	38	46 (1~4)	-	-	-	-	-	-	-	-	-	-	-	-	-	-	-	-	-	-	-	-	-	-	-	-
		인권 의식 및 태도	39 (1~5)	47 (1~7)	32 (1~5)	42 (1~7)	34 (1~5)	44 (1~7)	35 (1~5)	44 (1~7)	36 (1~5)	46 (1~7)	37 (1~5)	47 (1~7)	29 (1~7)	37 (1~7)	28 (1~7)	36 (1~7)	28 (1~7)	36 (1~7)	28 (1~7)	36 (1~7)	33 (1~7)	41 (1~8)	35 (1~7)	45 (1~8)	45 (1~8)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42	51	-	-	-	-	-	-	-	-	-	-	-	-	-	-	-	-	-	-	-	-	-	-	-	-
		인권교육 경험(횟수, 장소, 도움정도)	18-1, 18-2	20 (1, 3), 20-1 (1, 3), 20-2	14	15	16	17	16	17	37	47	38	48	30	38	29	37	29	37	29	37	34	42	36	46	46	46
		인권교육 받은 기관	-	-	14-1	15-1	16-1	17-1	16-1	17-1	37-1	47-1	38-1	48-1	30-1	38-1	29-1	37-1	29-1	37-1	29-1	37-1	34-1	42-1	36-1	46-1	46-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	14-2	15-2	16-2	17-2	16-2	17-2	37-2	47-2	38-2	48-2	30-2 (1~3)	38-2 (1~3)	29-2 (1~3)	37-2 (1~3)	29-2 (1~3)	37-2 (1~3)	29-2 (1~3)	37-2 (1~3)	34-2 (1~3)	42-2 (1~3)	36-2 (1~3)	46-2 (1~3)	46-2 (1~3)	
		장애이해교육 경험	-	-	-	-	-	-	-	-	-	-	-	-	-	-	-	-	-	-	-	32	40	-	-	-	-	
		장애이해교육의 도움 정도	-	-	-	-	-	-	-	-	-	-	-	-	-	-	-	-	-	-	-	32-1	40-1	-	-	-	-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	-	-	-	-	-	-	-	-	-	-	-	-	-	-	-	-	-	-	-	33 (1~4)	41 (1~4)	37 (1~4)	45 (1~4)	39 (1~4)	49 (1~4)	

202) 김영지, 최홍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pp. 419-426의 자료에서 2023년 변경이력 업데이트함.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	-	-	-	-	-	-	-	-	-	-	-	-	-	-	-	-	-	-	-	-	-	49	-	53			
		(1-9)	(1-10)	인권 수준(현재 자신, 현재 청소년, 과거 3년간 권리수준변화, 앞으로 3년 후 권리수준변화(예상))	-	-	-	-	-	-	-	-	-	-	-	-	-	-	-	-	-	-	-	41-1	50-1	41-2	50-2	50-3	50-4
	일반 원칙	차별의식 및 태도	16	18 (1-4)	-	-	-	-	-	-	-	-	-	-	-	-	-	-	-	-	-	-	-	-	-	-	-	-	
		차별경험	37	45 (1-8)	-	-	-	-	-	-	-	-	-	-	-	-	-	-	-	-	-	-	-	-	-	-	-	-	
		차별해 본 경험	-	-	33	43	35	45	36	45	39	49	40	50	32	40	31	39	31	39	31	39	31	39	36	44	38	48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7)	(1-7)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차별받은 경험	-	-	34	44	36	46	37	46	38	48	39	49	31	39	30	38	30	38	30	38	30	38	35	43	37	47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4)	(1-4)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차별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35-1	43-1	37-1	47-1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 권, 표현의 자유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19	21 (1-4)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여가시간 존중)	-	-	15	16	17	18	17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4	4	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4)	(1-2)	(1-4)	(1-2)	(1-4)	(1-2)	(1-4)	(1-2)	(1-4)	(1-3)	(1-6)	(1-3)	(1-6)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37 (1)	-	-	-	-	-	-	-	-	-	-	-	-	-	-	-	-	-	-	-	-	-	-	-	-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운영 여부, 참여 정도)			-	-	27	30	29	32	30	32	2	3	2	3	-	-	-	-	-	-	-	-	-	-	-	-	-	-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	-	27-1	30-1	29-1	32-1	30-1	32-1	2-1	3-1	2-1	3-1	-	-	-	-	-	-	-	-	-	-	-	-	-	-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	-	28	-	30	-	30	-	2	-	2	-	2	-	2	-	2	-	2	-	2	-	5	-	5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	-	29	-	31	-	31	-	4	-	4	-	3	-	-	-	-	-	3	-	6	-	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	-	26(1)	31(1)	28(1)	33(1)	28(1)	33(1)	3(1)	5(1)	3(1)	5(1)	2(1)	4(1)	2(1)	4(1)	2(1)	4(1)	2(1)	4(1)	2(1)	4(1)	5(1)	7(1)	5(1)	7(1)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38	-	33	-	35	29	35	4	6	4	6	3	5	3	5	3	5	3	5	3	5	6	8	6	8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33	41	28	36	30	38	31	38	5	8	5	8	4	6	4	6	4	6	4	6	4	6	7	9	7	9
		참여 장애 이유	34	42	29	37	31	39	32	39	6	9	6	9	5	7	5	7	5	7	5	7	5	7	8	10	8	10
		청소년 선거 참여율	-	40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	-	35	-	37	-	37	-	7	-	7	-	-	-	-	-	-	-	-	-	-	-	-	-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	-	35(2-4)	38(2-4)	37(2-4)	40(2-4)	38(2-4)	40(2-4)	-	10(2-4)	-	10(2-4)	-	8(2)	-	8(2)	-	8(2)	-	8(2)	-	8(2)	-	11(2)	-	11(2)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학교)	-	37(3)	-	32, 32-1	-	34, 34-1	-	34, 34-1	-	11, 11-1	-	11, 11-1	-	9, 9-1	-	9, 9-1	-	9, 9-1	-	9, 9-1	-	9, 9-1	-	12, 12-1	-	12, 12-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39(1-3)	-	34	-	36	-	36	-	12	-	12	-	10	-	10	-	10	-	10	-	10	-	13(1-2)	-	13(1-2)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 징계시 의견수렴)	-	34(1-3)	-	27(1-3)	-	29(1-3)	-	29(1-3)	-	13(1-3)	-	13(1-3)	-	11(1-3)	-	11(1-3)	-	11(1-3)	-	11(1-3)	-	14(1-5)	-	14(1-3)		
		→ 초등의 경우, 교육비 미납 제외	32	37(4-6)	26(2-3)	31(2-4)	28(2-3)	33(2-4)	28(2-3)	33(2-4)	3	5(2-3)	3	5(2-3)	2(2)(징계처분)	4(2-4)	2(2)(징계처분)	4(2-4)	2(2)(징계처분)	4(2-4)	2(2)(징계처분)	4(2-4)	2(2)(민감한 정보)(징계)	4(2-4)	5(2)(민감한 정보)(징계)	7(2-5)	5(2)(민감한 정보)(징계)	7(2-5)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 2022년부터 교육비 마납 학생 정보 공개 대신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한 정보 공개로 초등, 중고등 문항 변경됨																				처분)					
	정보 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32	37(7)	26(4)	31(5)	28(4)	33(5)	28(4)	33(5)	3(4)	5(5)	3(4)	5(5)	-	-	-	-	-	-	-	-	-	-	-	-	-
		이동 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6	44(1-3)	31	40(1-3)	33(1-3)	42(1-3)	34(1-3)	42(1-3)	-	14(1-3)	-	14(1-3)	-	-	-	-	-	-	-	-	-	-	-	-	-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22, 22-1	24, 24-1	18, (1, 2)	19, (1, 2)	20, (1, 2)	21, (1, 2)	20, (1, 2)	21, (1, 2)	7, (1, 2)	15, (1, 2)	7, (1, 2)	15, (1, 2)	6, (1, 2)	12, (1, 2)	6, (1, 2)	12, (1, 2)	6, (1, 2)	12, (1, 2)	6, (1, 2)	12, (1, 2)	9, (1, 2)	15, (1, 2)	9, (1, 2)	15, (1, 2)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22, 22-1	24, 24-1	18, (3, 4)	19, (3, 4)	20, (3, 4)	21, (3, 4)	20, (3, 4)	21, (3, 4)	7, (3, 4)	15, (3, 4)	7, (3, 4)	15, (3, 4)	6, (3, 4)	12, (3, 4)	6, (3, 4)	12, (3, 4)	6, (3, 4)	12, (3, 4)	6, (3, 4)	12, (3, 4)	9, (3, 4)	15, (3, 4)	9, (3, 4)	15, (3, 4)	
		친구, 선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23	25(1-6)	19(1-7)	20(1-7)	21(1-7)	22(1-7)	21(1-7)	22(1-7)	8(1-7)	16(1-7)	8(1-7)	16(1-7)	7(1-6)	13(1-6)	7(1-6)	13(1-6)	7(1-6)	13(1-6)	7(1-6)	13(1-6)	10(1-6)	16(1-6)	10(1-6)	16(1-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4	26(1-5)	20(1-5)	21(1-5)	22(1-5)	23(1-5)	22(1-5)	23(1-5)	9(1-5)	17(1-5)	9(1-5)	17(1-5)	8(1-5)	14(1-5)	8(1-5)	14(1-5)	8(1-5)	14(1-5)	8(1-5)	14(1-5)	11(1-5)	17(1-5)	11(1-5)	17(1-5)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0, 40-1, 40-2	49, 49-1, 49-2	36	46	38	48	39	48	33	43	34	44	20	28	20	28	20	28	20	28	25	33	26	36	
		성적피해 시 도움 제공자	-	-	36-1	46-1	38-1	48-1	39-1	48-1	33-1	43-1	34-1	44-1	20-1	28-1	20-1	28-1	20-1	28-1	20-1	28-1	25-1	33-1	26-1	36-1	
		이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22(1-4)	22(1-5)	16(1-5)	16(1-5)	18(1-5)	19(1-5)	18(1-5)	19(1-5)	10(1-5)	18(1-5)	10(1-5)	18(1-5)	9(1-5)	15(1-5)	9(1-5)	15(1-5)	9(1-5)	15(1-5)	9(1-5)	15(1-5)	12(1-5)	18(1-5)	12(1-5)	18(1-5)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4.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21	23	17	18	19	20	19	20	11	19	11	19	10	16	10	16	10	16	10	16	13	19	14	19		
		가출 이유	21-1	23-1	17-1	18-1	19-1	20-1	19-1	20-1	11-1	19-1	11-1	19-1	10-1	16-1	10-1	16-1	10-1	16-1	10-1	16-1	13-1	19-1	14-1	20-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	23-2	-	18-2	-	20-2	-	20-2	-	19-2	-	19-2	-	16-2	-	16-2	-	16-2	-	16-2	-	19-2	-	20-2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	-	-	18-3	-	20-3	-	20-3	-	19-3	-	19-3	-	16-3	-	16-3	-	16-3	-	16-3	-	19-3	-	20-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자살률	-	8, 8-1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41 (1-2)	50 (1-2)	4, 37 (1-3)	4, 47 (1-3)	4, 39 (1-3)	4, 49 (1-3)	4, 40 (1-3)	4, 49 (1-3)	12, 13 (1-3)	20, 29 (1-3)	12, 13 (1-3)	20, 21 (1-3)	11 (1-2)	17 (1-2)	11 (1-2)	17 (1-2)	11 (1-2)	17 (1-2)	11 (1-2)	17 (1-2)	14 (1-2)	20 (1-2)	15 (1-2)	21 (1-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안전, 놀장소, 도우줄 사람, 지역 의사결정 과정 참여)	-	-	-	-	-	-	-	-	-	-	-	-	-	-	-	-	-	-	-	-	15 (1-3)	21 (1-4)	16 (1-3)	22 (1-4)		
	보건 서비스	학교급식 만족도	4	4	-	-	-	-	-	-	-	-	-	-	-	-	-	-	-	-	-	-	-	-	-	-	-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6	6	6	6	6	6	6	6	14	22	14	22	12	18	12	18	12	18	12	18	16	22	17	23 24			
	운동 실천율	5	5	5	5	5	5	5	5	15	23	15	23	13	19	13	19	13	19	13	19	17	23	19	25			
	아침식사 결식률	3	3	3	3	3	3	3	3	16	24	16	24	-	-	-	-	-	-	-	-	-	-	-	-	-		
	아침식사 결식이유	3-1	3-1	3-1	3-1	3-1	3-1	3-1	3-1	16-1	24-1	16-1	24-1	-	-	-	-	-	-	-	-	-	-	-	-	-		
	수면시간	1	1	1	1	1	1	1	1	17	25	17	25	14	20	15	20	15	20	14	20	18	24	19	26			
	수면부족 여부 및 이유	2, 2-1	2, 2-1	2, 2-1	2, 2-1	2, 2-1	2, 2-1	2, 2-1	2, 2-1	18, 18-1	26, 26-1	18, 18-1	26, 26-1	15, 15-1	21, 21-1	15, 15-1	21, 21-1	15, 15-1	21, 21-1	15, 15-1	21, 21-1	19, 19-1	25, 25-1	20, 20-1	27, 27-1			
자살에 대한 생각	-	-	-	8	-	8	-	8	-	27	-	27	-	22	-	22	-	22	-	22	-	26	-	28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자살 생각 이유	-	-	-	8-1	-	8-1	-	8-1	-	27-1	-	27-1	-	22-1	-	22-1	-	22-1	-	22-1	-	26-1	-	28-1			
		지해 생각 및 시도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29		
		스트레스 인지율	7 (1-6)	7 (1-6)	7 (1-6)	7 (1-6)	7 (1-6)	7 (1-6)	7 (1-6)	7 (1-6)	7 (1-6)	20 (1-6)	29 (1-6)	20 (1-6)	29 (1-6)	-	-	-	-	-	-	-	-	-	-	-	-	-	
		우울감	9 (1-3)	10 (1-3)	9 (1-7)	10 (1-7)	9 (1-3)	10 (1-3)	9 (1-3)	10 (1-3)	19 (1-3)	28 (1-3)	19 (1-3)	28 (1-3)	16 (1-3)	23 (1-3)	20 (1-3)	27 (1-3)	21 (1-3)	30 (1-3)									
		외로움과 고립감(고립감을 느낀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24 (1-4)	31 (1-4)	25 (1-4)	34 (1-4)	
		자아존중감	9 (4-7)	10 (4-7)	9 (4-7)	10 (4-7)	9 (4-7)	10 (4-7)	9 (4-7)	10 (4-7)	19 (4-7)	27 (4-7)	19 (4-7)	28 (4-7)	16 (4-6)	23 (4-6)	20 (4-6)	27 (4-6)	21 (4-6)	30 (4-6)									
		고민거리대화상대	8	9	8	9	8	9	8	9	23	32	24	33	19	26	19	26	19	26	19	26	19	26	21	28	22	31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22	29	23	3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23 (1-6)	30 (1-6)	24 (1-6)	33 (1-6)	
	주관적 웰빙	행복도	10	11	10	11	10	11	10	11	21	30	21, 22	30, 31	17	24	17	24	17	24	17	24	17	24	1	1	1	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0-1	11-1	10-1	11-1	10-1	11-1	10-1	11-1	21-1	30-1	22-1	31-1	17-1	24-1	17-1	24-1	17-1	24-1	17-1	24-1	17-1	24-1	1-1	1-1	1-1	1-1	
		삶의 만족도	-	-	-	-	11	12	11	12	22	31	23	32	18	25	18	25	18	25	18	25	18	25	2 3	2 3	2 3	2 3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 예의 권리	학업중단율	-	15	-	-	-	-	-	-	-	-	-	-	-	-	-	-	-	-	-	-	-	-	-	-		
			학업중단 생각 여부	-	-	12	13	13	14	13	14	24	33	25	34	21	29	21	29	21	29	21	29	21	29	26	34	27	37
			학업중단 생각 이유	-	-	12-1	13-1	13-1	14-1	13-1	14-1	24-1	33-1	25-1	34-1	21-1	29-1	21-1	29-1	21-1	29-1	21-1	29-1	21-1	29-1	26-1	34-1	27-1	37-1
교육의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	-	-	-	14 (1-4)	15 (1-4)	14 (1-4)	15 (1-4)	25 (1-3)	34 (1-3)	26 (1-3)	35 (1-3)	22 (1-3)	30 (1-4)	22 (1-4)	30 (1-4)	22 (1-4)	30 (1-4)	22 (1-4)	30 (1-4)	27 (1-4)	35 (1-4)	28 (1-4)	38 (1-4)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목표		수업의 재미, 학교즐거움 → 2020년 수업의 재미 추가 2020년 '학교생활만족도' 문항이 삭제되면서 해당 문항의 지표항목 명이 학교생활만족도로 변경됨																										
		학교생활만족도	-	-	-	-	14 (1-4)	15 (1-4)	14 (1-4)	15 (1-4)	25 (1-3)	34 (1-3)	26 (1-3)	35 (1-3)	23	31	-	-	-	-	-	-	-	-	-	-	-	-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	-	13 (1-4)	14 (1-4)	15 (1-4)	16 (1-4)	15 (1-4)	16 (1-4)	26 (1-4)	35 (1-4)	27 (1-4)	36 (1-4)	-	-	-	-	-	-	-	-	-	-	-	-	-	-
		학교부적응	13, 13-1, 14, 14-1, 15, 16, 17	14, 14-1, 15, 16, 17	-	-	-	-	-	-	-	-	-	-	-	-	-	-	-	-	-	-	-	-	-	-	-	-
		사교육 경험률	11	12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17	19	-	-	-	-	-	-	-	-	-	-	-	-	-	-	-	-	-	-	-	-	-	-	-	-
		다문화 교육현황	8, 18-1	20, 20-1 (2)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5, 25-1	27, 27-1	21	22	23	24	23	24	27	36	28	37	24	32	23	31	23	31	23	31	28	36	29	3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만족도	-	-	21-1	22-1	23-1	24-1	23-1	24-1	27-1	36-1	28-1	37-1	24-1	32-1	23-1	31-1	23-1	31-1	23-1	31-1	28-1	36-1	29-1	39-1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32 32-1	42 42-1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7	29	22	23	24	25	24	25	39	39	31	40	25	33	24	32	24	32	24	32	29	37	30	40		
		하루 평균 학습시간	12	13	11	12	12	13	12	13	31	40	32	41	26	34	25	33	25	33	25	33	30	38	31	4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29	31	23	24	25	26	25	26	28	37	29	38	-	-	-	-	-	-	-	-	-	-	-	-	-	
		동아리 활동 참가율	29	32	24	25	26	27	26	27	29	38	30	39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중·고등	초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31	33 (1~2)	25	26	27	28	27	28	32	41	33	42	-	-	-	-	-	-	-	-	-	-	-	-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28 26	-	-	-	-	-	-	-	-	-	-	-	-	-	-	-	-	-	-	-	-	-	-	-
		휴일을 보내는 방법	28	30	-	-	-	-	-	-	-	-	-	-	-	-	-	-	-	-	-	-	-	-	-	-	-
7. 특별 보호 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경험	-	48	-	45	-	47	-	47	-	42	-	43	-	27	-	27	-	27	-	27	-	32	-	35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	-	48-1	-	45-1	-	47-1	-	47-1	-	42-1	-	43-1	-	27-1	-	27-1	-	27-1	-	27-1	-	32-1	-	35-1	
8. 일반 논평	디지털 환경	디지털(온라인) 환경 인식	-	-	-	-	-	-	-	-	-	-	-	-	-	-	-	-	-	-	-	-	39 (1~2)	47 (1~4)	41 (1~2)	51 (1~4)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생각	-	-	-	-	-	-	-	-	-	-	-	-	-	-	-	-	-	-	-	-	40 (1~4)	48 (1~4)	42 (1~4)	52 (1~4)	
	기후 환경	기후변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38 (1~5)	46 (1~5)	40 (1~5)	50 (1~5)	

3.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ri.re.kr)

수행기관

Research & Research

※ 담당자: 민예슬 선임연구위원 (02-3484-3077)
※ 문의전화: 02-3484-3087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출생 연도, 장애 여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남자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3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4번 문항으로

13-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9-1 평소 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 2순위 5

- ① 학원, 과외
-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I 내 삶에 관한 질문들

1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④ 매우 행복하다
- 2번 문항으로

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0=전혀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10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설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6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시·군·구·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성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7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8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III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9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 (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

-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자주 걱정한다 ④ 항상 걱정한다

14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5번 문항으로

14-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IV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보호

15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6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17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18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9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 ①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보통 시 분
-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시 분

23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24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25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혀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5-1 (위 문항에서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혀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2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27번 문항으로 ② 없다 → 27번 문항으로

26-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문화

27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28번 문항으로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8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9-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3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31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32

최근 1년 동안 평소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여가활동'이란 여가(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 33번 문항으로

32-1

만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 ②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 ③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 ④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 ⑤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⑥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⑦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 ⑧ 보호자(혹은 부모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I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33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4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35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6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37번 문항으로

36-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6-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7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7-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 ② 친구 |
| ③ 선·후배 | ④ 부모님(보호자) |
| ⑤ 형제·자매 | ⑥ 선생님 |
|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 ⑧ 경찰 |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38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4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2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배문6 학생의 학업 성적(2024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	--	--	--	--	--	--	--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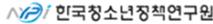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 담당자: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c.re.kr)

수행기관



※ 담당자: 민예슬 선임연구위원 (02-3484-3077)
※ 문의전화: 02-3484-3087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출생 연도, 장애 여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남자 여자

I 내 삶에 관한 질문들

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④ 매우 행복하다
- 2번 문항으로

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0=전혀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10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II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7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9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11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III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 (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

-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자주 걱정한다 ④ 항상 걱정한다

2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21번 문항으로

2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21번 문항으로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② 만족하지 않았던 편이다
 ③ 만족했던 편이다 ④ 매우 만족했다

29 최근 1년 동안 자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자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하는 등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②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 ③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다
- ④ 가끔 시도한다
- ⑤ 자주 시도한다

3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2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 ① 없다
- ② 있다 (명)

3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34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4-1

(위 문항에서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35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6번 문항으로

35-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3년 기준 시간 당 9,620원, 2024년 기준 시간 당 9,8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3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7번 문항으로

36-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 ② 친구 |
| ③ 선·후배 | ④ 부모님(보호자) |
| ⑤ 형제·자매 | ⑥ 선생님 |
|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 ⑧ 경찰 |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V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문화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38번 문항으로

37-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8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9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 1-2회 정도	2-3개월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9-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4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41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42

최근 1년 동안 평소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여가활동'이란 여가(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 43번 문항으로

42-1

만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 ②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 ③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 ④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 ⑤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⑥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⑦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 ⑧ 보호자(혹은 부모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I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43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44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45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인간은 성적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6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47번 문항으로

46-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6-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47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7-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 ② 친구
- ③ 선·후배
- ④ 부모님(보호자)
- ⑤ 형제·자매
- ⑥ 선생님
-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 ⑧ 경찰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8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5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2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동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 후,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행정 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심층 연구를 통하여 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취약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자살과 자해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과 기후 환경 속에서의 인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함께 증진시키는 방향의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제언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정책제언에 대해 13개로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개별 인권 영역에서 관심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삶의 질 증진에의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인권과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uth Korea's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first examines media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rights. Subsequently, it establishes a framework of indicator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and assesses the implementation status us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Furthermore, the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the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National Approved Statistics No. 402001)," a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al survey, to investigate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addition, in-depth research is carried out to provide diverse perspective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re are still areas in which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uth Korea need improvement. It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special attention to vulnerable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importance of social awareness regar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ssues such as suicide, self-harm, loneliness, and isolation, and th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igital and climate

environments. Furthermore,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expanding discussio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involved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beyond solely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mselves.

To this end, the research team presents 13 polic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the UNCRC cluster and the ecological system surrou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tudy anticipates that the discours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will expand beyond individual human rights domains to include interactions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Keyword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Children's Rights, Adolescents' Rights,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일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분호·이자경·서지형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하형석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욱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동운영기준 / 황세영
-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료 집

〈세미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워크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감명령 이해하기 (24.8.29.)
-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포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콜로키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기타자료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NYPI Bluenote 통계〉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28-9

979-11-5654-427-2 (세트)

연구보고24-일반이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28-9

ISBN 979-11-5654-427-2 (세트)